1991년도

사 업 보 고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WORKERS' TRADE UNIONS

1991년도

사 업 보 고

REPORT ON ACTIVITIES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FEDERATION OF KOREAN METALWORKERS' TRADE UN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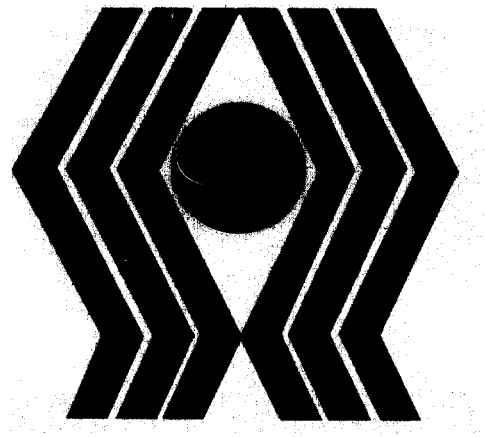

금속노조연맹기에 대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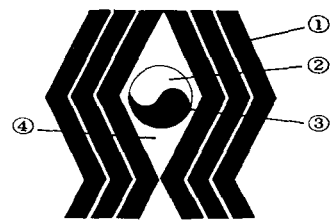

1. 손 : 즉 양손을 모았으며 그것이 6개가 됨으로써 금속연맹의 기계금속,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조선, 비철금속의 업종별, 분과를 표상하고 다양한 가운데 통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합심단결을 과시하였으며 또 날카로운 직선은 금속의 무한한 창조성을 나타냄
2. 태극 : 한국의 금속노동조합을 뜻함.
3. 원 : 뜻과 목적과 공존공영의 번영을 나타냄
4. 다이아몬드 : 금속의 빛과 정열, 견고를 나타내 정밀, 중화학공업의 중핵으로서의 가치와 불변함을 나타냄

* 색깔 : ①의 색은 영광으로서의 황금색 ⑤의 바탕은 남청색으로서 노동은 문화창조의 근원을 나타냄

금 속 노 련 가

정태암 작사
나규호 작곡

(씩씩하게 힘차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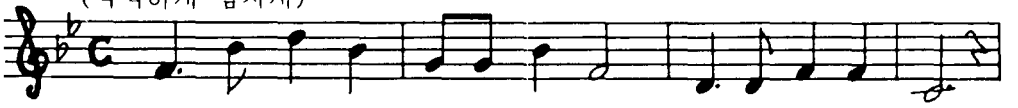

떠 오 르 는 태 ― 양 의 이 상 을 안 고
비 ― 지 땀 기 름 손 의 노 동 의 보 람
용 ― 광 로 흐 른 용 액 불 꽃 튀 기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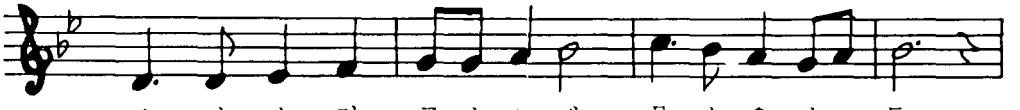

선 언 강 령 구 현 위 해 뭉 친 우 리 ― 들
하 ― 늘 과 바 다 닿 은 세 계 로 뻗 ― 는
우 ― 리 의 핏 줄 속 은 붉 고 뜨 거 ― 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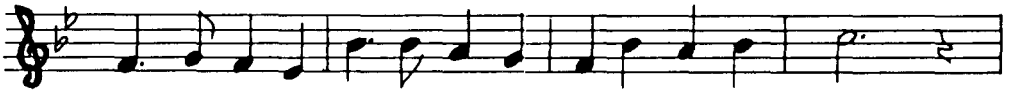

거 ― 칠 은 가 시 밭 길 꺾 어 넓 히 며
영 ― 광 의 산 업 대 열 맥 박 이 뛴 다
잘 ― 사 는 평 생 터 전 우 리 손 으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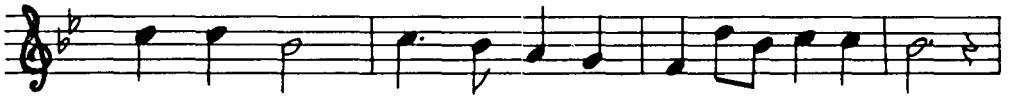

나 가 자 금 속 깃 발 강 ― 철 의 대 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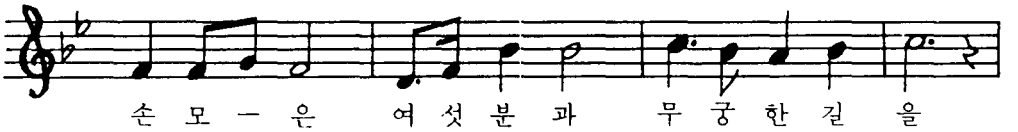

손 모 ― 은 여 섯 분 과 무 궁 한 길 을
일 ― 하 며 교 류 하 는 국 제 유 대 로
뜻 모 ― 은 투 혼 속 에 내 일 은 밝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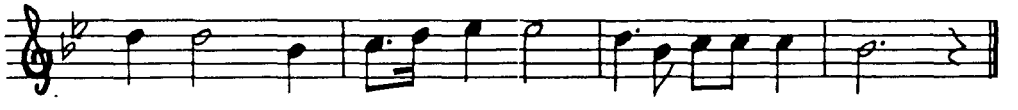

정 의 의 사 회 펴 갈 금 속 노 ――― 련
인 류 의 평 화 지 킬 금 속 노 ――― 련
복 지 를 다 져 가 는 금 속 노 ――― 련

목 차

1. 화 보 ····· 5
2. 머리말 ····· 17
3. 선언 · 강령 ····· 19
4. 연 혁 ····· 20
5. 총 론 ····· 29
6. 조직활동 ····· 67
7. 교육활동 ····· 147
8. 홍보활동 ····· 157
9. 노사대책 · 법규활동 ····· 281
10. 조사통계활동 ····· 327
11. 산업안전보건활동 ····· 381
12. 국제활동 ····· 423
13. 여성활동 ····· 459
14. 문화활동 ····· 473
15. 복지활동 ····· 477
16. 총무활동 ····· 481

임 원

위 원 장
박 인 상

수석부위원장
김 장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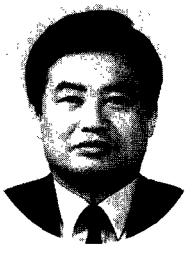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김 성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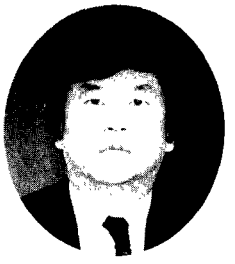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정 창 영

부 위 원 장
박 기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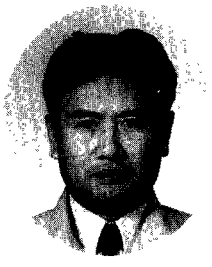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유 재 섭

부 위 원 장
박 병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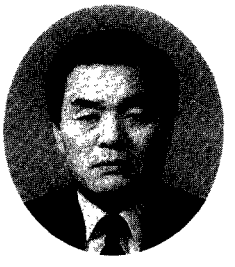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정 기 춘

부 위 원 장
차 경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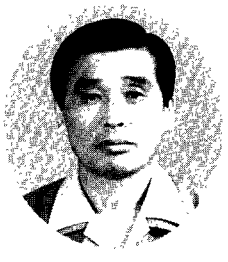

부 위 원 장
정 학 균

부 위 원 장
제 선 수

부 위 원 장
박 영 호

부 위 원 장
피 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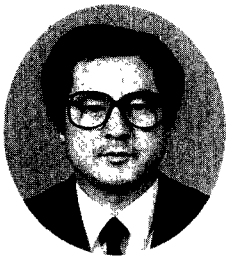

부위원장
염 성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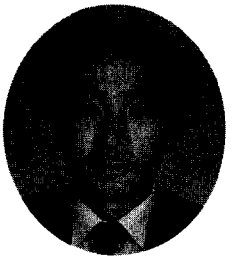

부위원장
양 재 석

부위원장
강 규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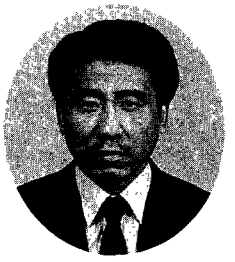

부위원장
박 영 구

부위원장
전 덕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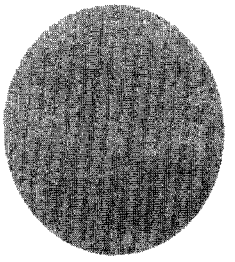

부위원장
허 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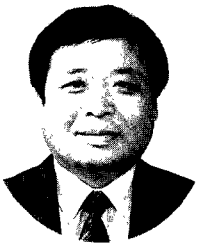

사무처장
최 웅 길

회계감사
오 병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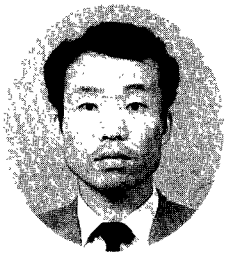

회계감사
김 흥 수

회계감사
김 동 교

회계감사
박 순 오

'91년연맹화보

금속노동자의 힘찬 전진을 결의한 정기대의원 대회

◁ 91년도 정기대의원 대회가 1991. 5. 15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열려 금속노동자의 단결과 발전을 다짐하였다.

이날대회에서는 박인상 위원장이 단일후보로 추대, 당선되어 연맹을 위한 힘찬 활동에 재돌입하였다. ▷

당선확정후 축하꽃다발을 받고있는 박인상 위원장 ▷

금속노련 창립 제30주년

△ 본노련은 1991년 8월25일로 창립30주년을 맞이하였다. 연맹지하강당에서 연맹중집위원 및 역대의장단, 노총 박종근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박인상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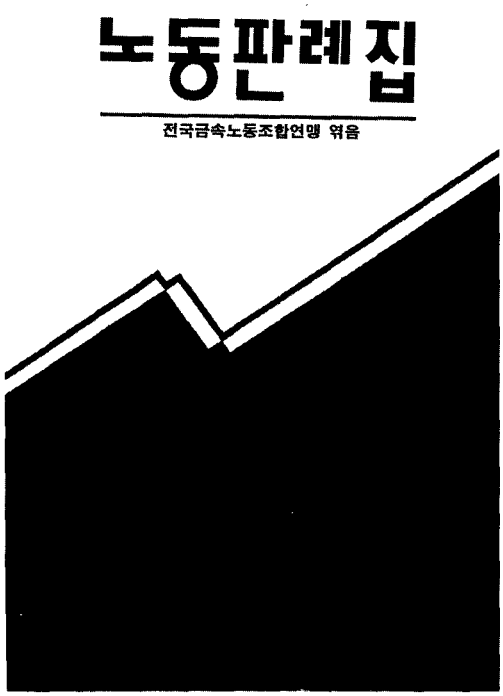

◁ 노동현장에서 불법·탈법이 횡행하는 현실과 노동자의 법에대한 무관심을 악용하는 가진자들의 횡포를 앞에두고 조합원들의 권익확보와 노조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노동판례집.

노동자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매년 계속되고 있는 핀란드금속노조지원 강사 양성교육. 91년 한해도 9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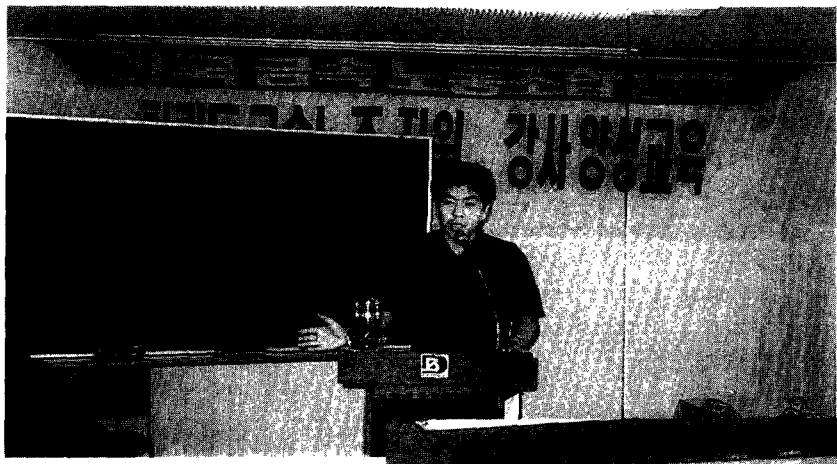

◁ 강사양성교육에서 직접 강의 실습을 하고있는 조합원

노동조합 신임대표자를 위한 신임대표자 교육은 새로이 노동조합을 이끌 대표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

본노련은 91회계년도에 신임 및 신규대표자 교육 2회, 신임사무국장교육 2회, 홍보선전 교육 1회, 노동문화교육 1회, 핀란드지원 강사양성교육 9회, 산업안전보건세미나, 회계처리실무교육, 지역순회임투지원교육, 여성간부교육, 기타 가맹노조 교육지원등 활발한 교육사업을 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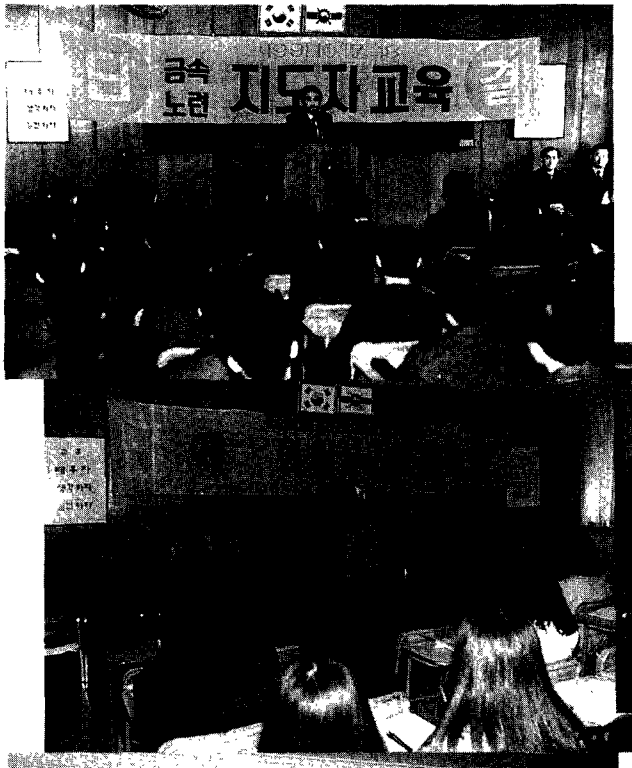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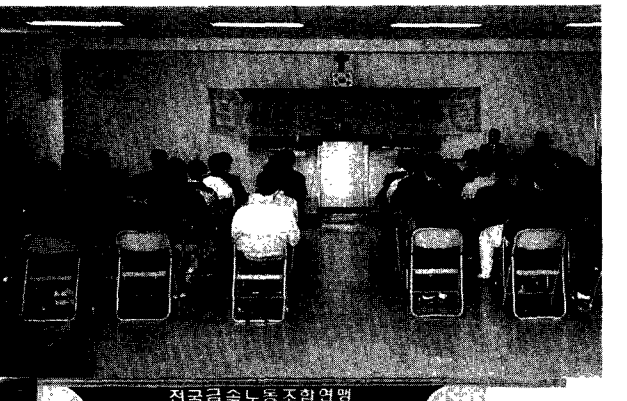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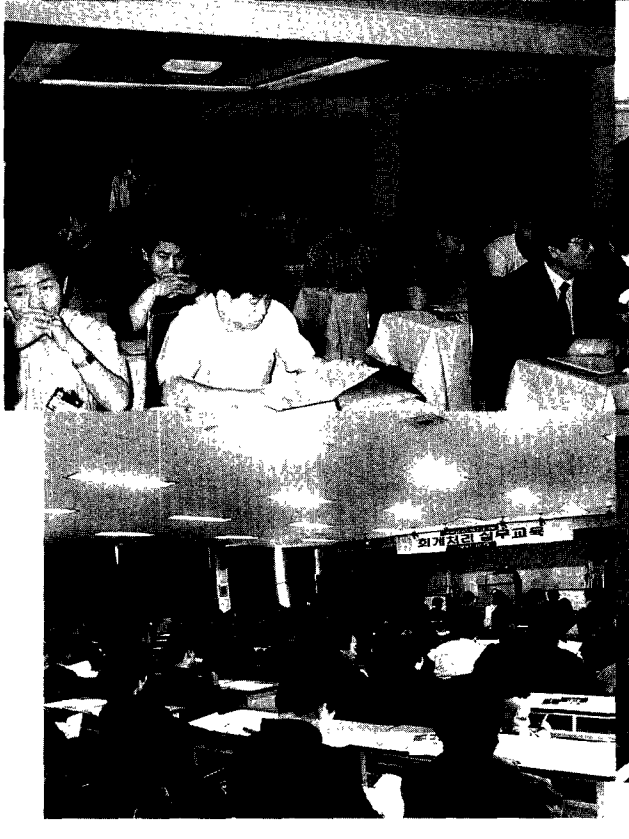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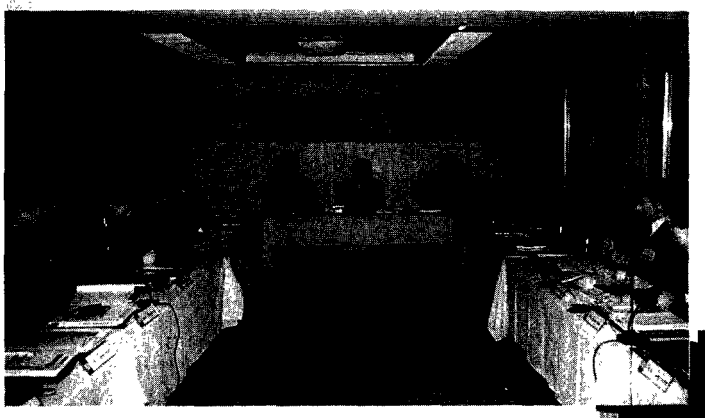

◁ 스웨덴 금속노조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산업안전 보건세미나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대표자들이 모여▷ 모기업 노조와의 단결을 통한 부품업체 문제해결을 토의하였다. 본노련은 상설적인 노조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 92년초 현대자동차 노조탄압에 따른 부품업체 노조대표자들이 모여 현안 문제를 논의.

'92임투승리를 위한 부당노동행▷ 위 대책요원 및 쟁의지도요원교육

단결과 결의의 현장

'91여성간부 극기훈련 〈서울관악산〉▷

◁ "힘찬단결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

여성간부들이 [redacted] 여성해방을 ▷ 결의하고 있다.

'92 임투승리를 위하여

◁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1992. 3. 20)

△ 박인상 위원장과 김장선 수석 부위원장의 결의에찬 모습

△ 우리의 굳은 주먹이 하늘을 향할때

△ "노동탄압 분쇄하고 '92임투 쟁취하자 !"

총액임금제 분쇄하고 '92임투 쟁취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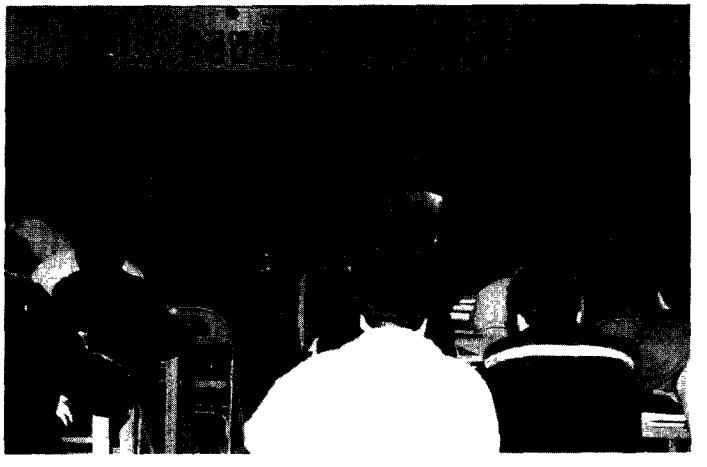

◁ '92임투승리를 위한 순회교육

일더하기운동, 총액임금제, 경제위기책임 노동자전가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 ▷

총액임금제 대상노조대표자와 본노련 중앙위원 · 중앙집행 위원들은 공동투쟁을 통해 금속노동자의 총액임금제 분쇄의지를 보이기로 결의하였다. ▷

노동절의 함성 !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으로

△ 1992년 5월1일 우리의 노동절을 기념하면서 총액임금제 분쇄를 결의하였다.

◁ 총액임금제 분쇄를 힘있게 외치는 박인상 위원장

금속노련 깃발아래 ▷
총단결 ! 총투쟁 !

머 리 말

지난 한해는 년초부터 정부와 자본의 위기가 고조된 한해였다. 소위 민주화를 내걸고 출범했던 6공화국이 통치의 능력을 상실한채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 시작하였고 자본은 세계자본의 위기에 따른 국내위기 심화에 따라 전 근대적인 노동강화를 통해 이윤획득을 계속하려는 이른바 총체적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체 노동운동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확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장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노동탄압과 내부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우리 금속노련은 이러한 상황속에서 조직의 신장, 정치적 진출, 노동자의 제권리 획득이라는 목표에 획기적인 발전은 하지 못하였으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하고 내실있게 금속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조직강화, 그리고 전체 노동운동의 선봉이라는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서 수립한 정책들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91년도는 정부와 자본이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노동자를 억압하는데 총력을 다한 한해였다. 온갖 물리적·제도적·이념적 노동탄압은 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였고 수백명의 노동자가 감옥으로 가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여지없이 짓밟혔고 최소한의 권리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즉 44시간 노동시간이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평균노동시간이 50시간이 넘는 아직도 장시간 노동에 허덕이고 있는가 하면, 한자리수 임금인상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자 아무 근거없는 총액임금 5%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또 경제위기가 노동자의 게으름과 임금인상에 있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로 일더하기운동의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억제를 획책하고 있다. 또 계속적인 물가폭등과 전월세 및 주택가 급등으로 인한 생활의 빈곤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와 투쟁에 대해 정부는 공권력투입과 구속수배로 일관하였다. 정부와 자본은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이윤획득을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 수호와 사회적 권리획득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데 혈안이 되어왔다. 정부는 노동법을 개악하려고 발버둥 쳤으며 자본은 온갖 허위와 기만의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침탈하였다. 이미 온갖 제약이 있는 현재의 노동법을 더욱 개악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의 존재까지도 정부와 권력에 순응하는 조직으로 만드려는 정부의 파렴치한 행위는 아직도 그 고삐를 늦추고 있지 않다. 정부와 자본은 기존의 무노동 무임금, 인사경영권의 독점, 노조전임자 제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한술더떠 단협기간 연장, 단협교섭기간중 대표권 불인정, 해고정리요건 완화, 합법쟁의에도 공권력 조기투입 등 노동자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 시키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들은 법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완전 박탈되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그 법 마저도 개악하려고 하고있고 노동법 개악이 노동자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자 행정지침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강행하려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정부와 자본의 총체적 공세에 맞서 조직을 보위하고 지금까지의 획득 성과들을 수호하는데 역점을 둘 수 밖에 없었고 실제 91년의 노조활동은 조직수호와 기존의 획득물 보호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금속노련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우리 금속노련은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노동탄압이 계속될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동진영의 총단결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조직의 통일 및 활성화, 교육활동강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재해추방 정치활동전개라는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해왔다. 이는 각 부분에서 어느정도의 기초를 형성 본격적인 발전도상에 있다고 평가되며 92년에도 더욱 심화된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작년의 극심한 노동탄압 속에서도 18.23%라는 비교적 높은 임금인상을 쟁취한 것은 조합원들의 단결된 역량과 탄압에 대처하는 능력이 발전되었으며 노동탄압의 실체인식과 단위조직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운동의 연대의식이 축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노동탄압이 계속된다해도 앞으로 노동운동의 전망을 밝게하는 것이다.

우리 금속노련은 정치적 변환기인 92년을 맞이 그동안 축적된 노동자의 힘이 분출될 것으로 예측하며 노동자의 대진출을 역사의 필연이라 당당하게 주장한다. 또한 작년 한해의 탄압속에서 단련된 역량을 총 집결하여 계속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세력의 사회적 진출에 총력을 다하며 축적된 운동역량을 가시화하여 투쟁의 전면에 서서 정부와 자본의 억압사슬을 끊어낼 것이다.

전체 노조운동의 선봉에 선다는 각오로 우리 금속노련은 금속노조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조합원 동지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

1992년 5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 인 상

宣 言·綱 領

宣 言

民族의 繁榮과 祖國의 平和的 南北統一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意志는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 깃발아래 굳게 뭉쳤다.

國家産業의 根幹을 이룬 金屬産業發展을 두 어깨에 메고 이에 從事하는 우리들은 一絲不亂한 運動體制아래 勞動者의 生活 向上과 社會的 地位를 드높이기 위하여 前進 또 前進하련다.

우리 勞動者는 鞏固한 團結力과 피끓은 同志愛로써 民主主義 諸原則下에 勞使平等의 産業民主主義 俱現을 通한 國家發展에 全力을 다하여 勤勞大衆의 福祉社會建設을 이룩하고저 한다.

이제 金屬産業에 從事하는 우리 勞動者들은 이나라 國民의 注視와 關心속에 社會正義實現에 果敢하게 前進하며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民主化의 實踐을 期하고 産業平和의 繼續的인 維持로 子孫萬代의 榮光스러운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勞動組合 發展에 邁進할 것을 嚴肅히 宣言한다.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

綱 領

一. 우리는 勞動組合의 組織을 擴大, 強化하여 힘과 슬기를 모아 祖國의 繁榮과 民主的 平和統一의 先鋒이 된다.

二. 우리는 自由, 正義, 平等의 運動理念을 俱現하기 위하여 自由로운 政治活動에 參與, 民主勞動運動의 恒久的 發展을 期한다.

三. 우리는 鞏固한 團結로써 勞動者의 地位向上과 國民의 生活安定을 爲한 福祉國家 實現을 期한다.

四. 우리는 健全한 勞動精神으로써 組合員의 總意와 力量을 集中하여 勞動權 尊重의 産業民主化를 期한다.

五. 우리는 勞動者의 敎育訓練과 文化向上에 強力한 實踐을 期한다.

六. 우리는 民主友邦의 勞動者와 國際的 紐帶를 強化하여 世界平和에 貢獻한다.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

沿　　革

西紀 1959年 3月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이 釜山地區 鐵工勞動組合을 主體로 하여 誕生하였으나 全國的인 規模를 갖추지 못하고 새로운 轉機를 摸索하여 오던中 西紀 1960年 10月 大韓造船公社를 主軸으로 한 韓國金屬勞動組合聯盟을 結成하여 事實上 第2勞組로 登場하게 되어 緊要한 總團結 課題는 混迷狀態에 이르게 되어 當時 勞聯에서는 또다시 西紀 1060年 10月에 仁川重工業會社를 主軸으로 한 이른바 全國鐵鋼勞動組合聯盟 結成委員會를 構成하여 第30勞組가 登場하는 課程에 處하여 오던中 1961年 5月 16日 軍事革命으로 因하여 勞動團體가 解體되고 同年 8月 3日 公布된 法律 第672에 依하여 單一 産業別 體系인 全國金屬勞動組合이 全國的인 規模를 갖추어 結成되었다. 그러나 1980年 12月 30日 公布된 改正 勞動組合法에 따라 1981年 2月 23日 開催된 臨時全國代議員大會를 거쳐 全國金屬勞動組合을 全國金屬勞動組合聯盟으로 改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沿 革 一 覽 表

대 회 명	개 최 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당 시 조합원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결 성 대 회	1959. 3	柳 益 培	韓承龍, 李元錫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결 성 대 회	1960.10	林 漢 植	金 任 郁		
전 국 철 강 노 동 조 합	1960.10		準備委員會 : 林漢植 準備副委員會 : 宋榮俊, 金在範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결 성 대 회	1961. 8.25	池 淵 日 (仁川重工業)	金在範(大韓重機), 李秀永(三陽産業), 李鈴(金泉鐵工)	朴 鍾 晛 (三成機械)	609 (61.9)
제 2 차 대 의 원 대 회	1962. 7. 5				(62.7.20)
제 3 차 대 의 원 대 회 (임 시 대 회)	1963. 4.12	朴 鍾 晛 (三成機械)	柳貴馨(韓國電力機械), 李秀永(三陽産業), 權鍾五(韓國機械)	金 得 成 (起亞産業)	5,034
제 4 차 대 의 원 대 회	1964. 4.30		柳貴馨(韓國電力機械), 朴世天	〃	8,455
제 5 차 대 의 원 대 회	1965. 4.30		崔鍾圭(金星社), 李命求(仁川綱業)	李 健 性 (仁川重工業)	9,110 (65.3)
제 6 차 대 의 원 대 회	1966. 1. 8	朴 世 天 (韓國機械)	崔鍾圭(金星社), 金炳龍(起亞産業), 朴鍾宣(韓國工業)	許 萬 成 (仁川重工業)	9,984
제 7 차 대 의 원 대 회	1967. 4.27		崔鍾圭(金星社), 金炳龍(起亞産業), 李熙鎔(仁川重工業)	洪 淳 模 (一進機械)	14,038
제 8 차 대 의 원 대 회	1968. 4.30		〃	〃	15,223
임 시 대 의 원 대 회	1968. 9.20	金 炳 龍 (起亞産業)	崔鍾圭(金星社), 李成學(朝鮮企業), 文益模(利川電氣), 李圭雲(奉信鑄鐵), 姜俊錫(韓國베아링)	李 澤 龍 (仁川重工業)	17,947
제 9 차 대 의 원 대 회	1969. 4.29	金 炳 龍 (起亞産業)	文益模(利川電氣), 李圭雲(奉信鑄物), 姜俊錫(韓國베아링), 虛在業(造船公社)(보선), 姜基泰(金星社)(보선)	李 憲 求 (韓國機械) (보 선)	23,960
제 10 차 대 의 원 대 회	1970. 4.30	金 炳 龍 (起亞産業)	姜基泰(金星社), 鄭南洙(造船), 河俊(造船企業), 李牛年(韓國機械)	崔 鍾 圭 (金星社)	25,217
제 11 차 대 의 원 대 회	1971. 4.16	金 炳 龍 (起亞産業)	鄭南洙(造船), 河俊(朝鮮企業) 文益模(利川電氣) (보선)	崔 鐘 圭 (金星社)	27,306
제 12 차 대 의 원 대 회	1972. 4.28	〃	〃		

대 회 명	개 최 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당 시 조합원수
제 13차 대의원대회	1973. 4.25	金 炳 龍 (起亞産業)	文益模(利川電機), 姜俊錫(韓國베아링), 鄭釜炅(金星社), 韓達洙(大韓電線), 彭宗茁(造船公社), 金正培(大韓重機)	崔 鐘 圭 (金星社)	27,246 27,245
제 14차 대의원대회	1974. 4.30	〃	〃	〃	43,856
제 15차 대의원대회	1975. 4.23	〃	〃	〃	53,293
제 16차 대의원대회	1976. 4.21	〃	姜俊錫(韓國베아링), 鄭釜炅(金星社), 河俊(勝利機械) 韓達洙(大韓電線)	〃	72,809
제 17차 대의원대회	1977. 4.27	〃	〃	〃	92,756
제 18차 대의원대회	1978. 5.20	〃	〃	〃	112,891
제 19차 대의원대회	1979. 5.11	〃	河俊(慶北支部), 鄭南洙(釜山支部), 李憲求(大宇重工業), 彭宗茁(造船公社), 李重錫(南서울支部), 鄭藥均(金星電線)	崔 鐘 圭 (金星社)	138,668
제 20차 대의원대회	1980. 6.17	〃	〃	〃	126,140
제 21차 대의원대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결성 임시대의원대회, 정기대의원대회 갈음)	1981. 2.23	彭 宗 茁 (造船公社)	崔鐘圭(金星社), 閔正植(金星社), 朴仁相(造機), 李俊(貨泉), 韓昌錫(仁川製鐵), 金將鮮(大韓電線), 李尚淑(金星通信), 權守泰(起亞技研)	崔 鐘 圭 (金星社)	108,964 (81.3.31)
제 22차 대의원대회	1982. 5. 7	彭 宗 茁	權守泰(大林自動車), 朴仁相(造機), 閔正植(金星社), 金將鮮(大韓電線), 韓昌錫(仁川製鐵), 趙兌植(曉星重工業), 崔正元(大鮮造船), 李成均(새한自動車), 許成元(金星電線)	金 晟 文 (大韓電線)	99,594
제 23차 대의원대회	1985. 5.30	閔 正 植 (金星社)	權守泰(大林自動車), 朴仁相(造機), 金世民(起亞産業), 金將鮮(大宇電子), 崔璟丸(金星알프스), 姜昌寧(東部製鋼), 崔圭文(國際綜合機械), 金粧華(亞細亞自動車), 柳喆圭(平和크럿치)	韓 昌 錫 (仁川製鐵)	119,636
제 24차 대의원대회	1986. 5.23	閔 正 植 (金星社)	〃	〃	119,445
제 25차 대의원대회	1987. 5.22	閔 正 植 (金星社)	〃	〃	138,990

대 회 명	개 최 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사무처(국)장	당 시 조합원수
제26차대의원대회	1988. 5.27	朴 仁 相 (造 機)	金將鮮(大宇電子), 金世民(起亞産業), 柳喆圭(平和크럿치), 姜榮燮(金星社), 任昌基(大韓重機), 朴基植(聯合鐵鋼), 鄭基春(貨泉), 李榮馥(現代自動車), 李金樹(크라운전자), 深東生(大宇造船), 朴炳允(大宇通信), 李成均(大宇自動車), 車慶俊(韓國重工業)	金 晟 文 (大韓電線)	295,864
제27차대의원대회	1989. 5.26	朴 仁 相 (造 機)	金將鮮(大宇電子), 姜榮燮(金星社), 朴基植(聯合鐵鋼), 鄭基春(貨泉), 李榮馥(現代自動車), 朴炳允(大宇通信), 李成均(大宇自動車), 車慶俊(韓國重工業)	金 晟 文 (大韓電線)	356,900
제28차대의원대회	1990. 5.11	朴 仁 相 (造 機)	金將鮮(大宇電子), 姜榮燮(金星社), 朴基植(聯合鐵鋼), 鄭基春(貨泉), 朴炳允(大宇通信), 李成均(大宇自動車), 車慶俊(韓國重工業)	金 晟 文 (大韓電線)	389,060
제29차대의원대회	1991. 5.15	朴 仁 相 (造 機)	수석 : 金將鮮 상임 : 金晟文, 鄭昌永 朴基植, 柳在涉, 朴炳允, 鄭基春, 車慶俊, 丁學均, 諸善秀, 朴永浩, 皮熙中, 廉星泰, 梁在錫, 姜圭錫, 朴寧九, 全德瑨, 허관무	崔 雄 吉 (東洋鋼鐵)	272,078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직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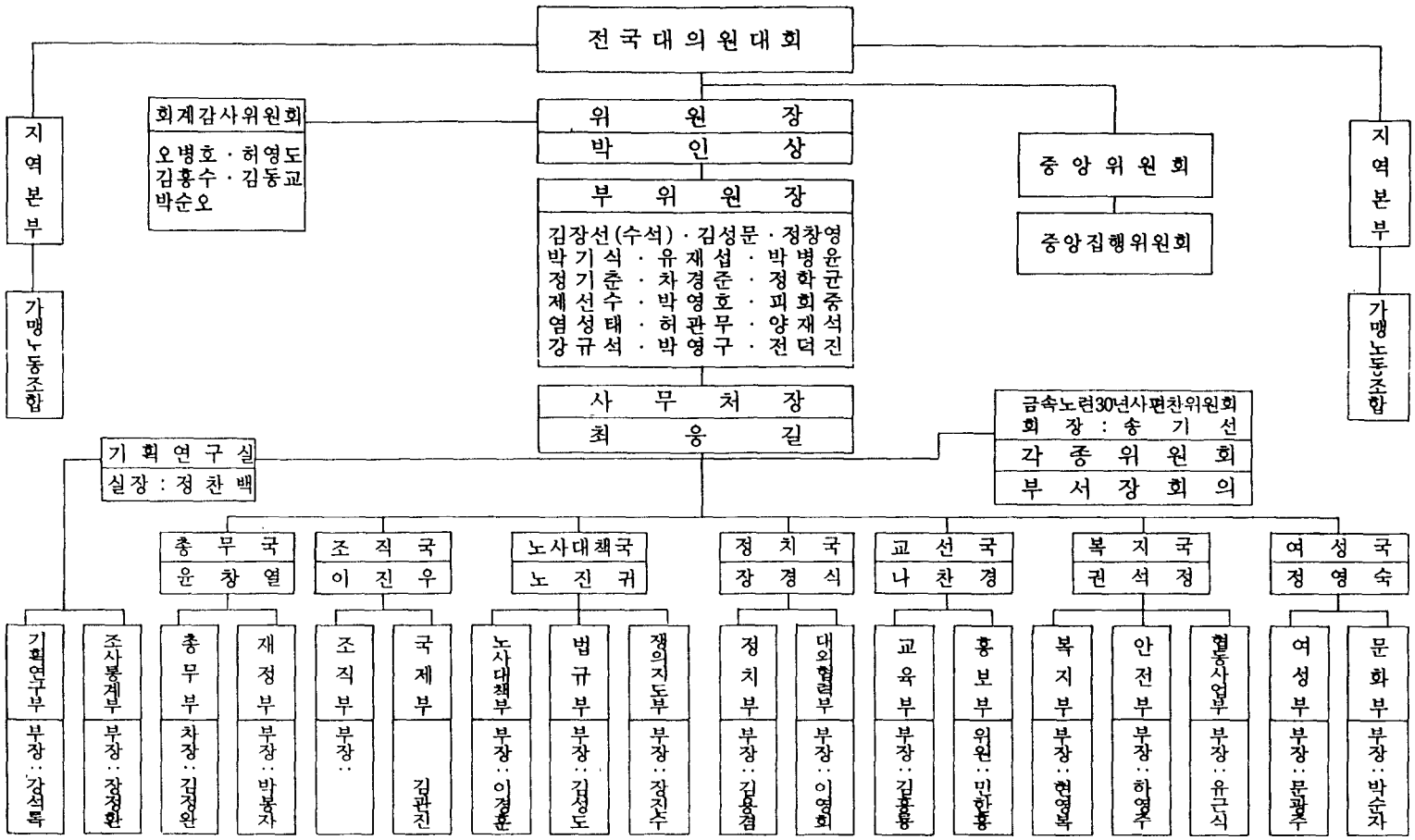

○임 원

91. 5. 15 기준

직 책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명	소 속
위 원 장	박 인 상	본 노 련	부위원장	염 성 태	대 우 중 공 업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 장 선	〃	〃	허 관 무	기 아 자 동 차 노동조합
〃	김 성 문	〃	〃	양 재 석	동 부 제 강 노동조합
〃	정 창 영	〃	〃	이 준 섭	동 부 제 강 노동조합
〃	박 기 식	연 합 철 강 노동조합	〃	강 규 석	기 아 특 수 강 노동조합
〃	유 재 섭	금 성 사 노동조합	〃	박 영 구	럭 키 금 속 노동조합
〃	박 병 윤	대 우 통 신 노동조합	〃	전 덕 진	현 대 전 자 노동조합
〃	정 기 춘	화 천 노동조합	사무처장	최 응 길	본 노 련
〃	차 경 준	한 국 중 공 업 노동조합	회계감사	오 병 호	오 리 온 전 기 노동조합
〃	정 학 균	대 동 조 선 노동조합	〃	허 영 도	효 성 중 공 업 노동조합
〃	제 선 수	삼미종합특수강 노동조합	〃	김 홍 수	금 성 계 전 노동조합
〃	박 영 호	영 창 악 기 노동조합	〃	김 동 교	인 천 제 철 노동조합
〃	피 희 중	영 남 주 물 노동조합	〃	박 순 오	시 그 네 틱 스 노동조합

○지역본부의장

서울지역 본부의장	강 규 석	경기지역 본부의장	하 영 일
인천지역 본부의장	박 영 호	충남지역 본부의장	김 두 형
충북지역 본부의장	김 홍 수	부산지역 본부의장	박 기 식
경남지역 본부의장	제 선 수	울산지역 본부의장	오 진 현
경북지역 본부의장	김 경 조	포항지역 본부의장	백 종 부
전남지역 본부의장	정 기 춘		

○중앙위원

91. 5. 15 기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박 승 리	금 성 사	조 갑 룡	삼 성 화 스 나	이 근 덕	롯 데 알 미 늄
정 용 호	롯 데 전 자	김 성 희	백 산 전 자	박 청 준	한 국 음 향
신 성 균	오 트 론	최 영 수	큐 닉 스 컴 퓨 터	가 재 두	일 진 전 기
정 용 승	금 성 전 선	김 종 천	기 아 써 비 스	김 수 진	만 도 기 계
김 윤 태	동 양 특 수 기 공	김 익 년	삼 화 콘 덴 서	이 정 현	필 립 스
김 학 성	기 아 자 동 차	허 복 일	두 산 기 계	신 철	신 일 산 업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 용 세	장 안 공 업	김 수 룡	대광다이케스트	신 성 현	신 한 주 철
차 재 인	신 한 일 전 기	정 기 철	반 도 기 계	김 권 태	삼 협 전 자
안 희 철	홍 진 기 연	김 광 신	서 행 공 업	엄 종 국	세 광 알 미 늄
여 상 찬	신 창 전 기	진 용 기	동 아 정 공	한 상 환	한 영 알 미 늄
서 상 연	한 국 강 관	김 원 태	대 한 제 당	김 성 렬	경 동 산 업
이 중 교	금 성 기 전	김 성 남	이 천 전 기	박 기 린	코리아스파이서
김 만 영	대 림 통 상	윤 유 원	진 도	김 동 영	한 독
김 영 복	린나이코리아	정 병 석	동 양 강 철	윤 영 걸	한국쌍신전기
김 용 훈	국제종합기계	민 경 갑	영 태 전 자	신 의 수	삼 화 전 기
이 형 일	뉴 맥 스	허 옥 자	에이.엠.케이	권 성 하	오 리 표
오 봉 출	한진섬유기계	이 인 철	국 제 밸 브	서 윤 호	고 려 제 강
구 성 완	연 합 철 강	지 광 혁	대 선 조 선	연 제 생	한 보 철 강
김 창 호	신 일 금 속	이 재 화	대 일 공 업	이 형 영	태 양 사
김 진 호	삼미종합특수강	이 문 희	금 성 사	장 초	기 아 정 공
박 경 철	고 려 강 선	이 승 필	대림자동차	김 종 태	한 일 제 관
권 영 민	대 동 공 업	서 석 교	대우중공업	김 형 도	대 동 기 어
이 경 수	현대정공창원	신 덕 우	대 원 강 업	전 병 만	금 성 산 전
채 승 구	만 호 제 강	진 삼 문	동 양 물 산	박 용 환	효 성 금 속
방 인 술	한국프랜지	신 성 건	덕 양 산 업	정 철	현 대 강 관
배 상 문	동 희 산 업	장 지 태	경 창 산 업	이 장 범	승 리 기 계
서 학 열	조 광 산 업	서 원 식	평화발레오	백 종 부	부 산 파 이 프
김 대 현	포항종합제철	김 임 술	동 일 기 업	정 태 영	제 철 정 비
신 엄 현	삼 정 강 업	서 정 식	금 성 부 품	변 상 쾌	두 고 전 자
이 해 석	대우전자구미	최 광 현	화 천	정 석 웅	한 일 전 기

○ 중앙집행위원

91. 6. 3 기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 익 화	대 한 전 선	김 해 주	동 일 제 강	천 광 희	금 성 사
김 회 숙	태 림 전 자	박 광 원	대 성 전 선	김 순 호	삼 양 중 기
박 정 화	동 아 정 기	이 병 욱	태 양 금 속	김 윤 주	범 양 냉 방
김 명 화	쌍 용 자 동 차	김 덕 수	한국종합기계	이 종 진	성 신
조 상 철	삼 영 전 자	이 재 술	영 창 악 기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황 경 발	희 성 금 속	오 경 세	한 국 이 연	장 화 연	우 진 전 기
박 강 석	대 동 조 선	박 경 석	동 국 제 강	김 규 호	부 산 정 기
김 홍 균	금 성 알 프 스	김 남 수	두 원 중 공 업	박 상 근	한 일 이 화
김 무 호	평 화 크 랏 치	신 동 락	평 화 산 업	이 복 교	삼 립 산 업
강 학 중	성 림 기 업	김 종 식	아 시 아 동 차	박 준 근	태 성 기 공

○금속노련 30년사 편찬위원회 회장 송기선

○실 · 국장

91. 6. 3 기준

직 책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명	소 속
기획연구실장	정 찬 백	대우전자 노동조합	정 치 국 장	장 경 식	강원산업 노동조합
조 직 국 장	이 진 우	본 노 련	노사대책국장	노 진 귀	본 노 련
총 무 국 장	윤 창 열	〃	교 선 국 장	나 찬 경	금 성 사 노 동 조 합
복 지 국 장	권 석 정	한 샘 노 동 조 합	여 성 국 장	정 영 숙	한 독 노 동 조 합

○부서부장 · 직원

직 책	성 명	소 속	직 책	성 명	소 속
조 직 부 장			총 무 부 장		
노사대책부장	이 경 훈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여 성 부 장	문 광 주	세진전자 노동조합
문 화 부 장	박 순 자	로옴코리아 노동조합	기획연구부장	강 석 록	인 천 지 역 본 부
조사통계부장	장 정 환	대원전선 노동조합	홍 보 부 장	이 영 근	경 남 지 역 본 부
재 정 부 장	박 봉 자	본 노 련	법 규 부 장	김 성 도	금성부품 노동조합
쟁 의 부 장	장 진 수	경원세기 노동조합	복 지 부 장	현 영 복	한국전자 노동조합
안 전 부 장	하 영 주	울 산 지 역 본 부	협동사업부장	유 근 식	동아건설 노동조합
대외협력부장	이 영 희	선학알미늄 노동조합	정 치 부 장	김 용 겸	럭키금속장항지부
교 육 부 장	김 홍 룡	영창악기 노동조합	총 무 차 장	김 정 완	본 노 련
홍 보 담 당	민 한 홍	본 노 련	국 제 담 당	김 관 진	〃
직 원	백 명 아	〃	직 원	김 영 미	〃
〃	박 창 식	〃	〃	조 경 숙	〃

총 론

Ⅰ. 경제동향

1. 한국자본주의의 성격
2. 세계경제
3. 국내경제전망
4. 기업경영지표 동향

Ⅱ. 노동동향

1. 노동자의 생활동향
2. 노동운동 동향

Ⅰ. 경제동향

1. 한국자본주의의 성격

한국경제의 구조를 살펴볼때 몇가지 구체적인 특성이 나타난다. 그 첫번째는 한국의 자본은 외세의존의 예속자본의 성격을 나타낸다. 선진 자본주의의 기술 및 자본에 구조적으로 예속된결과 국내에서 축적된 노동 즉 자본의 일정부분이 외국(특히 미국와 일본)으로 유출되면서 한국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영향으로 작용한다. 그다음 특성은 독점자본에 의한 과두지배적 성격이다.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 금융과 산업을 독점한 일부 독점 재벌들의 경제지배는 자본주의의 일반적 발달과정에서 대두되는 즉 산업자본주의에서 발달한 금융자본주의와 금융독점자본주의가 아닌 국가권력의 비호와 결탁 아래 파행적으로 형성된 왜곡된 경제구조를 구성하였다. 이는 당연히 부패성과 기생성을 내포하게 되는데 기술축적과 자본의 사회발전에의 투여가 기피되면서 부동산투기와 노동력착취 강화로 경제가 유지되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특성은 외형적 발전을 나타내기도 하나 근본적으로 그 토대가 불안한 결정적인 취약함을 갖게 되고 세계자본의 위기 및 미·일 자본의 위기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를 지속적으로 수반하는 계기가 된다. 물론 한국자본주의는 외형적·내면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노동집약적인 구조가 말해주듯이 노동력의 착취에 따른 노동자의 희생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 노동집약적 자본주의의 한계가 이윤추구와 자본집적의 한계로 나타나고 이를 극복하기위한 세계자본주의 속에 편입된 신흥공업국의 자본의 노력은 쉽게 그 의도를 관철시킬 수 없게된다.

세계 자본의 위기는 신흥공업국 및 후진자본주의 여타의 저개발 국가의 자본진출로 그 극복의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자본의 위기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심각한 수준에 다달아있으며 일본자본의 과잉축적은 새로운 자본시장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신흥공업국과 남미 및 동남아의 저개발국가로의 진출을 필연화 시킨다.

이러한 과잉축적과 자본의 위기는 세계경제를 불럭화 하게 만들었으며 신경제질서 즉 보호무역주의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상호모순되는 선진자본주의에 유리한 질서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에트연방 및 동구의 변화는 위기로 치닫는 세계자본주의의 돌파구였다. 새로운 시장개척, 자본시장의 극대화는 세계자본의 회생을 가져왔으며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공황위기와 자본축적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90년도에 들어서면서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른 자본위기의 극복은 세계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이에따른 한국경제도 소위 신 3저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받게 된다. 91년 성장률 8.6%는 물론 외형적인 수치를 나타내지만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정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외부의 영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한국경제구조의 근본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내부적이고 주체적인 발전동력에

의한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발전과정에서 부터 자립적 경제구조를 가지지못한 한국의 경제구조는 지속적으로 세계 선진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자본시장은 그 예속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외형적 발전은 지속하게 되겠지만 예속과 의존도의 심화로 결국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장기적인 자본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경제 및 자본이 가지고있는 근원적인 모순이다.

2. 세계경제

1) 경제성장

80년대말의 3%이상의 고도성장기를 거친 세계경제는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2.2%, 0.1% 성장으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1992년과 1993년에는 세계경제가 각각 2.2%와 2.8%의 경기회복을 보이게 될 것이며 1993년부터는 3%대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실질 GNP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세 계	3.3	2.2	0.1	2.2	2.8	3.3	3.5	3.7
선진국	3.3	2.6	1.0	3.0	3.2	3.2	3.2	3.3
미 국	2.5	1.0	-0.2	3.1	2.8	3.1	3.2	3.1
일 본	4.7	5.6	4.1	3.5	4.8	4.1	4.1	4.3
독 일	3.8	4.5	2.0	2.2	3.7	3.1	3.4	3.9
개도국	3.2	1.0	2.0	3.7	4.6	5.1	4.9	5.3
공산권	1.9	-3.6	-6.0	-3.0	-0.6	2.0	3.2	3.4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ct. 1991
KIET. 「1992년도 세계경제 전망」, 1991.11

2) 국제무역

80년대 말의 경기호황기에 4~6%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던 세계무역량은 1991년에 세계경기의 둔화, UR협상타결의 지연 등으로 1990년 보다 크게 낮은 2.5%의 증가에 그칠 것이다. 1992년 이후에는 세계경기의 회복, 무역환경개선 등에 힘입어 5%대의 높은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량 증가율 추이와 전망(수입물량기준)

단위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세 계	6.9	4.3	2.5	5.5	5.1	5.3	5.2	5.2
선진국	7.9	5.2	3.5	4.8	5.3	3.2	3.2	3.3
미 국	5.8	1.0	3.0	8.0	0.3	3.1	3.2	3.1
일 본	7.8	5.6	-0.2	3.5	4.8	4.1	4.1	4.3
독 일	6.9	4.5	9.0	6.0	7.0	3.1	3.4	3.9
개도국	6.8	1.0	1.0	7.5	4.6	5.1	4.9	5.3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ct. 1991

KIET. 「1992년도 세계경제 전망」, 1991.11

3) 국제금융

(1) 국제금리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는 1985년 G-5의 플라자합의 등에 따라 1986~88년까지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변동하였고, 1990년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일본 및 독일의 금리는 국별로 크게 다른 경제여건을 반영해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나 1992년 중에는 대체로 1991년에 비해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의 공정할인율 전망

단위 : 연률, %

	1991	1992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미 국	5.00	5.00	5.00	5.00	5.00
일 본	5.00	5.00	5.00	5.00	4.50
서 독	7.50	7.50	7.50	7.00	7.00

자료 : KIET. 1992년도 세계경제전망. 1991.11

(2) 달러화 환율

1985년말 달러당 200.5엔, 2.46마르크를 기록하였던 달러화가치는 G -5의 달러화 약세유도 합의 등에 의해 하락세를 거듭하여, 1987~88년에는 일본 엔화,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1985년말 대비 약 45~55% 하락한 수준인 달러당 125~130엔, 1.5~1.7마르크에서 변동하였으나, 달러화는 당분간 미국금리의 추가인하 가능성 등을 반영해 일본엔화등에 대해 약세권에서 맴돌다 1992년부터 완만한 속도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어 달러당 엔화는 1992년말기준 140.0$. 독일 마르크화에 대하여는, 1.70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4)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전망

8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배럴당 16달러 전후의 안정세를 보여오던 국제유가(WTI 기준)는 1989년에 19.5달러로 상승한 후 1990년에는 걸프전쟁의 영향으로 24.4달러로 급등한 후, 20달러 이상 수준을 보여오다 최근 겨울철 석유성수기에 접어들어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불투명한 소련의 석유시황, 세계경제의 회복과 저유가로 인한 석유수요의 증대 및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수출의 재개등으로 금년도 국제유가는 불안한 속에서도 안정 내지 다소 약세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원자재 가격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률을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원자재 가격 전망

	90	91	92
유가($/bBL)	22.1	18.4	18.6내외
원자재 가격(%)	△7.2	△0.5	1.0내외

자료 : IMF, WEFA

5) 세계무역질서의 변화

(1) UR협상의 진전과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

- 지난해 2월 재개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의 대통령선거와 타결실패시의 세계경제에의 동향 등을 고려할 경우 늦어도 1992년 상반기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UR협상의 타결은 쌍무주의에 의한 보호무역주의의 억제 및 세계무역의 확대등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공정무역규범이 강화됨으로써 한국경제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공정무역규범이 강화됨으로써 한국경제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국내시장의 전면적 개방으로 수입확대는 물론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2) 세계경제의 다극화와 지역주의 추세의 심화

- 우루과이라운드로 대표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강화와 함께 세계경제가 다극화되면서 지역주의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데, EC 경제통합은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구주경제공동체는 1992년말까지 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1단계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통합이후에도 화폐통일을 위한 2단계작업이 추진될 것이다. 한편 북미에서도 미국·캐나다·멕시코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블록의 탄생을 예고케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제블록화의 심화는 한국의 수출환경이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북미 자유협정에 멕시코가 가담함으로써 미국, 캐나다 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좁힐 것으로 전망된다.

(3) 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화와 서구경제로의 편입

- 90년대에 들어와 동구권의 시장경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세계 GNP의 약 16%, 인구 15억의 새로운 시장의 제공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개혁에 따른 내부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한,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무역, 산업마찰의 심화와 기술보호주의의 강화

- 첨단기술의 혁신과 정보통신혁명이 가속화되어 국제분업구조가 재편성되고 이과정에서 국가간 무역 및 산업마찰이 격화되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선발개도국은 이른바 국제적인 무역, 산업마찰지대에 속하게되어 점차 입지확보에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의 발전전망도 선진국의 첨단기술 이전 기피 및 지적 소유권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강화로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3. 국내 경제전망

1) 경기 회복 및 고도성장의 지속

- 지난 해 11월12일 확정된 제7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1987~91년 5년간의 10.1%라는 고도성장추세에서 1992~96년 5년간은 7.5%의 안정성장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는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물가상승압력이 없고,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의 적정성장률 6.8%를 넘는 것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우려되며, 우리경제의 경기순환이 금년을 고비로 상승국면에 처해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이 남북관계 및 국제경제여건의 호전과 맞물릴 경우 93년부터의 고도성장 및 물가폭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물가불안의 지속

- 92년 물가는 4대선거에 따른 통화증발과 인플레심리 확산 및 잇따른 공공요금인상, 토지의 소유독점과 부동산가격의 등귀에 따른 물류비용의 증가, 독과점가격 횡포 등의 요인 때문에 전년 이상으로 폭등할 전망이며, 지난해의 경우 3%를 기록하였던 도매물가도 92년에는 다소 높은 4.5% 상승이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계속되는 농수산물가격 상승과 서비스요금 인상 등이 겹쳐 지난 해보다 높은 10%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노동자생활수준의 악화와 실질임금의 보전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92년 경제전망

	단 위	90	91	92
경제성장	불변,%	9.0	8.6	7.0
민간소비	%	10.4	9.0	8.0
건설투자	〃	27.9	12.3	2.5
설비투자	〃	18.4	12.5	11.0
국민총생산	경상,조원	168	198	227
	(경상,억불)	(2,379)	(2,700)	(2,970)
1인당 GNP	불	5,569	6,253	6,816
경상수지	억불	△21.8	△113.6	△105
-무역수지	〃	△20.0	△96.6	△95
-무역외및이전	〃	△1.8	△17	△10
수 출	통관,억불	650	719	810
(증가율)	(%)	(4.2)	(10.5)	(12.8)
수 입	통관,억불	698	815	905
(증가율)	(%)	(13.6)	(16.8)	(11.0)
도매물가	비전년말%	7.4	3수준	4.5수준
소비자물가	〃	9.4	9.6-9.8	9이내

자료 : 경제기획원

물 가 전 망

	단 위	90	91	92
도 매 물 가	비전년말	7.4	3수준	4.5수준
소비자물가	(%)	9.4	9.6-9.8	9수준

3) 경제개방의 가속화와 독점심화

-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한 족과점 대기업위주의 고도 성장을 견지해온 한국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국제화, 개방화 정책으로 경제의 전면 개방과 국제분업질소속에의 깊숙한 편입으로 독점이 강화되고 경제의 2중구조가 심화되어 재벌기업의 정치, 경제, 문화 지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1991년에 97.2%로서 거의 선진국수준에 맞먹는 수입자유화율은 향후 3년간의 133개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계획이 완료되면 1994년에는 수입자유화율이 98.5%에 이를 것이며, 상품시장의 개방외에 지난 해 7월부터 유통시장이 1단계로 개방되었는데, 여기다가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 정보통신 및 무역업 등의 여타 서비스업이 개방되고, 금년부터 제한적이나마 국내자본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전면적 경제개방에 직면한 한국경제는 외국의 대자본과 결탁한 대기업의 일정한 성장과 다수의 중소, 영세자본의 몰락이라는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이다.

4) 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고용불안

- 앞서와 같은 국제분업질서와 경제여건속에서 첨단산업과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조성이 가속화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심화될 것임. 농촌경제의 파탄과 중소, 영세기업의 몰락은 고용정세를 극히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5)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부족

- 92년의 고용사정은 기업의 활발한 시설자동화 투자로 인하여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다소 악화될 전망임, 즉, 2.3%를 기록하였던 실업률이 92년에는 2.6%로 높아지고, 특히 건설·서비스산업의 상대적인 위축으로 이들 부문으로부터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률 추이

(증가율, %)

	90	91			92
		상	하	연간	
실 업 률	2.4	2.4	2.2	2.3	2.6

자료 : 경제기획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특히 중소업계에서의 생산직 구인난 현상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생산직에 대한 차별의 일반화 그리고 각종 선거에 따른 인력유출때문에 계속 이러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업종 또는 기업간 구인난과 구직난이 일부 혼재하는 불균형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임금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취업자수 증가추이

	89	90	91	92
건 설 업(천 명)	116	199	218	32
제 조 업(천 명)	173	7	127	179

자료 : 경제기획원

6) 산업별 동향

(1) 섬유산업

- 섬유산업은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산업으로 발전했지만 중 저가품목을 중심으로한 대량생산체제이므로 환율변동 등에 민감하여 후발개도국의 심각한 추격을 받고있어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 1988년부터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다가 1990년에는 3.1%감소하였는데 이는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인한 인력난때문이며, 시설개최가 활발했던 직물류 등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 섬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보면 기술, 품질면에서는 이탈리아, 일본에 뒤지며, 가격면에서도 중국등 동남아국가에 밀리는 상황인데, 이는 시설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 섬유산업의 기술수준은 공업발전기금에 의한 섬유시설합리화 및 신소재개발자금 지원으로 제직, 염색분야의 기술수준이 제고되었으며, 수요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따라 화섬, 면방분야의 신소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의 기술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70%내외이며, 특히 염새각공은 선진국의 50%수준에 불과하고, 신소재 및 패션, 디자인 부문 기술은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기술수준 평가

단위 : %

	기술수준	품질수준	패션제품 수출비중	매출액 대비 R&D비율
선진국	100	100	45-50	4.0
한 국	70	90	2	1.8

- 섬유부분의 '92년도 경기전망을 보면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무역협회의 「92년도 수출입 전망」에 따르면, 모사와 면사 등 섬유사 부문은 16.6%의 증사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이고, 섬유직물은 12.0%늘어날 전망이다. 직물수출은 지난 해 19.8%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가 금년에는 다소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데 비해, 섬유제품은 90년, 91년의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2년도 섬유산업의 경우 환율절하에 따른 원화매출액의 증가와 설비투자축소에 따른 금융비용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상장회사기준 12%정도의 경상이익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신발산업

- 수출상대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수요가 위축되고, 우리나라 신발류의 가격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됨에 따라 대형바이어들의 거래선전환으로 1989년에 사상최초로 전년비 수출이 5.6% 감소하였던 신발산업은 1990년 원화환율의 안정 내지 약세로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해 하반기부터 해외수요의 약화로 수출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처럼 우리나라 신발수출이 해외시장여건과 가격경쟁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수출의 95%가 OEM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1985년 이후 노동생산성증가율이 임금상승률을 줄곧 앞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신발제조 대기업의 안일한 가격전가 대응방식 때문인데 이는 제조기술면에서 세계수준에 달했음에도 소재 및 디자인분야가 낙후되어 기술인력의 양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1.47%로 저조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92년도 신발산업의 수출전망을 보면 미국의 경기회복과 구주공동체에 대한 고가품위주의 수출로 지난 해보다 경기가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경쟁국과의 수출가격 비교

단위 : 달러/足

	1989	1990	1991.7월
한 국	10.3	12.4	14.0
경 쟁 국	3-7	4-8	4-8
가 격 차	3-7	4-9	6-10

자료 : 상공부.

(3) 전자산업

- 조립가공기술은 선진국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매우 취약한 제품설계 기술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및 수출산업화와 신제품개발력의 제고가 시급한 실정인 바, 부품·소재의 자급률은 1990년 현재 67.5%, 소재, 부품중 수입분의 비중은 57.0%, 공장자동화율은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내 전자산업의 특허출원 및 등록추이

단위 : 건

	1987	1988	1989	1990
특 허 출 원	6,332	8,002	9,486	10,853
특 허 등 록	469	617	1,104	3,407

자료 : 특허청

전자산업의 부품 소재 자급율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1987	1988	1989	1990
수 요(A)	11,323	15,161	18,134	19,056
생 산(B)	6,754	9,747	12,291	12,868
자급율(B/A)	59.6	64.3	67.8	67.5

자료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한·일간 전자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 달러

	1987	1988	1989	1990
한 국(A)	11,323	15,946	21,035	22,038
(증 가 율)	(24.7)	(40.8)	(31.9)	(4.8)
일 본(B)	69,877	90,074	94,165	--
(증 가 율)	(22.4)	(28.9)	(4.5)	--
A/B(%)	16.2	17.7	22.3	--

자료 : 산업은행, 「재무분석」, 각년호
일본은행 조사통계국, 「주요기업경영분석」, 1990.

(4) 철강산업

-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보면 생산성결정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연속주조비율은 1990년 현재 선진국의 96.1%이나 단위시간당 조강생산량으로 측정한 생산성은 일본의 약 30%수준에 불과하여 열악하다.
- 92년 철강산업은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장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산업의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력 변화추이

	단위	1985	1987	1989	1990	일 본	
						1987	1989
연속주조비율	%	63.3	83.5	94.1	96.1	93.3	93.5
특수철강 재생산비중	%	5.8	5.8	6.2	7.0	15.6	15.3
매출액대비 연구 개발비	%	0.37	0.36	0.26	1.01	2.40	2.21
연구원 1인당 연구비	백만원	35	37	56	126	253	221
종업원 만명당 연구원수	명	104	106	73	162	197	232

자료 : 한국철강협회,「철강통계연보」각년호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각년호
일본과학기술청, 「과학기술요람」, 각년호

(5) 자동차산업

- 92년의 자동차산업은 지난 해의 15%성장과 비슷한 13~17%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시장상황의 호전과 중동시장등에 대한 지속적 시장다변화 노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6) 조선산업

- 세계적인 조선시황의 회복과 선가인상으로 91년 사상최대의 수주, 경상이익 3,000억원 이상의 흑자신기록 등을 수립하여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던 조선업은 금년에도 향후 2년치의 일감을 확보해 놓고 있는 등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92년도 매출을 지난 해보다 20~30%씩 늘려잡고 있는데, 이처럼 양호한 호황추세는 최소한 2000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박산업의 기술수준 비교(1990년말 현재)

	일 본	한 국	중 국
설 계 기 술	100	71	43
생 산 기 술	100	75	44
관 리 기 술	100	68	40

자료 : 상공부자료에 의거 작성

(7) 일반기계산업

-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모방 내지 내재화단계인데 설계, 정밀가공 등의 주요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5~10년 낙후되어 있다.
- 91년 16%의 성장을 보였던 것이 금년에는 다소 낮은 14.5%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은 지난 해보다 높은 15%정도가 예상된다.

(8) 석유화학산업

- 공급과잉과 수출시장의 불투명으로 92년도 경기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4. 기업경영 지표 동향

1) 기업의 신장세를 파악할 수 있는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도에 이어 91년(상반기)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즉, 91년 상반기 제조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은 19.2%로 90년 상반기의 15.5%에 비해 큰 폭으로 신장되어 경제위기설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2) 그러나 매출신장세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음. 즉, 91년 상반기중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9%로 90년수준인 7.1%을 약간 하회하였고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2.4%로 전년의 2.8%보다 다소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만성적인 타인자본의존에 의한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높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외수지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출액 증가율(제조업)

(단위 : %)

구 분	89년	90년		91년 상반기
		연 간	상 반 기	
전 체	7.0	18.6	15.5	19.2
대 기 업	8.6	19.6	17.4	20.4
중소기업	2.0	16.2	8.6	15.4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구조의 취약성과 높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영업외수지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조업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 분	90년 상반기	91년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률	7.[illegible]	6.9
매출액경상이익률	2.8	2.4
금융비용 부담률	5.3	5.6
차입금평균이자율	12.9	13.2
차입금 의존도	41.7	43.3

- 다시말해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구조가 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여 경상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저조한 것임으 드러난다. 제조업의 경우 장기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졌으며(28.2%→25.9%). 단기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도 하락(103.7%→99.4%%) 하였다. 또한 자본의 고정화 정도를 나타나는 고정비율도 높아졌으며(192.1%→206.3%). 부채비율도 상승(254.3%→286.3%)함으로써 재무구조 관련지표가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 이를 외국과 비교하여 보면 미국, 일본, 대만 등에 비해 자기 자본비율이 미국의 40.5%(89년), 일본의 30.3%(89년), 대만의 58.3%(89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유동비율과 고정비율도 미국, 일본, 대만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이는 우리나라기업의 천민성과 국제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드러내주는 한 지표이다.

제조업 재무구조 국제비교

(단위 : %)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대 만
	1989	1990	1989	1989	1989
자기자본비율	28.2	25.9	40.5	30.3	58.3
유 동 비 율	103.7	99.4	147.3	133.6	133.9
고 정 비 율	192.1	206.3	153.8	127.2	80.0
부 채 비 율	254.3	286.3	146.7	230.4	71.4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명목 GNP성장률과 토지가격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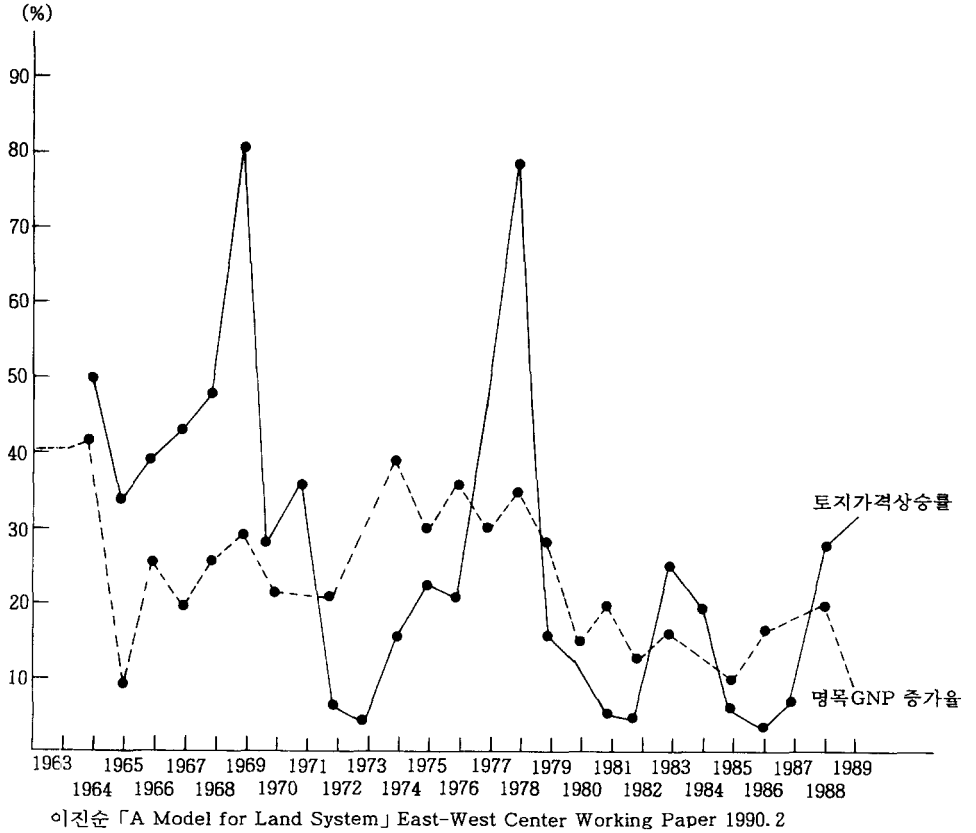

이진순 「A Model for Land System」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 1990. 2

Ⅱ. 노동동향

1. 노동자의 생활동향

– 87-90년까지의 임금인상이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당히 큰 폭의 임금인상은 과연 노동자의 실질생활의 향상 및 소득분배상의 위치의 호전을 가능하게 하였는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임금과 최저생계비

– 노총 최저생계비를 보면서 "최저"생계비의 "최저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것은 임금과 노동력 그리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임금과 노총 최저생계비를 비교하여 본 후, 노총 최저생계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기준을 바꾸어서 다시말해 노총 최저생계비를 기준하여 "노총의 최저생계비는 우리가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 재생산비용으로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공급가격」인데, 현실적으로 임금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의 수급구조에 의해 조정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노사간의 교섭력에 의해 결정된다(=노동력 상품의 「시장가격」). 따라서 임금의 적정선을 알아보는 기준, 인간다운 생활의 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계비를 상정한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임금이 낮으므로 노총의 최저생계비라 높다는 생각은 잘못임이 드러난다.

최저생계비는 임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이다.

– 임금은 정가표(=공급가격표=생산비용)인 최저생계비를 상회할 수도 하회할 수도 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노동력의 수급구조와 교섭력이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자신의 임금이 적정선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 연후에 임금과 생계비와 격차가 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는지, 그 원인은 수급구조의 불균형 때문인지 아니면 교섭력이 취약해서인지를 따져보고 나아가 공급가격에도 미찌게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력의 고갈이 오는 현상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를 규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이제 이상의 사실을 기초로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생계비의 어느 수준인가 따라서 저임금인가, 적정임금인가 아니면 고임금인가를 따져보자.

1991년 상반기 현재 전산업 노동자의 기본급은 378,863원, 통상임금은 494,532원, 고정급여는 619,897원이고 임금총액은 692,622원이다. 따라서,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113,862

원을 기준으로 하면 임금종류별로 각각 최저생계비의 34.0%, 44.4%, 55.7%, 62.2%에 불과하다. 즉, 기본급이나 통상임금만으로는 최저생계비의 30~40%밖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잔업, 철야를 하든가, 노동조합활동을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가족중의 다른 사람의 수입으로 살아가든가 그것도 아니면 부모님의 무상보조나 궁핍한 생활 또는 이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생계비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다.

-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자기자신의 임금으로 충당해야할 최저생계비는 애초의 최저생계비 1,113,862원의 71.4%에 해당하는 795,298원이므로 잔업, 철야해보아도 임금은 생계비의 87.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내핍생활을 통해 이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임금인상투쟁을 통해 확보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노동자의 임금이 저임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저임금 상태가 십 수년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온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고갈시키면서 기업주의 배를 불려주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나타난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가 노동자의 평균연령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연령별 생계비를 추정한 후에 비교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2) 임금과 노동생산성

- 지난 20-30년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평균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 기회가 대폭 증가하여 실업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실질임금과 노동자가구소득고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해왔음은 한국공업화의 긍정적 성과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 떠오르는 의문은 과연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다른 계급이나 집단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노동자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임금, 물가, 노동생산성의 추이를 요약한 다음 표를 보자. 다음 표는 1970년에서 1989년 사이 우리나라 비농업부문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비자물가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괄목할만큼 상승하였고,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실질임금으로 따지더라도 1989년의 실질임금은 1970년의 4배에 달하여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생활수준의 상승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실질임금의 추이를 (물적)노동생산성의 추이와 비교할때, 전자가 후자에 비해 훨씬 뒤떨어짐으로써 이 기간 동안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의 소득분배의 몫이 상대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화해왔음을 추측케한다.

임금, 물가와 노동생산성의 추이(비농업부문 상용근로자)

연도	명목임금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실질임금	(지수)	물적노동 생산성지수	부가가치
A : 수준(원, 지수)							
1970	17381	(100)	(100)	17831	(100)	(100)	
1980	176058	(987)	(451)	39063	(219)	(260)	(59.8)
1989	541000	(3034)	(762)	70997	(398)	(641)	(156.5)
B : 성장율(%)							
1970-80	25.7	16.2	8.2	10.0			
1980-89	13.3	6.0	6.9	10.5	11.1		
1970-89	19.7	11.3	7.5	10.3			

주 : 노동생산성지수의 계산은 제조업, 광업, 전기업만 포함됨.
부가가치노동생산성지수는 1985년(=100)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연도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연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동향분석(1990년 4/4분기)

- 특히 1980년대에 와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80-89년사이에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0.5% 상승해왔으나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6.9%에 그쳤다. 이것은 1970년대에 비해 1980년대에 오면 소득분배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적어도 노동자의 경우에는 상대적 분배가 악화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80년대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물적노동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므로 전자를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우리의 결론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생산성에도 밑도는 임금인상으로 노사간의 분배관계와 경제적 힘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지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3) 임금패리티로 본 노동자 지위

- 이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지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데 가끔 사용되는 지표로 상대적 소득분배율의 개념이 있다. 이것은 국민소득을 노동에 돌아가는 몫과 자본에 돌아가는 몫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노동의 상대적 분배율은 아직 선진자본주의국에 비해 상당히 낮지만 지난 20여년간 상승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배무기,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분배율체계」, 『경제논집』, 서울대 경제 연구소, 1984). 그러나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노동자의 소득분배상의 상대적 지위를 유추하려면 약간의 주의를 요한다. 즉, 상대적 분배율의 상승이 곧 노동자들의 상대적 지위의 개선을 직접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노동분배율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서 높아질 수도 있지만 단순히 전체 취업자 중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 의해서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노동자들의 지위개선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노동자들의 지위개선으로 볼 수 있겠으나 후자는 다만 취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전자와 후자로 분해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상대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그런 계산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1970-85년의 값은 이중희, 「상대적 소득분배분의 이론과 실제」에서 인용한 것이며, 그 이후의 연도는 조우현 교수의 것이다.

- 다음 표의 칼럼 (1)은 요소비용으로 측정한 국내소득 중 피용자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노동소득분배율에 해당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분명히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노동자의 상대적 소득의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칼럼(2)에서 보듯이 같은 기간 동안 취업자 중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수의 증가를 감안했을 때 노동자 상대소득의 지표는 칼럼(3)에 요약되어 있듯이 추세적 상승과는 거리가 멀다. 칼럼(3)의 임금패리티의 개념은 1인당임금대2인당국내소득의 비율로서 국민경제 전체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83년 이후 1987년까지

임금패리티의 변동

연도	노동소득분배율 (1)	노동자/취업자 (2)	임금패리티 (3)=(1)/(2)
1970	39.5	38.9	101.5
1975	39.6	40.6	97.5
1980	50.1	47.3	105.9
1981	49.2	47.2	104.2
1982	50.8	47.6	106.7
1983	52.8	49.5	106.7
1984	52.1	52.9	98.5
1985	50.3	54.2	93.0
1986	49.4	54.4	90.7
1987	50.8	56.2	90.3
1988	53.8	57.0	94.5
1989	55.6	59.1	94.1

주 : (1)=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내소득
(2)=피용자수/총취업자수
(3)=피용자 1인당소득/1인당 요소비용국내소득=(1)/(2)
자료 : 이중희, 「상대적 소득분배분의 이론과 실제」, 매월경제신문사, 1988.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1990.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1989

이 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그 하락속도가 눈에 띌 정도로 빠르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1987년의 90.3이란 값은 1970년 이후 최저의 값으로서 기억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점은 앞서 본 다음 표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1980년대에 들어와 노동자들의 상대적 궁립화를 시사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 임금패리티는 1987년에 최저치를 보인 뒤 약간은 회복의 징후가 보이지만, 1989년 현재 94.1로서 1983년에 비교한다면 여전히 약 10% 정도 낮은 상태에 있다. 1987년 이후 급속한 임금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89년까지는 노동자들의 상대적 소득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4) 소비지출의 비교

노동자와 비노동자 가계의 상대적 소비지출수준

	상대적 소비지출수준			엥겔계수		
연도	봉급자	노무자	비노동자	봉급자	노무자	비노동자
1963	128.5	64.4	100	51.0	60.1	53.1
1965	120.1	67.0	100	52.7	63.4	56.2
1970	104.5	68.8	100	38.5	44.0	40.3
1975	116.4	73.3	100	40.5	48.9	42.9
1980	124.8	76.2	100	32.7	38.6	36.2
1981	132.0	79.1	100	32.5	38.8	37.0
1982	118.8	74.4	100	37.6	42.9	40.1
1983	119.3	75.4	100	35.9	41.2	39.1
1984	118.6	74.4	100	34.9	40.3	37.6
1985	119.7	72.7	100	33.8	39.7	37.0
1986	115.9	73.2	100	32.8	38.2	36.1
1987	112.6	73.7	100	32.7	36.6	34.6
1988	113.6	71.8	100	31.8	36.3	34.3
1989	110.2	70.3	100	30.2	34.5	31.1

자료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각연도.

- 위 표를 보면 비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수준을 기준(=100)으로 하였을때 노동자가구(봉급자와 노무자)의 상대적 소비지출수준이 1963년에서 1989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해왔는지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소비지출수준은

항상 봉급자/비노동자/노무자의 순서이며, 장기적으로 이들 사이의 소비격차는 축소하고 있다. 둘째, 그러나 이들 사이의 소비격차는 일률적으로 축소해온 것이 아니고 8-10년 정도를 주기로 하는 상하운동을 거치고 있다. 1963년에 비해 1970년대초는 봉급자와 노무자 양쪽 다 소비의 상대적 하락이 있으며, 1981년은 거꾸로 노동자가구의 소비증가의 피크이다. 그러나 1981년 이후의 시기는 계속해서 노동자가구(봉급근로자와 노무자 함께)의 상대적 소비가 축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노동자의 상대적 궁핍화 여부를 보여주는 추가적 자료로서 우리는 노동자 가구와 노동자 이외가구의 소비수준을 비교해보기로 하자. 다음 표는 경제기획원에서 1963년 이래 매년 발간하고 있는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노동자가구와 노동자 이외 가구의 소비수준과 엥겔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노동자는 다시 봉급자 가구와 노무자 가구로 나뉘어 있다.

1981년 이후 노동자가구의 상대적 소비수준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정부와 기업의 주장과는 달리 1980년대는 노동자궁핍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 이런 사실은 앞의 논의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1980년대가 노동자의 상대적 지위하락의 시기였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1987년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노동자가구의 상대적 소비가 비노동자가구에 비해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노동자의 상대적 지위하락을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 한편 엥겔계수(소비지출 중 식품비의 비중)를 보면 1963-1989년의 4반세기 동안꾸준한 하락경향이 나타남으로써 전반적 생활수준의 상승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엥겔계수는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50%가 넘으면 빈곤층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도시의 노동자/비노동자 할 것 없이 50%를 초과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말에 오면 30%대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급자, 노무자, 비노동자의 구별없이 모든 계급/계층에서 엥겔계수의 하락이 나타난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축복할만한 현상인지어떤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

엥겔계수의 이상적 하락을 열악한 주거조건과 과다한 교육비부담을 비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왜냐하면 같은 기간 동안 주거비, 교육비 등의 부담이 늘어났고, 엥겔계수의 하락은 이런 반대경향을 상쇄하기 위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늘어나는 주거비와 교육비부담을 감당하기 위하여 식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주거비 상승과 노동자의 실질생활

- 우리나라의 소비지출분포에서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계층, 즉 소비지출의 최빈값계층은 주로 생산직 노동자로 구성된다. 가구주 1인이 취업한 4인가구 소비지출의 최빈값계층의 주된 소비지출 항목은 다음표가 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식품비, 주거비와 교육교양비이며 이들지출은 1989년 현재 가계지출의 61.1%를 점하고 있다. 주거비와 교육교양비 항목만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생활에 대해 보다 미시적 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행해보자.
-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계층, 즉 가구주 1인 취업 4인가구의 소비지출의 최빈값계층에 있어서 1989년 주거비는 97,334원으로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1%였다. 1989년의 주거비는 88년 대비하여 26.7%증가하여 주거비가 폭등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1인취업 4인가구의 소비지출(4인가구) (매년 3월 기준)

년 도	86	87	88	89	전년대비 증가율(%)		
					87	88	89
소비지출	268,268	305,667	346,348	440,413	13.9	13.3	27.2
식 료 품	87,108	92,870	94,972	125,850	6.6	2.2	32.5
주 거	63,034	68,433	76,818	97,334	8.6	12.3	26.7
광열수도	20,132	22,853	18,846	22,542	11.4	-17.5	19.6
가구집기	8,938	10,373	14,075	15,284	16.1	35.6	8.6
피복신발	14,385	18,362	19,734	26,815	30.0	7.0	36.0
보건의료	12,464	17,689	22,120	26,657	41.6	24.8	20.4
교육교양	18,769	26,930	36,314	45,814	43.9	34.9	26.1
교육통신	13,479	14,432	16,961	20,157	6.7	18.0	18.8
기 타	23,770	33,725	46,503	59,956	41.5	38.0	28.8

자료 : 장현준, 「한국도시부문의 표준생계비」, KDI, 1987
조우현, 「87, 88표준생계비 산정과 몇가지 문제점」, 경제학연구 1989
박영범, 조우현, 「표준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89.
박영범, 「1991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산정에 관한 연구」 1990, 한국동연구원.

- 주거비 폭등이 도시노동자가 주택환경을 개선한 결과인가(예컨대 주거공간의 확대의 결과인가) 아니면 주거환경은 종전과 동일한데 집값, 전세값 상승의 결과인가 아니면 집값, 전세값 상승의 결과로 주거비 상승과 더불어 주거환경은 더 열악하게 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에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말까지의 도시가구의 자가보유율이 나타나 있다. 여기서 몇가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노동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도시가구는 지난 20여년간 계속해서 주택부족으로 시달려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는 악화해왔다. 1960년대만 해도 자가보유비율이 2/3 정도가 되었으나 지금은 40% 정도로 떨어져 버렸다. 이 점에서 노동자가구의 상태는 비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도시노동자가구의 주거환경악화는 노동자의 상대적 지위악화는 물론 절대적 궁핍화를 보여준다.

- 1960년대 중반에는 노동자와 비노동자 사이에 주택보유비율에서 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1980년에 오면 약 10% 포인트 정도의 격차가 나타난다. 1980년대 이후에는 비노동자가구의 주택보유상황이 더 이상 이 통계에 파악되지 않으나 통계가 있는 1980년까지 노동자와 비노동자는 함께 자가보유비율이 떨어지면서도 노동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단, 노동자들의 자가보유비율은 1986년 이후에는 완만하나마

가구주 1인 취업 4인가구에 있어서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

	86	87	88	89
식 품 비	32.5	30.4	27.4	28.6
주 거 비	23.5	22.4	22.2	22.1
광열/수도	7.5	7.5	5.4	5.1
가구/집기	3.3	3.4	4.1	6.1
피복/신발	5.4	6.0	5.7	6.1
보건/의료	4.6	5.8	6.4	6.1
교육/교양	7.0	8.8	10.5	10.4
교통/통신	5.0	4.7	4.9	4.6
기 타	8.9	11.0	13.4	13.6
소비지출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위 표와 동일.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앞의 몇가지 증거와 더불어 노동자들의 상대적 지위 악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무주택가구의 높은 전세금 또는 월세 부담을 생각할 때 이 점은 단순한 상대적 지위 악화가 아니라 절대적 궁립화의 지표로 간주될 수도 있다.

노동자 비노동자 가구의 자가보유비율(%)

연도	노동자	비노동자	연도	노동자	비노동자
1965	63.7	65.3	1977	42.0	50.2
1966	63.8	68.7	1978	40.5	50.3
1967	67.1	73.6	1979	40.7	48.4
1968	66.0	74.1	1980	37.9	47.1
1969	54.4	58.3	1982	36.7	-
1970	54.4	58.4	1983	38.6	-
1971	51.3	59.0	1984	38.1	-
1972	50.7	57.6	1985	36.6	-
1973	46.8	53.6	1986	38.0	-
1974	46.1	55.5	1987	38.1	-
1975	49.7	54.9	1988	39.0	-
1976	46.4	56.0	1989	40.0	-

- 노동자가구의 자가보유비율이 1985년 36.6%를 최하점으로 하여 그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0년에 이르면 1985년의 자가 보유비율로 되돌아가 노동자가구의 주택사정은 대단히 열악해 졌다는 자료가 최근의 조사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우현, 이정우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990년 10월 현재 6대도시에서 2인가구이상 1,602 노동자가구중에서 자가보유비율은 36.6%로 나타났다. 경제시획원은 2인이상 2,790 노동자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전국 50개 도시를 조사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총의 조사결과와 경제기획원의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인 판단자료로는 이용될 수 있다.
- 노동자가구의 자가보유비율이 1990년에 낮아졌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1988-89년간의 주거비폭등은 1990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조우현, 이성우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단신노동자를 포함한 1,822가구중에서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32.5%, 무주택자는 67.5%였다. 무주택자중 2/3가 전세입자로 나타나 전세가 노동자의 전형적인 주택점유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1990년 10월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1,126만원, 2년전에는 평균 786만원으로 2년간 54.0% 상승하였다. 이를 연률로 환산하면 연 평균 24.1%가 되는 셈이다. 다음 표에서 소비지출의 최빈값계층의 노동자는 전세거주자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되므로 다음 표에 나타난 1988-89년간 주거비 상승률 26.7%는 노총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한국은행의 1990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서울지역 상승률은 1989년에 23.7%, 1990년은 21.9%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는 전국 전세값 상승률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지역 전세값 상승률에 관한 자료는 노총의 조사결과와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1990년에도 1989년에 이어

전세값이 크게 상승되었다고 판단된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임대제도이므로 전세값 상승률는 전세평가액(귀속임대료)의 형태로 동률의 주거비 상승을 야기시키게 된다. 따라서 1990년에도 소비지출의 최빈값계층에서는 23-24%의 주거비가 상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전세값상승은 귀속임대표를 증가시킨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전세입자는 상승한 전세보증금을 일시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된다는 측면은 정부통계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다. 조우현, 이정우 교수의 조사에서는 전세보증금중 자신이 돈의비중은 1990년 현재 79.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20.7%는 차입금의 비중이 되는 셈이다. 평균 전세보증금이 1,226만원이므로 972만원은 자신의 돈이고 차입한 금액 254만원은 지난 2년간 전세보증금 상승액 평균 43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지난 2년간 전세사는 사람의 경우 전세금 상승으로 대부분 부채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전세금 상승은 플로우(flow)측면에서 귀속임대료를 증대시켜 실질임금을 낮추어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스톡(stock)측면에서 자산보유자에게로 부를 이전시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 전세금상승이 노동소득자로부터 자산보유자에게로 부를 이전시킨 정도를 추산해보자. 전산업 평균임금은 1987년 386.5천원, 1988년 446.4천원, 1989년 540.6천원, 1990년 9월까지는 623.0천원으로 1990년 9월까지 명목임금은 1987년 명목임금보다 1.61배 올랐다. 이 때 근로자가 전년도 임금수준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당해년도의 임금인상분을 전액 저축한다고 가정하자. 조우현, 이정우교수의 조사시점 1990년 10월기준으로 지난 2년간 즉 1988년 10월에서 1990년 9월까지 저축가능금액은 1988년은 월 59.8천원, 3개월분 179.4천원, 1989년에는 월94.2천원, 12개월분 1,130.4천원, 1990년 9개월간은 월 82.4천원, 9개월분 741.6천원, 합계 2,051.4천원이 된다.
- 이때 지난2년간 전세보증금 상승액 4,300천원에서 지난 2년반 동안 임금상승분을 전액 저축했을 때의 저축 가능금액 2,051.4천원을 빼면 2,248.6천원이 된다. 이것은 전세비 상승으로 인한 부채액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전세유지를 의한 부채액 2,540천원과 대단히 근접하는 수치이다. 조우현, 이정우교수의 조사에서 나타난 실증결과를 놓고 볼 때, 1987년 이후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난 2년간의 임금인상분 전액이 지난 2년간 전세금 상승액의 절반밖에 못미치고 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임금인상분 전액을 저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자산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점, 노동자는 전세유지 자체를 위한 부채액까지 짊어지게 되어 향후 몇년간의 임금인상분 전액이 계속 자산소유자에게 이전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산 불평등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여졌다. 그리하여 노동자의 실질 생활은 1987년에 비해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도 더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 뿐만 아니라 귀속임대료가 상승하고 전세보증금 상승액의 일부를 차입금에 의존할 때, 전세입자는 주거공간을 축소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전세사는 주거공간을 줄여 살게 됨으로써 전제입자의 주거상황은 더 열악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우현, 이정우교수의 조사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실증덕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자가 주택 소유자가 사용하는 건평(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23.7평, 사용하는 방수는 3개인데 비해 전세입자가 사용하는 건평은 13.4평, 방수는 1.8개인 점으로 미루어 전세입자의 경우 희망하는 방수와 평수를 물었을 때, 각각 29.0평, 방 3개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현실의 주거공간은 지극히 협소하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주거비폭등은 집값, 전세값 폭등의 결과이며 동시에 주거상황은 더 열악화되고 있단은 점, 그리고 가장 빈번히 관찰되는 노동자계층의 노동자계층의 소득분배상 및 자산분배상의 위치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6) 교육비 지출추이의 문제점

- 1인취업 4인가구 소비지출에서 최빈값계층의 교육비 증가율은 87년 43.9%, 88년34.9%, 89년 26.1%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전년대비 증가율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왜교육비가 크게 증가하였는가? 1인취업 4인가구의 항목별 평균소비지출에 대비한 표준적가구의 항목별 소비지출을 비교하여 보았다(다음 표 참조). 최빈값계층의 교육/교양비용의 비율은 1986년에는 0.245밖에 되지 않는다. 1인취업 4인가구의 소비지출총액에 대비한 가구수 1인취업 4인가구중 최빈값계층의 소비지출 총액의 비율어은 1986에 0.612였다. 원래 평균값에 대비한 최빈값의 비율이 낮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교육/교양에서는 지출의 불평등도는 세대간 소득 불평등(intergenerational income inequality)을 확대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지난친 교육/교양비용의 불평등도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1987년이후 대폭적인 임금상승국면에서 있었던것처럼 보인다.

주거비폭등으로 노동자가구는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비 지출의 포기까지도 강요당하고 있다.

- 가구수 1인취업 4인가구중 최빈값계층의 교육, 교양비의 지출은 크게 상승한 결과 1인취업 4인가구 평균값에 대비한 가구주 1인취업 4인가구중 최빈값계층의 교육/교양비의 비율이 1986년 0.425에서 1987년 0.478, 1988년 0.577로 교육/교양 지출의 불평등도가 교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녀들의 장래생활에 대한 노동자 가구주의 1인취업 4인가구중 최빈값 계층의 교육/교양비는 1989년 26.1% 증가하였으나 1인취업 4인가구 평균에 대비한 비율이 0.501로 떨어졌고 1990년에는 가구주 1인취업 4인가구중 최빈값 계층의 교육/교양

비는 전년대비 12.6% 증가할 것이 예측되어 1987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87년-89년간 가구주 1인취업 4인가구중 최빈값계층의 교육비증가율과 주거비증가율을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다.

	86	87	88	89
A. 1인취업 4인가구 평균 소비지출	483,767	477,810	563,612	703,651
B. 최빈값계층의 소비지출	268,268	305,667	346,348	440,413
(B/A)×100	61.2%	63.9%	61.4%	62.6%
식품비 A	114,902	117,128	141,440	165,233
B	87,108	92,870	94,972	125,850
(B/A)×100	75.8	79.3	67.1	76.2
주거비 A	104,762	110,385	120,037	149,723
B	63,034	68,433	76,818	97,334
(B/A)×100	60.2	62.0	64.0	65.0
교육/교양A	44,169	56,291	62,969	91,435
B	18,769	26,930	36,314	45,814
(B/A)×100	42.5	47.8	57.7	50.1
기타 A	54,738	59,613	75,411	96,185
B	23,770	33,725	46,503	59,956
(B/A)×100	43.4	56.6	61.7	62.3

자료 : 앞 표와 동일

1인취업 4인가구 평균소비지출과 각주 1인취업 4인가구중
최빈값계층의 소비지출 비교

	86	87	88	89
소비지출	438,767	477,810	563,612	703,651
식 료 품	114,902	119,128	141,440	165,233
주 거	104,762	110,385	120,037	149,723
광열/수도	26,658	28,467	27,648	29,669
가구/집기	19,616	23,694	22,898	34,617
피복/신발	5,466	29,367	31,482	44,454
보건/의료	8,600	29,632	35,371	51,451
교육/교양	44,169	56,291	62,969	91,435
교통/통신	19,853	21,234	26,352	40,881
기 타	54,738	59,613	75,411	96,185

교육비증가율과 주거비증가율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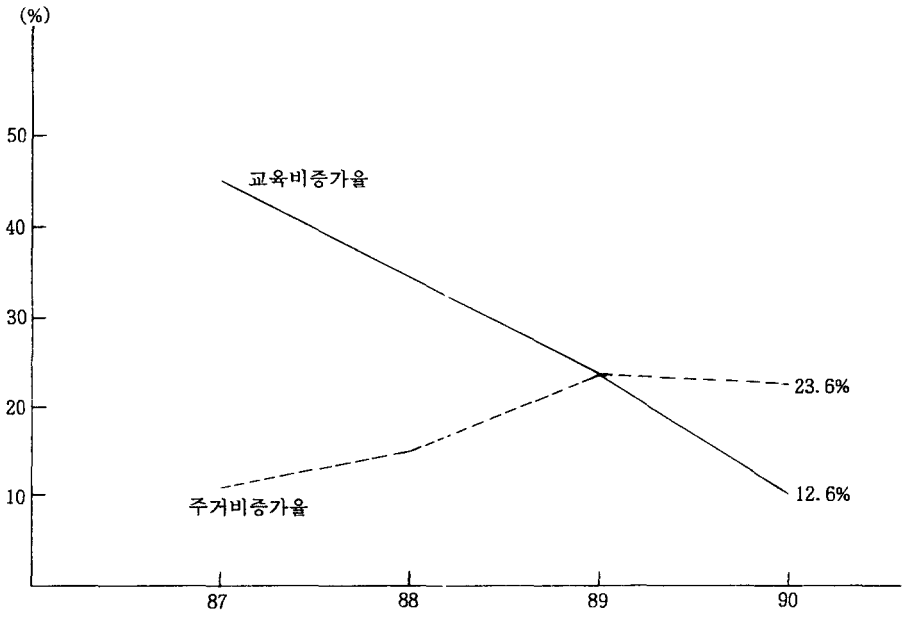

위 그림이 함축하는 바는 가구주 1인취업 4인가구중 최빈값계층에 있어서는 주거비 증가율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없을 때 임금상승은 교육비 증가를 낳고 주거비증가율이 대단히 높아 거비 부담이 클 때는 교육비 증가가 크게 감소된다는 관계즉 주거비와 교육비간의 상충관계를 시사해 주고 있다. 즉 주거비는 현실생활의 지표이나 교육/교양비는 자녀들의 장래생활의 지표라고 할 때, 주거비가 낮을 때는 장래생활에 관심을 가지나 주거비가 높아질 때는 자녀들의 장래생활을 희생하려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2-3년간의 주거비폭등이 기왕에 심각했던 교육/교양비지출의 불평등도를 교정하려는 노동자가구의 노력을 수포화시키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장에서 고임금→고상품가격(또는 인플레이션)→국제경쟁력 약화→수출부진→경기침체 및 고용사정 악화 라는 경제논리가 부정확하며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동시에 1987년에는 10.2%, 1988년에는 15.2%, 1989년에는 21.3%, 1990년 18.8%가 상승한 대폭적인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실질생활은 향상되기는 커녕 더 열악화되었음을, 그리하여 노동자의 소득분배상의 위치 그리고 자산분배상의 위치 또한 저하되었음을 논의하였다.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자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현재임금의 지배력 즉 실질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둘째는 장래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실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물가안정이 필요하며 특히 노동자주택 및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경제제도적 차원의 해결이 요구된다. 산업평화와 기업내부의 노사관계안정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진보에 필수적이라고 할 때, 물가, 주택, 교육이라는 기업외적 문제는 기업내의 노사분규와 기업차원의 노사관계 불안정을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노동의 생애임금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전 생애에 거친 임금(life-time income)을 안정화시키는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며 기업차원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 정부가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를 진실인 양 여론조작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국민경제의 문제점을 솔직히 밝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 임금인상에 관한 노농자의 자제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2. 노동운동동향

(1) 들어가는말

'91임투에서 〈한자리수〉 인상선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인상 억제선이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

년초부터 떠들썩했던 페만사태로 작년말 유가인상을 야기키켰고 페만사태에 대한 여론은 1.2차 석유파동과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시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으며 일면에는 1.2차 석유파동과는 성격이 틀려 물량이 충분하며 그렇게 걱정할 것이 못된다는 양분간의 논란이 되고 사회적 관심은 물론 국민전체의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을때 국내경제 단체및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가장 관건인 임투의 열기를 저기시키기 위함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무기들을 상품으로 내놓았다.

그것들은 우리나라 경제위기설과 공공요금 인상, 고임금으로 인한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로 페만사태가 적절한 이유중에 하나로 부각되어 임금인상 통제 방법으로 인용한 것이며 또한 선도기업 3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기타결 및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하도록 정부에서는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렇듯 해마다 임투때만 때면 경제에 어려움 등과 여러 요인들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수단으로서 임금인상억제정책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관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예년에 하지않던 홍보까지 동원한 바 있다.

경제기획원의 〈경제뉴스〉, 노동부의 〈노동뉴스〉, 〈노동 3권의 올바른 이해〉, 그밖에 〈국방뉴스〉등 한자리수를 향해 홍보매체를 이용, 여러가지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비쟁의 8개항에 대한 지침을 이용하여 기존의 법을 초월한 탄압을 가하며 가장 정상적이고도 기본적인 노동자의

기본권리 마저도 빼앗아간 것이다.

한편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은 어떠했는가?

87년이후 집행부가 90년에 들어서 80%이상이 교체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교섭석상에 서야만 했고, 여기에 요구방법, 교섭방법등의 노하우기 없어 준비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되었으며, 어느 집행부에서는 교체되면서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전수시키지 않아 새로운 집행부는 전무한 가운데 '91임투를 맞이자게 된것도 큰 문제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사용자는 그간 교섭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여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조와 사용자와의 노하우에 대한 격차는 매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정부나 경제단체의 한자리수 임금인상 노동조합의 노하우의 부족, 반대로 개별사용자들의 실력들이 '91임투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었던것이다. 아뭏든 '91임투는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는데 임투가 시작되는 싯점부터 서로가 눈치를 보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예외로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도 인력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워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임금을 두자리수 이상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조기타결되는 지역이 다수 있었다. 여기에 힘입어 전조직이 두자리수 인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계속되어지는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상승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말하는 한자리수 임금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 한자리수 임금논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정부도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줄 뻔히 알면서도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이 무리한 지침때문에 각 사업장의 임금교섭은 계속 지연 되었고 겉모양만 한자리수를 지키기 위해 수당신설 등으로 임금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어떻든 '91년 임투는 두자리수로 끝나고 말있는데 사용자측에서 공감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진정 두자리수 임금인상으로 끝을 낼 수 있는가를 의심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의 허구성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려면 어느정도나마 부정적 시선을 씻어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함에두 불구하고 광역선거 이후 노동쟁의 사업장에 대한 경찰투입과 개입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국이 물리력을 앞세워 노동쟁의를 강압적으로 해결하련은 의도가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경찰이 노사협상에 까지도 난입해 노조교섭 대표를 무더기로 연행, 구속시키는 등 더욱 노동탄압이 노골화 되고있어 6월 이후 "노동탄압"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91년 임투는 노동부, 사용자 및 단체 모두는 제각기 제 주장을 펼치면서 달려왔다. 그로인해 다친 사람은 노동자 뿐이었고 한많은 희생양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그 어느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 정부와 사용자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중단하고 각자의 맡은바 처소에서

마음을 비우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지 않는다면 '92년 임투도 역시 '91년 임투와 전혀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2) '91임금교섭 현황

초반에는 교섭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게 진행 되다가 6월말을 고비로 7월초까지 쟁의발생 또는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91년 임투를 끝냈으며 예년과 다를바 없이 공권력개입 등으로 구속자, 해고자가 속출하여 보는이의 가슴만 아프게 한다.

특히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가거나 쟁의발생신고후 냉각기간에 끝을 내는 조합과 그 지역의 타결수준을 보아 교섭을 마치는 조합등이 다수를 이루었다. 지난 6월 10일을 기준으로 "임투중간평가"를 한적이 있다. 그 현황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부산·인천 등이 빠른 진전을 보였으며 가장늦게 진행된 곳은 창원지역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비철금속 분과가 빠르고 자동차, 철강분과가 母회사의 영향을 받아 임투가 늦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표 1〉 지역별 임투현황

기본급 기준

구분 / 지역	보고/타결 조직수	요구금액	요구율 (%)	타결금액	타결율 (%)
부 산	96	93,390	27.07	66,248	19.20
서 울	28	76,367	24.41	56,248	17.98
울 산	12	99,523	30.02	72,086	21.74
인 천	40	73,981	23.64	55,763	17.82
전남.북	41	93,804	30.78	60,241	19.77
경 남	82	85,595	24.55	48,848	14.01
경 북	71	89,494	27.33	85,267	17.79
경 기	103	83,282	26.16	59,758	18.77
충 남	16	75,883	27.47	58,541	21.19
충 북	8	79,636	27.49	53,500	18.46
구 미	12	76,501	25.46	42,808	14.25
평 균	509	86,097	26.45	59,633	18.32

〈표 2〉 업종별 임투현황

기본급 기준

구분 / 지역	보고/타결 조직수	요구금액	요구율 (%)	타결금액	타결율 (%)
기계금속	179	89,410	26.87	61,478	18.48
전기전자	93	75,718	26.32	49,547	17.22
자동차	108	85,792	27.71	60,871	19.66
철강	62	88,186	24.77	62,465	17.55
비철	34	80,380	25.18	55,646	17.43
조선	17	101,397	27.38	80,975	21.19
기타	16	78,142	27.56	57,665	20.33
평균	509	85,435	26.62	59,431	18.32

〈표 3〉 규모별 임투현황

기본급 기준

구분 / 지역	보고/타결 조직수	요구금액	요구율 (%)	타결금액	타결율 (%)
1,000명이상	34	77,587	22.78	45,603	13.38
1,000명이하 -100명이상	40	81,077	24.94	53,054	16.32
500명 이하 -100명이상	204	83,694	26.45	56,713	17.92
100명 이하	231	89,696	28.42	63,029	19.97
평균	509	85,804	26.98	58,550	18.32

(3) 임금교섭 타결수준 현황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물가인상과 주거비 상승으로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임금이기 때문에 '91임투의 요구에 있어서도 예년에 해 그다지 낮은 수준이 아닌 26.45%로 나타났다.

이 요구사항은 실제 기본급 인상률 평균 18.32%로 전년도 임금인상률 15.80%보다 2.52%높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금액으로는 요구평균 기본급 86,097원에 비해 타결평균 기본급은 59,633원으로 약 70% 요구금액에 대한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1〉,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조선업종이 19%-21%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표 2〉, 규모별 현황은 100명 이하 사업장이 19.77%를 쟁취하여 1,000명 이상 13.38%보다 6.39%가 높은 수준으로 쟁취한 것을 보년 〈표 3〉, 현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으로 인한 임금인상을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 절박함과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생활은 거의 같은 수준이므로 임금을 중소기업처럼 올려놓고 대내외적 임금인상 결과 발표사항을 틀리게 하여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해도 틀린말은 아닐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대기업일수록 주거비 보조 아니면 근로자주택 건설등 다양한 노동복지 증진 방안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면에는 파업에 바탕을 둔 교섭력으로 노조의 요구 관철이 용이 했으나 최근의 탄압국면과 선도사업장 선전에서 보이듯이 '91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여의치 못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4) '91임투의 이모저모

1) 노총 최저생계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1976년 한국노총이 가구별 최저이론 생계비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어 90년까지 사용하여 오다가 91년 생계비 모형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91년 임투가 늦어진 이유중에 하나라고 지적한다면 노총 최저생계비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요구율을 17.5%를 내므로서 혼란이 야기되는데 우선전노협 요구 %가 노총보다 높다는 이유와 산출근거에서 상여월할금을 인상액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각 단위사업장에서 임투요구 산정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불만요소로 표출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상여금 포함하여 사용하여도 현재받는 급여가 노총의 산출한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문제가 전혀 없는 사업장이 있는가하면 대규모 사업장이나 임금수준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노총 요구제시안을 이용하여 교섭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동교섭 실시

눈에 보이지않는 공동교섭이 '91임투에 있어서는 그 어느해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년초부터 정부로부터 임투에 대한 회유책이 예상되어 공동교섭아니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련에서는 공동교섭을 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적절한 수단과 예산이 필요로 하겠지만 예산상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공동대처하여 '91임투를 성공적으로 하자는 지침 하나만 내려보낸 노련도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공동교섭안을 만들어 노련으로 보고한 조직이 한군데 있었다. 그외에는 필요성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4-5개 사업장이 시기와 요구금액등을 맞추어 공동교섭에 임하는 곳도 있었다. 서로의 이념과 임금체계 결의기구가 전혀 틀리더라도 어차피 같은수준에 타결될 것이라면 공동으로 임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모르겠다.

사용자들은 업무 및 정보교류를 극히 친밀하게 유지·연대하고 있으나 각 노조들은 업무

정보교유를 하기는 커녕 폐쇄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각개 투쟁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상도 있고 말로만 하는 연대가 되고 만 것이다.

특히 지역적으로 두르러진 현상은 공동교섭 아닌 공동교섭으로 진행 되어 버렸다. 예를들면 지역에서 어느 한 사업장이 임금인상을 하면 그외 사업장에서는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두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공단전체 혹은 그 지역적으로 약속이나 한듯 타결되는 것이다.

어차피 거의 같은 수준에서 타결될 사항이라면 처음부터 같은업종 또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동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3) 노련의 '91년 임투활동

노련에서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임투활동에 막을 올렸다. 무엇보다도 '91년 임투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임투로서 정부와 사용자와의 대처를 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각지역본부와 "금속노련통신"을 이용하여 "91년 공동임투지침'을 시달하고 바로이어 임투교육을 전국규모로 1월하순부터 2월하순까지 실시하고 순회도중에 임투지침을 배부 하였다.

또한 한자리수 임금인상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노총 8층 강당에서 노조대표자들이 모여 '91임투승리와 노동탄압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고 임투를 위한 포스터를 배부 하였다.

'91년 임투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늦어져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본부(대도시중심)를 대상으로 쟁의사업장을 방문하여 조합원 및 집행부 간부를 만나 격려한바 있으며 이러한 방문을 2차례 이상으로 계속 방문 하였다.

이번 임투에 있어서 특기할사항은 1월부터 지금까지 "금속노련통신"을 발간 시사성 있는 신문뉴스 및 통계자료 등의 내용을 전조직에 주간으로 발송, 각 단위조합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한 점이다.

〈표 4〉 '91 임 투 활 동

일 시	활 동
1.14-	'91공동임투지침 시달(각 지역본부 및 통신에 개재)
1.25-2.22	임투교육(전국규모)
1.20-2.25	임투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발간(1,200부)
2. 5-2. 9	임투지침 제작 배부(1,500부)
4.23-5. 6	임투 및 쟁의사업장 조사, 격려방문(1차-전국규모)
4. 4-4.11	임투활동을 위한 자료집 제작 배부(1,200부)
5.15-	노동탄압분쇄 및 '91임투승리 결의대회(노총 8층강당)
5.15-5.19	임투 포스타 배부(5,000부)
6.27-7. 2	쟁의사업장 방문(2차)
수시로	그밖에 임투를 위한 교육활동
1월부터	금속노련통신 발간

(5) 임투의 특징

1) 요구의 형태

- 복지측면의 수당의 요구(신설)보다 물가상승을 내세워 기본급의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기타요구는 단협갱신으로 전환하는 경향
- 공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자 공해수당 신설을 회사측에 제신하는 경향도 보임.
- 사용자측은 년간 총액개념으로 교섭에 임함.
- 87년 이후 지금까지 시급제 임금제도에서 올바른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요구가 많았으나 91년도 역시 임금체계 개선(단일호봉제)내지는 임금체계 요구.
- 노총 최저생계비와 전노협 최저생계비를 요구에 있어서 동시에 사용하는 경향.

2) 사용자들의 의식

- 노동자를 자기가족 이라는 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
- 교섭석상에 대표자가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 사업장이 대부분 파업.
- 중소기업의 경우 3난(인력난, 자금난, 수출난)에 부딪혀 인원채용에 어려움이 있자 노조에서 요구하기에 앞서 선타결 보는 사례도 있음.
- 물가폭등, 생활물가 상승(주거비)으로 노동자 생계지장이 있음은 정치적 불안에서 초래되었다고 주장하여 노동자의 요구에 공감을 하고 있으나 주위의 여건과 타결되는 상황 주시.

  6.29선언이후 관리자들의 권위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의식으로 노농자를 주종관계로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다.

3) 타결의 형태

- 노동쟁의가 현저하게 줄어듬
- 각 단위노조의 규약상에 임투결과를 총회 투표로서 끝내는 노조가 많았고 끝마무리를 하지못해 대표권 시비가 사회적 여론까지 대두됨.
- 이러한 대표권 문제가 대두되자 사용자들은 "대표권 없으면 교섭을 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쟁위행위를 했을 경우 단기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음. 〈표 8〉
- 한자리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무너짐.

4) 쟁의행위 하는 이유

- 교섭석상에 대표이사(책임을 질 수 있는 실권자)가 참석하지 않는 사업장.
- 현저하게 임금이 낮음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 사측과 큰 격차로 인해서 정체된 사업장.
- 다국적기업의 사업장.
- 관리자와 중간관리자들의 회유·압력 등의 문제로 조합원들의 인간적 대우를 요구하는

사업장.

- 87년이후 쟁의행위를 한번도 해보지 못한 사업장.

6) 노동쟁의 형태

금속노련 산하 6월 30일 현재 조직수가 954개노조(지부제외)로서 노동쟁의 건수가 80건으로 8.39%로서 1%미만으로 나타났다.

쟁의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경남지역과 경기지역이 가장 많았고 충북지역같은 경우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명부터 500명 사이의 조합원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이 38.75%로서 중소기업의 저임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표 5〉

한편 원인별 쟁의현황을 보면 〈표 9〉단체협약및 임금인상을 위한 쟁의건수가 67건으로 83%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구속자석방, 해고, 징계, 감원사태, 폭행, 합의각서 작성, 노조활동보장 등의 요구가 관건이 되어 쟁의에 임한다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노조탄압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기본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임금이나 단체협약갱신을 위해 투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6%정도가 그 이외의 건으로 쟁의행위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다.

〈표 5〉 규모별 임투현황

6.30.현재

조합원수 / 구분	100명 이하	101-500명	501-1000명	1001명이상	계
건 수	18	31	11	20	80
백 분 율	22.50	38.75	13.75	25.00	100

〈표 6〉 지역별 쟁의현황

6.30.현재

지역 / 구분	서 울	경 기	인 천	충 남	충 북	경 남	경 북	부 산	전 남	계
건 수	3	19	11	3	0	23	12	7	2	80
백 분 율	3.75	23.75	13.75	3.75	0	28.75	15.00	8.75	2.50	100

〈표 7〉 분 과 별 쟁 의 현 황

6.30.현재

분과 / 구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비철 금속	기타	계
건 수	46	12	3	5	4	4	6	80
백분율	57.50	15.00	3.75	6.25	5.00	5.00	7.50	100

〈표 8〉 쟁 의 일 수 현 황

6.30.현재

쟁의일수 / 구분	1-5일	6-10일	11-15일	16-30일	30일이상	계
건 수	25	16	14	10	15	80
백분율	31.25	20.00	17.50	12.50	18.75	100

※30일 이상에는 78일이 최장기간임

〈표 9〉 원 인 별 쟁 의 현 황

6.30.현재

관련 / 구분	단체 협약	임금	구속자 석방	해고 징계 감원	단협 + 임투	기타	계
건 수	13	46	4	4	8	5	80
백분율	16.25	57.50	5.00	5.00	10.00	6.25	100

※기타 : 폭행, 합의각서 작성, 위원장 사망, 사업주 사과, 노조활동 보장

〈표 10〉 노조 설립년도별 쟁의현황

6.30.현재

설립년도 / 구분	87년이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계
건 수	26	17	13	16	2	6	80
백분율	32.50	21.35	16.15	20.00	2.50	7.50	100

※ 87년도 이전 : 63년부터 시작됨.

7) 결 론

노동자는 노동력의 댓사를 요구할 따름이지 노동의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의

상품의 가치로서 시장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적정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91임투는 우선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무력하게 됨을 보여주는 본보기의 해 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가 하겠다. 특히 공익사업과 임금선도기업 지정을 하여 정부 의도대로 이끌어 갈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물가인상, 부동산가격 상승에 힘입어 기업간의 비교임금 또는 상대적 임금이론등으로 임금교섭을 주도하여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 인상은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권력개입, 노동부의 비쟁의 8개항, 연봉개념, 성과급제도 도입 등 각종 압력수단의 도구자체를 철회해야 할 것이고 사용자들은 그것에 의존해서 임금 교섭을 전개할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다.

이번 금속노련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임투지원교육을 했고 임투 및 쟁의사업장 방문을 했지만 인원수에 비례하여 조직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전사업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각오가 노련으로서는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

올해는 노총의 최저생계비모형이 개정되어 객관성을 더했으나 이를 근간으로 생계비 확보론의 확립을 위한 요구의 기본원칙에 혼선을 보인 경우도 있었으며 요구가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요구가 전체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하겠다.

한편 전국적으로 임투의 현실을 재조명 해보면 임투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부분이 금속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운동의 대중성과 국민전체의 공감대로 형성하여 그 힘을 바탕으로 투쟁의 역량이 한층 더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 행동및 동종·지역 공동임투등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속노동자 전체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조 직 활 동

조 직 부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 ○ 지역본부 임원명단
   - ○ 단위노동조합 현황
2. 지부현황
3. 신규조직 현황
4. 외국인 투자기업체 현황
5.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
6. 해산노동조합 현황
7. 년도별 조합원 증감 현황
8. 지역별 조합원 월별 현황
9. 기타 활동

1. 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서울지역본부

1) 지역본부창립년월일 : 1989년 12월 28일

2)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868-15호

3) 전 화 번 호 : 849-1983 FAX : 849-4358

4)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연월일
지 도 위 원	최 석 기	롯 데 알 미 늄 노 동 조 합	91. 1. 31
의 장	강 규 석	기 아 특 수 강 노 동 조 합	91. 9. 27
수 석 부 의 장	최 쇠 묵	대 한 전 선 노 동 조 합	91. 1. 31
부 의 장	조 갑 룡	삼 성 화 스 나 노 동 조 합	91. 1. 31
부 의 장	박 순 자	로 옴 코 리 아 노 동 조 합	92. 3. 3
회 계 감 사	류 근 식	동 아 건 설 노 동 조 합	91. 1. 31
회 계 감 사	이 윤 석	현 대 기 계 노 동 조 합	92. 3. 3
회 계 감 사	문 광 주	세 진 전 자 노 동 조 합	92. 3. 3
사 무 국 장	신 성 균	오 트 론 노 동 조 합	91. 1. 31
정 책 실 장	박 상 범	경 방 기 계 노 동 조 합	92. 3. 3

5) 서울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갑 일 전 자	임 희 주	88. 6. 14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481-11	컴 퓨 터
경 방 기 계	박 상 범	88. 6. 27	〃 구로구 가리봉동 319-8	타 자 기
국제종합건설	신 상 준	88. 2. 23	〃 종로구 당주동 5	건 설 업
금 성 사	유 재 섭	63. 5. 30	〃 영등포구 문래동 6가 36	가 전 제 품
기 아 특 수 강	강 규 석	66. 5. 6	〃 구로구 구로동 3-13	철 도 차 량
남 성	이 영 숙	91. 1. 8	〃 구로구 가리봉동 345-30	전 자 부 품
남 성 전 기	전 경 임	77. 2. 12	〃 구로구 가리봉동 345-30	카 스 트 레 오
대 륙 자 원	홍 철 훈	92. 2. 19	〃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8-8	고 철 업
대성전자부품	유 병 렬	91. 5. 9	〃 구로구 가리봉동 536-6	사 출 업
대 우 전 자	정 찬 백	83. 3. 28	〃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가 전 제 품
대 한 전 선	강 익 화	72. 6. 15	서울시 구로구 시흥1동 104	광 통 신 , 전 선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도 신 정 밀	김행자	90. 4.17	〃 구로구 가리봉동 855	전 자 부 품
동 방 강 건	김낙구	82. 1.13	〃 동대문구 답십리3동 463-6	철 문 제 작
동 부 제 강	양재석	66. 4.29	〃 구로구 오류동 123	강 관 , 철 판
동 아 건 설	박한섭	74. 6.29	〃 중구 서소문동 120-23	건 설 업
동아건설청동	김천중	87. 7.14	〃 도봉구 창4동 150	건 설 업
동 일 제 강	김해주	85. 6.14	〃 구로구 구로5동 566-1	와 이 어 로 프
동 해	정동익	89. 2.24	〃 구로구 가리봉동 481-2	카 스 트 레 오
로 옴 코 리 아	박순자	78. 6.27	〃 구로구 가리봉동 371-11	저 항 기
롯데알미늄	이근덕	76. 4. 7	〃 구로구 가리봉동 1005	알 미 늄 호 일
롯 데 전 자	정용호	87. 8.21	〃 구로구 가리봉동 533	오 디 오
모 토 로 라	김민배	89. 5.14	〃 성동구 성수1동 27-22	반 도 체
민 성 전 기	조시영	89. 5.14	〃 성동구 성수1가동 27-22	기 포 발 생 기
범 한 정 기	이기학	88. 8.24	〃 구로구 가리봉동 160-18	시 계
부 경 상 사	곽운영	75. 9.15	〃 구로구 가리봉동 271-2	식 품 관 계 업
삼 성 화 스 나	조갑룡	88.10.13	〃 구로구 가리봉동 60-48	지 퍼
삼 일 기 공 사	최영수	85. 3.13	〃 성동구 성수2가 277-2	정 비 업
삼 천 리 기 계	신경선	89. 6. 1	〃 강서구 염창동 244-2	산 업 용 공 구
삼 홍 사	임종성	92. 4. 3	〃 구로구 가리봉동 327-11	모 형 기 관 차
샤 프 전 자	이상헌	90. 5. 7	〃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7	계 산 기
세 진 전 자	문광주	77. 1.23	〃 구로구 가리봉동 60-19	형 광 문 자 판
시 그 너 스	정충현	91.11.15	〃 성동구 성수동 277-10	자 동 차 정 비
신 명 전 기	이명재	85. 5.22	〃 영등포구 양평동 5가11	전 동 기
신 진 밸 브	김복만	74.10.18	〃 구로구 가리봉동 371-8	밸 브
신 화 실 업	장연기	88. 5. 2	〃 구로구 개봉동 175-1	도 금 강 판
씨 멘 스	이준성	87.12.21	〃 중구 장충동 1가 31	수 정 진 동 자
아 남 산 업	박희란	88. 5. 2	〃 성동구 화양동 151-22	반 도 체
오 트 론	신성균	88. 2. 1	〃 구로구 구로동 235-2	전 화 기
우 양 전 자	김동진	88. 5. 6	〃 관악구 신림3동 706-112	콘 덴 스
일 이 산 업	최현수	89. 4.12	〃 구로구 구로구 독산동 999-9	할 로 겐 램 프
제 일 종 공	전기노	82. 2.22	〃 영등포구 양평동 3가 34	감 속 기
청 우 공 업	박일수	88. 5.10	〃 영등포구 양평동3가 96-1	펌 프
큐닉스컴퓨터	최영수	90. 4.19	〃 강남구 청담2동 97-1	컴 퓨 터
탑 금 속	장희문	88. 8. 6	〃 구로구 고척동 176-21	자 동 차 부 품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태 림 전 자	김 희 숙	79. 2.14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97-24	소 형 모 터
풍 성 전 기	이 대 영	67. 2.28	〃 성동구 성수1가 656-335	자 동 차 부 품
풍 우 실 업	김 광 헌	89.11. 9	〃 구로구 가리봉동 371-37	장 식 용 전 구
한 국 마 벨	류 웅 모	75. 9.13	〃 구로구 구로동 235-3	전 자 부 품
한국시그네틱스	서 민 애	67. 9. 8	〃 강서구 염창동 272	반 도 체
한 국 음 향	변 희 내	85. 4.25	〃 구로구 가리봉동 371-41	스 피 커
한 국 콘 베 어	권 용 식	71. 1.12	〃 구로구 수궁동 72-1	콘 베 어
한국키스톤발브	류 인 조	88. 7. 9	〃 구로구 가리봉동 60-28	밸 브
한 국 트 라 콘	박 찬 일	88. 4.27	〃 구로구 가리봉동 371-42	콘 텐 스
한 국 트 랜 스	진 성 길	88.10.14	〃 구로구 구로동 237	트 랜 스
한국특수공구	서 갑 순	62. 3.31	〃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	절 삭 공 구
해 덕 기 계	김 창 환	87. 1. 5	〃 구로구 개봉동 180-15	기 계 제 조
현 대 정 밀	이 윤 석	90. 2. 2	〃 마포구 신정동 77-2	기 계 제 조
현대테크시스템	송 승 현	89. 1.31	〃 종로구 청진동 136	포 스 트
협 성 계 공	이 우 권	88. 8.30	〃 영등포구 양평동 4가 15-5	자 동 제 어 기

경기지역본부

1) 지역본부설립년월일 : 1982년 9월 27일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377번지

3) 전 화 번 호 : (0343)44-1390, 42-3666 FAX : (0343)45-2816

4)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연월일
의 장	하 영 일	금 성 전 선 노 동 조 합	1999. 10. 20
부 의 장	김 길 동	금 성 통 신 〃	〃
〃	이 성 구	대우전자부품 〃	〃
〃	강 익 화	대 한 전 선 〃	〃
〃	박 광 원	대 성 전 선 〃	〃
〃	나 찬 경	금 성 사 〃	〃
〃	최 진 하	일 진 〃	1990. 20. 30
〃	김 관 태	기 아 자 동 차 〃	1991. 10. 29
〃	김 윤 주	범 양 냉 방 〃	〃
〃	신 성 현	신 한 주 철 〃	〃
〃	권 석 정	한 샘 〃	〃
〃	이 종 진	성 신 〃	〃
〃	김 윤 제	대 우 통 신 〃	〃
〃	김 명 화	쌍 용 자 동 차 〃	〃
〃	김 수 진	만 도 기 계 〃	〃
사 무 국 장	박 정 화	동 아 정 기 〃	〃
회 계 감 사	박 찬 익	금 성 통 신 〃	〃
〃	가 재 두	일 진 전 기 〃	〃
〃	김 종 찬	기 아 써 비 스 〃	〃
〃	김 광 신	서 해 공 업 〃	〃
〃	차 재 인	신 한 일 전 기 〃	〃

5) 경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강 남 필 터	송 성 대	89. 4. 15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4-5	자동차일회용오일필터
강 진 공 업	이 명 주	89. 2. 20	〃 군포시 당동 7-5	자 동 차 부 품
경 원 산 업	장 규 오	87. 8. 17	〃 평택군 진위면 갈곶리 산 6-1	밧 데 리
고 신 열 관 리	김 명 수	88. 6. 22	〃 수원시 서둔동 39-1	산 업 용 버 너
광 성 기 업	김 석 현	89. 6. 20	〃 안양시 호계동 911-2	자 동 차 부 품
국 제 전 기	김 형 수	88. 9. 14	〃 안양시 평촌동 160-1	변 압 기
국 제 전 선	이 두 세	68. 5. 3	〃 군포시 금정동 166	전 선
금 석 전 파	반 현 애	88. 8. 19	〃 화성군 정남면 신3리 66-1	수 정 진 동 자
금 성 전 선	도 정 복	67. 5. 12	〃 안양시 호계동 555	전 선
금 성 통 신	박 찬 익	71. 3. 3	〃 안양시 호계동 600	전 화 기
기 경 실 업	김 종 길	87. 8. 25	〃 광명시 소하동 781-1	주 조 물
기 아 써 비 스	김 종 천	80. 9. 30	〃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546	도·소매업,자동차수리
기 아 자 동 차	김 관 태	61. 10. 21	〃 광명시 소하동 781-1	자 동 차
경 동 산 업	윤 한 호	88. 12. 12	〃 고양시 신원동 260-2	라 지 에 타 쿨 라
남 북	한 석 만	89. 2. 24	〃 용인군 모현면 초보리 80-1	자 동 차 부 품
대광다이케스트	김 수 룡	88. 3. 7	〃 오산시 누읍동 25	자 동 차 부 품
대 륙	황 명 철	87. 8. 27	〃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 530	차 단 기 부 품
대 방	박 승 준	88. 10. 6	〃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58-1	인 쇄 회 로 기 판
대 성 전 선	박 광 원	78. 2. 19	〃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 513	전 선
대 신 기 계	박 호 성	88. 5. 17	〃 화성군 정남면 태랑리 480-1	자 동 차 부 품
대 양 물 산	신 동 호	78. 10. 2	〃 시흥시 은행동 32-1	주 방 기 구
대영전자공업	이 상 애	91. 6. 2	〃 군포시 당정동 352	전 자 제 품
대우전자부품	양 규 철	75. 5. 16	〃 군포시 당정동 543	전 자 부 품
대 원 전 선	장 정 환	87. 7. 31	〃 화성군 태안읍 안평리 138-77	전 선
대 일	홍 석 찬	88. 5. 25	〃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57-2	가 스 보 일 러
대 진 침 대	김 동 현	89. 6. 23	〃 김포군 점단면 불노리 563-1	침 대
대 화 공 업	정 영 섭	89. 7. 23	〃 평택군 진위면 마산리 455	전 선
대 한 로	최 만 복	88. 10. 28	〃 평택군 진위면 고현리 221-4	열 처 리 로
대 한 제 작 소	이 두 중	81. 1. 31	〃 군포시 당정동 522	기 계 제 작
도 루 코	김 정 학	75. 5. 26	〃 시흥시 논곡동 162-3	면 도 날
동 신 중 공 업	박 용 일	90. 6. 21	〃 용인군 외사면 백봉리 산66	조 립 식 주 택
동 신 특 강	이 경 복	88. 12. 26	〃 화성군 동탄면 중리833-7	가 전 제 품 부 품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동 아 정 기	박정화	87. 8.17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북리 862-8	자 동 차 부 품
동양산업전기	김석태	88.11.29	〃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20	전자기기피사클
동양특수기공	김윤태	87. 7.23	〃 성남시 상대원동 500-5	전 화 기 부 품
동 원 정 밀	이길동	89. 1.19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69-3	현 미 경 카 메 라
동 유 물 산	정광모	85. 2.18	〃 안성군 대덕면 모산리 175	주 방 기 구
동일자동차학원	이귀남	89. 3. 2	〃 미금시 일패동 산45	자 동 차 정 비
동 진 금 속	최종강	89. 4. 1	〃 남양주군 외부읍 덕소6리 537	알 미 늄 샷 시
동 해 산 업	김완석	89. 2.20	〃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637-12	주 방 기 구
동화계량기	왕환규	87. 8.14	〃 김포군 대곶면 태농리 126-10	주 유 기
두 산 기 계	박진수	87. 8.19	〃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465-2	기 계 제 조
두 산 제 관	이재용	88. 4.16	〃 이천군 대월면 사동리 8-1	알 매 늄 캔
두 원 냉 기	이기연	90. 7. 1	〃 화성군 동탄면 장지리	자 동 차 에 어 콘
만 도 기 계	김수진	90. 8.14	〃 안양시 박달동 120	자 동 차 부 품
명 보 산 업	조길현	89. 9.23	〃 광주군 오포면 양벌리 377-1	전화박스, 철제가구
배영설비기공	이병도	89. 4.24	〃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 472-7	공 조 기
범 양 냉 방	김윤주	77. 7. 3	〃 군포시 금정동 101-1	에 어 콘
보 원 무 역	하병기	87. 8.14	〃 성남시 상대원동 138-6	수 출 용 액 자
부 승 정 밀	남기성	87. 8. 8	〃 성남시 상대원동 442-5	B . O
삼아알미늄	이윤식	89. 2.17	〃 안양시 박달동 111-2	알 미 늄 은 박 지
삼아정공사	조현석	87. 8.14	〃 안양시 박달동 620-3	자 동 차 부 품
삼 영 전 자	조상철	88. 8.28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60-1	콘 덴 서 조 립
삼 원 기 계	이관수	89. 1.25	〃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54-1	스 마 일 보 일 러
삼 원 산 업	이기웅	86. 4.30	〃 파주군 파주읍 봉암리 234	자 동 차 부 품
삼 정 기 계	이길례	89. 4.11	〃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196-6	공 조 기
삼호중기사업소	부대권	88. 6.30	〃 의왕시 고천동 295-51	건 설 자 재
삼 화 왕 관	지성수	88. 9.15	〃 안양시 평촌동 126-1	병 뚜 껑
삼 화 제 관	봉인균	88. 8.16	〃 송탄시 모곡동 94-1	음 료 관
삼화콘덴서	김익년	87. 8.24	〃 용인군 남사면 북리124	전 자 부 품
상 진	이장규	88. 7.12	〃 광주군 광주읍 중대리 292	S/A 및 O/JACK
새 생 활	이강연	87. 8. 7	〃 수원시 권선구 곡반요동 225-4	보 일 러
서원풍력기계	권혁기	88.11. 7	〃 안양시 관양동 791-2	산 업 용 선 풍 기
서 진 산 업	안봉규	77. 2.26	〃 군포시 금정동 7	자 동 차 부 품
선 일 기 계	임상근	88. 6.11	〃 성남시 상대원동 440	자 동 차 부 품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성 동 금 속	이 봉 환	88. 7.16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동교2리 산72-1	동 관
수 산 중 공 업	김 석 곤	88. 5.16	〃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109-2	산 업 기 계
신라엔지니어링	임 갑 병	88. 5.10	〃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10-2	금 형 (프 레 스)
신 일	김 동 찬	90. 1.13	〃 군포시 당정동 225-3	전 선 기 계 제 작
신 일 산 업	신 철	77. 4.20	〃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119	선 풍 기
신 일 정 밀	이 상 국	89. 9. 4	〃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123	타 이 어
신 진 전 기	김 용 태	87. 8.20	〃 수원시 평동 145-1	각 종 기 계 제 작
쌍 용 자 동 차	김 명 화	87. 7.31	〃 송탄시 칠괴동 150-3	자 동 차
서 진 대 금	김 영 원	91. 1.24	〃 군포시 금정동 7	자 동 차 부 품
아 세 아 벤 드	김 광 민	89. 1. 8	〃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262	배 관 자 재
에이브코리아	유 연 숙	88. 6.20	〃 시흥시 신천동 70	카세트테프조립
연 안 정 밀	조 기 환	89. 4.14	〃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661-16	텐트볼, 배드민턴
연 합 인 슈	남 윤 복	90.11.21	〃 이천군 백사면 송말3리 33	건 축 자 재
연 화 정 밀	유 지 택	88. 7.21	〃 시흥시 대야동 360-8	가 스 렌 지 부 품
오 공 금 속	이 정 식	88. 6. 8	〃 용인군 용인읍 고립리 612-1	자 동 차 부 품
우 성	한 인 첩	89. 2.17	〃 남양주분 외부읍 덕소리 600-12	스 탠 남 비
유 성 정 밀	김 선 영	88. 9.10	〃 광주군 오포면 매산리 597-11	변 압 기
이화다이아몬드	성 세 현	88. 3.12	〃 오산시 원동 520-2	다 이 아 몬 드 공 구
이 화 전 기	김 광 식	88. 7.18	〃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20	부 영 전 전 품 장 치
일진전자산업	이 재 경	87. 8.27	〃 안양시 호계동 906-1	보 빈
일 진 전 기	가 재 두	87. 8.17	〃 화성군 태안읍 안평리 7-64	자 동 차 부 품
오 운 개 발	김 명 숙	91. 2.27	〃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368-1	전 자 제 품
장 안 공 업	이 용 세	79. 3.16	〃 평택군 진위면 갈곶리 224-1	전 기 소 켓 트
정 심 전 자	장 우 영	88. 6.25	〃 의왕시 고천동 405	전 기 모 타
정 우 실 업	김 영 환	88.11.25	〃 안양시 호계동 899-6	신 주 사 진 틀
제 원 전 자	박 동 규	89. 4. 7	〃 군포시 당정동 105	전 자 부 품
중 외 기 계	김 순 경	89. 4. 8	〃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146-141	의 료 기 계
진 광	송 기 형	88. 1.23	〃 화성군 정남면 덕절리 123-6	주 문 벨 브
진 영 기 전	이 승 억	88. 3. 2	〃 용인군 기흥읍 하갈리 237-4	시 린 다 발 브
진 우	황 병 오	91. 7. 6	〃 화성군 장안면 사랑리 137	자 동 차 부 품
코 발 트 전 기	이 영 순	89. 7.18	〃 의왕시 내손동 409-1	전 기 다 리 미
철도콘테이너	임 승 재	90. 6. 5	〃 의왕시 삼동 163	콘 테 이 너 수 리
태 양 공 업	고 영 범	90. 9. 7	〃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661-10	전 동 기 제 조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풍한알미늄	김면식	88. 7.10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동화2리 284	알미늄샷시
필 립 스	이정현	87. 8.26	〃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380	전자부품
퍼시픽닉교정밀	장현국	91. 2. 1	〃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288	금형제작
퍼시픽와꼬전자	임효남	91. 2. 6	〃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288	전자부품
퍼시픽콘트롤즈	신영호	91. 2. 6	〃 수원시 권선구 원천동 288	자동제어기
한국가구	임홍순	68. 8.14	〃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38-1	가구
한국길전제작소	손병준	88. 5.16	〃 안양시 호계동 100	치과기계
두원정공	정익희	88. 8.28	〃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180	연료분사펌프
한국번디	홍강표	87. 7.19	〃 평택군 진위면 신리 206-1	이중련강관
한국브레이크	권승오	88. 4.20	〃 용인군 남사면 북리 608-23	브레이크
한국써보	박원규	90. 4.10	〃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234	모터
한국에르나	박영기	78. 7.26	〃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226-1	전자부품
한국에이엠피	이해성	89.10.31	〃 안성군 공도면 양기리 451-9	〃
한국열교환기	정규안	87. 8.31	〃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517	열교환기
한국오오모리	서분정	90. 4. 6	〃 파주군 교하면 동패리산 202-1	릴(낚시용품)
한국체인	윤봉철	87. 8.26	〃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177	체인
한국컨테이너	신현도	89.12. 6	〃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161	콘테이너
한백무역	이윤승	87. 9. 7	〃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0-8	보온병
한샘	권석정	80. 4. 1	〃 시흥시 조남동 594-1	주방기구
한진전자	강경만	88. 3.25	〃 화성군 팔탄면 가재리 584-1	전자부품
현대엘리베이터	육정수	87. 8.14	〃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산 136-1	엘리베이터
현대전자	전덕진	87. 8.14	〃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산 136-1	전화기
혜성공업	조준행	87. 7.10	〃 안양시 호계동 898-2	전자판코아
혜성전선	김상권	88.12.16	〃 군포시 당정동 164-3	코일
화천프레스	김인혁	87. 9.19	〃 안양시 안양7동 219-7	자동차부품
한국필아공업	김동수	90. 1.30	〃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공업요박킹
경용기계	함선남	84. 5.27	〃 안산시 성곡동 646-5	기계제작
계양전기	이명복	87. 8.17	〃 안산시 원시동 823-2	전동공구
광명기전	김창중	90. 8.28	〃 안산시 목내동 451-3	배전반차단기
광명전기	김홍만	87. 8.15	〃 안산시 원시동 389	전기제품
금강공업	정홍선	90. 8.10	〃 안산시 성곡동 반월공단 20-24B	금속조립
기린산업	노원숙	90. 7.14	〃 안산시 목내동 403번지 16 B	샌드위치판넬
기영산업	김종성	88. 3.24	〃 안산시 원시동 778-5	자동차부품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남 성 기 계	최경호	89. 4.10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반월공단B 608-31	체 인 블 럭
남 성	염규근	88. 9. 5	〃 원시동 778-5	자 동 차 부 품
대 경 화 성	박순영	89. 1.13	〃 성곡동 반월공단 B 608-31	〃
대 기 산 업	박종철	89. 2.23	〃 안산시 초지동 647-1	〃
대 덕 산 업	김광호	87.12.11	〃 안산시 목내동 475	인 쇄 회 로 기 판
대 덕 전 자	최종호	87.12.28	〃 안산시 목내동 390-1	P.C.B전자부품
대 동	김봉진	89. 3.16	〃 안산시 반월공단 B 608-17	사 출 금 형
대 륙 전 선	김영규	87.12. 2	〃 안산시 원시동 반월공단B 4-10	전 선 제 조 업
대 붕 전 선	김두한	89. 3. 5	〃 안산시 원시동 723-1	전 선 마 그 네 트
대 아 볼 트	김병호	87. 8.13	〃 안산시 원시동 824-6	볼 트
대 아 정 밀	한대영	91. 3.26	〃 안산시 성곡동 601-16	정 밀 부 품
대 일 전 선	박래근	83. 4.30	〃 안산시 목내동 395-2	전 선
동광제작소	정영배	87. 9. 1	〃 안산시 원시동 769-11	철 재 가 구
동 서 공 업	안용하	87.12. 8	〃 안산시 목내동 402번지 6롯트16호	차 량 피 스 톤
동 서 기 공	강정호	89. 4.23	〃 안산시 원시동 반월공단B 607-25	자 동 차 부 품
동성진흥공업	오경생	87.10.29	〃 안산시 목내동 445-4B 15-1	케 이 블 츄 레 이
동성진흥(주)	홍원상	89.11.18	〃 안산시 성곡동 610-6 B	방음벽, 파렛트
동 아 정 공	우제문	89. 4.30	〃 안산시 목내동 447-1	마 라 톤 타 자 기
동양금속인쇄	장진식	89. 2.26	〃 안산시 원시동 737	금 속 인 쇄 물
동 양 기 공	주영준	87. 8.26	〃 안산시 원시동 반월공단771 11B	자 동 차 부 품
동양피스톤	문명석	92. 3.18	〃 안산시 신길동1050번지 B601-21	피 스 톤
동 원 산 업	장세원	89. 4.11	〃 안산시 원시동 778-2 B10-4	자 동 차 부 품
동 일 전 기	김용산	89. 3.11	〃 안산시 목내동 397-2	전 기 설 비 기 기
동 희 산 기	김종호	91. 5.21	〃 안산시 성곡동604-31	콘 베 어 제 작
배 명 금 속	안상복	88. 3. 7	〃 안산시 초지동 654-2	스 텐 레 스 앵 글
삼 기 기 공	장인권	78.10.13	〃 안산시 원시동726-4 반월공단B1-45	자 동 차 부 품
삼 목 강 업	남진우	88. 4.18	〃 안산시 초지동 654-3	자 동 차 스 프 링
삼 선 공 업	조동석	88. 6.22	〃 안산시 목내동 393-1	비철금속(샷시, ALLO)
삼 영 기 공	유인수	89. 3.28	〃 안산시 성곡동B 602-18	자 동 차 부 품
삼우특수금속	이종출	87. 9. 4	〃 안산시 목내동406 반월공단7B1호	전 선
서울라디에타	백승철	88. 1.16	〃 안산시 원시동724 반월공단B1-21	라 디 에 타
서 울 정 공	장영근	87. 8.25	〃 안산시 원시동778 반월공단10-2B	전 자 제 품
서 울 차 체	최성진	67.11. 3	〃 안산시 신길동 1125	자 동 차 부 품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서 해 공 업	나만주	78. 3.23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609-3	〃
선 도 전 기	홍경수	88. 5.16	〃 안산시 원시동734B 5-6블럭	배 전 반
성 안 기 계	조용남	89. 5.13	〃 반월공단 B 602-6	기 계 제 작
성 진 기 공	조은형	87. 8.21	〃 안산시 목내동 401-5	신 축 관 이 음
성 진 산 업	임병우	87. 8.22	〃 안산시 원시동 731-8	자 동 차 부 품
성 진 전 기	방형곤	89. 4.13	〃 안산시 목내동 393	변 압 기
세 강 물 산	한병우	90. 4.23	〃 안산시 성곡동 607-6	강 선
세광알미늄	엄종국	86. 8.31	〃 안산시 초지동651번지 9블럭	주 방 용 품
세 우 실 업	김영선	89. 1. 8	〃 안산시 목내동450-4 15블럭	수 출 용 사 진 틀
신 아 전 기	신은철	80. 3.26	〃 안산시 목내동 779-10	변 압 기
신 일 공 업	정택인	92. 3.11	〃 안산시 성곡동 594-3	수 도 꼭 지 등
신 창 전 기	이완우	87. 9.14	〃 안산시 목내동 734-2	전 장 품
신 흥	홍승덕	87. 8.17	〃 안산시 목내동 769-14	치 과 의 료 기
아메리칸스탠다드코리아	이준근	87. 8.22	〃 안산시 목내동 398-14	수 도 꼭 지
오 양 공 조 기	조재천	87. 7.17	〃 안산시 원시동817 B1-89	모 타
우 신 공 업	정규종	88.12.16	〃 안산시 성곡동 608-2	자 동 차 부 품
우 진 공 업	이도식	89. 5.12	〃 안산시 원시동770-1 11블럭 17롯트	스 파 크 프 러 그
원 경	박종식	88. 8. 8	〃 안산시 성곡동 602-2	주 방 기 구
유 일	박찬용	89. 8. 7	〃 안산시 목내동 390-3	비 철 금 속
은 성 금 속	엄광조	88.11.30	〃 안산시 원시동 824-1	스 텐 발 코 니
일 진	최진하	87. 8.22	〃 안산시 목내동 456-1	알 미 늄 샷 시
의 성 실 업	박동우	91. 4.24	〃 안산시 목내동 505-9	휀 스
중 원 전 기	김원곤	88. 5.16	〃 안산시 원시동 727-9	특 고 압 개 폐 기
창 화 공 업	우서운	87.11.23	〃 안산시 성곡동595 반월공단21	자 동 차 부 품
태 양 금 속	이병욱	76. 5.26	〃 안산시 성곡동 595	볼 트
태 일 정 밀	권준로	88. 4. 9	〃 안산시 목내동 456-1	컴 퓨 터 부 품
파워트로닉스	이상철	89. 1.16	〃 안산시 반월공단B 606-1	컴퓨터주변기기
한 관 산 기	이재항	88. 5. 8	〃 안산시 원시동 735	산 업 기 계
한국캠브리지필터	이한규	90. 2.15	〃 원시동 781-5	필 터
한 일 써 키 트	이창희	88. 4.11	〃 안산시 원시동 779-5	전 자 제 품
해 덕 강 업	이철하	89. 7.15	〃 안산시 신길동1060-2 605-B	파 이 프 제 조
홍 진 정 공	권봉행	88.11.19	〃 안산시 신길동780-1 10-8블럭	가 전 제 품
건 화 상 사	김동섭	88. 7.11	〃 부천시 중구 내동 212-4	철 탑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생산품
경원세기	장진수	79. 4. 5	경기도 부천시 중구 내동 222-22	에어콘
계선산업	진춘기	87. 8.14	〃 부천시 도당동 185-125	철제가구
남신제관	박병근	90. 2.16	〃 부천시 역곡동 24-21	전자파외피
도원무역	이봉춘	88. 3.17	〃 부천시 원미동 4-12	피혁
동양전관	오형종	88. 9. 7	〃 부천시 도당동 176-1	브라운관
동양하드웨어	윤원재	89. 4.12	〃 부천시 원미동 47-1	알미늄비철금속
동화기업	유승규	87. 8.15	〃 부천시 남구 상동 32-61	철도차량중기부품
로렌스시계	윤중헌	89. 2. 9	〃 부천시 도당동 273-17	시계
로켓트보일러	정명국	89. 3.15	〃 부천시 도당동 254-6	보일러
반도기계	정기철	87. 8.21	〃 부천시 남구 송내동 307-2	호이트크레인
반도스포츠	조인근	75. 2.19	〃 부천시 중구 도당동 187-7	낚시
삼양중기	박시열	84. 7. 8	〃 부천시 남구 소사동 134	프레스산업기계
삼원공업	최영규	88.11. 2	〃 부천시 중구 내동 150	화장품케이스
삼협전자	김권태	89. 4. 7	〃 부천시 중구 춘의동 120-8	카스테레오
서울주철	설진근	88. 4.27	〃 부천시 남구 소사동 37	맨홀(주물)
성신	이종진	87. 7.28	〃 부천시 남구 송내동 456-5	모터제조
신한일전기	유병류	74. 5. 4	〃 부천시 남구 송내동 456	펌프
신한주철	윤무영	75. 7.20	〃 부천시 남구 소사3동 136-12	주물
영림상사	이종국	92. 4. 4	〃 부천시 중구 원미1동 90-7	특수바늘
우진전자	김문수	87. 9. 1	〃 부천시 중구 내동 254-5	전자제품
유성기업	최종하	61.10. 3	〃 부천시 남구 송내동 372	피스턴링
제일베아링	김한철	88. 9. 9	〃 부천시 중구 춘의동 산3-1	베아링
풍정산업	이문식	87.11.10	〃 부천시 중구 도당동 176-1	자동차백밀러
한도정밀	김승태	88. 5.11	〃 부천시 남구 송내동 392-1	베아링
한성공영	최대봉	87.10. 5	〃 부천시 중구 삼정동 48-40	철조구물
한양정공	심윤선	88.10. 4	〃 부천시 중구 도당동 159-1	컴퓨터부품
홍진기연	안희철	89. 2.25	〃 부천시 남구 소사동 28-11	크레인, 산업기계

인천지역본부

1) 지역본부설립년월일 : 1981년 11월 2일

2) 소 재 지 : 인천직할시 남동구 구월동 1166-1 보광빌딩

3) 전 화 번 호 : 437-8504~5 FAX : 437-8504

4)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연월일
의 장	박 영 호	영 창 악 기 노 동 조 합	1989. 6. 13
부 의 장	김 덕 수	한국종합기계 〃	〃
〃	박 기 린	코리아스파이서 〃	1991. 6. 7
〃	김 성 열	경 동 산 업 〃	〃
〃	김 원 태	대 한 제 당 〃	〃
〃	김 만 영	대 림 통 상 〃	〃
회 계 감 사	한 상 환	한 영 알 미 늄 〃	1989. 6. 13
〃	서 상 연	한 국 강 관 〃	〃
〃	김 동 영	한 독 〃	〃
〃	강 석 호	도 림 주 철 관 〃	〃
사 무 국 장	이 준 만	후지카대원전기 〃	1989. 6. 13

5) 인천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건영정기산업	이인호	91. 2. 4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43-9	자 동 차 부 품
경 동 산 업	김성열	86. 1.25	〃 서구 가좌동 571-10	스 텐 레 스
고 니 정 밀	이유정	80. 5.17	〃 북구 효성동 604	전 자 부 품
금 성 기 전	조홍선	87. 7.25	〃 남구 주안동 1385-2	에 레 베 이 터
금 영 실 업	김병국	87. 9. 7	〃 북구 효성동 225-2	선 반
대 동 케 이 블	공정세	89. 7. 1	〃 북구 작전동 739-1	케 이 블
대 림 통 상	이은물	87. 8.10	〃 서구 가좌동 524-4	양 식 기
대 우 중 공 업	염성태	61.12.10	〃 동구 만석동 6	철 도 차 량
대 우 통 신	박병윤	81. 3. 2	〃 서구 가좌동 531	교 환 기
대 한 제 당	김원태	69. 6. 2	〃 중구 북성동1가 6-14	제 당
대 한 제 쇄	김희복	66. 5.16	〃 남구 도화동 740	닻
덕 창 기 업	김종민	89. 9.16	〃 남동구 남동공단 2-1	자 동 차 부 품
도 림 주 철 관	강석호	89. 4.28	〃 서구 경서동 363-165	주 물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동 광 화 성	한기영	89.12.11	인천시 북구 효성동 315-15	사 출
동 방 제 강	장영일	87. 8.10	〃 남구 도화동 696	제 강
동 보	최화영	87. 9. 6	〃 남동구 남촌동 601-1	자 동 차 부 품
동 양 철 관	정춘희	87. 8.26	〃 북구 청천동 176	강 관
로얄동도금속	한종윤	87. 7.25	〃 북구 효성동 410-19	수 도 꼭 지
로 얄 산 업	박상원	89. 4. 3	〃 남동구 남동공단 8-10	
린나이코리아	오동필	89. 3.17	〃 북구 십정동 560-2	가 스 기 기
봉 명 산 업	김현섭	88. 7. 5	〃 서구 가좌동 577-3	주 물
봉 신 중 기	최재호	88.12. 5	〃 서구 가좌동 530-3	주 물
부 국 철 강	최영진	88. 2. 6	〃 남구 도화동 686	철 강
삼 경 무 역	김연천	88. 4.11	〃 북구 작전동 738-3	마 구 장 식
삼 기 전 자	김미영	90. 5. 4	〃 서구 가좌동 280	카 스 테 레 오
삼 성 공 업	오인상	87. 8. 4	〃 남동구 남동공단 4-1	자 동 차 부 품
삼 성 정 밀	정길환	89. 4.14	〃 남구 도화동 105-2	주 방 기 기
삼 송 공 업	김복석	87. 8.24	〃 북구 효성동 316-20	캐 스 타
삼흥모터스	안광열	80.10. 2	〃 남구 학익동 587-73	차 량 정 비
새 한 요 업	이언섭	75.11.28	〃 남동구 논현동 1445-6	연 마 돌
서울경금속	유인언	89. 4.10	〃 남구 주안동 5-3	알 미 늄 샷 시
서울엔지니어링	안경봉	87. 8.25	〃 남구 주안동 21-2	자 동 차 부 품
서 울 제 강	신화철	88. 2. 7	〃 북구 십정동 558-7	철 강
서 흥	이흥일	88. 7.25	〃 서구 가좌동 525-5	보 온 병
성 지 공 업	정지호	89. 9.15	〃 서구 가좌동 548-11	중 기 부 품
세기자동차	신흥균	88. 3. 5	〃 남구 학익동 587-70	차 량 정 비
세 일 기 계	나용길	87.10.16	〃 남동구 남동공단 3-1	자 동 차 부 품
승 일 제 관	황인철	88. 5.27	〃 서구 가좌동 543-4	켄
신 화 공 업	김재인	82. 3.16	〃 북구 산곡동 524-3	산 업 기 계
쌍 용 정 공	박용민	87. 8.13	〃 북구 효성동 219	공 작 기 계
영 창 악 기	김석기	76. 2. 6	〃 서구 가좌동 564-1	악 기 제 조
영 풍 기 계	이준선	87. 8.20	〃 북구 십정동 557	공 구
우 일 정 밀	정평원	87. 8. 4	〃 남구 도화동 694-1	자 동 차 부 품
이 천 전 기	김성남	61. 8.25	〃 동구 화수동 5-5	중 전 기 기
이 화 금 속	하인규	82. 2.26	〃 북구 효성동 316-31	철 망
이 화 금 망	임영국	91. 3.26	〃 북구 효성동 316-31	철 망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생산품
인천자동차	이석주	88. 3. 8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79	차량정비
인천제철	김동교	70. 5.13	〃 동구 송현동 1	철강
제일엔지니어링	이성남	88. 5.16	〃 남구 주안동 1385-9	전자부품
진도	윤유원	85. 1.30	〃 남구 도화동 1-46	콘테이너
진영정기	진의범	89. 2.28	〃 남동구 남동공단 49-2	방전기품
창성	이계봉	. .	〃 남동구 남동공단 11-9	
코리아스파이서	박남수	80. 5. 1	〃 북구 삼산동 21-3	자동차부품
한국강관	서상연	80. 5. 4	〃 남구 학익동 468	강관
한국단자	김광길	89. 2. 7	〃 남동구 남동공단 49-3	단자
한국분말야금	양태공	87. 8.16	〃 북구 갈산동 5-1	자동차부품
한국샤프	유성재	88. 5.30	〃 북구 효성동 425-10	오디오
한국종합기계	김덕수	68. 3.21	〃 북구 산곡동 162	베아링
한국차량	황종환	87. 6.23	〃 남구 학익동 587-67	차량정비
한국화학장치	이길훈	89. 1.25	〃 서구 가좌동 291-13	화학기계
한독	김동영	74. 6.26	〃 북구 작전동 449-3	시계
한라중공업	백윤선	87. 8.13	〃 중구 항동7가 104-1	조선
한성실업	김찬영	87. 9.19	〃 북구 부평동 65-115	자동차부품
한양공영	정용운	87. 8.26	〃 남구 주안동 3-21	건축자재
한영알미늄	한상환	76.10.27	〃 서구 가좌동 541-5	비철금속
한일스텐레스	이치남	77. 8.27	〃 북구 효성동 33-2	스텐레스
해주조기	김영식	89. 3.14	〃 중구 사동 35	선박수리
해태전자	노진호	89. 9.19	〃 북구 청천동 177	오디오
화인	김만선	89. 9.26	〃 서구 가좌동 525-3	가스기기
후지카대원전기	이준만	68. 3. 2	〃 북구 작전동 286-1	난로
희성금속	황경발	87. 8.26	〃 서구 가좌동 108-12	용접봉

충북지역본부

1) 지역본부설립년월일 : 1988년 12월 31일

2)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복대동 100-15번지

3) 전 화 번 호 : (0431)67-1418 FAX : (0431)66-5088

4)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연월일
의 장	김 홍 수	금 성 계 전 노 동 조 합	1992. 1. 30
부 의 장	전 응 빈	금성사청주지부 〃	〃
〃	서 혜 숙	맥 슨 전 자 〃	〃
〃	권 성 하	에 넥 스 〃	〃
〃	이 준 영	한 국 알 미 늄 〃	〃
회 계 감 사	장 화 현	우 진 전 기 〃	1989. 6. 13
〃	박 각 규	우 진 정 밀 〃	〃
사 무 국 장	이 형 일	뉴 맥 스 〃	〃

5) 충북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갑 진 기 업	김 영 식	91.10. 4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산88-14	호 이 스 트 제 작
국제종합기계	곽 운 섭	74. 1.27	〃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11-1	농 기 계
극 동 전 선	김 종 철	87. 8.22	〃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산16-1	전 선
금 성 계 전	김 홍 수	75. 3.19	청주시 송정동 1번지	전 기 계 측 기 기
뉴 맥 스	이 형 일	88. 4.27	〃 송정동 27-15	컴 퓨 터 헤 드
대 성 쎌 틱	권 영 혁	89. 4.19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313-1	가 스 보 일 러
동 성 금 속	배 상 열	91. 3. 1	〃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60	엔 진 베 아 링
동신오미야법랑	권 영 설	89.11.10	〃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60-1	법 랑
맥 슨 전 자	서 혜 숙	81. 5.11	청주시 향정동 125	무 선 전 화 기
방 원 금 속	김 영 창	89. 7.30	충북 진천군 만승면 죽현리 693-1	자 동 차 기 어
삼 화 전 기	이 철 주	90. 1.31	청주시 복대동 92	콘 덴 서
세 진 다 지 마	이 두 휘	91. 6. 1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850	스 텐 레 스
에 넥 스	권 성 하	87. 8.10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555	씽 크 대
에 이 엠 케 이	이 용 복	88. 6.28	청주시 송정동 66-26	컴 퓨 터 헤 드
우 진 전 기	장 화 현	88. 4.25	〃 송정동 248-6	카 스 테 레 오
우 진 정 밀	박 각 규	88. 8. 4	〃 향정동 73-3	카 세 트 테 이 프
제 일 공 업	최 영 호	89. 4.10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802-2	씽 크 대
하 나 계 기	최 병 관	89. 2.22	청주시 사천동 619	전 자 저 울
한 국 알 미 늄	이 준 영	90. 8.29	충북 괴산군 도안면 광덕리457	은 박
한 국 야 금	조 규 동	91. 2. 3	청주시 송정동 53-16	초 경 합 금 공 구
한 음 파	황 미 경	88. 5.19	〃 송정동 70-8	헤 드 폰
한 주 전 자	김 명 화	89. 2.18	〃 송정동 277-1	카 스 테 레 오
현 대 정 밀	류 재 풍	90. 8.22	〃 송정동 19-4	전 자 부 품
영 태 전 자	민 경 갑	80. 3.25	〃 송정동 27-18	카 스 테 레 오
한 국 휘 닉 스	손 인 수	88. 5.	충주시 용탄동	전 자 부 품

대전 · 충남지역본부

1) 지역본부설립년월일 : 1981년 1월 13일

2) 소 재 지 : 대전직할시 동구 정동 1-185번지

3) 전 화 번 호 : (042)273-5786 FAX : (042)273-2555

4)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연월일
의 장	김 두 형	대 성 공 업 노 동 조 합	1991. 2. 28
부 의 장	남 상 천	한 국 중 기 〃	〃
〃	한 상 호	경 신 공 업 〃	〃
회 계 감 사	김 용 겸	럭 키 금 속 〃	〃
〃	송 영 택	대 성 공 업 〃	〃
사 무 국 장	김 면 희	동방의료양행 〃	〃

5) 대전 · 충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건 화 전 기	김시사	88. 6.13	충남 아산군 인주면 관암리429-2	변압기, 승강기
국제특수금속	이병헌	71. 5.12	대전시 서구 탄방동93-1	자 동 차 부 품
남 선 기 공	윤익병	74. 2.20	〃 대덕구 읍내동450-10	밀 링
대 륙 제 관	임성로	87. 8.28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운리 산46-1	제 관
대 성 공 업	송영택	78.10.15	대전시 동구 성남1동 180	양 식 기 류
대 아 공 업	김재동	89. 3.15	〃 대덕구 대화동 40-35	후 레 임
대 한 공 조	김형복	90. 2. 1	충남 천안군 입장면 기로리111-7	
대 흥 정 비	김진웅	85. 6.18	〃 천안시 성정동 2-1	자 동 차 부 품
동방의료양행	김면회	89. 1.26	대전시 동구 삼성동 302-128	일 회 용 주 사 기
동 양 강 철	오기순	67. 3. 6	〃 대덕구 대화동 63-15	알 미 늄, 샷 시
동 양 금 속	이종찬	78. 8. 7	〃 대덕구 대화동 40-55	주 물
두 원 공 조	권병덕	87.11.13	충남 아산군 음봉면 원남리 산16-1	
마 벨 알 프 스	윤병근	88.12.22	〃 서산군 음암면 도당리 4구1318-1	전 자 부 품
명 원 산 업	배의환	88. 4.18	〃 공주군 장기면 송선리540-8	가 구
삼 신	강한우	87. 7.29	〃 천안시 두정동 63-6	밸 브
삼 왕	조상익	88.10.25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90-22	공 구
상 지 전 자	이철수	90. 2. 1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방리 73	전 화 기
에프케이엘동화	박준택	90. 2. 7	〃 천안군 성환읍 대흥리 338-13	전 자 부 품
연 산 금 속	박길용	89.10. 9	〃 천안군 직산면 상덕리 208-11	자 동 차 부 품
연 합 전 선	유진산	87. 8.26	〃 천안군 풍세면 보성리 569	전 선
제 일 제 침	장원식	89. 5. 8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90-12	바 늘
중 앙 공 업	김병국	73. 1.27	〃 대덕구 대화동 290-7	농 기 구
진 합 정 공	이남철	88.10.26	〃 대덕구 대화동 40-57	볼 트
천 안 모 터 스	윤중용	85. 9.10	충남 천안시 성정동 9-8	자 동 차 정 비
천 일 전 기	이병무	89. 3.15	〃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309-8	테 스 타 기
한국쌍신전기	윤영걸	76. 4.26	〃 연기군 서면 월하리 614-1	콘 덴 사
한 국 에 프 엠	김태현	91. 3. 5	〃 연기군 동면 응암리 산666-8	자 동 차 부 품
한 국 이 연	오경세	74. 5.18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261	엔 진 부 속
한 국 중 기	남상천	88. 5.22	〃 대덕구 대화동 290-13	주 물 주 강
한독알프스광학	임재양	89.11.16	충남 공주군 장기면 송선리 산48-1	안 경 렌 즈
한 양 파 이 프	최성복	89. 8.16	〃 천안군 성환읍 대흥리1구 195-46	파 이 프

경남지역본부

1) 지역본부설립년월일 : 1981년 1월 9일

2)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 노동복지회관 3층

3) 전 화 번 호 : 84-4021 FAX : 87-5052

4)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연월일
의 장	제 선 수	삼미종합특수강 노동조합	1990. 1. 22
부 의 장	이 문 희	금성사 창원1지부 〃	〃
〃	배 동 환	한국철강 창원지부 〃	〃
〃	김 홍 균	금 성 알 프 스 〃	〃
〃	김 남 수	두 원 중 공 업 〃	〃
〃	백 도 시	금성사 김해지부 〃	〃
〃	김 형 태	대 동 정 밀 〃	〃
회 계 감 사	서 석 교	대 우 중 공 업 〃	〃
〃	김 종 태	한 일 제 관 〃	1992. 1. 28
〃	박 재 원	태 일 전 자 〃	〃
사 무 국 장	이 성 택	고려강선 창원지부 〃	1990. 1. 22

5) 경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경 남 금 속	추 영 만	88. 7.27	창원시 신촌동 74	알 미 늄 샷 시
고 려 강 선	박 경 철	83. 4. 2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257-6	스 틸 코 드
고 려 상 사	최 병 욱	87. 5.23	〃 양산읍 유산리 131-1	와 이 어 로 프
금 성 산 전	전 병 만	87. 7.27	창원시 창원기계공단 제2지구	엘 레 베 이 터
금 성 알 프 스	김 홍 균	74.10. 7	양산군 양산읍 북부동 191	전 자 부 품
기 아 정 기	최 상 우	76.11.20	창원시 외동 853-8	자 동 차 부 품
남 성 알 미 늄	김 준 택	88. 3. 3	〃 창원공업기지 2단지	알루미늄압출형재
대 동 기 어	강 정 묵	88. 4.26	진주시 주약동 407-1	각 종 기 어
대 동 산 업 사	최 인 태	89.10. 4	〃 강남동 219	
대 동 정 밀	김 형 태	89. 7. 3	마산시 양덕동 974-17	금 형 및 사 출
대 림 지 동 차	이 승 필	76. 4.30	창원시 창원공업기지 2단지	모 타 사 이 클
대 명 공 업	신 석 기	88.11.24	〃 팔룡동 24-1	중 장 비 부 품
대 신 공 업	윤 영 진	87. 8.21	진주시 상대2동 33-40	농 기 구 부 품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대한화학기계	이상호	84. 6.18	진주시 신촌동 64	보일러타워열교환기
동 광 전 자	김점순	77.10.28	진해시 이동 499-1	전 자 부 품
동명중공업	조현일	87. 7.21	창원시 창원공업기지 2단지	유 압 기 기
동 보 체 인	김유주	89. 4. 6	양산군 정관면 예림리 농공단지	체 인
동 양 기 전	장칠용	89.12. 6	창원시 성주동 48-6	유 압 실 린 더
동 양 물 산	문종용	79. 7.16	〃 창원기계공단 에이-6	농 기 계
동양특수기공	윤삼원	87. 8.13	〃 웅남동 40	자 동 차 부 품
동 환 산 업	전창수	87. 8.11	〃 창원공업기지 2단지	자동차에어콘
두 레 금 속	이홍섭	88. 5. 3	〃 성주동 48-3	자 동 차 휠
두원중공업	김남수	80. 1.14	진주시 주약동 360	해 상 기 제 작
마산·함안기계	이용규	89. 3. 7	함안군 칠원면 오곡리 180-12	콤 프 레 샤
미 원 중 기	허영환	88.11. 2	창원시 신촌동 72	프 렌 트
바칠라캐빈	윤웅규	88. 6. 4	마산시 창포동 3가 8-1	토 일 레 이 트
범 한 금 속	김대근	75. 5.12	창원시 창원기계공단 디-2지구	밸브, 간이음쇠
동 림 산 업	김선호	87. 8.12	〃 성주동 43	철 구 조 물
부산산업기계	정문영	87. 8.13	〃 내동 456-9	선재, 산업기계
부 영 공 업	김학술	87. 8.11	〃 창원공업기지 2단지	비 철 금 속
삼미종합특수강	김진호	86.12. 3	〃 신촌동 66	특 수 강
삼 성 공 업	이순오	87. 8.30	진주시 상대동 33-4	자 동 차 정 비
삼성라디에터	조현학	85. 4. 3	창원시 내동 456-4	라 디 에 터
삼 송	김호규	88. 1.28	〃 성주동 52-3	자동차안전벨트
삼 우 금 속	최동환	80. 6.10	〃 남신동 604-17	표 면 처 리
삼 우 산 기	정재은	89.12. 4	〃 신촌동 71	단 조, 체 인
삼 원 금 속	박덕춘	77. 5. 2	김해시 안동 430-5	안 테 나
삼천리자전거	문주빈	80. 9.20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289	자 전 거
삼 풍 공 업	박창구	89. 5. 9	〃 정관면 농공단지	자 동 차 부 품
삼 화 기 계	서정엽	88. 5.14	창원시 웅남동 53	산업용냉동기
서 륭 기 계	이승우	89. 3.23	양산군 양산읍 북정리 6-1	프 레 스
성광기계공업사	김영준	89. 2.12	마산시 회성동 231-5	공 작 기 계
성 우 금 속	전광영	88. 7. 7	양산군 정관면 달산리 농공단지	자 동 차 부 품
세 방 전 자	김환수	76. 7.28	창원시 남신동 601-2	축 전 지
세 신 실 업	이진희	75.11.20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34-14	양 식 기
세 신 정 밀	정병철	88. 4.21	〃 양산읍 산막리 311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세 일 공 업	정필규	88. 4.11	진주시 상대동 33-50	농기계기어부품
세 일	이제수	88. 6. 9	함안군 산인면 산인특별농공단지2-5	자 동 차 부 품
신 동 광 학	주영기	88. 7.12	창원시 팔용동 29-3	광 학 기 재
신 동 금 속	이두혹	87. 8.21	양산군 양산읍 정관면 농공단지	자 동 차 부 품
신 명 공 업	박남용	88. 4.18	창원시 외동 853-10	자동포장기계
신 신 기 계	김영구	87. 8.12	양산군 정관면 예림리 940-13	산 업 용 펌 프
신우산업기기	김동명	89. 1. 7	〃 양산읍 유산리 453	콘 테 이 너
쌍용중공업	김진완	87. 8.13	창원시 창원공업기지 2단지	디 젤 엔 진
아 주 금 속	강기수	87. 7.27	〃 양곡동 176-5	자 동 차 주 물
양 지 금 속	강성덕	88.12. 6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4	자 동 차 부 품
얼 노 이 코	현호진	88. 3. 2	진해시 우동 982	
영 진 기 계	김춘배	89. 3.17	김해시 안동 161-7	농 기 구 부 품
영 흥 철 강	노영래	87. 9.17	창원시 신촌동 71-2	와 이 어 로 프
오 성 사	이현대	87. 8.16	〃 남산동 601-6	전자기계부품
우 성	이증수	87. 8.16	진주시 상평동 212-2	농 기 계 부 품
우 신 흥 산	김인철	89. 8.17	양산군 양산읍 하북정리 291-6	자 동 차 부 품
유 성 금 속	안병무	88. 4. 3	〃 웅상면 덕계리 389	알 미 늄
진 성	박성출	90. 9.20	〃 웅상면 평산리 260-18	
장 원	손계연	88. 4.22	〃 웅상면 주남리 544-1	스 텐 파 이 프
제 일 정 밀	이양재	81. 6.18	창원시 내동 456-8	정 밀 부 품
종 합 기 계	윤동규	89. 6.12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85	용접자동화기계
진 흥 철 강	송낙철	88. 3.30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33-1	아 연 철 선
창 신 산 업	박칠도	87.10. 6	창원시 양곡동 192-4	주 물
창 원 공 업	주일규	87. 9. 5	〃 남산동 604-4	단 조 품
충무연합조선	설재국	88. 1.30	충무시 봉평동 162-4	목 조 선
대광특수기계	조춘실	87. 8.10	창원시 신촌동 76	제지기, 감속기
태 양 코 팅	이순호	89. 9. 1	〃 성산동 43	주 방 용 기 구
태 일 전 자	박재원	88. 4.26	진주시 하대동 641-33	컴 퓨 터 헤 드
태 주 실 업	김명헌	88. 9. 9	창원시 성주동 48-5	주 물
태평양밸브	황강연	89. 4.23	양산군 양산읍 산막리 310-8	밸 브
풍 성 전 기	정홍식	89. 3.10	창원시 창원기계공단 2단지 5	전 장 품
풍 성 정 밀	박치봉	80. 5.24	〃 외동 853-5	자동차계기류
한 국 금 속	이영기	87. 8.14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331	냉각압연제품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한국동양유전	이문효	87. 8.20	충무시 도남동 468	전자부품
한국마그넷	김장용	86.12.16	진주시 상대동 33-45	마그넷
한국부사공업	박금수	88. 3. 2	마산시 양덕동 975	합성수지
한국산본	손미자	88. 4.24	〃 봉암동 654-3	시계문자판
한국센트랄	이은진	87. 8.14	창원시 창원기계공단 제2단지	자동차부품
한국스타	김용환	87. 8.14	마산시 양덕동 974-7	전자부품
한국스핀들	김성천	88. 7.18	김해시 안동 161-12	자동차부품
한국씨티즌	김기선	87.12.11	마산시 봉암동 654-4	시계
한국중공업	손석형	87. 7.25	창원시 귀곡동 555	대형엔진
한국중천	최해경	87. 8.11	마산시 양덕동 974-17	타임스윗치모터
한국지엠비	고동권	88.10.15	창원시 창원공업기지 2단지	자동차부품
한국철강	임태진	87. 8.10	마산시 월영동 621	철강
한국카시오	이경희	89. 2. 3	〃 보암동 654-4	전자시계
한국캐니온	오승빈	89. 9. 2	〃 양덕동 975	분무기
한덕산업	전영섭	88.10. 7	〃 봉암동 658-10	못
한일기계	정학영	89. 1.18	양산군 양산읍 북정리 182	
한일단조	최인재	88.11.25	창원시 남산동 에이-6	단조품
한일제관	김종태	87. 8.17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11-1	통조림용공관
현대정공	황호남	87. 7.31	창원시 대원동 85	철도차량
효성기계	김영규	83. 3.26	〃 목동지구 2단지	모타싸이클
효성중공업	이재만	71. 1.24	〃 창원공업기지 에이-1	모타, 변압기
코리아타코마	최태석	87. 8. 9	마산시 양덕동 974-15	조선업

대구 · 경북지역본부

1) 지역본부설립년월일 : 1981년 3월 15일

2) 소 재 지 : 대구시 서구 이현동 44-73번지

3) 전 화 번 호 : 53-0127~8 FAX : 53-0127

4)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연월일
의 장	김 경 조	승 리 기 계 노 동 조 합	1991. 7. 5
부 의 장	김 무 호	평 화 크 랏 치 〃	〃
〃	장 지 태	경 창 산 업 〃	〃
〃	신 동 락	평 화 산 업 〃	〃
〃	이 복 교	삼 림 산 업 〃	〃
〃	박 원 찬	아 세 아 산 업 〃	〃
회 계 감 사	김 정 치	동 남 주 물 〃	〃
〃	강 동 근	대 동 인 터 멧 〃	〃
사 무 국 장	이 길 호	동 서 물 산 〃	〃

5) 대구 · 경북지역본부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경창브레이크	박동일	88. 9. 9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13	자 동 차 부 품
경 창 산 업	장지태	85. 7.20	〃 서구 중리동 1072	〃
경창와이퍼	박무수	88. 9. 7	〃 달서구 갈산동 79-3	〃
금 용 기 계	김주현	90. 3.24	〃 북구 노원3가 666-1	선 박 엔 진
남선알미늄	정대준	68. 8.25	〃 동구 방촌동 1050	알 미 늄
대 건 기 계	박운경	90. 4. 6	〃 달서구 갈산동 37-2	섬 유 준 비 기
대광보일러	공 석	75. 8.18	〃 북구 노원3가 203-1	보 일 러
대 리 정 밀	임종춘	88. 7.14	〃 서구 이현동 44-13	자 동 차 부 품
대 성 정 기	장병국	90. 4.10	〃 달서구 갈산동 400-32	자 동 차 부 품
대 원 기 계	최진환	88.10.10	〃 서구 이현동 44-26	직 기 제 조
대 철 공 업	류호식	70. 2.26	〃 북구 노원3가 205-1	자 동 차 부 품
동 남 주 물	김정치	88. 3.19	〃 달서구 죽전동 142-29	주 물
동 서 물 산	이길호	88. 4.13	〃 달서구 갈산동 100-45	쌀 통
동 양 주 물	이광희	88. 3.19	〃 서구 중리동 1120	주 물
동원금속대구	김주홍	90. 1.31	〃 서구 이현동 42-6	강 관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동 진 금 속	김춘종	78. 8.16	대구시 서구 이현동 42-39	자 동 차 부 품
동 해 전 장	이신렬	89. 2.27	〃 북구 노원3가 35-2	〃
㈜ 동 협	권구창	89. 1.28	〃 북구 노원3가 74-2	금 형 용 골 드
동 협 정 밀	김광섭	88. 3. 6	〃 서구 이현동 42-254	〃
동협제작소	이재길	88. 3.12	〃 서구 중리동 1122	〃
명 성 기 계	이재연	89. 6. 7	〃 달서구 성서공단 32-16	연 동 제 어 기
삼 도 기 전	정문호	87. 8.24	〃 서구 이현동 45-55	자 동 차 부 품
삼 립 산 업	이복교	68. 6.18	〃 북구 노원3가 236-3	〃
㈜ 삼 성	김상현	90. 2.20	〃 북구 노원3가 221	납
삼 익 공 업	김영수	87. 8.18	〃 북구 침산동 750	줄
삼 익 정 공	류병충	89. 8.16	〃 달서구 갈산동 100-75	기 계 제 작
선학알미늄	이영희	69. 2.25	〃 북구 침산3동 342	알 미 늄 제 조
㈜ 성 산	김성태	89. 3. 6	〃 달서구 성서공단 43-4	자 동 차 부 품
세 명 기 업	김연수	75. 6.19	〃 수성구 사월동 464	〃
㈜ 세 원	허만진	87. 8.28	〃 북구 태전동 253-3	〃
세 원 산 업	장현덕	89. 5.13	〃 수성구 신매동 49	주 물
승 리 기 계	김시종	69. 2. 5	〃 달서구 월암동1-7 성서2단지	직 기 제 조
신 삼 익	성두식	88. 8.18	〃 달서구 갈산동 100-75	쌀 통
신 생 공 업	박유현	72. 6. 1	〃 북구 침산3동 260-1	기 계 톱 날
삼 립 전 기	오국진	91. 4.10	〃 북구 검단동 887-4	자 동 차 부 품
삼 성 제 침	주태화	91. 5.25	〃 북구 노원2가 189번지	바 늘
아세아산업	박원찬	80. 3.10	〃 북구 노원3가 220번지	농 기 계
㈜ 아 신	권영만	85.12.19	〃 북구 노원3가 6	도 아 로 크
아 진 산 업	정재화	79. 7.27	〃 서구 이현동 42-66	자 동 차 부 품
영 남 주 물	윤형준	71.10. 1	〃 북구 노원3가 234	주 물
영 일 기 공	서기호	89.12. 1	〃 북구 검단동 887-31	자 전 거 부 품
㈜ 영 진	권태훈	85.11.15	〃 달서구 갈산동 100-52	자 동 차 부 품
오 대 금 속	이욱한	88. 4.23	〃 북구 노원3가 1026	〃
일 지 산 업	곽봉석	89. 2. 1	〃 북구 노원3가 177-1	〃
영남금속공업	이범수	91. 6.28	〃 북구 산격2동 321-3	샷 시 문 고 리
정 안 산 업	김판술	89. 6.13	〃 서구 중리동 1126	철 못
조 광 산 업	서학렬	68. 3.27	〃 북구 칠성2동 123	알 미 늄
평화발레오	박용민	89. 1.28	〃 달서구 장동 성서공단105	자 동 차 부 품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평 화 정 공	오준선	88. 9.12	대구시 서구 중리동 1055	자 동 차 부 품
평화크랏치	김무호	74.11.30	〃 북구 노원3가 214	〃
협립제작소	신기봉	68. 6.10	〃 서구 이현동 42-31	우 산 , 양 산
남 양 금 속	조영민	88.11. 9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	주 물
남 양 정 밀	김진옥	89. 4.20	〃 논공면 본리리 29-54	전 자 부 품
남종농기사	이광호	81. 3.25	김천시 신음동 111-1	농 기 구
대 동 공 업	송경달	84. 2. 5	달성군 논공면 북동 1-2	농 기 계
대동인터멧	강동근	88. 2.16	〃 논공면 본리동 29-18	주 물
대 부 기 공	최태식	89. 5.18	경주군 외동읍 구어리 12-2	자 동 차 부 품
대영베아링	진영환	81. 3.30	김천시 신음동 79-3	베 아 링
대한소결금속	김석철	91. 2. 1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10	중 석 소 결
대한주물공업	김경찬	89. 5.31	안동시 수상동 197-1	배 수 용 주 철
동 국 강 재	공석철	88.11. 1	달성군 논공면 북동 1-16	현 강
동 원 금 속	장상국	86. 4. 7	경산군 진량면 양지동 330-1	자 동 차 부 품
명 신 산 업	김유진	87. 9. 3	〃 황성동 40번지	〃
삼 협 산 업	김운이	87. 4. 6	경산군 진량면 선화리 산55-2	〃
상신브레이크	김외진	87. 7.30	달성군 논공면 북동 1-37	〃
세 왕 금 속	신효재	87. 8.28	영천시 망정동 390	병 마 개
신 아 금 속	김 활	84.10.26	영천시 본촌동 농공단지 6브럭	자 동 차 부 품
신 일 공 업	김월명	. .	영일군 연일읍 오천동 759	기 계 금 속
아세아종합기계	윤태길	87. 6.21	달성군 유가면 금동 168	농 기 계
영 신 정 공	김진구	89. 4.14	경주군 천북면 오야리 408	자 동 차 부 품
영 풍 제 관	김용태	89. 5.31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42	병 마 개
전 우 개 날	이종복	88.12. 8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360	변 압 기 수 리
진영종합기계	이창화	81. 2.10	김천시 대광동 1000-28	농 기 구
평 화 산 업	신동락	69. 7.10	달성군 논공면 본리리 29-17	자 동 차 부 품
평화오일씰	정광진	79.10.17	〃 논공면 본리리 29-88	〃
태 성 산 업	이상홍	92. 3.24	문경군 산양면 진정리 600	〃
한 영 전 자	이호진	90. 5. 7	김천시 백옥동 241-3	전 자
화신제작소	김명수	88. 5. 4	영천시 언하동 412	자 동 차 부 품
K I C 포 항	어재홍	89. 9.20	영일군 영일읍 생지동 386-2	써 비 스 제 조
화 신 테 크	조동권	88. 4.29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44-2	자 동 차 부 품
고 려 전 기	이명희	90.11.29	구미시 공단동 171번지	코 일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생산품
금성마이크로닉스	이천석	87. 8.14	구미시 공단동 624번지	세도우마스
금성부품	서정석	81. 9.16	〃 공단동 191번지	전자부품
금성일렉트론	이종균	90. 2. 9	〃 공단동 171번지	반도체
금성정밀	박병도	87. 8.20	〃 공단동 133번지	데이타계측
금성정보통신	박명환	83. 7. 5	〃 공단동 299번지	교환기
동국종합전자	신송근	87. 8.20	〃 공단동 321번지	카세트
두고전자	변상쾌	89. 2.28	〃 공단동 163번지	PCB-HEATER
두산전자	강희준	87. 8.20	〃 구포동 644번지	전자
새한전자	석경오	88. 6.17	〃 공단동 130-7	PCB
신성기업	이완석	88.10.26	〃 공단동 153번지	〃
실트론	김구연	89. 1.29	〃 임수동 274번지	반도체
오리온금속	이상오	88. 8.15	〃 공단동 158번지	CRT 부품
오리온전기	최창기	82.11. 3	〃 공단동 129번지	CRT 모니터
일성기계	김장수	82. 9. 4	〃 공단동 194번지	염색기건조기
정화	김상일	74. 6. 3	〃 공단동 169번지	PCB-HEATER
클레스트라하우저만	한경석	89. 2.24	〃 황상동 502번지	철재칸막이
태평양금속	정의용	88. 7.16	〃 공단동 298번지	영구자석
한국대화금속	김현철	89. 3.20	〃 공단동 128번지	샷시
한국델코전지	김경구	87. 8.22	〃 황상동 495번지	자동차밧데리
한국신영	김성배	87. 8.18	〃 공단동 102번지	콘덴사
한국아이지모타	박미숙	89. 4. 6	〃 공단동 142번지	소형모터
한국전자	권선국	88.10.23	〃 공단동 149번지	반도체전자악기

부산지역본부

1) 지역본부설립년월일 : 1980년 12월 29일

2) 소 재 지 : 부산직할시 동구 범일동 830-240

3) 전 화 번 호 : 644-4613~4 FAX : 647-8770

4)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연월일
의 장	박 기 식	연 합 철 강 노 동 조 합	1990. 1. 23
부 의 장	김 명 일	제 일 중 기 〃	〃
〃	김 규 호	부 산 정 기 〃	〃
〃	송 성 길	영 진 금 속 〃	〃
〃	박 강 석	대 동 조 선 〃	1991. 2. 29
〃	박 금 영	동 아 전 기 〃	1991. 7. 23
〃	서 복 호	동 국 제 강 〃	1992. 1. 29
〃	구 성 완	연 합 철 강 〃	〃
〃	이 원 희	우 성 벤 드 〃	〃
사 무 국 장	문 창 수	대 선 조 선 〃	1990. 1. 23
회 계 감 사	지 광 혁	대 선 조 선 〃	1991. 7. 23
〃	송 낙 근	대 창 단 조 〃	〃
〃	박 갑 철	고 려 제 강 〃	1992. 1. 29
〃	이 상 순	대 성 사 〃	〃

5) 부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강 남	김중호	78. 3.18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399	선 박
고려용접봉	김희근	84. 6.17	〃 북구 학장동 721-3	용 접 봉
고 려 제 강	박갑철	82. 6. 5	〃 남구 망미동 475	로 프
고 성 산 업	양종숙	87. 8. 5	〃 사하구 신평동 370-12	수 도 밸 브
국 일	권상근	87. 8.26	〃 북구 삼락동 361-7	차 량 부 품
국 제 밸 브	이인철	84. 4. 8	〃 북구 주례동 690-14	밸 브
극 동 금 속	박기성	89. 4. 3	〃 북구 감전동 124	선 재
남 성 조 선	배석진	80. 2.25	〃 사하구 감천동 391-1	조 선 업
대 동 조 선	박강석	75. 1. 9	〃 영도구 대평동 1가 160	조 선 업
대 립 정 기	정인섭	91. 4. 3	〃 사하구 신평동 509	프 레 스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대 립 철 공 장	조 창 섭	91. 3. 28	부산시 북구 주례동 689-16	프 레 스
㈜대립철공장	김 재 곤	88. 10. 26	〃 사하구 신평동 510	프 레 스
대 명 공 업	최 순 규	88. 3. 3	〃 북구 학장동 728-11	차 량 부 품
대 보 산 업	주 이 철	89. 3. 12	〃 북구 감전동 948-1	금 형 제 작
대 선 조 선	지 광 혁	68. 12. 3	〃 영도구 봉래동 4가 12	조 선 업
대 성 사	하 상 순	76. 3. 30	〃 동래구 안락동 107-16	차 량 부 품
대 영 기 계	유 경 조	88. 12. 16	〃 북구 주례2동 193	기 계 제 작
대 일 공 업	이 재 하	85. 6. 5	〃 금정구 금사동 111-16	기 어
대 창 단 조	송 낙 근	75. 5. 10	〃 북구 감전동 952-3	크 랑 크
대 창 주 강	고 병 효	90. 4. 10	〃 사하구 다대동 1508-5	주 강
대 한 제 강	이 한 휴	89. 4. 20	〃 사하구 신평동 370-16	철 강
동 국 제 강	서 복 호	87. 9. 1	〃 남구 용호1동 177	앵 글 철 근
동기브레이크	오 갑 진	89. 7. 4	〃 사하구 신평동 527	라 이 닝
동 승 기 업	배 공 희	87. 9. 1	〃 해운대 반여1동 791-1	차 량 부 품
동 신 금 속	유 성 근	88. 6. 4	〃 북구 학장동 235-2	동 파 이 프
동 아 금 속	이 규 보	89. 2. 20	〃 북구 학장동 279-7	기 계 부 품
동아금속공업	정 성 수	89. 1. 5	〃 북구 학장동 261-6	차 량 부 품
동 아 전 기	박 금 영	77. 8. 1	〃 사하구 신평동 38	스 윗 치
동 영 공 업	김 종 기	87. 10. 18	〃 북구 학장동 748-9	벨 브
동 진 전 기	정 남 진	89. 2. 18	〃 북구 학장동 286-13	전 기 모 타
동 화 정 기	김 재 술	87. 9. 10	〃 사하구 다대동 1506-2	선 박 의 장
만 호 제 강	이 동 순	73. 11. 21	〃 북구 화명동 1130-1	로 프
명 성	김 병 규	76. 7. 31	〃 사하구 구평동 101-1	라 이 타
미 진 금 속	최 호 영	75. 10. 29	〃 북구 괘법동 800	관 이 음 쇠
부 국 금 속	류 채 주	87. 3. 23	〃 사하구 신평동 370-43	황 동 판
부 산 링 구	김 병 옥	78. 4. 30	〃 북구 주례동 703	차 량 부 품
부산수리조선	김 민 원	87. 9. 7	〃 영도구 봉래동 5가 29	선 박 수 리
부 산 전 기	이 상 윤	88. 3. 1	〃 해운대 반여1동 1063-2	전 자 부 품
부 산 정 기	김 규 호	79. 3. 1	〃 금정구 부곡동 820-2	미 싱 제 작
부 산 조 선	홍 신 택	78. 7. 3	〃 영도구 청학동 330	조 선 업
부 영 철 강	장 경 화	89. 7. 2	〃 북구 학장동 724-5	선 재 압 연
삼 공 사	문 판 술	87. 2. 13	〃 사하구 신평동 532	선 박 비 품
삼 성 기 업	조 용 철	87. 8. 25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04	철 도 차 량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삼원포장기	박재준	88.12.28	부산시 북구 모라동 211-13	포 장 기
삼 창 기 계	노원식	79. 6.26	〃 북구 학장동 732-2	산 업 기 계
삼천리열처리	이성국	87. 8.24	〃 북구 삼락동 353-5	기 계 부 품
상 농 기 업	하창희	78. 8.28	〃 금정구 부곡동 296-6	플 러 그
서 일	허중구	88. 6.27	〃 사하구 신평동 561	실 린 다
서일 PCM	백주식	89. 4. 8	〃 사하구 장림동 316-9	차 량 부 품
서 흥 화 학	정경흡	90. 6. 1	〃 사하구 장림동 1089-5	철 구 조 물
성 광 벤 드	조용석	75.11.19	〃 사하구 신평동 520	벤 드
성 요 사	손인환	87. 9.12	〃 해운대 반여1동 1020	전 자 부 품
성 일 기 계	김주은	87. 8.13	〃 사하구 다대동 1504-3	엔 진
세 동 산 업	공규수	88. 4.18	〃 남구 감만동 254-48	금 속 용 기
세 웅 선 박	최동만	89. 3.18	〃 영도구 봉래동 5가 29	조 선 업
세 진	전진홍	89. 2. 2	〃 영도구 봉래동 5가 29	조 선 업
세 창 기 업	박무종	88. 6.15	〃 사하구 구평동 9	완 구
신 동 방	문춘희	75.11. 9	〃 동래구 연산1동 581-4	철 문 짝
신 서 공 업	김부일	90. 9.19	〃 사하구 감천동 181-1	초 경 공 구
연 합 철 강	구성완	77. 2.12	〃 남구 감만동 588-1	냉 연 강 판
영 신 기 계	김선종	82. 6.14	〃 북구 감전동 140-9	신 성 기
영 진 금 속	송성길	88. 3.28	〃 북구 삼락동 76-9	CY 부 품
오리엔탈정공	권동재	90. 2.17	〃 사하구 신평동 370-18	조 선 자 재
우 성 벤 드	이원희	88. 4. 9	〃 북구 삼락동 74-6	관 이 음 쇠
우 일 중 기	오복근	89. 2.13	〃 사하구 신평동 543	산 업 기 계
인 동 공 업	최덕주	88.11.30	〃 북구 괘법동 577-7	차 량 부 품
일 신 금 속	성경원	91. 7.30	〃 북구 학장동 289-5	압 력 조 정 기
적 고	이승우	88. 7.12	〃 사하구 감천1동 702	시 계 부 품
제 일 기 계	오삼석	89. 9.23	〃 사하구 다대동 1513-3	공 작 기 계
제 일 유 기	조성래	77. 3.19	〃 사하구 신평동 370-13	스 윗 치
제 일 중 기	김명일	76. 2.25	〃 사하구 다대동 1519-3	산 업 기 계
조 광 공 업	박병식	89.12.16	〃 북구 감전동 156-14	벨 브
조 기	강영일	67.12.17	〃 영도구 대평동1가 101	기 계 수 리
조 선 선 재	김용호	88. 7.26	〃 남구 우암1동 39	용 접 봉
진 양 기 계	서복만	87. 9.13	〃 사하구 신평동 370-6	베 아 링
진 흥 물 산	한철호	89. 1.13	부산시 북구 학장동 226-7	도 금 철 사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태 광 벤 드	김 상 복	76. 2. 6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534	벤 드
태 양 사	이 형 연	87. 8. 11	〃 북구 덕포동 267-1	식 기 류
풍 산 정 밀	김 광 호	91. 7. 3	〃 해운대구 반여1동 1063-2	프 레 임
한 국 기 계	이 한 용	89. 6. 2	〃 사하구 신평동 493	콤 베 아
한 국 선 재	최 상 용	89. 5. 8	〃 북구 감전1동 148-1	도 금 철 사
한 국 아 루 마	김 진 생	78. 7. 23	〃 사하구 장림동 109-3	특 수 도 금
한국오루강침	정 운 국	89. 4. 5	〃 북구 모라동 660-1	미 싱 바 늘
한 국 주 철 관	김 정 호	80. 4. 19	〃 사하구 신평동 370-19	주 물
한 보 철 강	양 정 식	80. 2. 26	〃 사하구 구평동 90	철 강
한 일 정 기	박 의 철	89. 2. 8	〃 북구 학장동 257-19	철 강
한 진 금 속	강 양 수	81. 3. 9	〃 북구 학장동 749-6	주 물
한진섬유기계	오 봉 출	70. 4. 19	〃 금정구 부곡동 799	직 기 제 작
한 진 중 공 업	정 상 채	63. 5. 25	〃 영도구 봉래동 5가 29	조 선 신 조
해 성 공 업	김 병 수	89. 9. 19	〃 사하구 신평동 559	차 량 부 품
현 대 철 강	김 조 현	89. 1. 20	〃 사하구 장림2동 367	철 강
형 진 공 업	이 종 동	89. 7. 16	〃 북구 학장동 718-6	못 , 철 사
효 성 전 기	구 영 희	88. 12. 2	〃 북구 덕포동 383-2	모 타
연 합 조 선	이 창 만	57. 10. 15	〃 영도구 대평동 1가 122	조 선 업
한 국 이 연	윤 지 만	87. 8. 11	〃 사하구 장림1동 333-2	장 식 용 전 구
신 일 금 속	김 창 호	75. 12. 12	〃 북구 학장동 723-4	주 물
부 산 주 공	이 재 섭	88. 4. 20	〃 북구 학장동 715	주 물

울산지역본부

1) 지역본부설립년월일 : 1989년 1월 5일

2)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68-7번지

3) 전 화 번 호 : 74-9631 FAX : 74-9631

4)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연월일
의 장	오 진 현	한국프랜지 노동조합	1992. 1. 25
부 의 장	박 영 구	럭 키 금 속 〃	〃
〃	박 성 식	영 풍 산 업 〃	〃
사 무 국 장	천 영 우	대한알루미늄 〃	〃
회 계 감 사	김 영 곤	고 려 아 연 〃	〃
〃	이 용 우	현대알루미늄 〃	〃

5) 울산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고 려 아 연	김영곤	79.10. 9	울산군 온산면 대정리 505	아 연
대 덕 금 속	안수율	89. 4. 4	울주군 언양면 동부리 398-2	자 동 차 부 품
덕 양 산 업	신성건	87. 8.14	울산시 중구 연암동 945	자 동 차 부 품
동 희 산 업	배상문	87. 8.11	〃 남구 황성동 218	자 동 차 부 품
대한알루미늄	천영우	78. 8. 3	〃 남구 여천동 1	인 코 트
두 정 산 업	전병근	88. 4. 5	〃 중구 효문동 176	자 동 차 부 품
동 방	최기선	89.10. 5	〃 남구 여천동 231-1	자 동 차 부 품
럭 키 금 속	박영구	80. 5.16	〃 온산면 대정리 70	전기동,금,은,세레늄
부 산 기 업		89. 5. 8	〃 남구 여천동 750-2	자 동 차 부 품
세 종 공 업	장한규	88. 3.24	〃 중구 효문동 800-1	마후라, 프레스
세 찬 산 업	윤상원	88. 4. 5	〃 중구 연암동 496-1	자동차내장,시/티프론트
삼 주 기 계	이채영	88.12.12	〃 중구 효문동 750-1	자 동 차 부 품
세 운 공 업	박용도	87. 8.13	경주군 외동읍 모화리1747-60	철구조물,자동차부품
세 일 공 업	서정호	89. 1.14	울산시 중구 연암동 906-1	자 동 차 부 품
우 영 산 업	김인규	87. 9. 1	〃 중구 연암동 714-15	자동차몰딩,도아샷시
영 풍 산 업	박성식	88. 1.15	〃 중구 연암동 933	도장, 철구조물
인 성 산 업	허남백	87. 8. 6	〃 남구 여천동 801	공드럼, 아스팔트
유 진 기 업	김동주	88. 7. 6	울산군 웅촌면 대북리 491-40	자 동 차 스 프 링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정 일 공 업	김복천	87. 8.10	울산시 중구 효문동 212-11	자동차피스톤, 워터펌프 대형브레이크
한국프랜지	오진현	87. 8. 7	〃 동구 동부동 194	프랜지, 의장품 크레이닝,자동부품
현 대 강 관	정 철	87. 8. 5	〃 중구 염포동 282	스 틸 파 이 프
현대철탑산업	이두희	88. 8.27	〃 동구 미포동 6	철 탑 제 조 업
현대전동기	박종진	88. 6.23	〃 동구 일산동 350	소 형 모 터
현대알루미늄	이용우	87. 8. 3	울산군 상북면 길천리 1-26	알미늄샷시형재
한 일 이 화	박상근	87. 8.11	울산시 중구 연암동 925-1	대형셋트,소형내장제품
한진중공업	최윤택	87. 8. 5	〃 남구 용잠동 492	선 박 건 조
현 대 공 업		89. 3. 2	〃 남구 부곡동산 90-7	시 트 아 세 이
한라선재공업	유순근	89.10.25	〃 중구 효문동 7001-1	자 동 차 부 품
현 대 상 사	김성관	89. 5.27	울산군 상북면 길천리 1	알 미 늄 조 립
효 성 금 속	김무웅	79. 2.23	〃 온산면 원산리 919	콘테이너,알미늄샷시 조립식주택압연강판
한국산업써비스	이선택	91. 3.28	울산시 남구 선암동 306-1	모 터 수 리
한국경금속	노상인	91.11.12	울산군 온산면 원산리 969-3	자 동 차 부 품

광주 · 전남지역본부

1) 지역본부설립년월일 : 1980년 12월 30일

2) 소 재 지 : 광주 직할시 북구 유동 40

3) 전 화 번 호 : 524-8581 FAX : 528-8671

4)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연월일
의 장	정 기 춘	화 천 노 동 조 합	1990. 1. 12
부 의 장	최 성 진	서 울 자 체 〃	〃
〃	박 준 근	태 성 기 공 〃	〃
사 무 국 장	신 용 석	금 성 알 프 스 〃	〃
회 계 감 사	김 재 남	서 울 프 레 스 〃	〃
〃	박 정 호	금 성 기 계 〃	〃
〃	전 상 근	한국신광전자 〃	1991. 1. 25

5) 광주 · 전남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경 안 실 업	박 태 기	88. 7.20	전남 승주군 서면 압곡리 1019	강 관 , 강 단
광 동 정 밀	김 영 주	91. 4.24	〃 승주군 서면 선평리 256-5	제 철
광양종합기계	국 선 호	90. 4.24	〃 목포시 석현동 1168-3	선박용디젤엔진
광 일 기 공	강 정 원	87. 8.17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4	자 동 차 부 품
금 강 정 공	손 대 옥	88. 8.19	〃 광산구 소천동 824	〃
금 성 기 계	박 정 호	78. 4. 4	〃 광산구 장덕동 984	〃
금 평 전 자	이 점 례	88. 6.11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134	전 자 부 품
기 광 산 업	이 상 수	90. 6.11	광주시 서구 내방동 128-1	자 동 차 부 품
남 선 선 반	김 문 칠	78. 7.17	〃 광산구 장덕동 975-8	공 작 기 계
남 선 정 밀	설 동 희	91. 6.21	〃 광산구 장덕동 982-7	〃
대 산	유 영 선	87. 8.24	〃 광산구 장덕동 984-1	자 동 차 부 품
대 신 기 업	김 남 균	91. 4.20	〃 북구 신안동 237-67	〃
대 아 산 업	박 형 봉	87. 8.21	〃 광산구 장덕동 990-1	자 동 차 시 트
대 우 모 터	조 인 섭	92. 3. 6	〃 광산구 장덕동 9881-1	
대 창 기 계	김 명 철	89. 4.15	전남 여수시 국동 37-345	선 박 부 품 가 공
대 창 정 비	박 형 봉	80.12.26	광주시 북구 두암동 883-2	자 동 차 정 비
부 국 산 업	최 낙 종	88.11. 1	전남 동광양시 금호동 627	제 철
부 국 철 강	정 남 제	88.11. 6	〃 승주군 서면 선평리 267	〃
삼 진 기 업	장 문 규	88.12.30	〃 동광양시 태인동 125-33	〃
서 울 프 레 스	장 용 주	81. 3.28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2-5	자 동 차 부 품
아 륭 기 공	김 경 범	87. 8.11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681-1	유 압 유 니 트
아시아자동차	김 종 식	74. 3. 8	광주시 서구 내방동 700	자 동 차
영 화 산 업	이 계 길	88. 6.18	〃 광산구 장덕동 990-18	자 동 차 부 품
제 철 설 비	유 희 동	89. 8. 5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656-4	설 비 제 작 정 비
천 기 제 강	이 은 정	85. 6.10	〃 승주군 서면 압곡리 291	와 이 야 로 프
케 엠 사	배 영 철	91. 1.17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854	밀 장 비 , 선 구
하 남 전 자	박 기 출	85. 3.17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5-1	알 미 늄 케 스
한국신광전자	전 상 근	89.11.26	전남 승주군 서면 선평리 35	전 자 부 품
한 성 금 속	최 성 복	90. 5.14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85-9	알 미 늄 합 판
화 천	최 광 현	77. 3.28	〃 광산구 장덕동 976-1	공 작 기 계

포항지역본부

1) 지역본부설립년월일 : 1992년 11월 23일

2) 소 재 지 : 포항시 대도동 630-11번지

3) 전 화 번 호 : 83-3728~9 FAX : 83-3729

4)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소 속 노 동 조 합 명	선출연월일
의 장	백 종 부	부 산 파 이 프 노 동 조 합	1991. 11. 23
수 석 부 의 장	강 학 중	성 림 기 업 〃	〃
부 의 장	신 엄 현	삼 정 강 업 〃	〃
〃	정 용 근	동부제강(지부) 〃	〃
회 계 감 사	김 찬 규	흥 화 공 업 〃	〃
〃	정 명 연	삼 풍 공 업 〃	〃
〃	배 상 일	동 양 석 판 〃	〃

5) 포항지역본부 산하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생산품
강원산업	장경식	87. 7.19	포항시 송내동 444	철강제품
거양개발	이희형	91. 5.16	〃 죽도2동 51-7	철골
대동철강	이상득	88. 8. 2	〃 호동 601	철강
대성기업	최부식	89. 2.21	〃 동촌동 5	포철중간공정
도금강판	김종암	90.12.11	〃 장흥동 470	철강
동일기업	장문식	88. 7. 3	〃 동촌동 138	포철중간공정
동성철강	박정국	90. 5. 6	〃 괴동동 1095-1	철판기공
동양석판	배상일	88. 8. 8	〃 장흥동 34	석판, 압연
동양기공	서문환	89. 6.28	〃 괴동동 558-2	가스용기
동국산업	진강화	89. 3. 2	〃 장흥동 547	앵글, 철근
동방금속	김종훈	89. 7. 1	〃 호동 567	특수선재
범아엔지니어링	금용희	88.12.14	〃 동촌동 5	측량
부산파이프	정해용	74. 3.11	〃 장흥동 14-1	강관
삼정강업	신엄현	89. 2. 8	〃 괴동동 967	포철중간공정
삼풍공업	정명연	88. 6.28	〃 송내동 1	〃
성림기업	강학중	88. 8. 1	〃 대도동 94-1	〃
서한정기	김진수	89. 6.10	〃 장흥동 1828	
세아특수강	조용원	89. 3.20	〃 장흥동 747	냉각압조용
서울용접봉	최위택	89. 3.24	〃 괴동동 558-1	포철중간공정
제철정비	조희규	88. 6.26	〃 장흥동 322-1	정비
조선선재	이창호	88.12. 5	〃 장흥동 865	선재
코스틸	김용수	88. 4.24	〃 호동 286	철근
태성기공	이두용		〃 괴동동 843-3	철골
포항로공업	정용길	88. 6.29	〃 호동 611	고로보수
포항종합제철	김대현	88. 6.29	〃 괴동동 1	철강
한국오리엔탈메탈	최한수	87. 8.13	〃 괴동동 777	칼라시트
홍화공업	김찬규	87. 8.25	〃 괴동동 24	철골
한금	김웅진	91. 2.20	〃 호동 20 제2연관지	냉각, 압연
한진기업	이태환	88.12.12	〃 동촌동 5	포철중간공정
화성기업	김창원	89. 3.12	〃 동촌동 5	〃

○ 전북지역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동 양 기 업	박창복	88. 4.28	군산시 경암동 486-7 √	재 단 가 위
삼 미 정 공	서경호	89. 3.20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402	정 밀 베 아 링
우 민 주 철	강승흡	87.11.10	군산시 소룡동 466 √	상 수 도 관
윤 성 공 업	조영곤	88. 8.14	이리시 인화동 1가 78 √	전 기 소 케 트

○ 강원지역 단위노조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 생 산 품
속 초 지 역	신종찬	88. 3.18	속초시 금호동 482-5 √	조 선 신 조
한 일 전 기	장석웅	74.10.24	원주시 우산동 공업단지 10브럭 √	가 전 제 품
21세기기계	박재용	91. 7.11	강릉시 입암동 21-6 √	자 동 차 부 품
서 한 밴 틱 스	김기환	92. 3.16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 반계리 5-30	〃

2. 지부현황

지부명	지부장	설치년월일	소재지
경방기계			
반월지부	강영석	88. 6. 25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B604-11
금성사			
구로지부	박승리	63. 5. 30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459-9
구미지부	천광희	63. 5. 30	경북 구미시 공단동 184
김해지부	백도시	63. 5. 30	경남 김해시 안동 259-1
창원1공장지부	이문희	63. 5. 30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391-2
창원2공장지부	김이식	63. 5. 30	경남 창원시 중앙동 창원공업기지2단지 1B
청주지부	전웅빈	63. 5. 30	충북 청주시 향정도 50
평택지부	나찬경	63. 5. 30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청호리 산19-1
기아특수강			
인천지부	강금형	78. 2. 10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0-8
대우전자			
광주지부		83. 3. 28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18-1
구미지부	이해석	83. 3. 28	경북 구미시 공단동 296
인천지부	강태정	83. 3. 28	인천시 남구 용현동 604
주안지부	신용철	83. 3. 28	인천시 서구 가좌동 541-5
대한전선			
안양지부	강익화	76. 6. 15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855
시흥계전지부	김영배	76. 6. 15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993-4
시흥전선지부	최쇠묵	76. 6. 15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113-119
동부제강			
부산지부	김득수	66. 4. 29	부산시 북구 학장동 725-4
인천지부	최재영	66. 4. 29	인천시 서구 가좌동 590-1
포항지부	정용근	88. 7. 20	경북 포항시 괴동동 792-1
동아건설			
미사리지부	민병용	74. 6. 29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5
부산지부	김덕갑	74. 6. 29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37
부평지부	김창수	74. 6. 29	인천시 북구 부평동 70
정비사업소지부	박용재	74. 6. 29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32-1
로옴코리아			
구로지부	문선자	78. 6. 27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2

지 부 명	지 부 장	설치년월일	소 재 지
세 진 전 자			
오 산 지 부	유 재 열	77. 1. 23	경기도 오산시 가정동 157
금 성 전 선			
군 포 지 부	이 우 창	87. 9. 24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200
안 양 지 부	조 필 구	87. 12. 24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55
구 미 지 부	김 종 국	77. 6. 1	경북 구미시 공단동 190
삼 선 공 업			
구 로 지 부	박 춘 길	88. 6. 22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345-11
창 원 지 부	김 병 기	88. 8. 23	경남 창원시 성주동 54
만 도 기 계			
경 주 지 부	김 상 택	87. 9. 14	경북 경주시 황성동 19
평 택 지 부	이 상 화	〃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단호리 343
기 아 써 비 스			
광 주 지 부	장 덕 남	80. 9. 30	광주시 서구 광천동 262
대 구 지 부	이 상 백	〃	대구시 북구 노원3가 558
대 전 지 부	조 선 철	〃	대전시 동구 대화동 1-15
부 산 지 부	이 석 규	〃	부산시 북구 남전동 159-5
성 동 지 부	박 찬 석	〃	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167-6
시 흥 지 부	심 준 섭	〃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514-5
영 등 포 지 부	박 성 근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 16-2
원 주 지 부	최 명 호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50
본 사 지 부	강 범 모	〃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514-5
창 원 지 부	김 성 현	〃	경남 창원시 대원동 78
수 원 지 부	권 태 완	〃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546
인 천 지 부	이 정 호	〃	인천시 서구 가좌동 106
청 주 직 할	김 홍 기	〃	충북 청주시 심봉동 158
서 울 차 체			
광 주 지 부	권 일 수	67. 11. 3	광주시 서구 내방동 643
시 흥 지 부	김 명 식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272
창 원 지 부	선 종 현	〃	경남 창원시 차룡공단 10-3 블럭
두 산 기 계			
창 원 지 부	김 송 수	87. 8. 18	경남 창원시 애원동 80
기 아 자 동 차			
아 산 지 부	손 승 수	61. 10. 24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이화리 1122

지 부 명	지 부 장	설치년월일	소 재 지
일 진			
통 신 지 부	송 정 규	87. 9. 18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2리 산7
쌍 용 자 동 차			
영 등 포 지 부	최 성 호	87. 7. 3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35-8
인 천 지 부	최 천 희	〃	인천시 북구 효성동 395
판 매 지 부	배 범 식	〃	서울시 중구 저동2가 24-1 사서함2123
국 제 전 선			
전 주 지 부	구 창 섭	89. 3. 18	전북 전주시 팔복동 3가 408
대 우 전 자 부 품			
안 양 지 부	김 영 환	89. 12. 9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43
안 성 지 부	최 종 권	.89 4.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승두리 598-26
정 주 지 부	유 병 상	89. 10. 28	전북 정주시 양재동 19
반 도 기 계			
반 월 지 부	강 일 수	89. 8. 31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1058-7
경 동 산 업			
대 구 지 부	정 영 욱	90. 10. 1	경북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103-4
대 림 통 상			
인 천 지 부	박 병 두	87. 8. 10	인천시 서구 가좌동 570-8
부 평 지 부	김 호 인	〃	〃 북구 부평동 319
김 포 지 부	이 국 희	〃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금곡리 158-3
대 우 중 공 업			
안 양 지 부	임 동 국	61. 12. 10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 462-2
영 등 포 지 부	조 호 현	〃	〃 광명시 철산동 120-3
창 원 지 부	서 석 교	〃	경남 창원시 남산동 601-4
대 우 통 신			
소 래 지 부	김 윤 제	81. 3. 2	경기도 시흥시 대양동 360-3
주 안 지 부	유 건 준	〃	인천시 북구 십정동 563-5
진 도			
부 평 지 부	이 용 선	86. 1. 30	인천시 북구 작전동 505
인 천 지 부	김 승 곤	〃	〃 남구 도화동 1-46
온 양 지 부	양 희 우	〃	경남 울주군 상북면 길천리 1-26
한 국 샤 프			
가 좌 지 부	정 동 숙	90. 9. 1	인천시 서구 가좌도 570-1

지 부 명	지 부 장	설치년월일	소 재 지
한국종합기계			
창원지부	정병철	68. 3. 21	경남 창원시 내동 452-9
한독			
반월지부	문미옥	68. 3. 21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475-1 15브럭 30롯트
한영알미늄			
안산지부	김갑수	86. 1. 18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833-2
후지카대원전기			
구로지부	김종일	68. 3. 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1-1
AMK서울지부	김형숙	88. 7. 5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569-6
연합전선목천지부	최기섭	91. 7. 1	충남 천안군 목천면 소사리24-2
남선알미늄지부	김선희	68. 8. 25	경북 달성군 논공면 본리동 29-13
동해전장지부	정한근	89. 2. 27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076-4
화신제작소지부	윤승오	88. 5. 4	〃 북구 태전동 695호
화신테크지부	이광수	88. 4. 9	〃 달서구 갈산동44B 2L
럭키금속 장안	김용겸	80. 5. 19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임리 78
정일공업 평택	조백중	87. 9. 21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을포리 28-5
경안실업 광양지부	이정우	90. 7. 20	경북 포항시 호동 1849번지
고려제강			
수영지부	이재근	88. 1. 26	부산시 남구 망미동 475
양산지부	이창석	85. 8. 15	경남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 753-1
유산지부	김타환	84. 8. 19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131-1
대동조선			
진해지부	강윤복	88. 8. 27	경남 진해시 원포동 139
대일공업			
언양지부	공민근	89. 1. 21	경남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214
동국제강			
인천지부	배상철	89. 2. 28	인천시 중구 송현1동 1
포항지부	김정영	87. 9. 1	경북 포항시 포철2연관단지 18B
상농기업			
양산지부	김진태	78. 8. 28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476-68
창원지부	박인규	78. 8. 28	경남 창원시 성주동 50-1
한국주철관			
포항지부	김수용	80. 4. 19	경북 포항시 청림동 1-138

지 부 명	지 부 장	설치년월일	소 재 지
만 호 제 강			
부 산 지 부	서 득 열	73. 11. 21	부산시 북구 화명동 1130-1
양 산 지 부	정 화 영	76. 1. 8	경남 양산군 양산읍 유산리 259
고 려 상 사			
감 전 지 부	심 재 수	87. 5. 23	부산시 북구 감전동 162-8
삼 락 지 부	송 재 정	〃	부산시 북구 삼락동 121-6
금 성 산 전			
서 울 지 부	박 지 준	87. 7. 27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65-1
오 산 지 부	조 창 복	〃	경기도 오산시 736
창 원 지 부	정 주 오	〃	창원시 정동 창원기계공단 2지구
금 성 알 프 스			
광 주 지 부	박 종 덕	74. 10. 7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978-1
대 한 화 학 기 계			
인 천 지 부	박 문 규	88. 8. 7	인천시 북구 효성동 238-1
삼 미 종 합 특 수 강			
울 산 지 부	김 주 섭	88. 11. 25	울산시 남구 여천동 250
세 방 전 지			
광 주 지 부	조 희 권	89. 12. 16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500-4
한 국 중 공 업			
서 울 지 부	양 태 만	87. 7. 1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7
한 국 철 강			
창 원 지 부	배 동 한	87. 8. 10	창원시 신촌동 70
한 일 제 관			
수 원 지 부	김 종 근	87. 8. 17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12
효 성 중 공 업			
영 등 포 지 부	박 희 원	71. 1. 2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4
태 능 관 리 소	이 훈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48-1
삼 정 강 업	정 순 종	89. 8. 5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61-19
광 양 지 부			
범 아 엔 지 어 링	김 성 수	89. 1. 6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125-109
광 양 지 부			

지 부 명	지 부 장	설치년월일	소 재 지
부 산 파 이 프 서 울 지 부	마 성 숙	74. 3. 11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80-15
포 항 로 공 업 광 양 지 부	하 종 선	88. 6. 29	전남 광양군 태금면 금호리 615
포 항 제 철 광 양 지 부	김 치 수	88. 6. 29	전남 동광양시 금호동 700
두산전자 괴산지부	윤 재 철	87. 8. 16	충북 괴산군 증평읍 용강리산 66-1
태평양금속 부평지부	신 용 일	87. 8. 17	인천 북구 장산동 14-3

3. 신규조직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미강철강	오명환	91.12.12	경기도 부천시 중구 내동 259	철강업
동양보일러	정치언	91.12.18	〃 오산시 가장동 119-1	산업용보일러
가남자동차	김영일	92. 1.15	〃 여주군 가남면 태평3리	자동차정비
삼신전기	김영균	92. 1.18	〃 안산시 원시동 778-7	자동차부품제조업
강일	김찬모	92. 1.31	〃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금속제조업
우암데이타	홍재표	92. 2.21	〃 성남시 상대원1동 148	컴퓨터및주변기기
우진	정숙현	92. 3.10	〃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534	전자제품
신일공업	정택인	92. 3.11	〃 안산시 성곡동 594-3	수도꼭지등
일성기계	장수만	92. 3.16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5028	쇼핑백제단기인쇄기
동양피스톤	문명석	92. 3.18	〃 안산시 신길동1050 B 601-21	피스톤
동국제관	조일수	92. 3.28	〃 인천시 북구 효성동 385-17	드럼통제작
동종실업	박상욱	91.11. 9	〃 서구 가좌동 590-1	제강
상민전자	박정임	92. 3.25	〃 남동구 간석1동 616-11	카스테레오
수복기계	서상원	92. 4. 4	〃 남구 주안5동 35-23	중장비부품
우성기계㈜	금상섭	92. 3.16	〃 남동구 남촌동 613	
창성종합열처리	이주열	91. 9. 5	〃 남동구 남동공단 41-8	열처리
한국제일전기	김복남	92. 4. 4	〃 북구 효성동 575-7	계정기
홍창물산㈜	오종만	92. 3.30	〃 남구 주안5동	전자부품
동서금속	배상열	91. 3. 1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160	엔진베아링
세진다지마	이두휘	91. 6. 1	〃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 850	스텐레스
한국야금	조규동	91. 2. 3	〃 청주시 송정동 53-16	초경합금공구
갑진기업	김영식	91.10. 4	〃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산88-14	호이스트제작
부성산업	서상훈	91. 9. 6	〃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2-28	
상원산업	강석원	92. 2.23	〃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64-13	RADIAL, DRILLING MACHINE
대일오지	김기종		〃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308-1	
대원	김관태	89. 7.	〃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농공단지	양말기계
영진공업	최재영	91. 4. 6	창원시 팔용동 차룡1단지	중기부품
중앙기업	김정호	91. 5.28	〃 남산동 604-3	자동차부품
태양기계	김용화	91. 6. 1	〃 창원기계공단 2단지	열기자재
동양체인	권현두	91. 6.24	양산군 양산읍 산막리 525-2	콘베어체인
대한기계	김기억	91. 8.12	〃 웅상면 주남리 산148-3	연삭기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년월일	소 재 지	주생산품
동일전자	소원미	91. 8.28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213	전자부품
진해삼미	박봉재	92. 2. 7	진해시 이동 1번지	전자부품
국제철강	전광섭	92. 4. 6	창원시 웅남동 45-1	밸브
우니온	조혜리	92. 4.12	마산시 봉암동 469-10	전자부품
삼립전기	오국진	91. 4. 9	대구시 북구 검단동 887-4	자동차부품
삼성제침	주태화	91. 5.25	〃 북구 노원3가 1059	바늘
영남금속공업	이범수	91. 6.28	〃 북구 산격2동 321-3	샷시문고리
태성산업	이상홍	92. 3.24	경북 문경군 산양면 진정리 600	자동차부품
일신금속	성경원	91. 7.30	대구시 북구 학장동 289-5	압력조정기
풍산정밀	김광호	91. 7.25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1063-2	프레스
한국산업써비스	이선택	91. 3.27	울산시 남구 선암동 306-1	모터수리
한국경금속㈜	노상인	91.11.12	울산군 온산면 원산리 909-3	인메니(자동차부품)
광동정밀	김영주	91. 4.24	전남 승주군 서면 선평리 256-5	제철
대신기업	김남균	91. 4.20	광주시 북구 신안동 237-67	자동차부품
케엠사	배영철	91. 1.17	〃 광산구 소촌동 854	밀장비, 선구
동아	김철희	91. 6.18	〃 서구 화정1동 71-60	자동차부품
대우모터	조인섭	92. 3. 6	〃 광산구 장덕동 9881-1	

4.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기업체명	회사 대표자	투자국	투자비율		자본금	생산품	조합원	근로시간	
			한국	외국				일	주
갑일전자	황희선	미국	60	40	113억	컴퓨터	350	8	44
남성전기	윤봉수	일본	67	33	170억	카오디오	400	8	44
로음코리아	심장섭	일본	13	87	200억	저항기	600	7	42
롯데알미늄	전재덕	일본	15	85	33억	알미늄	550	8	44
세진전자	이상영	일본	50	50	32억6천	키보드	250	8	44
롯데전자	김종기	네덜란드				오디오	500	8	44
씨멘스	라이너켈	서독		100	8억4천	무역오퍼	30	8	44
시그네틱스	로버트	네덜란드		100		반도체	1,200	8	44
한국콘베어	김종연	일본	50	50	12억	콘베어	120	8	44
한국음향	배선갑	일본	50	50	14억	스피커	300	8	44
키스톤발브	방철	미국	10	90		발브	35	8	44
대한화학기계	이영호	일본	51	49	43억	프렌트	93	8	44
한국지엠비	구문모	일본	51	49	2,077백만원	자동차부품	100	8	44
고려강선	보스켓	룩셈부르크	50	50	46억9천	스틸코드	480	8	44
아주금속	이의찬	일본	72	28	7억	자동차부품	200	8	44
풍성정밀	황규삼	일본	50	50	1,320백만원	자동차계기류	500	8	44
한국씨티즌	오타니아끼노구	일본		100	40억	시계	400	8	44
태양코팅	천기승	일본	49	51	10억	주방용기구	25	8	44
창원공업	정인섭	일본	70	30	9억	자동차단조	130	8	44
한국산본	산본휘일	일본		100	15억	시계문자판	499	8	44
한국동양유전	천정공	일본	30	70	19억	전자부품	280	8	44
한국센코	김진영	미국	51	49	8억	자동연결못	36	8	88
한일제관	정호발	미국	60	40	59억7천	통조림용공관	720	8	44
한국부사공업	야마모드후지오	일본		100	26억4천	합성수지	58	8	44
한국카시오	사곡수남	일본	5	95	35억	전자시계	300	8	44
세방전지	남충일	일본	65	35	70억	축전지	900	6	44
금성알프스	박창성	일본	51	49	150억	전자부품	2,820	8	34
금성기전	김회수	일본	80.43	19.57	150억	에레베이터	1,178	8	44
대동케이블	이중화	일본	70	30	6억7천	케이블	190	8	44
로얄동도금속	박신규	일본	75	25	42억	수도꼭지	250	8	44

기업체명	회사 대표자	투자국	투자비율		자본금	생산품	조합원	근로시간	
			한국	외국				일	주
린나이코리아	최상선	일본	50	50	6억	가스기기	400	8	44
코리아스파이서	전영철	미국	51	49	20억	자동차부품	1,008	8	44
한국샤프	이관진	일본	50	50	12억7천	오디오	500	8	44
에이엠케이	로버트시페트로	미국	0	100	117억	컴퓨터헤드	1,250	8	44
에프케이엘동화	서동운	일본	51	49	5억	컴퓨터부속	250	8	44
평화발레오	김상태 아노르백 공동대표	프랑스	150	150	300억	자동차부품	700	8	44
평화오일씰	조치호	일본	60	40	3억6천억	자동차부품	250	8	44
고려전기	이기룡	일본	40	60	1.6억원	콘덴사	152	8	46
한국대화금속	허영	일본	50	50	1억원	전자부품	50	8	44
태평양금속	홍종희	일본	52	48	40억원	영구자석	402	8	44
한국델코전지	정해영	미국	50	50	53억원	밧테리	139	8	44
한국신영	동내영부	일본	30	70	2억3천	콘덴사	258	8	44
클레스트라하저만	정상문	프랑스	50	50	18억5천	철재칸막이	23	8	46
㈜부산전기	왕상은	일본	50	50	3억9천	전자부품	73	8	44
㈜부산정기	홍순명	일본	56	44	27억	재봉기	140	8	44

5. 임원개선 조직체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임원(대표자)	대회구분
	신	구	개선일자	
남성전기	전경임	김경옥	1992. 2. 1	정기총회
도신정밀	김행자	우순애	1991. .	임시총회
동아건설	박한섭	류근식	1992. 1. 31	정기총회
동해	정동익	김성준	1992. 2. 22	정기총회
모토로라코리아	박인배	허정식		
신진밸브	권영재	김복만	1991. 11. 10	임시총회
제일종공	선기노	박재화	1991. 7. 31	임시총회
청우공업	박일수	김영길	1991. 8. 31	임시총회
풍성전기	이대영	송병조	1992. 3. 31	정기총회
한국마벨	류응모	윤두혁	1991. 7. 31	정기총회
한국음향	변희내	김청준	1991. 7. 31	정기총회
한국시그네틱스	서민애	박순오	1991. 11. 31	정기총회
한국키스톤발브	류응조	이재우	1992. 3. 1	임시총회
우진전자	김문수	전경준	1991. 9. 3	
신창전기	이완우	여상찬	1991. 9. 14	
성원	원영복	조병수	1991. 8. 10	
홍일산업	김영환	곽봉선	1991. 7.	
유성정밀	김선영	이희술	1991. 8.	
대덕전자	최종호	송쌍현	1990. 12. 28	임시총회
중원전기	김원곤	황의성	1991. 9. 7	
세우실업	김영선	박영구	1991. 6. 31	
원경	박종식	민구영	1991. 8. 1	
계선산업	진춘기	이용기	1991. 10. 12	
삼화왕관	지성수	채수명	1991. 10. 5	
삼정기계	이길례	홍성화	1991. 11. 14	
아세아벤드	김광민	박영호	1991. 10. 4	
배명금속	안상복	김태일	1991. 9. 28	
풍정산업	이문식	한동권	1991. 4.	
우진공업	이도식	한창기	1991. 5. 8	
서진산업	안봉규	최한승	1991. 10. 5	

노동조합명	대표자		임원(대표자)	대회구분
	신	구	개선일자	
삼원기계	이관수	백성운	1991. 10. 14	정기총회
동아정공	우제문	진용기	1991. 6. 21	임시총회
한국 A.M.P	이해생	김성덕	1991. 9. 24	
현대엘리베이터	육정수	안영학	1991. 9. 12	
대방	박승준	김진성	1991. 10. 28	
금선전파	반현애	구본민	1992. 4. 7	임시총회
우성	한인철	박선호	1991. 9. 14	
광명전기	김홍만	김창태	1991. 10. 30	
오운개발	김명숙	윤경미	1991. 10. 26	
서원풍력기계	권혁기	문상준	1991. 10. 30	
선도전기	홍경수	손동완	1991. 10. 19	
경동산업	윤한호	이재국	1991. 10. 11	
금성전선	도정복	정용승	1991. 11. 9	대의원대회
안양지부	조필구	유의석	〃	〃
군포지부	이우창	강진원	〃	〃
구미지부	김종국	조필구	〃	〃
상진	이장규	한암이		
대영전자	이상애	박명규	1991. 10.31	
동양산전	김석태	문기도	1991. 11. 29	
국제전선	이두세	장명재	1992. 1. 22	정기대의원대회
삼아알미늄	이윤식	이우희	1992. 1. 12	정기총회
서울라디에타	백승철	김태석	1992. 1. 15	
대기산업	박종철	심종석	1992. 2. 24	정기총회
삼원산업	이기웅	민경준	1992. 1. 9	
신한일전기	유병류	차재인	1992. 2. 29	임시대회(대의원대회)
한국디젤	정익희	구자창	1992. 1. 25	
두원냉기	이기연	곽희현	1992. 2. 12	
신한주철	윤무영	신성현	1992. 1. 13	
한국브레이크	권승오	이필승	1992. 2. 22	
대봉전선	김두환	설진록	1992. 3. 5	
기영산업	김종성	이대선	1992. 4. 1	정기총회
삼영기공	유인수	김용근	1992. 3. 28	

노동조합명	대표자		임원(대표자)	대회구분
	신	구	개선일자	
제원전자	박동규	정지언	1992. 4. 7	정기총회
동서기공	강정호	민인홍	1992. .	
금성기전	조홍선	이중교	1992. 3. 13	임시총회
대동케이블	공정세	나풍덕	1991. 7. 30	정기총회
로얄동도금속	한종윤	오석희	1991. 9. 14	임시총회
린나이코리아	오동필	김영복	1992. 1. 21	정기총회
삼미	윤현구	황형구	1991. 7. 10	〃
삼홍모터스	안광열	박은섭	1991. 12. 26	〃
성지공업	정지호	최종환	1991. 9. 18	임시총회
국제종합기계	곽운섭	김용훈	1992. 1. 1	임시대의원대회
한음파	황미경	박병철	1991. 11. 1	총회
에이엠케이	이용복	허옥자	1991. 6. 28	〃
한주전자	김명화	유진희	1992. .	〃
제일공업	최영호	배정하	1991. 9. 2	〃
대성쎌틱	권영혁	하준철	1991. 10. 5	〃
방원금속	김영창	조래균	1991. 9. 2	〃
동신오미야법랑	권영설	홍수근	1991. .	〃
삼화전기	이철주	신의수	1991. 10. 8	〃
현대정밀	류재풍	오인석	1991. 10. 11	〃
한국알미늄	이준영	우종환	1991. 10. 1	〃
신화공업	김재인	방수복	1991. 5. 18	정기대의원대회
쌍용정공	박용민	이진웅	1992. 2. 19	임시총회
영창악기	김석기	이재술	1991. 7. 26	〃
인천자동차	이석주	김정칠	1991. 5. 6	정기총회
코리아스파이서	박남수	박기련	1992. 3. 1	〃
한국샤프	유성재	이은봉	1991. 6. 1	〃
한라중공업	백윤선	안재우	1990. 8. 10	〃
화인	김만선	방성룡	1991. 8. 17	임시총회
후지카대원전기	이준만	한광석	1991. 10. 25	정기총회
남선기공	윤익병	백천구	1월 31	정기총회
동양강철	오기순	정병석	2월 28일	임시
대홍	김진웅	김보현	2월 22일	정기총회

노동조합명	대표자		임원(대표자)	대회구분
	신	구	개선일자	
명원산업	배의환	김기철	12월 24일	임시대회
연산금속	박길용	김경석		정기대회
한양파이프	최성복	김상열	1월 18일	임시총회
동명중공업	임홍섭	조현일	1991. 7. 21	정기총회
동양물산	문종용	진삼문	1992. 2. 1	〃
미진금속	이병일	유병삼	1991. 12. 21	임시총회
범한금속	김대근	이재헌	1992. 1. 24	정기대회
삼성라디에터	조현학	정병준	1991. 4. 8	〃
세방전지	김환수	임채용	1992. 4. 1	임시총회
영흥철강	노영래	김정열	1991. 8. 19	〃
한국중공업	손석형	김창근	1992. 1. 29	〃
대동기어	강정묵	김형도	1992. 1. 31	정기총회
풍성전기	정홍식	이봉언	1992. 2. 21	〃
코렉스스포츠	이강욱	김재홍	1992. 3. 30	〃
효성중공업	이재만	김성일	1992. 3. 28	임시총회
한국씨티즌정밀	권미정	정영숙	1992. 3. 13	〃
부산산업기계	정문영	차권준	1991. 8. 24	〃
평화발레오	박용민	서원식	1992. 2. 12	정기대회
동협정밀	김광섭	김영수	1991. 11. 12	임시대회
남선알미늄	정대준	곽삼근	1991. 11. 15	정기대회
남선알미늄지부	김선희	김대준	1991. 11. 20	〃
남종농기사	이광호	조병춘	1992. 3. 26	〃
동해전장지부	정한근	신동수	1991. 7. 23	임시대회
진영종합기계	이창화	박남출	1991. 3. 26	정기대회
세왕금속	정용묵	신효재	1991. 5. 30	임시대회
삼익공업	김영수	진이섭	1991. 4. 8	〃
상신브레이크	김외진	이만호	1992. 3. 17	〃
경창브레이크	박동일	권영하	1992. 8. 20	정기대회
남양금속	조영민	김동덕	1991. 11. 9	〃
남양정밀	김진옥	박태영	1992. 4. 6	〃
대한주물공업	김경찬	이동한	1992. 9. 2	임시대회
대영베아링	신재오	진영환	1991. 1. 1	〃

노동조합명	대표자		임원(대표자)	대회구분
	신	구	개선일자	
대동공업	송경달	권영민	1991. 8. 14	임시대회
명신산업	손성락	김유진	1991. 10. 16	〃
승리기계	김시종	이장범	1992. 2. 17	〃
㈜성산	김성태	전봉진	1992. 3. 7	〃
아진산업	정재화	김인성	1991. 11. 22	정기대회
오대금속	이욱한	김종명	1991. 10. 3	〃
일지산업	곽봉석	나영섭	1992. 1. 5	〃
평화정공	오준선	손도열	1991. 9. 19	〃
화신테크지부	이광수	최봉록	1991. 11. 30	〃
한영전자	이호진	이상진	1991. 11. 7	임시대회
신서공업	김부일	황홍기	1991. 6. 10	〃
㈜대립철공장	김재곤	박병원	1991. 6. 24	〃
성우금속	김삼근	전광영	1991. 7. 6	정기총회
부산수리조선	김민원	하봉남	1991. 8. 30	〃
동국제강	서복호	박경석	1991. 9. 13	〃
동화정기	김재술	김연수	1991. 10. 12	임시총회
삼원포장기	박재준	성경환	1991. 10. 30	〃
고려제강	박갑철	서윤호	1991. 11. 2	정기총회
인동공업	최덕주	한세종	1991. 11. 16	〃
상농기업	하창희	이진득	1991. 12. 10	〃
진흥물산	한철호	류강수	1991. 12. 18	〃
동아금속공업	정성수	최재석	1991. 12. 21	〃
한국오루강침	정운국	이종수	1991. 12. 20	〃
한국주철관	김정호	박광백	1991. 12. 14	〃
제일기계	오삼석	여호선	1992. 1. 3	임시총회
세진	전진홍	양윤석	1992. 1. 21	정기총회
한보철강	양정식	연제생	1992. 3. 10	임시총회
세웅선박	최용만	김용민	1992. 2. 28	정기총회
동아건설부산지부	전병춘	김덕갑	1992. 2. 20	임시총회
세창기업	박무종	박지록	1992. 3. 4	〃
한국기계	이한용	신영수	1992. 3. 4	정기총회
남성조선	배석진	박순열	1992. 2. 5	임시총회

노동조합명	대표자		임원(대표자)	대회구분
	신	구	개선일자	
제일유기	조성래	이상세	1992. 3. 14	임시총회
경안실업	박태기	선병수	1991. 5.	정기총회
광동정밀	김영주	남덕우	1992. 1.	임시총회
광양종합기계	국선호	오요안	1992. 2.	〃
광일기공	강정원	양진덕	1991. 9.	〃
금평전자	이점례	전덕님	1991. 5.	〃
남선정밀	설동희	최태환	1991. 11. 20	〃
대산금속	강정원	양진덕	1991. 9.	〃
대신기업	김남균	양영임	1992. 2. 17	〃
대아산업	박형봉	박윤규	1992. 2. 15	〃
대창정비	박형용	손홍렬	1991. 10. 20	〃
부국산업	최낙종	양정호	1992. 11. 5	정기총회
부국철강	정남재	박달순	1991. 9.	〃
서울프레스	장용주	최귀남	1991. 12. 19	임시총회
아륭기공	김경범	한기철	1991. 10.	정기총회
영화산업	이제길	이상규	1992. 2. 20	임시총회
제철설비	유희동	장원주	1992. 8.	정기총회
대한알루미늄	천영우	장국원	1991. 11. 1	총회
효성금속	김무웅	박용환	1991. 10. 15	〃
한국프랜지	오진현	방인술	1991. 10. 25	〃
한진중공업(울산)	최윤택	정정용	1991. 8. 24	〃
우영산업	김인규	이수민	1991. 8. 20	〃
세종공업	장한규	최준호	1991. 3. 13	〃
현대전동기산업	박종진	윤경권	1991. 6. 30	〃
세찬산업	윤상원	박준환	1991. 4. 5	〃
현대철탑산업	이두희	서인원	1991. 10. 2	〃
동국산업	진강화	김오진	1992. 3. 2	총선
동일기업	장문식	김임술	1991. 6. 28	〃
동성철강	박정국	전광중	1992. 5. 1	총선
부산파이프	정해용	백종부	1992. 1. 1	〃
제철정비	조희규	윤기봉	1992. 2. 25	대의원대회
조선선재	이창호	김문철	1991. 12. 24	총선

노동조합명	대표자		임원(대표자)	대회구분
	신	구	개선일자	
코스틸	김용수	이만희	1992. 1. 14	총선
포항로공업노조	정용길	김두용	1991. 6. 29	〃
오리엔탈메탈	최한수	장덕환	1990. 7. 30	총선
홍화공업	김찬규	김준호	1991. 8. 4	〃

6. 해산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일자	해산일자	조합원수	해산사유
한국광학	홍기열	89. 4. 4	92. 2.28	80	회사의 폐업
삼광반도체	고영순	90. 1. 3	91. 8.30	20	조합원 감소
산우실업	김순자		91. 8.30	30	조합원 감소
G.B.E	김정진		91. 6.30	30	회사의 폐업
간성산업	김금일	89. 5.25	82. 1.30	53	자체직해산
광신종합철강	조월성	88. 8.20		8	조합원감소로 유명무실
다우전자	이영희	87. 8.20	91. 5.	40	자체적 해산
동명철강	우종만	90. 9. 3	91. 4.	20	
산곡기계	안영식	89.11. 6	91. 4.	46	자체적 해산
일진정류자	신중산	91. 1.15	92. 1.	30	〃
태양연마	함종원	89. 1. 5	92. .	30	유명무실(조합원감소)
회림기계	진용조	90. 3. 5	91. 5.	58	부도관계
문덕전자	김미화	90. 9.20	91. 7.	12	자체적 해산
문덕정밀	백윤성	90. 3.21	91.12.	17	〃
간성산업	김금일	89. 5.26	92. 1.30	53	〃
광희	염천수	90. 1.31	91.10.10	45	해산결의
동일기업	은종호	89.10.10	91. 9.30		〃
삼우실업	한식용	88. 5. 3	91. 6.27	85	〃
삼보	여진근	88. 8.29	92. 2.	42	폐업
신아공업	신승오	89. 1.25		16	기능마비
성무실업	김인웅	88. 7.19	91. 5. 9	31	해산결의
제일공업사	이성곡	88. 8.27	92. 1.31	45	노동위원회 결의
창성종합열처리	이주열	91. 9. 5	92. 4.	19	폐업
태양강업	조한구	87. .5. 4		60	경기도 안산으로 이전
한국강업	이재철	88. 6.18			기능마비
한국메그론	주성훈	89. 3.22	91. 7.31	120	해산결의
한국훼라이트	신용일	87. 9.17	92. 2.28	250	태평양금속으로합병
한신보일러	조병록	89. 3.20	92. 2.28	40	해산결의
한일기계	황오열	88. 2.27	92. 1.31	28	노동위원회 결의
현대건설철구사업본부	강영만	88. 1. 8		33	기능마비
한보탄광	박홍만	89. 1.13	92. 3.20	14	해산결의

노동조합명	대표자	결성일자	해산일자	조합원수	해산사유
만중금속				20	기능마비
삼성클뢰크너	장세정	91.10. 1		12	해산
한국미우라공업	박정우	91. 5. 8		17	퇴사
성우산업	김창석	90. 8. 6	91.11.22	45	자진해산
신광기계	윤정락	88. 4.15	92. 1.	40	〃
삼전공업사	김인락	91. .5.10	92. 3. 7	50	〃
한일농기사	문웅철	79. 9.30	91. 12.	18	해산
보국전기	이충해	89. 2.16	92. 2.30	60	자진해산
남선산업	심재명	91. 2.25	91. 4. 3	60	해산
현대금속	곽태보	91. 4. 6	91. 5.29	70	해산
승리전자	권영환	89. 5. 8	91. 7. 6	150	폐업
오스타시계	박준용	89. 4. 1	91. 8. 4	32	해산
한창전기	심수섭	88. 7.27	91. 8.24	28	〃
동방윤기	박정호	78.11.17	91.10.31	18	〃
대영	한성룡	89. 8. 8	91.10. 5	17	〃
대영공업	김철수	89. 8.21	91.11.10	17	〃
대동강건	변진희	81.11. 1	91. 5.10	35	〃
부국금속공업사	황포식	91. 4.17	91. 7.10	28	〃
대양조침	오영철	91. 5.23	91. 9.25	79	〃
유한대동	이덕원	91. 7. 8	91.11. 4	40	〃
삼보산업	양명수	87. 3.28	91.11.10	46	기능마비
승림공업	이영태	86. 7.17	91. 6.10	59	〃
영진산업	박민홍	91. 9. 1	91.12. 5	14	〃
유창정밀	권태완	91. 7.12	91.10. 4	13	〃
현대특수금속	오복암	91. 3.19	91. 6. 7	10	〃
삼진	안용대	91. 4. 4	91. 7. 3	20	〃
세명전기	송점두	87. 8.27	92. 2.26	20	해산
태성물산	노환섭	88. 3.20	92. 3. 1	39	〃
부강기업	이재근	88. 4.15	91. 4.	75	직장폐쇄
청진산업	정영수	88. 9.15	91. 8.19	25	〃
현대기계	박순하	89. 7.29	91. 9. 2	7	조합원감소로해산결의
동명공업	김상한	82. 7. 6	91. 9.	40	〃
대신공업	이진희	88.12. 5	92. 1.10	35	〃

7. 년도별 조합원 증감현황

1992년 3월말 현재

구분 \ 년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조 직 체 수		266	275	529	1,324	1,295	895	817
조합원수	남	87,483	97,986	228,281	269,091	293,035	234,523	197,120
	여	31,962	41.004	67,583	87,809	96.025	78.027	64,958
	계	119,445	138,990	295,864	356,900	389,060	312,550	262,078
조합원증감		+7,630	+19,545	+156,874	+61,036	+32,169	-76,510	-50,472
조직체증감		-5	+9	+254	~~+759~~ +795	-29	-400	-78

※ 조직체 및 조합원 감소요인 : 직장폐쇄, 해산, 기능마비 및 권리제한등의 요인

8. 지역별 조합원 월별 현황

지역 \ 성별 \ 월별		91. 3	4	5	6	7	8
서울	남	29,071	29,087	29,053	28,381	28,404	28,404
	여	21,501	21,518	21,503	21,922	21,760	21,760
	계	50,572	50,605	50,556	50,303	50,164	50,164
경기	남	54,133	54,058	53,523	53,219	53,114	53,123
	여	15,133	15,747	14,885	14,784	14,720	14,708
	계	69,901	69,805	68,408	68,003	67,834	67,831
인천	남	24,016	23,324	23,045	22,986	22,971	22,971
	여	7,542	7,355	7,495	7,494	7,374	7,374
	계	31,558	30,679	30,540	30,480	30,345	30,345
충북	남	3,087	3,180	3,180	3,251	3,295	3,245
	여	7,115	7,235	7,235	7,231	7,778	7,562
	계	10,202	10,415	10,415	10,482	11,073	10,807
충남	남	2,853	2,853	2,962	2,939	2,939	2,939
	여	1,059	1,059	1,070	1,197	1,197	1,289
	계	3,912	3,912	4,032	4,136	4,136	4,228
대구·경북	남	49,140	49,647	48,558	47,777	49,284	49,421
	여	8,506	8,621	7,767	7,903	7,693	7,688
	계	57,646	58,268	56,325	55,680	56,977	57,109
경남	남	32,316	32,702	32,469	31,345	31,287	31,744
	여	9,401	9,351	9,083	8,021	8,021	7,999
	계	41,717	42,053	41,552	39,366	39,308	39,743
울산	남	18,729	19,510	20,197	7,555	7,678	7,678
	여	2,691	2,737	2,795	1,211	1,195	1,195
	계	21,420	22,247	22,992	8,766	8,873	8,873
부산	남	17,467	17,329	17,299	17,200	17,171	17,120
	여	2,466	2,446	2,413	2,362	2,375	2,368
	계	19,933	19,775	19,712	19,562	19,546	19,488
전남	남	3,828	3,828	3,874	3,874	3,898	3,888
	여	169	169	233	233	228	233
	계	3,997	3,997	4,107	4,107	4,126	4,121
전북	남	540	540	540	540	540	540
	여	99	99	99	99	99	99
	계	639	639	639	639	639	639
강원	남	566	566	566	290	290	290
	여	356	356	356	356	356	356
	계	922	922	922	646	646	646
포항	남						
	여						
	계						
계	남	235,746	236,624	235,266	219,357	220,871	221,363
	여	76,673	76,693	74,934	72,813	72,796	72,631
	계	312,419	313,317	310,200	292,170	293,667	293,994

9	10	11	12	92. 1	2	3
28, 384	28, 247	28, 237	28, 267	28, 267	28, 220	28, 220
21, 290	20, 366	20, 266	20, 366	20, 377	20, 366	20, 366
59, 674	48, 613	48, 503	48, 633	48, 633	48, 586	48, 586
50, 908	49, 309	49, 294	48, 295	50, 133	50, 115	50, 098
13, 337	12, 669	12, 725	13, 819	12, 750	12, 659	12, 631
64, 245	61, 978	62, 019	62, 114	62, 883	62, 774	62, 729
22, 911	22, 567	22, 490	36, 430	36, 446	22, 652	22, 675
7, 374	7, 205	7, 316	7, 099	7, 104	7, 014	6, 748
30, 285	29, 772	29, 806	43, 529	43, 550	29, 666	29, 423
3, 140	2, 983	5, 223	2, 925	2, 925	2, 885	2, 914
7, 562	7, 493	5, 348	5, 348	5, 348	5, 315	5, 307
10, 702	10, 476	10, 571	8, 273	8, 273	8, 200	8, 221
2, 939	2, 774	2, 774	2, 894	2, 988	2, 988	2, 958
1, 289	1, 097	1, 097	1, 097	1, 101	1, 101	1, 066
4, 228	3, 871	3, 871	3, 991	4, 089	4, 089	4, 024
49, 413	48, 633	31, 877	14, 150	14, 139	14, 139	14, 207
7, 652	7, 532	7, 314	7, 146	7, 157	7, 157	7, 216
57, 065	56, 165	39, 191	21, 296	21, 296	21, 296	21, 423
31, 738	28, 969	28, 703	29, 490	29, 470	29, 093	29, 108
7, 969	7, 717	7, 754	7, 697	7, 717	7, 609	7, 482
39, 707	36, 686	36, 457	37, 187	37, 187	36, 702	36, 590
7, 563	7, 213	7, 213	7, 699	7, 799	7, 903	7, 902
1, 114	1, 064	1, 064	1, 098	1, 078	1, 093	1, 078
8, 677	8, 277	8, 277	8, 797	8, 877	8, 996	8, 980
16, 998	16, 870	16, 988	17, 041	17, 041	16, 862	16, 538
2, 355	2, 331	2, 365	2, 288	2, 288	2, 257	2, 251
19, 353	19, 201	19, 353	19, 329	19, 329	19, 119	18, 789
3, 882	3, 739	3, 763	3, 796	3, 796	3, 852	3, 852
233	198	220	204	204	229	229
4, 115	3, 937	3, 983	4, 000	4, 000	4, 081	4, 081
540	540	550	540	540	540	540
99	99	89	99	99	99	99
639	639	639	639	639	639	639
290	339	390	339	339	339	319
356	356	256	356	356	356	280
646	695	646	695	695	695	599
			17, 959	17, 789	17, 789	17, 789
			207	205	205	205
			18, 166	17, 994	17, 994	17, 994
218, 706	212, 183	197, 502	209, 825	211, 672	197, 377	197, 120
70, 630	68, 127	65, 814	66, 824	65, 773	65, 460	64, 958
289, 336	280, 310	263, 316	276, 649	277, 445	262, 837	262, 078

9. 기타활동

1. 위원장 순방

○ 목 적

가. 가맹노조와 지역본부, 본노련간의 연대강화

나. 본노련 주요활동 추진 및 계획설명

다. 92노동계 전망 및 주변상황에 대한 대처 논의

라. 순방일지

지 역	순 방 일 자	장 소
울 산 지 역 본 부	92. 1. 25	울산지역본부 회의실
경 남 지 역 본 부	92. 1. 28	경남지역본부 회의실
부 산 지 역 본 부	92. 1. 29	부산지역본부 회의실
충 북 지 역 본 부	92. 1. 30	충북지역본부 회의실
광주 · 전남지역본부	92. 2. 20	광주 · 전남지역본부 회의실
대구 · 경북지역본부	92. 3. 12	대구 · 경북지역본부 회의실

※ 공통된 협의 내용

○ 총액임금제 및 해고요건 완화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 비판

○ 현대자동차 노사분규 현황과 파급전망

○ 3 · 10절→5 · 1메이데이 변경에 대한 적극적 대처 요망

○ 박종근 노총위원장 전국구 진출에 대한 노조의 입장

2.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결의대회

1) 준비회의

○ 일 시 : 92. 3. 5 14 : 00

○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 참 석 자 : 임원 및 지역본부의장

○ 안 건 : 결의대회준비에 관한 사항

○ 협의결과 : 한국노총대강당에서 전국대표자결의대회로 진행

2)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 일 시 : 92. 3. 20 13 : 30

○ 장 소 : 한국노총8층 대강당

○ 참 석 자 : 전국가맹노조대표자 및 간부 900명

○ 대회순서

제1부

13 : 30~14 : 10 식전행사

14 : 10~15;00 강연회(숭실대 경제학과 조우현교수)

제목 :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제2부

15 : 00~16 : 00 개회선언

○ 금속노련기 및 지역본부기 입장

○ 국민의례

○ 대회선언문 낭독

○ 대회사

○ 국제금속노련(IMF)연대사 낭독

○ 92임투승리를 위한 기본방침 선포

○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대책요원 발대식 선서

○ 정부 및 각 정당에 보내는 메시지 낭독

○ 결의문 채택 및 성명서 발표

—'92임투승리를 위한 결의문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문

—총액임금제 대상업체 지정철회 성명서 낭독

○ 폐 회

대 회 선 언 문

'89년이래 우리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과 자본측의 사상 유례없는 대탄압은 이제 노동측의 굴복을 요구하는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끝없이 전개되고 있는 경제위기론과 노동자 책임론을 무기로 삼아 국민에 대한 노동진영의 고립화를 획책하고 있으며 휴일삭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삭감, 변형근로제 및 파트타임제 도입등 노동법 개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고 총액임금제를 통해 총체적인 임금억제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30분 일더하기 운동으로 노동강도 강화를 획책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불편부당한 재판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사법부 일부는 노동운동방향 전환을 강제키 위한 정치재판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요건완화 판결로 자본측의 용이한 노동통제를 도모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언론은 진보와 진실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상당수

부패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탄압의 선전도구로서 그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례없는 물가폭등은 우리 노동자들의 실질생활을 저 암흑의 시대로 다시 후퇴시키고 있으며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난을 절대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다.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포기는 부동산투기를 촉발, 생산의 근간인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한 반면 향락산업의 급성장을 도모, 사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범죄의 급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저호황의 성과물은 장래를 위한 기술투자로 전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와 정경유착등에 소진되어 오늘의 경제위기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정권과 자본측은 자기들의 실책과 무능과 부패를 추호도 반성치 않은 채 오히려 전쟁터와 같은 산재왕국의 산업현장에서 피땀흘려 잔업, 철야를 감내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후안무치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를 구속·해고하고 공권력을 동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묵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사회·경제발전은 노사간 주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노사 모두가 정성과 창의를 다 할때 성취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권력과 자본은 노동조합 분쇄, 노동자 노예화로써 자기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우리 1,200만 노동자는, 그리고 노동자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금속노동자는 권력과 자본측의 반민주적·반민족적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굴의 정신으로 민주의 역사를 기록해온 노동자의 정신으로 어떤 탄압에도 굴복치 않고 노동자의 권익쟁취와 노동탄압분쇄 및 민주사회 정착을 위해 단결된 총역량으로 투쟁·진군할 것이며 탄압과 공세가 총집중될 '92년도 임투전선을 강력한 투쟁력으로 돌파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굳건히 세워나갈 것이다. 총단결! 투쟁! 완전쟁취!

1992년 3월 20일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대 호 사

이 자리에 모이신 전국의 대표자동지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92 임금인상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본권 사수라는 절박한 과제를 기필코 실현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구 및 소련의 사회변화, 남북의 화해교류확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세계질서 재편 등 권위주의와 물리력이 지배하던 시대가 쇠퇴하고 자율과 민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짓밟히고

억눌려 있던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대중이 탄압과 억압을 뚫고 역사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역사의 변화와는 정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자본의 위기는 외세의존의 국내독점자본의 위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으며 독점자본은 이 위기를 노동자의 탄압과 수탈강화로 극복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권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역사의 강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건설자, 역사의 창조자인 노동자와 근로대중을 무시하는 사회발전의 반동행위이며 자멸을 재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그동안의 물리력 일변도의 탄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도적 이념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부터 자행해 온 일더하기운동, 정리해고요건 완화, 시간제근로도입, 해외인력수입, 총액임금제실시 등 각종 이념공세와 제도적 장치는 노동자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는 간악한 행위입니다. 또 물리적 탄압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노동자가 수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대표자동지 여러분!

우리는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경제위기론과 임금억제론의 근거는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으며 현재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불안의 원인이 정치권력과 자본의 부도덕과 부패에 있다는 것은 전국민이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3당 야합으로 자행되는 정치권력의 횡포는 추곡가로 농민을 짓밟았으며 국제적인 대세로 ILO에는 가입하였지만 노동악법을 온존시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상실했으며 사법, 행정 모두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권력유지와 자본의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적투자보다는 부동산투기, 경영의 내실화보다는 권력과의 뒷거래를 위한 낭비에 쏟아부으면서 성실히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내핍을 강요하고 노동에 의해 창출된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가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며 국민들간에 망국적 위화감을 자랑스럽다는 듯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올 임금인상 투쟁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날이 뛰오르는 물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주거불안을 떨쳐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의 몫을 당당하게 주장합시다.

동지여러분!

모든 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우리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도 악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정치진출을 막기위해 정치적무관심을 유도하고 경제적 관심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악행과 모순은 정치권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을 며칠밖에 안남겨 두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와 근로대중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 노동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줍시다. 이는 올 임투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자들의 득세는 우리 노동조합에 치명적인 탄압을 가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될때 우리 노동자의 생존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을 털어 버리고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노동승리의 날은 올 것입니다.

전국대표자동지 여러분!

올해 임금교섭도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지 못한 정부·자본은 억지논리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와 폭력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우리 금속노련은 이러한 탄압을 물리치기 위하여 올 임투를 공동투쟁의 기조하에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탄압의 예봉을 둔화시키고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투쟁의 원칙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92년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를 통해서 임투승리를 확신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결연한 의지, 공동투쟁으로 노동조합의 재도약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다집시다.

임금을 둘러싼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인상투쟁은 우리사회를 건실하게 만들고 진정한 민주화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건투를 빌며 이만 대회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3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 인 상

'92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 대표자 결의대회

1992년 3월 20일 FKMTU(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결의대회에 보내는 IMF(국제금속노련) 연대메시지

친애하는 박인상 동지, 그리고 금속 노동자 동지들!

본인은 1,600만 국제금속노련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귀 노련 1992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에 연대인사를 보냅니다.

전세계의 금속노동조합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경제 및 사회정의를 위한 귀국 금속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임금을 획득하기 위한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의 투쟁 노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와 자본가측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당한 경제적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富)는 노동자들이 일으켜 세운 것으로, 과소비와 부동산 땅투기, 증권시장 조작이나 정치적 공작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정부, 공권력, 그리고 자본측의 계속적인 탄압은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987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대한 민주적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지금 그 성과물은 붕괴되고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자유가 조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귀국 노동자들을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정부가 세계민주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주요 ILO 협약들을 비준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적 권리와 경제적 정의가 보장되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아시아의 주요 공헌자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노동조합이 정부 및 사용자측의 탄압없이 그들의 정당한 주장들을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 북아메리카, 그밖에 아시아와 세계 모든 곳의 금속 노조들은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및 그 조합원들과 대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 노련의 이번 결의대회가 성공리에 끝나 '92년도 임투에 커다란 활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2. 3. 10

국제금속노련(IMF) 사무총장 마르셀로 말렌타키

금속노련 '92임투기본방침

1. '92년도 임투를 둘러싼 정세는 어떠한가?

1) *국제정세의 변화*

사회주의권이 효율성의 상실과 관료주의적 경직적으로 인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빈부의 격차등 자본주의 모순의 체계내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단행함으로서 자본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세계시장이 자본주의 단일시장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 북한, 쿠바 등 잔존 사회주의권의 모험주의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서 국제사회에 있어 분쟁의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EC의 경제통합이 정치통합으로 발전할 경우 EC는 세계경제·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복귀할 것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통합으로 북미단일 경제권이 강력하게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다국적기업의 경우 UR협상의 연내타결 가능성의 증대는 세계경제가 급속히 지역중심의 블럭화 추세라는 측면과 또다른 세계경제의 단일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초국가적으로 급격히 증대할 것이다. 미소양극체제의 붕괴와 일본, 독일의 영향력 증대로 다원주의가 가속화, 이데올로기의 퇴조와 경쟁력에 의한 지배강화 그리고 미국경제의 어려움을 일본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권의 부상 및 EC의 경쟁력 강화와 동구권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는 세계전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나 국가간 이해 갈등으로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

2) *국내정세 상황*

6·29선언 이후 민주세력이 성장하고 있으나 60년대 개발독제의 영향으로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3당합당으로 인해 정치세력이 보수화되고 있고 민주화의 부진과 민생불안으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정치적 무관심만 야기시키고 있다. 한편 경제적 상황으로는 경제, 사회민주화가 절대적으로 부진하여, 경제력 집중이 긴박한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등 낙후부분이 위축될때로 위축됨으로서 국민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계층의 증가, 주택난의 심화는 사회적 유동성을 격감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국의 지가를 GNP 대비로 9~10배에 달하여 세계적으로 지가가 높기로 유명한 일본의 3~4배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자본시장 개방과는 무관할 정도로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건인 금융실명제는 수차례 연기된채 실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기술개발은 여전히 기업활동에서 그 비중이 낮게 취급되고 있어 국제경쟁력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예전에 물리적 또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노동탄압을 해오다가 최근들어 한계단 발전된 방법으로 노동자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방법으로는 경제위기와 노동자 책임론, 노동자의 과소비 주장, 고임금론 및 3D기피론, 임금억제정책으로는 성과급제도 입, 변동상여금, 인센티브 상여금제 도입, 총액임금제, 직능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변형근무제, 파트타임제 실시, 군인력 투입, 해외인력 수입등으로 회사가 필요할시 언제든지 충성하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고규제완화등의 지침으로 노동조합 조직력과 교섭력 약화시키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

2. '92년 임투의 방향은?

1) *주 44시간으로 최저생계비 확보를 하여야 함*

우리 노동자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단순한 재생산에 요구되는 충분한 비용이 되어야 하며 노동자 가족의 생활수단을 확보함으써 세대에 걸쳐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건전한 문화소비생활을 누릴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국민경제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제역할을 마음놓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의 내수기반, 저축으로 인한 국내저축의 기반확충으로 인한 경제발전 육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대표적인 임금인상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의 노동력을 원가로써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최소한 15%는 쟁취되어야 한다*

'91년 소비자물가 10%선 육박하는 문제와 UR협상으로 인한 경제개방과 산업구조 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생활의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92년 임투를 앞두고 정부는 5%로 1,434개 업체를 총액개념으로 묶으려 하고 있고 경총에서도 4.7%선을 제시하는 등 전 사업장에 한자리수 임금인상으로 몰고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공무원 임금인상 16.2% 수 및 '92년 물가인상분 정도는 노동자가 보상을 받아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와 사용자간에도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금은 생활비인 것이다. "아무리 임금인상을 해보아야 집값과 물가를 잡지 못하면 헛일"이라는 인식이 노동자들 사이에 자연히 확산되고 있다. 임금이 아무리 오른들 생활에 드는 비용이 그 이상으로 올라버린다면 임금이 오히려 깎이는 결과가 되고 만다.

노동자들은 임금 몇푼 올리기 위해 별의별 수모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고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라느니 심지어는 "임금인상과 노사분규가 경쟁력 상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동지들이 해고와 구속자를 속출해 내고 있다.

그런데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너무도 쉽게 올라가 버리고 만다. "돈 만원짜리 가지고 시장 가봐야 살것이 없다"고 아우성 들이다.

이 어렵고 절박함을 우리 노동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92년 임투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총단결로써 대정부와 사용자들과 투쟁하여 최소한 15%의 임금인상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임금구조 및 임금제도 개선투쟁을 해야한다*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이다. 즉 노동자가 그 가족과 함께 정상적으로 생활유지 하는데 드는 재생산 비용이라고 한다면 기업은 어떠한 임금형태이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올바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은 제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생산직 임금차별 철폐 둘째, 직능급 도입반대 셋째, 성과배분제도 적극적인 반대투쟁 넷째, 단일호봉제 실시 다섯째, 총액임금제 반대투쟁으로 '92년 임투를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생산직 임금차별 문제는 정부의 임금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면을 추구하여야 하며 동일학력의 생산직 임금과 사무직 임금, 동일학력 동일노동의 남녀임금을 같게 한다.
- 토요격주제의 문제는 주 40시간으로 개선으로 해야하는 기로에서 토요일을 격주로 하면서 특근을 강요당할 우려와 노동시간이 길어질 염려로 생산성 저하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토요격주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 파트타임제 도입과 군인력, 해외인력을 기업에 투입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정부는 각성하고 기업에 적용할때 사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복지후생제도의 신설 및 확충을 해야한다*

노동자가 복지제도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직접적인 화폐임금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것은 다시말하면 직업의 안정을 확보하는 일이라 이렇게 중요한 복지제도를 기업은 교섭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주의 온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부족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은 자연감소되는 것은 물론 애사심이 없어지고 개인주의의 팽배등 의식개혁의 저해요인으로 부각되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에서 사택, 기숙사, 기타 사소하게 기본적으로 있어야할 부분외에는 노동자가 만족할만한 복지후생제도가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같이 요구한다.

- 기업내에 복지확충을 이유로한 어떠한 임금억제논리는 임금인상과 관계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고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라.
- 정부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가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라.
-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부채질할만한 요소들을 없애고 노동자가 정상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라.
- 기업은 기업내에 복지기금을 확대하고 조합원들이 살수 있는 사원아파트를 건설하며 주택조합 설립 융자지원 체계와 전세기금 및 내집마련 자금을 장기상환,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해줄것을 요구한다.
- 작업장내에 유해, 위험요소들을 없애고 산재를 당한 조합원이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 및 제도를 확충하라.

3. '92공동임투는 왜 해야하는가?

'80년대이후 노동운동이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 89년부터 공안정국의 시련안에서도 굳건히 대처해 왔으며 '90년의 골리앗투쟁, KBS투쟁, '91년말 현대자동차의 상여금투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듯 했으나 각 단위조합의 개별적인 대응은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인 압력에 역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뼈저린 체험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92임투를 맞이했지만 역시 극심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92공동임투는 이 어려움을 뚫고 우리의 노동력의 댓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공동임투밖에 없음을 인식한 결과이다. 이는 기업별 노조의 힘보다는 연대의 훨씬 크다는 일반적인 논리와 함께 정권과 자본에 대처하고 있는 개별노조의 격파방식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다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정부 및 각 정당에 보내는 메시지

우리 전국의 금속산업 노동조합 대표자일동은 '92년도 임금교섭을 앞두고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산업현장의 생산주체인 노동자들의 절실한 현실을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노동자들은 현재의 사회혼란과 경제난국의 궁극적 책임은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방지한채 기득권 유지를 위한 파행적 정국운영과 자본과의 부도덕한 유착과 야합에 빠져있는 정부 및 정당에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민주적 권리회복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 및 각 정당은 현재의 혼란과 경제난국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작태를 즉시 중지하고, 노동자의 임금억제를 시도하고 있는 총액임금제를 즉각 철회하여 노동정책의 중립성, 형평성을 기하므로써 노사자율적 교섭분위기를 조성하라.

셋째, 정부 및 각 정당은 총선 정국을 맞이하여 공명선거 실천을 촉구하며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공공요금과 독점가격을 견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ILO가입을 계기로 노동관계법중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악법조항을 즉각 철폐하여 노동법의 정신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노동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무분별한 폭력적 투입은 산업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며 결국 노동자의 격렬한 저항만을 축적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공권력에 의한 노동쟁의 진압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다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정부와 각 정당은 기업주의 각종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리확대를 위한 기업단위의 생산적 투자, 노동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건실한 근로의욕 고취와 내적성장 잠재력을 유도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올해 총액임금제등 임금억제 정책을 즉각 철폐할것을 강력이 촉구한다.

우리 전국의 금속산업 노조대표자들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이 사회를 부정과 부패, 투기와 부도덕의 늪에서 건져내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로 만드는 최소한의 기본조건임을 밝히며, 정부 및 각 정당에 대해서 다시한번 오늘의 현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의 주장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원인 노동현장에서 생산주체로

서의 모든 노력과 결연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2년 3월 20일

'92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92 임투승리를 위한 결의문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경제위기론등의 이데올로기 공세, 노동집약적 사고방식의 구태의연한 방법인 총액임금제 실시, 파트타임제·해외인력수입·군인력을 제조업에 투입등 노동시장의 불공정성 등으로 노동자를 무참히 짓밟는 정치, 경제관료들의 자의적이고 편협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루 말 할 수없는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며 이러한 자행을 시정시키고 그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지난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8.6%로 대만 6.9%, 홍콩4.8%, 싱가폴 7.0% 보다 나은 고도성장을 이루어왔고 '92년에 들어서자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신3저 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총에서는 4.7%, 정부에서는 총액개념으로 5%를 넘을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반노동자적 작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및 대선을 '92년에 치뤄야 하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등으로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갈 것이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노동자가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년초부터 공공요금 인상과 3월에 들어서 서비스요금까지 오르는 기미를 보여 한자리수로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물건너갔지만 이것도 노동자가 책임지라는 말은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반민주적이고 구태의연한 정부와 경제단체의 작태를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92임투를 기하여 노련을 중심으로 지역, 지구를 중심으로한 공동임금인상 투쟁으로 강력히 대처하여 노동자가 단결하면 어떠한 탄압도 물리칠 수 있다는 진리를 엄숙히 경고하고 금속노동자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5%이내 임금억제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최대한 보장하라.
2. 우리는 정부의 총액임금제의 허구성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논리로 경제위기가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임금억제 기도를 과감히 분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기필코 쟁취한다.
3. 기업은 지금까지 물가폭등과 경기둔화로 인한 노동자의 가계수지 압박, 노동자의 주거불안 등의 현실이 기업의 이성을 잃은 반사회적인 부동산 투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철저히 반성하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과 주거안정을 보장하라.
4. 우리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의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임금인상의 악재요인을 강력히 대처하여 최저생계비 쟁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노총에서 주장하는 물가 억제선을 동시 주장하며 '92임투승리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의 확보, 주택문제 개선방안,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 복지후생의 신설 및 활동에 만전을 기한다.

1992년 3월 20일

'92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문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탈환키 위한 권력과 자본측의 노동탄압은 날로 그 잔혹성과 비민주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91년도말, 문명국의 진입을 위한 ILO가입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3자합의 원칙은 내팽겨진 채 권력과 자본측의 일방적 공세만 계속되고 있다. 총액임금제의 실질적정책인 노동법개악시도, 공권력과 언론의 노동자 포위, 법원의 반동자적 판결등 부지기수의 신종노동탄압수단이 우리 1,200만 노동자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다. 또한 92년도 개시와 함께 현대자동차 파업을 초강경 진압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측은 지배자의 무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1,200만 노동자의 선봉에 선 우리 금속노동자는 노동운동은 권력과 자본측의 혹독한 탄압속에서 강인한 단련과 불퇴의 정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여왔다는 것을 가슴뜨겁게 시작하면서 92년도 임투를 둘러싼 탐욕적 탄압을 우리의 총단결로 완전분쇄하고 침탈되어가는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결사적으로 수호해낼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다 음

1. 정부는 반노동자적 노동탄압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노동탄압의 제물로 구속된 구속 노동형제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
1. 정부는 노사자치를 완전확립하고 일체의 편파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모든 노동악법을 전면 철폐하고 노동법개악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기업주를 구속, 강력 응징하라!
1. 사법부는 반노동자적 판결을 철회하고 엄정중립성을 철저히 견지하라.!
1. 기업은 산업평화 파괴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1. 우리는 1,200만 노동자의 권익쟁취와 노동권 수호투쟁의 선봉에 서서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총진군한다.

1992년 3월 20일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성 명 서

— 정부는 총액임금제 대상업체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 —

정부는 우린 노동자들의 전면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7일 산업평화대책위원회를 열고 1,432개업체를 총액임금제 대상업체로 지정, 임금을 5%이내로 억제키 위한 반노동자적 임금정책을 개시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총액임금제를 임금격차 해소책등 기만적 언사로 정당성을 주장해왔지만 이제 정부가 내거는 총액임금제가 임금억제방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총액임금제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중에는 저임금업체가 다수 들어 있어 반민주적 졸속행정의 표본적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과연 정부는 하루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물가상승으로 불안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상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언제까지 기업주를 위한 반노동자적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전국대표자 및 총액임금제업체로 지정된 노동조합 대표자 일동은 임금억제를 위한 블랙리스트인 총액임금제업체 지정이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나아가 300명이상업체까지 임금을 5%이내로 억제하고 기타 100명이내의 소규모업체까지 임금억제의 감시체계속에 옭아넣으려는 노동부의 임금억제지침 자체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해마지 않으며 이를 완전 관철키 위해 1,200만 노동형제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1992년 3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및 총액임금제대상업체179개노동조합대표자일동

구 호

총액임금철폐하고 임금억제 중단하라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통일행동, 연대투쟁 임투승리 쟁취하자
물가폭등, 생계파탄 임금정책 시정하라
임금인상 규제말고 물가상승 억제하라
노동탄압 임금억제 투쟁으로 응징하자
연대강화 공동투쟁 실질임금 확보하자
경제위기 앞세운 임금억제 철회하라
노동자를 기만하는 위기선전 중단하라
경제위기 선동말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총액임금 강요말고 실질임금 보장하라
허울좋은 총액임금 총단결로 박살내자
노사자율 보장하고 총액임금 철회하라
노동운동 말살정책 정부는 각성하라
임투승리 확실할때 생존권 보장된다.
금속노련 깃발아래 단결하여 투쟁하자

표 어

노동운동 말살정책 총단결로 응징하자
금속노련 깃발아래 단결하여 투쟁하자
물가폭등, 생계파탄 임금정책 시정하라
공동투쟁 강화하여 생존권 확보하자
통일행동, 연대투쟁 임투승리 쟁취하자

한국노총 92정기전국대의원대회 참석

○ 일　　시 : 1992. 2. 27 10 : 00

○ 장　　소 : 한국노총8층 대강당

○ 참석인원 : 대의원 75명

순 번	소 속	성 명	순 번	소 속	성 명
254	본 노 련	박 인 상	282	일 진 전 기	가 재 두
255	〃	민 정 식	283	뉴 맥 스	이 형 일
256	〃	김 장 선	284	금 성 통 신	김 길 동
257	〃	강 영 섭	285	범 양 냉 방	김 윤 주
258	〃	박 기 식	286	한 샘	권 석 정
259	〃	정 기 춘	287	일 진	최 진 하
260	〃	박 병 윤	288	인 천 제 철	김 동 교
261	〃	차 경 준	289	한 국 종 합 기 계	김 덕 수
262	〃	하 영 일	290	금 성 사	박 승 리
263	〃	정 학 균	291	금 성 계 전	김 홍 수
264	〃	제 선 수	292	연 합 철 강	구 성 완
265	〃	김 두 형	293	대 동 조 선	박 강 석
266	〃	김 성 문	294	럭 키 금 속	박 영 구
267	〃	한 창 석	296	삼 양 중 기	김 순 호
268	〃	최 웅 길	297	부 산 정 기	김 규 호
269	서 진 산 업	최 한 승	298	한 국 철 강	임 태 진
270	금 성 사	유 재 섭	299	승 리 기 계	김 경 조
271	대 우 전 자	정 찬 백	300	금 성 사	이 문 희
272	우 진 정 밀	박 각 규	301	코 리 아 스 파 이 서	박 기 린
273	동 부 제 강	양 재 석	302	이 천 전 기	김 성 남
274	금 성 사	나 찬 경	303	우 진 전 기	장 화 현
275	한 진 섬 유 기 계	오 봉 출	304	기 아 써 비 스	김 종 천
276	현 대 전 자	전 덕 진	305	국 제 밸 브	이 인 철
277	대 한 전 선	최 쇠 묵	306	세 신 실 업	이 진 희
278	대 우 전 자	이 해 석	307	금 성 부 품	김 성 도
279	삼 미 종 합 특 수 강	김 진 호	308	경 창 산 업	장 지 태
280	기 아 특 수 강	강 규 석	309	후 지 카 대 원 전 기	이 준 만
281	한 영 알 미 늄	한 상 열	310	동 일 제 강	김 해 주

순 번	소 속	성 명	순 번	소 속	성 명
311	세진전자	문광주	320	대한제당	김원태
312	평화크랏치	김무호	321	효성금속	하영주
313	부산파이프	백종부	322	동아정기	박정화
314	로음코리아	박순자	323	한국이연	오경세
315	한일전기	장석웅	324	대광다이캐스트	김수룡
316	희성금속	황경발	325	진도	윤유원
317	성신	이종진	326	한국강관	서상연
318	럭키금속	김용겸	327	한독	김동영
319	두원중공업	김남수	328	금성부품	서정식

○ 표창자

－도원무역노동조합　위원장　이 봉 춘

－후지카대원전기노동조합　지도위원　이 봉 춘

포항지역본부설립

○ 일　시 : 1991. 11. 23 10 : 00～11 : 45

○ 장　소 : 포항근로복지회관

○ 설치경위

－포항지역 노동조합 대표자를 중심으로 "금속회"를 발족하여 회칙제정 및 월별정기모임 설정

－대구 · 경북지역본부에 금속노련 동해지역본부 분리 요청 및 협의

－대구 · 경북지역본부에서 지역적위치, 자발적운영능력(40개노조, 25,000조합원)을 고려하여 분할승인 하되 조직관할은 포항지역으로 한정

－본노련에서 박인상위원장, 대구 · 경북 본부 김경조의장 이진우조직국장 백종부 부산파이프 위원장외 4명의 노조대표자들이 지역본부설치에 대한 협의

※ 결과 : 대구 · 경북본부의 결의를 따라 지역본부의 분할을 인정하되 조직범위를 포항시지역으로 한정한다.

영태전자 부도건

○ 기업체명 : 영태전자공업주식회사

○ 대　표 : 이세열, 홍부길

○ 소 재 지 : 청주시 송정동 27-18
○ 업　　종 : 음향기기 제조 및 통신기기 제조
○ 종업원수 : 720명
○ 사건개요
－1987년이후 통신기기 업체의 경쟁심화와 매출단가하락, 원자재값 상승에 의산 채산성악화, 선진국의 보호무역장벽 강화와 EC ANTI DUMPING제소, ORDER의 취소 및 중지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91. 11.13 가동중단, －11.16 부도발생
－본노련에서 청와대, 노동부, 상공부, 노총,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조업정상가동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91년중 69억원의 운전자금 추가지원과 총 여신 161억원중 65억원 상당의 신용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신한은행으로서는 더이상 추가지원이 곤란하다는 통보 접수.

울산지역 이탈조직과의 토론회 참석

○ 일　시 : 1991. 12. 28 10 : 00～15 : 00
○ 장　소 : 울산시 울산관광호텔
○ 참석자 : 노총7, 금속4, 연합1, 노총울산지부6, 현대정공4, 현대자동차3, 한국프랜지1, 현대철탑1, 금강개발2, 현대중전기2, 현대종합목재1, 현대미포조선2, 현대강관1, 현해협3.
○ 토론내용
－한국노총 조한천 정책연구실장과 조성준홍보실장이 한국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노총의 운동기조와 중요활동사항발표
－노동법개정, 총액임금제도입, 일더하기운동에 대한 공동대응
－대화부족, 홍보부족이 결과적으로 한국노총과 현총련간의 조직적단절을 가져왔다. 발빠른 행동으로 단위노조의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 바라며 이시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화로 노동운동발전에 계기를 이룩하자.
－노총의 운동이념을 듣고 경탄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으로 옮겨주기 바란다.

조직담당자 회의참석

〈제1차〉
○ 일　　시 : 1991. 6. 21 15 : 00
○ 장　　소 :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의실
○ 주요내용
－각급 조직명칭 및 직위명칭 통일

－이탈조직 현황

－조직강화 방안

〈제2차〉

○ 일 시 : 1991. 9 26 14 : 00

○ 장 소 :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회의실

○ 주요내용

－노동절행사 일정을 확실히 결정하자

－산별체제 도입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신규조직 확대 및 관리에 총력을 경주

－대기업이탈 조직에 대한 협의

◎소위원회참석(산별체제전환을 위한)

○ 일 시 : 1991. 10. 10 15 : 00

○ 장 소 : 한국노총 조직국 사무실

○ 주요내용

－산별체제를 위한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토의

－노동조합법

제13조 : 노조설립시 가맹인준증을 첨부토록 추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2항 : 가입하거나를 → 가입하여야 한다로,

제7조3항 : 협조 · 지원 · 지도할 수 있다를 → 의무금 납부 관련을 규약에 준하여 이행토록 명문화

제8조 : 설립신고 교부신청서 상급단체 가맹인준증 첨부

제9조 : 변경신고시 가맹인준증 및 의무확인

〈제3차〉

○ 일 시 : 1991. 12. 27 11 : 30

○ 장 소 : 전국전력노동조합 회의실

○ 주요내용

－산별체제 전환을 위한 소위원회 토의내용 설명

－이탈조직 흡수작업 내용 설명

－조직현황 전산처리 내용 설명

－30분 일더하기 문제점 토의

〈제4차〉

○ 일 시 : 1992. 2. 24 14 : 00

○ 장 소 : 한국노총6층 접견실

○ 안　　건 : 한국노총전국대의원대회준비의 건

〈제5차〉

○ 일　　시 : 1992. 4. 10 10 : 00

○ 장　　소 : 한국노총6층 접견실

○ 안　　건 : 5 · 1노동절기념 및 총액임금제 반대결의대회의 건

교 육 활 동

교 육 부

○ 개요

Ⅰ. 본노련 주관 교육활동

1. 신임/신규 대표자 교육
2. 신임/신규 사무국장 교육
3. 핀란드 지원 강사 양성교육

Ⅱ. 노총 주관 노조간부 위탁교육

1. 정기 노조간부 교육
2. 중견간부(1차)
3. 중견간부(2차)

Ⅲ. 지역본부 및 단위조합 교육 지원현황

개 요

교육부에서는 '91 대의원대회의 교육사업계획에 따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노동운동의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교육에 대한 목표는 노동조합 일반 이론에 대한 이해, 단체교섭 능력강화, 조직운영 및 실무행정능력 배양, 간부자세 확립 및 각 조직간의 정보교류, 연대활동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나 수강생 참여율저조, 재정형편의 어려움, 교육시설(교육장)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육효과면에서는 기대치 이하의 효과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조합원에 대한 교육강화를 목적으로 핀란드금속노조로부터 지원받아 실시된 강사양육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방법의 변경(강의식에서 토의식)등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교육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전반에 걸쳐 참여율 저조 현상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는 교육사업의 활성화는 요원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92년도 교육사업 계획은 이 문제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계획 실시할 것이며 교육사업의 활성화로 총체적인 노통탄압을 저지하는데 최대 목표를 둘 것이다.

Ⅰ. 본노련 주관지역본부별 노동조합 현황

1. 신임/신규대표자 교육

가. 목표

○ 노동조합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 단체교섭 능력 강화

○ 조직운영 및 관리능력 강화

○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나. 개요

○ 교육기간 : 2박3일 합숙교육

○ 대상 : 91년도 신규 및 신임대표자(지부장 포함)

다. 교육계획

횟수	계 획 일 정	대 상 지 역	대상인원	비 고
1차	91.10.15 - 10.17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	80	
2차	91.10.29 - 10.31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전남북	80	

라. 교육실시현황

횟수	실 시 일 정	대 상 지 역	참석인원	장 소
1차	91.10.15 - 10.17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	21	성프란체스코 피정의 집
2차	91.10.29 - 10.31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전남북	28	대전 경하장

마. 교육내용

○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김장선 수석부위원장
○ 조합론 연구 및 노동문화	최웅길 사무처장
○ 노동조합 일상활동 및 회계실무	윤창열 총무국장
○ 단체교섭론	김홍룡 교육부장
○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이진우 조직국장
○ 노동운동사	김성문 부위원장
○ 지도자의 자세	정학균 노총부산본부의장
○ 현안문제에 대한 그룹토의	집행부

마. 평가

수강생 참여율 저조로 인한 교육집행상의 애로가 있었으나 반면에 알찬 교육이 진행되었음. 특히 수강생들은 전노협에 대한 시각. 적은 조합에 대한 연맹의 관심촉구, 연맹배포자료의 신빙성, 노동관계법 개정, 연맹교육원 건립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었음.

2. 신임/신규사무국장 교육

가. 목표

- ㅇ 노동조합 일반이론에 대한 이해
- ㅇ 단체교섭 능력 강화
- ㅇ 조직운영 및 관리능력 강화
- ㅇ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

나. 개요

- ㅇ 교육기간 : 2박3일 합숙교육
- ㅇ 대상 : 91년도 신임 및 신규 사무국장(사무장 포함)

다. 교육계획

횟수	계 획 일 정	대 상 지 역	대상인원	비 고
1차	91.10.22 - 10.24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	80	
2차	91.11. 5 - 11. 7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전남북	80	

라. 교육실시현황

횟수	실 시 일 정	대 상 지 역	참석인원	장 소
1차	91.10.22 - 10.24	서울, 경기, 인천, 충남북	39	성프란체스코 피정의 집
2차	91.11. 5 - 11. 7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전남북	47	대전 경하장

마. 교육내용

- ㅇ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 김장선 수석 부위원장
- ㅇ 조합론 연구 및 노동문화 — 최응길 사무처장
- ㅇ 노동조합 일상활동 및 회계실무 — 윤창열 총무국장
- ㅇ 단체교섭론 — 김홍룡 교육부장
- ㅇ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 이진우 조직국장
- ㅇ 노동운동사 — 김성문 부위원장
- ㅇ 지도자의 자세 — 정학균 노총부산본부의장
- ㅇ 연맹과의 대화 — 집행부

○ 현안문제에 대한 그룹토의 집행부

마. 평가

참석율은 보통이었으나 교육장소 선정등에 애로가 있었으며 교육생의 투쟁성, 수준이 상당한 정도로 평가됨.

특히 노동관계법 개악저지투쟁에 깊은 관심과 쟁의기금거출 전달식도 있었음.

3. 핀란드 지원 강사양성 교육

가. 목표

- 노동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정진할 수 있는 동기 부여
- 노동교육의 강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을 효율적으로 개발
- 강의기법 등 교육방법에 대한 구체적 훈련 및 역강 강화
- 노동교육 일반 이론에 대한 이해
- 노동자와 노동조합 교재활용에 효율적인 방안 강구

나. 개요

- 교육기간 : 3박 4일
- 대상인원 : 1회당 30명

다. 교육계획

횟수	계 획 일 정	대 상 지 역	인원	장 소	비 고
1차	91. 6.24 - 6.28	경기 전지역	30	반도유스호스텔	
2차	91. 7. 2 - 7. 5	서울, 인천	30	〃	
3차	91. 8.28 - 8.31	충남북,전남북	30	추후 결정	
4차	91. 9. 3 - 9. 6	경남,대구,경북	30	〃	
5차	91. 9.10 - 9.13	부산,울산	30	〃	
6차	91. 9.17 - 9.20	누락분 (중부 이남)	30	〃	
7차	91. 9.25 - 9.28	〃(중부 이북)	30	〃	
8차	91.10. 8 - 10.11	전국여성간부대상	30	〃	
9차	91.10.15 - 10.18	〃	30	〃	

라. 교육실시 현황

차수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비 고
1차	91. 6.25 - 6.28	반도유스호스텔	29	아르니와 FKMTU교육부장 동시 실시
2차	91. 7. 2 - 7. 5	〃	18	〃
3차	91. 9. 3 - 9. 6	대전경하장	22	FKMTU 교육부장 단독 실시
4차	91. 9.10 - 9.13	대구 발공호텔	21	〃
5차	91.10.23 - 10.26	대전 경하장	24	〃
6차	91.11.26 - 11.29	노총 중앙교육원	22	〃
7차	91.12. 3 - 12. 6	부산 금강유스호스텔	26	〃
8차	미실시			교육여건 불비 미실시
9차	〃			〃

마. 교육내용

○ 강사 양성교육의 필요성 김장선 수석 부위원장
○ 강의기법 및 강사의 자세 조성준 노총 홍보실장
○ 대중연설론 서정호 서강대 부총장
○ 단결의 시간 최웅길 사무처장
○ 그룹토의 및 실제 강의훈련 김홍룡 교육부장

바. 교육실시에 대한 평가

① 1,2차 교육에 있어서는 아르니 동지가 직접 참여하여 강의도 하고 많은 조언을 해주었으나 교육방법의 차이(한국의 교육방법은 일방적인 강의식)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후 교육에 있어서는 토의식과 강의식을 병행하므로서 점점 더 토의식 교육방법에 대하여 익숙해져 갔으며 앞으로 모든 교육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도록 교육생들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조합원들은 적극적인 토의참여나 토의결과에 대한 발표, 스스로가 생각한 바를 조리있게 표현하는데 겁을 먹고 있는 것 같다.
이문제는 단시일내에 시정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의 학교교육이 주입식·강의식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② 노동교육 일반 이론에 대한 이해는 대체적으로는 투쟁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높으나 노동운동의 역사, 노동3권, 합리적인 노조운영 등에는 이해력이 부족했으며 차후 교육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인 교육 및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③ 교재활용(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책이 쉽고 이해하기가 좋으므로 단위조합에서 소그룹을 구성 활용하고 노보를 통해서 교육시켜 나가겠다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④ 교육기법, 강의자세등 전혀 새로운 지식습득과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겨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생들이 대단한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⑤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매우 유익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지만 교육의 효과는 교육생들의 의지, 자신감, 지속적인 조합활동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지속적인 조합활동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노동조합 상황중에서 잦은 집행부의 교체가 주된 원인이다.

⑥ 전체 9회의 교육실시 계획중 7회밖에 실시못한 이유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폭서기, 혹한기를 피하고 임투시기 등과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되었으나 명절기간, 단위조합 조직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교육생 참여율 문제로 7회밖에 실시하지 못했다. 실시하지 못한 2회는 92년도 계획에 포함시켜 실시하도록 하겠다.

Ⅱ. 노총주관 노조간부 위탁교육

1. 정기 노조 간부 교육

○ 일　　시 : 1991. 3. -12.

○ 장　　소 : 노총 중앙 교육원

○ 교육기간 : 4박 5일

○ 기수별 교육배정, 추천 및 참석자

기　수	배　정	추　천	참　석	비　고
224	30	37	31	
225	30	31	27	
226	30	32	27	
227	30	30	24	
228	30	31	21	
229	30	32	27	
230	30	35	23	
231	30	31	16	
232	30	31	22	
233	30	29	18	
234	30	41	34	
235	30	45	27	
236	30	43	27	
237	30	43	22	
238	30	38	19	
計	450	529	365	

2. 중견간부 (1차)

○ 일　　시 : 1991. 10. 17 - 10. 18
○ 장　　소 : 노총 중앙 교육원
○ 참석 대상자/참석자 : 100/60명

3. 중견간부 (2차)

○ 일　　시 : 1991. 12. 9 - 12. 10
○ 장　　소 : 노총 중앙 교육원
○ 참석 대상자/참석자 : 100/90명

Ⅲ. 지역본부 및 단위조합 교육지원 현황

구　　분	92년			91년									
강　　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수석부위원장		1	1		1				1				4
김성문부위원							1		1				2
사 무 처 장	2	5	6	2	1	1	3	4	1	4	4	4	37
조 직 국 장	1	3	7	4			3	1	3	3	5	6	36
총 무 국 장										1	2	1	4
노 사 국 장									1				1
여 성 국 장				3			1	1	1	2	3	4	15
교 육 부 장	1	3	7	5	1					1	5		13
여 성 부 장	1	2	3	3				1	2		1		13
노 사 부 장	1	1	2	1		1				1			7
홍 보 위 원										1			1
노 총 의 뢰			6	6	1			1	4	1	7	4	30
計	6	15	32	24	4	2	8	8	14	13	23	24	173

※ **시청각 교재 발간**

- 시청각 교재(비디오 테이프)는 전문지식, 기초자료가 불비하여 현재 준비단계에 있음.

홍 보 활 동

홍 보 부

○ 개요

Ⅰ. 금속노보 발행

Ⅱ. 홍보선전교육 실시

Ⅲ. 성명서등 발표

Ⅳ. 기타 홍보물 발행

개 요

홍보선전활동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역할, 노동자의 올바른 의식 및 이념등을 대내외적으로 전파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고 조합원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특히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정부와 자본은 기존의 폭압적인 물리력과 병행하여 각종 이념적, 제도적 노동탄압을 자행하였다.

'92년은 정부의 물리적 노동탄압에 대한 국민의식의 거부감과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힌 정부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노동조합 활동에 전가하여 노동법개악, 총액임금제, 시간제근로등 제도적·이념적 공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공세속에서 물리적 탄압을 합리화시키려 노력하였다. 정부의 이런 의도는 일정정도 국민의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또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여기에 대응한 노동조합은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며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년초부터 폭로되던 정부와 자본의 온갖 비리에 대해 효과적인 정치폭로 및 실천대응을 하지 못했고 5월로 이어지는 임투시기와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 살인사건, 타살과 분신정국속에서 노동자의 총단결 및 총공세를 수행해 내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후반기에 노동탄압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정부의 노동법개악과 임금억제 노골화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

'91년 한해는 전반적으로 성장해 나오는 노동세력과 이를 억압하려는 반노동세력의 일대 격전이라 할 수 있었다.

이 속에서 노동세력은 반노동세력의 본질과 의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폭로와 선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위조합적인,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한정되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계급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이를 전체사회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 타 계층계급과 연대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노동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 각 단위조합의 투쟁 및 활동사항이 연맹으로 집결되고 연맹에서는 각 단위조합의 소식을 전국조직에 전파, 전국적인 연대감과 내용공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맹에서 각 지역본부의 자료를 입수, 일방적인 소식전파를 해 내용이 빈약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각 단위조합에서 홍보선전 활동의 의의를 과소평가하거나 조합활동의 어려움으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맹 홍보부에서는 기관지 금속노보를 격월간에서 월간으로 발행하였고 규격도 타블로이드판에서 신문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가맹노조 홍보선전, 편집부문 간부를 대상으로 홍보선전교육

을 실시하였고, '92임투선전포스터와 결의대회 팜플레을 발간하였으며 '91년 11월초에는 노동법 개악 반대에 따른 속보를 발행하였다.

연맹 홍보활동중 가장 중요한 기관지 발행사업은 '90년에 비해 규격과 발행빈도에서 발전을 하였지만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통신원 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지역통신원의 참여미비와 연맹 홍보담당자의 교체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는 '92회계년도에 통신원체계를 재수립 및 정비 극복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노동현안에 대한 연맹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가 '90회계년도에 비해 발행빈도가 많이 줄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무분별한 성명서를 자제한다는 방침에 기인한다.

기존까지 연맹 홍보부의 홍보선전활동은 타연맹 및 타조직과 연대해야 할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고 전체 노동운동에서 금속연맹이 차지하는 위치를 적극 활용해 내용심화 및 연대감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연맹이 매년 실시하는 홍보선전교육은 '90회계년도에 2회 시행했던 것이 '91회계년에는 1회로 축소되었다.

이는 현장 홍보선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성과를 체계화하고 내용 및 시간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Ⅰ. 금속노보 발행

- 판형 : 신문판 4면
- 발행부수 : 1만부
- 발행실적

1991년	7월	15일	제90호(신문판 2면)
	8월	17일	제91호(〃)
	9월	20일	제92호(이후 신문판 4면)
	10월	15일	제93호
	11월	15일	제94호
	12월	16일	제95호
1992년	1월	23일	제96호
	2월	20일	제97호
	3월	30일	제98호
	4월	30일	제99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박인상
편집인 : 최용집
인쇄인 : 서인석

금속소식보

우편번호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금속노련회관)
전화 884-2901, 884-1503
FAX 884-0457

지역본부

서 울	(02) 849-1963
울 산	(052) 257-2888
인 천	(032) 237-8505
수 원	(0331) 273-5796
안 양	(0343) 57-1410
부 천	(0326) 64-4051
구 미	(0546) 644-4819
대 구	(053) 74-8631
경 북	(0563) 53-9130
경 남	(0523) 55-8661
강원영동	(0391) 54-6318

등록일 : 1974년 1월 22일 등록번호 : 라-3708호

91년정기 대의원대회 "공안통지종식요구"

본 노련위원장에 박인상동지 재선

사상 처음 단일후보로 추대되어 압도적지지

본노련은 5월15일 한국노총 8층강당에서 91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90년도 사업을 결산하고 9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왔다. 또 이번 대회는 3년만이 처음은 임기대의원이 본노련의 임원, 중앙위원, 노총파견위원을 새로 선출하였다.

본노련 성탈이래 최초로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낸 이번 선거에서 박인상위원장이 만족임표, 대의원참표투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위원장으로 재선됨으로써 임표로 3년간 본노련을 이끌게 되었다. 총 588명의 대의원대의원중 445명이 참석해 실시된 투표결과는 박인상 후보에 대한 찬성표가 385표, 반대53표, 무효8표, 기권18표 나왔다. 박인상위원장은 재선이 확정되자 대회현장의 박수갈채속에 단상에 올라 "공안노조운동 타파 범치가 전국 하라는 대회결표 입고 조합원들의 성주동운도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등 임원과 중앙위원, 노총파견대의원 선출문제에 들어가 대의원들의 임원진명부 관반투표, 선거방식결정에 따라 박위원장이 지명한 9명의 전형위원의 전형결과를 받고 투표 결과 찬성 308표, 반대 62표, 무효 4표, 기권 79표로 19명의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164명의 노총파견대의원을 일괄 선출하였다.

특별 규연 대회에서는 다양한 최단위협을 위해 부위원장을 대폭 보강하였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대의원들은 공안통지를 세계조로 지정되는 노동탄압과 공안정권을 뒷받침하는 언론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민중당의 김문수의원, 민한주상, 노동자신문사, 노동법률 박법기변호사 민주화와 민족조선으로 요구하고 정권타도를 외쳤다.

박창수위원장의 축사 규명, 구속노동자석방, 기업주의 반노조행위근절, 임기 및 주기 억제 투쟁하는 시국에 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 이날 대회에서는 기아자동차 대회장에 파견 기업주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산업 노조탄압수법에 대한 시위결표를 위해 광석대의원들이 공동대의 결표명을 제기, 본노련에 손해배상청구소송 구제하에, 해당 사업장과 함께 적극적 활동을 결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선출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박인상)
▲상임수석부위원장(김장선 대우전자)
▲상임부위원장(김성훈 대한전선)
▲상임부위원장(정병렬 금성전선)
▲부위원장(박기서 한일섬유)
▲부위원장(홍재섭 금성사)
▲부위원장(최종수 명성수출)
▲부위원장(임성태 대우중공업)
▲부위원장(이광주 기아자동차)
▲부위원장(장재석 동부제강)
▲부위원장(박영춘 대우중공)
▲부위원장(정기춘 동국제강)
▲부위원장(차재준 한국중공업)
▲부위원장(재선주 삼미특수강)
▲부위원장(박영호 영창악기)
▲부위원장(강규석 기아자동차)
▲부위원장(박병구 여천금속)
▲부위원장(전태선 현대전자)
▲부위원장(이춘일 광명합금)
▲회계감사(조철호 조비온한가)
▲회계감사(최재도 조상은한)
▲회계감사(김동고 한신제강)

▲회계감사(박순호 한국시고네덕스)
▲사무처장(최용집 동방기업)

산업안전 세미나 개최

제2차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91.6.11~15까지 중앙대 후스호스텔에서 17개의 교육생 2명 최DAF당일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각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조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가 참석하여 4일 5일간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서구의 노련, 영표시교육과 한국의 수입교육이 병행된 세미나에서 교육생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으로 교육효과를 증폭시킨 교육이었으며 이느교육보다도 교육생의 참여 열의가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DAF산업안전부장 이도리만 비림과의 SAMU (스웨덴금속노조) 산업안전국장 스타그 그레벨이가 참석해 이어 산업국에서 정립된 본 현장제방을 설명하고 우리 나라가 현실적으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향후 개선해야 하등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갖어 하였다. DAF와 SAMU의 담당자는 제경제가에서 이번 교육생이 산업안전현장에 적극적인 간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된 도론 등 앞선 제방을 설명하고 우리 나라가 본실적으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향후 개선해야 하등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갖어 하였다. DAF와 SAMU의 담당자는 제경제가에서 이번 교육생이 산업안전현장에 적극적인 간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된 도론 등 앞선 제방을 설명하고 우리 나라가 본실적으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향후 개선해야 하등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갖어 하였다. 이에 1회교육에서 밝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DAF, SAMU(스웨덴금속노조)의 경험과 조언을 얻어 실시되고 있으며, 1992년에 계 지속 실시될 예정이다.

강사양성교육 2회실시 핀란드금속노조 지원으로

단위조합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핀란드 정부에 설립해 요청해 있는 사정에서 핀란드 금속노조의 지원으로 '노동자에 노동조합'교육가 핀란드에 파견 된 교재를 중심으로 조합원에게 적절 교육시킬 수 있는 강사교육을 본노련 교육부에서 실시하였다. 본 교육은 반도금스로벤에서 3월 (일째 1차 (6.25~28, 경기세미), 2차 (7.2~5, 서울, 인천지역)가 실시되었으며, 강사양성교육의 필요성(강정선 수석부위원장), 강사의 자세 및 강의기법(노동 조합은 유보강), 대중연설(서강대 서정호 부총장) 등의 강의와 참여자가 직접 교안을 작성하여 30분씩 실습강의 훈련이 실시되었다.

특히 교육훈련 과정에서 본 교육을 주관하기 위하여 내한한 핀란드 금속노조의 이로니 루소비넨등지(국제 경제학 교수)와 핀란드 노조의 독자활동 및 금속노조에 대한 이해 강의와 그룹토의의 중점으로 전개하여 일과별로 및 강평하여 교육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교육은 앞으로 한국의 교육에서 그 자유와 권리가 유린되는 기가박면 현장에서 보다 한층 더 이전의 문노의 시정도 되돌아 갔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높으로 보고 등도로 당면 노동탄압과 부조리를 함께서 스며 공안통지라는 세간의 표현은 현시국의 독특함과 압음함을 나타내준데는 역할이 부과한 사회스러운 용어라고 단정한다. 공정계 집단정권 부동산투기를 노동자들 포함한 전국민을 정책과 구체방어로 물러남은 사회적 부노부무임으로 귀결을 통제해는 것도 모자라 모든 정책은 물밑협력로 통하주로 공권력의 사상감으로 만들고 이른바 인사경영권으로 자본가의 탐욕과 전횡에 서슴없이를 씌우다니 공기에 사소함 노사간 이해에도 법무부에, 특별도 법의로 위장에의 최고장을 제주고 손해배상청구를 지원하는 노 노동탄압은 소위 공안통제의 정면임이 되어 버렸다.

이번 강정대에의 특별장면도 정국은 공안통제의 직접적 선동이었으며 그후 인해은 분신사태에 관련송경섭 박창수위원장의 최초의 속출도 부도덕한 정권에 의한 파탄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입법회 비입감도 노력지 않고 노동계, 학생회 명예문신을 배후에로 조작하여 조도하고 박창수위원장의 속출에 대해서 노동조두을 회의한 자상 운동화에 보복하는 것을 보고 우리 노동자들은 저들의 이면에 가개후 비도덕성과 비인간성에 대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들은 수많은 선열을 속출으로 물러남은 노동탄압 반민주화법에 대한 개폐대신 국회에서의 날치기처리로 일하는 저들의 행태와 만행을 보고 더이상의 만대는 2중의 비참한 상황으로 확인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련은 민주화의 대도를 법정 앞이정비기 위해 우리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정면한 보지소수행할 것이며 여기에는 노동탄압에서의 총파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에앞서 다음의 우리의 제반과 주장을 엄중한 자세로 번지 제기해 두고자 한다

1. 정부는 최근의 잇단 죽음을 비열하게 호도하는 인명모독으로 여지없이 제확인된 현 오스러운 공안통치를 더이상의 말장난 대신 당장 종식시키고 노제봉내각을 물사퇴시켜라!
2. 정부와 국회는 박창수위원장의 죽음에 진상을 밝히고 노동악법을 포함해서 반민주악법의 근본적 개폐문제가 현시국을 둘러싼 본질적 내용임을 인식하고 악법개폐에 다시 착수하라!
3. 정부는 현시국을 낳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제시됐던 당초의 약속,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등 경제민주화조치를 무조건 실시하라!
4. 정부는 정치, 사회, 경제민주화신현에 기초하여 구속노동자를 전면 석방하고 부당해고, 손해배상청구등 기업주들의 탐욕과 횡포를 철저히 근절하라!
5. 정부는 이미 허구성이 드러난 임금억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물가폭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라!
6.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관점사들의 조직폭력배연계사건, 국회의원뇌물의유사건, 청와대에서 보수언론에 이르는 수서특혜비리사건, 독점자본의 폐물방류사건, 세무공무원의 비리사건, 원진레이온의 독가스 작업장 사건등을 고스란히 기억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위의 우리주장이 최소한의 조건을 이루고 있는 민주화와속의 이행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비장한 전단을 가슴에 품고 예의 주시할 것이다.

1991년 5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1정기전국대의원대회

악덕기업주를 구속하라!

서울지역본부 옥외규탄집회 가져

본노련 서울지역본부(회장 김영집)는 대성전자부품, 한국필립전자등에서 신규조직을 올리자고 집단교섭 투쟁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해서 이를 구원하고 항해하기 위한 집회를 지난 7월3일 하오4시부터 8시까지 가졌다. 집회회가를 받아 전체원 이번 집회는 서울지역본부 산하 1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해서 성대한 분국전에 살아있는 노동자회 모습을 과시하였다.

집회는 우선 3분간에 소개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법인 대성전자(대표이사 이석주)일에서 최 유동과 항해구조로 개시되었으며 이어 대성전자부동과 한국필립전자노조 최선경위 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어 경찰은 지방을 거쳐 노동부 관리지방사무소까지 공안기리를 노동정책에스를 알려주고 1.5일도 하루에 경찰은 정동가두시위를 벌고 노동부 관악지방사무소 앞에서 비학기업주 규정을 요구하는 본 집회를 가졌다. 본노련의 김영훈 부위원장과 한국노총 조용연 사무처장이 격려차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등 집회에서는 한국노동법위법인 대성전자(대표이사 이석주)일에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법인 대성전자(대표이사 이석주)일에서 사례발표가 있었고 이어 이날 5개노조협의자들이 공동대회위원들 구성했다 이들은 공동대회위원회 구성에 스물한 정력중에서 '산업노조와 노조정설부주제에 대한 기업주와 노동부의 탄압은 이제 포함의 일이 아니며 더욱 다양해고 체계화에 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기는 단결이다 5개의사

사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우리의 손으로

노동자는 7월을 산업안전보건월들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동보활동을 벌이게 이 단위시업장으로 하여금 매년 소재하는 산업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바는 한해동안 5인이상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근로자 7,563,655명 가운데 1.78%에 달하는 135만8천여명이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년에는 18만2천여명이 산재사망자가 3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을 300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7.5명씩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을 한 것이다

이는 산업재해의 특성이 중대화, 대형화해 가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산재로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의 산재방지조차 무시해 근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마저 노동자는 전혀 혜택인구중에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다는 산재위험을 절감해 분배주의 투쟁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개별적으로 처리한 산재를 감안한다면 노동부 통계치에 대비당이 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원인은 어디에 있나?

첫째로, 저임금 경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이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일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시간외노동(연장, 특근, 철야) 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특히 교대제 이건근무한 경우 정신피로등 돌연형도로 인해 건강상태는 더욱 심각하여 지 과로사 위에 없다 또한 최근 장시 특근, 강요되고 있는 저녁제, 철야근, 격일제 일상생 도한 노동자건의 정상상태를 유발해고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부추김뿐 아니라 근로자로 노동자들을 노동강도로 몰아넣음으로써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또하나의 원인이 되고있다

둘째로, 노동강도의 증가에 고통 동반형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현재 자본가들은 자본축적의 위기를 맞아 이를 나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산업구조 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이런 구체적인 일환이 대표적인 경우 일정정도 이 공장 자동화를, 중소기업인 경우 저임금제의 유지에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대공장의 경우 공장자동화는 정확성과 기술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숙련기업인 경우 저임금제 유지에 노동강도의 강화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노동조합과 산업안전보건 전담제가 없는 상태이며 법에도 여렇게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해야 하는지 그것은 우당국의 의무이다 법률에 전혀 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실에 산업안전보건 전담제를 도입하고 이를 의무적 법에 하는 것만이 실현보기 이다 법률에 전혀 있는 것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최우선 사항 구비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 방도로 되어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여러문제점 실행과정의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안전과 지켜야 한은 의무규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고 처벌할 확실한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 발휘 통해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일 권리를 쟁취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우리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산재추방을 목표로 수행하는 노조내 산업안전보건활동은 법 그대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둘러싼 일체의 비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되 일 수 있다

강주화 중대재해의 처벌법으로 이런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시 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조합원 대중능동에 이에의 공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할 때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활동 또한 노동조합의 매우 중요한 일상적 일부가 되지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일상활동조직에서 노조내에 정책위가 할 산업안전보건활동은 시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중공업계통의 대기업인 경우 자본의 집중과정에서 나타난 일반과 특업조건에서 중소기업에 비한 상대적인 우위에 산업안전보건상태도 집중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노조합내의 산업안전보건 전담제가 없는 상태이며 법에도 여렇게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해야 하는지 그것은 우당국의 의무이다 법률에 전혀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내에 산업안전보건 전담제를 도입하고 이를 의무적 법에 하는 것만이 실현보기 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최우선 사항 구비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 방도로 되어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여러문제점 실행과정의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안전과 지켜야 한은 의무규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고 처벌할 확실한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 발휘 통해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일 권리를 쟁취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우리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산재추방을 목표로 수행하는 노조내 산업안전보건활동은 법 그대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며 더 나아가 노동자를 둘러싼 일체의 비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되 일 수 있다

강주화 중대재해의 처벌법으로 이런 노동자의 생명이 위협시 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조합원 대중능동에 이에의 공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할 때 노동자의 건강문제에 관한 산업안전보건활동 또한 노동조합의 매우 중요한 일상적 일부가 되지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일상활동조직에서 노조내에 정책위가 할 산업안전보건활동은 시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중공업계통의 대기업인 경우 자본의 집중과정에서 나타난 일반과 특업조건에서 중소기업에 비한 상대적인 우위에 산업안전보건상태도 집중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노조합내의 산업안전보건 전담제가 없는 상태이며 법에도 여렇게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해야 하는지 그것은 우당국의 의무이다 법률에 전혀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내에 산업안전보건 전담제를 도입하고 이를 의무적 법에 하는 것만이 실현보기 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생명을 수호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최우선 사항 구비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을 방도로 되어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여러문제점 실행과정의 문제로 인해 사업주가 안전과 지켜야 한은 의무규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고 처벌할 확실한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노동조합의 단결력 발휘 통해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일 권리를 쟁취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우리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산재추방을 목표로 수행하는 노조내 산업안전보건활동은 법 그대로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박인상
편집인 : 최용길
인쇄인 : 서인석

금속신문

우편번호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금속노련회관)
전화 864-2301, 864-1503
FAX 864-0457

등록일 : 1974년 1월 22일 등록번호 : 바-3708호

금속 '91 임투 18.3% 인상

정부의 한자리수 억제 정책 무너져

91년 임투결과는 정부의 한자리수 인상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두자리수 인상됨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노련 노사대책국의 '91임투 중합결과 및 평가에 따르면 절도산 사례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국내상황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 국내외적 수출부진과 생산성 둔화를 이유로 올해 임금을 한자리수로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과업 사업장의 공권력 투입,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두자리수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혜택 취소, 대기업 중심으로 선도기업을 정해놔여 제멋대로나나 동업종 기업의 임금을 제정함으로써 전체기업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제국제인 개입은 사실상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는 무등산무기계 실화에 따른 주거비 폭등 중소기업체 인력난, 물가앙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두자리수 인상이 불가피함을 인정한 것 때문이다.

임금교섭 타결 수준을 살펴보면 요구액에 있어서 예년에 비해 낮은수준이 아닌 26.6%로 나타났고 이는 실제 기본급 인상율 평균 18.32%로 전년도 임금인상율 15.80%보다 2.52%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요구 평균기본급 85,097원에 비해 타결 평균기본급은 58,633원으로 요구금액의 약 7. - 상승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조선업종이 19~21%수준으로 선두였으며, 굴포별 연령은 100명 이하 사업장이 19.77%를 정점이며 1,000명이상 사업장 13.39%보다 6.39%높이 정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정의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노련 산하 954개 단위노조중의 39%인 80개 노조에서 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경남과 경기지역이 가장 월등고(경남 28.75%, 경기 23.75%), 규모별로는 조합원수 100명에서 500명 사이의 사업장이 38.75%로 중소기업의 저임금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단일 정의 현황을 보면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을 위한 정의건수가 67건으로 83%에 달했으며 그밖에 구속자석방, 해고, 징계, 집회시위, 휴업, 협의회의 파업, 노조탄두보장 등의 요구가 정의 된건이었다 이러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노조탄압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며, 임투기간에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갱신 투쟁이 예년에 비해나 다른 현안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노동자의 실상이라 할 수 있다. 본과업 정의 현황을 보면 기업별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조합원 수별 등 모든 지역에서 임금인상율은 평균 18.32%로 전년도 임금인상율 15.80%보다 2.52%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요구 평균기본급 85,097원에 비해 타결 평균기본급은 58,633원으로 요구금액의 약 7. - 상승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조선업종이 19~21%수준으로 선두였으며, 굴포별 연령은 100명 이하 사업장이 19.77%를 정점이며 1,000명이상 사업장 13.39%보다 6.39%높이 정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1일 91임투승리 결의대회를 하는 본노련 조합원들

이러한 사정으로 국민전체가 걱정해오던을 때 국내 경제단체들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가장 큰 관건인 임투의 향기를 저지하기 위한 또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91임투에서 정부는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고집, 강요했으나 임금인상억제에는 정국 무너지고 말았다

사실의 이유이 정부정의 주장의 저정을 종합일조키고, 파업임투의 유가인상을 이기시켰던 제반사례에 대한 여론은 한편으로 1.2차 석유파동과 같은 경우가 발생,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2차 석유파동과는 성격이 달라 크게 걱정할 것이 못된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러한 사정으로 국민전체가 걱정해오던을 때 국내 경제단체들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가장 큰 관건인 임투의 향기를 저지하기 위한 또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름대로의 경험이 축적됨에 있어 노조의 사용자와의 교섭경험 저자는 매우 심화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부나 경제단체의 한자리수 임금인상, 노조의 경험부족 기업사용자들의 정책방식 등에 '91 임투에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이고 또 노조의 새로운 제반 상황과 선도적으로 또는 종합으로 임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한것도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도 인력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워 노조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임금을 두자리수 이상 과격적으로 인상하여 조기타결되는 사례도 다소 있었다. 이들의 전조적이 두자리수 임금인상을 경험하기 위해 출혈이가 시작됐다 그 이유는 계속 저조한 물가에 주거비 상승을 이유로인을 고려해 정부가 말하는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노동자의 기본적입장 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한자리수 임금인상논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정부도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을 한편 일면서 '저절'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므로 일부서 합한 이 무리한 지침대로에 자 사업장이 임금교섭은 계속 지연되었고, 정식적으로 한자리수를 지키기 위해 계약당시 신설중소로 임금구조의 파괴에서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듯 91임투는 두자리수 인상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사용자측에서 공갈을 협정하지 않았다면 전경 두자리수 인상은 가능할 수 있었

91년 임 투 평 가

'91임투에서 정부는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고집, 강요했으나 임금인상억제에는 정국 무너지고 말았다

사실의 이유이 정경제의 주의의 저정을 종합일조키고, 파업임투의 유가인상을 이기시켰던 제반사례에 대한 여론은 한편으로 1.2차 석유파동과 같은 경우가 발생,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2차 석유파동과는 성격이 달라 크게 걱정할 것이 못된다는 예측도 나왔다

이러한 사정으로 국민전체가 걱정해오던을 때 국내 경제단체들 정부에서는 노동자의 가장 큰 관건인 임투의 향기를 저지하기 위한 또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듯 정부나 경제단체의 한자리수 임금인상, 노조의 경험부족 기업사용자들의 정책방식 등에 '91 임투에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이고 또 노조의 새로운 제반 상황과 선도적으로 또는 종합으로 임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한것도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에로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도 인력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워 노조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임금을 두자리수 이상 과격적으로 인상하여 조기타결되는 사례도 다소 있었다. 이들의 전조적이 두자리수 임금인상을 경험하기 위해 출혈이가 시작됐다 그 이유는 계속 저조한 물가에 주거비 상승을 이유로인을 고려해 정부가 말하는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노동자의 기본적입장 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한자리수 임금인상논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정부도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을 한편 일면서 '저절'을 내놓은 것이다 그리므로 일부서 합한 이 무리한 지침대로에 자 사업장이 임금교섭은 계속 지연되었고, 정식적으로 한자리수를 지키기 위해 계약당시 신설중소로 임금구조의 파괴에서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듯 91임투는 두자리수 인상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사용자측에서 공갈을 협정하지 않았다면 전경 두자리수 인상은 가능할 수 있었

단결 · 공동투쟁이 승리관건!

그것들은 경제위기설과 공공요금 인상 고임금으로 인한 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며 여기에 제반사례가 적절하게 투영되어 임금인상률 억구상표 이유되었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정부투자기관명 선도기업 300여 업체를 선정하여 조기타결형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유도를 종용을 기울였다

이렇듯 때마다 임투때만 되면 경제의 어려움과 여러 사회환란 요인들에 대한 핵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주인으로서 임금인상억제정책이 사용되는 것은 중상문제가 되어 버렸다 특히 정부는 매년에 하지 않았던 대대적인 홍보하고 등한하였다

경제기획원회 (경제부스), 노동부회 (노동부스), (노동 3관회 출범은 이때), 그밖에 국영투에서 나오는 (국방뉴스)등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정당화한 각종 홍보매체를 매모하였고 비정의 87%정에 대한 사실을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 조합원 한업공가하여 가장 성격이고도 기존에인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하는 가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은 87년이후 집행부가 90년에 들어서 80%이상 교체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교섭보상에 서야 했고 여기에 요구방법 교섭방법등의 경험이 없어 손해과정 추의 문제점이 속출되며, 어느 노조는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전수시키지 않아 새로운 집행부가 정보입지를 가진 무한 상태에서 91 임투를 맞이해야 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사용자는 그간 교섭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고용하여 논가 희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의 한자리수 인상의 여구성을 명확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여구정책도 불구하고 정책선거이후 노동정의 사업장에 경험적일과 무량법제인 무임을 통해 노동정의를 강압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고 있다 실지에는 노사협상장에서 난입하여 노조교섭대표를 무이기로 연행, 구속시키는 등 노동탄압에 대한 노골적인 의도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91임투는 정부, 사용자정신에 모두 제작기 계주장을 협회에 전개되어 왔다 그로인해 파업되는 것은 노동자 뿐이었고 우발은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를 예술에게 된 연결은 정부와 사용자의 반노동자의 적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사용자는 구체화면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사회와 국가의 일부든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한에서만 경험한다 이것은 정부가 기본적인 것이 일깨우다 임금을 실질적으로 이상할 수 있고 노동자의 처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파기의 경험을 축적하고 공동대응할 단결투쟁으로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자 대항법을 분쇄해 나가야 한다

'91임투의 역지한 반성과 승리의 경험을 살세워 '92임투승리를 위해 한단계하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 한만도가 이뤄 대단결만이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자 생존권 쟁권리를 확탈할 수 있다는 진리를 91임투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다

(본노련 노사대책부)

각 지역본부 교육활동 실시

대구 경북지역본부(회장 김정조)는 조직확장의 일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노동 대구본부와 합동으로 간부교육을 문경새재 모텔에서 7. 18~20(2박 3일)까지 실시하였다

주요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한국의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 산업노련의 운동방향, 한국경제와 노사관계 등이었으며 본노련 노사대책 등이었으며 집행본부 교육부장 김정조 지역본부 임원 2명 파견되어 실시하고 교육도중에 집행지침을 배부하였다. 또한 한자리수 임금인상에 맞서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서울지역본부(회장 도영일)에서도 본부교육을 각종을 위한 교육이 7. 13~14일 대성리 교육원에서 실시되었는데 교육일 사무처장이 파견되어 교육을 지원하여 있다.

이제 우리는 여름이 지나고 이번 각 지역본부의 교육활동 과, 산업노련의 운동방향, 한국경제와 노사관계 등이었으며 본노련에서도 지역본부 임원이 2명씩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본노련 노사대책부)

광복절을 맞이하여 구속노동자의 전면석방을 촉구하는

성 명 서

민족통일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91년도 광복절에 즈음하여 우리는 현재 억울하게 구속되어 고초를 겪고있는 구속노동자를 민족화합차원에서 정부가 전면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돌이켜보건데 6공화국이사상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들입한 89년이래 어느 한시.기라도 노동자가 구속되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6공화국이 내건 민주화의 약속은 노동탄압과 노동자 구속으로 얼룩지고 변질되어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구속이 너무나 당연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구속하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것인가? 정부는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법률 몇푼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에게 사형이나 같은 무당해고를 함의했다는 이유로 구속 처벌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마음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법적 구제명령이 내려도 따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과연 이들 악덕기업주들을 엄벌하여 법의 권위와 형평을 지키려 했는가? 또한 정부는 오늘의 산업사회문제를 전부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온갖 폐단과 문제는 노동자에게 있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오늘날 누구도 인정하고 있듯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선성장 후분배의 허울좋은 구호하에 장시간 우리 노동자를 억압하고 수탈 한 결과였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스스로 노동자 보호정책을 외면하고, 대화로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인 노동 3권까지도 완전히 짓밟았다. 이것을 과거지사라고 강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정부와 기업주가 유착하여 더욱 대규모로, 더욱 노골적이고 지능적으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다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노동탄압을 이용하여 자주 · 민주적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폭력, 고소, 해고, 손해배상청구 등을 자행하고 있고, 정부는 자주 민주적 노동조합 파괴와 노동자의 노예화를 위해 탄압지침을 남발하고 합법적 쟁의사업장까지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석상에까지 경찰을 난입시켜 노동자들을 연행해가고 있으며 노사자치주의를 무시한 불법개입을 도처에서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구속노동자들이 노동탄압정책의 희생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면서 정부가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 구속노동자들을 전면석방할 것과 아울러 노동탄압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의 노동탄압정책이 철회되지 않는한 제2의, 보다 강력한 노동자 대투쟁이 불가피 하리라는 것을 천명해둔다.

1991. 8. 15.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주장 총액임금제를 거부한다!

정부는 22일 임금관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행 임금제도를 총액임금제로 개편하기로 최종을 모았다. 총액임금제란 연간 지급받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등을 모두 합쳐 12개월로 나눈 월수입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정부는 김인주 비상무위원 정부 출연기관, 정부투자 기업부문 이 도입하는 것을 강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총액임금제 도입의 근거는 현행 임금제도가 그 구성항목이 너무 복잡해져 한 인건비 산출과 관리를 제산이 어렵고, 임금교섭에 있어 불필요한 과정으로 노사간의 마찰이 심화되 기인되고 정책과 성과가 임금체계에 반영되지 못함에 이러한 단점을 없애기 위해 총액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총액임금제의 도입은 그동안 정부가 거론해왔던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과도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연봉제 추방에서 노동계에 일반에준이 반발하고, 화폐의 임무 사용자 측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일자 정부는 급여개 총액임금제의 도입으로 추가를 하무었다. 이것이 총액 임금제 추장은 현장에 대한 연구에 노사간의 의견을 반영하지않은 졸속처리고 평가 전혀 무의의 정상이다.

그러면 이 총액 임금제 도입을 노동자. 사용자. 정부는 시각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정부는 사용자가 보는 임금은 위에서 상회보임도기 한 임금제도를 국제화고 경신상 형평과 국제 경쟁에서 경쟁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우리 노동계에 눈으로 총액 임금제를 보자.

먼저 총액 임금제가 토탈되면 기본급 제수당 월상여금의 구분이 없어지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노동자 복지기금이 임금총액안에 포함되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해지 된다 도한 총액임제의 기준이 프롤레이 노동자에 대한 기업 관리가 강화되면서 성과배분에 따른 노 노 갈등의 심화 등 총체적으로 노조의 교섭력과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된다. 현재의 임금총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하도 거기에 따르는 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즉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노동자의 생활은 궁도로 저하되게 되는 것이다

총액임금제의 도입은 정부와 사용자가 자신의 방은부지의 초과이윤확대를 위해에 노동운동을 탄압시키고 단결을 저해하여 노동자를 민간과 교육의 성장로 내몰려는 것이다

우리는 강조고 있다 물가연동과 국제경제에 맞춰가 노동자의 임금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제벌의 무능단 무기력 이론의 제주자 기계. 시설의 형편선업의 공대. 정부의 제벌위주 경제정책의 통제생활 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경쟁도로는 아니라 의 경제를 이상이기는 방등에서 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편의위주고 사용자 위주인 총액임금제를 즉각 철폐하고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고 임금수입의 안정성과 임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에 사용자 중심의 편향적인 경제정책을 제자해야이 한다 자본가에 산업 제주사용 주도하고 사회정책 사업을 근절해야 한다.

물가연상 억제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총액임금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노동자 편익의 도다 명백일 뿐이며 이러한 임금제도는 노동자에 한단도구가 되어선 안된다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위해 총액 임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소리이며 그들이 최도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편당과 복화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자들은 총액 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최도를 간파하고 공개 단결하여 정부와 사용자들에 노동자 편익 기도를 분쇄해야 해겠다.

▲ 조직체제는 이렇게

전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임상보고를 해왔다가 조합 산업안전전문부문 노조내 전담부서의 확보로 보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활동이라는 것이 총체제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일인만큼 이러한 전담체계를 중심으로 하되. 월별 간주일인의 역할만이 아니라 전 사업장에서 다양하고 일상적인 소량 전문의 요구를 모아내고 조합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듯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대중적 토대위에서 조직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 지역별 기업 대리원 및 고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당자를 통해 조사활동을 활동해야 공정성 신계전형 조사, 유해요인 경감, 위험체험 관리전형(방호조치 관리체험 등)활동, 건강관찰 일정체험 측정결과 분석 주서별 설명회 개최등 각 공정별 주서원들에 산재 치원인 재발에 제구력보호 실천할 수 있는 등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노조내에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체일일적 중에서가는데 주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전담자의 활동보장이다. 조합원들에 건강보호 산업재도로 배우 다양해고 일정정도의 지속성을 요합할 아니라 각종 사고나 사인이 발생시 추리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공 적 상근을 필요하는 것이 필요해지.

그러나 일부의 대공장들을 제외해고는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산업안전부서는 흔한. 노조내 상근을 원해. 확보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원 노조에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된(산업부 상위원회)가 매우 효요일수시간에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활동시간을 최대하여 부분씩이나 일상적으로 사업활동 정체시가고 있는데 이방동상근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활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전담체임자의 상근문제와 함께 노동조합의 상체부의 교체주도로 산업안전활동이 갖는 내용적인 전문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함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해기 위해에서는 일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내용을 전담체임자만 아니라 주서원 등 조합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정로이 따라서는 집중적이고 특화된 세부적인 문한을 해서 전담자가 교체하여도 그간의 문한과 지속성을 지켜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담부서의 형태와 내용은 사업장의 규모와 노동조합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산업안전부서의 다양하고 일상적인 소량 전문의 요구를 모아내고 조합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듯 산업안전보건활동이 대중적 토대위에서 조직화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 지역별 기업 대리원 및 고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당자를 통해 조사활동을 활동해야 공정성 신계전형 조사, 유해요인 경감, 위험체험 관리전형(방호조치 관리체험 등)활동, 건강관찰 일정체험 측정결과 분석 주서별 설명회 개최등 각 공정별 주서원들에 산재 치원인 재발에 제구력보호 실천할 수 있는 등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노조내에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체일일적 중에서가는데 주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전담자의 활동보장이다. 조합원들에 건강보호 산업재도로 배우 다양해고 일정정도의 지속성을 요합할 아니라 각종 사고나 사인이 발생시 추리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공적 상근을 필요하는 것이 필요해지.

그러나 일부의 대공장들을 제외해고는 대부분의 노조에서는 산업안전부서는 흔한. 노조내 상근을 원해. 확보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원 노조에서는 조합원으로 구성된(산업부 상위원회)가 매우 효요일수시간에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위한 활동시간을 최대하여 부분씩이나 일상적으로 사업활동 정체시가고 있는데 이방동상근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활동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전담체임자의 상근문제와 함께 노동조합의 상체부의 교체주도로 산업안전활동이 갖는 내용적인 전문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함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해기 위해에서는 일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활동의 내용을 전담체임자만 아니라 주서원 등 조합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정로이 따라서는 집중적이고 특화된 세부적인 문한을 해서 전담자가 교체하여도 그간의 문한과 지속성을 지켜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담부서의 형태와 내용은 사업장의 규모와 노동조합의 역량에 따라 다양해 질 수 있다.

1991년 9월 20일 The Metal News 제92호 (1)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박인상
편집인 최용길
인쇄인 서인석

금속소식

우편번호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월동 1570-2
(금속노련회관)
전화 864-2901 864-1503
FAX 864-0457

등록일 : 1974년 1월 22일 등록번호 : 바-370호

(월간 비매품)

「금속노련」 한국노동 운동사

지난 30년간의 노동운동에 지대한 공헌

본노련 창립 30주년 기념식 9월 24일 본노련 지하 대강당에서 본노련 역대위원, 각 지역본부 임직원 및 일반 사무직원의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김부지역의 수세 등 국민전세의 열악와 노동자 권연의 모습을 전지하여 조촐히 열린 이번기념식에서 박인상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본 상부는 89년 입사해 지금까지 가공할 만한 노조탄압을 지행하여 왔으며 특히 금속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구조적 수여서 노이다시피 가장 극단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금속노동자가 단결하여 경부와 사용자의 노조탄압을 분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노련과 단위노조가 현재의 조직선에 결국적으로 삼여하여 임으로 산별노조 결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노총 박종근위원장은 "금속노련이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지대하며 사수·민주적 노동운동이 정부의 노조탄압으로 위해당하는 현실에서 금속노동자가 선봉에 서서 정부와 사용자의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분쇄하길 바란다"고 격려하였다.

30년 기념식에서 박인상 위원장 치사

이어 축사에서 김병룡 전 위원장은 "적극적인 참여로 구조조정 및 노동탄압에 조직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 하였다.

기념식은 본노련의 30년을 정리하는 뜻 깊은 행사였으며 현재 우리 노동운동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실적 변화를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전체 금속노동자의 다짐이었다.

제3·4차 강사양성교육실시

본 노련 교육부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대전 경하장에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구 팔공호텔에서 제3, 4차 리더십지원 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충청도 · 북도 · 경상남북 · 부이 대구 전북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3차 21명, 4차 30명이 참가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기본적인 이론교육과 실제강의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하였다. 각 단위사업장의 교육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은 8차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교육은 또한 지역별 노조교육 현황과 상황에 대하여 서로 토의하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간 노동자들의 단결과 화합에 큰 도움이 되었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와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져주면서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친 이번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태풍 남해안지역 강타

본노련 위원장 위로 방문

제12호 태풍 갤러디스가 남해안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 부산을 비롯한 경남북 지방의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이 쓸어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었으며 농토 및 가옥이 침수되는 등 그 피해정도는 인명 98여명 재산 피해 수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상대 기록 후 최대의 폭우였던 이번 피해는 근원적인 수해대책을 하지않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복구작업을 위해 정부와 전국민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노련에서는 각 지역의 피해정도 파악과 조사를 벌였으며 노조 및 회사에 격려서한을 발송했고 박인상위원장은 피해지역을 방문 노동자들을 위로 격려하였다.

여성노동자의 단결의 장 펼쳐

여성대표자사업장 친선체육대회

본노련 여성국에서는 9월 15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동소년원 뒤쪽편 운동장에서 제7회 여성대표자 사업장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13개 사업장에서 약 350여명이 참가하여 장애으로 노사여 차원진 이번 대회는 여성노동자들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는 행사는 것으로 불쌍에는 본노련 여성위원회 산별조직 사업장 여성위원 위주장 수여식도 함께 거행되었다.

줄줄제의 선도로 줄을 들음 후 개막사에서 연맹 김장선 수석상임 부위원장은 예년부터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주도한 것은 여성노동자라 할 수 있으며 전체 노동운동이 생일한 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지위향상과 전체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여성노동자가 단결하고 노력하여 하며 이번 체육대회가 그러한 단결의 원동기 되길 바란다 고 축사하였다.

먼저 남녀에도 불구하고 배구 · 축구 · 발야구 · 달리기 · 줄다리기 등 많은 경기를 벌였게 치른 여성노동자들은 장기 사업단별 장기자랑 마련후 줄을 맞춰 열기를 더하여 시상식 및 폐회식으로 대회를 장려하였다.

대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연맹 장영숙 여성국장은 남녀 불평등의식이 만연은 우리 여성노동자가 언제 깨어버려 힘찬 단결과 병등으로 남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자고 역설하였다.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여성사업장 노조원들의 힘찬 모습

본노련, 소련과 교류추진

소련 중기계노조 본노련간부초청

최근 본 노련은 소련 중기계노조(THE HEAVY ENGINEERING WORKERS' UNION)로 부터 장래 양국 노조간의 협력과 관계개선을 위한 공식사안을 받았으며 이 서한에는 1992년도에 3-4명의 본 노련간부를 초청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한 · 소 양국노동운동에 새로운 지평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에 본 노련의 향후 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소련으로 부터 초청장 형식의 공식서안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그 배경은 소 노련의 박인상 위원장이 1989년 IMF 세계총회와 관련하여 한국과 교류하여 이루는 등한 이후에 업무 신장에 대한을 미쳐 중에 있다. 소련 중기계노조는 1990년10월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Vicktor Suslov씨는 예전의 한가을 계기로 1992년도 본 노련의 대표단을 초청하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양국 관계개선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연대와 우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 초 일차적으로 인력교류를 성사시킬 예정이다.

한 · 소 노동외교가 구체화될 경우 다시적인 국제외교라는 취에서 국가을 선양하게 되고 전문적인 정보획득의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총내년 최저임금

22만3천8백18원 요구

한국노총은 19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월나 22만 3천 8백 18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전년 최저임금액 월 19만 2천 7백원에 비해 금액으로 31,118원, 인상률로는 16.1% 으로 수준으로 최근 확보는 물가상승에 비추어 볼 때 전년의 요구수준이 25%가 넘었던 선례 감안할 때, 최저임금 소폭으로 지원되고 있다.

노총의 요구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0.8%밖에 오르지 않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생계비가 비현실적임 문만 아니라, 산출 방법상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특지해 으로 산출, 제시하여 최저임금 심의 자료로 제출한 월 304,803원 생계비를 연말을 기준 하는한 금액의, 78.2% 에 해당한다.

노총긴급회의 소집

노동법개악 대처위해

지난 9월 17일 노동부장관이 ▲ 단체협약(임금 협약)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 ▲ 송액임금제의 근거마련 ▲ 변형근로제 도입등 법개정 계획을 발표하자 한국노총은 9월19일 긴급 회의 조합대표자 회의를 갖고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법개정안이 대부분 반노동자 제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일간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국노총이 개최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미나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으로 검토한 후 노총의 입장을 정립하여 요구 및 관철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성 명 서

정부는 임금협약 유효기간 연장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당연맹은 20일 정부가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2/3년으로 연장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이를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노동자적 사태로 규탄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임금협약 유효기간 연장의 이유로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임금인상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정의 방생에 대한 사용자들의 책임은 무시한 채 노동생산성만 빌미로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무당하게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실로 천부당만부당한 발상이 아니냐 ! 또한 임금협상을 2/3년마다 하게 될 경우, 결국은 물가와 생산성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물가 불안에 대한 불신은 물론 아직도 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에서, 생산성 임금제를 관철시킴으로써 서민층과 조합 유지 · 고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당연맹은 특히 노동소위의 생의권 행사 사례분위기 속에 연맹에 미해 생의방생선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준법선거가 실시되어 작에 따라 이노 매보다도 노사간 사용자단체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부의 방침이 친명되어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임금협약 유효기간 연장방침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당연맹은 이상 선조직과 함께 기필코 저지할 것이며 임금 인상 하는 바이다.

1991년 8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 종 근

주장 장기 임금협약시도 철회하라!

—임금제도를 통한 각종 노동탄압 음모를 직시하자.—

경찰력과 구속, 징계해고와 위장폐업, 경영합리화를 이용한 노동탄압이 이제 그 루리라 할 수 있는 임금과 승진제도 등에까지 뻗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노동부는 공무원들에게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총액임금제라는 사용자도 없는 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강력히 시사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직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기다가 정부는 기업들에게 간접수당을 정착시킬 수 있게 법률을 제정하도록 도입을 선전하는 가 하면 지난 8월 20일엔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우리는 경영인들이 정부가 노동자를 위해 이런 강기다 정책을 고안(물론 이것이나 일본에서 직수입하고 있지만)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는 경영자한테 정부가 있을 내놓았으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생각도 물론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적 반대가 있을수는 있지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나 노동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이들을 볼 때 노동탄압적 · 임금억제적 심보, 그리고 들어나고 있다. 연봉제의 문제점이나 총액임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호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연봉제는 협상되는 생산자에의 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적으로 능력평가에 따른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조롱 될 수 있는 제도이며 총액임금제란 대기업들이 정부의 탄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의 위신과 자신들의 실리를 보장키 위해 기존 근은 탄자리수 내로 억제하고 대신 수당등으로 밀어주는 것을 근본적으로 억제해 보겠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임금협약유효기간 연장이란 노사분쟁의 기회를 줄임과 동시에 임금인상기준을 정부발표의 물가상승이나 생산성 상승률에의 환산으로 끌어놓으려는 계산이며 임금인상율을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임금억제 여론을 형성, 임금을 억제해보자는 의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일찌기 미국등에서 도입된 제도로 입증으로 건너온 것이다. 일상이 생계비 수준에 놓여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임금이 생산성이나 정부 발표임금의 연동될 경우 빈곤의 계속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정부발표 물가가 노동자의 생계비보다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임금협약기간 연장은 반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고자 한다. 정부는 무등산투기 등은 적당히 눈투고 일반인 억제에서 국제경쟁력이니 물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는 더 큰 파국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도 인식을 한번 기다듬어 보아야 할 때이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운동은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보다는 목구멍 해결하는에 매진하다 보니 발등의 불끄기 식의 운동이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나 자본측도 음산해서 탄압으로 대응해온 것이 사실이나 그동안의 능력측적으로 이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또한 제도적인 탄압을 감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나 자본측은 입버릇 "노동시간이 너무 적다,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근로의욕이 없어서다" 는 등의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놓으며 이 바탕에서 임금억제정책과 근로의욕함상정책(노동자인 경영자의 정책, 노예의식을 세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노동자들도 정부의 선전내용이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비난들에게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정부나 자본측의 탄압구실을 봉쇄함과 아울러 우리노동자들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도 근본적인 의식전환과 함께 장기적인 대응책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임금억제정책은 결코 단기적 목표를 가지고 아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한다. 자본측은 노동능력 향상을 위해 임금과 승진이라는 미끼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노동조합으로서는 노동자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해 하는 그 어떤 제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때문에 기업측은 이 제도의 도입이 우리 노동자에게 우선 해롭다 한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정치화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반대로 한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면밀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대국민선전을 통해 정부의 기업측의 의도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속자 날로 급증

3년간 1천명 증가

지난 3년에 동안 구속된 노동자 수가 1천이명을 넘고 있는 가운데 올년 7월말 현재 금속노동자중에 구속자가 총 18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8년말 (골만불국)이후 정부의 자의의 방관에서의 부자비한 공권력 투입 및 이에 편승한 사용자의 고소 고발에 따라 구속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노동쟁의 조정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각종 생의행위의 관련,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노동자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표)에 드러나 현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탄압 정책을 반증해 주고 있다.

경제위기는 정부와 자본가 책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대신 근본적 정책 필요

인간인권으로 위기를 느낀 정부와 자본가는 임정 인정을 퇴장한 후 88년 공민당국을 조성하여 국민의 민주화 열기를 꺾고 노동자세력의 전횡을 억압하였다.

89년 공민당국으로 잠시 위축되었던 노동자의 전횡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 세력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89년 후소불위의 권력을 위투로서 확인시 여기에 건승 89년 자본가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투쟁을 적용 89년 이에응호기를 통한 노동자의 국민의 이기를 피하려는 수법도 지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노동자의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진행되고 있는 동서화해와 남북통일의 열기를 무시한 채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을 노동자에게 무차별 적용 89년 이에응호기를 통한 노동자의 국민의 이기를 피하려는 수법도 지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노동자의 진출을 막을 수는 없다.

또한 정부는 제2의 광안점국으로 몰리우고 있는 범죄의의 연쇄선포를 통해 과업사업장에 대한 112신고 시투자별 해산, 구속, 3자 개입금지법 확대적용, 업무방해의 지의적 적용 등 위법탈법적 노동탄압을 지행하여 있다. 거기에다 현재 아비 경제위기의 한인은 자본가의 생산투자기피 및 부동산과 소비에의 투자, 호의 시위성립, 7월의 수입대리점회, 기술의 예측 등과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 부동산 투기근절의지 포기, 고위관료의 사치생활로 국민위대감 조성, 부정비리 기업에 대한 금융특혜 등 경제위기를 조장하는데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는 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위기의 주범노동자를 뜬데해 시고해서는 안된다. 경제위기의 한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세우는데 이 행사를 통해 노동문화를 발전시키고 주체적인 노동자문화 건설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해 본다.

고 침

지난 9호 기사중 '강성당성교육'은 '강사당성교육'으로 바로 잡습니다.

서울지역본부 제2회 노동문화제 개최

건강한 노동문화 건설에 전력

본노련 서울지역본부는 9월7일 노동대자들에서 제2회 노동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지역본부 산하단위노조에서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문화제는 노동자들의 삶의 문화, 건강한 문화쟁취를 위한 것으로 가진자들의 문화특권적, 퇴폐문화를 거부하고 생산적인 문화창달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였다.

문선대의 식전행사 후 기념식에서 지역본부 외침 김영길등지는 '소비적이고 퇴폐, 퇴폐문화가 판치는 현실에서 생산과 건설의 주역인 우리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의 문화 건강하고 발전적인 생산의 문화로 우리 삶에서 이어나는 예한과 기쁨을 나누어 가지자' 고 역설하였다.

이후 단시별 장기투쟁이 진행되어 열기를 더한는데 남성전기, 동해, 도신건설, 토월코리아, 오트론, 한국시그네틱스, 청우공업 노동조합에서 준비된 노래, 연극, 에어로빅, 무용, 춘극등이 선보였다. 이어 문선대공연과 오트론 노동조합 동료과의 사물놀이로 행사를 마쳤는데 이 행사를 통해 노동문화를 발전시키고 주체적인 노동자문화 건설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해 본다.

제2회 노동문화제 참가한 서울지역 노동자들

구 분	건수	백분율
업무방해	73	33.25%
쟁의조정법	47	25.27%
3자개입	6	3.22%
국가보안법	13	6.99%
집시법	12	6.45%
폭행	14	7.53%
특수공무집행방해	13	6.99%
기타	8	4.30%

경기지역본부 연석회의개최

경기지역본부(의장 : 허영일)는 9월 11일 본부 중앙위원 및 창립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2월 16일 건민가 중심의 이후 활동사항과 새로운 안은사항, 각 단위노조 임원대표 사항 등에 대하여 중간경과를 점검 하였다. 또 10월 임을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 민단을 기하기 위한 준비사항도 함께 도의 하였다.

금속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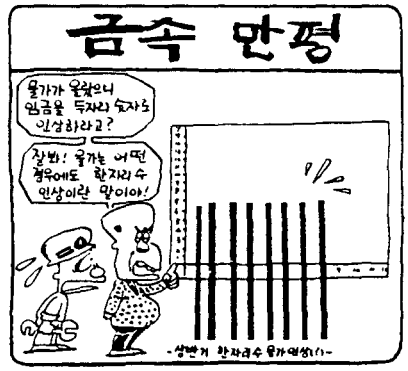

금속노련 출판물을 소개합니다.

1990년 단체협약분석 및 실질근로조건 조사 보고서

사업장의 단협과 근로조건을 조사, 산쿠조직의 올바른 사업과 단협 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 468쪽

노동조합과 홍보선전활동

노동조합 홍보선전활동의 의의와 그 실무를 정리한 홍보선전 지침서/20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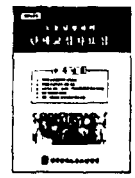

노동탄압하의 단체교섭 자료집

정부, 자본측의 지침과 연행 나름대로 실정한 대응책 제시, 국난한 노동탄압 속에서 노조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책/ 224쪽

88년도 금속노련 가맹노조 홍보사례집

각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활동 중심으로, 주제별로 구분하여 홍보방법의 창의성을 예시한 홍보물 모음집/ 216쪽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스웨덴 금속노조에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교육을 위해 제시한 노론용 제시를 번역/238쪽

노동판례집

각 부문별 노사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정리하여 모음집/345쪽

노동자와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조직과 임상활동을 보다 올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지식을 여은 책/ 158쪽

신임노조 간부를 위한 실무교재

임금교섭 · 홍보활동 · 단체교섭 등의 단체협약모범안을 실어 신규 노조간부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제시한 활동 지침서/ 194쪽

ILO(국제노동기구)와 노동조합운동

1. ILO(국제노동기구)란?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거하여 1919년 6월 28일에 설립된 국제노동단체이다.

현재는 WHO, UNESCO 등과 같이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목표은 국제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과 근로자의 생활향상, 완전고용, 노사협조, 사회보장의 실현 등을 조장, 촉진하는 두가지 원이며, 현재 가맹국은 143개국으로 그 가맹국은 1945년 시점의 창가맹국과 국제연합가맹국으로서 ILO 사무국장에 대하여 원장의 의무를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함으로써 가맹국이 된 나라(거의 대부분의 가맹국은 이 방식에 의함), 또 스위스와 같이 국제연합의 비가맹국으로 ILO총회에 의하여 그 가맹이 승인된 나라에 의하여 구성되고 있다. ILO의 조직으로는 최고기관인 ILO 총회, 관리기관인 ILO 이사회 및 ILO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밖에 보조기관으로서 계획재정관리위원회 등의 이사회부속위원회, 지역회의 산업별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사무국은 제네바에 있는 본부와 밖에 15개소에 지구사업소, 등 정 외의 87소에 지국을 설치하여 각각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4년부터 가입문제를 포함해서 관련을 맺어 오다가 1982년 6월 처음으로 노·사·정에 의한 대표가 업무비로서 총회에 참석한 바 있다.

2. ILO의 구성

ILO의 구성은 가맹의 국가에 한하여 각기 국가는 ILO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ILO 헌장의 의무를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앞으면 된다.

그 외부는 정사회 자유나 차별금지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 노동조합의 승인을 조합하는 것이다.

국가가 아닌 개개의 조직이나 노동조합은(ILO가입이 필수 없기만 국제조직, PSI (국제공공서비스연맹)나 ICFTU(국제자유노련) 등은 업무비의 지원이 보장되고 ILO 총회나 기타 ILO 회의에 대표를 참석시킬수 있다.

현재 ILO에는 전세계 주권공화국 중 1143개국이 가맹해 활동하고 있는데 ILO 가입절차는 UN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서로 다르게 규정해 있다. 먼저 UN회원국은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ILO 헌장상 의무를 정식으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수락한다"라는 뜻지를 ILO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에 비해 UN비회원국의 경우는 까다로운 편이다. 비회원국의 가맹절차는 헌장 제1조4항에 나와 있는데 "…… 총회는 참석하고 투표하는 정부대표의 3분의2의 찬성표를 포함해 회기에 참석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의 3분의 2의 찬성투표에 의하여……"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ILO가맹결의에 정부측 외곤을 중시하게 된 것은 가맹신청국이 가맹에 수반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제법상의 지위가 있는가 없는가의 관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나 8번 국제경제에 바탕한 이런 나라에서 비인도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다른 나라에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희생되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3. ILO 총회

ILO총회는 매년6월에 약 3주간에 걸쳐 개최되며 총회는 3년만다 ILO의 집행기구인 이사회 임원을 선출한다.

총회는 통상 (가맹국 대표 지원 총회 회원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이도 매년1회 개최한다)는 헌장 제3조 1항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개최되는데 1919년 제1차 총회가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는 제78차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특히 올 총회에는 회원별 노동부 장관이 1백명 넘게 참석하고 또 '사용자와 피선거 근로자의 참구권 보호'라는 주제에 대해 기조연설을 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편 ILO총회를 바쁘게 ILO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와 위원회는 모두 노·사·정 3자 대표로 구성하는데 다른 국제기관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이 3자 구성원 제이다. 그러나 (총회는 4명의 각 가맹국 대표로 구성한다. 그중 2명은 정부측 대표로 하여 다른 2명은 각 가맹국의 사용자 및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표로 한다)는 헌장 제3조 1항에 따라 정부측의 외곤에 많은 바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조약과 권고

ILO조약과 권고는 ILO총회가 노동자의 고용조건이나 노동성활, 경제사회조건의 보호와 개선을 함께 만들어지는 권위있는 문서이다. (현재 조약은 171개, 권고는 178개)

조약은 법률문서보다 강한 것으로 이것은 국제조약과 같이 인준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나라에 이런 조약을 인준했을 때 그나라는 입법의 구속력을 가진 법률외부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한 외부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ILO의 정기제안 검사도 하게된다. 한편 권고는 구속력이 없부는 없으며 나라에 정책이나 법률의 가이드라인이 되며, 노동법에 포함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년스를 나타낼 수 있다. 조약과 권고는 같은 표제에 대해 적용되는 보다 상세한 서식을 말한다.

현재까지 채택된 조약과 권고중 중요한 것만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조 약

■ 심업에 관한 조약(제2호)
■ 최저임금제도의 설립에 관한 조약(제26호) ■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에 관한 조약(제47호)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조약(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제98호) ■ 중립기관의 노동에 있어서 남녀노동의 동일보수에 관한 조약(제100호) ■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제102호) ■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대표에게 부여될 보호 및 편의에 관한 조약(제135호) ■ 공익사업에 있어서 결사의 자유 보호와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조약(제151호)

권 고

■ 심업에 관한 권고(제1호)
■ 실업보험 및 실업자를 위한 각종 부조에 관한 권고
■ 단체협약에 관한 권고(제51호) ■ 임의조정 및 임의중재에 관한 권고(제92호) ■ 전국적 산업규모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노동자 단체 그리고 사용자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권고(제113호) ■ 노동자부채에 관한 권고(제115호) ■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제116호) ■ 공익사업 노사관계에 관한 권고(제159호)

5. 재 정

ILO의 경비는 가맹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데 각국별 부담액은 총회가 승인한 비율에 따르도록 되있다(헌장 제13조 3항). 사무국은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때 각 가맹국별 분담금을 표시도 함께 제출한다. 또한 이사회는 정부측이나 8명으로 구성되는 (비당연직회원)에 이를 회부하여 취임되는 가맹국의 분담금을 연체한 경우 청산방법을 정해 이사회에 권고하게 되는 것이다. 가맹국별 분담금은 국민소득에 의해 측정된 지불능력이나 인구 외화획득정도, ILO의의 특수관계 등을 참작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한국은 ILO에 가입한 후 현재 50만달러정도(3억5천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6.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 지원의 수집·배포 ■ 총회의 제의안 ■ 특별조사 ■ 기술원조 ■ 조약의 실효적 준수에 관한 업무 ■ 출판물의 편집간행 ■ 총회, 이사회의 서기국 구실 등이다.

이밖 중요한 업무는 국제적인 실효감시기구의 업무를 구성하는 것인데 (조약의 실효적 준수에 관한 업무)가 바로 그것이다.

현행 ILO체제는 사용자 또는 노동자와 산업상 단체가 어느 가맹국이 이런 비준된 조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ILO사무국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가맹국이 동일한 ILO조약을 비준한고 있을때 한 가맹국은 다른 가맹국이 그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ILO사무국에 신고할 수 있다(헌장 제26조 항).

이외 같은 '분규'에 대해 사무국은 파신고국의 연차보고를 보고 서면 자상해 총회의 결사위원으로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비준하지 않은 조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ILO에 가입하면 우리나라 정부와 경제단체는 국내 노동문제단체의 '각방침에' 요구에 입해 '노동한결가산' '노동인권보장'이란 이름으로 밝히고는 하국의 입법등 이들의 정치, 경제적 입력을 받게 될 것이며 특한과의 경쟁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최근에 한국공장이 ILO대회의과정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의 마찰을 일으키기 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노동법안들은 ILO수준에서 비준되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이러한 면에서 시사점이라 하겠다. 역시 자본가단체는 경제적인 이윤등기와 직결되 인 표리관계에서만 협동한다는 사실을 사실 확인시켜 주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7. ILO가입시 기대되는 효과

ILO에 가입하게 되면 조약을 비준한든 비준하지 않든 노동자보호측면에서 관계기준이 강화되는 방법에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 대체적으로 유리해 보인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국제노동회과 무대에서 지위향상과 노동문제에 있어서 국제 협력의 확대

ILO정서 회원국이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 노동회교무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으며 국제노동문제를 조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ILO사무국에 신고할 수 있다(헌장 제26조 항).

이외 같은 '분규'에 대해 사무국은 파신고국의 연차보고를 보고 서면 자상해 총회의 결사위원으로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비준하지 않은 조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ILO에 가입하면 우리나라 정부와 경제단체는 국내 노동문제단체의 '각방침에' 요구에 입해 '노동한결가산' '노동인권보장'이란 이름으로 밝히고는 하국의 입법등 이들의 정치, 경제적 입력을 받게 될 것이며 특한과의 경쟁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최근에 한국공장이 ILO대회의과정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의 마찰을 일으키기 보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노동법안들은 ILO수준에서 비준되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은 이러한 면에서 시사점이라 하겠다. 역시 자본가단체는 경제적인 이윤등기와 직결되 인 표리관계에서만 협동한다는 사실을 사실 확인시켜 주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2) 국내 관계법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발전

노동관계 제반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노동자 보호에 효기이는 여러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나 필자 운전하건 본위기로 많은 헌법학자에서 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3) 국내 관계법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발전

노동관계 제반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노동자 보호에 효기이는 여러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나 필자 운전하건 본위기로 많은 헌법학자에서 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8. 금속노련의 대처 방안

ILO에 가입한다 하여 우리의 노동조건 및 노동권이 자동적으로 ILO조약에 권고 수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 및 각 정당에 대해 ILO조약을 비준토록 우리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금속노련은 ILO조약 중 금속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여 그 비준을 위한 정부를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현행 가입제 노조는 산별 체제로 전환되야야 한다.

그리고 정치활동금지 조항과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철폐되야야 하고 법비신성제 노동자의 정의법제금지 조항도 철폐되야야 하며 정 여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야야 한다.

노동자 권리는 노동자 힘으로

노조탐방 – 3

천대전자를 찾아서

가물을 저축하는 가방이가 내리는 가운데 수해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며 현대전자를 찾았다. 이번에서 버스로 약20분 가량 들어가니 현대타운이 넓게 자리잡고 있었다. 제곳하게 단장된 건물과 노동자들이 첫인상을 좋게하였지만 노조탐방의 목적 현대그룹을 생각하니 기분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 노조 사무실에 들어서니 미리 연락이 되어서 반갑게 맞아 "안녕, 위원장과 별별 간부들이 연수 중이어서 김만재 사무국장과 노동조합의 사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노조활동은 잘 되는가?

◆실제 잘되는 편은 아니다. 어떤 때는 대회, 총회 등이 성원미달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자율적인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겠다.

◆국제방법은?

◆이제까지는 교육활동이 잘 안되었다. 단합에서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고 교육교재를 만들고 게시판을 이용한 교육등 교육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컴퓨터복등 입실활동에서 조합원의 단결을 유도하고 ■조합원들을 조합으로 가입하는데 힘써 조합의 힘을 확대할 생각이다

◆위시의 노조한임은 없는지?

◆개별적으로 한일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실제 노조간부들에게 대해서 입만 노동자들의 다른 부당한 집체들을 한다면서 노조간부로 영입해 입힘 노조원을 구실을 들어 해고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해고된 몇지기 현재 4명이다. 이런 방법은 일반 노동자들로 하여금 조합활동을 위한 피해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해 지능적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또 지역의 기관들이 단합하여 노조간부들에게 압력도 가하고 있다.

◆현충련과 관계는?

◆현재는 현충련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내부 조합원들의 가입은 있도 진행중이고 현대그룹노동자라는 측면에서도 가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지 시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며 전지노조의 방련과 함께 관별 해 갖이다.

◆91년 임투결과는?

◆노조의 요구대로 관철되었다. 기본급 9.99%인상과 제수당 포함 20.16%인상 이뤄냈다. 이것은 대기업과 정부의 한지원 수단상의 노력이 하구는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87년 조합결성 후 자금까지 숨한 어려움 속에서 노조를 지켜온 현대전지 노동자 동지들의 노력을 보면서 현재 4,300명이 조합원이 12,500명 현대전자 전 노동자가 조합원이 되는 그 날을 그려보았다. 힘써 단결하여 계급투의 노동자의 이익을 쟁취하는 외침 한 그날을

지난 5월 부당해고철회를 외치며 출근투쟁을 벌여고 있는 전지전자연맹조합 노조원들

판 매

(노동가페이프 및 노동가책자)

우리노동현장에서 지난 6.29이후 자본가로부터 소외와 멸시에 대하여 우리 노동자의 여한을 표현하는 많은 노래들을 책자로써 123페이지를 편집하였으며 노동가페이프도 60분용으로 새롭게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노동가페이프에는 노동조합자체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례" 음악을 편집하여 아래와 같이 실비로 판매중입니다.

— 아 래 —

노동가페이프 : ₩1,500원
노동가 책자 : ₩1,000원
판매처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여성국

"광고를 모집합니다"

그동안 격월간으로 발간하던 당 노련 기관지를 대폭 증면, 월간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 면하단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노동조합에서는 각사 광보부에 협조 요청하시어 노련기관지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연맹 홍보부에 문의 바랍니다.
TEL : 864-2901~2, 864-1503.
FAX : 864-0457

"원고를 모집합니다"

연맹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월간 2면으로 발행하던 기관지를 월간 4면으로 증면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맹 홍보부에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각종 글이나 단위노조 소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속노보가 40만 조합원이 함께 제작하고 읽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재출처 : 연맹홍보부
TEL : 864-2901~2, 864-1503.
FAX : 864-0457

지역본부를 가다(I)

경남지역본부

본노련 홍보부에서는 9월부터 각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지역본부 현황과 조직활동을 위해, 노보에 게재함으로써 각 지역본부의 소식을 다른 지역본부에 전하여 상호이해의 단결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9월 5일과 6일 경남지역본부(의장 석선수)를 방문 하였는데 경남지역본부는 조직활동 강화를 위하여 창원지역은 직할로 하고 임시 · 진주 · 김해 · 수출(마산수출자유지역)지구 사무소를 두어 지역간의 유대강화와 각 노조활동 고취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본부 이달근 기획실장과 활동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경남지역본부의 조합수

도 예외 없투에 가장 격렬한 탄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부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거의 입투가 끝나서 그 후유증으로 내부정비기를 가지게 되서 그렇지요. 국제상반으로는 각 노조를 조합원 중심의 대중조직체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에 대한 인식의 방면과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노조가 많이 생성되었고 또 그러지 않음에는 노조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노조간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노조간부의 활동강화를 위해 각 부서부장 교육회를 창설하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회도 있고요.

노 · 노 갈등은 노동자 최수현재 역할을 주고 주신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수자 사업장의 조사를에 투입 교육회를 통해 단위조합의 소식을 교환하고 지역활동 강화를 위해 월에 2번 하고 또른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임금투쟁조사 분석 토의를 해서 조합원들에게 좋은 효용을 얻고 있습니다.

지선 12월(4일 예)지를 시작으로 등 8월 30일 제10차를 마쳤습니다. 또 홍보부 강교류회를 진행하고 있는 데 현장)에는 있인 되었습니다. 오는 9월 17일 제3차 홍보부장 교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갈 계획입니다.

수있으로 새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단기적으로는 홍보부장 교류회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지역본부 신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홍보부장 교류회가 잘 되면 신문발간 작업은 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지역본부의 활동 내용과 다른 지역본부 및 타 지역노조의 소식을 빠르게 알리고 동으면서 금속노동지와 전국적인 단결과 이해를 도모해야 하겠지요.

다음 장기적으로 전문 부서부장 교류회 입니다. 조사홍보부장, 홍보부장 교류회에 참가에 계획하여 되었는데 교육부장 조직부장 등

노조 상호 간의 소식 교환

노동의 근육

백 무 산

삶 속에 말이 있다
삶은 스스로 말을 한다
어설픈 이성은 그 말을 막는다

노동의 근육 속에는 말이 있다
그것은 삶과 삶의 대화다
피와 삶의 대화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의 대화다

삶은 창조를 한다
스스로 새로운 종식하듯이
스스로 유전인자를 만들듯이
삶은 스스로 음악을 만든다
삶은 속삭이듯 말을 하지만
우리를 지배한다
어설픈 이성은 독재처럼
삶을 지배하려 하지만
오래 억눌린 삶의 말은
또 다른 피울림으로
대답한다

한마디 두마디

○ 올 들어(9월)까지 경상(의지)가 88억 5천 호가되었고 연임까지 100억 달러는 충분히 호가될 것이라는 것 뿐 입니다. 특히 사치성 소비재 수입지 해외 여행경비가 큰 등을 만다는데 우리 노동자는 최저 생계비 확보 위해 해고, 구속도 감수하고 임금인상 투쟁을 하는데 사치성 소비의 현장에서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종인지인가? 한술 더 떠 수출 경쟁력 강조, 물가인상 등 경제발전차원의 해일은 모두 노동자 몫이니 노동자는 참 인가?

○ 요즘 소련이 사회주의를 포기하느니 주체하느니 실패했으니 해서 정부의 지본가들이 마치 진리 발이인 양 법석을 또는데 국민의 물이 큰 관심이 없어서 흥요인가를 깊게 되어버린 모양. 어쩌면 나라에서도 국민 다수를 억누르고는 재벌경제이 은연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인데 전반 노동자는 국민의 다수를 억압하는 우리나라는 어떠 일런지.

○ 정부의 인지당은 내년 예산을 20조인지로 24억신설한다고 결정했는데 이 인상 액은 내년에 지급 지출 전기료으로 증액된 것이라고.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것은 어떤이야도 다 아는 사실 인데 국민의 세금을 더 뜯어 써서 지가들 선심공세로 국민에게 준다는 말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특히나 요즘처럼 물가가 하는 높은 줄 모르고 뛰는데 내년에는 물가가 하늘을 찔어 버리겠구먼.

○ 정부는 노동법까지 고쳐 기업 인금협약 기간을 연장한다는데 그 이유가 연해 라 노사분규의 방지라고하나. 나라를 연해해진 노사분규를 방지하는 방법은 그렇게 임방해 방법이 아닌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기본적인 권리 보장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겠소? 한다고 해서 나라를이 합법 이는 것은 근절 되며 없으니 우리 노동자가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네.

○ 인지당은 비리 독직 지법과정 기업을 적발조치 했다는 비리 독직한 의원이 이력 기법에에 없을소만. 계속 해왔던 것처럼 형 법 처리 하고 설명 내려는 수작이라는 것은 삶속등지도 아는 사실. 시작일 때부터 질못된 것이 잘이 잘될 리가 없고. 그 부모에 그 자식이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삶당이 합을 하여서 그래도 손을 만한 일삼은 있나보지. 8대인 정치들이나 이제를 아니 그저 걱정한다는 분들은.

우리조합노보

여성노동자와 하나되어

황 현 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고 있고 최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가 전횡되고 있는 사회구조속에서 자본가는 여성노동을 착취함으로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취업분야는 섬유, 전자, 방직, 식품, 신발 등 주로 저 임금 단순 미숙 현장에 몰려있다.

70년대 한국 노동운동사를 살펴보면 여성 노동자들은 저 임금의 화장실에서 일시킨 노동의 놀은 노동강도에 혹사당하면서도 8시간 노동정위투쟁 그리고 유신정권에 대한 막대한 타격을 가한던 Y.H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노동운동의 기념탑 투쟁을 선두에 섰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구성의 사회구조하에서 남성 노동자의 특강은 임금 해도 남성의 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그로인해 생활비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는 연장노동을 하지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남성노동자 보다 긴 장시간 노동에 혹사 당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생산직의 경시 풍조속에서 년부하는 형식, 천대 기 이 이유 공장생활을 견디기 힘들게 한다. 그리고 여성은 직업을 갖더라도 가정에 안주해야 한다는 가치노동의 전일지보서 여성의 이미지를 내세워 결혼전까지는 취업의 한시를 갖아 인 순이여한자에 저 임금으로 부려 먹다가 결혼자랑기가 되면 내보낸다. 결혼을 임으로써 부담해야 할 비용 즉 출산, 육아에 드는 모성보호의 부담을 지지 않기위해 결혼 퇴직과 임신퇴직을 강요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문제가 있는 사실은 여성노동자들의 의식에 잠재해 있는 계층상승의 욕구와 소시민적 열망이다.

결혼을 통해 계층상승의 욕구를 실현해 보려는 한심에 처어 스스로 여성 노동자의 자부심에 계을라 해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사랑받는 여성이기를 인효히 거부해야 할 것이며 여성이 당히고 있는 차이의 문제는 여성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를 위어 싸가버린 자본가의 술책임을 깊이 깨달아 한다. 취업, 임금, 승진, 교육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에서 현고 있는 각종 차별을 철폐키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 자신이 노동조합, 여성단체등을 통한 조직적인 연대활동을 적극 펴나가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의 들바른 인식과 여성조합원들의 일반문제를 수시로 분석, 노조활동에 반영하고 여성 조합원의 요구를 집 대한다도록 힘써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은 절치해 각성해도 눈을 돌려야 한다. 가족법을 개정하여 여성차별제도를 폐지시켜야 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 복지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여성은 좁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 가열시켜 뛰어 들어야 하며 그리하여 동일노동의 동일임금획득을 현, 여성의 모성보호(생리휴가, 출산, 육아휴가, 노동시간의 단축등) 여성의 사회적 노동에 이루어 짜인값이 참하기 위한(탁아소의 유아원) 사설을 국가나 기업이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여성의 주체적인 힘으로 쟁취해 낼 때 성차별없는 평등사회가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일깨 여성의 인간다운 삶의 투쟁과 성차별 철폐를 위해 다같이 일어야 할 것이다.

(새벽을 여는 합경)

조합동정 및 연맹활동

정기총회

8월 20일 동양유전, 오양공조기
28일 빈도기계, 동양기공
28일 우성
30일 한국프렌지, 동일목강, 삼화콘서
31일 제일전기, 동아전기, 성진산업, 광림기연
9월 6일 남성
10일 대우상업
11일 일성기계

정기 대의원 대회

8월 23일 일진, 한국니블
26일 연합전선, 에이브로라이
28일 빈도스포츠
29일 한국음공업
31일 일진전기, 경진기공
9월 9일 금성정보통신
9일 한진음공업
11일 삼천리자전거

경의행위

9월 3일 한국엔고전기 : 임금인상(삼여급 전면), 직장폐쇄
6일 신화전자(여 협 · 단체협약, 임금(9/17 타결)

기 타

8월 30일 빈도기계 창립대회
9월 1일 대우전자부품 임원찬입

연맹 각 부서 중요활동

조직부 : 대졸자에게 따른 격려 서신 발송 대졸자에 조사 자료 대회 참석
노사부 : 92년 임투계획서 작성 구속노동자 순회 방문
교육부 · 정기노조간부교육 수강생 추천 교육담당자 4회나 참석(8/28-8/30)
국제부 · 일본전금총평 제40주년 행사참석(9/3-9/7) 독일금속노조(IGMETAL) 국제 차장 호버트 스타아이트트 방문(9/8 일)
총무부 ·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단 회의 개최(9/6일)
여성부 · 대우중공 교육지원(9/7일) 여성대회 참석(9/12일)

금속노련 30년사 편찬에 임하면서

금년은 우리 금속노련 30돌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6개월의 업종에 종사하는 전국 노동자가 금속노동조합연맹에 힘에 모여 이제 30년의 역사를 장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30년 역사를 되돌아 보게 되면 지난은 역사의 자평을 질 일에 힘차 등서에 집뿐과 모든 사실이 우리 앞에서 재조명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거 선배님들이 걸어온 역사의 자취를 보고 모손이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넘쳤던 바탕을 가져보고 잘된것은 표본삼아 시행착오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본 운동사를 편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은 사회적으로 정치 · 경제 · 사회속에 노동조합 운동의 진면목을 알기 힘들게 하고, 오늘전 사실을 그대로 비쳐게 수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지표를 기술하면서 어느시점부에 시작의 기점을 하느냐 하는 고민끝에 다음과 같이 3등분 하기로 기획하여 보았습니다.

1961년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한생부에 1980년까지 사회적상황을 반상분야고 1980년 이후부에 87년 6.29-4지 현재까지를 한등분하여 총해 1961년 결성되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한생시킨 조직체에는 무엇이었던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5.16군사부에서 이런 대인노총 신하에 그당시 참여하고 있었던 금속사업장 노동조합을 찾아내서 잃으면 안되는 과제가 비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란 상부단체가 결성된 후에 사업장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처럼 역순된 학으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1년 이후 한국노총 재건조직 대열에 동참했던 11개 산별을 하나된 금속노동조합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요건 지체가 가른 우리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들이 1960년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간과해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960년 이전 금속사업장과 노동조합의 분포의 성립과정을 추적하여 뿌리를 한줄씩 추가, 전체 연단을 모두 3등분으로 기획하고 보니 30년이 일천 넘는 역사가 됩니다.

1961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생 이후는 대체로 기록이 잘돼있어 있어 별로 어려움이 없으나 1960년 이전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던 금속단위 노동조합의 결락한 기록을 찾는데는 대인노총 사무부에 조선후기부터 거슬러 기아차는이 뿌리를 대증하여 찾일 수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때부에 일런 지표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사무소 등은 생존해 계시는 선배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록과 사진, 그리고 기억마저도 빠뜨릴 없이 생겨 역사의 토막과 토막을 이어가는 연결의 필요한 고리가 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맹사업장 노동조합 서고에 역사의 지표가 보관되어 있다면 그 지표 역시 본 편찬 위원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찬 위원회는 1차수집이 원료차면 지표의 근거를 확인하여 2차례있은 편문하기에에 임기고 감수를 거쳐 자문을 통해 최종교정을 마친후 발간하여 각 사업장 가맹노동조합으로 배부하게 됩니다.

한때의 여건에서 숨한 어려운 실정을 안고 부딪치는 난관을 극복하면서 가혀진 금속노련의 편찬호가 이제 항산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에 순조롭게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자문의 아량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30년사 편찬위원회
회장 송 기 선

발 간 일 정

집필자 선정 : 1991. 9. 20
발간위원회 구성 : 1991. 11월중
자료수집 및 집필계획 수립 :
1991. 10 - 1991. 11(2개월간)
집필계획 심의 : 1991. 12월초
집필 : 1991. 12 - 1992. 3(4개월간)
집필원고 마이평 : 1992. 3. 1 - 3. 15
집필원고 심의 : 1992. 3. 16 - 3. 30
집필원고심의회의 : 1992. 3. 31
집필원고 수정작업 : 1992. 4. 1 - 4. 15
수정원고 제작건(필요시 재심회의) : 1992. 4. 16
'92대의원대회 상정을 위한 만 작성 :
1992. 4. 17 - 4. 31
대의원대회 심의 : 1992. 5
인쇄 및 제작 : 1992. 5 ~ 8. 15
발간 : 1992. 8. 25
배부 : 1992. 8월말

91년 투쟁사업
조직투쟁의 활성화
교육 집중 강화
부당노동행위근절
산업 재해 추방
정치 집중 전개
조합원 금융조건개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박인상
편집인 : 최용길
인쇄인 : 서인석

금속노련

우편번호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금속노련회관)
전화 864-2301, 864-1503
FAX 864-0457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1 서울 02(2) 1 서울지역본부
2 인천 032(3) 3 인천지역본부
3 경기남부 0331(2) 2 경기남부지역본부
4 경기북부 0351(2) 2 경기북부지역본부
5 충북 0431(2) 2 충북지역본부
6 충남 0417(2) 2 충남지역본부
7 대전 042(2) 2 대전지역본부
8 전북 0652(2) 2 전북지역본부
9 전남 0622(2) 2 전남지역본부
10 대구 053(2) 2 대구지역본부
11 경북 0561(2) 2 경북지역본부
12 부산 051(2) 2 부산지역본부
13 경남 0551(2) 2 경남지역본부
14 울산 052(2) 2 울산지역본부
15 강원 0391(2) 2 강원지역본부
16 제주 0641(2) 2 제주지역본부

등록일 : 1974년 1월 22일 등록번호 : 마-3708호 (월간 비매품)

노동법 개악을 반대한다!

노총 산별 대표자회의 개최

노동법 개악에 따른 대책 논의

한국노총 산별 대표자회의가 10월 2일과 7일 노총 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20개 산별 대표자가 참석한 이번 9월 17일 노동부장관의 노동법 개악에 대응한 노총 계의입장과 대책에 대해 논의한 이번 대회는 노총 집행부 동성을 격려하고 노동법 개악을 전면 반대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모임 이었다. 회의는 또 정부의 공무원 봉급인상 억제 기도를 분쇄하고 현실적인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결의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하고 그 방법 및 시기결정은 노총집행부에 일임한다고 결정 하였으며 한국노총 박승근 위원장은 해임지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 하겠다고 천명 하였다.

산별대표자 회의는 노동부장관의 노동법 개악이 전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전 노동계가 일치단결하여 노동법 개악에 반대 저지하여 정부의 반 노동지적 정책을 분쇄해 나가야 한다고 결의하여 회의를 마쳤다.

한국노총은 그 시기 및 구체적 방안에서 전국 8천개 노조 대표자회의 임시 전국대의 원대회 개최, 소속 조합별 항의방문 및 항의전화 걸기운동, 시 도 지역차원의 항의집회 개최, 국회앞 결의서위 등을 11월까지 단계별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노동은행설립발기인총회

노동금융주식회사출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금융주식회사의 출범이 10월 4일 노총 대강당에서 열렸다.

노동금융주식회사는 91년 4월 11일 산별 대표자회의에서 노동은행 설립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노동은행 설립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 준비 회사를 발족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된 것이다.

노동금융주식회사 발기인 일동은 설립 취지문에서, 노동은행은 노동자에 대한 투명한 금융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균형있게 발전케 함은 물론 금융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공금적으로 정책의 자주화 민주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1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노동은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 하였다.

(이어 박홍근 노총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만 조합원과 1천만 노동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면 노동은행의 장래는 밝을것 이라 강조하면서 노동운동의 발전 노동자 복지향상에 직결되는 노동은행을 만들자고 역설 하였다.

이번 노동은행 설립을 위한 노동금융주식회사 출범으로 노동은행 설립의 일천일걸음이 시작 되었으며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노동운동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총집행부 철야 농성

노동부의 노동법개악 반대

한국노총 집행부는 9월 30일부터 2박 3일농인 노총 6층 회의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최방림 노동부장관의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여 단행된 이번 농성에서 최상용 위원장 권한 대행은 "노동자의 이익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노동부장관의 의도는 노동운동 탄압의 법제화를 꾀하려는 것이라며 전 노동계는 이에 맞서 대항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이번 농성을 하게 되었다"고 천명 하였다.

한편 이번 노동부장관의 노동법 개악은 ILO가입에 앞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부 노동법상의 문제점 만을 기만적으로 개정하고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자본가의 이윤확대와 노동자 탄압을 통한 경제위기 타개라는 부리수를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부 장관의 노동법 개악에 대해 전 노동계는 강한 반발과 함께 노동법 개악 반대 및 저지 투쟁의 불꽃임이 강화되고 있다.

'92년 최저임금 확정

월 20만9천50원

9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10월 11일 열린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간급 1,675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 7천 4백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심의는 89년에는 근로자측에서 퇴장했고 90년에는 사용자측이 퇴장한 가운데 임의결정 되었지만 9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시점에서는 노·사·정이 합의한 가운데 결정되었던 것이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인상률 및 적용기간 등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는 한 11월달 이전에 확정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게 된다.

서울지역본부 임시 대의원대회

의장에 기아특수강 강규석 동지 선출

서울지역본부는 9월 27일 오후 2시 본노련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하였다. 김영길 위원장의 개인적인 일로 지역본부 의장을 계속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새로운 의장 선출 문제로 열린 이번 대의 총대의원 5명중 3명이 참가하여 정상 35, 반대 무효 각 1명으로 기아특수강 강규석 동지가 선출되었다.

강규석 의장은 취임사에서 "서울지역본부의 개혁과 실천의 마무리 단계에 직책을 맡게 된 현장실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너무 서둘지 말고 확인하고 검토해서 실천하는 지역본부가 되자"고 강조 하였다.

이번 서울지역본부의장 선출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본부활동을 위해 안전적 활동을 꾀하려는 집행부 구상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취임사를 하고 있는 서울 지역본부 강규석 신임의장

성명서

노동법개악에 반대한다

최근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회사밖 쟁의행위 허용 등의 내용을 밝히며, 이는 "광소 불인하다는 지적을 받거나, 변해석을 통러싸고 쓸데없이 노사간 마찰을 빚어온 조항을 ILO 가입을 앞두고 모두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노동부의 법개정 방안의 이면에는 새로 효력을 다투고 있는 각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보장성 단체협약유효기간 연장, 총액임금제 도입등의 현재의 노동관계법을 명백히 개악 하겠다는 노동탄압의 의도가 담겨있으며, 더욱이 정치환동금지조항의 철폐는 ILO가입을 앞둔 신신행정인본 선거관계법등의 규제조항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혀 신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의 UN가입을 통하여 당당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대적 노사관계 정립과 노동기본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이땅에 또다시 구시대의 노동탄압으로 회귀하려는 움모가 진행중인데 대해 우리 노동자들은 엄청난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악의 노동탄압 수작 취회함 것과 제반 노동악법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할 것을 촉구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면행의 심의를 밝히는 바이다.

一. 금번 노동부의 노동법 개악의도는 노동운동 압신 음모에 다름 아니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一. 노동계의 의견을 전혀 도외시한 채 경제계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一. 이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법 개악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一. 정부 여당은 노동법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기본 목적으로 함을 명심하여 그동안 지적되어온 현행 노동법상의 각종 독소조항을 철폐하여 노동3권을 보다 완전히 보장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라.

一. 이같은 요구사항이 거부될시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전국민 불노를 모아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1991년 9월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 종 근

주장 이제는 노동측 더이상 밀려서는 안된다.

적극 참여속에 노동법 개악 저지해야

지난 9월 17일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10개항에 걸친 노동관계법 개정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9월 17일 긴급 회의로 탄력대표자 회의를 가져, 이번 노동법 개정이 대부분 반노동자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개최된 노동법개정세미나에 구체적 심의를 요청한다. 등 세미나 참석자들은 노동부의 노동법개정안은 경포한 후 그것이 기만으로 포장된 "노동운동 입법을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노총이 입장서서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 견 결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9월 30일 노동법 개악 반대집담을 연협하면서 3일간에 걸친 임원협의 농성투쟁에 돌입하였고 이어 10월 2일에 개최된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노동부 노동법개악을 반대키로 공식 결의하였으며 10일 7일 개최된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는 한국노총의 결의를 연속 지지하면서 왜 우리가 노동부의 노동법 개정시도를 저지하여야 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금번 노동부 개정안은 밀법적으로는 국제법에 비만주적으로 주신되었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기업주측의 요구만을 수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기만심을 내포하고 있다. 노동부는 금번 노동법 개정이 국제경쟁력 강화 의 ILO 가입에 대한 대비에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복무주제도입, 출퇴입금제도입, 시간 고용제 도입, 해고요件을 다루는지의 조합원 자격 박탈, 인력활용 유효기간 연장 등 기업주측이 요구하고 좋아하는 사항을 중심의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그간 노총이 요구해온 정치활동보장, 정치활위의 사업장내 제한조항 철폐, 조합비납한규정 철폐 등도 담고 있는데 그 의도가 다른데 있다는 것을 노동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다

정치활동금지 조합비 철폐되도 정당법, 선거법 등에 의해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뚜어 있으므로 걱정이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생각이고 정치활위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장내 농상이 빈번히 일어나 기업주만에 손해이므로 등 제한 조합을 삭제하자는 것이 노동부의 의도이다. 조합비 납한규정 철폐의 숨은 의도는 일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을 안주고 파업기간을 임금을 안주기 위한 사전 로석작업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내고 기업주 실리도 보장해주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며 것이다. 노동부가 금번 노동법 개정작업을 빠른시에 기습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이런 깊에서 숨은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노동법이만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자본측의 일보로 한 성한 것이지만 그 때실제 취지는 노동자권익 보호에 있다. 그렇에도 노동부는 노동법의 이의 깊은 취지에 깊은 도전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시부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3당야합과 광주민주에서의 여당과 기성정치 틀부들의 암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다 심심 노동부가 노동법 개악을 강행 추진하는 것도 만국민적 3당야합의 일환이 내년도 총선에서 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당야합의 한국화에서 주력하게 추진되지는 것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부가 법개악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개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남녀이 가는선에서 개정되어야 하며 충선 이후의 정통성있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한편 우리는 노동부의 노동법개악 시도에 결하면서 작년도 공동임 식감조치와 그 저지투쟁을 상기해 본다. 노동조건이란 사회 법전에 따라 일상 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이치이다 그렇에도 선진국을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노동조건개악을 거리 법없이 시도해고 있다. 금번 근로기준법개악 시도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하며 작년처럼 이번에도 노동자측이 일치해 작년 일으로 노동조건 개악을 방학뚯이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은 계속 과고드는 노동조건 익의 시도에 제기를 박는다는 또다른 중요한 의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도 중동사업계지투쟁을 결해 호기에는 질 진행되었으나 중부지 핵심성있게 추진되지 못했는 것이 일단의 평가이다. 실제로 정부는 보란듯이 한중서유일에 전한 구정을 현재의 개정보다 더욱 악화시켜 개정했다. 금번 노동법개악저지투쟁에 있어서는 이런 교훈을 되살려 중지지 핵심성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모든 노동자의 참여속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조합원 및 간부들도 내 자신의 일로 생각하면서 적극 참여하여 노동법개악시도도 저지하고 우리 노동조합의 위상도 확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효소해야 않는다

강사양성 교육을 다녀와서

동해전장노조 위원장 이 신 철

9월의 사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린반드 지원 금속노련 강사양성 교육에 참가 효저 교육장으로 입하였다.

평소 어줍잖게 교육을 위면 생각을 하니 높 조합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고맙게 생각을 하며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교육 장소에 도착을 하였다.

9월 10일 오전 10시경 경북 및 경남일원의 노조간부들이 강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20여명 모이게 되었다.

금속연맹 김상문 부위원장님을 모신 개강식을 마친 후 본격적인 3박 4일의 일정을 감행군 하기 시작하였다.

첫날은 강사양성의 필요성과 강의기법 및 강사의 지세등 이론적인 강의를 주로 하기에 별부담감 없이 이해하는 가운데 접합수가 있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각선 위 노조의 교육경로교환등의 순서로 장벽을 세운후 다음날부터는 4개의 그룹으로 편성된 조에서 제속되는 분임토의와 실력강화, 실력강의후 강의에 대한 토의와 토의에 대한 발표회식으로 3일간의 만족분위를 하였다

지금까지의 평상력인 주입식교육에서 전혀 생소한 강사교육에서 많이 일할한 교육성등도 교육이 계속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모두가 강사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였다.

교육생 모두가 그 어느교육보다 진지하게 임하는 의욕이 있어 누구도 뒤지지 않기 위해 경쟁심까지 보이기도 했다.

본 교육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강의에 대한 준현도 중요하지만 같은 교육생끼리 다른 계층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수강생들은 강의하는 방법과 강의 내용 모두를 습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이니 일석삼·사조의 효과에 인 교육이라고 교육생 모두가 입을 모으기도 하였다.

단위 노조의 반복인 교육시설이나 교육환경 등 여러가지 개선할 점들을 스스로 기 깨우치고 교육능력등을 배양한다면 금속노련의 무리는 한단하에 가무어 지리라 보아진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중심이 되어야 할 교육부문은 등한시되고 그러다보니 안내를 위한 안내, 투쟁을 위한 투쟁 등 불필요한 부분들에 힘을 너무 남비하지 않았나 싶다. 강사양성 교육에서 숨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할 수 있다는 지신감을 심어준다면 여동한 노사관계가 쉽게 이루어지리라.

교육생들에는 16대 국회에 출마하겠다는 이들이 특이한 분도 있었고,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겠다는 분 등 감사로서의 자질과 여물어 미 온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은 기대를 가질 수가 있어 좋았다.

아무도록 모든 이에게 금속노련의 이름을 더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앞장서 투신사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싶다.

3박 4일의 교육이 쉬울 연 길게 생각되어니 이번 교육이 짧다는 아쉬움과 많으로의 기대감으로 마음이 벅차다.

끝연 내가 배운 이 감사교육을 수료는 하였지만 배낭 수일까 하는 주위들과 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서로 교차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필합없이 자신을 불태우며 주위를 밝게하는 촛불처럼 지금은 어렵고 고된 길이지만 선구자적 정신으로 활동한다면 지역노조를 일선사키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이 많은 감사들을 배출한 다른 한국노총의 역사는 벌 심년 아니 백백년 앞당겨 지리라 확신하면서 교육을 위해 대구까지 오셔서 고생하신 교육부장님께 큰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아무속히 이런 좋은 교육을 외국의 지원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일는 능력을 키우고 외국에 지원을 해줄수 있는 금속노련이 되기까지 힘써 노력해야겠다

끝은 제 4기 강사양성 교육에 참가하신 모든 동지들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본부활동

경기지역 본부

경기지역본부는 10월 4일 제 6차 중앙위원 및 총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9일에 있을 9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준비와 당면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충북지역 본부

충북지역본부는 10월 4일 충북지역노조 간부교육(노총주관)와 근로정소년 제육시회를 논의하기 위하여 신하 노조대표자 회의를 실시하였다.

인천지역 본부

인천지역본부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중간 노조대표자 수련회를 갖을 예정이다.

전남지역 본부

광주 전남지역 본부는 10월 11일 지방차 부총업제도 의를 개최하였다.

서울지역 본부

서울지역 본부는 10월 2일 부서 오양진 문화부의 교육부모임을 가졌다.

문화부는 11월 3일 전약산에서 등반대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91 임금조사

본 노련에서는 9년도 임금·노동조건 및 주거실태 조사를 9년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중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련으로 보고토록 각 단위노동조합으로 공문과 함께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는 조합원 임금실태, 9년도 임금교섭결과 노동시간 및 후임실태, 복지 및 노동지 생활실태 등을 과제로 사용자, 정부측의 문제와 대비하여 조합원의 임금실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아울러 임금조건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자료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최근들어 노동관계법 개악으로 노동탄압이 가일층 더해가고 있으며 92년 임투에 있어서 크나큰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출퇴임금제, 복무주무제도 등은 92년 임투를 거냥한 사용자측의 계획이 노골화 되고 있으며 92년에도 이보다 더한 노동탄압이 논의에 붙은이 나와있다 해도 틀리는 일은 아님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해마다 노련에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지만 50% 도 참여하지 않는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각 노동조합에 자료제공도 불충분 하였고 또한 정책으로 활용하지도 못했다. 이것은 노동자가 단결되지 못하는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부와 사용자에 노동탄압에 대응해보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탄압에 여러한 비면하여 주는 것이다.

아무도록 이번 조사에는 금속노련 전체 조직단위의 노 단결력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금속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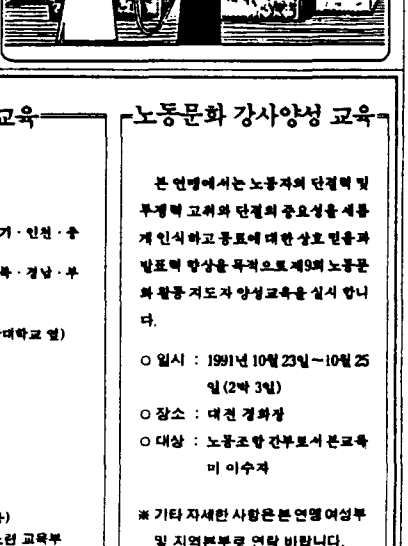

신임/신규 대표자 교육

1. 참가 자격
   - 신임/신규 대표자(지부장 포함)
2. 교육시기
   - 1차 : 91. 10. 15~17(2박 3일)—서울 · 경기 · 인천 · 충남북 지역
   - 2차 : 91. 10. 29~31(2박 3일)—대구 · 경북 · 경남 · 부산 · 울산 · 구미 · 전남북
3. 교육장소
   - 1차 : 성프란치스코(서울시 한남동 단국대학교 옆)
   - 2차 : 대전 경화장(대전시 유성소재)
4. 교육내용
   - 노동조합 활동의 과제와 방향
   - 노동조합 일상활동
   - 조직과 운영
   - 단체 교섭론
   - 지도자의 자세
5. 참가인원 : 80명
6. 참가비 : 15,000(숙식비 및 일체비용)

※ 문의 및 수강신청 : 각 지역본부 및 본노련 교육부

신임/신규 사무국장 교육

1. 참가자격
   - 신임/신규 사무국장(사무장 포함)
2. 교육시기
   - 1차 : 91. 10. 22~24(2박 3일)—서울 · 경기 · 인천 · 충남북지역
   - 2차 : 91. 10. 5~7(2박 3일)—대구 · 경북 · 경남 · 부산 · 울산 · 구미 · 전남북
3. 교육장소
   - 1차 성프란치스코 (서울시 한남동 단국대학교 옆)
   - 2차 대전 경화장(대전시 유성소재)
4. 교육내용
   - 노동조합 활동의 과제와 방향
   - 노동조합 회계처리 실무
   - 조직과 운영
   - 단체 교섭론
   - 간부의 자세
5. 참가인원 : 80명
6. 참 가 비 : 15,000원(숙박비 및 일체비용)

※ 문의 및 수강 신청 : 각 지역 본부 및 본노련 교육부

노동문화 강사양성 교육

본 연맹에서는 노동자의 단결력 및 투쟁력 고취와 단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동료에 대한 상호 믿음과 발표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9회 노동문화 활동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 합니다.

○ 일시 : 1991년 10월 23일~10월 25일(2박 3일)

○ 장소 : 대전 경화장

○ 대상 : 노동조합 간부로서 본교육 미 이수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연맹 여성부 및 지역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노동법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노동부가 금년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개정 대상은 노동조합법과 쟁의조정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걸쳐 9개조항을 핵심으로 있는데 그 가운데 ILO가 입을 일부고 노동법의 정비차원에서 그동안 노총을 중심으로한 노동계의 외견은 전면적으로 도외시한채 사용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이러한 노동관계 법 개악은 노농탄압의 의도가 엿보이 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문제 (노동조합법 33조)

노동부는 (기업에서 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 지위를 고수하거나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경영과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 한다는 이유로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자에 대한 단서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87년 법개정시 이 단서조항을 삽입하게된 배경이 사용자의 해고 남용을 방지하여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호하였다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때, 단서조항의 삭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최근들어 사용자들은 노조의 조직과 교섭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조합원과 조합간부를 탄압하기 부당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어용이 노총위원회의 법원의 구제명령까지 불복하고 복직을 거부하고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단서 규정의 삭제는 결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합법화 시키고 부당해고를 전염화시킬 것이므로 단서조항은 계속적으로 존치돼야 할 것이다.

다만, 해고 효력을 다투는 사기를 대법원 판결까지 로 인정하면 너무 장기화되어 근한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정재판소의 판결까지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사기조정을 하면 될 것이며 이는 올바른 노조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체교섭권의 대표권 확립문제(노동조합법 33조)

노동부는 (단체교섭결과 노사대표간에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도 노동조합 총회,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기 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법률화는 등 노사관계 안정을 저해) 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교섭 대표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지난번 연합철강 규약전경 위소 판결에 앞서 부신지법에 내려보낸 지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노동부 주장이 아니라도 노동조합대표자가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교섭력을 강화하고 또한 협약체결 이전에 조합원의 의사를 사전에 들어 볼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법이론과 최근의 법원 판례가 그 타당성을 학국 뒷받침하고 있다.

9월30일 노총회관에서 노동법개악 반대농성을 8 은 노총집행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문제(노동조합법 35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었으나 1980년 법개정으로 3년으로 확연기 노동조합의 강제한 주장에 의하여 1987년 1년 또는 2년으로 개정 되었다.

이를 다시 3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잘못된 주장이며, 기업주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의 물가폭등과 전월세의 상승 그리고 금융비용 등에 허덕이는 기업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정재판소의 판결까지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사기조정을 하면 될 것이며 이는 올바른 노조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효기간도 1년으로 단축하여 실정에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송백 임금제 도입문제(근로기준법 40조)

소위 연봉제 또는 총액임금제에 관해 노총은 임금인상 상여액을 위한 또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누차 지적하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정부의 임금피크제정책과 기업의 임금여력 때문에 외국보다 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의 개선은 직종 수당의 기본급화를 통해서만이 실현 될 수 있으며 임금격차는 관광교섭 공동위원회 외에 조정이 가능하며, 정부가 이번에 근기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직종 수당을 임금에 포함 기제로써 감액한다고 해도 그 실효성이 크게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성전 광문대교수와 같은 노동법학자들도 총액임금이라는 용어는 법상의 용어가 될 수 없으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에 혼동만 가져올 뿐이라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시간제노동 근거규정문제 (근로기준법 48조 2항 신설)

시간제노동(파트타임)은 본질적으로 일반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에 보다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적최저 인원 시간제 노동이 광범위하지도 않다 최근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노동이 기업주에 의해 선호되고 있으나 노동력 부족현상은 고용정책과 산업정책의 부재에 연유하기 때문에 시간제노동의 법제화는 노동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반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시간제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만 악화시킬 뿐이다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른 인력정책, 산업정책의 시행과 교육제도의 개혁이 보다 더 시급한 과제이다

토요격주 휴무 실시문제 (근로기준법 42조 5항 신설)

노동부는 (법정근로시간 지나치게 짧직하므로 규정되어 있어 노사합의하에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코자 하며 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실상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4시간분의 임금임금을 지급치않을 방법으로 법개정을 기도하고있다. 그러나 주 44시간 노동을 연법법 제주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4시간분에 대한 임금임금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매주 토요일에도 8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임무사업의 실정에 의해 주 44시간 노동력의 근간을 허물수는 없다

노조질서 파괴금지 규정 삭제 등(노동조합법 12조)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무단히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역놓은 강은 있으나 지금의 당연한 것이다. 다만 노조의 정치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문만 아니라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 함께 개정되어야만 한다는 노동계의 의제의 주장을 정부는 적극 수용하여 시계에 이동법률도 함께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에로 쟁의조소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 삭제와 조합비 2% 상한선 철폐등은 ILO 기업문만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과 기존 권보장차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조합비 상한규정의 철폐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조단일 지 인건비의 조합비지급요구 등으로 노조탄압을 약화하고 기존의 전횡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금속연맹과 40만 금속노동자는 1천만 노동자의 선봉에 서서 이번 노동부의 노동법 개악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 할 것이다

이것은 정책이기에 모든 해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노동자의 화생반발 감요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철신하는 잘못에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자의 이익과 계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안과 경제구조의 개혁을 지향 해야 한다.

노 · 사 · 정이 함께 해임과 희생을 나누고 국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때만이 올바른 사회적 합의와 노사관계가 정립될 것이다. 역임과 한 만큼 더 큰 책임과 위기를 초래할 뿐이며 정부와 사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정책결에 및 노사관계를 세워 나가야 한다.

노동법개악 철회하라

노조탐방 - 4

—동방제강을 찾아서—

인천기계공단내에 위치한 동방제강은 인천시에서 수여하는 제 1회 산업평화대상을 받은 노사화합이 잘되는 곳이다

당구어진 철근을 누르는 작업이 한창인 현장을 지나 3층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서니 장영상 위원장과 이갑전 수석부위원장이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반갑게 맞아주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알아 보았다

- 노사협조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 먼저 임실협동을 통한 조합의 민주적 운영입니다 89년까지 조합간부의 역임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간부가 되려는 조합원도 없었고요. 그래서 부서별 간담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현실적 절근과 합리적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의 의견력서와 실천을 통해 굳은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합의 힘실회의 민주적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노조들의 현다를 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인천지역 본부산하에 금노회(금속노동자대표자회의)가 있습니다 각 노조의 대표자 모임으로 월 1회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농문제에 관한 아주나 주제로본도 하고 있습니다. 제는 금노회 총무도 하고있지요 이런 활동을 통해 다른 사업장과 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은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는 것을 부서별교육을 통해 토론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월 1회, 상임위원 월 3~4회 하면서 교육활동과 조합활동을 논의하고요. 민주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의도 아주 좋습니다.

-문제점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사내서클도 몇신과 내서클이 있는데 동반산악회는 월 1회 가족동반 등반대회를 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어린이날 어린이 사생대회와 남자기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또 매년 5월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원 152명이 가족과 함께 단결하는데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마련해야지요.

9년 근로자의날에 국무총리 표창은 수상한 이갑전 수석부위원장이 문화부에 지 담당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방제강 노동조합의 매력는 무척 밝아 보였다. 전 조합원이 민주적운영과 실천으로 굳게 단결하는 모습에서 노동자의 주체적인 조합으로 우뚝서는 동방제강노조를 위로하는 가을이 뜨겁게 달아 올랐다.

6월 정기 체육대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동방제강 노조원들

판 매

(노동가데이프 및 노동가책자)

우리노동현장에서 지난 6.29이후 자본가로부터 소외와 멸시에 대하여 우리 노동자의 애환을 표현하는 많은 노래들을 책자로써 123페이지를 편집하였으며 노동가데이프도 60분용으로 새롭게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노동가데이프에는 노동조합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례" 음악을 편집하여 아래와 같이 실비로 판매중입니다.

— 아 래 —

노동가데이프 : ₩1,500원
노동가 책자 : ₩1,000원
판매처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여성국

"광고를 모집합니다"

그동안 격월간으로 발간하던 당 노련 기관지를 대폭 증면, 월간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 면하단에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노동조합에서는 각사 광보부에 협조 요청하시어 노련기관지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연맹 홍보부에 문의 바랍니다.
TEL : 864-2901~2, 864-1503,
FAX : 864-0457

"원고를 모집합니다"

연맹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월간 2면으로 발행하던 기관지를 월간 4면으로 증면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맹 홍보부에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각종 글이나 단위노조 소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속노보가 40만 조합원이 함께 제작하고 읽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제출처 : 연맹홍보부
TEL : 864-2901~2, 864-1503,
FAX : 864-0457

지역본부를 가다 ②

서울지역본부

본 노련 중보부에서는 경남지역본부에 이어 지역본부들을 취재를 위해 서울지역본부를 방문 하였다.

구로공단에에서 10분을 걸어 들어간 좁은 도로변에 머지한 서울지역본부는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 금속노동자들의 조직활동과 노동조합 결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있으며 오래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규조직 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신임 감무성(기아특수강)외장이 선출되어 본부를 등의 발전과 조직체계정비에 바탕 서울지역본부의 사업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본다.

◆서울지역본부의 조직현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지역본부 결성이후 활동사항은?

◆먼저 서울지역 금속노동조합의 탄생과 있다. 각각 분산되어 있던 노동조합을 하나의 단결된 조합으로 이룩하여나는 것 입니다 또 결과하게 조합원들의 아이을 대변하여 기존의 타성에 젖은 모습을 벗고 있으며 오래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신규조직 결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신임 감무성(기아특수강)외장이 선출되어 본부를 등의 발전과 조직체계정비에 바탕 서울지역본부의 사업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아본다.

업무를 진행하는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단위조합과 지역본부 단결 노동운동 탄압에 대응해야

◆조합원의 수는 130명에서 50명로 약간 유동적 입니다. 조합원수도 1천2천명에서 1만 5천명 정도 됩니다 자본가들의 부당해고, 불법부도 등으로 숫자가 유동적인데 정확한 노조와 조합원 숫자 파악도 조직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상반기 활동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일부 결의대회, 동반대회 등 일부에 전한 사업 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업이구요. 특기할 만한 것은 일부교육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역본부에서 상황실을 운영하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부를 전부해서 생겨나는 신규조직을 지원하는 것도 상반기 지역본부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번기 활동는 주로 조합원들의 단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체육대회, 동반대회, 문화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개최한 노동문화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강화해야 할 사업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도부 안정이 제일먼저 강화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도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결합만이 지역본부의 사업의 전진이지요. 또 지역본부의 재정을 확고히 해야 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기의 사업들 속으로 하여 지역본부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노동운동 탄압과 생존권 압살에 대항하여 단위조합 노조원과 지역본부가 연결될 때 노동자의 새세상은 건설될 것입니다.

출 전

오트론전자 정인수

우리에겐 사랑할것도 많지만
그리워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
오늘 나 자우려 한다.
내 신구 성은 섬이 섬이 흩어져
우리들의 신구, 누이, 동생, …
코스모스 같은 제 가슴에
불을 질렀기에 따닥 따닥 마들어 가는
아픈 가슴으로
내 손아귀에 그를 움켜쥐고
나 오늘 자우려 한다.
사무치는 서러움으로
더 물러설곳 없는 광폭 굵은 분노로
동물되어 먼저 나아가려 한다.
나아가 때우려 한다.
우리들의 슬픔을, 우리들의 비겁을
마침내
저 학살들의 권력을 때우려 한다.
불길이되어, 질풍 마오르는 노여움의
동물이 되어, 자우려 한다.
나 오늘 저 한줌의 무리와 목숨걸고
자우려 한다.
동지와 함께 자우려 한다.

한마디 두마디

○-요즘 노동법 개정을 일부고 광명지의 노동투기 개악을 위려고 악을 쓰는데, 노동부는 ILO기구(일 위한 개정을 통해 외국의 따거운 눈총을 피하고 만으로는 노동자들에게 확실하게 자본가들의 호파이윤확득을 도와주자는 속셈 노동자들의 입장과 무장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정부주장이 나중에 그들이 노동법 개도 그대로면 이미도 김칫이 날 될 것은 뻔한 일.

○-이번 경기국회 국정감사는 정말 여러노는 진기한 일었는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의 김대기의 경쟁들로에 바쁘고, 이당은 야당대로 모당인 내려고 노력, 국회의원이 해야는 작업인 을 접접 애써모르해지는 것은 등해지여리도 우리 서금으로 는 쓰고 우리기 투표해서 좋은 일꾼 (?) 이라지만 어 년 경 감에, 자본가들 은으로 국민 우롱하는 허수아비 감은에. 가을도 되고 들판에 곡식도 익어가고 농민들 한숨도 수명기도 UR이다 놓아만 가는데 그놈의 허수 마이놈들은 못어만 대니 답답

○-정부는 올해부터 10월 1일, 9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가 10월에 너무 쉬는 날이 많아 생산에 차질이 있어서 그랬다니 참은 자본가들의 요점을 받아들여 법제인 것이 전지인 줄도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한마디 -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노동조건 악화와 생산에 대한 투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 노동자만을 일컫어 하는 노동자가 세상에 또 있나?

○-요즘 시내나 공단이나 일것없이 '절실히 일합시다' 라는 현수막과 광고가 라는 지는에 누구보고 하는 말인지 대다수 국민과 우리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현수막들은 호파쟁 탈을 쓰고 파소비의 주범인 일부 놀고먹는 사람 들에나 다시지.

○-세금 1인당 100만원 초과 '

세금은 국민은 걷어서 국민복지 발전과 생활향상을 위해 써야하는 것인데, 이 긴 절지 못하는 일부 정치꾼들 유기에 대부고 선거에 국민은으로 선심쓰고, 고물가에 허리가 휘청대는데 거기에다 세금으로 일누는니 일없고 짜없는 우리서민 어디로 갔어나.

○-경제학과에서 대해서 한마디 합시다 -

뭇에은 우리가 학 일겠소 한 사회 호파생활 하는 사람들 빌, 집 모두 잃어 생산현장에 투자 하고 호파 의학을 은 의국으로 다시살아 의의 의학 하고, 해외에 자주하는 분들 해외여행시켜 도 의의학적 하면 금세 우리경제가 이지경은 안일년에 해운시킬놓아 이렇게 한번 해보십이 어떨지.

○-도 한마디.

이번에 노동법개악을 유보했는데 유보가 아니라 이에 절차법이 어떨지.

우리조합노보

노동자의 철학

연합철강노동조합 김 상 철

들어가는 말

흔히 '철학' 이라고 하면 많이 배우고 특별한 사람들이 일이 등을 수 없는 어려운 말이나 스런서 특별하는 정신학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입다. 그래서 우리 같은 노동자-못 배우고 가난하고 하루종일, 일년 열두 일 기계에 매달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늘같은 먼 이야기로 느껴진다 하지만 철학이란 과연 그런 것일까? 아니다.

철학의 참뜻은 '이세상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가 배우지 않아도 지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한 것인 것이다

예를 들면 '가난은 그 사람의 무지의 게으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가난은 개인에게 원인이 있기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는 두 문제는 다 각자이 지기 나름의 '철학' 이라고 할 수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지기 관점에 따라 세상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말이으로 인간이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 말상으로 기계에 매달려 죽도록 일해도 우리 생활은 넘이 잡수셔 어려워지고 사람대접 못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는 오직 소수 자본가의 것이며, 우리는 사회의 주인인 위상 기계의 노예, 지른기에 불으로 노동력을 실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는가?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게을러서? 아니면 하늘의 뜻일까?

바로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 노동자는 자신을 알고 주었이 문제이해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 노동자는 노동자 나름의 세상을 보는 눈, 즉 '철학' 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2. 노동자는 왜 자신의 철학을 가져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자본가는 물질적 생산수단만이 아니라 정신적 생산수단까지 독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 대학, 연구기관, 신문사, 방송국, 각 종교, 교회, 절, 예술가 등 모두가 자본가의 것이거나 자본가의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정치, 교육, 언론, 종교, 학술, 예술 등 모든 부문에서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상이나 문화가 만들어지고 퍼뜨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자본가의 입장에 선 경제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이윤을 축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죽사니 솔동은이 세상은 신의 뜻에 움직이며 인간은 이에 순응하나 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신문이나 T. V에서는 노동자가 임금 인상 투쟁이라도 할라치면 벌써 들이 쏟아져서, 세상에 존재이 없어진 양 떠들어대고, 대중기요에서는 현하는 것은 투쟁이은 안돼 수 있다고 거짓 노래를 부른다.

역사는 오직 왕이나 귀족 혹은 영웅적인 자본가들 건전하는 것을 알을 내고, 철학자들은 인생의 목적을 개인의 성공, 개인의 기질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사회에서 우리 노동자는 자연 주인 대접을 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 말상으로 기계에 매달려 죽도록 일해도 우리 생활은 넘이 잡수셔 어려워지고 사람대접 못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는 오직 소수 자본가의 것이며, 우리는 사회의 주인인 위상 기계의 노예, 지른기에 불으로 노동력을 실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는가?

노동자가 자본가보다 게을러서? 아니면 하늘의 뜻일까?

바로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 노동자는 자신을 알고 주었이 문제이해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 노동자는 노동자 나름의 세상을 보는 눈, 즉 '철학' 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2. 노동자는 왜 자신의 철학을 가져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자본가는 물질적 생산수단만이 아니라 정신적 생산수단까지 독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 대학, 연구기관, 신문사, 방송국, 각 종교, 교회, 절, 예술가 등 모두가 자본가의 것이거나 자본가의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정치, 교육, 언론, 종교, 학술, 예술 등 모든 부문에서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상이나 문화가 만들어지고 퍼뜨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자본가의 입장에 선 경제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이윤을 축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죽사니 솔동은이 세상은 신의 뜻에 움직이며 인간은 이에 순응하나 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신문이나 T. V에서는 노동자가 임금 인상 투쟁이라도 할라치면 벌써 들이 쏟아져서, 세상에 존재이 없어진 양 떠들어대고, 대중기요에서는 현하는 것은 투쟁이은 안돼 수 있다고 거짓 노래를 부른다.

역사는 오직 왕이나 귀족 혹은 영웅적인 자본가들 건전하는 것을 알을 내고, 철학자들은 인생의 목적을 개인의 성공, 개인의 기질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노동자는 사회와 역사의 주인

희망과 참된 삶의 철학 가져야

즉, 철학은 '세상을 밝혀 주는 나침반' 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철학은 배운 지능, 가진 자들의 전유물인양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철학을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특정집으로써 이득을 보는자들의 음흉한 속셈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즉,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세상을 우리의 현실과 최지에서 올바로 볼 수 있게 될때, 이 세상에 뿌릿한 부와 권력, 그리고 노동자의 과의 땀 위에서만이 생존할 수있는 주인인 주인들이 위기에 놓이기 때문 아니겠는가?

1. 노동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노동자는 누구인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생활지표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곧 노동자는 물질적 부의 참조자이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며, 이 사회의 발전의 운동력이며, 따라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지만 이 사회에서 우리 노동자는 자연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회, 대학, 연구기관, 신문사, 방송국, 각 종교, 교회, 절, 예술가 등 모두가 자본가의 것이거나 자본가의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정치, 교육, 언론, 종교, 학술, 예술 등 모든 부문에서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상이나 문화가 만들어지고 퍼뜨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자본가의 입장에 선 경제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이윤을 축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죽사니 솔동은이 세상은 신의 뜻에 움직이며 인간은 이에 순응하나 해야 한다고 설교하고, 신문이나 T. V에서는 노동자가 임금 인상 투쟁이라도 할라치면 벌써 들이 쏟아져서, 세상에 존재이 없어진 양 떠들어대고, 대중기요에서는 현하는 것은 투쟁이은 안돼 수 있다고 거짓 노래를 부른다.

역사는 오직 왕이나 귀족 혹은 영웅적인 자본가들 건전하는 것을 알을 내고, 철학자들은 인생의 목적을 개인의 성공, 개인의 기질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이 현실을 뚜렷고 뚜렷자는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첫째, 사회가 유지되는 일차원은 우리 노동자가 물질적 부의 참조자라는 것

둘째, 인간역사의 발전은 이 물질적 부의 정도가 척도가 되어 결정 된다는 것

셋째, 따라서 이 사회의 역사의 진정한 주체의 주인은 바로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세상의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력, 절실력, 육체력 압력은 우리 노동자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이 사회가 인고 있는 것들이며, 때문은 바로 그 문제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과제라는 것도 일 수 있다.

노동자의 철학은 현실에 대한 인간의 최절의 철학이 아니라 이해에 대한 의일의 철학이며, 자본가들의 이기적이고 진실을 은폐시키는 거짓의 철학에 대해 인간의 참된 삶을 주체시키는 준엄한 심판의 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은 소려 큰 의원)

조합동정 및 연맹 부서활동

경기총회

9월 27일 신광전기
28일 수산중공업
부산기계
30일 삼영전자
9월 28일 아름기공
(임시총회)
10월 5일 진양기계 총회
10월 12일 동희정기
(임시총회)

창립기념

9월 30일 대한전선

교 육

10월 4일 대한의료기계

신규조합결성

9월 5일 삼성중공업 협력회
10월 4일 김진기업

체육대회

10월 5일 금성일렉스 광주공장
12일 동양강철, 남성

신임집행부 출범

9월 14일 포일 T○ T○
28일 기아자동차
10월 2일 한국임미놀

정기대의원대회

10월 6일 삼화제관
5일 한라중공업
8일 별표전자
10일 동국중합전자
10일 서흥, 금성바이코로닉스
12일 세일기계
14일 경동산업

축하합니다

9월 28일 현대전자 노동조합 전덕인 위원장 결혼

연맹 각 부서 주요활동

송무부 대양사 회계업무 지도

노사부 : 자동차부품업체 준비위원회 개최
외 임금조사표 작성 발송
노동관계법 세미나 참석
자동차부품업체 토론회 준비

조직부 : 동양기전 간부교육 지원
기아특수강 교육계획서 작성지원
포항지역 사무소 설치건 협의

교육부 : 연합철강 교육
신임대표자 교육
노동관계법 세미나 참석

여성부 : 노총 여성국 회의 참석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준비

국제부 : 린민드지원 감사 임성 세미나 결과 정리
외국인문자를 위한 지표 작성
IMF 국제회의 정리
해외파견 심의위원회 개최

91년 투쟁사업
조직력 강화 및 실천력 강화
교육 집중 강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 재해 추방
정치 집중 전개
조합원 근로보호개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박인상
편집인 최용길
인쇄인 서인석

금속노보

우편번호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금속노련회관)
전화 864-2001, 864-1503
FAX 864-0457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등록일 : 1974년 1월 22일 등록번호 : 바-3708호 (월간 비매품)

노동법 개정안이번회기에처리안해

노총위원장 단식 등 노동계 반발에 밀려

총액임금제 · 시간제 근로제는 내년부터 강행

정부와 민자당은 11월 5일 한국노총에 공문을 보내 이번 국회회기내에 노동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국노총 박충근 위원장의 단식등 전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결정된 이번 회기내 통과라는,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강행하려 했으나 내년의 각종 선거를 민자당에 불리한 여건이 많이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박충근 위원장은 11월1일(노동법개악 저지 결의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노총은 그동안 전체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와 일방적 노동법 개악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반악과 투쟁의 구시대적 악순환을 지양하고자 인내와 대화로서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해 우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고 지적하고 "그러나 아직도 상식과 순리가 실종된 구시대적 노동통제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전면적 조직투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 고 역설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었다.

한편 한국노총 및 각 산별대표자회의는 11월8일 노총대강당에서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 보고 대회를 열고 8일 0시를 기해 대의원 전원이 삭발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이번 노동법개악을 공식 유보한 것은 명칭지하이나 시행령으로 총액임금제와 시간제 근로제는 강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도 노총을 포함한 전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단식을 끝내고 투쟁을 맹으며 결의문을 낭독하는 박충근 노총위원장

제103차 중앙위 제5차 중집 실·국·부장 연석회의

본연맹 중앙위 및 중집위가 11월 8일 연맹강당에서 열렸다. 노총 박충근 위원장 단식, 산별위원장 등조 농성등 노동부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침을 토론한 이자리는 노동부가 이번 국회 회기에 노동법을 개악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등보, 11월 8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각 지역별로 보고대회를 통해 노총의 지침과 방침을 알린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본 노련 박인상 위원장이 연석회의에서 노동법개악 저지투쟁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미국노총 단식투쟁 연대성명 보내와

미국노총은 11월 1일 박충근노총위원장의 노동법 개악 저지 단식투쟁에 대해 굳건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며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성명 전문을 한국노총에 보내왔다.

국제화학 에너지 노련도 지지성명

74개국 74만 세계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화학에너지노련은 11월 1일 연대성명을 통해 "노동법개악에 항거하는 한국노총 박충근 위원장의 단식투쟁 결단에 심은 감동과 연대를 보낸다"고 밝히고 한국노총의 투쟁을 전폭으로 지지하며 성공을 기원했다.

국제자유노련 노대통령에게 노동법개악 반대서안

국제자유노련(ICFTU)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는 11월 2일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며, 한국노총 박충근 위원장의 노동법개악 저지 단식투쟁에 연대의 지지를 보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26개국 35개 회원조직 2억6백만명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국가근는 노대통령에게 노동법 개악기도를 즉각 철회하고 ILO 기입을 압두고 선진제국에서 널리 준수되고 있는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단체의 3자 합의결정사항을 준수'하여 국민적 합의를 근거로한 미래지향적인 노동법 개정을 배출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민주당 김대중대표

노총 박위원장 방문 위로 격려

민주당의 김대중 대표와 한광옥 국회노동위원장 등 민주당 대표단 일행이 4일 오후 단식농성중인 박충근 노총 위원장을 방문,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여 노동법 개악을 전면 저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러한 법개악이 강행될 경우 노동자들은 파업을 상실, 경제침제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노동법 개악시도와 속각 중단과 13대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악시 않을 것을 국민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민중당 이우재대표

노총위원장 단식농성 지지 성명

민중당의 이우재 상임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일행이 4일 단식농성중인 박충근 위원장을 방문, 투쟁에 최극적인 연대지지를 표명했다. 민중당은 또한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와 노동법개악기도는 경제위기 해결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ILO 가입 압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처사보 은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고 규탄했다

신임대표자 교육실시

본노련 교육부는 10월 15일-17일(1차), 10월 29일-31일(2차) 두차례에 걸쳐 신임대표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서울 성프란시스코와 대전 경하장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단위조합에서 새로 임명된 대표자를 대상으로 조합활동의 과제와 방향, 노동조합 일상활동, 조직과 운영, 단체교섭론, 지도자의 자세 등을 교육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에서 대표자가 바쁘면을 빼 활동경험이 전수되지 않아 단체교섭 및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감안 취임한 조합활동을 수행하기위한 기초적인 준비가 되기 위함이었다.

교육에 참가한 대표자들은 이번 교육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도 많은 교육을 통해 조합활동의 노련을 제하고 교육받은 것을 도대로 조합활동을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노동법개악 저지 투쟁 보고대회' 열려

11월 8일 한국노총 강당에서

한국노총은 11월 8일 오후 5시 노총대강당에서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보고대회를 가졌다.

노동부가 노동법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통보에 따라 박충근 노총위원장의 단식농성해제와 그동안의 경과, 앞으로의 대응방을 보고한 대회에서 노총위원장을 대신해 최상동 상임부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처리않겠다는 노동부의 노동법개악에도 언제든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우리노동자들은 항시적으로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히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총액임금제와 시간제근로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도 저각저지시킬 것이라 전망하였다.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보고대회에 참석 하고 있는 노총 임직원 및 산별 노조간부들

단식 농성을 풀면서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노동조합과 인간존엄의 망력이 노동자와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한, 우리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노동자의 인권유린과 노조탄압이 계속되는 한, 이땅의 1천만 노동자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지난 11월 1일 단식을 시작하면서 밝힌 바대로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일 따름이다. 우리 2백만 조직과 1천만 노동자는 그간 거리에서 직접에서 지역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정부의 노동법 개악 책동을 일삼아 저지하였다. 그러나 노동법개악과 노동통제책동은 내일도 모레 정부와 재벌의 망국적 정경유착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정부와 재벌의 노동통제책동은 계속될 것이다.

본인은 우리 2백만 조직 및 1천만 노동자와 굳게 연대 하여 노동법개악 저지 단결하며, 정부 국가 재벌 노동조합 등에 다음 사항을 경고한다.

금후의 어떠한 개악 책동도 저지하며, 정부는 국제 대회 다음 사항을 경고한다.

그것은 첫째! ILO 협신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노사관계는 노사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을 그 최대의 원칙으로 해야 하고, 모든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인권은 한 정부의 노동정책 전제로 해야한다는 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조합의 인권과 사전에 지여 개입 상호협의하는 자세로 전지해야할 것이다. 둘째! 금번 재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노동부의 노동법개악 추진이 다시금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이다. 만일 또다시 이를 부행할 경우, 본인은 저지투쟁의 한 방식이 강행될 것을 경고하며, 노동법의 개정은 최일선에서 이미 제안한 바와 같이 노 · 사 · 정 하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행 노동법의 전근대적인 독소조항을 손질, 미래지향적인 노동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기본권을 확고하게 보장하여 산업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ILO 가입을 목전에 둔 정부가 아직 해야 할 당면한 처사이다. 또한 총액임금제와 관련,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경제위기설을 앞세운 정부의 임금억제정책 등에 대한 우려와 여러한 협력의 임금인상 자제 요구 등에 있는 경인 자체 입론은 즉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1천만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번 저지투쟁을 통해 소아를 버리고 노동운동의 대의에 헌신함에 정부와 사용자에 의한 어떠한 부당한 반압도 이를 눈뜨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세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라도 우리 1천만 노동조합과 사신을 세삼 확인한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지워진 불신과 상호대립의 구각을 벗어던지고 일치 단결하여 투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지워진 불신과 상호대립의 구각은 사용자와 정부에게 의뢰지 것이며, 이것을 보고 가장 좋아할 사람 또한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오늘 8일간 계속된 단식농성을 통해 그동안 시도지역본부의장 등과 마음으로 갖이한 20개 산별대표자와 전국 8천개 조직과 1천만 노동자들과 그리고 국제자유노련 등지들의 연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참다운 사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 노동자의 불굴의 투쟁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1991년 11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 종 근

주장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한국노총 박홍근 위원장의 농성이 8일간 계속되고 그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드디어 노동부는 지난 11월 8일 금번 회기내에 노동법 개정안을 상정치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번 회기내에 노동법 개정안을 상정치 않겠다는 것외에는 노동부의 태도에 있어 아무런 변화도 없다. 노동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불상정한다는 발표문 속에서 노동법 개정작업은 금번 회기 이후에 계속할 것이라는 것, 올해 임금협상은 내년부터 실시할 것이라는 것, 시간제 근로, 촉 파트, 타임제 도입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해나가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사실상 한발사격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완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올해임금제도와 시간제근로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도의 발상이 임금삭 억제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각을 유급휴일, 휴가권을 박탈하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제도들이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이나 강제성, 상징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시간제근로의 경우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박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가 상례되면 입법화의 기반이 형성되게 된다. 시간제근로는 수부노동을 유휴 노동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상쇄이 있기는 하지만 생존을 노동력의 판매에 의존하는 우리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시간경제 영역이 있게 된다. 먼저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게 된다. 지금 우리 현실을 볼 때 임시직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임시직 고용은 그 실제상 계절제, 임시제 생산량에 대응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저러론 그 실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시간제근로도 특강이 아용될 소지가 매우 커지게 된다. 시간제근로자 외 고용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게 되고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떨어드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올해임금제의 경우는 입법화여부와 거의 관계가 없다. 입법화가 안되더라도 그대로 임금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올해임금제는 기본급, 수당등 임금을 올해으로 파악하여 올해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과 대기업체등 고임금자와 임금은 동결 내지 한자릿수로 억제하고 중소기업등 저임금자와 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임금자와 저임금자의 임금격차를 좁힌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 임금제도를 여기하면서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일본의 80%가 된다는 등 기반적 통계를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법목임금이 상당정도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현정년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감격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남아다 보고 있다. 일부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에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조업 노동자들의 경우는 장시간 노동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임금이 심계비에 밑돈 밑돌고 있다. 노동부는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분열시킴으로써 임금을 억제하려 해고 있다.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우는 노사자율에 맡기다 하지만 금년도 임금교섭과정을 볼 때 노동력부족으로 중소기업은 서울과면 노동부의 한자릿수 임금억제정책을 정면으로 부시하고 두자리수로 임금을 올렸다. 노동부가 노사자율에 맡긴다고 하지 않아도는 노사자율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부는 대기업체의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임금의 억제를 자연적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분노를 느끼는 것은 노동부가 행정지침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기본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는 비민주적 처사이다. 노동부는 국민의 합의를 거쳐야 할 민주적 절차를 무상시켜 명령체고 있는 것이다. 노·사·정 3자의 협의와 합의를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는 ILO조약에도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ILO가입을 뒷받침에 수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ILO에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본질면할한이 가미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번 우리 정부는 문명인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우리 정부가 일하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가는 금번 노동법 개악시도 과정에서도 여실히 들어났다. 노동자 및 국민들의 무정없이는 민주사회가 정치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일천만 노동자들은 금번 모범적 투쟁을 전개한 한국노총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통한서 발표한 "이제 우리의 투쟁은 시작이다"라는 제의와 상통이 가슴키고 있듯이 정부의 비민주적 처사에 대해 투쟁하고 임금억제기도와 철폐와 진정한 노동법 개정을 위해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인터뷰 엔스 분드 바드

덴마크 금속노조 국제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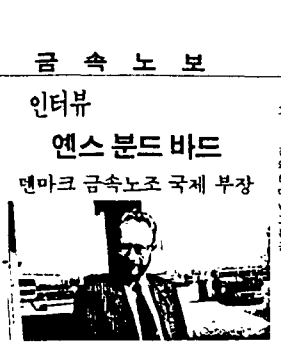

조합원의 지지와 협조가 가장 중요

합부지 계획으로 유명한 달가스의 나라. 인구 500만 영토에 인접한 소국이지만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덴마크에서 금속노조의 국제부장이 콘스헌을 방문하였다. 이번이 두번째 방문인 엔스 부장은 김지홍 총이한 만큼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덴마크 금속노조에 대해 물기지를 갖어 보았다.

◆덴마크의 노동조합 조직현황은?

◆노동자수는 약 220만명인데 이중 85%정도가 노조조합원이다. 금속산업은 노동자수가 약 30만명인데 이중 92%가 노조에 조직되어 있고 산별제제로 되어 있다. 우리 금속노조는 1889년에 설립되었으니까 지금 백살이 더 된 셈이다.

◆단체교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선 전국노조본부가 전국적 산업별 결영자 단체와 교섭하여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각 지부에서 다시 교섭하여 그 이상을 따낸다. 본부가 80%정도 따내고 지부가 40%를 따낸다. 본부는 임금, 노동시간등 공통사항에 대해 교섭한다.

◆주 37시간 노동을 하여 간업은 거의 없다. 시간당 임금은 육한공이 10,000원, 미숙련공이 8,300원 정도 된다.

◆덴마크 금속노조의 주요 사업목표는?

◆실질임금 보장, 직업훈련, 산업안전보건, 실업해소(현재 실업률 10%), 노조간부교육이다.

◆조합비는 어떠한가?

◆성역제이다. 조합원 1인당 월 25,000원을 본부에 내고 지부에 10,000원 정도를 낸다. 그리고 실업보험으로 월 25,000원을 낸다. 이들 금액은 육한공 임금 7시간분 정도에 해당된다.

◆금속노동자의 근로조건은?

◆주 37시간 노동을 하여 이를 세워도 크지 않아 중도 세에의 영향에이 크다.

◆한국 노조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안세력 및 기업주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투쟁에서 연신상을 보고 감명받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속노련 조합원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니 세계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지지와 신뢰이다. 신념의 상실은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노동자들이 강해하고 민주적인 자유 노동조합을 강기를 희망한다.

충북 청주 A·M·K노동조합 노동자 한마당

충북 청주에 있는 에이·엠·케이 노동조합(위원장 이동희)은 11월 9일 청주시 업후련원에서 노동자 한마당을 실시하였다. 위원장 허입식결 조합원 세목대회로 이루어진 한마당은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노동조합의 단결력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조합원 3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충남지역본부 노동악법 관련 대표자회의 개최

충남지역본부(외장 김두형)는 10월 18일 노동회관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노동법 개정반대 결기대회를 열었다.

지역본부는 또 10월 24일 지역본부 집행회원 결어 신임대표자를 중심으로 조합활동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부산지역 본부 산업시찰 실시

부산지역본부(외장 박기식)는 11월 7, 8일일간 대표자 산업시찰을 실시하였다. 타지역금속노조활동 산업시설을 견학하여 견문을 넓히고 조합간의 (그)결력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산업시찰은 이때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40여명이 참가하여 대우전자의 최첨가공을 견학하였다. 또한 전남지역 금속노조대표자들과 노조활동 현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대구·경북지역 지본신문창간

대구경북지역본부 (외장 김경조)는 지역본부 소식지인 대·경불신을 발행하였다. 지역본부와 활동을 단위조합에 홍보하고 각 단위조합의 소식들을 알리기 위한 지역본부 소식지발간은 대구·경북지역 본부활동에 최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지역본부 노동법 보고대회

전남 지역본부(외장정기손)는 11월 11일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노동악법 저지 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노동부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여 노총 박홍근위원장의 단식농성 투쟁 등 노동계의 노동악법저지로 노동부가 물 회기에 처리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 낸 과정을 각 노조 대표자에게 보고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지역 본부 ILO관련교육실시

서울지역본부(외장 강규석)는11월 6일 본 연맹 강당에서 "ILO란 무엇인가?" 란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맹노련과 노사대책국장을 강사로 40여명이 참석한 이 교육은 ILO가입에 따른 노동자의 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지역본부는 13일 노동위 교육을 신설군 지역본부 사무국장 주재로 실시하였다.

울산지역본부 조합원교육실시

울산지역본부(외장이연구)에서는 10월 19일 금강노조연앙지부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노동3권과 노동조합조직과 운영, 조합원의 임무등의 내용을 가지고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역본부 하명주 조직부장을 강사로 약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지역본부는 강은 내용을 가지고 11월 16일부터 3차에 걸쳐 고려아연 노동조합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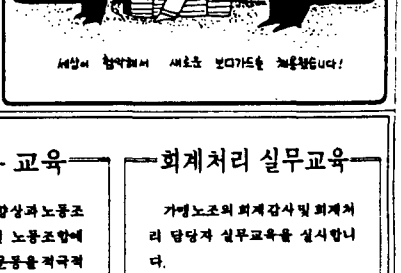

계양전기 노조간부 수련회 가져 12월 단협 갱신 앞두고

계양전기노조는 11월 9일 서울관악산에서 노조간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는 동산, 분임토의, 노동조합법 및 노조간부의 지세조론, 노동가고 육등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단체협약을 앞두고 조합간부와 단결과 회사측과의 협상에서 결연한 의지를 다듬기 위한 준비였다.

한편 계양전기는 12월초 단체협약 갱신을 하는데 이번 수련회는 단협을 조합측에 유리한 조건을 갱신하는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홍보선전교육

본 노련·가맹노조의 홍보선전 능력 배양과 본 노련의 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선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시 : 1991년 11월 19일~21일(2박3일)

○ 장소 : 성프란치스코(서울 한남동 단국대학교옆)

○ 대상 : 가맹노조 홍보부장 등 선전·편집 실무자로서 본 교육이 이수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노련 홍보부나 지역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여성간부 극기훈련

전국단위노동조합여성간부의 단결력 강화와 간부간의 유대강화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친선도모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아래와 같이 극기훈련을 실시합니다.

○ 일시 : 1991년 11월 22일

○ 장소 : 서울관악산

○ 대상 : 전국단위노동조합 여성간부

○ 집합장소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강당(08 : 5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연맹 여성부 및 지역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여성간부 교육

여성간부의 자질함양과 노동조합의 효율적운영 및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여성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시키고 여성간부의 자세를 확립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본 교육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1991년 11월 27일~11월 29일(2박 3일)

○ 장소 : 노총중앙교육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연맹 여성부 및 지역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회계처리 실무교육

가맹노조의 회계감사 및 회계처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지 역	교육일정	장 소
서울·강원	12월 4일13시	본 노련 강당
경 기	12월 5일13시	노총안양지부강당
인 천	12월 6일13시	노총인천본부강당
부 산	12월11일13시	노총부산본부강당
울 산	12월12일13시	노총울산본부강당
경구·경북	12월13일13시	금속경북본부강당
경 남	12월18일13시	노총경남본부강당
전남·전북	12월19일13시	노총전남본부강당
충남·충북	12월20일13시	노총충남본부강당

※ 문의처 : 연맹총무국 및 지역본부

제5기 중견간부교육
중견간부의 역할 증대해야

중견간부의 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지탱되는 노동탄압의 분쇄와 노동운동의 실천 방향을 목적으로 한 중견간부교육이 10월 17·18일 양일간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열렸다.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노조간부의 자세, 경제현실과 노사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이번 교육에는 많은 중견간부들이 참석, 간부들의 교육열기를 보여주었는데 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에서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은 "한국의 노동운동의 과제는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운동탄압을 분쇄하고 간부와 조합원이 굳게 단결하여 현재의 기업별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법개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의 중견간부들이 앞장서서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총액임금제 도입 결사 저지하자!

조합의 일상 활동 강화 위해
신임사무국장교육 2차례 실시

신임사무국장교육이 10월 22일~24일(1차), 11월 5일~7일(2차) 서울 성프란치스코와 대전 정하상에서 본노련 교육부 주최로 실시되었다.

노동조합에서 사무국장의 중요성과 간부의 자세, 노동조합 회계처리 실무 등 일상적인 조합활동과 실무처리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그 내용의 중요성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움 속에서 교육을 마쳤어 했다.

교육에 참가한 사무국장들은 모든회원들 통해 각 사업장의 활동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현대의 힘찬 다짐을 하였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노동탄압을 조합원의 굳은 단결로 분쇄하자고 결의하였다

경기지역본부 신임의장선출
하영일동지(금성전선) 재선

경기대의원대회에서 격려사를 하는 박인상 위원장 (왼쪽은 박이 하영일동지)

경기지역본부는 10월 29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신임의장에 하영일(금성전선) 동지가 재선하였다.

제적원원 357명 중 210명이 참석하여 찬성 141명 반대 61명 무효 2명 기권 6명으로 당선되었는데 하영일동지가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 지난 3년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본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하의장은 당선사에서 "단일후보로 나와 여러분이 다시 의장직을 수행하라고 밀어준데 감사한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금속연맹 안에서, 아니 노총 안에서 노동조합운동의 중심이 되는 지표를 이룩해 나가겠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회의는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회계감사 보고,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기다도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임원선출과정에서 선출방식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회의에서 경기지역본부 대의원들은 요즘 진행되고 있는 노동부의 노동법개악을 적극 저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및 노동3권 등 제반 권리를 쟁취해 나가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노동문화 지도자양성 교육실시
생산적인 노동문화 창달에 기여

노동문화 지도자양성 교육에서 연행활동 방법을 설명하는 김정선 부위원장

본노련 문화부에서는 노동자 문화교육을 담당할 노조간부를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69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문화 지도자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전 정하상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노동가 배우기, 공동체놀이, 손풍물 및 시회인식놀이, 민속무용, 쇠뜰와서 등을 중심으로 한 실제훈련과 연행운동방법 및 노동운동과제, 간부의 자세 및 지도력 등 이론교육이 결합되어 노조간부활동과 문화활동지도자로 조합원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번 교육에서 교육 참석와 자세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일부 교육참가자들이 교육실시를 호려 빈축을 샀으며, 집행부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교육참가를 거부해 3명이 퇴소를 당하는 아픔도 있었다.

교육을 마치면서 각 조합의 문화교육간부들은 대체적으로 일정이 너무 짧아 교육효과가 완전하지 못한체 아쉬워 했으며 교육상의 건의 사항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힘충강습과 손풍물 등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이 지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노동자들의 문화창달과 보급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인식속에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문화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동문화창조에 기여하는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강화로 조합 활성화를!

안산 계양전기 노동조합
체육대회 가져

반월공단에 있는 계양전기 노동조합(위원장 이명복)은 단체협약 경신을 앞두고 조합원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11월 3일 회사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가자고 역설하고, "요즘 노동부의 노동법개악 음직임에 힘입어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경신하려고 있다.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협을 우리하게 경신함은 물론 노동부의 노동법개악 음직임도 최고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노조탐방—5
안양 만도기계노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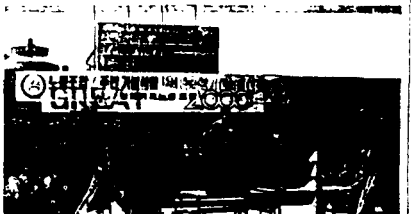

노조창립 6주년 기념식 및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는 만도기계 조합원과 김수진위원장

만도기계는 자동차부품 및 자동차여러분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안양, 평택, 경주, 문막 등에 공장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 중 하나이다. 당산업체로 지정되어 노동조합활동이 유리한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임상활동 및 조합원 복지 부분에 있어서 모범된 조합으로 손꼽힌다.

*1월3/4분기 노사협의회 넓이에서 김수진위원장을 대신해서 안양지부 김화준 사무국장이 조합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조합현황은?

◆안양에 본조가 있고 각 공장에 4개 지부가 있다. 전체 사원 8,800명 중 3,5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전임자는 본조에 5명, 각 지부에 1명씩 있다.

◆총 조합활동은?

◆하반기 활동은 7월에 임부를 뽑는데 조합원 총회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지난은 보다시피 노사협의회 장이고 11월에 단체협약이 있어 그 준비가 한창이다. 또 본기다다 수련회를 가고 있고 회사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상업체인데 회사의 노조탄압은 없는지?

◆초기에는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대립됐는데 지금은 대화가 자리잡히고 있다. 노조탄압은 인임사원을 불저하게 추진되어 한때 임시시키고 있으며 나이많은 반장들을 통해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 또 등초단협때문에 조합원 3명이 업무방해로 구속되었다가 기소유예의 법리성을 받고 풀려났다

◆현재 조합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들이 관리자 소개로 입사하여 관리자 입장에 있어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아주 사소한 일장자이로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모든상으로서 가입대상이 넓다 보니 일부 조합원들이 기본운동경신의 의식구조 개하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큰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체결하은 무엇인가?

◆소모임활동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친목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첫번 시도는 실패로 끝났는데 그 이유는 조합간부와 조합원이 분리되고 한정조직이 방해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독서회, 등산, 등산모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있는 소모임은 등산회, 노래회, 그리고 여성들이 중심인 지점토모임 등이다.

◆앞으로 조합활동의 중심은?

◆조직력 강화가 최우선이다 소모임활동 강화로 단결력을 이루어내고 부서부장이 조합원과 함께하여 간부와 조합원간의 거리감을 없애겠다 또 교육을 활성화하여 조합활동의 당위성과 건경한 노동자의식을 모든 조합원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부교육도 고정된 인원에서 탈피해 교육해보도 고루 누리게 하고 사제교육도 잡힘없는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활동을 통해 강화해 나갈 것이다

결 의 문

우리는 오늘 망국적 정경유착과 노동탄압의 음모속에 진행됐던 정부의 노동법 개악기도가 노총과 산하 전조직의 강력한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에 부딪쳐 철회된 것을 1천만 노동자와 함께 확인하며,

이는 실로 오늘이 있기까지 노총위원장의 목숨을 건 투기한 단식투쟁과 20개 산별 연맹 위원장 및 15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의 철야농성 그리고 국제노동조직의 강력한 연대하에 산하 전조직이 일치단결하여 전국적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한 결과로 평가하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모든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고 '90년대 노동기본권의 확기적신장과 온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경제·사회의 민주적개혁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조합운동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권력과 자본측의 어떠한 노동탄압도 1천만 노동자와 함께 결연히 분쇄해 나간다.
1. 우리는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노조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 구시대적 잔재로 가득찬 현행 노동법의 합리적이고 진보적 개정을 위해 1천만 노동자의 정치적 역량을 총집결시킨다.
1. 우리는 여하한 형태의 임금억제 책동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ILO가입을 앞둔 정부당국에 대해 노·사·정 3자 합의원칙아래 노동자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3당 합당이후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노동자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이를 계속 기도할 경우 전면적 대정부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우리사회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필수적 전제로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세제개혁, 주택난해소, 물가안정 등 개혁조치를 백지화시킨 현집권 여당과 정부정책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망국적 정경유착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사회 제민주세력과 굳게 연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1991년 11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130차 피선조합대표자회의

지역본부를 가다(3)

경기지역본부

안녕!! 한국노총 경기지부 건물(4층 있는 경기지역본부는 금속연맹산별) 지역본부 중 가장 많은 인원과 단위조합을 두고 있으며 수도권 노동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본부이다.

이번에 그 심층부탐기가 만났되어 새로운 집행부구성을 위한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려 와상에 히영일동지(남성전선)가 단탈후보로 출마, 재선되었다.

경기지역본부의 활동상황과 조직관리에 대해 지역본부 홍보부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이명수(삼진공업 위원장) 동지에게 물어 보았다

◆먼저 경기지역본부는 금속연맹에서 체일 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떠합니까?

경기지부의 대회를 하고 있는 경기지역 대의원들

집행부강화와 지역간 연대로 거대조직 운영 활성화를

◆지역본부 활동을 하고 있는 조합원 수는 각 230개이고, 조합원 수는 약 5만 6천여명 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에로 있는 경기전역인데 부천, 안양, 수원, 성남, 경기남부, 의정부, 포천, 남양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업활동사항 중 활동위주를 다하고 조건을 개선해 나가기지요. 넓은 지역부를 상황하고 지역간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상은제는 외부부의 현실회와 활동의 활보로 외부사를 담위시키로 내게하는 방안입니다. 사실 우리의 제정은 조합비 문이고 조직활동을 열심히 해서 단위조합에서 자발적으로 외부금을 낼수할 때 지역본부 활동은 물론 단위조합 활동도 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지향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조직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모임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또 이것이 지향사업이기도 하고요. 조직화 단결이 우리가 추구하는 일차 목표입니다. 조직다결 없이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우리 노동자에게는 성에도 단결, 물에도 단결이 답니까? 단결된 힘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 금속연맹의 제일 거대한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습니다

하영일의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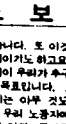

경기지역본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지역본부 의장으로 재선된 히영일 동지를 만나 경기지역본부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 해당으로 단독 공부를 올려 뵙는데 동기는?

◆지본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연계와 지난 3년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활동을 하려고 출마를 결심했다.

◆지본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점은?

◆어려움이 많았다. 어디나 그렇지만 제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웠고, 조직적으로는 단위조합에서 연맹기관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해 지본의 활동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조직도 있었다. 물론 지본이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지본 운영계획은?

◆먼저 제정의 확보를 강화하겠다 모든 사업을 일회적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회기부터 외부금을 30원 인상했다 다음은 교육사업 강화다. 조합원들의 요용도 매우 높아 실심한 부분이다. 지본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또 집행부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연대의 부분은 넓은 지역을 관할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세우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연맹에 하고 싶은 말은?

◆지역본부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정 및 교육을 강화해 주었으면 한다. 이제까지 활동도 잘 되었지만 지역본부상 중심으로 집중력을 기울임에 지역본부들이 자본 노력으로 전개함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조합노보

U·R(우루과이라운드)란?

청우공업노조 박 일 수

항상 바이러 현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현장부에 노고를 보내며 조직부에게 노동자가 본 현장서를 부탁하셨는데 이속하나에 대해 내가 본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 우리 동지들과 함께 알려 합니다.

1. 우루과이 라운드란 무엇인가?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회원국들의 각료들이 모여 새로운 무역질서 선언을 한적이 있읍니다. 그 선언의 내용은 소모든 나라의 시장을 한전개방하고 소모든 나라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별국가간에 협상을 할 것이 아니라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협상시한을 90년 만 아니라 자연녹지, 대기 물등을 유지 배양하고 수자원의 합양과 지하수의 유지 수질정화와 홍수방지 등 그 역할은 막대합니다. 그러므로 농경지가 대거 축소되면 국토 환경의 보존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으로 국민들의 세금만 늘어갈 것입니다.

네째, 지방경제의 파괴와 농지재 산업의 노산이 초래될 것입니다. 농업이 축소되기되면 우선 농사에 사용되는 각종 지제산업이 한로가 막힘 노산, 대농업업사 태를 초래하여 농민들의 구매력이 외곤해은 상 · 소기업의 경제가 파괴되고 독점의 횡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UR협상은 시선만의 성명을 앞아가고 농업 및 제반 경제분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다.

절째, 남아도는 노동력으로 인해 고용문제의 악화가 될 것이다. 현재 취업자중 20%가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고 농업의 축소 포기로 이들이 도시로 몰려면 심각한 고용문제의 악화와 저임금에 대한 특별 제일의 이윤만 늘어갈 것입니다.

세째, 농경지가 하고 있는 역할은 농산물의 생산뿐 뿐만 아니라는 노동력으로 인해 임금에대한 부담이 제어지므로 생산비가 별 를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곤세의 저하로 인해 수출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므로 말미암아 세계시장을 향해 발돋음하고 있는 전략에도 부합이 된다고 말 수 있읍니다. 그렇습니다. 현정부와 특별제일은 UR의 태풍의 영탈권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협정한에 농업

U · R은 독점자본의 이윤추구 산물 전국민이 단결하여 저지해야

입까지 타결짓기로한 GATT의 8년에 협상안 이것을 U · R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막강한 경제력, 군사력(세계 총수출의 1/3 차지 전세계 해외투자의 1/3차지 자본주의 세계의 공업생산량 62%차지 등)을 바탕으로 시장주의 진영과 계획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창설된 GATT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자본국가들의 이해관철을 위한 세계시장 확보에 앞장한 것입니다.

2. UR가 우리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해결책으로 현정권(민자당)이 마련한 농어촌보전 계획이나, 아무튼나. 근냥 여행이나 하면서 마음껏 을 즐이시는데. 그런걸 안한다가 제 하필 선거가 닥치면서 난리를 법까? 아 그런건 선거 전에만 하는 거구만. 우리 노동자여 그런거와 상관없지만 표를 찬하시면 그런 속 보이는 짓보다 수혜가 인상과 노동법개악을 찬전 협회하는게 더 중을 번해. 하긴 뭐 지금 들어서 하는 짓인데 누가 믿라고 할 수 있나.

○ 한국노총 산별대표 지회의와 지역본부 의장단 제일이니, 아무튼나. 근냥 여행이나 하면서 마음껏 을 즐이시는데. 그런걸 안한다가 제 하필 선거가 닥치면서 난리를 법까? 아 그런건 선거 전에만 하는 거구만. 우리 노동자여 그런거와 상관없지만 표를 찬하시면 그런 속 보이는 짓보다 수혜가 인상과 노동법개악을 찬전 협회하는게 더 중을 번해. 하긴 뭐 지금 들어서 하는 짓인데 누가 믿라고 할 수 있나.

○ 중소기업회 부도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은행등이 조사한 부도원인을 자금난이 6.6%에 불과하다고 정부와 사용자는 부도의 유가 자금난이 가장 큰 원인이라 말는데 한국은행이 밝는지 정부와 사용자가 맞는지는 심모 도지만 우리가 한단한기에는 거짓말만 하는 정부와 사용자보다 한국은행이 맞을 것 같에.

○ 한국노총 산별대표 지회의와 지역본부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노동부 최모씨에 그만둔고 어리고 곱의원는데. 그 사람은 소신이라는 것이 아주 강해 굽힘을 모르는 투지가 있어 아랫굿 하지 않고 소신대로 밀고 나간다고 말함. 그 놓으신 분한테 한마디. 나으의. 달린 소신이지만 우리 관민 노동자는 생존한다다. 높은 현면별의 생존보다 한사람의 소신이 중요하다고 수장하시셨지만 그래서 여주 어시라구요. 네?

자동차 부품업체 토론회

1. 사업명칭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토론회

2. 사업목적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자들은 조합법상의 하청단가 사업압력과 중층적지간 경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및 높은 산업재해의 위협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열악경속에서 노동조합운동 조합 활시 어렵게 밟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자의 단결은 절대로 필요불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한해의 기업별 노조 체계하에서는 기업간 경쟁이 바로 노조로 옮겨져 단결을 저해하고 있고 막대한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연맹차원에서 단결과 공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동차조합법제 노동자들과의 동지적관계하에서 자동차조합법제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운동방향 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조합 50년을 거남한 적극적인 노동한단으로 말미암아 임무분위기를 경세시키는 점부 · 자본측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응 을 하는 인식 및 대처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사업은 다음 3가지 목표로 두고 있다. (1)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의 연대의식 고취 (조직기반 조성) (2)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조합의 운동방향정립 (3) 92임투대비

3. 사업일정 : 1991년 11월 23일(13:400분까지 입장)

4. 장 소 : 노총 8층 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TEL : 782-3884)

5. 참석대상
자동차 부품업체 및 조합업체 노동조합 간부 : 조합원 400명 이상 : 5명조합원 400명 이하 : 2명

한마디 두마디

○ - 현대화 상속세 추심금이 1,361억원 이라는데, 이 돈이 어느정도나 하면 월급 70만원인 사람이 1만6천 2백2년 동안 월급 전부를 모은 돈과 비슷. 우리나라 역사도 5천년 역사라는데 수근 상속세 말씀한 돈이고 누구네건 조상 대대로 벌어도 먹수에 안 먹에 안되고.

○ - 요즘 추곡가수에 매문에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노동법개악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1천만 노동자와 7백만 농민에게 주는 희기체 선물. 수매가 7% 인상의 희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 국민을 모두가 쌀소비를 기피하고 있다는 이유라고 여 부은당이 밥표였는데. 남북 공민들도 쌀소비를 기피할까? 우리 노동자들은 돈 아끼려고 라면이나 국수를 먹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은 당뇨병고 종식뚝고 일식뚝는 사람들이군.

○ - 이제 선거가 다가 오면서 김옛지 단 분들이 강화 개심이니, 아무튼나. 근냥 여행이나 하면서 마음껏 을 즐이시는데. 그런걸 안한다가 제 하필 선거가 닥치면서 난리를 법까? 아 그런건 선거 전에만 하는 거구만. 우리 노동자여 그런거와 상관없지만 표를 찬하시면 그런 속 보이는 짓보다 수혜가 인상과 노동법개악을 찬전 협회하는게 더 중을 번해. 하긴 뭐 지금 들어서 하는 짓인데 누가 믿라고 할 수 있나.

○ - 중소기업회 부도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은행등이 조사한 부도원인을 자금난이 6.6%에 불과하다고 정부와 사용자는 부도의 유가 자금난이 가장 큰 원인이라 말는데 한국은행이 밝는지 정부와 사용자가 맞는지는 심모 도지만 우리가 한단한기에는 거짓말만 하는 정부와 사용자보다 한국은행이 맞을 것 같에.

○ - 한국노총 산별대표 지회의와 지역본부 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노동부 최모씨에 그만둔고 어리고 곱의원는데. 그 사람은 소신이라는 것이 아주 강해 굽힘을 모르는 투지가 있어 아랫굿 하지 않고 소신대로 밀고 나간다고 말함. 그 놓으신 분한테 한마디. 나으의. 달린 소신이지만 우리 관민 노동자는 생존한다다. 높은 현면별의 생존보다 한사람의 소신이 중요하다고 수장하시셨지만 그래서 여주 어시라구요. 네?

조합동정 및 연맹 부서활동

정기대의원대회

10월 21일 기아특수강 18일 국제종합기계 23일 한국제라이트 27일 정일공업
11월 12일 기아메이스 기아자동차
11월 2일 동성전동공업 9일 한국AMP 16일 동우실업

당 선

10월 11일 삼미종합특수강 노조 울산지부장 김규식
16일 효성금속노조위 위원장 김무응
24일 한국프렌지노조 위원장 오진현
11월 1일 대한일투미농노조 위원장 전영우
8일 삼성전선 노조위 위원장 도경복 안양지부장 조범구
근로지부장 이오상 구미지부장 김종국

기 타

10월 28일 하진트레스 세륜대회
11월 9일 AMK 노동조합 노동자 한마당 실시

축하합니다

11월 10일 포항포 전기노조 위원장 이영순 정지 결혼

아 유 회

10월 24일 강관공업 (월악산)

연맹 각 부서 주요활동

총무부 : 상반기 회계감사 대우전자 교육 교육원부지탐사 가평노조 수소원 설비
조직부 : 기아특수강 간부 교육지원 한국조합원 교육지원 삼영전자 교육지원 대한제당 교육지원 노동법개악지시 설화대회준비
노사대책부 : 임금조사서 접수 분류작업 대불공업교육 자동차부품조합 회 준비 노동연구원 ILO세미나 참석
교육부 : 심한대표자교육(1,2차) 충건간부교육 신입사무국장교육(1,2차) 고나정밀 교육지원
국제부 : ROCC파견 노동연구원 ILO세미나 참석 한일고위간부 회의참 인건 상의
여성부 : 노동문제교육 안양시 자동전시회 참석 안성시 교육지원 기아특수강 교육지원 여성위원장 회의 미니고등학동법 노조회 내부동신 교육지원

"원고를 모집합니다"

연맹은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월간 2면으로 발행하던 기관지를 월간 4면으로 증면하여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연맹 홍보부에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각종 글이나 단위 노조 소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속노보가 40만 조합원이 함께 제작하고 읽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제출처 : 연맹홍보부
TEL : 864-2901~2, 864-1503.
FAX : 864-0457

91년 주요사업
조직확대 및 조직강화
교육 및 투쟁 강화
투쟁노동자 근절
산업 재해 추방
정치 투쟁 전개
조합원 근로조건개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박인상
편집인 최용길
인쇄인 서만석

금속노보

우편번호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7-2
(금속노련회관)
전화 864-2901, 864-1503
FAX 864-0457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등록일 : 1974년 1월 22일 등록번호 마-3708호

(월간 비매품)

새해에는 더힘찬 전진 쟁취하자

굳은 단결과 연대로 노조의 정치세력화 이룩해야!

친애하는 금속노동조합 조합원동지 여러분!

미망의 1992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노동자는 이 일신 전진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사상 유례없는 노동탄압 속에서 노동조합의 존재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와 자본가들의 노동탄압은 87년 이후 가장 극악하였고 선봉을 맡았던 노동조합 위원과 노동조합지도자들에 대한 구속, 수배는 우리 노조사에서 가장 극악하였습니다.

또한 아직도 노동법제악의 유물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상권아성을 이윤획득에 다한이 되어 경제파탄의 책임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앞날을 내리느냐 아니면 임시세 노동조합의 앞날을 내팽치며 경제만수의, 사회만수화를 성취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굳은 단결과 연대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세적으로 정부와 자본가의 노동탄압을 이겨내는 길은 노동자의 권리회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생산자를 위한 정치를 만들어 내는 길입니다.

그러나 92년은 정부와 자본가들의 제노세, 이념제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우리 금속 노동자는 그동안 보여왔던 선상적인 투쟁회치로 노동탄압을 분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금속노련도 정부와 자본가의 파상적인 공격을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굳게 단결하여 맞이할 것이며 결연한 의지로 투쟁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여망과 투쟁을 확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의 굳은 단결을 이루겠다.

새해에는 더 힘찬 전진과 건승을 성취하시고 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인상

노사대책담당자 회의
구속및부당해고자 대책논의

노사대책 담당자 회의가 11월 28일 2시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금속, 섬시, 섬유, 화학, 광산 등 5개 노련 노사대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노총 방일상 노사대책국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구속노동자 및 부당해고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는데 대책수립 방안 논의에서 각 산별 노사대책 담당자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직적 성복력 대응으로 노동탄압을 분쇄하자고 결의하였다.

그 구체적 행동방안만은 심의 및 규탄대회, 농성농성조직 등과 국내외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 및 자금지원을 하여 대대적인 홍보선전으로 정부와 자본가들의 노동탄압을 성토 비판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것 등으로 정리되었다.

한일금속회담
교류및연대강화계기

지난 12월 1일 부터 6일간 보여명 박인상 위원장을 6명의 대표자이 제1차 한일금속노동자 교류회담에 참가하고 귀국하였다.

한일금속노동자 교류회에서는 양국의 경제와 노동운동에 대한 최근 추세보고 및 도쿄시 상호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내 우리 대표단은 IMF-JC 고위간부들과 한일한 도쿄시 노련 등에 국제적인 노동자단결을 위한 나아갈 것을 IMF-JC 중앙위원회 의장 조조 등과 국내외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 및 자금지원을 하여 대대적인 홍보선전으로 정부와 자본가들의 노동탄압을 성토 비판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것 등으로 정리되었다.

여선간부교육
간부자질향상위해

여성노동조합 간부의 자질 향상과 조합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여성간부교육이 11월 27일부터 2박 3일간 노동교육원에서 실시되었다.

단위조합 여성간부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활동과 그속에서 여성간부의 역할을 중심내용으로 하였는데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의 노동운동 등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교육이 되었다.

한편 교육생을 대표하여 한국 섬유노련 동지는 서로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여성노동자의 권리의 해방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회계처리실무
교육 실시

본연맹 총무국에서 실시하는 회계처리 실무교육이 12월 4일 서울지역을 출발로 전국 순회 교육에 들어갔다.

금월말 총무국장을 강사로 하여 각 단위조합에 회계감사 및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12월 20일 충남·북 지역을 끝으로 94회의 교육을 마치게 된다.

9?년 임투지침서
단위조합도움되게

본노련 조사통계부는 92년 임투지침서를 (월요)까지 산단위조직에 송부할 예정이다.

지난 9월에 정기임금 조사서를 발송, 260개중 접수하여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노총 생계비가 확정되는대로 지침서를 완료, 배부한다.

92년 임투지침서에는 예년과 달리 좀 의의는 내용을 빼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단위조직에서 쉽게 활용할 노조 관심이 되고 노동탄압이 가중될 것에 대비, 전국 조직의 공동임투와 각 지역별 부 중심으로 수행할 지침이 주가된다.

또한 1월 하순에는 92년 임투방향및 방안에 대해 설명키 위한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2월 초순경에는 임투 상황보고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지도요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조합 토론회열려
업종분과 활동촉진위해 실험적으로 개최

본노련 노사대책국에서 주관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자동차부품업체(이하 부품업체)노동조합 도론회가 11월 29일 노총 대강당에서 열렸다.

부산업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는 다섯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여섯가지 내용의 노조 그리고 결의문 채택으로 마무리 되었다.

발제는 부품업체 노조에 할 문제점 및 대책, 부품업체노동조합 운동방안에 관한 한국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주제 다섯가지 사안과 관심사 그리고 부품업체 노동조합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다룬 것이다. 도론에서는 모기업 임금유형과 문제점 단결력 제타요인 및 대책, 부품업가 아웃소싱 노조에 미치는 영향 등이 내용이었 데 부품업체의 실정의 여러움과 그 대책이 논의되었다.

한편 자동차제조업체 노조대표로 참석한 현대자동차 및 현대자동차 서 노동조합 동지들의 여러움을 피부로 느꼈다. 부품업체 노조들과 최고 연대하여 노조탄압에 대응할 것이며, 임금 도론하고 투쟁해 나가자고 결의 하였다.

노본부에 참가한 대표들은 결의문에서 부품업체의 법인한 노동조건은 독재자 부패 이를 비롯하는 정부 경제정책에 그 책임이 있으며 여대와 단결을 통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동을 위해 소위원회를 조직 정기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결의하였다.

본노련에서는 동결의에 따라 92년도 임투대비를 추진조직을 파나갈방침이다. 이번 자동차 부품노조도 파나 업종분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개최되었으며 본노련은 이경부를 바탕으로 업종분과 활동을 계속 촉진시켜 나갈 방침이다. 본노련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비철금속 등 6개 업종분과가 있다.

여성극기훈련개최
노동탄압분쇄와 성차별 철폐다짐

연맹 여성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여성 극기훈련이 11월 22일 서울 관악산에서 여성조합원 41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5개조로 나누어 산 정상까지 갔다오면서 노동탄압분쇄와 성차별 철폐를 다짐하고 여성노동자의 권리의 해방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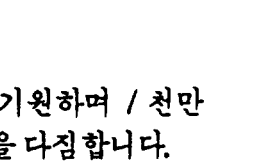

극기훈련에 참가한 여성조합원들이 관악산 정상에서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감사양성교육실시
부산및울산지역대상

본노련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금속노조지부 감사양성 교육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제7차 교육인 이번 교육에는 부산 및 울산지역 노조에서 3명이 참가한 가운데 법률지식, 대 감사양성교육 및 실제 모두 9차 까지 진행한 예정이다.

이번교육으로 전국 각 지역의 조합원 교육을 위한 감사양성교육이 끝나고 8차와 9차는 전국차원에서 이미 만든 교육 수강생중 심화교육을 받을 수강생을 선정 조합에 유용한 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 사 의 말 씀

임신년을맞이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건강과가정의 평안함을기원하며 / 천만 노동자 총단결로 승리를 기록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박	김	김	허	오	최	피	허	전	박	염	박	제	정	차	정	박	유	박	정	김	김	박
순	동	홍	영	병	웅	희	관	덕	영	성	영	선	학	경	기	병	재	기	창	성	장	인
오	교	수	도	호	길	중	무	진	구	태	호	수	균	준	춘	윤	섭	식	영	문	선	상
				회계감사		사무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주장

일방적 "10%더하기운동" -진정 책임져야 할자 누구인가-

지난 10월부터 숨을 넘시를 몰기다가 11월 들어 겨우라을 쉬어나기 시작한 임금 더하기 운동은 이제 10%더하기 운동으로 구체화되어 온 산업사회를 실시해 공약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운동에는 정부, 경제단체, 그밖고 그런 언론들이 유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위력이 어떤 것일지는 기대되고 있다.

우리가 무리의 주장을 최기에 알지 본 것이 밝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 일하는 것 자체이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며 실제 우리 노동자들은 도산된 기업을 재개시고 노동은 기업을 다시 회생시킨 사례들도 많이 있고 현재도 열별 전시업체들에서는 기업의 회생을 위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뛰고 있는 곳도 있다. 노동자들이 87년이후 계은 폭만 쳐다가 이제야 속차려 일하기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노동한다면 그 사람들이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호흡해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10% 더하기 운동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실제, 구세의연하고 구시대적이며 지극히 하향스런 명노세를 만들려서 듣는 느낌이다. 지모에 그렇서 보고하고 정시방이 일에서는 지시대로 별노리고 시일 모아놓고 구로 별번 외치고 사진찍어 보고하면 현에서는 실제에서 정세이 실질적노리고 선전에라고 이번 군사문화를 다시 정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단답한 일이겠지만 지금 시대는 민주화를 향해 나가고 있는 사회다. 일방통행이란 있을 수가 없다. 10% 더하기 운동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구조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노동자들 에기는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방적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마치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신문, 텔레비전에 크게 보도하고 있으며 일요일도 노동조합을 적당히 참여시켜놓고는 마치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과장 보도해댈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한걸음이라도 더 발전하려면 이런 구태의연한 차별는 화부쟁이 들에서다로 종 어떻어져야 할 것이다.

10% 더하기 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로 느끼는 것은 또 노동자에게 배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10% 더하기 운동을 해서 실질화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런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부동산투기와 지하경제, 특혜 융주와 경제정책과 정부없는 기술부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더욱 나와 있으며 또자금개념, 금융실명제 도입에서 정부가 국명의 보호주업자이 담을 입고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기본 문제다. 이 기본 문제를 어쩌지 못하니까 기본만 있으면 노동자들 가지고 들먹이고 노동자들 하라 해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발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10% 더하기 운동이란 실상 곧 10%를 더 시키겠다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배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자 대 있는 것이다. 당연히 배임씌이 한 자리의 배임은 안게요으로 뚜하게 된다. 이번 10% 더하기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다. 그것은 정부와 지도적 기업주가 스스로의 세오와 부도덕성을 뉘우쳐야 경제회을 수립, 솔선수범해 나갈때 뿐이다.

셋째는 우리 노동자가 과연 일부 언론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않느냐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단지 87년이전처럼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노동자가 일을 싫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한 얘기다. 우리의 산업현장은 현재 민주화 공동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업은 경영신권을 수상하며 전제적 경영으로의 회귀를 갈구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시대착오인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 더하기 운동이 일방적으로 수선되고 일방적인 문제 해결에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자가 일을 게을리 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따라서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요구를 지제하고 시키는대로 일해야 할 것이라는 위위선이 기성사실화되게 될 것이며 당장 92년도 임투부터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10% 더하기 운동의 의도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경제 회생을 위해 10%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주체인 노동자들과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배임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하며 배임이 있는 것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하며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자칫 삭풍한번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후퇴시킬 수 있는 (여러가) 운동이 아니라 내일지향 실질성의 것 일하기 운동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노동조합측에서는 10% 더하기 운동이 갖는 속은 의도를 조합원 및 국민에게 폭로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와 기업과 언론이 노동조합의 모든을 악용하여 선전하고 있다는 위해 각인, 나 노동조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전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악용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폭로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개인에 따라서는 요령을 피운다는 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런 예외적 행동이 악용되어 전체 노동자를 비나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임금을 감면하여 지세를 고쳐야 할 것이며, 최저력으로는 선제적인 성동결정의 바탕위에서 생산의 공동결정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뷰

유카오아스

핀란드 금속노조 국제부장

은종일 낮이기도 하고 은종일 밤이기도 한 나라. 호수와 삼림의 나라. 나무가 많고 추위가 혹독해 사우나가 발전한 나라 핀란드에서 금속노조 국제부장을 지낸 유카오아스 씨를 만났다. 핀란드 금속노조는 현재 우리에게 상사상을 위한 사업과 지난 89년부터 지원해오고 있으며 내년도에 일단 지원사업이 끝나게 된다. 내년도 사업을 논의키 위해 방문한 오아스 동지에게 핀란드금속노조의 근황에 대해 얘기시 들어보았다.

◆핀란드 금속노조의 조직현황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핀란드는 노동자 75%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공업분야가 상업이나 서비스분야보다 조직률이 더 높다. 핀란드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의 생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고 조합원은 147,000명이다. 조직률은 99%이다.

◆금속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시간당 임금 평균은 12.5달러(9,400원정도)이다. 주 500명이다. 그러나 수주비 때문에 들기가 비싸고 세나이 많다. 주당 소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나 공휴일이 많아 평균 36.4시간이다.

◆핀란드금속노조는 언제 설립되었는가?

◆1899년에 설립되었다. 기업주의 인정을 받는데는 40년이 걸렸다. 지금 노조는 매우 강하다.

◆조합비는 어떻한가?

◆본부로 임금총액의 1.3%를 내면 본부는 그 중 15%를 지부로 영입해 준다. 조합비는 각 기업에서 공제해 본부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킬 수는 있다.

◆정실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민당과 가깝다. 우리는 사회민주당이 우리를 지원해 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단체교섭제도들에 대해 얘기해 달라

◆핀란드 금속 사용자협회의 전국적인 일반협약을 체결하며 그후 각 공상의 직상위원들이 그것의 직용에 관해 교섭한다. 현재 공상단위 교섭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나 산업별 교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핀란드 경제는 지금 하강국면이다. 한을강세때문에 수출이 잘 안된다. 조합원 10%정도가 실업을 하고 있다. 이는 평소의 2배이다. 현재 우리는 교섭중인데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쪽이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금속노조는 사정은 이해해 임금인상을 지제할 수는 있으나 임금삭감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정치활동은 어떻게?

◆조합비는 각 기업에서 공제해 본부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킨다.

금속노동자 조직 강력해지길 희망

핀란드 금속노조 한국금속 단위노조에 기여하길

◆핀란드 금속노조의 조직현황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핀란드는 노동자 75%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공업분야가 상업이나 서비스분야보다 조직률이 더 높다. 핀란드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의 생산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고 조합원은 147,000명이다. 조직률은 99%이다.

◆금속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시간당 임금 평균은 12.5달러(9,400원정도)이다. 주 500명이다. 그러나 수주비 때문에 들기가 비싸고 세나이 많다. 주당 소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나 공휴일이 많아 평균 36.4시간이다.

◆핀란드금속노조는 언제 설립되었는가?

◆1899년에 설립되었다. 기업주의 인정을 받는데는 40년이 걸렸다. 지금 노조는 매우 강하다.

◆조합비는 어떻한가?

◆본부로 임금총액의 1.3%를 내면 본부는 그 중 15%를 지부로 영입해 준다. 조합비는 각 기업에서 공제해 본부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킬 수는 있다.

◆정실과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민당과 가깝다. 우리는 사회민주당이 우리를 지원해 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단체교섭제도들에 대해 얘기해 달라

◆핀란드 금속 사용자협회의 전국적인 일반협약을 체결하며 그후 각 공상의 직상위원들이 그것의 직용에 관해 교섭한다. 현재 공상단위 교섭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나 산업별 교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핀란드 경제는 지금 하강국면이다. 한을강세때문에 수출이 잘 안된다. 조합원 10%정도가 실업을 하고 있다. 이는 평소의 2배이다. 현재 우리는 교섭중인데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쪽이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금속노조는 사정은 이해해 임금인상을 지제할 수는 있으나 임금삭감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정치활동은 어떻게?

◆조합비는 각 기업에서 공제해 본부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킨다.

◆한국금속노동자에 대해 한마디만?

◆한국의 금속노동자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조합운동을 힘있게 한다고 본다. 금속노동자의 조직률이 갈수록 커져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핀란드 금속노조가 노조들의 힘, 특히 단위 노조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충북지역 본부 신임의장 선출

금성계전 노조 김홍수 위원장당선

충북지역본부는 12월 13일 11시 노총충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신임의장 선출 및 집행부 구성을 하였다.

신임의장에는 단독 출마한 금성계전 노동조합 김홍수 위원장이 17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찬성15명 기권 2명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집행부 구성에는 기존의 체계를 감안하는 일환으로 부위원장을 2명 추가하여 4명으로 늘렸다.

김홍수 신임의장은 당선소감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단결된 힘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하면서 "지역본부 활동이 미흡했던것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일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신임집행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부위원장 백은재(사노동조합 서세숙 위원장/보성크노동조합 권성하 위원장/사성사노동조합 정주지부 전동민 지부장/한국알미늄노동조합 이춘영위원장

▲ 회계감사-우리전기노동조합 장화한 위원장/우리정밀, 박라규 위원장

▲ 사무국장-뉴백스노동조합 이형일 위원장

서울지역 본부 문화부 송년의 밤 행사

서울지역본부 문화부(부장 대림전자 노동조합 김희숙 위원장)는 12월 13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본 연맹 대강당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령노조 소개와 게임, 노동가 부르기, 개인장기자랑등으로 진행된 이번행사 : 서울지역본부 문화부의 91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92년 사업을 힘차게 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행사였다.

김희숙 문화부장은 취지설명에서 "지역본부 문화부가 지속적인 문화사업을 벌이지 못한데 이번일이 있을 때는 함께 모이고 바보 흉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전제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극복하고 92년에는 조직된 체계로 지역본부 문화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노총방한단 본 연맹 방문

러시아 공화국 노총(FITUR)방한단이 12월 12일 오후 4시 30분 본연맹을 방문하였다.

러시아 공화국 노총 방한단이 본 연맹을 방문한 목적은 본연맹과 FITUR의 친선강화 및 본연맹의 조직사 활동연구였다.

연맹 박인상 위원장은 이들을 맞이하여 본노연의 조직사 활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러시아 공화국의 개방과 발맞추어 본노연과 러시아 공화국 노동의 유대와 단결을 강조하였다.

정우실업노동조합 창립 기념식 및 대의원대회

안양에 있는 정우실업 노동조합(위원장 김경희)은 11월 27일 노조설립 3주년기념식 및 정기 대의원대회를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식당에서 가졌다.

금속 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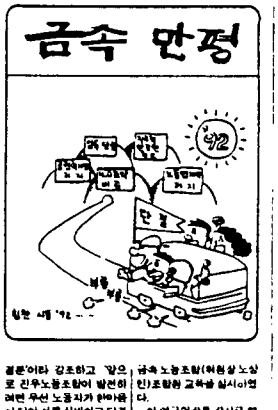

충남지역본부 실행대표자회의

충남지역본부는 11월 20일 아산시 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사무실에서 실행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세입공업노동조합 신임위원장선거

세입공업노동조합(위원장서정호)은 11월27일 노조사무실에서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제2대위원장에 서정호 동지가 당선되었다.

부산정기 노동조합 쟁의타결

부산정기 노동조합(위원장 김낙호)은 11월25일 91년 단체협상을 성의있게 진행해 와 3일 오나 12월 9일 노조측의 수임에 대한 한일 양보와 최사측의 단협수용으로 쟁의가 타결, 현재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금성전선노동조합 어려움속에 대의원 대회

안양에 있는 금성전선 노동조합 제24차 정기대의원대회 및 위원장 이세민씨이 12월2일 124명 조합지부 중 중점 사업부 본부 1을 장덕 이지부에서는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보고와 단협노조의 어려움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한국 FI회 회계감사 연신규씨의 하도급문제가 조합원들의 어려움으로 제시되었다.

은성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엄광조 결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은성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엄광조(32)동지가 12월 1일 124에 안산예식장에서 강은희 사강진희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주)진우노동조합 노조현판식거행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주)진우 노동조합(위원장 김낙호)은 11월 23일 사내 노조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진우노동조합은 7월 10일 설립되어 어려운 가운데 사무실을 마련, 이번에 현판식을 가졌는데 현판식에는 경기지역본부 박경희 사무국장등 상급단체 간부와 회사측 대표, 지역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진우 노동조합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참석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자의 힘은 단결"이라 강조하고 "앞으로 진우노동조합이 발전하려면 우선 노동자가 한마음이 되어 서로 신뢰하고 단결해야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한국경금속노동조합 노조원 단합체육대회

한국경금속노동조합(위원장 노상만)은 12월 1일 은상골고개에서 노조원단합 체육대회를 가졌다.

또 회사측의 노조사무실 건립과 폐인실에 합의하여 12월 4일 울산지역본부 이연구외상등 10여명이 참석 방문하여 노조사무실과 휴게실 건립을 합의하고

합법한 노조활동에 1억여 갔다.

울산지역본부 한국경금속조합원교육

울산지역본부(이연구외상)에서는 12월 8일 한국경금속노동조합(위원장 노상만)은 12월 13일 울산지역본부 이연구외상등 3명이 참석하여 "조직사업과 조합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외상등 강사모 83명이 모인가운데 실시된 이번교육은 노동3법과 노조운영 및 조직 조합원의 임무들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내일노조연합가부 고영이연 노조에 계속이어진 교육이었다.

경남지역본부 조직·교육부장교육

경남지역본부(의장세선수)는 12월 3일 창원노동회관에서 경남지역 단위노조 조직부장과 교육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노연 이연구 조직국장을 강사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6시부터 오기준 21간 30분 가량진행된 교육은 40여명이 참석하여 열기를 더하였다. 이번 교육은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력을 강화하고 그 대책으로 교육의 역할을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노심초한 어떠한 노동이 되었다.

구로공단 노조 침묵시위 5대 10%더하기 운동반대

구로공단 노조협의회(의장조대원)소속 노동조합 대표 시 8명이상은 12월11일 구로공단 연수원 강당에서 개최한 기업체 5대 더하기 운동 선전대회 시 공동성명에 의해 시위를 벌였다.

본노연 시흥지역본부 구로공단노조협의회가 함께한 이 시위에서 노동대표자들은 성명을 통해 "경제위기의 주범인 기업주와 정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덧씌우는 30%일방적 더하기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로공단 노조협의회 조대원의장(삼성화스노조위원장) "노동자 대다수는 이번 무리한 운동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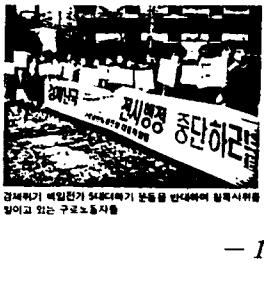

경제위기 책임전가 5대더하기 운동을 반대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구로노동자들

정정공고

금속노보 94호 중 제3면 만도기계 노조탄방 기사중 '나이많은 반장을 봉해…'와 '반장조직이 방해를…'는 사실과 다르므로 바로 잡으며 아울러 이 기사로 인해 관계당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양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홍보부

5대 10% 더하기 운동

피켓제를 한다!

요즘 시내나 공단 어디에나 할것없이 '결심히 일하자', '5대 10% 더하기 운동'등 경제위기 돌파를만 수출경쟁력 약화에 따른 총체적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촉구하는 각종 구호가 넘쳐있다. 또한 지난달 21일 정부가 '임금는 동결 조정'을 직접 추진하자는 결의를 하였고 다음날인 22일 경제계는 상공부 권고로 '5대 10% 더하기 운동'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정부·경제계 관련단체, 심지어 언론까지 합세한 '5대 10% 더하기 운동'은 맹렬한 기세로 추진될 전망이다. 그 본질과 그 문제점을 파헤쳐야 우리 노동계의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

1. 들어가는 말

현재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5대 10% 더하기 운동은 과연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5대 10% 운동은 총체적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근본처인 지우에이 힘 수 있는가? 정부와 경제단체는 마치 노동자가 게으르고 선체적인법의 시치·법이 때문에 경제위기가 닥친 것으로 선전하고 전 국민적 시회적 운동으로 5대 10% 더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근본적 이유와 5대 10% 더하기 운동의 내용과 근거 그리고 허구,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계의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현재 한국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

80년대 중반 세계경제 속에서 3저호황을 누리며 한국경제는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된다. 실질 그 경제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노동자들의 노동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년사이 한국경제는 총체적 위기라는 부시부시한 단어로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이 몇년사이 도대체 어떠한 요인이 있었기에 한국경제는 급한 나락선을 그리게 되었는가?

후의 심부와 경제단체는 노동운동의 위신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신장으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나는 데에서 경제위기의 해일을 맞았다.

과연 그런가? 임금상승은 생산성 능선을 지배 하는가?

실제로 임금이 상승하면 소비가 촉진된다. 소비의 촉진은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생산력 소비라 한다. 또 임금인상은 저축으로 생산에 제투자 되는 것이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임금을 생산력인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저축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아래도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력 제생산에 충분한 임금을 받지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간접 및 특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력 제생산에 필요한 소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임상생활을 위한 많은 소비를 한다는 뜻이다. 노동력의 제생산에 필요한 소비만을 생산적인 소비는 없다. 우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잔업이나 특근에 보내고 혹리력을 올리기에 저축하고 있고, 그 대수임과중에서 많은 부분을 사치라고 있다.

현 한국경제의 위기를 어느 한국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지난가의 자본과 노동자의 노동해이 경향에서 경제를 이루고 있는 지금수의 시회는 그 역할에 있어 자본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본가들로 대표되는 한국의 경제계, 특히 30대 재벌들의 그동안 경제활동은 어떠했는가? 실제 기업들은 80년대 중반이후의 고노동자에서 축적된 기업의 부를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투기 놀이 골프장건설에 돌려 본 자본의 유통을 저해하는 변칙증여 및 상속을 공공연하게 자행해 왔다. 또한 스스로 생산하여는 외자를 조기한에 상기되인 경제원리에 대해 투자를 하지않고 단기간의 이윤획득을 위해 외국기업 및 외국상품의 대리점화에 머물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효자수지 관리를 하지 못했고 건실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 방조, 금융실명제 포기, 졸가만성 실패, 대세벌기업의 이권추구에만 시종이었고, 이에 정제세의 실패에 더하여 가중 고비용의 부정 비리, 특권층의 호화사치, 정치사회 모순에 근거한 특권기업 세벌등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의욕과 노동의욕을 떨어뜨리,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위기가 있는 것이다

정부와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선 국민적 희생론과 5대 10% 더하기 운동은 경제정책 실패와 생산성의 부수기 피, 부동산투기, 호화사치 노의 건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와 전국민에 씌우기 하는 일방한 수작이다

3. 5대 10% 더하기 운동의 내용

5대 10% 더하기 운동의 내용을 심층보면 설탕, 저축, 생산성, 수출, 일더하기이다

이와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운동의 선축한 확산대회를 계최하여 연나에 각 계별기업에까지 파급시키려다는 의도이다. 지난 11월 22일 전국 사업계 10% 더하기 운동 전진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0일까지 '경제난 세법 10% 더하기 운동 결의대회'를 216개 업체나 계기 주최할 계획이다. 우 91년말까지 기업세법 10% 더하기 운동 결의대회'를 기 기업체 대표와 노동조합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할 다고 되어 있다.

이 운동의 근거로 경제 5단체 및 정부관련 부서는 80년대 후반기 이후의 사회노동기 이한과 경제의욕 저하, 과분 대내외 여건하에서 기업경경상의 애로가중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들어 경제분위기 제전(하냉)운동의 최고전계로 일전지 국운을 이뤄 새로운 도약기반을 구축한다고 그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4. 정부와 경제계의 5대 10% 더하기 운동의 의도와 허구

그러면 정부와 경제계가 주장하고 있는 10% 더하기 운동의 근거없는 내용 및 심층해석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우 정부와 경제계는 실제 노사화합 및 민·관이 한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인가?

그 내용의 허구와 의도를 알아본다.

1) 10% 소비절약

가용 전기, 수도, 유류, 전데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의 10% 절약은 10% 저축과 함께 현재 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시설이나 물자에 대한 절약은 필요하다.

그러고 현재 각 사업,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절약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이제와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10%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절약을 하지 않아 부도기업이 있어서고 사업단이 가중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 사업단을 극복하는 것은 제법기업에 한정되 각종 특혜금융과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사리투자금 만이 생산자금으로 유입되는도 해야한다. 또 내년 정부예산 안이 33조2억의 규모로 91년 25조8억 인보다 23.88% 증가 하였고 내 이, 사용 선거에 사용할 수금 이외 계산 한 것이다 6조4억여원이 증가된 정부예산도 중소기업의 91만개업 부도(사태)에서 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2) 10% 저축

각 사원이 1인1통장 갖기와 월급의 10% 저축이 이 운동의 실천세목이다.

우리노동자중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또 월급의 10% 저축은 허황감이 없는 말이다 이 10% 저축도 경제계의 자금난 타개를 위한 사인는 하에 이 또한 근본적인 저항이 있 수는 없다.

저축 등 이런 운동은 그 돈을 모아 기업에 대출하게 된다 즉 저축을 통해 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은행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대출에서는 위 여기 용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에게는 커다란 자금부담이 되고 있다 또 은행이 건전한 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융자는 하지않고 부동산투기나 증권투기를 일삼는가 하면 기업의 입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생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투기 및 단기적 이윤을 위한 수입대기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실제 1988년 현재 개인 총저축은 23조8천9백2십9억원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91년 318쪽) 위 이은 그 예수면에서는 더 증가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가인상으로 화폐가치는 하락했으나까 다시말해 저축을 어떻게 사용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다음으로 놀고있는 10% 저축은 91년 10월 14일 노동부가 전국 사용노동자 10인 이상 업체 근로자에게 표본 대상으로 조사 실시한 '90년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90년 전 직종의 월평균 임금은 50만1천9백92원이었으며 생산직 임금은 43만3천46원이었다.

43만3천46원의 10%는 4만3천3백5원 상당이 된다. 월 30만원 정도의 임금이 되는데 하여서 실제로 총 저축률을 보면 4만원이상 저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자금난은 저축과 실업과 관계되지 아니다. 자금의 비효율성 및 생산투자기피, 세법의 부동산투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다

3) 10%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은 자본과 노동에이 적절히 결합 하였을 때만이 가능하다. 지는 한계한한 강조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하여서 우선 이 자본이 생산력상에 놓여지지 않고 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상도 강제 강제 된다

가기에다 임금인상 대비 불가만상기 서에 심심임금은 서 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게 된다 이는 정부와 자본가가 스스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바로 수립하거나 자본의 투기 및 비생산적 투자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지 않고 오로지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초과이윤 획득을 계속 하겠다는 의도이다. 즉 선별되어져야 하는 제도적, 구조적 구제를 배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10%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일방적인 노동자의 희생을 의미한다

4) 10% 수출 더하기 운동

위에 서술한 10% 이상 목표 상향조정 한다는 실천계획은 말로 수출이 더 되는 허가를 일으키게 한다.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은 계속 약화되어 가고있다. 중소기업은행이 최근 2백300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국 수출업체들 55.1% 가 수출경쟁에 밀리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10% 수출 더하기 운동도 기술개발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 방안없는 즉시적인 발상이며, 이는 10%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노동강도를 강화하려는 이념적 공세와 비슷하다.

5) 자발적으로 일 더하기

10분전 출근, 20분후 퇴근 모두 30분 일더하기만에 이 일더하기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내용이 바로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 이 출제시 경제난국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4분기 노동능률향상보에 따르면 2/4분기 평균 노동시간은 주 46.8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9시간 줄어들었다.

이들 근거로 노동시간이 줄고 일어하기 운동의 필요성을 제도적 면등은 중소기업 노동자는 평균 1주일에 52.3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나나 비정근로시간 46시간보다 6.3시간 더 일한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9.3시간으로 사무직 노동자들의 8.9시간보다 0.4시간 더 일찍다. 실제 10인 이하 업체 사업장의 노동시간까지 합하면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이 된다.

실제로 우리 노동자들은 벅고실기 위해 같은 휴근과 야근을 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근무제 하는 것은 중급속 및 제철, 광업등 노동강도가 강한 사업장들이다. 그러면 정부와 자본가들이 지발적으로 일 더하기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하여서 실제로 것과 같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의 게으름(?)으로 돌리려는 의도이다. 여기에 언론까지 가세해 마치 노동자가 일을 안해 경제가 위태로운양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한술 더해 부상선업계는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의 희생으로서 벗어나려는 처벌지향 시대이다

자본가들의 초과이윤을 회복하기 위해 부실한만, 부상특근을 요구하고 그의 근거로 일 더하기운동을 주장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탄압에도 커다란 나라를 주게된다. 조합원들의 상당한 요구를 이념적 공세로 묵살하고 조합집회를 하는 것을 불온시하게 될 것이다

5. 우리의 대응

우리는 정부와 자본가들이 입이고 제도언론이 떠벌이는 5대 10% 더하기 운동의 본질과 의도를 대충이나마 살펴 보았다.

우리는 결코일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가들의 이런 허가제인 경제과 제도적 계획이 없는 일방적으로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

이제 나름대로 그 대응책을 제시하면 먼저, 이 운동의 본질을 조합원 및 국민에게 홍보선전하고 교육하는 일이다. 다음으로 결의대회나(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조업도 연말까지 시행할 것이다) 토론회에서 정부나 자본가들의 강성을 요구해야 하며 잔업과 특근을 무상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연장노동에 대해서는 철시하게 연장수당을 하보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나 지역의 예를 들면서 노동조합에 강요하는 사실이 있으면 이에 대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경영분석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이익과 관리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 부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단체 및 정부를 안을 노동자에게 건가하려는 정권과 자본가의 이념공세에 대항하여야만 우리는 내년 임투와 단협세점에서 승리할 수 있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정부, 자본가 각성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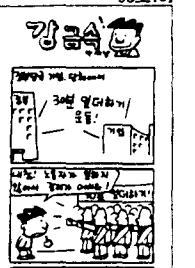

결 의 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1991년 11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조합원 일동은

지역 본부를 가다(4)

대구 · 경북지역본부

김경조 의장

지역본부 탐방(대구 경북지역본부)

(대구 · 경북지역본부(의장 김경조)는 97개 조합과 12,000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되었다. 다 지역본부에 비해 군소조직이 많은 대구, 경북지역본부 가 7월 5일 신생부가 새로이 구성되어 힘찬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음은 김경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 금년도 사업추진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새로운 사업들도 추진 되었는데 그 내용은?

◆ 먼저 하여서 일한 세계 강화의 조사통계 활동을 통한 지표집 발간사업이다. 조사통계 지표집은 92년 1월까지 발간 예정이다. 또 소식지를 현재 2회 발행이였고 매월 1회씩 계속적으로 교육사업과 함께 일한 상황실 운영과 각 부서 동원으로 조합을 지원도록 할 것이다.

◆ 향후 지역본부 모형계획은?

◆ 탈모하는 사업이 아니라 각 가능한 한 조직 내실화를 다해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한주의 방식을 노인과의 심 · 국장과 부서부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하게 일하는 지역본부 조직으로 꾸려 나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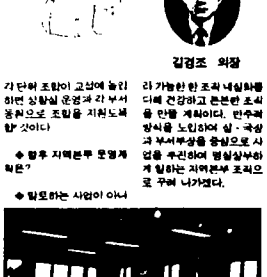

조합원 교육을 받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본부 동지들

상근자 확보가 지역본부 활동의 관건
실 · 국장, 부서부장 중심으로 사업추진

◆ 새 집행부 한명주 부서를 보강하였다는데?

◆ 실제 상근조직에서 세입자 일을 해나갈 상근자와 각 부서가 부족하였다 그래서 1실(기획실)과 2국(조직국, 교육선전국)을 신설 하였다

우한 가운데 구체적인 부서들을 신설 보강하여 업무에 맞는 활동을 하게끔 하였다. 또 상근자가 없기때문에 나타나는 업무와 공백을 채우기 위해 사무국장과 총무부장을 상근자로 하고 한 상근자를 1인 더 추가하여 각 단위조합과 지역본부의 지표지원을 만들 수 있는 조사통계부 일을 맡길 예정이다. 가장 폭기 힘든한 일은 대경선봉대 발족이다 산하 단위조합 사무국장들로 구성되고 임부대회등 각종행사의 실무활동과 규합업무를 맡게되는 대경선봉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12월 중에 발족할 예정이다 현재 약 50여명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 활동상의 애로점은?

◆ 조합활동에 가장 기초가 되는 조사통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부족으로 통계수집이 어려웠다. 이것은 급임없이 이해를 구하고 교육을 해줌으로써 앞으로도 별 대표자 및 조합간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대로사항 전외사항을 수렴, 본부와 단위조합이 일치감을 가지고 대구 · 경북지역의 노동운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 92년 업무계획은?

◆ 임부문에는 거의 완료되었다 조사통계사업이 1월중으로 끝나고 2월에는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 · 경 선봉대도 12월중으로 조직되어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임차 임부 본부기를 놓아나가 3월중 임부교외대회를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한마디 두마디

○ – 국회의원 나리들이 국민들의 목소리하는 기대를 어시 저버렸는데, 정부 여당의 목기가 변인일치기 등과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해도 너무한 기는, 거기다가 언론마저 소위 양비론으로 일관 국민들의 따가운 눈길을 받았는데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어겨 놓에 놓아가는 건 아아 나리들이 어 쌀 일것

○ – 주곡수에가 인상과 쌀수입개방 반대 농민대회가 열렸는데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고, 옛부터 농은은 정부와 여당이 호구로 생각했었지만 이번은 다를 성, 생산자가 분노별을에 먹았방고 수입당하면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어부 심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 그래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걸 보면 불쌍하기도.

○ – 요즘 일더라기운동이 경제단체를 선두로 정부와 언론의 도움을 받아 힘기를 떠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성상을 바라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는 눈물겨운데 먼저수가 좋은 것 같아 한마디, 우리 노동자이 떠고 살기 위해서라도 관업에나 살아가 가리지않고 일하는데 진력 일해야할 사람들이 일 안하면 말짱 도꽈.

○ – 경제발전을 위한 5대 대하기운동과 6대 안하기운동을 밀줌드리면, 대하기운동은 일상대하기, 수에가와 수에일대하기, 좋은 노동조건대하기, 고용대하기, 기술 및 설비투자대하기이고, 안하기운동은 가진자들 호화사치안하기, 부동산투기안하기, 노동법개악안하기, 수입개방으로 우리농산과 시장 안축이기, 정치꾼들 국민우롱안하기, 노동한 압안하기 등, 지 이정도면 경제발전은 하늘 것 같은데 나리들 생각은 어떨지.

○ – 국회 입시기사에를 사과한다지고 여당솔두가 인제사회법도에 쌀 마련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에 전부 바꿔버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과 이일지, 그래서 한마디하면, 다 바꿔라! 국회의원하고 고도소에 있는 입시기 곤놓하고.

우리조합노보

'민초'우리는 이땅의 봉이로소이다.

동신유업

우리는 요즘 신문지상이나 텍스컵을 통하여 한국 경제위기 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또한 저들 양키까지 한국 경제의 붕괴를 놀뛰거리고 있다. 먼저 농촌을 보자. UR인지 지랄 인지로 외국산 농수산물이 마구 상이로 밀려 들어와 이미 우리 농촌을 밑가 뜨리기 시작했고, 쌀수매가 먹제, 수매 탕제한, 그리고 쌀수입 개방을 간간이 내비치고 있는 정부 또한 우리의 농촌을 피폐화 시키는데 일조하는 인상이다.

우리의 농촌에서는 생산가도 나오지 않는 농산물가격 때문에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성과 우리 소비자 손에 남는 몫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단적인 예로 신지에서 한포기에 80원하는 배추가 종간 상인의 손을 거치는 하루밤 사이 10배 가까이 오른 600~800원짜리에 소비자들 손에 들어온다. 속 농민은 입안 내내 허리가 부러지라 입에도 인간비도 못건지는 처사고, 중간상인은 하루 아침에 엄청난 횡재를 끌꺽하는 가위 농촌의 현실이다.

이땅의 가진자들은 어떠한가? 기업들은 기술개발은 뒷전이고, 수입개방 자율화 조치로 외국물건들이와 국민들 등쳐먹을 생각만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은 내부 임뷔 부자가 되었다는 미아 낭 거림을 빌리지 않아라도 우리의 먹화폐를 보면 우리 노동자는 경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외제 먼뉴 한세트가 30~50만원, 남성정장 한벌 150만원, 여성정장 200~280만원, 하다못해 어린이 뮤한벌에 38만원을 요가하는데도 없어서 뭇뭇 이하여 성가전 선생의 설명과 직접 보고 느낀 바로 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책 수정책 제에로 큰 자본없이 소규모의 기업 형태를 유지 발전시켜 경제가 흔들린다고 할수있단 말인가?

지침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선거인들에, 선업경제 역학화, 내년 임금인상 등 경유도 및 통상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

노동자 농민의 땀의 댓가로 3년동안 지속적 흑자기조보 돈이 휴 모이자 지에일을 모으고 씨비번 저들은 (?) 적자기조로 인한 임금자상을 수에 임금인상, 한국경제위기를 다시 내세우며 임금인상 억제, 쌀수매가 억제로 노동자, 농민을 수탈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노동자, 농민은 이땅의 열린한 봉이란 말인가?

지심하고 정말 우리 경제 를 모르고 치솟고 있다. 단적인 예로 신지에서 한포기에 80원하는 배추가 종간 상인의 손을 거치는 하루밤 사이 10배 가까이 오른 600~800원짜리에 소비자들 손에 들어온다. 속 농민은 입안 내내 허리가 부러지라 입에도 인간비도 못건지는 처사고, 중간상인은 하루 아침에 엄청난 횡재를 끌꺽하는가 위 농촌의 현실이다.

이땅의 가진자들은 어떠한가? 기업들은 기술개발은 뒷전이고, 수입개방 자율화 조치로 외국물건들이와 국민들 등쳐먹을 생각만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은 내부 임뷔 부자가 되었다는 미아 낭 거림을 빌리지 않아라도 우리의 먹화폐를 보면 우리 노동자는 경일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외제 먼뉴 한세트가 30~50만원, 남성정장 한벌 150만원, 여성정장 200~280만원, 하다못해 어린이 뮤한벌에 38만원을 요가하는데도 없어서 뭇뭇 이하여 성가전 선생의 설명과 직접 보고 느낀 바로 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책 수정책 제에로 큰 자본없이 소규모의 기업 형태를 유지 발전시켜 경제가 흔들린다고 할수있단 말인가?

지침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선거인들에, 선업경제 역학화, 내년 임금인상 등 경유도 및 통상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

노동자 농민의 땀의 댓가로 3년동안 지속적 흑자기조보 돈이 휴 모이자 지에일을 모으고 씨비번 저들은 (?) 적자기조로 인한 임금자상을 수에 임금인상, 한국경제위기를 다시 내세우며 임금인상 억제, 쌀수매가 억제로 노동자, 농민을 수탈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노동자, 농민은 이땅의 열린한 봉이란 말인가?

지심하고 정말 우리 경제

노동자, 농민의 땀외면, 수탈혈안
주인으로 대접받는 새세상 만들어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국민이 작년 한해동안 유통업소에서 먹고 마셔버린 돈이 10조원이 넘는다고해서 어떻게 많다고 할 것인가?

어느 TV 드라마 세목제일 말로만이라도 중산층에 놓여기 불려고 누구나 서민 범보기 운동에다. 입입양조 소수한명에 TV보고 방 수놓지키기 운동을 해도 내 그리 한은 커녕 오고는 전세값도 못따라 갈한인데 어떻게 출인력고 전달 수 있으며, 어떤놈은 비행기 전세내어 일해스키 연이에서 가는데 수십년 저임을 떠어도 마누라 데리고 관광한번 가본이이 없는데 그놈한 산업역군이 참에 배부부자가 되는 출부들의 월로소득을 감까지 수화하여 세금은 탈수하여 일하여 일하는 사람이 살 살수 있는 시회, 노동자 · 농민이 이 나라의 봉이 아니라 진정 주인으로 대접받는 새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태양〉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책 배려
기술과 자본결합할때 더 발전할듯

하여준 성가전 선생의 설명과 직접 보고 느낀 바로 말하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책 수정책 제에로 큰 자본없이 소규모의 기업 형태를 유지 발전시켜 경제가 흔들린다고 할수있단 말인가?

지침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 선거인들에, 선업경제 역학화, 내년 임금인상 등 경유도 및 통상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

노동자 농민의 땀의 댓가로 3년동안 지속적 흑자기조보 돈이 휴 모이자 지에일을 모으고 씨비번 저들은 (?) 적자기조로 인한 임금자상을 수에 임금인상, 한국경제위기를 다시 내세우며 임금인상 억제, 쌀수매가 억제로 노동자, 농민을 수탈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노동자, 농민은 이땅의 열린한 봉이란 말인가?

지심하고 정말 우리 경제

IMF-ROCC 정기대회참석을 마치고

삼아알미늄 노동조합위원장 이우희

지난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대만 금속노련 대회참대 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7일 저녁 김포공항 18시 25분발 KAL기 편으로 대만 타이베이를 향하여 떠났다.

타이베이 공항에 도착하여 다음에 와 있다는 설레임과 불편 마음으로 타이베이 시내에 섰어 놓었다.

한국에서 떠날때 우리나라 현재 보다는 훨씬한 국민 총소득이 10,000여불 가까이 가고 부역 흑자국이며 외화 보유고가 세계 제일이고 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나이 세이 시에 섰어드는 순간 나외 실망이는 외외로운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우리나라 서울의 빌거리를 상상하며 들어섰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옷차림이 일하기에 편한한 옷차림이었고 거리의 자동차는 혼잡하면서도 허영끼지 않고 쏟 쏟도록이 흘러이는 것을 볼때 남달 그 나라의 국민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옷맵에 돌기를 바른것이 아니라 언제나 느긋하며 사람 우선우의로 모든세계가 이루어진것 같았다.

자동차의 경적소리는 놀어 울때아 들을수가 없었고 그 혼잡하여도 사고 자상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중국 대만에에 여상을 가고 저에시사업 하기위하여 거리로 나왔다.

거리를 다니면서 도한 놀라게 되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선을 밟에 입었기 때문이다. 건물 1층이 3,4층도 노로보다 들어가게 지어져 있고 그 도로의 반가량은 인도이고 받은 그곳의 대중교통수단인 오토바이의 차고로 이용되고 있었다. 시내는 구획정리가 잘되어있고 이런도로는 거의 일방통행으로 되어있었다.

이러한 도시계획과 건물을 지을때부터 모는것을 생가하고 실시해온 그나라 지도자들이 부럽기까지 했었다.

우리나라와 대만이라는 나라를 놓고 비교하여 볼때 현사 부모면게 생각되는것은 사에 나만의 생각일까?

우리나라의 허정자들은 이여준한 일 감정은 우리한국인모두에의 슬픔한 감정 표현인것 같다.

또 이런 대만 방문 기간중에 또하나 부러움을 느껴것이 있다면 박물관을 관람하나라간다고 한다.

속 소규모기업 여럿을 하나의 협동조합 체계로 뭉어 모든 시설자본 및 기술 지원을 하여주고 그 소기업이 여노성도 상품 되었을때 투자 자본을 조금씩 회수하기 때문에 큰 여러음업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다 보니 소규모 회사로 전문화가 이루어져 오늘날의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일거름이 되었다 한다.

그러나 내가 본 문제점은 그 소기업이 거의 하청업에 불가하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남는것 같다. 그 전문화 되어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대기업 육성 도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곳 대만도 거의 일본기업의 하청업자에 불과한 느낌이 드는것과 나의 가슴속에 일본기업의 부러움과 시샘이 한세 여우러 서 느껴지고 나서이다. 박물관에 들어서서 청동기 문화재는커 녕 모두에게 보여대는 자성의 소리일까?

전국금속노련 60만 조합원 여러분!

허정자와 제일 말들을 잊한을 부은 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근성인 끈기와 노력으로 다시한번 슬픈하기위한 종도방을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자기반성과 그만일을 바탕으로한 일은만 있다면 우리나라도 부역 흑자국은 물론 세계 열강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기간들인이었으나 이번 대만 방문기가를 통하여 많은것을 보고 듣고 느낀것을 저흔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누에것이 발자 최었다니다.

금속연맹 60만 조합원 의 이팔 !

1991 11 18

조합동정 및 연맹 부서활동

정기대의원 대회

11월15일 경원산업노동조합
12월13일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11월23일 세광알미늄노동조합 19일 동노 노동조합

계의발생

11월13일 한국김전제작소 노동조합

교 육

11월30일 한국 노동조합 29일 삼화강업노동조합
12월 6일 라상생활노동조합 11일 코리아스파이서 노동조합

13일 고니정밀 노동조합 14일 삼산공업노동조합

연맹간부서 주요 활동

송부부 농아전설대의원교육지원
회계회계실무교육실시
조직부 : 한국조합원육지원 삼화강업 조합원 교육지원
중앙지역본부 교육지원
대구 · 경북지역본부 교육지원
코리아스파이서 교육지원
충북지역대표자 (산별세미나)강의

노사대책부 : 자동차부품업 세포원회
임금조사서 분석 임부 지침 초안 작성

교육부 강사양성교육(7차)

여성부 : 여성간부교육 한국중전 교육시원
여성위원장회의
남녀평전교육지원
고용조정위원회 선정

국제부 : 한 · 일 고위회담, FKMTU NEWS 기획일준비
아시아공회국 방문단 연노련 방문

조합원 소식

조합동정 및 연맹 부서활동

그에 그에의 임시 발한이며 속출적으로 일치리를 하는 것은 이일연지

11월 8일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대회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대회와 비슷하였다. 대회에 참석한 나라는 한국, 일본, 싱가폴 3개국이었다. 김밥선 부위원장님의 국제간의 연대활동의 중요성과 남녀고용평등의 2가지면에서도 핵심사항의 지적과 거대한 상당한 활동은 있었다.

세부거간들한 회의를 R.O.C.C 위원장과 전 위원장의 소대로 고통과 대응을 받는이에 나갔다. 일상들에 11월15일 대오에서 기념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11월12일 중화민국의 국부 손문선생의 탄신일한 관계로 연도위원 회부 기간이라 기념제 방문은 취소되어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외의 기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입장을 인해 나아간다고 한다.

속 소규모기업 여럿을 하나의 협동조합 체계로 뭉어 모든 시설자본 및 기술 지원을 하여주고 그 소기업이 여노성도 상품 되었을때 투자 자본을 조금씩 회수하기 때문에 큰 여러음업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다 보니 소규모 회사로 전문화가 이루어져 오늘날의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일거름이 되었다 한다.

그러나 내가 본 문제점은 그 소기업이 거의 하청업에 불가하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남는것 같다. 그 전문화 되어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대기업 육성 도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곳 대만도 거의 일본기업의 하청업자에 불과한 느낌이 드는것과 나의 가슴속에 일본기업의 부러움과 시샘이 한세 여우러 서 느껴지고 나서이다. 박물관에 들어서서 청동기 문화재는커 녕 모두에게 보여대는 자성의 소리일까?

전국금속노련 60만 조합원 여러분!

허정자와 제일 말들을 잊한을 부은 소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근성인 끈기와 노력으로 다시한번 슬픈하기위한 종도방을 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자기반성과 그만일을 바탕으로한 일은만 있다면 우리나라도 부역 흑자국은 물론 세계 열강의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기간들인이었으나 이번 대만 방문기가를 통하여 많은것을 보고 듣고 느낀것을 저흔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누에것이 발자 최었다니다.

금속연맹 60만 조합원 의 이팔 !

1991 11 18

92년 주요사업
조직확대 및 임상화
교육 집무 강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산업 재해 추방
정치 집무 전개
조합원 근로조건개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박인상
편집인 : 최용길
인쇄인 : 서인석

금속노련

우편번호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금속노련회관)
전화 864-2001, 864-1503
FAX 864-0457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등록일 : 1974년 1월 22일 등록번호 : 마-370호

올 최저 생계비 1,459,105원

5인기준, 올 임금인상 20%이상 안되면 생활어려워

한국노총에서 조사한 도시근로자의 92년 최저생계비가 5인가족 기준 1,459,105원으로 산출되었다. 지난해 12월 10일 부터 15일 까지 전국 52개도시에서 공단 또는 공장밀집지역에 있는 시장의 물가를 조사하여 가격자료로 참고, 6대도시의 물가만을 제외한 이번 조사대상 총 품목수는 317개로 식품 85, 가구및 섬기 41, 피복및 신발 102, 보건위생및 감화 65, 교과서 12, 교양오락 6개 등 이었다.

이번 조사는 노동자의 본부 지역본부간부가 실시하였고, 가격거문은 실시구에가격으로 수퍼 마켓이나 할인에상은 취득적으로 제외하였다. 또한 조사된 가격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쓸가 조사등과 비교검토하여 그 나당상을 결정하였다.

각 가구모델별 생계비는 1인남자 425,836원 여자 426,722원 2인가족 683,814원, 3인가족 852,100원, 4인가족 1,113,852원, 5인가족 1,459,105원 등 이었다.

이는 작년대비 평균28% 인상된 금액으로 그 평산의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92년 최저임금이 209,050원으로 잠정결정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최저생계비는 이제도 노시근로자의 대다수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번 최저생계비 산출로 정부가 92년 임금인상을 거의 통과하였다는 외도는 노동자법의 실준권을 취해하여 경제위기를 국복해 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총선거로 인한 민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이 생계비는 더욱 인상된 것이다. 동독당국의 예측에 의하여 올해 92년 1/4분기에 와 2조원의 돈이 풀린다는 것은 최소한의 계산이다. 더욱 28%의 통화팽창에 임금인상이 최소한 20%이상 되지않을 경우 노시근로자의 생활은 극도로 피폐화 할 전망이다.

포항지역본부결성

포항금속노조의 확고한 구심체

본노련 포항지역본부가, 지난 11월 23일 포항시 대도동 사회복지회관에서 결성되었다.

포항지역의 특성과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에서 분리되어 결성된 포항지역 본부는 초대 위원장으로 부산파이프 노조 위원장 박종부 동지를 선출하였다.

이번 포항지역본부의 출범은 금속노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포항지역에서 강력한 구심체가 없이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속해있어 지역노조연대가 어렵다는 인식에 뿌리하여진 것이다.

한편 포항지역본부의 출범으로 포항지역 금속노조의 확고한 연대를 이룰 수 있는 구심체가 건설되었으며 이 상황같은 단결로 여태한 노동탄압에도 굴함없이 자주,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진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포항지역본부의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종부(부산파이프노조)
부위원장 정홍근(대우전자노조)
강학중(삼영기계노조)
신병현(삼광강재노조)
회계감사 김준규(포항제철노조)
정병연(삼화금속노조)
사무국장 서상일(한국비료노조)
기획국장 이해상(대우정밀노조)
노선대표 정종식(강원산업노조)
조직국장 이두동(대양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납품부품업체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 현대자동차 납품 부품업체 노동조합 대표자회의가 1월 17일 오후 1시 중산노동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현대금속업체 노동조합 대표자 74명과 전년명 노건귀노사대책국장, 이진우조직국장, 김경조 대구경북지역본부의장등이 참가한 가운에 열린 이번 회의는 현대자동차 분규로 남품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진행은 분규에 따른 각 지역의 사정과 그 대책, 경의문제에 손으로 진행되었다.

부품업체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현대자동차 남품부품업체 노동조합 대표자 임종열의 경의문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성과급 투쟁의 성패는 92임투승리의 시금석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전제한 후, 현대자동차의 경부는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상의 위기를 직시하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분쟁의 해결을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돌리려는 정부·회사·언론을 비판한 위 경부의 금융해부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번회의는 모기업과 남품업체의 결합등 계약과 모기업의 일방에 조직화도 또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특별지원에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임투지원 교육실시

공동임투 적극지도

본노련 노사대책부에서는 1월 22일 부터 각 지역별로 '92임금인상투쟁을 위한 교육에 들어간다.

정부의 한자리 수 임금인상, 총액임금제 도입 등 임금인상 억제지침과 물가폭등, 악성경제위기를 노동자의 희생에 국복하려는 노리로 92년 임금인상투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임금교섭력 증등을 지원하기 위해 '92임금인상 요구방안, 임금교섭의 기법, 정치관련에 해설 등이 다뤄 진다.

한편 본노련은 92년 임금인상투쟁에서 정부의 자본가의 탄압과 공세를 국복하고 '92임투승리를 위해 지역별, 업종별 공동임투를 적극 지원 지원할 계획이다.

제104차 중앙위원회 및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의 개최

본노련 제104차 중앙위원회 및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가 1월 21일 오후 3시 연맹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노련 박인상위원장 연두순방시작

본노련 박인상위원장의 지역연두순방이 1월 17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실시되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노동조합의 고충과 연맹의 신년활동등을 총합하여 노조대표자와의 대화로 굳은 단결과 연대를 도모하는 이번 순방은 정부와 자본가의 노동탄압 대비에 맞서 본연맹으로 응단결, 금속노동자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92임투에서 공동대응하고 조직강화를 위한 이번 연두순방은 이 를 이지막으로 끝난다.

금년의 연두순방은 정부와 자본자의 제도화, 이념적 공세에 대응하여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조직력 강화를 위한 단결이 더욱 요구되는데 이는 만큼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

서울지역본부 대의원 대회

본노련 서울지역본부(위경 강규석 기아특수산업 노조위원장) 정기대의원대회가 1월17일 11시 연맹 강당에서 열렸다.

42명의 대의원과 내외빈이 참석하여 이번 대회는 서울지역본부의 지난 1년을 마무리하고 신년계획을 수립하는 자리로 규약개정 및 예결산 심의 임원개편 등이 있었다.

대회사에서 강규석의장은 '지난 일년을 겪어이 만성하고 92년을 힘있고 일차게 시작해 전체 노동자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본부가 되자'고 역설하였다.

한편 내외빈으로는 본노련 박인상 위원장과 여대 서울지역본부 의장,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각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노총·현대그룹 대표자회의

지난 12월 28일 울산호텔 회의실에서 노총, 본노련, 현합노련, 본노련 울산지역 본부간부와 현대그룹 노동조합대표자의 도표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도표회에서 '노동조합 전반에 관한 현노련에서는 김정선부위원장, 이진우조직국장, 노선대노사대책국장, 하명수한전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현대그룹 노동조합에서는 현충현의장 직무대행인 김인영 현대 중합목재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의 조합간부가 참석하였다.

성 명 서

작금의 정부 대도·특히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정부 태도에 대한

오늘의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하급을 치솟는 물가로 우리 노동자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소득사업의 한다수 재벌은 부정 정체온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사업

주장

기로에 서있는 '92임투 - 공투체제 확립하여 상황을 역전시키자 !

'92임투가 눈앞에 바로 다가섰다. 우리 들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에 대한 도전은 생사갈단을 내려는 외지오 가득찼고 보수언합세력은 여국을 내걸면서 총단결로 공격해오고 있다. 이들의 선전은 이렇다.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 동남아 저임금국가들이 바짝 추격해오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너무 일을 안하고 거기다 노동쟁의가 너무 많을 것이다 노동쟁의가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부언가를 치키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경제위기는 노동자들 때문이고 따라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노동자들 아랑대로 부려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선전을 배경으로해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력 감당을 늘리고 노동의욕을 고조시킬 임금체계를 입법해 오려고 감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총력임금제의 기획에 대 고임금자의 임금을 억제, 특별이윤을 보장해주고 전반적 임금을 억제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나아이 치솟고 있는 물가는 우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더 갉아먹고 있는 상태이며 정부는 산업재해예록 폐 화대, 외국인노동자 수입, 파트타임제 등 노동력공급증대를 감구하고 있으며 30분 입더하기문제, 직능급도입등을 통한 노동유동고혈책을 감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변형시간제도 도입, 정리해고요건완화등의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 정리해고요건 완화의 문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시사점과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다 그 중한 지니치게 자본의주 였던 노동법정을 나름대로 건제해온 법정이 노동단안의 김을 열어주기 시작했다는 취이다 이것은 자년11월 대우조선건에 대한 판결과 비슷 같이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마산지법은 노동운동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다는 명시적 목적 아래서 원심보다 성을 높여 선고했다. 당시 한국노총은 항의성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비원심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정부, 국회, 언론등 3개의 중추기관 모두가 노동단안에 가담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제안한 대비원상을 거부한 바 있었지만 현재의 대비원상은 3당이합의 국회에서 70여명이 반대한 가우데 대통령 의도대로 통한 사 항이다. 대법원장이 고백한 당시 과연 현재의 대법원장체제하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여론도 있었다. 우리는 현재의 대비원상이 어떤 인물인지 또 임계 대법원상이 변화의 태도에 어느정도 영향 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최근의 언론의 태도를 볼때 법원의 민주화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 그리고 법원의 민주화를 위해 차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잘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확연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체임소세를 가리기에 앞서서 정리해고요건완화가 갖는 심각성을 예측김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리해고는 노동력 감당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이 있지만 노동조합 파괴 및 투쟁의 를 이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이미 경험으로 투영된 보여준 바 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임금을 얼마 올리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이 배문에 정소에 대법원 판례도 무시해 왔던 노동부가 이번에는 혹시 대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지침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 자체한 3가지 정책, 즉 임금억제 정책, 노동력공급증대 정책, 노동의욕고취정책은 모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한 정책이다 한국경총도 미년도 임금인상에 대한 분석에서 노동력부족을 예소하지 않는한 임금억제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리해고등 고용정책은 눈에 보이는 임금억제정책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투쟁도 장단기정책과 수단을 가지고 수행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단결된 투쟁이며 정치적 민주화의 쟁취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92년도 임투를 맞이하여 우리 금속노련은 지역별 공동투쟁 지침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별로 분산된 투쟁가치고는 벽에 가 붙기때문에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투쟁을 통해서 전노동자의 투쟁의 기반이 형성되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투쟁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공동투쟁이 살아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노동자들의 이기심과 정부, 자본측의 분열공작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알아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공동으로 쉬리해갈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공동투쟁이 즉시부터 이뤄져야 한다. 어것만이 난기류속의 '92임투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다. 92년 임투. 이것은 노동조합의 살고 죽는 문제와 같은 관련이 있음을 명심하자.

지역본부의장 신년사

조합원단결로 어려움 극복

서울 강규석의장

전국금속노동조합 40만 조합원 여러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뤄지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모두들 지난해는 다사다난 했다고 하지만 처음 노동운동계는 다난하기만 했던 해였습니다.

금자스런 주체감 특등으로 인한 조합원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과 더불어 놀은 을 모르고 허여로운 몸가록 등은 여한을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여없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적 특혜난무로 인한 폐단, 각 언론매체에서는 정부와 경제단국을 노동자에게 돌림으로써 더욱 진일보한 해결된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수록 하나가 되어야 할 노동운동계가 그렇지 못하므로써 우리의 힘이 분산되어 노동운동 단 앞에 최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침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서울지역에서는 분산되어있는 조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부 찾기에 급급하여 대의를 저버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합원 높지들은 임신년 새해를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였으나 노동운동계에는 한없이 침중할 것이 예상되고 더욱서거운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어 자년 한해보다 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단결만이 살길입니다. 올해 여러분 단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된 우리있 힘만이 침체된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이 앞장서서 노동운동의 꽃길, 단결에 기여하면서 조합원의 권익을 보와 지원계선을 위하여 더욱더 매진합시다.

확고한 가치관과 인내심으로 실천 행동하는 한해를

충남 김두형의장

동지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존경하는 동지들이 몸같이 많이 몸맡은 한해가 흐르고 또다시 희망에 찬 임신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92년도 노동운동은 우리들의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전개되고 더불어 사회의 혼탁과 경제의 어려움을 예고 하고 있읍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우리들 지들의 굳건 단결력과 부재으로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값이 좋으면 다팔다 "민 밥도 있듯이 우리동지들의 행복한 추준과 확고한 가치관을 실천하고 평등으로 말하하고 참고 양보주는 근신한 인내심을 기업을 바탕으로 이해를 위한 단결 원이야 합겠습니다. 끝으로 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하는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노동운동의 핵심자각 노동탄압에 의연히 대처

부산 박기식의장

우리 모두에게 광과 희망의 실현을 위해 여한을 노력이 요구되는 임신년을 맞이하여 동지여러분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해를 배웠usd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인물과 심단들은 지난날의 아쉬움과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새롭이 맞이한 지혜적인 관용이를 공감 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난해의 계획보다 잘못된 일들을 분석과 반성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 역시의 한면으로 정리된 임년을 조명해 보면 말그대로 다사다난한 한했었지만 노동운동을 둘러싼 국제적 지위향상은 EC가입으로 가시화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라안의 사정은 좋진국에 걸맞지 않는 노동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는 노동조합 합법에 대하여 지나친 공권력 남용과 버무니 없이 구시대로 회귀하려는 노동 관계법 개악 책동과 그리고 법률적으로 3자인 정부가 경제 정책 수행이 아니라 구체적 임무에 개입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본측은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하하지 못한채 민주주의의 근간인 노동운동을 경시하고 적대시하여 블랙리스트를 보유하는가 하면 부당 노동행위를 가속화하고 근로조건 저하에 원인이 되어 산업평화와 노사화합은 안중에도 없이 경직된 노사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존경이 임신년 새해인사와 더불어 전국금속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 확립해야

대구 · 경북 김경조의장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임신년동지들의 뜨거운 합성으로 맞이 종말한 91년도 정신없이 지나가고 이제 또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에 차이할 년초부터 우리들의 주변은 임신년 고되의 길한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용자는 경제의 위기를 우리들의 책임만을 자년 말부터 허리어 버우는가 하면 투노동 투쟁금 운운하여 이제는 30분 입더하기만 연변소련구호를 내걸고 우리 노동자들을 핍지순할수로 만들고자 투노동 투입금의 새로운 쉬쉬론을 전개하는 이런 상황속에서 과연 우리가 투옷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연저 상자하고 그 다음은 구호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동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리서 우리는 지난해에 미전별면 일들을 냉정히 반성하고 보완계선하여 경제의 어려움도 우리의 탓은 아닐지언정 같이 극상하여 한편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가일층 높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단위노조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본부는 연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 일치고 내심인는 조직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삼되면 내 탓이요,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여야 할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 나가면서 가장 손쉬운 것부터 실천 할 수있는 92년이 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금속 만평

조합원 간부 혼연일체 노동탄압 분쇄

경남 제선수의장 ·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먼저 동지들의 건강과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가 가고 새로운 한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에 가득차야할 새해가 연초부터 우리 노동형제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가의 노동탄압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이념공세의 제도폐쇄적 또 92년 임투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물가폭등과 경제위기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모든 어려움속에서도 굳게 단결함으로써 이러한 난관을 국복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경남지역본부도 조합원과 간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살든권을 쟁취하는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지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신년인사에 대신합니다.

단결된 조직으로 큰힘을 가지자

전남 · 광주 정기춘의장

임년도 지난 북은해는 최선을 다한, 후회없는 해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노동법 개악저지 및 임투, 단투 등 각종 사업에서 굵나아어유을 남긴채 92년을 맞이하면서 불가항력 또는 타인과 비교하여 해임전가 하는 열악함이나 어리석음을 보이지나 않았을까?

92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자신이 능력과 노력에 최선의 힘써를 일으키면서 지노보를 새롭게하고 한된 노동운동의 김보 전진하면서 조합과 조합원, 지역과 연맹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연대하고 상속한 조직으로 단결하여 목표를 향해 시오를 세웁게 하고 큰힘 주는 조직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서로가 이해하고 믿음속에서 개혁하여 이뤄를 같이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협행의 조직으로 나가 조합원과 간부 조직이 되기 위하여 모두 공감하고 단결하고 지역과 연맹 노동으로 목표를 향해 힘찬 발걸음 전진합시다.

아무도록 92임신년은 내맞이 요는 해입니다 요라는 해입의 시오로 한을위의 시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국의 조직과 조합원의 단결한 힘만이 불시일의 건강 및 가치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금속노련의 위상 더욱 높아지는 한해가 되길

경기 하영일의장

그동안 금속연련 역사회 사건들로 지구촌이 놀라고 흔들렸던이 부러지고 뉘뚝이 화해부드로가고 남은건 경제우선이 국가의 상해결 결정지우는 그때서 산업연구원 여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그런해가 되었습니다

김들고 어려워도 여사회가야 그리고 넘어야만 노와의해가 밝았습니다. 내시으로 상처받던 내권싸움, 유보된 분배를 위한 노사의싸움, 그때서 모든 상처 · 시비 · 경제 모두가 상처나고 부러져서 부해이 최안에 유실 상처받고 모두가 한께 시달다고 고시고 해야한 시 자해지의 자세를 갖출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92년을 맞이하면서 바라는 희망이라면 첫째, 정치와 선거의해가 모는 조직에 지역한상을 타파하고 계승간 정립등이 사라지고 그늘진곳에 빛을주는 그런 입해가 되길바라고 둘째, 해노키 위한 등어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된 노동깃발 아래 해쳐모이는해 입으로 이런 협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해 그런해가 됐으면 합니다.

· 셋째, 단위 조합이 입기 전 산별단결서가 최부분을 내세이들이고 해노하고 의 노동단결, 조직은 과감히 간판내리고 인준서를 반납하는 그런 자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스스로실수입다하여 일가치욕 희면하고 국가 세워준 내면서 구속력 없다고 조직세금 안내는 그런 용 법하에서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넷째, 지도부가 등어나 세갈론에 주춤거리고 불은 일에 취죽하는 그때서 비겁해지는 그런지도부가 아닌 하실하고 용감한 방향으로 동지들을 이끌어 줄모만입니다. 이모로써 금속노동자가 한국경제를 이끌어가고 그때서 금속노련의 위상이 더욱 높이지는 그런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합원모두가 참여하는 지역본부를

충북 김홍수의장

금속 노동자 동지 여러분!

공안내지에 의해 명년에 계속되는 임금인상 한 자리수 가이드라인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 및 이피트 부양가 인상등 물가인상 압표가 우리 노동자들이 92년 노동운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있는 가운데에서도 임신년 새해는 예년과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우리 남북연방 통폐지에 본부는 지난 12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새해를 맞이 되어 해부 뚜껑은 새출발이 된것 같습니다. 그간 충북지역본부는 지역본부 사회의 제정책 여러분과 집행부 공세 그리고 소속사업장의 대부분인 여러분이 겪의 지역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신년에는 선진적 노동운동을 하고있는 타 지역본부와의 힘쌓한 교류를 통하여 많은 을은경을 배우고 참고로 삼아 충북지역본부 소속 사업장간의 유대강화 및 활동표지 본만이 아닌 조합간부 더 나아가서는 조합원까지도 참여하는 지역본부 그리고 연맹과 소속사업장의 고양력함을 충분히 수행하는 지역본부가 되도록 제 정지방을 위한 일반 모색과 일상활동을 통한 단결력 강화에 주력 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우리 금속노동자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한 새해,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3면 으로계속)

「정리해고 요건강화 지침」 문제 많다!

노동부는 92년 1월 6일 노동계와는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기업사정으로 인한 해고 요건 보완 이라는 문건을 통해 정리해고요건 완화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91년 12월 10일 동부화학의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른 것인데, 노동부는 종래의 판례와 (대판 88다카 3409, 90. 1. 12) 신판례 사이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해고요건을 새 판례에 따라 조정 보완할 수 있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정리해고요건 완화 해석은 92년들어 수출경쟁력악화와 물가폭등등 경제위기 심화로 노동자 임금인상을 억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와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을 초기에 막고 노동조합을 회피하려는 간악한 음모이다. 즉 노동조합 활동에 최대적인 조합간부 및 조합원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리해고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대법원 판결요지 및 노동부지침 변경의 주요내용, 외국의 임어인력정리해고 실례, 노동부지침 변경의 영향, 노동계의 대응등에 대해 알아본다

1. 대법원 판결요지 및 노동부지침의 내용

지난 91년 12월 10일 대법원 제1부는 동부화학 해고자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등에 대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경영상황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임시로직 및 희망퇴직자의 활용, 자산매각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넷째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그 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것이 요구 된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중 첫째요건인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조치가 영업 상태의 악화 이나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일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격려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주어야 함이 타당하다 .

그러나 대법원은 동한결에서 동부그룹이 동부석유주식회사(구영일화학)를 인수할시 임직원의 신분보장을 약정한 것은 승계를 보장하는 것일뿐 승계 이후 일정기간 정당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근거로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업무처리상 해고의 사유에 있어 기존의 "감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법원이 판시한 "경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인원삭감이 격려적으로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힐 때"를 추가하였다.

2. 외국의 임어인력의 정리해고에 대한 예

그러면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외국의 경우 임어인력의 정리해고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 계획 협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리해고시 노동자의 실손과 제취업을 기업에서 보장하여 하고있다. 대표적인 외국의 사례를 알아본다.

1) 일국

고용보호법 : 10명 이상을 90일 이상 해고시 90일전, 10명 이상을 30일 이상 임시해고시 60일 이전에 노동조합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또한 해고통지 시기는 3주간 고용되었던 자는 1주일, 2년근속자는 2주, 2년이상자는 근속 매 1년마다 1주일을 추가하되 최고 12주를 한도로 한다.

투쟁하고 및 노동탄압에 반대하는 사위를 하고 있는 구로공단 금속노동자들

임어인원해고법 : 해고에 따른 일시금 지급

18-22세인 자는 근속년수 1년마다 1주일분의 급료, 41-65세인 자는 해근속년수마다 1.5주의 급료를 지급하되 20주간을 최고한도로 하며, 일시금은 주당 최저 100파운드 최고 3,000파운드로 제한한다.

2) 프랑스

민영 기업내의 종업원위원회(workers Council)와 사전협의 후에 행정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네덜란드

임어인원해고는 자방고용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고예고 기간은 최고 26주이며, 합병이나 공장폐쇄시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회사노동자에게 새로운 회사라나, 제해지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같은 사항이 실천되지 않을 경우 합병은 취소된다

4) 독일

노동재판소는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을 검토하며, 임어인원해고시 경영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고예고 기간은 5년 이상자는 3개, 8년 이상자는 4개, 10년 이상자는 5개, 12년 이상자는 6개, 15년 이상자는 9개이다

5) 스웨덴

고용안전법상 사용자는 고용감축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재판소가 임어인원 해고를 무효로 판정하면 기업은 해고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노동부 지침 변경의 영향

이러한 노동부의 지침변경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기술 도입 · 생산성 향상등을 이유로한 집단적인 정리해고 건수가 예상되며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대량해고가 급등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경영 사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수 있는 경영상의 일시적 애로등 이유로한 정리해고가 만일발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의 무력화로 생존권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또한 정리해고를 틀어한 노사분규가 급증하게 되며 정리해고를 "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려는 부당 노동행위 급증과 해고 위협을 통한 임금억제 등 노동탄압이 가중될 것이다.

4. 노동계 대응방안

이상과같이 임어인 결과 노동부의 정리해고 지침변경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의 희생을 통해 극복하고 IMF기업 · 각종 선거에 따른 노동자의 정치적 희생을 막아보겠다는 제도적 음모이다. 이제 우린 노동계가 해고요건 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려보면 먼저 대정부 및 사업장들을 전개하는 것이다

노동"" 지침의 원상회복을 위한 조직적 압동을 전개하고 행정지침의 상위인인 근로기준법, 단체협약과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사법부 상을 전개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고관련 지침 개선을 위한 활동 및 단협보완을 위한 각 교섭의 활동이 있다.

경영합리화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명려하게 규정하여 악용 소지를 배제하고 정리해고와 정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사전심사 실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또 정리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 직업재훈련 실시, 시간단축의 입수적 규정을 추가하고 정리해고시 노조가 있는 경우 이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의무화 하며 부당한 정리해고로 사법기관에 의해 판단될 경우 해고기간동 미지급된 임금 이외에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의 6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정리해고된자는 당해 기업의 신규채용시 우선으로 고용될 권리를 상도록함과 동시에 정리해고시 해고수당과는 별도로 정리해고수당 지급을 의무화 하여 실업에 대한 종합대책인 고용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강철서신
단결투쟁!
비 - 익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지역본부를 가다(5)

—포항지역본부

지난 91년 11월 23일 포항지역 본부가 신설 되었다.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지역 확대실을 고려,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위하여 창신된 포항지역본부 초대 허용부 외장을 만나 활동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초대 지역본부위원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며 먼저 지역본부 현황은?

◆지난 3년간 지역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거리가 멀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이로인한 상황 속에서 출범되는 현대의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것이 각 노조위원장들의 전폭 모임인 금속회를 2월에 조직, 8월부터 상그난체 구성 준비를 해왔다. 대구·경북지역본부의 리경조 외장과 박인상 허원장의 농의와 조합원 의견수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직현황은?

◆조합수 34개에 조합원이 12,000~45,000가량이다.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이며 상근자는 외장, 총무부장, 교선부장, 조직부장 등 4명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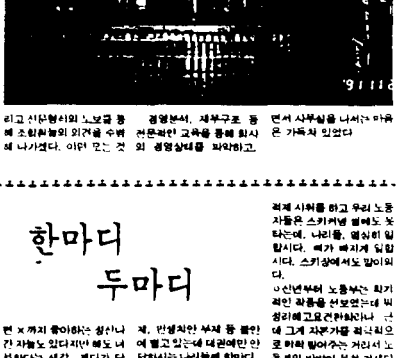

◆출범사업은?

◆호기이기 때문에 조직강화가 급선무다.

간담회사업 통해 조합원의 농장을 유도하고 교육사업을 강화해서 지역본부의 자리가 본격화에 서, 것이 초대외장의 임무라 생각한다.

우 홍보선전을 강화하면 대 지역본부에 소식지를 수시로 발행, 활동을 넓리 알리고 산업현장의 노보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이런 모든 것은 노조 부장 사장과 활동 실시, 대 나보사업(강화, 조합원과 함께하는 지역 소식 만들기 등) 가능할 것이다.

◆월 업무 계획은?

◆먼저 임무에 필요한 교육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런 지시내사한 교육없이 전형했던 임무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

우리조합노보

그리운 동지여!

부국산업 노동조합

(시)

불꽃이 불꽃이되어
횃불로 타오르는
너 작은 가슴으로
노동자의 눈물로 허물질수 있는
한줄기 투쟁으로 서던날
이것이 시작과 끝으로 하나되어
태인도 움직여져 허물듯 허물듯
허져허물듯이
메아리로 선해 오는
민주여!
자유여!
이루지 못한 노동자의 해방이여!
그리운 동지여!
젖은자는 비를 두려워 하지않느니
젖은자는 비를 두려워 하지않느니
우리 다시 빈 손으로 일어서는
노동자 천국으로
메아리가 울린다.
메아리가 울려 퍼져 흐른다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메아리가 메아리가
메아리서 메아리서
태인도 움직위로
메아리서 흐른다
그리운 동지여!

〈흘르는세월〉

현행 각부서 주요활동

총무부
회계처리 실무교육실시
임원 및 지역본부장회의 주소록 고정 및 제작

조직부
신별 조직담당자회의 참가
오리표 조합원 교육지원
조직현황 현산처리 순이
부산지역본부조직 지도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지원인장제도론회 참석
농회산업조합원 교육지원

노사대책부
'92임투지침 발행
사용자 부품업체보론회
법률부록제작
임투지원교육 교재제작
실태조사서 접수 및 분류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자 현인모제 도론회 참석
이시아 자동차노동조합교육
임투교육 임투지침발송

교육부
경동산업노동조합교육지원
대동기업노동조합교육지원
영창악기노동조합교육지원
강원산업노동조합교육지원
경남지역본부교육지원지원
이시아 자동차노동조합교육
임투지원교육 한국전자노동조합교육지원

여성부
동아건설노동조합교육지원
백은전자대의원 대회참가

국제부
FKMTU NEWS발송
IMF중앙위원회 국가보고 작성 및 발송
노총국제활동 담당자회의 참가
IMF실문지 답신발송
KIDR대한 연구단 신설접수
제21회 IMF동아시아 정부인실조지를 국가보고서 작성
FMU정기대회 참석자 김광선 부위원장출국 (1/23)

한마디 두마디

○노동부는 올해부터 임금구조개선과 노동력확보를 위해 출력임금제와 시간제 근로를 병행시도를 통해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표. 노동계에서는 허위 허업을 위해 기존 고의 비율을 낮이고 근로조건개선과 생산성 임금수준을 높이라고 밝혀 되게 주장했는데, 1500만 노동자들의 소리는 못놓은 세 이고 기관차 경영의 소리! 전격수용, 8천 기세는 계 쳔이니까.

○ 년초 만나라 대통령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 한바탕하고 갔는데, 전부다 개같다고 아세 국민의 시달만 받까 시 개같다라고 했다는데, 하긴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못하는 지경이고 외려라면 x까지 좋아하는 참신나간 자들노 있다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게다가 당당히 합계발부대라고 밝표하고 힘없이 여겼다는 나라놈을 보면 이번 달이 비율대 빡고 빡고 고이면 뭐까지 해 주지.

○ 건설 선거년 벌써부터 온 나가가 들떠있었는데 1/4 분기만도 와 조용이 넘쳐거리고 통일국은 예년 임금은 동결, 동결은 동결. 이 속에서 죽어나는건 우리 노동자들 뿐이란 국민들, 자! 우리 선거에서 보여줄 시다. 국민 우롱하고 눈속임으로 정권 잡으려 하는 자들이 얼보가 어떠한가를

대에 대권, 대권이 뭐지, 국민들은 잘가르는, 정책위제, 민생직한 부제 등 불만에 빠져있는데 대권에만 안달하는 나라놈에 한마디.

"나라놈 신사국 좀 그만 드시오. 대권은 국민이 주는 것이지 나라놈 꺼리 나눠 먹는 것이 아니요!"

○ 우리나라 서비스직 임금이 생산직의 약 2배 된다는데, 솔직임금제, 시간제로 비월지라시고 생산직임금에 연동을 요시지, 이제나 생산직에 노동력이 부족한건 당연 나라를 갑으면 이런데도 생산직에 임하겠소? 아마 죽어도 서비스직으로 가려할걸.

○ 자본영 신년호 연휴에 스키장에 몰린 인파가 삼만명이 넘었대니 놀만할은 신년 벽두부터 실기 위한 경제 시위를 하고 우리 노동자들은 스키커녕 밥에도 못타는데, 나라를 염심히 일합시다. 뭐가 빠지게 일합시다. 스키장에서도 많이와 다.

○ 신년부터 노동부는 최기적인 작품을 선보였는데 뭐 정리해고요건화하다니 근데 그게 자본가를 격려하고 로 하려 밀어주는 거라서 노동계의 반발이 부쉬 거세다는데, 내용인 속은, 자본가 많은고 노동조합원을 결심해 6천 조합원은 가시업이 해고할 수 있대니 나라놈 제발 정신 좀 차리세 그렇게 하다고 노동조합이 무하로 벗어 길 것 같으세. 국민의 입 아픈고 정치한정 마음대로 해는 나라놈 가시 없이 해고할 수 있는 법으 뭐 없나?

○ 한많이 너무나 많다. 하 충남 성도다. 올해에는 꼭 얼마나 일을 해야 하지. 한 발없이 역적의 일만 할 수 있는 해가 언젠지 쯧쯧.

지역본부 및 단위조합소식

정기대의원대회
12/21 금성사노동조합 청주지부
12/26 포철금속 노동조합
12/28 부산화이트노동조합
1/15 한미노동조합
1/17 백은전자노동조합 정신전기노동조합
1/21 금성일렉트론노동조합
1/22 경화산업노동조합

정기총회
1/ 8 심원금속노동조합
1/18 경남금속노동조합 한일기계노동조합 삼륙강업노동조합

교육
12/18 대한제당노동조합을 산지부

선거
12/18 대림공업노동조합연합지부 공무근전지부장 당선
1/ 4 풍림의료장병 노동조합 김면희전위원장당선

기타
12/14 한국경금속 노동조합 현한식
12/20 현대공업노동조합
12/19 영창산업노동조합연합 밤을두이웃등기 사진전시회
1/ 6 충북지역본부회계감사실시
경남지역본부노보 편집실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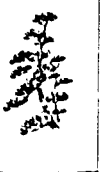

'92임금인상 활동을 위한 교육계획

정부와 자본가, 외노동계 개악기도가 선거를 위시한 소치인데노와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무산시키고, 에노동부에서 임금지도 지침을 통하여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수당과 동결연비 지고 있다.

이는 현시의 임금체계가 기본급 상여가 전출수당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별, 규모별, 업종별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하겠다 것이다. '92년 임금인상을 앞두고 대선거를 치르게되어 불가피한 경기경제위기설들으로 기업의 정리해고 위해, 한자릿수 임금인상을 위해 공권력도 과감하게 투입할것이라고 예상되고있어 '92임투 분위기를 어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극복하고 임투교육으로 단위조합의 임투승리를 위해 다소나마 노력을 주고자 한다.

◆ 임투교육 참석시 준비사항

교 재 비 : 1인당 5,000원(교재 및 사무용품비)
교육시간 : 매일(토, 일)시에 시간당 수 : 12 30시까지 원상한도
인원동원 : 교육이 실시되는 지역본부의 교육담당자 및 상급급 상위의 홍보아래 인원동원에 사실이 없도록하.

◆교육일정 및 장소

지 역	일 자	지 역 구 분	장 소
서울, 인천	1월 22일	서울, 인천	노총강당(여의도)
충청, 전라	1월 23일	충남, 북, 전남, 북	충남지역본부강당
경 기	1월 27일	성남, 경기, 부천, 안산	경기지역본부강당
부산, 울산	1월 28일	부산, 울산	부산지역본부강당
경 북	1월 29일	경북, 대구, 포항, 구미	경북지역본부강당
경 남	2월 7일	창원, 진주, 양산	경남지역본부강당

◆교육시간 및 강의

교 시	시 간	내 용
1 교시	13 00-14 30	'92임금 교섭을 놓아본 현안문제
	14 30 14 40	휴식 (10분)
2 교시	14 40 16 10	'92임금교섭 어떻게 할것인가
	16 10 16 20	휴식 (10분)
3 교시	16 20 17 50	노동정책에 따른 법개정에

92년 중점사업
조직부활의 실상화와 교육 활동 강화
부당 노동행위 근절
산업 재해 추방
정치 집회 진개
조합원 근로조건개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박인상
편집인 : 최용일
편집인 : 서인석

금속신보

주민번호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금속노련회관)
전화 864-2301 864 1503
FAX 864-0457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등록일 : 1974년 1월 22일 등록번호 : 마-3708호

미래동

'92임투 승리하자!

정부·자본의 인상억제 논리 공동·연대투쟁으로 대응해야

정부와 경제위기노동자 제인(본)이 겉엔 임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2월 12일 한국노총대강당에서 열린 '노사관계 사회협의회 형성회의'는 이미 노사관계에 최고책으로 개인 임장서으로 노동자의 임금인상억제를 관철하려는 형상화는데 성공한 정부의 자신감표현이었다.

지난달 5대 10%대이기은 등, 정리해고 요건 완화지침, 총액임금제 노입, 시간제근로 도입, 외국인력수입 등 경제위기와 관련된 최인은 해결나지 하지 않은채 미봉책이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들도 임금인상억제를 관철하려는 정부와 사용자들은 자년들어 그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여 92년 임금인상투쟁을 초기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서 보여지듯이 자본측은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타협을 유도, 결국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기도하였고 정부는 임금인상투쟁의 선도사례임을 한수 있는 대기업 및 정부 들어 최초의 대형 임투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기 공권력투입이라는 강한 지방을 제시하였다.

이번도 노동자의 임금억제가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구속하에서 인위적고 노동측의 구체적이고 조직화된 동이 없이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2월 12일 이른바 사회협의회 형성이라는 명분하에 92임투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것이다.

92년 임투를 앞둔 정부와 자본의 내용은 이렇게 수도 적이고 세기적이다. 대통령까지 나와 경제위기를 운운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임투는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는 존립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와 자본 그리고 언론의 광대놀음에 놀아나는 것이다. 경제파탄과 실제 경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한국경제의 위기를 정치의 문제로 돌린다. 즉 정치의 부재라는 것이다. 또 고소득층의 불로소득과 소비는 부여계자와 외제품가에 임위를 담당하였고 생산자인 노동자와 중민중 폐인은 없다고 하는 외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는 임금인상투쟁의 절당성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파악과 대안을 함상 강력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과 언론의 임론노동조합의 주장을 폭발하는데 총론하였고 결국 정부와 자본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상황을 우리는 개속보으로 느껴 왔다.

경제위기와 불가피한, 노동 이의 생활피폐화로 당연히 제기되고 승리하여야 한 92년 임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하고 또 승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전국민이 특가족등의 폐임이 노동자의 임금인상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의 단결력을 발휘하여 공공임투를 진행하면 이번의 정당성은 물론 총자본과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결집력을 얻을 수 있다.

본노련은 지난 1월중 임투지원교육을 각 지역별로 실시하였고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정의지도요원교육을 실시하였다. 본노련의 '92임투 지침은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제도적 탄압을 물리치는데 주안점을 두고 경제위기 폐임이 정부정책부재와 독점자본의 기업투자회피 등에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임투와 정당성을 선전하여 국민과 공감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별, 본노련 공동임투로 정부와 자본의 임금억제공세를 격파한다는 것이다.

각 단위조합에서도 대국민 선전전과 조합원교육을 강화하고 동지여 동업종이 금개 단결하여 92년 임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또한 선거국면을 맞이하여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여 경제성장부재, 국민생존권을 무한하는 물가폭등 등을 배팅 붙여 선거가 임투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92임투, 어려고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하여 노동자의 실과 권리를 지켜 나가야 한다.

지난 1월중 각 지역별로 실시된 92임투교육

일본중기노련 20주년 본노련 박인상위원장 참가

전연맹 박인상위원장과 정책국부위원장이 2월 12일 출국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일본중기노련 2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17일 귀국하였다. 박위원장과 정부위원장은 13일 일본중기노련 세기회 동임위원회에 참석하고 14일 기념식에 참가 이후 리셉션을 가졌다. 일본중기노련은 IMF-JC 결 구성하는 산별조직의 하나로 89년 2월 현재 135,000명의 조직원을 가진 조직이다.

FMU정기대회 김장선부위원장 참관

본노련 김장선 부위원장은 1월28일부터 1월29일까지 개최되는 제16차 FMU (핀란드 금속노조) 정기대회를 참관하고 귀국하였다. 본노련과 FMU와의 유대강화와 친선도모를 위해 FMU에서 초청, 출국한 김장선 부위원장, FMU정기대회를 참관하고 핀란드 사업장을 방문 해외기의 노동조합 활동을 벌려본후 귀국하였다. FMU는 본노련과 지속적인 유대와 협조를 하고 있는 해 특히 강사 양성교육을 지원, 조합간부양성에 많은 노력을 주고 있다.

쟁의지도요원교육 '92임투지원대비

본노련에서는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동안 인천 노동교육원에서 정의지도요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국 각지역에서 43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92년 임투의 지구별 지도요원을 육성하고 지구별 상황보고 요원육성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특히 올해 임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이 주가 되었다.

교육일정은 현행의 '92임투지침, 부당노동행위 구제 한중 실무, 노동법의 사례발표, 노조의 단체협약과 부위원장, 소송진행법, 노동가 구호훈련, 경영분석 분임토의 및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본노련 김장선 수석부위원장은 귀국시에서 "올해 임투는 정부와 이데올로기와 5%선 억제지침 그리고 공권력의 부자별 투입으로 매우 어려운 진행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 등지를 이번 교육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지역연대와 업종연대를 도모해 올 임투승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다"고 거여하였다.

울산지역본부

신임의장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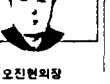
오진현의장

한국프랜지 노조위원장 선출

본노련 울산지역본부는 1월25일 울산 노동회관 3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는 37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개회사, 격려사, 오위조합원 표창, 임원선출, 사업 및 예산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신임지역본부의장에는 한국 프랜지 노동조합 오진현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사업보고에서는 매일 지역본부의 업무를 그달안에 처리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개최와 사업장 방문, 조합원간담회 등 단위노조의 지역본부의 긴밀한 유대형성에 최고 노력한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오진현 위원은 87년 노조를 결성 회계감사를 시작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다가 작년 10월에 노조위원장에 당선되어 한국프랜지 노조를 이끌어 왔었다. 울산지역본부 신임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의 장 오진현 한국프랜지 노동조합 위원장
부 의 장 박영규 어키 바슈 노동조합 본산지부장
부 의 장 박성식 영풍산업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국장 전영우 대한임부 미동 노동조합 위원장
회계감사 김영근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
이용우 현대임부 미동 노동조합 위원장

경남지역본부

소식지 창간

본노련 경남지역본부(외 성 제선수) 소식지 '경남금속통신'이 1월30일 발간되었다.

사설로아드란 선언으로 된 '경남금속통신'은 경남지역 본부 활동소식과 제선수 외 정 선년사, 본노련 박인상 위원장 축사, 각 단위조합 소식, 시사소식(92임부와 14대 총선), 전주지구 김남수 의장과 양산지구 김홍근 의장의 신년사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금속통신'이 발행됨에 따라 경남지역본부의 활동을 널리 홍보함 뿐만 아니고 지역 단위조합의 소식을 공유하게 되어 지역 조직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동자의 건강한 의식과 이념을 지역에 전파하여 노동조합 이론보급과 교육에 큰 역할 하게 되었다.

서울지역본부

풍물교실 개설

본노련 서울지역본부 문화부(부장 김희숙 대위원자 노조위원장)는 2월 13일 임금인상 투쟁에 대한 출발고 싸움 개설한다. 매주 목요일 개설되는 풍물교실은 4월2일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92임투승리를 위해 시기고양과 선전을 한 수 있는 출발과 합동을 교육하게 된다.

임투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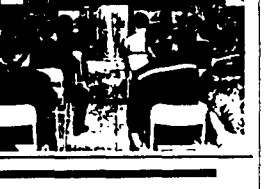

산업재해예방 캠페인

안전·보건 우리힘으로 지킵시다

노동조합은 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해야하는가?
누가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주가 할것인가? 정부가 할 것인가?
아닙니다. 바로 단결된 노동자의 힘입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을때 병드는 것은 노동자이며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것도 노동자입니다
바로 이순간 부터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 활동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 우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나 물질의 위험성과 해방책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지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알고있는 것을 기초로 각 라인이나 반에서 사고가 나는 기계가 없는지 어떤 물질을 쓰고 있는지, 그 물질이 우리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연구활동이 필요합니다.
-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성의 있게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보고받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책가 필요합니다.
- 이와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은지식과 경험을 다른 노조 및 상급단체와 주고 받으면 서로의 힘을 보태어 큰힘을 내기위한 연대활동이 필요합니다.

주장 한편으로는 '노동탄압', 다른편으로는 '열심히 일하라'!

--노동자의 정치적입장을 올바로 세워 타개하자

지난 2월 12일은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날이었다. 우리나라 노동 전문 종합 사상 지나도록 대통령이 노동현장에 노동 정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공식 노동 문제 대통령이 발표하였다. 그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고 엄청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이 현재 처한 노동자 "탄압"과 "열심히 일하라"는 노동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들은 대통령이 해 왔던 기존 정책들을 정리하고 의식에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해 왔던 기존 정책들을 정리하고 의식에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입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그래프에서 보면 노동자는 여기를 두고 대 부대 노동자들에게 정부요원에게 비중을 두고 서술되었다. 대 부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동자들도 경제가 상태이 된다는 내용에서 주요의 이유가 있다. 경제가 좋다고 노동자들이 부조건 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가 좋아지야 우리 노동자들이 인기다운 임금 계획이 가능성이 생기고 좋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러한 내용에서 예산을 알고 있는 것은 상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우리 노동자들의 현재 처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러한 경제 상태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그래프에서 보면 노동자는 여기를 두고 대 부대 노동자들에게 정부요원에게 비중을 두고 서술되었다. 대 부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동자들도 경제가 상태이 된다는 내용에서 주요의 이유가 있다. 경제가 좋다고 노동자들이 부조건 잘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경제가 좋아지야 우리 노동자들이 인기다운 임금 계획이 가능성이 생기고 좋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이러한 경제 상태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그래프에서 보면 노동자는 여기를 두고 대 부대 노동자들에게 정부요원에게 비중을 두고 서술되었다. 대 부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말하는 내용들은 대통령이 해 왔던 기존 정책들을 정리하고 의식에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해 왔던 기존 정책들을 정리하고 의식에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입장을 어떻게 하느냐

'92년도 임금인상 요구와 근거

1. 주 44시간 노동으로 생계비 확보

1) 임금과 생계비

임금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노동자가 노동력을 판 댓가이다. 노동자는 자신이 입힘 수 있는 능력 즉,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팔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게된다.

그러면 이 노동력의 제값은 얼마나 되나? 노동력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만큼 다른 상품의 값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결정된다. 우리사회에서 하나의 상품가격은 그 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우리가 먹은 쌀이나 커피 하나의 값도 원가에 일정액의 이윤을 붙여서 팔게되어 있다.

이때 상품의 원가는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즉 생산비를 말하고 있다. 노동력도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된다. 노동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곧 그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생산활동에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며 생활을 꾸려나가는 비용, 즉 생계비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중 이윤을 빼고나도 생활한 노동력의 댓가만큼 받아야만 OK 인것이다.

한 사람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 생활하여 건전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비용을 표준생계비라고 한다. 따라서 노동력의 제값은 표준생계비가 된다.

그런데 노동자의 임금이 매우 낮은 사업장의 경우, 임금과 표준생계비의 는 커다란 격차가 있다.

이 경우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인상 요구를 하기는 어렵고 최소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하여 임금인상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이것이 최저생계비이다. 임금이 최저생계비만큼 된다는 것은 노동력의 제값을 받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단결된 힘과 비밀으로 반드시 임금 쟁취해야 한다.

최저생계비의 구체적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① 우리 노동자 자신이 갖고 있는 노동력의 단순한 재생산에 요구되는 총부한 비용이 되어야 하며

② 노동자 가족의 생활수단을 최보 위으로써 다음 세대에 걸쳐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③ 직업생활이 쉽거나 쉐 또는 질 직후의 상황이 보장되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정되도록 되어야 하며

④ 특정 종류의 노동력을 보유함 수 있게 하는 연수교육비가 보상되는 수준이 되어야 하며

⑤ 현대사회의 최소한의 문화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보통 표준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25배로 계산되어지고 있다).

2) 생계비보장의 절당성

(1) 생계비 보장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임금은 노동자의 유일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임금수준 여하가 노동자의 생활나름을 규정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활은 임금이 낮으면 만큼 참 수밖에 없다. 반면 노동자 생활의 실내사인 여유를 나누는 몫은 아니고 국민경제상에서 노동자만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의 열악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노동자의 절대적 빈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말해지며 상대적 빈곤은 무준한 국민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소득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소득분배등이 심화되으로써 일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층의 빈곤은 사회적인 노동력의 재생산을 근원적에 하고 노동자와 사기저하의 노동의욕의 상실을 초래함으로써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쳐온 많은 폐해들에 단순의식을 넘게 함으로써 사회적폐해를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사회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 소지를 준다.

(2) 생계비 보장은 내수기반을 확대시킨다.

빈곤소비수준의 지조와 이로인한 내수시장의 협소함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되어 왔음은 심 알려진 사실이다. 협소한 국내시장과 저조한 민간소비수요는 국민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생활원천인 임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으면 그 대부분은 음식물비로 지출되고 근대 공업의 생산물을 구입할 여유가 적게된다. 그렇게 되면 매년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공업의 확상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낮은 민간소비 수요는 국내공업의 확상을 지체시킬 뿐만이 니라 소수의 기진자만을 위한 사치품 중심의 공업확상, 이 분야에서의 독과점 출현, 생활부문의 이후로 생활 조율 수반하지 않으면 안되으로써 일어지는 국제수지의 악화와 경제의 대외의존도 심화 등 갖가지 폐단을 국민경제에 미친다

(3) 생계비 보장은 국내저축의 기반을 확충시킨다

국내저축의 부족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가로 막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되는 바다.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면 가장 큰 이유가 기계저축이 지나치게 낮았다는데에 있다. 이것이 가계저축이 매우 낮게 책정된 데에 기인한 것임은 인한 노동자 가계의 여건 상황에 있다.

국내저축을 높이기가 위해서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가계저축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런 취에서 노동자에 대한 대폭적인 임금인상은 국민경제의 저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4) 생계비 보장은 교육조건을 개선시킨다.

국제분업과 교환에 있어 교환가격 수배비용과 교육비등의 가이된 지출인 것이다.

'92년 생계비는 12월 10일 기준으로 생계비가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반영되어야 한으며 선교등비 중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것을 삭제한다거나 주거비에서 주택소유자 비율과 전세값 조정하는 문제, 공업비에서 석유보일러와 연탄보일러 차이, 피복비에서 정장 구입회수를 식감, 보건위생비에서 화장품 월가는 상품들을 줄이는 것, 잡비에서 상조금제도 또는 연말제라는 임금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금체계는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 생계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에는 노동자의 복지 생계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① 지나치게 낮은 기본급 비율

② 생활급의 비율이 낮고 성과급의 비율이 높다.

③ 임금인상 및 승급에서의 차별이 심하다.

'91년도 임투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본노련 조합원들

3) 생산적 임금체계 '여건'

정부와 임금계자 해소정책으로 그 임금 격차와 임금상승률이 저임금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억제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큰 폭의 임금격차를 보이는 것은 제조업체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 실태에서 다른 직종보다 크게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1. 10. 14일 노동부가 전국 상용노동자 10인 이상 업체 4천1백여개를 표본대상으로 조사 집계한 '90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직종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보다 15.5% 오른 50만1천원에 이른다고 밝혔는데, 생산직 임금은 43만9천 46원으로 전산업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었다.

노동시간의 경우 전직종 월평균 노동시간은 216.1시간으로 80년의 219.4시간보다 3.3시간 줄어들었으나 생산직은 2.6시간 줄어든 228.0시간으로 평균노동시간보다 11.9시간 더 일하고 있고, 가장 짧은 시간 일하는 전문·기술직의 197.24시간보다 무려 30.8시간 더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은 노동력의 정당한 댓가만큼 받아야

정부와 자본가의 임금억제논리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강요

임금구조의 개선 및 임금체계 합리화 선행되어야

이 매우 중요하다. 교환가격이 정당하지 못하면 국제분업의 이익은 없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심대해진 나라에 있어서는 수출상품의 정당한 가격을 받아내는 것이 국민소득향상에 긴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서 정부에서도 한때 상품제값받기 운동을 수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상공부의 무역회가 우리나라 수출업체 실태를 조사한데에 따르면 제조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가 21.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값받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함을 알려준다. 우리의 임금이 공평한 수준이 되어야만 우리상품의 공평한 값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낮으면 거래상대국의 수입업자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낮은 가격을 요구해 올 것이고 기업은 거기에 굴복하게 되며 결국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3) 92노총 최저생계비 내역

'92년 노총최저생계비 모형은 노동자의 소비실태와 변화와 소득의 증가에 따라 지금까지 산출하던 방법을 바꾸어 새로운 모형의 최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조사방법은 전국 6대도시 중 하수로 '91. 12. 10~'91. 12. 15까지 3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최저생계비 산출모형으로는 생계기획센에서 주택센서스 취정보고서에서 선국 가구당 평균인원과 노소 산출해서 이를테, 주거비, 가구집기비, 상품구입비, 피복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보건위생비, 교양·오락 등의 소비지출 항목으로 산출을 하였고 가계지출의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비한 가장이 주로 생산하 것으로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4) 최저생계비 활용방법 및 주의할 점

노총 최저생계비는 최고기준이 아니라 남자 그대로 최저기준이다. 따라서 이러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고 있서나 적어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근접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총 최저생계비에 구애될 필요가 없이 최저생계비의 활용을 상향조정하면 된다.

생계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연시적으로 단계적인 목표임을 수립하는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전임가 제공되는 중식·교통비·기숙사 등이 있을 경우 생계비 항목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총목을 조정한다는지, 또는 기본급의 인상요구와 함께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당의 증액, 산업을 병행해서 요구한다든지 하는 임금인상 요구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2. 임금구조의 개선요구와 타당성

1) 임금구조의 실태

국내기업들이 현재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채택해서 한다는 방법에에 「임금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한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3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내용에 그 일부를 나열하고자 하면.

임금임금의 구성을 보면 기본급의 비율은 54.5%에 육과하고 제수당이 19.4% 상여상통임금이 25.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업직의 경우는 기본급이 41.2%에 지나지 않는 반면 제수당 38.8%, 상여임금 30.2%등으로 매보다 매하여 더 큰 임금을 보였다.

기본급의 체계는 학력 연령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연공급(부가이었다.

주로 생산직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당중심로 인해 4년 근속 고졸자의 임금이 대졸초임보다 높아진 기업도 35.1%에 달했다.

연간 상여금지급률은 평균 5에33%로 6에5%이이 31.8%, 4에5%인 23.5%, 5에5%인 19.5%등의 분포를 보였다.

상여금 결정방식은 전체으로 단체교섭에 의존하는 기업이 43.9%, 단체교섭 및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하는 기업이 31.7%, 단체교섭은 배제한채 경영자 와사사 경영성과만을 반영하는 곳이 24.4%로 나타났다.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있는 업체는 14.1%에 그쳐 아직도 이 제도가 생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성과배분의 방식으로는 상여금지급이 57.1%로 가장 보편화해 있고 25.7%는 사내복지 기금인 복리후생비형태로 지출했다.

회계상에 있어서는 법정지급액만 지급하는 기업이 67.9%이고 법정액이상 지급하는 곳도 31.5%에 달했다.

2) 현행 임금

임금체계는 단순히 '노동력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주고 받는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로서만은 아니라, 임금이 갖는 사회·경제적 실적으로 인해 역사성과 사회성을 품사에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정부와 사용자와 제수한 임금억제 정책으로 제국을 거쳐에 왔다. 이렇인한 임금체계의 피형성은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한데에 정부와 사용자는 또 다른 임금억제의 한 방편으로 시간그제 이었다.

그 이유로는 「기본급 인상억제에 따른 보상」이라는 담론이 41.7%나 제수당등설이 임금인상의 편법으로 동원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각종 수당중 지급액이 가장 큰 항목은 시간외 수당(40.7%)이고 음력의 경우 인상률이 가장 높은 수당은 능률수당 생산수당 등 업적수당(44.4%)등이었다.

4) 직무급, 직능급제 도입에 따른 요구

(1) 직무급이란?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측정 밝히한 능력정도에 따라 개인별 차등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직무급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는 주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노대로 만들어진다. 즉 노동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과 · 육체적 부담부담, 사업환경이나 재해위험도, 직무의 중요성, 책임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 등을 분석하여 직무기표를 만들고 개인의 능력평가를 더하여 구체적 급여체계표에 이치시킨다.

미국의 경우, 생계비 수준의 최저임금이 보장되어 있으며, 또 산업별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여 임금수준의 인상과 기업간 격차 시정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급의 도입은 기업별 · 지역임금 격차를 시정하는 데에 임금제계의 간단명료화, 차별임금 해소, 승진승급의 제한이나 차별철회의 방향에 막수여 유효하다는 것이다.

2) 기업의 직무급 적용을 지제하고 단결성, 구모별로 대응을 중요시할 것.

3) 지방노련은 임금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준인력의 적재적소에 직의 교육훈련 기회의 확충 및 공정한 기회부여 인사의 공정성, 사업환경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취제향에의 최대개발과 보유능력의 최대활용에 초점을 맞춰 것.

(1) 직무급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무분석에 취무평가제에 그리고 그에 따른 유의사항 실시보자)

2) 직무급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된 것이라고 기업주들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중(무늬) 노동 차별임금, 유사노동 차별임금이다. 기업주는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노동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를 강조하여 임금격차를 두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직무급 제정에 위해 가장 강력한 반대 견해자의 비준비자이다. 낮은 기술이 숨모없게 되고 높은 직급에 당시도 못하여 임금제에서 임금 이 동결될 위험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불가상승기에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4) 높은 직무급 향한 승진, 승급을 통해 얻고 노동자의 결별과 대립이 일어나 생긴다. 개인의 노력만큼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빠지게 되고 또 조합활동을 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에 조합무력화의 위험마저 있다.

(3) 직능급이란?

직능급은 노동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제도이다. 대개 직무급에서의 직무등급분류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직무수행능력을 등급분류하여 임금과 결부시키는 직능분류제도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직능급은 연공임금체계 안에서는 기존의 노동관행과의 마찰이 적을뿐만 직무급의 도입을 용이하게 한다는 제도적 제도로서 고려되었는데 직무급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구나 직무급보다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의 노동의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 발전적의 관리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직무급보다 직능급의 도입이 주목적 · 주도투가 되고 있다.

(4) 노동조합의 요구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생활급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한 이러한 제도도입은 불가할 수 없다.

② 생활급원칙이 관철된다면 직무평가제의 합리화 기준설정 및 기업 수 지원설 배제(노동조합의 사이 보장) 등 조건으로 직무급 및 직능급 부분에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③ 임금체계의 일부인만큼,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참여의 원칙에 입각하여 임금체계의 간단명료화, 차별임금 해소, 승진승급의 제한이나 차별철회의 방향에 맞추어 권토되어야 한다.

④ 기업의 직무급 적용을 지제하고 단결성, 구모별로 대응을 중요시할 것.

⑤ 지방노련은 임금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준인력의 적재적소에 직의 교육훈련 기회의 확충 및 공정한 기회부여 인사의 공정성, 사업환경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취제향에의 최대개발과 보유능력의 최대활용에 초점을 맞춰 것.

다음호에 계속>

노조탐방-(6)

영창악기 노동조합을 찾아서

[illegible]

◆ 대의원 대회를 시작으로 90년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사업의 대략적 계획은?

◆ 연초부터 정부와 자본가들의 임금억제 정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정 입장은?

정기대의원대회를 하고 있는 영창악기 노동조합대의원들

◆ 노동조합 활동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illegible]

조합원과 간부일체될때 조합활성화 의견 최대수렴, 민주적으로 운영할 터

◆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 정당에 구성원이 [illegible] 2.3공장에 각 1명씩 배치 각 공장 조합원 농성 하고 있다. 또 사업장 12명, 시장 30명으로 집행을 구성하고 대의원 90명으로 조합활성화 의견을 수렴하는 여방제가 있는데 이 소모전이 활성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 정부와 자본가들의 임금억제 노선에 한국경제의 기업노동자에게 전가 시키려는 음모를 수차례 [illegible] 실제 소비자 물가는 수백배를 은 위협나게 올랐다. 정상 [illegible]

[illegible]

한마디 두마디

Q - 최임금가가 10%이상 오르고 있다. 대노대에 물가상승률보다는 [illegible] 대의원대회 결가보고에 5%에 10%[illegible]이면 [illegible] 인상, 그러데 노동자는 그대로 [illegible] 대의원 [illegible]

[illegible]

Q - 보라 노조대표에 [illegible] 이상이나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노동자들 [illegible] 이 [illegible] 노동자들 [illegible]

[illegible]

Q - 정부는 경찰서라기보다는 [illegible] 이 [illegible] 이 [illegible] 이

92년 주요사업
조직투쟁력 강화와 고용 확대 및 비상노동법저지 근로 삶의 질 개선 정치 질서 전개 조합원 근로조건개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 박인상
편집인 : 최용길
인쇄인 : 서인석

금속노보

우편번호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금속노련회관)
전화 864-2901, 864-1503
FAX 864-0457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비매품〉

무료일 : 1974년 1월 22일 등록번호 : 마-5493호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 대표자결의대회

전노련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가 3월 20일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및 조합원 1,0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와 자본의 임금인상억제와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자리였다.

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부는 서울지역 문화선봉대의 노동가와 율동이 이어진 장면과 송년대 조우현교수의 "노동조합법과 임금정책에 대한 강연이 있었으며 2부는 결의대회 본행사가 진행되었다.

대회사에서 전노련 박인상 위원장은 "역사는 우리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이 주인으로 담당해 서는 새로운 질서가 생기려고 하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러한 세계변화와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정부와 자본은 반사회적인 노동탄압과 반노동자인 임금억제로 노동자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워진 새로운 세계의 존재인 복권지위와 기본 권확보를 위해 나아가 노동복지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경제와 사회의 이념적·물리적 노동탄압공세를 임금인상투쟁과 정치투쟁을 통해 분쇄하고 노동자의 생계확보와 사회안전망의 노동법 다시 마련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대회선언한 낭독, 대회사, 국제금속노련연대사, '92임투승리를 위한 기본방침 선포, 부당노동행위 및 정리해고 철폐대회 결의서 선서, 정부 및 자본에 보내는 메시지 낭독, 결의문 채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문 채택에서는 '92임투승리를 위한 결의문,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노동부의 음해임무 대상업체 선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전 조합원 이름으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와 자본의 임금억제와 노동탄압을 공동투쟁으로 분쇄해내고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용호하며는 금속노동자의 결연한 의지표출의 자리였으며 노동자를 희생시켜 권력유지와 초과이윤 확보를 획책하는 정부와 자본에 대한 규탄의 자리였다.

한편 대회에 참석한 노조대표자 및 간부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각 지역에서 임투승리결의대회를 연이어 개최한 다음 단위사업장별 임투대회를 개최, 임투의 당위성과 열기를 최선시킴에 힘써야하고 참투어 나가야 한다.

한국노총 92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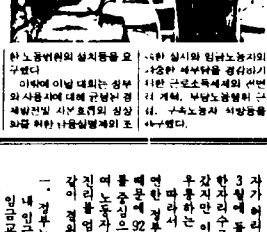

한국노총(위원장 박승근)은 2월27일(목) 오전10시 노총회관대강당(영등포구 여의도동 35)에서 5백여 전국대의원 및 회원행 노동부장관, 이홍관 경총회장, KFTU·APROA부총장 다까시이즈미등 국내외 노동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92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노동문제의 대응책 마련과 향후 조직 운동방향에 대한 토의 모색했다.

이날 대회는 올해 주요 현안문제인 임금인상과 관련, 부당복지를 조합원의 최저생계비 확보 주거안정으로 실쟁하고 이를 위한 입법·시연법 공동교섭·공동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정부에 대표 간화시정과 통화증발억제 및 공공요금의 인상을 통한 8%이내 물가억제를 촉구했다.

또 이날 대회는 범민노총 쟁탈동맹에 대해 ILO가 입을 제기로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하고 노동운동을 여력 힘찬써나간다"는 내 외견을 모으고, 노동관계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및 노동조합조직 및 산업재해위치술 위한 특별기구설치 및 비조직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노동관계위기정과 관련 참석자들은 "민주적 노사관계의 발전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는 ILO조약에 위배되는 조합원 숫자 제제이 한다"고 주장하고 6년이의 장부회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및 노조설치합법보장, 공무사업에 대한 지위 공제제도의 폐지, 노동사회 경영참가보장, 관리운영의 공정·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설치등을 요구했다.

이날에 이날 대회는 정부와 사용자에 대해 근방위 경제발전및 사회효과의 정상화를 위한 사용설명제의 조속한 실시와 임금노동자의 사용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소득세의 세율인하 계획, 부당노동행위 근절, 구속노동자 석방등을 촉구했다.

대 회 사

이 자리에 모이신 전국의 대표자동지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92임금인상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본권 사수라는 절박한 과제를 기필코 실현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기 위해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구 및 소련의 사회변화, 남북의 화해교류분위기,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세계질서 재편 등 권력주의와 집단이기주의하면 시대가 쇠퇴하고 자율과 민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짓밟히고 억눌려 있던 노동자들 비롯한 근로대중이 반임과 억압을 벗고 역사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역사의 변화와는 정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자본의 위기는 외세의존의 국내독점자본의 위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으며 특권자본은 이 위기를 노동자의 희생과 수탈강화로 극복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권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하는 역사의 강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건설자, 역사의 창조자인 노동자와 근로대중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만용행위이며 자멸을 재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그동안의 잘못에 입에 노와 탄압에서 하루 더 나아가 제도적 이념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난해 말 부터 자행해 온 일대하기구동, 정리해고요건 완화, 시간제근로도입, 해외인력수입, 출퇴임제실시 등 가혹 이념공세와 제도적 상처는 노동자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는 간악한 행위입니다 또 갈리려한 탄압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노동자가 수배명에 달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부노분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대표자동지 여러분!

우리는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복임을 위임이 의무는 경제위기본과 임금억제론의 근거는 한계와 허구임이 드러났으며 현재 우리 사회는 혼란과 불안의 원인이 정치권력과 자본의 부도덕과 부패에 있다는 것은 전국민이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3당 야합으로 자행되는 정치권력의 횡포는 추악기로 등만을 짓밟았으며 국제적인 대세로 ILO에는 가입하였지만 노동탄압을 은폐시키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민는 이미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상실했으며 사법, 행정 모두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권력유지와 자본의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도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성부지보다는 부동산투기, 경영의 네임회보다는 권력과의 낯거래를 위한 낭비에 몰아부으면서 성실히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내입을 강요하고 노동에 의해 창출한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부분별한 수탈으로 국가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며 국민들에에 방국의 위하강을 자랑스럽다는 놋이 초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에 늘 임금인상 투쟁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해야 하는 다당한 이유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날이 허오르는 물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주거불안을 벗어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동지여러분!

모든 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우리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도 억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정치진출을 막기위해 정치세부관심을 유도하고 경제적 손실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듯이 모든 인명과 모순은 정치권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을 머잖아 만남가 두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의 근로대중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 노동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줄시다. 이는 곧 임투에서 가장 중요한 실동을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자들의 목에는 우리 노동조합에 치명적인 탄압을 가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함께 우리 노동자의 생존은 포상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부관심을 벗어버리고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노동승리의 날은 올 것입니다

전국대표자동지 여러분!

올해 임금교섭도 실력과 타당성을 갖지 못한 정부·자본은 억지논리의 틀리를 동원하여 김세의 폭력으로 임권할 것입니다. 우리 금속노련은 이러한 탄압을 물리치기 위하여 을 임투를 공동투쟁의 기조하에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탄압의 여명을 돈파시키고 조합원들의 사신감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투쟁의 원칙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92년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를 통해서 임투승리를 확인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결연한 의지 공동투쟁으로 노동조합의 세도라를 기필코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다집시다

임금을 물리한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인상투쟁은 우리사회를 건실하게 만들고 진정한 민주화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건투를 빌며 이만 대회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3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 인 상

92 임 투 승 리 를 위 한 결 의 문

92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1992년 3월 20일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의 노동자들이 결연한 결의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지난해 임금인상 투쟁에 있어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과 주거안정을 최대한 동원하여 임금인상의 억제와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정부와 자본의 음모를 분쇄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우리는 지난해 투쟁을 주춧돌으로 굳건투쟁을 대처하여 임금인상의 억제요인을 강력히 제한하고 노동자의 주장하는 물가 억제선을 돌시 주장하며 92임투승리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의료보험, 주택문제 개선방안, 직업환경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 복지후생의 신설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5%이내 임금억제책을 즉각 철회하고 노·사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최대한 보장하라.

우리는 정부의 총액임금제의 허구성이 노출됨에 도 불구하고 영향한 논리로 경제위기가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임금억제 기도를 파강히 분쇄하고 그 철회를 촉구한다.

기업은 지금까지 물가폭등과 경기불황을 핑계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철저히 반성하라.

우리는 지난해 투쟁을 주춧돌으로 굳건투쟁을 대처하여 임금인상의 억제요인을 강력히 제한하고 노동자의 주장하는 물가 억제선을 돌시 주장하며 92임투승리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의료보험, 주택문제 개선방안, 직업환경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 복지후생의 신설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5%이내 임금억제책을 즉각 철회하라. 노·사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최대한 보장하라.

우리는 정부의 총액임금제의 허구성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영향한 논리로 경제위기가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임금억제 기도를 파강히 분쇄하고 그 철회를 촉구한다.

기업은 지금까지 물가폭등과 경기불황을 핑계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철저히 반성하라.

우리는 지난해 투쟁을 주춧돌으로 굳건투쟁을 대처하여 임금인상의 억제요인을 강력히 제한하고 노동자의 주장하는 물가 억제선을 돌시 주장하며 92임투승리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의료보험, 주택문제 개선방안, 직업환경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 복지후생의 신설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한다.

지난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6.9%, 물가 4.8%, 시가총 7.0%보다 나은 데도 6·29선언을 이루어 왔고 92년 경제 목표에 의거 서 저물가, 저금리, 저환율의 신3저 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주에서 4.7%로 성장에 대처하였다는 반노동자적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및 대선을 92년에 치뤄야 하기 때문에 물화량 증가 및 물가안정을 위하여 임금인상 등으로 물가안정을 위하여 노동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논리는 지난 3월에 들어서 서비스요금까지 오르는 기미를 보여 한자리수로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물건너 갔지만 이것도 노동자가 책임지라는 말은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용납할 수 없는 사태이다. 따라서 우리 금속 노동자들은 만민주체이고 구태연한 정부와 경제단체의 자세를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92임투를 가하여 노련을 중심으로 한 공동임금인상투쟁으로 강력히 대처하며 노동자가 단결하면 어떠한 탄압도 물리칠 수 있다는 진리를 만방에 경고하고 금속 노동자의 외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5%이내 임금억제책을 즉각 철회하라. 노·사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최대한 보장하라.
- 우리는 정부의 총액임금제의 허구성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영향한 논리로 경제위기가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임금억제 기도를 파강히 분쇄하고 그 철회를 촉구한다.
- 기업은 지금까지 물가폭등과 경기불황을 핑계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과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비롯되었음을 철저히 반성하라.
- 우리는 지난해 투쟁을 주춧돌으로 굳건투쟁을 대처하여 임금인상의 억제요인을 강력히 제한하고 노동자의 주장하는 물가 억제선을 돌시 주장하며 92임투승리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의료보험, 주택문제 개선방안, 직업환경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 복지후생의 신설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한다.

주장 기만적 총액임금제 즉각 철폐하라!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소위 산업평화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열고 1,434개업체를 총액임금제대상업체로 지정, 임금억제를 위한 구체적 지침에 들어갔다. 이에한 총액임금제 대상업체 지정은 노동부의 92년도 임금지도지침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지침에 따르면 500인 이상 기업체나 300인 이상 서비스업체 독과점업체, 상부 및 지방자치단체 부과 출연기관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으로 5%이내로 억제하고 300인이상 500인 미만 업체들에 대해서도 임금률 5%이내로 억제토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 3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률 5%이내로 억제하겠다고 외도된 것이며 1,434개업체에 대해서는 특히 이 임금억제를 강제하겠다는 지침인 것이다. 이렇게 노동부가 그간 반대이상 신전해온 총액임금제의 실제가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노동부는 그간 총액임금제를 내거는 명분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동자 1,100만명중에서 200만명은 고임금차이고 나머지 900만명은 저임금차이다. 따라서 고임금차의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저임금차의 임금이 올리기도록 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너무 복잡하다. 이는 대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감추기 위해 기본급 대신에 각종 수당을 올리는 신설했기 때문이다. 총액임금제는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고임금 기업과 저임금 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장치이다. 노동부는 그렇게 주장해왔다. 임금격차를 줄이고 임금체계를 바로잡자는데 노동조합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간 총액임금제를 반대한 것은 그것이 임금억제수단으로 나올것이며 또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와 임금억제가 아니라 저임금자의 임금인상을 통해 임금격차가 해소되어 한다는 성기백 분임없다. 그러나 이제 노동부가 스스로 공식적 지침을 통해 총액임금제가 임금억제 제도이며 노동부가 그간 내건 그럴듯한 명분은 기만적 표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업체에 대해서는 임금률 총액기준으로 5%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위도인데 300인 이상업체중에도 저임금업체가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총액임금제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상당수가 저임금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부는 고임금업체의 임금을 억제하면 저임금업체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속이고 있다. 노동부가 입증하지도 되지도 고임금업체의 임금이 억제되 한다는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 저임금업체의 임금인상재원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고임금업체의 임금억제부분 그 기업의 이주으로 돌려가게 된다. 또 현실적으로 문기업이 5%이내로 임금률 올리는데 계열회사들이 임금률 10%, 20% 인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노동부의 총액임금제란 노동자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억제해 기업주들, 특히 독과점업체의 이윤을 키워주자는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노동부는 그간 우리 노동자들을 타임의 명목으로 묶어놓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을 한편히 기만해왔다 할 수 있다. 노동부가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키 위해 없애는 서비스업체 1,434개 업체중에는 외자이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500인이 이하 경우도 있고 외자이윤이 붙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는 대상업체 지정이 인근 사회적 비난이 빗발치자 1,434개업체에 대한 임금률 다시 조사하는 등 선도를 다시하고 부담자를 문제인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상업체를 재조정하여 총액임금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은 순리이서 고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신빙체고를 위해 노동부가 근거도 없는 5%이내 억제와 총액임금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의 위적 존재인 부동산부기나 지하경제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요구해마지 않는다.

이제 그간 사회적 관심을 끌어들였던 총선이 끝나고 임무국면에 들어설 지금 다 부방비상태로 오르고 있는 물가로부터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켜내고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된 대오를 강화냄과 동시에 노동조합운동을 국민의 두터운 신뢰속에 튼튼히 하여야 한다는 세계가 급변도 임무에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선의 결과는 불쾌 비록 여당이 참패를 했다 하나 급부상한 국민당이나 무소속 당선자들의 속성을 볼 때 우리 노동자들이 낙관할 근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새로 출범한 국회는 노동법의 대폭적 개정을 담당할 국회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결과는 우리노동자에게 경계심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금번임무는 노동자의 대오를 강화해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노동진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총액임금제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우리의 단결된 역량으로 임금억제의 꿈을 놀라게 함으로써 우리의 전열을 재정비해 가자!

노동부 총액임금제계속고수

지난 3월 23일 개최된 한국노총 산별 쟁의담당자회의에 노동부의 총액임금제에 대해 심평키 위해 노동부 최승부 노사정책실장이 참석, 회의참석자들의 심의에 응답하였다. 최 실장은 총액임금제 대상업체 명단이 "언의 아니게 신문에 보도된데 대해 퍼손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였고 대상업체 지정에 관해 500인 이상업체중에도 빠진 곳이 있고 500인이 이하는 업체도 끼어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상표명이 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시인한 후 현재 이들 업체들에 대해 임금을 조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오는 4월 10일까지 제조정하여 실시하겠다고 밝혔 총액임금제를 계속 고수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산별 쟁의 담당자회의 개최
총액 임금제등 임금억제 대응위해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총액임금대상업체 지정등 총액임금제를 통한 임금억제 정책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키 위해 지난 3월 23일 산별쟁의담당자회의를 긴급 소집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총액임금제에 대한 조직적 대응책으로 신문등을 통한 총액임금제 폐절 촉구와 대중적 항의심의 개최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총은 이들 대응책을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 심의한 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제21회 IMF 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움 참가-

본노련 국제부 김준신 위원과 백수천 노동운동 서울숙 위원장은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국제의원 센터에서 열린 제21회 IMF 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움에 참가하였다.

심포지움은 아시아지역에 관련되는 IMF활동, 청부인(청소년 및 여성노동자) 노동자를 위한 IMF정책, 다국적기업과 노동조합, 빈라인에서의 노사관계 가족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가족보고에서 국제부 김준신 위원은 본노련 여성국의 활동사항과 활동시 문제점, 노총 정년부의 활동사항과 문제점을 보고하였다.

대구 경북 지역본부 주최의 임투결의대회에 모인 3천여 조합원

지역본부 의장단회의
-임투결의대회 결정-

본노련 지역본부 의장단회의가 3월5일 본노련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92임투승리결의대회 계획건과 러시아 중기노조와의 교류결의건으로 한 의장단 회의는 3월 20일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92임투결의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회의는 러시아중기노조와 본노련의 상호교류 및 연합회에서 러시아 중기노조는 본노련에 초청장을 발송하여 본노련과의 상호교류를 계속 의의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결정으로 러시아중기노조와 본노련의 교류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역본부 -임투승리 간부수련회-

본노련 서울지역본부는 3월7일, 8일 이틀동안 경기도 고양군 일산읍에 있는 서울 YMCA수련장에서 '92임투승리를 위한 간부수련회를 개최하였다.

12개 사업장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련회는 첫날 정치정세 배경과 임금인상 요구의 배경에 대한 교육과 다음날 조직강화 방법과 공동투쟁 방법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그룹분임으로 진행 되었다.

서울지역본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업종별 공동임투의 방향설정을 모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역본부 '92임투의 구체적 방법과 복지을 설정 하였다.

서울지역본부 -대표자 수련회개최-

서울지역본부는 2월 18일 시흥지부 최희복 지부장, 삼성화스너노조 조강동 위원장, 보광코리아노조 박순자 위원장, 성지실상 : 성창기계노조 박상범 위원장, 회계감사 : 현대정밀노조 이윤석 위원장, 세전전자노조 문광주 위원장, 송무부장 : 한국전자부품노조 이병희 위원장, 조직부장 : 한국전에어노조 권용식위원장, 법무부장 : 동부공업노조 배일수 위원장, 교육부장 : 한국시그네틱노조 서인애 위원장, 체육부장 : 제일종공노조 선기노 위원장, 문화부장 : 내비전시노조 김희숙 위원장, 후생복지부장 : 삼천리기계노조 신경선 위원장, 여성부장 : 도신정밀노조 김병자 위원장, 홍보부장 : 남성전기노조 전경임 위원장, 정외부장 : 동부쉽업노조 김광현 위원장, 조사통계부장 : 금성산전노조 서울지부 박기준 지부장, (이상 무순)

총액임금제 결사반대

금속 만평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문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발판가 자본축의 노동탄압은 날로 그 잔혹성과 비민주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년도 넘는 세월 LO기업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3자합의의 원칙은 깨져 처지재 권력과 자본축의 일방적 공세만 계속되고 있다. 손해배상 가압류 등 노동자 생존권 위협 등 노동자 보호 장치는 전무

'92년도 임금인상 요구와 근거

(지난호에서 계속)

5) 성과배분제도 도입에 따른 무리의 요구

(1) 성과배분이란?

경영참여에서 얻어진 성과를 노사간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성과의 내용을 어디에 근거해서 구하는가에 따라 성과배분제도로 나누어진다.

성과를 이윤과 마찬가지로 배분한다면 이윤배분제이며, 성과중에 자본에 대응하는 [보수]만이 아니라 종업원의 임금이나 직원의 급여도 함하게 되면 「경영성과배분제」가 된다.

성과의 기준은 「생산단위기준」, 「부가가치제」, 매상고에 배출액이 제용되고 있는데 세2차대전 후에는 그 기준이 부가가치로 바뀌어졌다. 이윤배분제에서는 종업원의 몫은 임금이 보통인 상태에서 이윤의 증감과 연동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제도에서는 관소득이 최종성과의 증감에 의해서 규정되게 된다.

(2)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실태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표 2—4)에서 보는바와 같이 14.1%에 불과하여 상당수의 사업체가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과배분제를 실시함에 따른 문제점을 (표 2—5)와 같이 실시보면 31.2%가 성과가 예상을 하회하였음 경우 대등이 근원하다고 장타하였으며 44.2%가 산정방식제에 실시시

성과배분제 도입여부

(표 2-4) (단위 %)

구 분	산업별 제조업	산업별 비제조업	계	규모별 300 미만	300~999	1,000 이상
도입	17.0	6.4	14.1	13.3	14.3	15.4
도입예정	2.0	1.6	1.8	1.6	1.7	2.1
도입 검토중	15.0	4.8	13.5	11.7	12.6	13.3
도입 계획 없음	83.0	93.6	85.3	86.1	84.7	84.6
무응답	0.0	0.0	0.6	0.6	1.0	0.0
계 (응답사업체수)	100.0 (247)	100.0 (94)	100.0 (341)	100.0 (165)	100.0 (98)	100.0 (78)

(주) 경총 「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

성과배분제의 문제점

(표 2-5) (단위 %)

구 분	산업별 제조업	산업별 비제조업	계	규모별 300 미만	300~999	1,000 이상
분배업 다	13.6	13.2	14.3	9.8	31.3	10.0
산정방식	28.8	—	24.7	19.5	25.0	35.0
실적지표	16.7	35.4	19.6	19.5	18.8	20.0
종업원의욕 반영	7.6	27.3	10.4	7.3	12.5	15.0
반영할 수 없다	33.3	18.2	31.2	43.9	12.5	20.0
계 (응답사업체수)	100.0 (99)	100.0 (11)	100.0 (77)	100.0 (41)	100.0 (16)	100.0 (20)

(주) 경총 「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자료

표의 경쟁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으며 10.4%는 종업원의 의욕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했다.

(3) 노동조합의 요구

① 성과급제 도입에 있어서 정부 및 사용자단체는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수락하여야 할 것이다

②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면 배분단위를 높혀야 한다.

③ 법인세 감면 및 설계배분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면 등 상당한 정도의 조세감면을 확대하라

④ 또한 경기변동이 심하지 아니하도록 정부의 경제안정정책을 더욱 심도있게 추진 보완하라

6) 단일호봉제의 실시

(1) 단일호봉제란?

단일호봉제란 직위와 직급 및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종사자에게 같은 기준임금인의 임금을 적용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입사시의 최초호봉제이라고 제외하고는 기본급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는 연공급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생활보장급 제도이다.

(2) 단일호봉제의 유형

단일호봉제도는 ① 순수하단단일호봉제 ② 직급구분단일호봉제 ③ 자격단일호봉제가 있는 바 단일호봉제 외도입시 어느 유형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한 합의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단일호봉제의 실시

최근 노총의 조사결과(노총, 임금·노동조건조사, 1990. 9. 30)에 따르면 호봉제를 실시하는 노조는 조사대상 노조 849개의 55.8%인 482개 노조로서 나머지 43.2%는 이제도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활성화의 결과로 연공급 임금체계는 노동조합이 많이 이겨고 있고 기업에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제도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여야 -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단일호봉제는 실시함으로써 조합원간 동료들 사이 관계를 방지하고 단결과 노동의 연대를 호봉제도입 도모 - 호봉의 단일화 된 임금인상효과를 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일호봉제를 최근 노조위주로 써 "호봉제"로 인한 임금수위의 인상과 미배임금의 원리적 기대는 가능케 하고, "단일호봉제"로 인한 조합원의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

7) 출퇴입금제 반대

(1) 「출퇴입금제」 도입의 배경

현정권은 91년 한자리수 임금억제 성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임금체계(임금지불 및 계산방법)의 전화을 통한 임금통 ; 성책을 위장가이드라인으로 상품임금 및 유급휴가의 하대의 한편취자

우리나라의 휴일은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단체협약의 휴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이 휴일을 모두 쉬고 일지도 않는 실정이고 유급휴일 · 휴가의 확대 ·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성공과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조합원 교육은 한층 더 한층 강화되어 한다. 따라서 산업노동조합이 (ILO91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조약(1974, ILO 조약 140)의 비준을 요구 기본 유급휴가의 확대를 나가야 할 것이다

(2) 기본 공휴일의 구체적 유급휴일 과의 한편소화

현정권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 해 공휴일이 확보돌 수 있는지 금 일 지키게 되 - 연 19일이 있으나 (하루 8시 22) 줄어드는데 이 대신에 주 5일 노동시제는 부분에서 주 단체협 약으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3)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하대의 한편취자

우리나라의 휴일은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단체협약의 휴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이 휴일을 모두 쉬고 일지도 않는 실정이고 유급휴일 · 휴가의 확대 ·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성공과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조합원 교육은 한층 더 한층 강화되어 한다. 따라서 산업노동조합이 (ILO91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조약(1974, ILO 조약 140)의 비준을 요구 기본 유급휴가의 확대를 나가야 할 것이다

(4) 기본 공휴일의 구체적 유급휴일과의 한편소화

현정권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확보돌 수 있는지 금 일 지키게 되 - 연 19일이 있으나 (하루 8시 22) 줄어드는데 이 대신에 주 5일 노동시제는 부분에서 주 단체협 약으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5) 유급휴가의 구체적 유급휴일과의 한편소화

현정권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확보돌 수 있는지 금 일 지키게 되 - 연 19일이 있으나 (하루 8시 22) 줄어드는데 이 대신에 주 5일 노동시제는 부분에서 주 단체협 약으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6)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하대의 한편취자

우리나라의 휴일은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단체협약의 휴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이 휴일을 모두 쉬고 일지도 않는 실정이고 유급휴일 · 휴가의 확대 ·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성공과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조합원 교육은 한층 더 한층 강화되어 한다. 따라서 산업노동조합이 (ILO91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조약(1974, ILO 조약 140)의 비준을 요구 기본 유급휴가의 확대를 나가야 할 것이다

(7) 기본 공휴일의 구체적 유급휴일과의 한편소화

현정권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확보돌 수 있는지 금 일 지키게 되 - 연 19일이 있으나 (하루 8시 22) 줄어드는데 이 대신에 주 5일 노동시제는 부분에서 주 단체협 약으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8)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하대의 한편취자

우리나라의 휴일은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단체협약의 휴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이 휴일을 모두 쉬고 일지도 않는 실정이고 유급휴일 · 휴가의 확대 ·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성공과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조합원 교육은 한층 더 한층 강화되어 한다. 따라서 산업노동조합이 (ILO91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조약(1974, ILO 조약 140)의 비준을 요구 기본 유급휴가의 확대를 나가야 할 것이다

(9) 기본 공휴일의 구체적 유급휴일과의 한편소화

현정권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확보돌 수 있는지 금 일 지키게 되 - 연 19일이 있으나 (하루 8시 22) 줄어드는데 이 대신에 주 5일 노동시제는 부분에서 주 단체협 약으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0)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하대의 한편취자

우리나라의 휴일은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단체협약의 휴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이 휴일을 모두 쉬고 일지도 않는 실정이고 유급휴일 · 휴가의 확대 ·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성공과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조합원 교육은 한층 더 한층 강화되어 한다. 따라서 산업노동조합이 (ILO91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조약(1974, ILO 조약 140)의 비준을 요구 기본 유급휴가의 확대를 나가야 할 것이다

(11) 기본 공휴일의 구체적 유급휴일과의 한편소화

현정권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확보돌 수 있는지 금 일 지키게 되 - 연 19일이 있으나 (하루 8시 22) 줄어드는데 이 대신에 주 5일 노동시제는 부분에서 주 단체협 약으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2)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하대의 한편취자

우리나라의 휴일은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단체협약의 휴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이 휴일을 모두 쉬고 일지도 않는 실정이고 유급휴일 · 휴가의 확대 ·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운동의 성공과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조합원 교육은 한층 더 한층 강화되어 한다. 따라서 산업노동조합이 (ILO91 유급교육휴가에 관한 조약(1974, ILO 조약 140)의 비준을 요구 기본 유급휴가의 확대를 나가야 할 것이다

총액 임금제도 입 결사반대
임금체계 합리화로 대응해야

3. 임금체계의 합리화

1) 기본급 보조적 성격이 강한 각종 정액수당 및 고정적 임시급을 기본급으로 흡수하여 임금 총액임금을 기본급으로 보전받는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한, 사실상 호봉연공제로 인해 상묘반계 되는 지원과 여서 근본적으로 벗어날수가 없는 것이다.

(4) 노동시간단축과 임금보전방식

지난 89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금년 10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주 44시간 노동제가 실시되는 이에 대해 최년 하반기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논란에서 보여지듯이 사용이 대육열악한 중소 · 영세기업의 경우 사용자들의 시정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원칙" 정책을 최대대세 중의 하나로 실정하고 있는 마당에 최근에 "경기악화" 구실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허용할 가능성은 대로 큰 것이다. 그런, 임금보전 없는 노동시간단축은 하구이며 여지보다로 결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동시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와 노동조건 악화를 겨냥하여 상용고용조차도 임시고용 형태로 채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혹 이는은 2중 3중의 착취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임금 및 기타 처우상의 불이익과 해고의 남발)

특히 이들에 대한 착취는 대졸여성 노동자나 주부 취업자 등의 구직난이나 기혼녀인 약점들을 이용해여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보호기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우리는 최저임금제등 시에 파트타임 노동자에게 지반을 누지 않는 조합이나 외국의 입법사례에서 입증 가 하기할 수 있으며 우리 적으로 노동 법 위아이 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의 실정은 실정된 것으로서, 이를 반대한다.

(2) 시간제노동제의 반대 이유

제 는 전 이에서 해소할수 있으로 파트타임 노동 제도 는 :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실제의 효율제에서 상이아 하며, 파트타임 문제는 여러의 정비의 대상에 상기하으로 러노동자 아이에 파트타임제를 노인한 경우 세 그밖에 가혹제는 처리를 합리화시키은 없우 이를 통한 두다면 기술별 이익의 고려, 조장한 수 있다.

파트타임제를 노인한 경우, 기존 취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및 노동조건의 저하의 전반적인 조직력의 약화를 초래해, 노조를 무력화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2) 해외 연력수입 개방 반대운동 전개

(1) 해외인력 수입의 문제

최근 해외인력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해외인력 수입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의 생존권이 근본적으로 위협되고 있다. 세연 우리의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같은 문제를 한고 서라도 해외인력을 수입해야할 만큼 긴박한 상황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노동력은 여전히 공급과잉상태이며, 물가는 고용상태를 시발한다면 인력난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불쌍한 해외인력 수입에 나그럴 것이 아니라 국내인력자원의 활용에 정책 외 과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2) 해외인력 수입 개방에 대한 내용

① 국내외 활용가능한 유휴노동력 240만명이나 되는데 이중 10%정도만 산업인력화 하면 부족인력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기업은 유휴노동력이 활용 할 수 있는 국민제도를 하루빨리이야 한다.

② 중소기업의 특성에도 불소기업이 인력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기업여제만 탓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③ 최근에 해외인력도 단체를 이루어 입국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 있어서, 내 도다른 문제를 야기시키 않고 그 해결은 우리 노동자가 실 수 없다

④ 가장 빠른 방안은 여성노동력, 특히 주부노동력과 고령자 노동력 활용이다.

한마디 두마디

○선거 때문에 재소업인 뿐이 모자란다. 내 그래도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자만 살찌운다고 난리법석, 어서 피 노동력의 한계조건이 흘은대로 풀리는 것이 시장원리 아닌가? 노동조건 좋고 임금안정 되면 산업현장에 서 나오라해도 나올 노동자는 아마 없을걸.

○재조업 노동자 39만명 부족, 유통업 종사자 6명중 1명은 재조업에서 이른 임금인재 산업재해, 비인격적 대우, 장시간노동, 노동강도 심화. 그런데도 노동자가 일하기 싫어 한다고 한만에 여러 나라들이다면 이래도 재조업에 계속 계실까?

○시내버스노조 임단협 상 19.6% 합의 결 당한인상 율을 올해기준 5%로 억제하시겠다는 분위 길섶이 어떠한일일까? 시내버스노조 분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교섭에 임했는데, 우리노 조 연대하고 강력한 의지를 모은다면 5%는 쉽게 깨부술 수 있을 것, 그래서 5%수정하는 장려임금을 5%더 확보하게 해보자구요.

○지난 송년 때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비교를 보면 과연이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와, 경제성장률 집회에는 시민의 모임인가 라는 시민 나래에서 실두 돈사를 했는데 여당 후보 나리들은 이에 내답을 한번, 시 첫했는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내 더 기가막힌 것은 여당 전국구 모두보는 현노동력 를 그대로 유지하고 광화 주김, 심부 재인의 견해고 노동한임은, 여당의 공약이시만 그래도 노동단체에서는 재해이 높은 건부까지 한 시한 임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하여간 관해이 좋긴 좋구만.

○총대임금기준 5% 인상 대상업체가 노동부의 일정 심인 비려(?)로 확정 되었는데 총 1,434업체중 (총 조건별은 190여업체로 약 15% 지지 정부투자기관업체 노동조합들도 반대하고 기업들도 위탁처임제 여기는 이 점의 여지는 여러서 나온건지 원 하여간 좋아라 좋아라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런 말이 생기나 하네. 누드러라 다면서이 쉽 것이요. 것늘러라 불쌍을 쉽 것이다.

○총노공지의 입법사도 많이 많은데, 노동부는 불보지료까지 동원하여 3월 10일을 근로지의 날이라고 선전 씨 1959년부터 법률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일반이 일반이 그럼 노동법은 103주년이나 되는데 어느것이 더 역사적인지 솔직도 못해 나? 지구상 어느나라가 5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을 노동지의 축제일로 하나? 라기 있을 수 있지, 노동조합노 국가권력의 하수인이지 나라에서는 말이야.

○본노련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시국대표자 결의대회가 지난주 열기 속에서 치뤄졌다. 대이하 그 생생을 나타내어 보았다는 것을 알고 노동단결과 임금인재의 용모를 다한 실회원들 것, 하긴 뭐 요즘 나리들은 현실을 한심이며, 뭔에서 생각한것 힘으로 부자는 것이 특기한 나라임에게 우리의 힘차 투쟁은 쭉 필요. 동상가능을 저단지기 위해서라도 힘차게 투쟁합시다. 동지들!

연맹 각부서 주요활동

총무부

- '92임기대회 준비일정차질
- 노총임원(수) 수최 송무국장회의
- 장학금 배정 기준에 산출

조직부

- 광주전남지역 본부대회 및 지역순방회
- 동서울산노조 교육지원
- 오노전 노조 교육지원
- 서울치림 노조 교육지원
- 대우 산업노조교육지원
- '92임투승리 결의대회 준비
- 정책사항서 노조 교육지원

노사대책부

- 임금지불실태(2차)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분석
- FKMTU NEWS제작
- 총액 임금제(임투시리즈) 정리 및 발송
- 임투2차 자료집 인덱싱부
- 조선분과 노조방문
- '92임투 임투승리 결의대회준비
- 임투시리즈(공투원 임금인상세부)준비

교육부

- 서울지역본부 교육지원
- 단체교섭 세미나참석(노총)
- 미성사 교육지원
- 포항지역본부 교육지원
- 방통자통차 교육지원
- 금성산전교육지원

여성부

- 퇴고 교육지원
- 노총 안양지부 교육지원
- 신한 노동조합 보유자금 현황조사용보
- 미혼남녀 조합원 부모초청행사 추진공문 발송
- 동우실업 노조방문
- 방통자통차 교육지원
- 한국강관 교육지원

국제부

- KDDR 연구원 귀국
- FKMTU NEWS 발송
- DAF 출입허원회 참석자 결정
- 러시아 총기노조초청에 대한 본 노련 의사결정 통보
- DAF 연대 메세지 수신
- 일본 자동차총련 초청 수박통보

우리조합노보

세상을 거꾸로 보면 옳다.

경원세기노동조합

1. 특강은 좋이다

통만놓과 방귀뀐놈이 같다는 얘기가 있지롯이다. 근사운화로 법학된 인자당이 정권을 이리흔들고 시리 없어서 경제흔한 민생파탄시키는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국복해내지 못하는(없애 없어 힘못쓰는)이당까지 싸잡아 특강다고 보는 것을 당연하다고 할것인가.

정말 특강은 것인가 어떤측면에서 여이랑것 없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심권여당은 독누각시 전경, 경찰청에 실탄까지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정치적 이상을 가진 군방이와 법크로 무장해 있다 그리고 지금 해오고 하는 싱거리는 이부네나 싸는 것을 하고 있고 이당도한국 민권 분노를 자기집단의 권력쟁취 수단으로 이용하여 고 사분오열을 거듭하여 오다가 지난달에 어느정도 제아를 열임하여 분열된 이이 지를 일소하는 듯하나 만족의 희망은 저렇리에 있는 듯하다. 조직에는 모순과 비리가 존재한다. 고인달이 뭣뜻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홈속의 간탐들이 권력의 의자를 돌리고 있었으나 모순과 비리가 없을 수 있겠는가.

노대우의 집권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노한일당 이비리를 드러내기는 이것 이나 되리겠는 등으로 지위를 감추게 하고 말았다. 13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만능놈이 싸놓은 통을 감추기에 급급하여 국감을 흐지부지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국민선전문구는 "우가 하나 특강을 변녀" 대모나 하고 시끄러운 아당을 해하기 보다는 '안정'을 앞세건으로 내건 보통시험을 만어보세요. 국민들은 답게 모르게 믿어가고 있다. 보세기만 정신에서는 "조선일보 지인 스포츠신문(일간 스포츠, 스포츠 조선등)을 서금 300원이나 주지해 시보는 것이 즐겨줌이 나여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네나 만자이 자기가 편자리를 ○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떡 , 만놈과 방귀뀐놈이 같고 수입전기가 방귀뀐 놈은 후자의 피해만 수업시키면 만놈은 후자에, 시리지 장소의 피해를 줌으로써 공기을 불법유한 상도인 것이다. 권력의 그놈속을 그리워하는 자들은 설대 노동시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놈 모두결 식으로 좋이 좋이면 노동자만 불쌍한 형체 쉬속 속는 고임을 면할 수 없다 먼저 만놈, 싸대의 자을 싸다하기 위해 보수적 신단, 방귀뀐놈들과 손을 잡고 투쟁해야 한다. 자을 저파한 후에 연대의 기틀을 바로 세워이 할 것인지 적을 눈앞에 두고 내부적 모순만 찾에의 시간다면 백놈놈 생기는 것과 김치국물에 눈독들이면 것과 다를바 없다. 다가오는 14대 총선에서 민중의 승리, 노동자의 새세상을 향한 디딤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하게 일하려는 당신이 바른의 복소리를 가져야 한다. 모든 조직에는 독버섯이 있듯이 당신이 독버섯이 우리에서 기생하는 공방이가 되어서는 안된다.

2. 현대판 성인대

여성 65인형이 성대부리나 나타났이 가관이다. 어떤이는 참녀를 공평한소의 갖다고 했다. 임한인구 4천 7백만에서 남성을 제외하고 어린이와 노인을 빼면 가정주부 10명에 한명꼴로 공중변소여랑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남자 10명에 한명꼴로 지가에소보다 공중변소를 즐긴다는 얘기다?

요즈음 여성심층사건이 고충하고 있다. 그것도 17세 소녀가 가장많은 검도나 나났다. 소년이 말을 남인는지 얼계나 생하는 놈자의 세기가 여수강산을 힘줌에 대상에서 산산으로 드디어 흩어으로 한다을 뜸에 흩다는 산보인도 쉬나하고 있는 통로가 권한것이 아니었다 수보자가 있어이 공그세이 있다 80년대이후 출부의 고충으로 경제살는 놈들이 급증한 것이다.

통바통에는 얼계를 찾는 놈들이 얼상체 되는 수로로 여김을 하는 이런 장사문들이 그것도 대가리에는 통만 들고 주력만 빈고 사는놈들이 경험과 형인이우 하면서 장사하는 데 건강계 위험경에 시나가는 놈인한 얼계 소년에 혈이어 되어있어 세는 얼마에리, 세는 얼장에리 어이로 누이들이 돈다발로 보이는 세상에 살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바는에 경련당해 강력한 우리들의 힘이니놈부 조바리명심들의 심의 노예가 되었고 지금의 V나내 누이들은 출부들의 제물이 되고 있다. 권해지나 시심의 말내이들은 그렇게 될 여고가 없고 노동자 말내이들이 독대들의 시아에 들어 있는 것이 더욱 슬픈일이다

(이랑의 주인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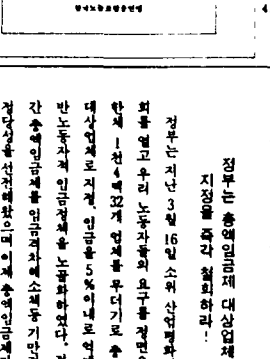

제13대 국회노동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책 4×6판 334쪽

단위조합소식

정기대의원대회

- 2/24 금성통신, 대기산업
- 25 대동조선, 대원씨앙, 대동공업, 신한수출
- 26 동해 금성강철스, 동아전설, 오드롱, 동아설공 동양실산, 동화크릿지
- 28 세진전자, 대양나사, 통성정밀
- 29 한국강관, 대성산전
- 3/2 삼아알미늄
- 4 고니설밀
- 6 범한금속, 대림전자, 대우전자(주안)
- 7 대우통신 위웨시스템스, 영성
- 12 통성전기
- 14 한성라이에터
- 11 대우전자(인천)
- 17 버커넌트
- 18 장신산업, 대동공업
- 19 고려이에, 한일스텐레스

조합원 총회

- 2/24 삼영전자
- 28 대한화학기계
- 3/2 동해전장, 홍진기연
- 3 신영전기
- 4 진영기연
- 7 로렌스 시계
- 14 삼부금속, 진광, 부산주강 대동

창립기념식

- 3/9 동아건설 창동지부
- 16 반니아코리아

교 육

- 2/23 오드롱노조간부교육
- 25 동서설산노조합원교육
- 28 한국전지노조간부교육
- 3/6 금성정밀조합원 교육
- 6 미성사 간부교육
- 11 포항지역본부 간부교육
- 12-13 방통자동차 간부교육
- 13 대덕산업 조합원교육
- 14 미성산전 간부교육
- 15 한국강관 간부및 조합원 교육

신규가입

- 3/11 우진
- 12 신일공업
- 17 일성기계

결 혼

- 2/29 대한제당 울산지부 최영우 지부장
- 3/14 러시아녀교성밀 장한국 위원장

기 타

- 3/4 한국기계 임시총회 이한봉부보선출
- 3/8 한효제강(화원장이 용순) 하도급 저지 및 92임투승리결의대회

지역본부대회

대구·경북

본노련 대구·경북지역본부(외장 김경조) 정기대의원대회가 3월12일 열렸다. 지역본부 4층 강당에서 대의원 60여명이 참석한 대회는 91년 사업을 결산하고 92년 사업을 계획했다.

또 대회는 기나도와에서 3월28일 24시 투쟁상회 2·28 기념합일에서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임투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맹에서는 박인상 위원장이 참석 대회를 격려하였다.

광주·전남

본노련 광주·전남지역본부(외장 정기춘) 정기대의원대회가 2월20일 10시 한국노총 광주시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25명의 대의원(대표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회는 '91년 사업일 결산보고, 본영위원 보선, 연맹및 노총시·도 지역본부 파견 대의원 선출, 9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기타토의등으로 진행되었다. 대 연맹에서는 박인상 위원장, 이진우 조직국장이 참석하여 대회를 축하하였다.

성 명 서

정부는 총액임금제 대상업체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소위 산업평화대책위원회를 열고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한채 1천4백32개 업체를 무더기로 총액임금제 대상업체로 지정, 임금을 5%이내로 억제키 위한 반노동자적 임금정책을 노골화하였다. 정부는 그간 총액임금제를 임금억제에 소매동기만적 억사로 정당성을 선전해왔으며 이제 총액임금제가 총체적 임금억제를 위한 간교한 음모에 불과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분만 아니라 총액임금제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수에는 저임금업체도 다수 포함되어 반민주적 졸속행정이 무엇인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연 정부는 하루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물가상승으로 생활의 질서를 파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연만한 체 언제까지 노동자들을 희생으로 기업주 위주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산하 전국 대표자 및 총액임금업체로 지정된 기업체 노동조합 대표 일동은 임금억제 블랙리스트인 총액임금제 대상업체 지정을 즉각 완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아울러 3백명이상 5백명미만 업체의 임금까지 5%이내로 억제하고 1백명미만의 소규모업체에 대해서도 임금억제의 강요체계속에 유아남으려는 노동부의 임금억제지침이야말로 산업파국을 초래할 망국적 지침으로 우리의 노사자치와 노사신뢰구축을 위해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인을 천명하며 그것의 철회를 위해 1천2백만 노동형제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992년 3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2년 중점사업
조직강화 및 정상화
교육 활동 강화
투쟁 노동자위원 건설
산별 재해 추방
정치 활동 전개
조합원 근로조건개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인 박인상
편집인 최용길
인쇄인 서인석

금속노보

우편번호 151-02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금속노련회관)
전화 864-2901, 864 1503
FAX 864-0457

금속노련지역본부현황

1	수도권	864-1888	
2	인천	437-0000	
3	부천	327-8705	
4	안양	467-1111	
5	의왕	452-4111	
6	성남	721-4111	
7	안산	491-4111	
8	대전	254-4111	
9	충북	52-4111	
10	충남	22-4111	
11	대구	25-1111	
12	경북	52-4111	
13	부산	24-1111	
14	경남	52-4111	
15	전북	23 1720	

우편물 : 1974년 1월 22일 우편번호 · 마-3708호

(비매품)

총액임금제 분쇄하자!

동시쟁의신고, 동시쟁의돌입, 총단결투쟁키로

본노련은 92년 4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거화전 중앙집행위원, 중앙위원, 총액임금제 대상업체 노동조합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산하 900여 노조가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시 오는 5월 20일 미타결된 전노조가 동시에 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했고 6월 1일에 쟁의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동 회의에서는 지역별 임금교섭 동향을 심의한 후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한 공투성 강화를 논의하면서 그와 같이 결의했다. 한편 동 회의에서는 임금투쟁을 실질임금단축운동 및 인권 한 작업장보운동과 결합하여 추진하기로 했고 경부측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항의방문, 전조합원 1인1원칙거부운동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악덕기업주에 대해서도 지역노조와 공동대응 및 전조합원 고소고발운동으로 대응키로 했으며 정부와 임금억제정책 및 노동탄압에 반승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서 대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총액임금제 대상업체의 축소조치는 커다란 외비가 없으며 정부와 임금억제 정책은 어려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총액임금제 대상사업장만이 아니라 전노조가 단결해 투쟁하야야 하며 특히 대정부투쟁의 중요성이 참석자들로부터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000여명이 참석하는 고 결의를 다졌다.

'92대의원대회 5월 13일로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본노련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가 1992년 4월 2일 15시 연합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적위원 61명중 3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위원제년도 마감과 92정기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규약 및 의안심의 소위원회, 사업계획심의 소위원회, 예산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대의원대회는 5월 13일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열기로 하였으며 92년 4, 5월분 기여산분상에 대하여 결의기구를 합리화으로 일치시키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집행위원회는 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정부의 총액임금 5%이내 인상강행에 대하여 노총의 대처를 노총 노사대책강으로부터 정취하고 본노련의 방침을 노련 이정부 노사대책부상의 보고를 받은 후, 노동부가 주관하는 총액임금관련 기준 간담회와 교육에 전조직이 참가하도록 가맹노조에 [illegible] 하고 한국노총에도 [illegible] 에 시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본노련과 노총에서 시달한 임금지침이 사업상의 특성때문에 임금지침이기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추후부터는 충분한 고려하여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총결의 [illegible] 회개최
총액임금제 분쇄결의

한국노총은 4월 7일 오후 2시 노총대강당에서 '총액임금 분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수도권지역 조합원 약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는 임금억제를 위한 총액임금제 규탄사, 임금억제를 위한 총액임금제 분쇄 지침, 노동탄압 및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한 결의문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결의대회는 결의문을 통해 '총액임금제 즉각 철회, 구속노동자 석방방, 노동악 개악기도 전면중단' 등을 요구하고 행동방침으로 철저성계비 철회, 노총 및 산별연맹 공투본부지원준수, 모든 방법을 가리지않고 총액임금제 저지'등을 결의하였다.

정책강좌실시
한국노총, 제8회

한국노총 제8회 정책강좌가 4월 7일 한국노총대강당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총액임금분쇄 결의대회가 끝난후 바로 기진 정책강좌는 노총의 포함된 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이정기 위원이 주제를 발표하였다.

총액임금제 분쇄

본노련 철야농성가져

지역본부도 동시에, 다음날 노동부 항의 방문

본노련은 4월 9일 17시를 기해 노련 임직원일동과 지역본부장외 및 조합간부 하루농성을 진행하였다. 총액임금제분쇄와 임투승리를 위한 농성은 경제위기해결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음모를 폭로하고 전체 금속노동자가 단결하여 총액임금제를 분쇄하였다는 결의에서 거행된 것이다.

본노련은 박인상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임직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하면서 이미 실시된 상황실 운영강화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임투지도에 돌입하였으며 각 지역본부는 임투승리와 총액임금제를 전조직 차원에서 분쇄한다는 임투지침을 재확인하면서 92임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번 농성은 화평병노동부장관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총액임금제의 쇠지를 설명하거나 노·사양측에 강제력으로 적용하려는 억지에 대해 참가거부와 함께 지역임투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개최, 정부와 자본의 임금억제논리를 격파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각 지역본부의 농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본부(외장 박기식)는 노총 시·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63명의 조합간부들의 철야농성, 4월 10일 27명이 노동부에 항의 방문하였다.

광주·전남지역본부(외장 김경조)는 광주노총회관 3층 회의실에서 107명의 조합간부들이 항의철야농성을 하였다.

대구·경북지역본부(외장 김경조)는 대구노총강당에서 100명의 조합간부들이 철야농성, 10일 40여명이 노동청에 항의 방문하였다.

경남지역본부(외장 제선수)는 노동조직회관 5층 대강당에서 조합간부 9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밖의 다른 지역은 임투결의대회가 근접해 농성을 하지않고 노동부 항의방문을 하거나 간단한 농성보고대회를 하였다.

총액반대거리홍보실시
총액임금제 부당성 대국민홍보

본노련 전임직원과 서울지역본부 조합대표자 200여명은 4월 24일 오전7시부터 영등포일대에서 총액임금제반대 거리홍보를 벌였다.

총액임금제 분쇄 투쟁의 일환으로 총액임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번 거리홍보는 한국노총산하 20여 산별연맹이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에 벌인 것으로 전노련계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였다.

거리홍보는 임금억제가 경제위기를 가중시킨다는 내용과 총액임금5%억제 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만여장을 시민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시민들은 바른 총근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물을 받아 열심히 읽어 경제침체의 책임과 임금억제의 부당함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거리홍보는 한국노총산하 전산별연맹,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 전국 2백42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산별위원장 노동부 항의방문
총액임금제 철회 강력촉구

한국노총 박충근위원장, 김금구부위원장, 사무총장, 노총 실국장과 본노련 박인상위원장, 화학, 섬유, 통신, 건설, 항운, 연합, 관광, 보험, 금융, 고무산업 노련위원장 등은 4월 13일 노동부를 방문 항의하여 최병렬노동부장관에게 임금억제를 위한 총액임금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산별대표자들은 이 자리에서 '총액임금의 규제는 빈곤임금에 대한 규제이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성과급제 실시는 노동조합의 경영참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도시자유화인 임금교섭에 정부의 개입은 옳지 않다. 참관은 엔리트의사에 맡여 자기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노동부장관은 '총액임금제의 도입은 최저임금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의 보완으로 성과배분제에 의한 과실분배가 필요하다고 하고 주장하여 총액임금제도입의 배경 및 목적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임금억제정책임이 재확인 되었다.

또한 성과배분제는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하여야 한 기업경영의 공개, 성과의 목표설정, 측정방법, 배분방법에 대한 노동자의 대등한 참여가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성과배분제의 실시운운은 총액임금제도입에 따른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하나로 축제
한국시그네틱스노조

한국시그네틱스노동조합(위원장 서인석)은 4월 23일 사내운동장에서 하나로축제를 가졌다. 하나로축제는 시그네틱스노동조합이 매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만들고 전조합원들의 임투열기를 고취하는 축제로 각 반별 장기자랑과 임투 선봉대공연으로 이루어졌다.

동 축제는 서울지역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 축하하였고 본노련에서는 정영숙여성국장등이 참석하였다.

하나로 축제에서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들은 임투승리를 다짐하였다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문

1천2백만 노동자의 거센 저항과 상당수 기업의 비현실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임금억제가 유일한 목표인 총액임금제는 계속 우리 노동자들을 조여들어 오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정부는 총액임금제의 반노동자성과 부당성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그 대상업체를 축소하는 미봉책을 구사하였으나 기본적인 임금억제의 도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총액임금제가 노동자의 생활을 바닥에서 떠나미는 장기적 임금억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박탈키 위한 공세의 일환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총액임금제의 완전분쇄를 위한 우리의 입장과 행동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기치하에 1천2백만 노동자와 함께 불굴의 투쟁을 일사불란하게 전개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다 음

- 총액임금제는 전노동자에 대한 빈곤임금억제이며 임금체계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말살는 위헌적 정책인을 선언한다.
- 우리는 총액임금제폐지를 위한 공투성 투쟁의 주제로서 5월 20일 쟁의신고와 6월 1일 쟁의발생을 전조직 적극적으로 시 전개한다.
- 우리는 실질노동시간 단축 및 인권한 작업장 보운동을 동시 전개하여 노동의 인간화를 달성한다.
- 우리는 총액임금제 강요하는 노동자에 근로의욕 상실이 직결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생산성 저하의 책임이 정부와 자본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총액임금제 철회의 방안을 강구하여 이제한 부당개입도 거부한다.
- 우리는 총액임금제에 대한 각 지역의 임투프로그램 철폐 투쟁에 적극적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는 모든 기업이 총액임금제 철폐를 단호히 거부, 노사자율 및 자율체제 구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국민과 소득계층 축소를 위해 금융실명제 도입 및 토지공개념 확대와 조세제도의 개편을 촉구한다.
- 우리는 성과배분제 도입에 앞서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보장과 완전한 주식공개의 실시를 촉구한다.

1992년 4월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중앙집행위원 · 중앙위원
총액임금대상사업장 노조대표자 일동

주장

동시쟁의신고 · 쟁의돌입으로 임금억제 돌파하자!

총액임금제분쇄투쟁이 나날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 4월 22일 정부는 총액임금 대상업종을 재조정하였다. 이는 총액임금제 지체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시인이며 그간의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에 따른 일정한 양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양보라는 성격보다는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의 여봉을 무디게 하고 노동자의 분열과 고립화를 우구하는 우회적 전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총액임금제의 가장 핵심적 폰심은 임금억제이기 때문이다. 설사 총액임금제가 한편 철회되더라도 새로운 유형의 임금억제정책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때문에 총액임금제대상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와 투쟁자세가 포괄이라도 흔들려서는 안된다. 현재의 노동부지침 자체를 보더라도 우리 금속산업의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은 총액임금제 출범관리 사업장에서 벗어나더라도 총액임금에 의한 임금억제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노동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노동부 정책을 강요하는 이중 플레이의 과거 사례들을 쉽 때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에 전념하고 있는 특권은 일선이 공개되다 우리가 총액임금제 분쇄하지 못한면 '92임투는 제에할 수 없어 없으며 나아가 93년도에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 실시될 것이고 아울러 정부와 노동법 개악시도가 공비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총액임금제 분쇄투쟁에 성공하게 되면 '92임투도 성공하게 될 것이고 노동탄압개정투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겐 총액임금제 분쇄의 길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 금속노련은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해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지역별 집회, 전투 및 지역본부의 방송중심과 노동부 방위방문, 전조원회 서명운동등을 전개해왔다 이들 투쟁은 시사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동시 파업을 향해 나가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 개최된 폰노련 중앙집행위원, 중앙위원, 총액임금대상업체 노조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정부의 임금억제동결 동의 여망으로 분쇄키 위해 오는 5월 20일을 기해 미타협 노조가 일제히 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그에도 타결되지 않을 경우 6월 1일을 기해 쟁의에 돌입하기로 공식 결의했다. 문제는 결의가 아니라 폰노조가 얼마나 단결되어 나올 가지고 이 결의를 이행하느냐이다. 만일 이 결의가 모든 노조에서 이행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결의는 실행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커다란 압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와 입법에나 기업주들의 회유에 빠져 이 결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결국 웃음거리에이 되지 않을 것이고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실행에 옮긴 노조와 그렇지 못한 노조간에 분열이 심길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실행을 하지 않은 노조에 정부 경찰부와 조합원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이다. 동시쟁의발생신고, 쟁의돌입이라는 수단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강점도 되고 약점(오)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굳이 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보이는 임금억제전선을 돌파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금속노련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이발없는 참여를 간곡히 당부해야지 않는다.

총액임금제 기필코 분쇄할터

경기지역본부 결의대회

폰노련 경기지역본부(의장 이형팔)는 4월 16일 오후 2시 금속노련 경기도본부 대강당에서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는 식전 행사로 풍물패의 풍물과 금성전선 노동조합 풍물패의 풍물과 노래가, 성동노련 이원보 기획실장의 총액임금제폰쟁과 분쇄에 대한 강연에 이어 본 행사로 이어졌다.

폰협사는 금속노련기가 입장한 후 하명일의장의 대회사, 폰노련 박인상위원장의 대회 격려사,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강영섭 부의장의 연대사가 있었으며 '92임투승리를 위한 기본방침 선포와 투당노동탄압 및 쟁의대책요원 위촉상 전달 및 선서 결의문 제택과 구호, 노동가 제창으로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경기지역 조합대표 및 간부 5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총액임금제를 분쇄하고 92임투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경기지역 조합원의 강한 의지표현이었으며 이번 반노동자법에서는 비롯도 전체 노동자가 궁게 단결하여 대처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92임투승리 결의대회 가져

포항지역 본부

폰노련 포항지역본부(의장 박종부)는 4월 18일 오후 3시 포항종합운동장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액임금분쇄 및 '92임투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드거운 열기로 진행되었는데 금속노련 지역본부 기념사, 정부의 지난기에게 보내는 메세지낭독, '92임투승리를 위한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폰노련 포항지역본부 금속조합원들은 결의문에서 총액임금제를 분쇄하고 '92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포항지역 금속노동자들은 굳게 단결하여 선봉에 서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하였다.

총액임금반대 거리홍보

부산지역 본부

폰노련 부산지역본부 박거식회장을 비롯한 22명의 조합대표자들은 4월 24일 오전 7시부터 부산 서면일대에서 출근시민을 대상으로 총액임금반대 거리홍보를 가졌다.

거리홍보는 부산지역 각 산업별로 진행되었는데 거리홍보를 마친 후 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정태만 폰노련 부위원장) 회의실에서 총액임금 분쇄 대표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방침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산지역 임투결의대회

폰노련 경남지역본부 양산사무소(의장 김동군)는 4월 11일 오후 3시 양산 공설운동장에서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2임투승리 결의대회를 거행하였다.

정부의 총액임금제를 분쇄하고 92년 임투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대회선언문, 대회사, 격려사, 축사에 이어 노동탄압분쇄 및 총액임금제 반대 결의문과 임투승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임투승리 및 총액임금제 분쇄 결의대회로 전국 금속노동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92임투승리 쟁취!

인천노총, 본노련 인천본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의장 이병오)는 4월 16일 오후 2시 인천공설운동장 아구장에서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액임금제 분쇄와 '92임투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폰노련 인천지역본부(의장 박영호)와 함께 이번 결의대회는 노래패, 풍물대동놀이, 노동가 제창, 구호제창에 이어 선봉기 입장, 노총본부위원장의 대회사와 박홍근 노동위원장의 격려사 등 비롯하여 서울지역본부 외상장 현대시장 결의문 채택등으로 이어지면서 고조된 열기속에 총액임금제는 기필코 분쇄하자는데 결의를 모으면서 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 중 금속노동자는 약 3,000여명으로 임투승리와 총액임금제 분쇄에 대한 금속노동자의 또거운 열기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항지역본부 철야농성가져

폰노련 포항지역본부(의장 박종부)는 4월 16일 포항지역본부사무실에서 조합대표자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액임금제 반대 철야농성을 가졌다. 폰노련 1일 철야농성과 노동부항의 방문지침에 따라 행해진 이번 농성은 18일 총액임금분쇄와 '92임투승리결의대회를 앞두고 포항지역 금속노동자들의 결의를 다지는 농성이었다. 조합대표자들은 농성을 마친후 17일 노동부를 방문하여 총액임금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부의 임금억제 정책을 강력히 항의하였다.

노동탄압분쇄! 총액임금제 철폐!

경남지역본부

폰노련 경남지역본부(의장 전선수)는 4월 24일 오후에 노동복지회관 대강당에서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결의대회를 가졌다.

경남지역 금속조합원 400여명이 참가한 결의대회는 제선수석장의 대회사, 연명 김장선 수석부위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92임투승리를 위한 기본방침 선포와 결의문 채택에 손으로 진행되었다.

결의문은 '92임투승리결의문과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총액임금제철폐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이어 구호와 노동가제창으로 막을 내린 대회는 폰노련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노동탄압분쇄와 총액임금제 철폐 그리고 '92임투승리를 위한 지지역 노동자들의 의지를 결의해온 것으로 이번 경남지역대회는 마산과 창원 등 노동탄압이 극심한 지역중의 하나이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총액임금제 분쇄하자!

총액임금제 분쇄!

전남본부 결의대회

폰노련 광주·전남지역본부(의장 정기춘)는 4월 7일 14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교육장에서 조합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액임금제 분쇄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정부의 총액임금제 강행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자가 일치단결하여 총액임금제를 분쇄하고 '92임투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대회선언문, 대회사, 격려사, 축사에 이어 노동탄압분쇄 및 총액임금제 반대 결의문과 임투승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임투승리 및 총액임금제 분쇄 결의대회로 전국 금속노동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금속 만평

서울지역본부

'92임투승리 및 총액임금제분쇄 결의대회

폰노련 서울지역본부(의장 김규서)는 4월 11일 오후 2시 구로공단 가톨릭회에서 노총구로지부(지부장 조간동 삼성화스나노조 위원장) 외 임직 '92임투승리 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전진대회는 금속노동자를 비롯하여 각 산별 노동자 1천여명이 참가하여 92년 임투승리 및 총액임금제 분쇄를 결의하였다.

대회는 폰노련 서울지역본부 문화선봉대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열기를 뜨겁은 후 시작되었는데 식전행사는 총액임금제를 강요하면서 노동자의 생존을 억압하려는 노동부의공세에 쓰러질다 다시 일치게 일어나는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상징하는 공연으로 마무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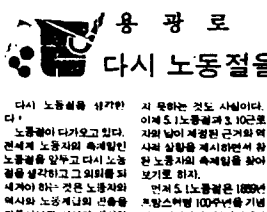

폰협사는 대회가 열 단위 조합기 입장에 이어 조합동지부장의 대회선언문, 강규석의장의 대회사, 폰노련 박인상위원장의 격려사, 문선대공연, 성명서 및 결의문 채택으로 막을 내렸다.

폰노련 박인상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정부의 총액임금제는 근거도 없는 노동자 압살책이며 경제위기 등을 운운하여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전가하려는 얌체만 수작이다. 우리 노동자가 굳게 단결하여 정부의 반노동자적 만행을 분쇄해 나가자"고 역설하면서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어렵게 열기가 가득한 것을 보니 올해 임투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용 광 로

다시 노동절을 생각한다.

다시 노동절을 생각한다!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다. 전세계 노동자의 축제일인 노동절을 앞두고 다시 노동절을 생각하고 그 의의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노동자의 역사와 노동계급의 존재를 자랑이고 그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아직도 우리 노동절을 관련된 행위라고 못했다는 부끄러움 때문이리라.

3월 10일 소위 근로자의 날이라는 정부의 임명행사가 있에 다른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공방은 올해도 계속되었다. 그것과 더불어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쟁과 근로자의 날 사이에서 일방적인 선언을 하고 노동절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5.1노동절과 5.10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근거와 역사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참된 노동자의 축제일을 찾아보기로 하자.

먼저 5.1노동절은 1889년 프랑스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파리에서 제2인터내셔널을 제건하면서 1889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8시간 노동, 8시간 교육, 8시간 휴식의 3대 목표를 중심기 총파업 단결 시위로 정하한 사실을 기념하여 매년 5월 1일을 세계노동자의 연대일로 하기로 결의한 데서 시발되었다. 일시 유럽 및 미국등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있던 나라의 노동자의 실참은 노예보다 더 궁핍한 상태였다. 초기 산업자본주의는 노동력의 착취에 의한 자본축적이 기본이었고, 기계공업이 발달하면서 자본가는 더 많은 효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용을 줄이고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연대의식을 갖고 집단적인 시위를 하게되었고 이미 100여년 전에 유럽의 노동계급 주장 정하하게 되었고, 이는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노동자의 날로 지정 전세계의 노동자들은 자금까지 노동절(May day)을 전세계 노동자의 연대일, 축제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가두 연대 우리나라의 노동자급의 형성과 역사적 진출을 보자. 우리나라의 대한노동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강점으로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일본제국주의 자본은 식민지 이윤획득을 위하여 전쟁 시기에 노동자급의 연결과 노동강도를 강화하였다.

5·1 노동절 (May day).

전세계노동자연대의 날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연대의식을 갖고 집단적인 시위를 하게되었고 이미 100여년 전에 유럽의 노동계급 주장 정하하게 되었고, 이는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단결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노동자의 날로 지정 전세계의 노동자들은 자금까지 노동절(May day)을 전세계 노동자의 연대일, 축제일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는 부채으로 노동생활의 노동세력의 진출을 억압하였고 노동세력은 선제 부시민지 세력과 연합 민족의 독립운동을 수행하게 된다. 1945년 해방 후 노동세력은 그동안의 억압에서 벗어난 사회세력을 가졌던 전국적인 단일세력화에 성공하게 된다. 이것은 일제하에서도 노동자의 조직이 공입업이 사회의 역사의 주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미군정의 3년간 통치 이후 남북이의 단독선거로 노동세력의 진출을 두려워한 외세 외존재인 지본가 세력은 노동조합을 정부의 영향아래 두려고 노력하였고 실제로 노동세력이 분리와 되지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에 제정 관여하게 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날 지정은 1958년 10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노총 제1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경의제에 다루어졌던 1959년 3월 10일(이날은 대한노총 창립일이다)을 제1회 근로자의날로 한 것을 정부가 1963년 4월 17일 법률 제1326호로서 근로자의날을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 지금까지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초기 대한노총의 실격과 생성문제는 되지 않더라도 5·16쿠데타 이후 정부가 3월 10일을 근로자의날로 지정 제정하였던 것은 노동조합의주체로 여겨지 않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생일이라 할 수 있는것은 노동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노동자의 생활은 힘겹고 고달프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해야하고 고통 및 휴식은 요원한 지경이다. 100여년전 이미 8시간의 노동을 쟁취한 날을 기념한 이래 한 세계 노동자의 축제일인 것이다.

일남이제를 위한 출범일 기념 행사, 산업안전 위보, 8시간노동 환원행사 이렇듯 많은 행경위를 한고 있는 우리 노동자가 정부의 억지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 우리의 노동생활 되찾고 노동자의 자주적 진출을 쟁취하자.

휴해는 노동절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떠오르다. 그동안 노동자의 단일한 권리를 위해 투쟁한, 그리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전세계 노동자를 생기하여 휴해 노동절을 힘인게 맞이하자!

전세계 노동자여 단결해라!

총액기준5% 인상강요의 문제점

1. 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노사간의 합법적, 자율적 임금교섭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자주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듯 헌법에 보장된 권리법사를 굳이 정부 부처가 규제하려 한다는 사실은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훼손시키는 성격이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법에도 명백, 특히 노동부가 노사간의 합법적이고 자율적인 임금교섭에 개입하여도 좋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정부가 총액 5%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제3자개입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불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총액임금제는 임금체계를 개악시킨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기본급 및 각종 수당들으로 복잡해진 이유는 정부가 무리하게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지방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생무정책을 통보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공무원 등의 임금인상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이 계속되는 한 연쇄적인 임금인상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임금체계는 개선될 수 없다. 이는 총액 공무원의 임금인상이 잘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 3) 항 참조)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첫째,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총액임금제는 근로소득을 모두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임금 교섭을 벌이자는데 목적이 있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의 체계를 통제할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는 데서 나타났듯이 총액임금제는 임금체계를 개선하여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둘째, 노동부는 "임금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임금수준 이상의 기업이윤이 발생하면 성과분배 관행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한다"라고 한다. 성과분배 상여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이며 따라서 임금체계는 악화 개악될 것이다.

셋째, 노동부에 따르면 "변동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현물급여(식사대, 피복제공 등), 사전퇴직 위로금 등은 급여(공로금, 위로금, 계약속하금, 공고유지, 판매실적 등에 따른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장려금, 일·숙직비, 부상 또는 저하증자로 회한 아픔) 등은 총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주택구입자금 및 사원임대주택 건설확대, 자녀학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증액, 식사대를 후생비 총액 등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급의 비중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면으로 볼 때,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이 계속되는 한 임금체계의 쇄국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3. 총액임금제는 기업간 임금격차를 한층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부는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고임금 부문의 임금이 안정되고도 억제되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임금제를 일세운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이 공무원도덕로 권장되다면,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임금격차가 확대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처임금인 감계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도덕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이 5%로 억제된다면 대기업에 비해 경영상태가 취약하고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역시 동가상승률에 크게 못미치는 임금인상이 강제될 수 밖에 없는 반면, 대기업은 성과배분과 상여금이나 현물급여, 후생급여 등 편법적 임금인상을 실시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선정한 대상기업체를 보면, 처임금 업체와 고임금 업체의 구별이 불분명한 채 규모만 가지고 선정되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체가 거의 동일하게 총액 5%로 비공표다면 인상률 산정의 기준이 되면 총액의 차이는 50%에도 보다 확대될 것이다.

기업규모간 임금격차가 생기고 상대적 고임금인 대기업이 그 부담을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에 전가시키거나 제품가격에 전가시켜 중소기업 노동자와 소비자인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는 고임금 업체와 노동자 임금억제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제일 허구의 경제성장과 대외의존적 개방경제에 변화하지 않는 한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실정이 감춰져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하나는 산별노조체제와 하향이다. 산별단위의 공통교섭이야 말로 현단계에서 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책임는 대한이다. 그러나 정부는 산별노조체계의 하향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처임금업체의 경우 자율교섭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임금격차가 생기는 데서 발생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동일 임금교섭을 하고, 가능에 단체교섭을 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1년내내 시종적으로 조합임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고 따라서 조합원의 참여 및 비조합원의 조직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왔다. 그러나 총액기준으로 타결될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는 많이 관심을 집중하기가 힘든 사항을 제선하기가 부의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7. 공무원 임금인상 총액임금제 적용으로 배치

1) 총액임금 평균 1991년 4천원인 공무원의 1992년도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16.2%

노동부발표는 지난해 7월 12일 '92년부 공무원과 정부출연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액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여 또한 10월 25일에는 "총액임금제를 도입해 평균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동결, 100만원부터 200만원인 경우는 5% 인상, 50만원 이하의 저임금 계층에서 100만원까지는 10%선에서 임금을 올려하고, 50만원 이하의 저임금 계층은 5%선에 맞추어 임금인상을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스스로 솔제가 한 5%인상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하위직은 17%인상, 고위직은 23%인상 - 허두상적원칙 정면으로 위배

(표)에서 나타나듯이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16.9% 임금이 인상된 반면 상위직 공무원의 경우 무려 23.8%나 인상되었다. 이는 총액임금제 도입의 이유 중에 하나인 임금격차 완화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표) 일반직 공무원 월급현황표

(단위 : 천원 %)

	91 년		92 년		인 상 율	
직 급	기본급	월급여총액	기본급	월급여총액	기본급	월급여총액
2급 20호	916.0	2.101.7	1.002.5	2.602.2	9.4	23.8
4급 19호	719.5	1.693.5	786.5	2.068.6	9.3	22.3
6급 15호	503.5	1.190.6	552.5	1.355.7	9.7	17.2
9급 13호	387.5	955.8	423.0	1.117.5	9.2	16.9

* 자료 :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91.12.31) 공무원 수당규정 총계정령(91.12.31) 정책지침원 「1992년도 예산 편성기준」

3) 공무원 월급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 낮아짐 - 임금체계 개악

그동안 정부는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외적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 낮추기 위해, 기본급은 한자리수 인상하는 대신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늘려으로 신설 총액에 넣기 때문에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0%로 전산업 평균인 60.3%에 크게 미달하는 40%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표)에서 보다시피 92년에도 공무원의 월급여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43.6%에서 37.9~38.7%로 악화되고 있다. 이는 총액임금제를 통해 특권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정부의 총액임금제 목표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표) 공무원 월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

	91 년			92 년		
직 급	기본급	월급여총액	기본급비중	기본급	월급여총액	기본급비중
2급 20호	916.0	2.101.7	43.6	1.002.5	2.602.2	38.7
4급 19호	719.5	1.693.5	42.7	786.5	2.068.6	38.3
6급 15호	530.5	1.190.6	42.3	552.5	1.355.7	38.6
9급 13호	387.5	955.8	40.5	423.0	1.117.5	37.9

* 자료 : 앞의 (표)와 동일

4. 총액기준 5% 임금인상은 제조업 인력난을 가중시킨다

노동부는 "서비스업체가 제조업체에 비하여 임금이 계속 높게 상승하다면 제조업체가 계속 뒤어려워 질 수 있다. 공동화 현상, 경쟁력 상실 등이 심화될 것이며 따라서 총액임금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선정한 총액임금제 대상 사업장을 살펴보면, 서비스산업보다 제조업체가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특히 허유사업 114개, 산업 산업 25개, 토탈관속, 기계 및 장비 236개 업체 등 저임금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경우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임금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 똑같이 5%로 임금인상이 된다면 인상비율을 같은 퍼센지라도 그 액수에 있어서는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총액임금제는 제조업 인력 문제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산업별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수

	전산업	농림업	광 업	제조업	서비스업	공단법
사업체수	1.305	5	9	628	559	104
비 율	100%	0.4%	0.7%	48.1%	42.8%	8.0%

5. 총액기준 5% 인상시 노동자간 갈등초래

노동부는 총액임금 5%인상을 가지고도 하루상상 원칙을 적용하면 처임금노동자의 임금은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인상시 조직분열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동결로 5%인상시 최저임금 받는이 더 적나를 것은 물론 고임금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말 것이다. 또한 5%의 적용으로는 현실적으로 하루상상을 적용하기가 쉬운 일이다. 그러므로 총액임금제는 처임금 업체에 대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 수 없다.

6. 단체협약 교섭의 무력화

현재 많은 노조에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하고 있다. 이는 단체협약의 경우 임금과 관련된 수당이나 상여금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항, 기타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등 매우 광범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교섭기간이 길어져 노사 쌍방이 효과적인 임금교섭을 하기 힘들고 따라서 소정의 기간내에 임금협약을 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임금협약은 1년단위로 체결하도록 한 반면, 단체협약 교섭은 1년 혹은 2년단위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교섭창구를 둘이고자 이를 분리시켜 체결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외도대로 총액기준으로 교섭을 할 경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동시에 타결되게 되고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사항은 결국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단체협약 교섭의 외외가 박탈되고 말 것이다

총단결 투쟁으로 무력화 시켜야

총액임금제는 분명한 임금억제 정책

도 미달하는 그때서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이상의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총액임금 5%인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4. 왜 5%인가 - 근거없는 강요에 불과한 5%

정부는 외년도 총액임금제 실시와 관련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도 없이 5%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하다못해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총수가 대통령에게 제공한 자금에도 부족하여 충당키라는 말뿐이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역사상 가장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나라 제일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일도가 낳은 정부 통계에 의해도 외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9.7%이었으며, 92년에도 최소한 9%가 예상되고 있다. 만한 한국경제는 외년 8.6%가 성장하였으며, 92년에도 최소한 7%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성부의 5%인상 강요는 한국경제의 발전성과를 모두 제일 및 일부 부유층에게 갖다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일부마저 갖다 바치라고 강요한 것에 다름아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교섭이 무력화되는 것은 앞은 문제가 생기는에 비나해 노동조합으로서는 동에 임금교섭을 하고, 가을에 단체교섭을 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1년내내 시종적으로 조합임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고 따라서 조합원의 참여 및 비조합원의 조직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어 왔다. 그러나 총액기준으로 타결될 경우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 등 노동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는 많이 관심을 집중하기가 힘든 사항을 제선하기가 부의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7. 공무원 임금인상 총액임금제 적용으로 배치

1) 총액임금 평균 1991년 4천원인 공무원의 1992년도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16.2%

노동부발표는 지난해 7월 12일 '92년부 공무원과 정부출연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액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여 또한 10월 25일에는 "총액임금제를 도입해 평균 총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동결, 100만원부터 200만원인 경우는 5% 인상, 50만원 이하의 저임금 계층에서 100만원까지는 10%선에서 임금을 올려하고, 50만원 이하의 저임금 계층은 5%선에 맞추어 임금인상을 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스스로 솔제가 한 5%인상의 허구성을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하위직은 17%인상, 고위직은 23%인상 - 허두상적원칙 정면으로 위배

(표)에서 나타나듯이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16.9% 임금이 인상된 반면 상위직 공무원의 경우 무려 23.8%나 인상되었다. 이는 총액임금제 도입의 이유 중에 하나인 임금격차 완화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표) 일반직 공무원 월급현황표

(단위 : 천원 %)

	91 년		92 년		인 상 율	
직 급	기본급	월급여총액	기본급	월급여총액	기본급	월급여총액
2급 20호	916.0	2.101.7	1.002.5	2.602.2	9.4	23.8
4급 19호	719.5	1.693.5	786.5	2.068.6	9.3	22.3
6급 15호	503.5	1.190.6	552.5	1.355.7	9.7	17.2
9급 13호	387.5	955.8	423.0	1.117.5	9.2	16.9

* 자료 :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령(91.12.31) 공무원 수당규정 총계정령(91.12.31) 정책지침원 「1992년도 예산 편성기준」

3) 공무원 월급 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 낮아짐 - 임금체계 개악

그동안 정부는 한자리수 임금억제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외적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 낮추기 위해, 기본급은 한자리수 인상하는 대신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늘려으로 신설 총액에 넣기 때문에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40%로 전산업 평균인 60.3%에 크게 미달하는 40%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표)에서 보다시피 92년에도 공무원의 월급여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40.5%~43.6%에서 37.9~38.7%로 악화되고 있다. 이는 총액임금제를 통해 특권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정부의 총액임금제 목표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표) 공무원 월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

	91 년			92 년		
직 급	기본급	월급여총액	기본급비중	기본급	월급여총액	기본급비중
2급 20호	916.0	2.101.7	43.6	1.002.5	2.602.2	38.7
4급 19호	719.5	1.693.5	42.7	786.5	2.068.6	38.3
6급 15호	530.5	1.190.6	42.3	552.5	1.355.7	38.6
9급 13호	387.5	955.8	40.5	423.0	1.117.5	37.9

* 자료 : 앞의 (표)와 동일

4. 총액기준 5% 임금인상은 제조업 인력난을 가중시킨다

노동부는 "서비스업체가 제조업체에 비하여 임금이 계속 높게 상승하다면 제조업체가 계속 뒤어려워 질 수 있다. 공동화 현상, 경쟁력 상실 등이 심화될 것이며 따라서 총액임금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선정한 총액임금제 대상 사업장을 살펴보면, 서비스산업보다 제조업체가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특히 허유사업 114개, 산업 산업 25개, 토탈관속, 기계 및 장비 236개 업체 등 저임금 사업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경우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임금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 똑같이 5%로 임금인상이 된다면 인상비율을 같은 퍼센지라도 그 액수에 있어서는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총액임금제는 제조업 인력 문제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산업별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수

	전산업	농림업	광 업	제조업	서비스업	공단법
사업체수	1.305	5	9	628	559	104
비 율	100%	0.4%	0.7%	48.1%	42.8%	8.0%

5. 총액기준 5% 인상시 노동자간 갈등초래

노동부는 총액임금 5%인상을 가지고도 하루상상 원칙을 적용하면 처임금노동자의 임금은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인상시 조직분열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동결로 5%인상시 최저임금 받는이 더 적나를 것은 물론 고임금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말 것이다. 또한 5%의 적용으로는 현실적으로 하루상상을 적용하기가 쉬운 일이다. 그러므로 총액임금제는 처임금 업체에 대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 수 없다.

6. 단체협약 교섭의 무력화

현재 많은 노조에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하고 있다. 이는 단체협약의 경우 임금과 관련된 수당이나 상여금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항, 기타 노동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등 매우 광범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교섭기간이 길어져 노사 쌍방이 효과적인 임금교섭을 하기 힘들고 따라서 소정의 기간내에 임금협약을 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임금협약은 1년단위로 체결하도록 한 반면, 단체협약 교섭은 1년 혹은 2년단위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교섭창구를 둘이고자 이를 분리시켜 체결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외도대로 총액기준으로 교섭을 할 경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동시에 타결되게 되고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사항은 결국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단체협약 교섭의 외외가 박탈되고 말 것이다

2) 불특정 사업장도 실질수 존재 - 정부가 임의나 무계획하고 마구 잡이로 규모에만 의존하여 총액임금제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는 것은 여기저기 중복된 사업장도 다수 존재하다는 사실이다.

10. 총액임금제는 어떠 무너지고 있으며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정부에서는 총액기준 5%인상을 지키지 못하고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및 여신규제등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으나 현재 총액임금제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지난 2월 초 나경원 현대도시개발 스포츠단이 19.6%로 타결되었으며, 경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수의 약 70%가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이 실효가 없어 임금교섭이 예측시기고 임금인상률 보다 더 높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임금에서 16.2%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타나게 노동조합에서는 정부의 허구적 임금억제정책을 보게 되어 이는 이에 강하고 있다.

이런 모든 점으로 볼 때 일부 정부 및 통제위원회는 : 정부산하 기업체나 공기업을 제외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총액임금제가 정부와 외노대로 관철되기 가능성은 희박하다

11. 사후 조사는 협박에 불과할 가능성이 많다

노동부는 임금인상이 끝난 후 사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노동부 인력 감축에 의해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사를 실시할 능력이 없으므로 기업의 보고에 따를 수 밖에 없고 보다 중요한 이유는 기업주들이 지시의 임금법나가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제주도에서 전호수회 및 열린 92년도 노임협의실무위원회에서 사용에 참석했던 30대 제벌그룹과 일류선도기업의 기조실장 등 대부분은 총액임금제가 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효과에 "노동자의 노동생활을 뒤흔들 것이다"라는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한겨레신문 11.30)

이와 같이 정부의 임금억제 위한 총액임금제 실시 반대

표 : 주요산업별 총액 임금수준 및 적용사업체수

산 업 별	500인이상 총액임금	500인이상 사업장수	노동부회 정 대상 사업장수
전산업	754.355	1.470	1.305
광 업	652.180	19	9
제조업	669.331	710	628
섬유, 의복 및 가죽	440.136	184	114
목재나무제품	545.947	16	16
화합물, 석유, 석탄, 고무및플라스틱	747.833	81	95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	722.302	272	236

* 자료 :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0년 (한국경제연구원) 보 3.18.일시

에 기업주들이 공식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동의지만 이러한 입금격차 노동에 대한 기업주 개입의 반대는 반한이 있기 때문에 노동부의 사후 조사가 동정 및 그에 기초한 제재 가능성은 여전과 마찬가지로 희박에 근접 가능성이 높다

꽁트 봄날의 외침

김사장은 참 착으로 보이는 공단공원을 보며 깊은 상기에 잠겨있었다. 퇴근도요일 오후라 그런지 공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꽃을 즐기고 있었다. 김사장은 그들을 내려다 보면서 당에 한모금을 빨음에 또 내뿜었다. 그리고 시선을 멀리 하이얀 콘크리트를 보았다.

김사장은 어릴적부터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다. 정고한 아버지 밑에 인지한 어머니의 자상함속에도 항상 정직이라는 단어가 친구라을 가지고 따라다녔다. 이러한 가정환경속에서 김사장의 생활은 모두이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모범적이었고 대학을 졸업하여 사업을 하는 지금까지도 변에게 칭찬소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었다. 가끔 다른사업을 하는 대학동창생 모임에서 친구들의 사업이야기 [illegible]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illegible] 김사장은 예상했다. 놓이 부표정하게 들고만 있었다. 소상은 노동부장관이 소신있는 분이며 우리 노동계도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가게 되었다며 최이라고 칭찬한후 중에임금제이말로 노동자의 사용자 모두 참되는 합리적인 임금제도라 말씀이고 강조하였다. 김사장은 마음속으로 '이친구는 전형적인 관리군'이면서도 소상의 허치를 생각하고는 좋은분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는 뭔인한 기분이 서서히 올라오며 김사장의 앞은 자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었다.

이윽고 소상은 결론만 [illegible] 이렇다

"공단에서 김사장이 제일 문제라고를 말했다. 다른 사장들은 문제가 없는데 김사장 이번에는 저를 봐주는 거지요? 이번에 좀 봐주십시요. 이번 한그루만 세무조사를 강하게 해달 겁니다. 이건 장관님의 소신이지요. 세무조사. 그거 무섭습니다. 일어서 먼저 아니는거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하여간 이번에는 진짜로 할 것 같습니다. 전 이 피보지 마시고 이번에는 저를 도와주십시요."

김사장은 순간 눈을 질그리며 소상을 바라보았다. "도와달라는 말이지요. 뇌물이라니요?"

그렇게 자리는 어색하게 마무리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김사장은 괴롭지도 못하는 술을 제법 많이 마셨다.

다시 시선을 공단공원으로 돌린 김사장은 어제의 일을 곰곰히 떠올려보았다. 나는 어지것 정직하게 살아왔다. 세무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소장의 말은 세무조사를 하면 모두 걸리고 사업하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 하는것이 세무조사라 말인가? 또 정부의 국세청은 그런 방세를 압면서 폭인한다는 말인가? 세무조사를 무기로 기업하는 사람들의 목을 죄고 두 사람들은 공공연히 뇌물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김사장은 다시한번 당혹연기를 내뿜었다. 입금 한 자리에게보다 무서운것이 정부의 사상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럼 나는 뭔가?"

한참을 곰곰히 생각하던 김사장의 눈에서 갑자기 광채가 생이게 나왔다. 몸을 한채에 부르르떤 후 김사장은 참부를 한 얼어제꼈다.

"나는 내식으로 산다!"

"총예임금제 필요없다!"

"정부나 사장이나 다 도둑놈들이다!"

의원은 꽃바람을 타고 공단전체를 껴안아 돌았다.

연맹 각부서 주요활동

총 무 부

정기대의원대회 30년사편찬위원회구성 및 회의소집
소위원회 개최
회계감사 수령

조 직 부

노동조직 담당자회의 참석
대의원정년 전수조사
노동법 명사순이
전국연합의원대회 대의원 배정회정
경기본부 임투결의 대회참석

노사대책부

단체협약본부
노동위계정 소위원회참석
총예임금제관련 부장대책미팅
임투시리즈 발간(3)
총예임금제대상 노조워원 상회의
지역본부의장 회의

교 육 부

노동관계법 토론회 참석
여러규속노조 교육지원
노동교육원의 토론회 참석
금성전선노조 교육지원
화신제작소노조 교육지원
코리아스파이서노조 교육지원

국 제 부

SMU 방한팀 대우중공업노조 방문
한한도지원 사업에 관한 제정 및 활동보고서 송달
제8회 IMF이사이사위원회 참가단 선정 및 홍보

여 성 부

노동여성위원회 창립주년 기념행사 참석
고용문제 토경위원회 참석
노동여성국회의 참석
스그네릭스노동조합 하나로 축제 참석

우리조합노보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89년 노동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절 부활이 공식 결의됨에 따라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도 절해 30년동안 지켜온 노동자들의 설움이 사실상 절단설됨이 되어 버렸다! 노동계의 정절으로 써오고고 있다.

노동에서는 90년부터 국회에 청원을 하여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산하노동단체와 단위노조에 지시를 하여 3월 10일 근로자의 날 행사에는 일체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노동조합에서도 90년, 91년 2년동안 5월 1일 메이데이를 노동자들의 설입로 정하고 기념하여 왔으나 종종사 및 그룹사, 인근사업장들이 모두 3월 10일을 휴무로 함에 따라 업무외 연관성등을 고려,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3월 10일에 휴무를 실시하게끔 되었다.

89년 노동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절 부활이 공식 결의됨에 따라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도 절해 30년동안 지켜온 노동자들의 설입이 사실상 절단설됨이 되어 버렸다! 노동계의 정절으로 써오고고 있다.

노동에서는 90년부터 국회에 청원을 하여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산하노동단체와 단위노조에 지시를 하여 3월 10일 근로자의 날 행사에는 일체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노동조합에서도 90년, 91년 2년동안 5월 1일 메이데이를 노동자들의 설입로 정하고 기념하여 왔으나 종종사 및 그룹사, 인근사업장들이 모두 3월 10일을 휴무로 함에 따라 업무외 연관성등을 고려,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3월 10일에 휴무를 실시하게끔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과 노동계의 정책이 심하게 엇갈리자 각 기업체에서는 3월 10일과 5월 1일을 놓고 분치를 보이기에 결정을 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정상가동에도 상당한 차질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계 입장에서는 최소한이라도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노동절과 근로자의날을 통합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인데에 대해 각종 매체들에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 때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들의 주의 불만이만 증폭시킬 것이 분명하다.

노동등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근로자의 날 행사에 수상자만 내 보낸데 정상근무를 하여 근로자의 날 자체는 계속 외면하고 있고, 노동산하 단위노조를 상당수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현상을 보아고 있어 제아등 기타 노동세력을 포함하면 거의 반평도가 5월 1일을 휴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와 경제과 노동계의 정책이 심하게 엇갈리자 각 기업체에서는 3월 10일과 5월 1일을 놓고 분치를 보이기에 결정을 하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정상가동에도 상당한 차질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계 입장에서는 최소한이라도 인력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노동절과 근로자의날을 통합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에 대해 각종 매체들에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 때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들의 주의 불만이만 증폭시킬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강요는 말도 안돼 노동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2년동안 실시해오던 상임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외구심을 자아내기는 했으나 사회적분위기에 무조건 여행만을 할 수 없는 기업의 특수성으로 (종종사 및 관련업체) 부인연결되기는 해도 5월1일을 꼭 되살아야 한다는 노동계의 의지가 있는 한 내년부터라도 다시 반복될 소지는 다분히 있다.

때마다 노동계와 정부와의 소모전 양상으로 치달고 있는 근로자의날 상임논쟁은 노동자들이 진정한 노동절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주장을 펴는 반면 정부에서는 1958년 공산당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공식제정된 노동절이 공산주의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어 중립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89년 이후 전국적으로 반복상임이 계속되자 어느 특이는 하나로 통일으로 보고 있으나 정부와 노동계의 주장이 상사의 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자의 날의 파행적 운영은 당분간 계속 되어질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은 해방직후에 최초 5월 1일로 정해졌다가 48년에 특별과 소요사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금지시켰으며 53년부터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근로자의 날을 정하여 기념해 오고 있다.

이후 정부에서는 63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3월 10일을 근로자의날로 공표하고 헌법에 삽입시켰다. 그러나 89년 이후 노동을 위시한 노동계에서 5월 1일 노동절부활 움직임이 공식화 되자 정부에서는 '메이데이(5월 1일)가 노사간의 임금협상 시기에 맞물려 있고 이것이 경제, 사회와 연계되어 각종 파업등을 도화선이 되고 있다. 며 계속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근로자들의 실질은 근로자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는 정부론에 밀려 사실상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어 왔다.

이러한 사실로 볼때 정부에서는 이미 노총산하 전체 조합원들의 대다수(90%)가 근로자의날 대신 노동절에 휴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일방적인 주장만을 내세울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상각해 보는 여유도 가져야 되리라고 본다.

경제당연에 있어서는 자본, 기술, 기업정신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들의가치도 무시할 수는 없는 사실도 알아야 하겠다.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끌어 온것의 상당부분이 노동자들의 주야

한마디 두마디

○ 요즘 대권경쟁이니 정당이니 해 가면서 신문지상을 온통 뒤덮는 모양이네. 그 놈의 대권이 뭐이길 그리고 대권수 지만 5년 이미 대권이 주어져에 떠어지는 것지 요즘 선거후보들을 보실가, 오로고 기업은 도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 여간 심지6K, 부동 대단한 양반들이이

○ 총선결과가 놓고 정부여당은 뭐임이이 대두되고 있는 데 서로 책임회피를 해서 국민들이 논쟁. 결과 이 당연히 국민의 찾아고 제일은 국정심제에 있는 건 당연 한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미 3당이합합 때부터 결과는 뻔한 것. 바리지도 김지만 그래도 입을 벌 삼벌이 나오에라도 꼭 한말지

○ 총선제일 계간, 노동부장관은 임금이제하에 계속 유임. 총예임금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소신있 임 여관이는 하이 필요 본생. 계속 소신이이가 하지만 놓고 계시다. 여러 나라들이 대는 방법 하나하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오는지. 이미 총예임금제에 대한 전국민적인 거부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 노동자들도 폭을 좀 겁고 분배를 결의하고 있는 것을 아니 지 모르는지 설마하니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반이나 되는 노동자의 설은을 제멋대로 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상세가 심히 격상되는 것은 제인지 모르겠네

○ 총예임금제로부의 임투승리를 위하여 연맹과 각 지역본부가 동상에 들어간 것을 놓고 모세에서는 말이 많은데, 양반들이 그럼 제도인에는 금속업체가 가장 앞고 또 금속연맹은 노동운동의 선봉인데 담당하지, 말도 안되는 것거리를 3번씩 그럼 고쳐고쳐 따라 들을 않았나 당신들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노동자들은 많이 한되는 여거지에는 한대하는 일고 뭐임에는 저 항하를 아는 사람들이이 담당하게 돌아온 것을 몰비모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야? 아무리 세상이 대충대충 넘어가는 세대지만 좀 심은에 빠졌지.

단위조합소식

정기대의원대회

4월 1일 쌍용정공노동조합

체육대회

4월3일 대한제강노동조합
4월25일 대아기계노동조합

현판식

4월25일 대아기어노동조합

축하합니다

4월18일 동양기전노동조합
오리온제과노동조합

4월19일 한국이화노조박상신위원장결혼
4월28일 대우중공업조합원6명합동결혼

조합원총회

4월 1일 기영산업노동조합
4월 4일 삼우기계노동조합
국동금속노동조합
4월14일 삼도기전노동조합
4월16일 도화부품노동조합

결성 신규가입

4월13일 보성산업노동조합
4월19일 한국제리스노동조합

기 타

4월11일 동성물산노조위원장선거(박철국위원장당선)
4월17일 동화공업노조임투출범
4월18~19일 한수전자노동조합기획기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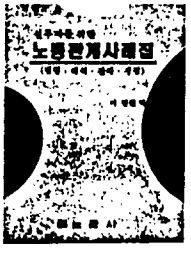

상설해년간의 노동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쉬운 설무사례를, 이해의 수월성은 「근로에 성월의 희망」의 목표기분으로 보여진다

저자 [illegible]
38쪽
값 12,000원
노문사출간

운동의 과학화는 업무의 전산화로부터!!

노동조합업무 체계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노기연 1.0」개발

과중되는 상무로부터의 해방!
업무의 전산화·효율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노기연 1.0」으로 이제 노동조합은 정책개발과 조합원 조직화에 더욱 많은 역량을 투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기연 1.0의 구성〉

노기연 1.0
조합원관리 | 회계관리 | 문서관리 | 경영분석

◆ 노기연 1.0사용으로 이러한 효과를 ◆
1. 조합원관리의 효율화, 비로소 정확한 업무처리로 조합활동이 강화된다!
2. 용이한 예산의 편성과 지출과 계획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3. 자료의 분석의 체계화로 조합의 정책역량 높일 수 있다!
4. 경영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어 업무의 고성능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다!

「노기연 1.0」으로 업무의 혁신을!!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 연구상담소
(문의전화 : 859-6256, 851-3489)

Ⅱ. 홍보선전교육

- 일시 : 1991. 11. 19~1991. 11.21
- 장소 : 성프란치스코의 집
- 참석 : 전국60명
- 교육내용 :

노조운동의 현단계와 금속노련 운동방침	김장선 연맹부위원장
노동조합과 홍보선전활동	조성준 노총홍보실장
노동조합 기관지	최대열 노총홍보부장
신문제작 기초	〃 〃
기사작성 요령 및 실습	〃 〃
단결의 시간	문광주 연맹여성부장
기타 선전활동 및 실습	홍보부
편집이론 및 실습	차성진 한겨레신문기자
그림연습	박홍렬 만화작가
노동가 교육	문광주 연맹여성부장
노조간부의 자세	정영숙 연맹여성부장

Ⅲ. 성명서등 발표

1991. 8.15 : 광복절을 맞이하여 구속노동자의 전면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
11.29 : 자동차 부품업체 토론회 보도자료 배포
1992. 3.19 : '92임투결의대회 보도자료 배포
4. 8 : 총액임금제 분쇄 1일 농성 보도자료 배포

광복절을 맞이하여 구속노동자의 전면석방을 촉구하는

성 명 서

민족통일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뜨겁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91년도 광복절에 즈음하여 우리는 현재 억울하게 구속되어 고초를 겪고있는 구속노동자를 민족화합차원에서 정부가 전면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돌이켜보건데 6공화국이 사상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돌입한 89년이래 어느 한시기라도 노동자가 구속되지 않은 날이 있었던가? 6공화국이 내건 민주화의 약속은 노동탄압과 노동자 구속으로 얼룩지고 변질되어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 구속이 너무나 당연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구속하겠다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것인가? 정부는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주에 대해서는 벌금 몇푼과 경고등의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에게 사형이나 같은 부당해고를 항의했다는 이유로 구속 처벌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마음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법적 구제명령이 내려도 따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과연 이들 악덕기업주들을 엄벌하여 법의 권위와 형평을 지키려 했는가? 또한 정부는 오늘의 산업사회문제를 전부 노동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온갖 폐단과 문제는 노동자에게 있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오늘날 누구도 인정하고 있듯이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선성장 후분배의 허울좋은 구호하에 장시간 우리 노동자를 억압하고 수탈한 결과였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스스로 노동자 보호정책을 외면하고, 대화로 노사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인 노동3권까지도 완전히 짓밟았다. 이것을 과거지사라고 강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정부와 기업주가 유착하여 더욱 대규모 더욱 노골적이고 지능적으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다수의 기업들이 정부의 노동탄압을 이용하여 자주·민주적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폭력, 고소, 해고, 손해배상청구등을 자행하고 있고, 정부는 자주·민주적 노동조합 파괴와 노동자의 노예화를 위해 탄압지침을 남발하고 합법적 쟁의사업장까지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석상에까지 경찰을 난입시켜 노동자들을 연행해가고 있으며 노사자치주의를 무시한 불법개입을 도처에서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구속노동자들이 노동탄압정책의 희생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면서 정부가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 구속노동자들을 전면석방할 것과 아울러 노동탄압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의 노동탄압정책이 철회되지 않는한 제2의, 보다 강력한 노동자 대투쟁이 불가피하리라는 것을 천명해둔다.

1991. 8. 1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Ⅳ. 기타 홍보물 제작배포

○ '92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 대표자 결의대회 팜플렛

- 1992년 3월 20일
- 1,000부 제작

○ '92임투 포스터

- 1992년 3월 20일
- 5,000매 제작
- 각 지역본부에 배포(단위노조당 3매)

'92임투승리

경제위기 노동자 전가 음모,
일부역겨 노동시장 정책저지!

노동탄압 분쇄!
생활임금 쟁취!
총액임금제 반대!
노동조합 정치활동 쟁취!
연대강화 공동투쟁 완전쟁취!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 대표자 결의대회

일시 : 1992년 3월 20일(금) 14 : 00
장소 : 한 국 노 총 대 강 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2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결의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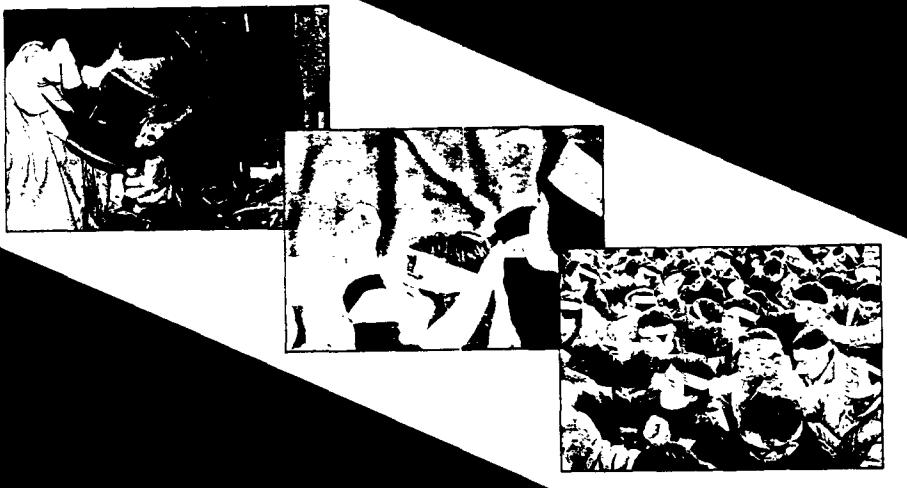

일시 : 1992년 3월 20일
장소 : 한국노총 대강당

대 회 선 언 문

'89년이래 우리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권과 자본측의 사상 유례없는 대탄압은 이제 노동측의 굴복을 요구하는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끝없이 전개되고 있는 경제위기론과 노동자 책임론을 무기로 삼아 국민에 대한 노동진영의 고립화를 획책하고 있으며 휴일삭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삭감, 변형근로제 및 파트타임제 도입등 노동법 개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고 총액임금제를 통해 총체적인 임금억제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30분 일더하기 운동으로 노동강도 강화를 획책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 확고히 서서 불편부당한 재판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사법부 일부는 노동운동방향 전환을 강제키 위한 정치재판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요건완화 판결로 자본측의 용이한 노동통제를 도모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언론은 진보와 진실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상당수 부패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탄압의 선전도구로서 그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례없는 물가폭등은 우리 노동자들의 실질생활을 저 암흑의 시대로 다시 후퇴시키고 있으며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난을 절대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다.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포기는 부동산투기를 촉발, 생산의 근간인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한 반면 향락산업의 급성장을 도모, 사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범죄의 급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저호황의 성과물은 장래를 위한 기술투자로 전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와 정경유착등에 소진되어 오늘의 경제위기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정권과 자본측은 자기들의 실책과 무능과 부패를 추호도 반성치 않은 채 오히려 전쟁터와 같은 산재왕국의 산업현장에서 피땀흘려 잔업, 철야를 감내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후안무치의 반노동자적 작태를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를 구속·해고하고 공권력을 동원,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묵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사회·경제발전은 노사간 주체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노사 모두가 정성과 창의를 다 할때 성취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권력과 자본은 노동조합 분쇄, 노동자 노예화로써 자기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우리 1,200만 노동자는, 그리고 노동자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금속노동자는 권력과 자본측의 반민주적·반민족적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불굴의 정신으로 민주의 역사를 기록해온 노동자의 정신으로 어떤 탄압에도 굴복치 않고 노동자의 권익쟁취와 노동탄압분쇄 및 민주사회 정착을 위해 단결된 총역량으로 투쟁·진군할 것이며 탄압과 공세가 총집중될 '92년도 임투전선을 강력한 투쟁력으로 돌파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굳건히 세워나갈 것이다. 총단결! 투쟁! 완전쟁취!

1992년 3월 20일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대 회 순 서

제 1 부

13 : 30～14 : 10 식전행사

14 : 10～15 : 00 강연회(숭실대 경제학과 조우현 교수)

제목 :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제 2 부

15 : 00～16 : 00 개회선언

- ㅇ 금속노련기 및 지역본부기 입장
- ㅇ 국민의례
- ㅇ 대회선언문 낭독
- ㅇ 대회사
- ㅇ 국제금속노련(IMF) 연대사
- ㅇ '92임투승리를 위한 기본방침 선포
- ㅇ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대책요원 발대식 선서
- ㅇ 정부 및 각 정당에 보내는 메시지 낭독
- ㅇ 결의문 채택
  - '92 임투승리를 위한 결의문
  -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문
- ㅇ 폐 회

대 회 사

이 자리에 모이신 전국의 대표자동지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92 임금인상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기본권 사수라는 절박한 과제를 기필코 실현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구 및 소련의 사회변화, 남북의 화해교류확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세계질서 재편 등 권위주의와 물리력이 지배하던 시대가 쇠퇴하고 자율과 민권이 존중되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짓밟히고 억눌려 있던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대중이 탄압과 억압을 뚫고 역사와 사회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서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역사의 변화와는 정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세계 자본의 위기는 외세의존의 국내독점자본의 위기를 심각하게 하고 있으며 독점자본은 이 위기를 노동자의 탄압과 수탈강화로 극복하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집권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역사의 강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건설자, 역사의 창조자인 노동자와 근로대중을 무시하는 사회발전의 반동행위이며 자멸을 재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그동안의 물리력 일변도의 탄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도적 이념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부터 자행해 온 일더하기운동, 정리해고요건 완화, 시간제근로도입, 해외인력수입, 총액임금제실시 등 각종 이념공세와 제도적 장치는 노동자와 국민을 이간시키고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는 간악한 행위입니다. 또 물리적 탄압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노동자가 수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대표자동지 여러분!

우리는 사회와 역사의 발전을 위해 해야할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경제위기론과 임금억제론의 근거는 완전한 허구임이 드러났으며 현재 우리 사회의 혼란과 불안의 원인이 정치권력과 자본의 부도덕과 부패에 있다는 것은 전국민이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3당 야합으로 자행되는 정치권력의 횡포는 추곡가로 농민을 짓밟았으며 국제적인 대세로 ILO에는 가입하였지만 노동악법을 온존시켜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국민을 대표하는 기능을 상실했으며 사법, 행정 모두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권력유지와 자본의 보호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적투자보다는 부동산투기, 경영의 내실화보다는 권력과의 뒷거래를 위한 낭비에 쏟아부으면서 성실히 노동하는 노동자에게 내핍을 강요하고 노동에 의해 창출된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가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며 국민들간에 망국적 위화감을 자랑스럽다는 듯이 조성하

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올 임금인상 투쟁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나날이 뛰오르는 물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주거불안을 떨쳐내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의 몫을 당당하게 주장합시다.

동지여러분 !

모든 것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와 자본은 우리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도 악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정치진출을 막기위해 정치적무관심을 유도하고 경제적 관심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악행과 모순은 정치권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을 며칠밖에 안남겨 두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와 근로대중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아 노동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 줍시다. 이는 올 임투에서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자들의 득세는 우리 노동조합에 치명적인 탄압을 가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될때 우리 노동자의 생존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무관심을 털어 버리고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때 진정한 노동승리의 날은 올 것입니다.

전국대표자동지 여러분 !

올해 임금교섭도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지 못한 정부 · 자본은 억지논리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와 폭력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우리 금속노련은 이러한 탄압을 물리치기 위하여 올 임투를 공동투쟁의 기조하에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탄압의 예봉을 둔화시키고 조합원들의 자신감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투쟁의 원칙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92년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를 통해서 임투승리를 확신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결연한 의지, 공동투쟁으로 노동조합의 재도약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다집시다.

임금을 둘러싼 우리의 투쟁은 단순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인상투쟁은 우리사회를 건실하게 만들고 진정한 민주화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 동지들의 건투를 빌며 이만 대회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3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 인 상

'92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 대표자 결의대회

1992년 3월 20일 FKMTU(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결의대회에 보내는 IMF(국제금속노련) 연대메시지

친해하는 박인상 동지, 그리고 금속 노동자 동지들!

본인은 1,600만 국제금속노련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귀 노련 1992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에 연대인사를 보냅니다.

전세계의 금속노동조합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경제 및 사회정의를 위한 귀국 금속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임금을 획득하기 위한 한국금속 노동조합 연맹의 투쟁 노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와 자본가 측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당한 경제적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富)는 노동자들이 일으켜 세운 것으로, 과소비와 부동산 땅 투기, 증권시장 조작이나 정치적 공작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합법적 노조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정부, 공권력, 그리고 자본측의 계속적인 탄압은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987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대한 민주적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지금 그 성과물은 붕괴되고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자유가 조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귀국 노동자들을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정부가 세계민주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주요 ILO 협약들을 비준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적 권리와 경제적 정의가 보장되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아시아의 주요 공헌자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노동조합이 정부 및 사용자측의 탄압없이 그들의 정당한 주장들을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 북아메리카, 그밖에 아시아와 세계 모든 곳의 금속 노조들은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및 그 조합원들과 대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 노련의 이번 결의대회가 성공리에 끝나 '92년도 임투에 커다란 활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2. 3. 10

국제금속노련(IMF) 사무총장 마르셀로 말렌타키

금속노련 '92임투기본방침

1. '92년도 임투를 둘러싼 정세는 어떠한가?

1) *국제정세의 변화*

사회주의권이 효율성의 상실과 관료주의적 경직적으로 인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빈부의 격차등 자본주의 모순의 체계내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단행함으로서 자본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모 이로인해 세계시장이 자본주의 단일시장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국, 북한, 쿠바 등 잔존 사회주의권의 모험주의가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서 국제사회에 있어 분쟁의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EC의 경제통합이 정치통합으로 발전할 경우 EC는 세계경제 · 정치의 주도세력으로 복귀할 것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경제통합으로 북미단일 경제권이 강력하게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르과이라운드와 다국적기업의 경우 UR협상의 연내타결 가능성의 증대는 세계경제가 급속히 지역중심의 블럭화 추세라는 측면과 또다른 세계경제의 단일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거대기업의 영향력이 초국가적으로 급격히 증대할 것이다. 미소양극체제의 붕괴와 일본, 독일의 영향력 증대로 다원주의가 가속화, 이데올로기의 퇴조와 경쟁력에 의한 지배강화 그리고 미국경제의 어려움을 일본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권의 부상 및 EC의 경쟁력 강화와 동구권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는 세계전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나 국가간 이해 갈등으로 국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다.

2) *국내정세 상황*

6 · 29선언 이후 민주세력이 성장하고 있으나 60년대 개발독제의 영향으로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3당합당으로 인해 정치세력이 보수화되고 있고 민주화의 부진과 민생불안으로 사회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정치적 무관심만 야기시키고 있다. 한편 경제적 상황으로는 경제, 사회민주화가 절대적으로 부진하여, 경제력 집중이 긴박한 상태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등 낙후부분이 위축될때로 위축됨으로서 국민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계층의 증가, 주택난의 심화는 사회적 유동성을 격감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국의 지가를 GNP 대비로 9~10배에 달하여 세계적으로 지가가 높기로 유명한 일본의 3~4배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것이다.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자본시장 개방과는 무관할 정도로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건인 금융실명제는 수차례 연기된채 실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기술개발은 여전히 기업활동에서 그 비중이 낮게 취급되고 있어 국제경쟁력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예전에 물리적 또는 획일적인 방법으로 노동탄압을 해오다가 최근들어 한계단 발전된 방법으로 노동자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방법으로는 경제위기와 노동자 책임론, 노동자의 과소비 주장, 고임금론 및 3D기피론, 임금억제정책으로는 성과급제도입, 변동상여금, 인센티브 상여금제 도입, 총액임금제, 직능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변형근무제, 파트타임제 실시, 군인력 투입, 해외인력 수입등으로 회사가 필요할시 언제든지 충성하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특히 해고규제완화등의 지침으로 노동조합 조직력과 교섭력 약화시키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

2. '92년 임투의 방향은?

1) *주 44시간으로 최저생계비 확보를 하여야 함*

우리 노동자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노동력의 단순한 재생산에 요구되는 충분한 비용이 되어야 하며 노동자 가족의 생활수단을 확보함으써 세대에 걸쳐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건전한 문화소비생활을 누릴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국민경제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제역할을 마음놓고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의 내수기반, 저축으로 인한 국내저축의 기반확충으로 인한 경제발전 육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대표적인 임금인상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의 노동력을 원가로써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최소한 15%는 쟁취되어야 한다*

'91년 소비자물가 10%선 육박하는 문제와 UR협상으로 인한 경제개방과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생활의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92년 임투를 앞두고 정부는 5%로 1,434개 업체를 총액개념으로 묶으려 하고 있고 경총에서도 4.7%선을 제시하는 등 전 사업장에 한자리수 임금인상으로 몰고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공무원 임금인상 16.2% 수 및 '92년 물가인상분 정도는

노동자가 보상을 받아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부와 사용자간에도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금은 생활비인 것이다. "아무리 임금인상을 해보아야 집값과 물가를 잡지 못하면 헛일"이라는 인식이 노동자들 사이에 자연히 확산되고 있다. 임금이 아무리 오른들 생활에 드는 비용이 그 이상으로 올라버린다면 임금이 오히려 깎이는 결과가 되고 만다.

노동자들은 임금 몇푼 올리기 위해 별의별 수모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고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라느니 심지어는 "임금인상과 노사분규가 경쟁력 상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동지들이 해고와 구속자를 속출해 내고 있다.

그런데 물가와 부동산 가격은 너무도 쉽게 올라가 버리고 만다. "돈 만원짜리 가지고 시장 가봐야 살것이 없다"고 아우성 들이다.

이 어렵고 절박함을 우리 노동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92년 임투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총단결로써 대정부와 사용자들과 투쟁하여 최소한 15%의 임금인상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임금구조 및 임금제도 개선투쟁을 해야한다*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이다. 즉 노동자가 그 가족과 함께 정상적으로 생활유지 하는데 드는 재생산 비용이라고 한다면 기업은 어떠한 임금형태이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의 역할을 올바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은 제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생산직 임금차별 철폐 둘째, 직능급 도입반대 셋째, 성과배분제도 적극적인 반대투쟁 넷째, 단일호봉제 실시 다섯째, 총액임금제 반대투쟁으로 '92년 임투를 마무리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생산직 임금차별 문제는 정부의 임금정책에 있어서 실질적인 면을 추구하여야 하며 동일학력의 생산직 임금과 사무직 임금, 동일학력 동일노동의 남녀임금을 같게 한다.
- 토요격주제에 문제는 주 40시간으로 개선으로 해야하는 기로에서 토요일을 격주로 하면서 특근을 강요당할 우려와 노동시간이 길어질 염려로 생산성 저하 및 산업재해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토요격주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 파트타임제 도입과 군인력, 해외인력을 기업에 투입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정부는 각성하고 기업에 적용할때 사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4) *복지후생제도의 신설 및 확충을 해야한다*

노동자가 복지제도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직접적인 화폐임금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것은 다시말하면 직업의 안정을 확보하는 일이라 이렇게 중요한 복지제도를 기업은 교섭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주의 온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제도의 부족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은 자연감소되는 것은 물론 애사심이 없어지고 개인주의의 팽배등 의식개혁의 저해요인으로 부각되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에서 사택, 기숙사, 기타 사소하게 기본적으로 있어야할 부분외에는 노동자가 만족할만한 복지후생제도가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같이 요구한다.

- 기업내에 복지확충을 이유로한 어떠한 임금억제논리는 임금인상과 관계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천명하고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는 하지 말라.
- 정부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가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라.
-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부채질할만한 요소들을 없애고 노동자가 정상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라.
- 기업은 기업내에 복지기금을 확대하고 조합원들이 살수 있는 사원아파트를 건설하며 주택조합 설립 융자지원 체계와 전세기금 및 내집마련 자금을 장기상화느 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해줄것을 요구한다.
- 작업장내에 유해, 위험요소들을 없애고 산재를 당한 조합원이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마음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 및 제도를 확충하라.

3. '92공동임투는 왜 해야하는가?

'80년대이후 노동운동이 지속되어 오다가 지난 89년부터 공안정국의 시련안에서도 굳건히 대처해 왔으며 '90년의 골리앗투쟁, KBS투쟁, '91년말 현대자동차의 상여금투쟁을 거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듯 했으나 각 단위조합의 개별적인 대응은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인 압력에 역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뼈저린 체험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92임투를 맞이했지만 역시 극심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92공동임투는 이 어려움을 뚫고 우리의 노동력의 댓가를 위한 유일황 방법이 바로 공동임투밖에 없음을 인식한 결과이다. 이는 기업별 노조의 힘보다는 연대의 훨씬 크다는 일반적인 논리와 함께 정권과 자본에 대처하고 있는 개별노조의 격파방식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다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

쟁의지도요원 선서

우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대책위원으로서 '92년도 임투의 성공적 수행과 금속노동자의 굳센 단결 및 금속연맹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맡은 바 지역에서 책임과 성의를 다하여 부당노동행위를 분쇄하고 교섭과 쟁의를 성공적으로 지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2년 3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대책위원 일동

정부 및 각 정당에 보내는 메시지

우리 전국의 금속산업 노동조합 대표자일동은 '92년도 임금교섭을 앞두고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산업현장의 생산주체인 노동자들의 절실한 현실을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노동자들은 현재의 사회혼란과 경제난국의 궁극적 책임은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방지한채 기득권 유지를 위한 파행적 정국운영과 자본과의 부도덕한 유착과 야합에 빠져있는 정부 및 정당에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 민주적 권리회복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 및 각 정당은 현재의 혼란과 경제난국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작태를 즉시 중지하고, 노동자의 임금억제를 시도하고 있는 총액임금제를 즉각 철회하여 노동정책의 중립성, 형평성을 기하므로써 노사자율적 교섭분위기를 조성하라.

셋째, 정부 및 각 정당은 총선 정국을 맞이하여 공명선거 실천을 촉구하며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공공요금과 독점가격을 견제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ILO가입을 계기로 노동관계법종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악법조항을 즉각 철폐하여 노동법의 정신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정부는 노동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무분별한 폭력적 투입은 산업평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며 결국 노동자의 격렬한 저항만을 축적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공권력에 의한 노동쟁의진압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다 구속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정부와 각 정당은 기업주의 각종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리확대를 위한 기업단위의 생산적 투자, 노동자의 생활향상을 위한 건실한 근로의욕 고취와 내적성장 잠재력을 유도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올해 총액임금제등 임금억제 정책을 즉각 철폐할것을 강력이 촉구한다.

우리 전국의 금속산업 노조대표자들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이 사회를 부정과 부패, 투기와 부도덕의 늪에서 건져내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로 만드는 최소한의 기본조건임을 밝히며, 정부 및 각 정당에 대해서 다시한번 오늘의 현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의 주장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원인 노동현장에서 생산주체로서의 모든 노력과 결연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2년 3월 20일

'92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92 임투승리를 위한 결의문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경제위기론등의 이데올로기 공세, 노동집약적 사고방식의 구태의연한 방법인 총액임금제 실시, 파트타임제 · 해외인력수입 · 군인력을 제조업에 투입등 노동시장의 불공정성 등으로 노동자를 무참히 짓밟는 정치, 경제관료들의 자의적이고 편협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루 말 할 수없는 모멸감과 분노를 느끼며 이러한 자행을 시정시키고 그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지난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8.6%로 대만 6.9%, 홍콩4.8%, 싱가폴 7.0% 보다 나은 고도성장을 이루어왔고 '92년에 들어서자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의 신3저 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총에서는 4.7%, 정부에서는 총액개념으로 5%를 넘을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반노동자적 작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및 대선을 '92년에 치뤄야 하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등으로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갈 것이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노동자가 허리띠를 졸라매어도 년초부터 공공요금 인상과 3월에 들어서 서비스요금까지 오르는 기미를 보여 한자리수로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물건너갔지만 이것도 노동자가 책임지라는 말은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반민주적이고 구태의연한 정부와 경제단체의 작태를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92임투를 기하여 노련을 중심으로 지역, 지구를 중심으로한 공동임금인상 투쟁으로 강력히 대처하여 노동자가 단결하면 어떠한 탄압도 물리칠 수 있다는 진리를 엄숙히 경고하고 금속노동자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려는 5%이내 임금억제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 · 사 자율적인 임금교섭을 최대한 보장하라.
2. 우리는 정부의 총액임금제의 허구성이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논리로 경제위기가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임금억제 기도를 과감히 분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기필코 쟁취한다.
3. 기업은 지금까지 물가폭등과 경기둔화로 인한 노동자의 가계수지 압박, 노동자의 주거불안 등의 현실이 기업의 이성을 잃은 반사회적인 부동한 투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철저히 반성하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과 주거안정을 보장하라.
4. 우리는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의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임금인상의 악재요인을 강력히 대처하여 최저생계비 쟁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노총에서 주장하는 물가 억제선을 동시 주장하며 '92임투승리로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의 확보, 주택문제 개선방안,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 복지후생의 신설 및 활동에 만전을 기한다.

1992년 3월 20일

'92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문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를 탈환키 위한 권력과 자본측의 노동탄압은 날로 그 잔혹성과 비민주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91년도말, 문명국의 진입을 위한 ILO가입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3자합의 원칙은 내팽겨진 채 권력과 자본측의 일방적 공세만 계속되고 있다. 총액임금제의 실질적정책인 노동법개악시도, 공권력과 언론의 노동자 포위, 법원의 반동자적 판결등 부지기수의 신종노동탄압수단이 우리 1,200만 노동자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다. 또한 92년도 개시와 함께 현대자동차 파업을 초강경 진압함으로써 권력과 자본측은 지배자의 무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1,200만 노동자의 선봉에 선 우리 금속노동자는 노동운동은 권력과 자본측의 혹독한 탄압속에서 강인한 단련과 불퇴의 정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여왔다는 것을 가슴뜨겁게 시작하면서 92년도 임투를 둘러싼 탐욕적 탄압을 우리의 총단결로 완전분쇄하고 침탈되어가는 우리 노동자의 권익을 결사적으로 수호해낼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다 음

1. 정부는 반노동자적 노동탄압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
1. 정부는 노동탄압의 제물로 구속된 구속 노동형제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 !
1. 정부는 노사자치를 완전확립하고 일체의 편파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
1. 정부는 모든 노동악법을 전면 철폐하고 노동법개악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
1.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기업주를 구속, 강력 응징하라 !
1. 사법부는 반노동자적 판결을 철회하고 엄정중립성을 철저히 견지하라. !
1. 기업은 산업평화 파괴의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
1. 우리는 1,200만 노동자의 권익쟁취와 노동권 수호투쟁의 선봉에 서서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승리의 그날까지 총진군한다.

1992년 3월 20일

'92임투승리 및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전국대표자 결의대회

노동조합의 임금정책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조우현 교수

제 I 장 임금체계의 개선방안—직능급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임금체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드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87년 이후 임금인상이 각종수당 및 상여금 위주로 인상됨에 임금체계가 복잡하여져 총액임금제의 도입을 통해 수당의 신설, 증액을 줄임으로써 임금체계의 단순화와 합리화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경총은 종전의 연공급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직능급제의 도입을 통하여 연공급 임금체계의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총액임금제는 노동부 및 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직능급제 도입방향은 경총 뿐만 아니라 최종태, 박준성 등의 학계의 연구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총액임금제의 명분으로는 고임금기업과 저임금기업간의 임금격차의 확대를 막겠다는 임금의 사회적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고, 직능급제 논의의 명분으로는 기업내에 능력있는 자와 없는 자간에 임금격차를 두어야 한다는 개인적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章에서는 직능급제에 대한 논의에만 국한하도록 하겠다. 총액임금제에 대해서는 Ⅶ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직능급제는 1990년 포항제철이 처음 도입함으로써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한국전자에서는 1991년에 도입하였고,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금성사, 인천제철 등에서도 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철의 사례를 기초로 하여 경총은 연공급 위주의 기본급중 70%를 연령근속중심의 생활급(본봉) 호봉표를 작성하되 본봉은 전사원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기본급의 30%를 직능급으로 하여 직능등급별 호봉표를 만들어, 인사고과에 의해 직능등급 호봉임금표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총은 직능급체계가 어느정도 성숙되면 노사간의 자율적 조정에 의하여 생활급과 직능급의 비율을 현재 일본과 같이 60 : 40 으로 직능급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직능급제의 '수출국'인 일본의 임금체계의 성격 그리고 내용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왜곡화의 실상, 경총의 임금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노동운동이 취하여야 할 임금체계 개선방안 등을 차례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1. 일본 임금체계의 본질

1) 직능자격제의 개념

직능급제란 급여등급 혹은 직무수행능력등급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資格昇格과 사원→주임→계장→과장 등의 직위상의 승진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직위승진을 분리 운영하여, 직위승진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직위가 부여되지 않는 대신 직무수행능력 향상정도에 따라 (대체로 근속, 경험, 연령, 능력, 업적 등과 연계된다는 의미에서 연공형을 약간 개조한 것이다) 승격기회를 부여하여 급여상의 처우를 개선시켜주는 제도이다. 연공형 임금구조에서는 임금의 상승은 직위승진에 크게 의존하는데, 회사내에 승진되는 직위는 한정되어 있고 직위승진대상자는 많을 경우,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직위승진자와 비승진자간에 현격한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근

속에 따라 처우개선이 되지않는 불만계층이 생겨나며, 열심히 일하거나 능력을 발휘하는 자 대신에 무사안일하나 요령있는 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 회사내에 인재육성에 큰 애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직위승진이 없더라고 능력에 따라 자격승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위승진자와 능력있는 직위비승진자간의 현격한 임금격차가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 연공형임금제에서는 요청되어 왔다. 임금을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한 직능등급에 연계시키는 것이 직능급제이며 이는 연공형, 서열적 인사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유용성을 갖는다. 결국 직능급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은 직능자격제도이다.[1)]

직능자격제의 기본구조는

i)직위체계 (사무직의 경우 일반→계장→과장→차장→부장 등의 기업통제구조, 생산직의 경우는 일반생산직→반장→조장→주임→기성보→기성의 승진체계)와 분리되어 운영되는 직무능력 위주의 자격제도를 설정한다.

ii)직무능력 위주의 자격제도는 여러가지 형태로 일본에서 전개되었는데 기본적 골격은 직능자격 명칭을 〈그림 1－1〉 과 같이 둔다.[2)]

---

1) 박준성 『직능자격제도의 이해』 한국경제신문사, 1990,p.95－96.

2)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직능자격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1990, p.11. p.23.

〈그림 1-1〉

NSC	NKK	
이사보	部長格	
참 사	課長格	
참사보	係長格	
담당주사	主 管	
주 사	主 事	
주담당	主 務	(대졸)
담 당	擔 當	(고졸)

iii) 〈그림 1-1〉에 나타난 것은 일본 NSC(신일본제철), NKK(일본鋼管) 회사의 직능자격명칭이다. NSC의 직능자격명칭은 생소하지 않으나 NKK에서 채택하고 있는 직능자격 구분 중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등급인 담당, 주무, 주사, 주관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3)]

<표 1-1 > 직능자격요건

직능구분	요 건
주 관	-업무처리의 대강에 따라 고도의 지식, 기획력, 판단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단계 -작업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단계로서 특히 고도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전자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능력단계
주 사	-업무처리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실무경험 및 지식, 판단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단계 -공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단계이며 고의 기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전자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능력단계

3) 최종태 「철강산업의 인사제도」, 서울대출판부, 1990, p.93.

직능구분	요 건
주 무	－업무에 익숙하여 상사 또는 상위자의 포괄적인 지도사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응용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단계 －기능에 익숙하여 상사의 포괄적인 지시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직능구분 '담당'의 기능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단계
담 당	－상사 또는 상위자의 개별적 또는 구체적인 감독, 지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단계

iv) 일본의 직능자격제도의 기본원리를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면 <그림 1－2>와 같다. 직능의 등급을 A B C D E F G 7단계로 나누고 각 등급은 더욱 세분화된다. 예컨대 A등급은 A1에서 A5로 나뉘어진다. 한 노동자가 회사에 채용될 때 그의 학력에 따라 시작하는 등급이 다르다. 고졸자는 A－1급, 대졸자는 B－1급에서 시작하는 것이 관례이다. 고졸자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후 공식적인 인사고과후 A1급에서 A2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A등급에서 B등급으로의 승급은 노동자가 작업 또는 현장훈련을 받고 공식적 인사고과를 통과한 후에 이루어진다. 더 높은 승급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등급은 뛰어넘을 수도 있다. 반면 노동자의 직능이 뛰어나지 않은 경우, 각 등급에서 정해진 최대체류연수가 정해져있어 그 기간이 경과되면 그 노동자는 예컨대 C등급까지 승급할 수 있다(어느 등급까지 승급할 수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나 감독직 직전의 등급까지 승급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직능이 뛰어난 사람은 감독직으로 승진하며 동시에 승급이 이루어진다. 직능이 뛰어난 사람수에 비해 승진될 감독직위가 적으면 그 사람은 직

위상승이 없더라도 직능자격등급에 있어서 승급이 계속 이루어진다. 즉 등급 D는 보통 계장직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젊은 계장과 계장직을 갖지 않으나 D등급에 속한 나이든 노동자가 동시에 등급 D에 있을 수 있다. 또한 D-3등급의 계장과 E-3등급의 계장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그림 1-2 > 직능등급제

A~G : 직능등급

S1,S2 :공식적 인사고과에 의한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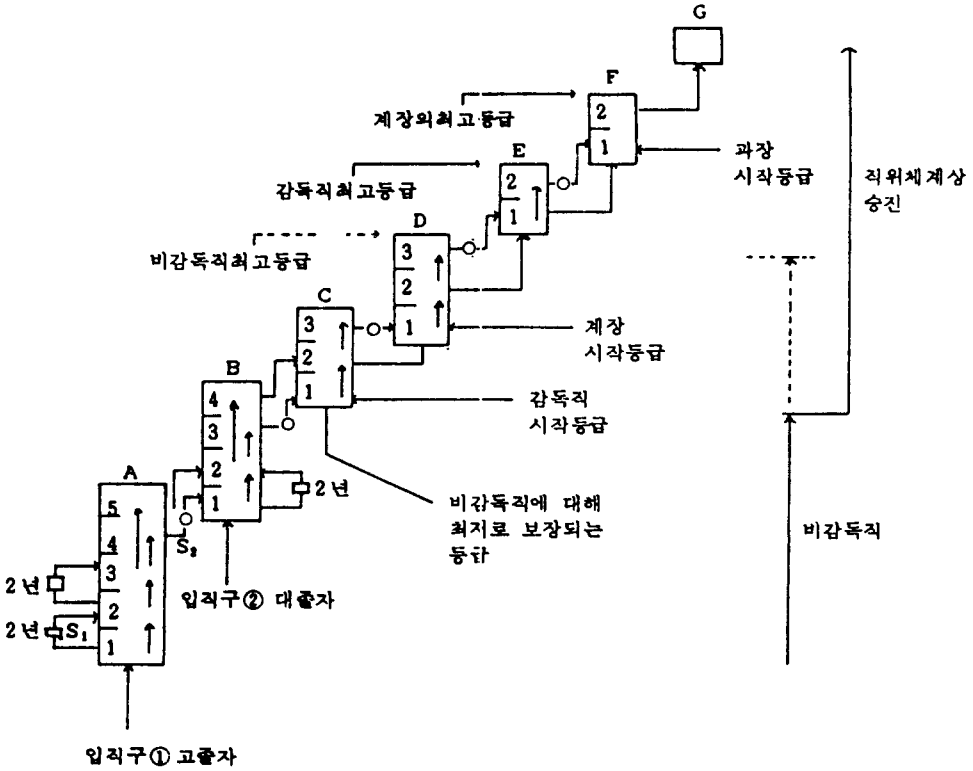

이 제도의 목적은 연공급 하에서 능력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공식적 인사고과를 통하여 직능등급과 임금을 연계시킴으로써 모든 노동자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직능급이 연공급을 代替하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본의 임금제도는 여전히 연공급에 강조점을 두며 일본 노동성의 Policy Planning and Research Department의 1987년 조사에 의하면 직능에 강조점을 두는 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는 전체의 37.2%, 연공급에 강조점을 두는 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회사는 전체의 61.5%였다. 5000명 이상의 대기업에 있어서도 전자는 46%, 후자는 53%로 나타났다. 즉 연공급에 강조점을 두는 회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동일한 조사에 의하면 연공급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전 근로생애에 걸친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노동시장에서 인력난으로 초임급이 상승함에 의해 전 연령에 걸친 임금이 자동적으로 상승하여 기업의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일본노동력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업노동비용이 증가함에 능력에 강조점을 두는 직능급제가 확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여전히 연공급이 일본임금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4]

2) 연공급제와 직능급제의 상대적 중요성

i) 이러한 직능자격등급은 일본에서 1960년대 후반기부터 광범위하게 되었다.

1987년 노동성의 『고용관리조사』에 의하면 종업원 5000명 이상

4) Takeshi Inagami, 『Japanese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Japanese Industrial Relations Series Vol. 14, Japan Institute of Labor, p14－p19.

의 기업체의 88.1%, 종업원 1000-4999명의 기업체의 81.1%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준성 또한 『직능자격제도의 이해』(한국경제신문사, 1990)에서 1983년에 실시된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일본의 경우 종업원 500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84.4%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기존의 연공급에 직능급이 가미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능급이 주된 임금체계가 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직능급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능력과 업적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임금중 어느정도를 차지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1987년 닛산 자동차회사의 예를 들어보겠다.[5] 닛산 자동차회사는 1970년에 직능자격제를 도입하였다. 일본에서 임금은 기준내임금과 기준외임금으로 구성된다. 기준외임금은 초과근무수당과 상여금이다. 닛산 자동차 생산직의 경우 기준내임금은 본급, 자격수당, 직능급, 업적급(성적급), 작업수당, 연령급, 가족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2>참조) 본급은 전사원 공통의 단일호봉제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령과 근속년수가 기본급의 주된 결정요인이다. 기본급, 연령급 및 가족수당은 연공적 생활보조급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직능과 관련된 임금이 기준내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0%이다. 이는 50년대 60년대에서 능력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이었음에 비추어본다면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닛산 자동차의 임금은 연공급 위주에 직능급이 가미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의 여타 대기업의 경우에서도 유사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

5) 김삼수「임금관리방식의 개선방안-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1991.

<표 1－2> 닛산 자동차회사의 임금제도 (1987년)

기준내 임금의 항목			평균금액(구성비:%)
本給	職能等級.成績에 의해 결정되는 승급액을 초임급에 積算 (직산 회수에는 근속이 반영됨)	종합결정 31.2%	65,096 (29.0)
資格手當	자격에 의해 결정		10,059 (4.2)
職能給	직능등급에 의해 결정	직능기준 39.0%	78,212 (32.4)
成績給	업적(매년의 목표달성도)에 의해 결정		13,869 (5.7)
作業手當	작업등급에 의해 결정		2,279 (0.9)
年齡給	연령에 의해 결정	생활비 기준 29.8%	57,974 (24.0)
家族手當	부양가족수에 의해 결정		13,881 (5.8)
			計 241,370

ii) 일본의 경우 1941－43년에 있어서 임금중 성과급 (또는 업적급)의 비중이 40－70%에 달하였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NKK회사의 경우 1936년에 이미 성과급이 임금의 54%를 점하고 있었고 40년대에는 성과급의 비중이 더 상승하였다. Ishigawajima 조선소(현재 Ishigawajima Harima 중공업)는 1943년 성과급이 임금의 50%에 달하였다. 당시에 일본 경영인들은 "성과급제는 보다 큰 효율, 보다 적은 낭비, 보다 높은 이윤, 높은 근로의욕"을 자극하며 "돈은 인간의 동기를 자극하는 가장 큰 인센티브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노동자들은 극도로 높은 이직률 그리고 저생산성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있었다. 1939년에서 1943년에 이르기까지 관료 및 지식인들 사이에는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노동자의 직장정착도를 높히고 근로의욕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하여 일본에서 "이상적인 임금체계"는 어떠한 것

인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상적인 임금체계"는 연령항목, 근속년수항목, 직위항목, 그리고 숙련과 생산성항목이 절충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1941년과 43년에 발간된 중앙물가위원회는 "임금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며 동시에 생산성을 자극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연령, 근속년수, 성, 직종을 반영하는 기본급이 임금의 70%,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절충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에는 성과급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70%로 상승하였고 임금체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6)]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에서는 戰前과 전혀 다른 임금체계가 확립되게 된다. 대표적 임금체계로는 1946년 10월 電産勞組에서 제시한 이른바 「電産形 賃金體係」 이다. 전산형 임금의 구성에는 1947년 당시 생계보장적 성격을 지니는 본인급, 가족급, 근속급, 지역급 등이 기준내임금의 79.5%, 능력급이 20.5%였다. 그후 가족급 비율이 줄어든 반면 능력급 비율이 점차 늘어나 1952년 생활보장적 성격을 지니는 부분이 68.1%, 능력급이 31.9%의 구성비를 가졌다. 결국 50년대 이후 전산형 임금체계 즉 일본형의 연공형 임금체계는 생활보장급의 비중이 기준내임금의 70% 정도, 능력급의 비중이 30% 정도인 임금체계였다고 볼 수 있어 1939-43년간에 논의된 "이상적인 임금체계"에서 논의된 바와 유사한 내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성과급 또는 업적급이 50% 이상, 패전후에는 능력급이 30%로 戰前과 戰後에 임금체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60년대 후반기 이후 직능급 도입 결과 오늘날은 능력급의 비중을 戰前과 戰後의 중간수준인 40% 수준으로 정착

---

6) Andrew Gordon 『The Evolution of Labor Relations in Japan Heavy Industry, 1853-1955』,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7장 참조.

시키게 하였다.

iii) 이상의 논의의 결론은 일본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급에 강조점을 두는 임금체계이며, 직능급제는 연공임금체계의 수정형이라고 할 것이다. 기본급의 구성을 연령급, 근속급, 직능급으로 나누고 생활보조급적 성격의 연령급과 근속급이 약 60%, 노동자능력을 반영하는 직무·직능급이 약 40%로 하는 것이 일본 임금체계의 특징이다. 일본의 연공급의 전개과정에서 승진될 직위는 부족한 제약조건에서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숙련과 능력이 크게 증진된 연공자에게는 직위승진이 없이도 직위승진된 자와 유사한 임금을 받게 함으로써 연공제 하에서 평등주의(egalitarianism)을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직능급제는 연공형 수정형이라고 불리워야 할 것이다.[7]

2. 일본 연공급제의 경제적 토대

양병무·박준성의 「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총, 1991), 박영범의 「한국의 임금구조 및 임금체계의 현황과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1991), 등의 연구들은 한국 연공급의 비효율성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으나 일본의 Kazuo Koike의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1987), Masaru Yoshitomi의 「A Schumpetarian Perspective on Japan's Economic Adjustment Processes」(1991) 등은 일본의 연공급제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 한국의 연공급은 비효율적이라고 논의되고 있으며 그리하여 임금체계의 개편

7) 박준성은 신인사체계 또는 직능급제를 "연공형을 약간 개조한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앞의 책 p.97.

이 요청되고 있으며, 왜 일본의 연공급은 효율적이라고 강조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명은 노동자의 사내정착과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높은 생산성의 유지를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연공급을 유지할 때 기업의 노동비용의 증가가 노동자의 높은 생산성에 의해 오히려 상쇄되어 기업이 효율적으로 되는 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현재의 연공급에서 기업노동비용의 증가가 있을 때, 방금 언급한 경제적 토대를 만들지 않고 단순히 임금체계만을 개편하는 것이 과연 생산성 향상 및 효율성 제고라는 所期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임금체계 개편의 논의는 임금체계의 개선은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 연공급제 하에서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방향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비유하자면 외피만 바꾸면 내용이 좋아질 것이라는 천진하고도 천박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에서는 연공급을 통해 노동자의 全근로생애에 걸쳐 생활의 안정을 제공한다. 생산직 노동자에게 전 근로생애에 걸친 임금과 고용을 보장하면 노동자는 게을러져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본노동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며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회사의 번영에 기여를 하며 노동자간 협동, 노사간에 협력을 통하여 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해명은 일본 연공급 임금제도의 경제적 토대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1) 일본적 숙련형성

일본기업은 생산직 노동자에게 순환보직과 현장교육을 통해 전반적 기술습득능력 및 숙련을 향상하도록 하여 일본의 작업

자들은 전문기술직, 엔지니어와 기술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현대의 작업장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산업기술이 있는데 첫째, 대량생산조립공정(자동차, 전자, 섬유, 조선 등) 둘째, 소재산업에서의 대량생산공정(철강, 화학, 시멘트, 에너지, 석유화학 등) 셋째, 소량생산조립공정(기계공업)등으로 나누어진다. 소량생산조립공정에서는 공고 또는 공대출신의 숙련노동이 요구된다. 대량생산조립공정과 소재산업에서의 대량생산공정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작업내용에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정규적인 업무인데 이는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신속성과 정확성만이 요구될 뿐 별다른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적인 업무이다. 비정규적인 업무란 대량생산공정에서 제품생산의 결함이나 부품의 결함을 찾아내어 그 결함을 제거하거나, 시장수요변동에 따라 작업공정을 일부 변경하는 일이다.

미국의 생산직 노동자는 정규적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비정규적인 업무는 기술자 및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즉 공장내 작업이 고도의 분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생산직 노동자는 정규적인 업무와 비정규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일본의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인데 이들은 직업훈련 및 현장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순환보직근무제를 통해 기계의 구조, 기능 및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기계를 분해,청소하며 재조립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비정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은 전문기술직과 기술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다능공의 지식과 숙련은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결함이나 수정을 쉽게 해결하여 생산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비용을 크게 감소시킨다. 미국식의 작업조직에서는 생산라인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보수반이 와야 수리가능하고 때로는 생산라인 전체를 정지시켜 결함을 수리하

기 때문에 비용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능공의 지식과 숙련은 작업장의 생산라인의 설계를 <그림 1-3>과 같이 U자형으로 하여 예컨대 한 작업자가 기계 ①, ②, ③(또는 기계 ④, ⑤, ⑥, ⑦)을 다루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한 노동자가 여러 대의 기계 또는 여러 대의 제품 model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적 숙련은 새로운 기술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順기능을 갖고 있다. 현대의 작업장에 새로운 기술이나 자동화 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기계의 구조, 기능 및 작동원리는 약간 수정되고 변화된 내용을 가질 따름이므로 노동자가 기계의 구조, 기능 및 작동원리를 체득하고 있는한 새로운 기술 및 자동화공법에 신속히 적응해 나갈 수가 있다.

<그림 1-3> 도요다의 U자형 생산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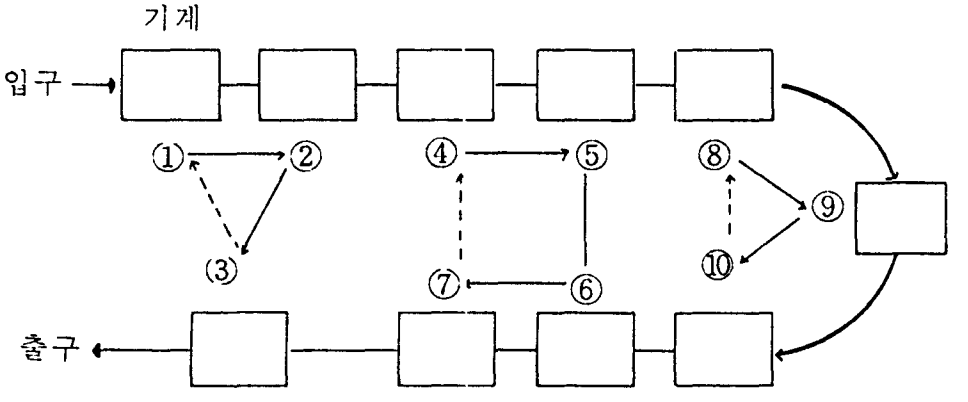

주: 번호 매겨진 것은 노동자작업을 의미한다.

자료: Nick Oliver and Barry Willkinson 「The Japanization of British Industry」, Basil Blackwell Ltd, 1988, p16에서 재인용.

일본 노동자의 경우 순환보직제를 통하여 숙련과 기술의 축적을 보다 많이 경험한 자에게 경영층이 승진에 있어서 최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승진을 둘러싼 장기적인 경쟁이 노동자간에 유발된다. 다능공群이 커질 때 승진될 지위가 부족하게 되고, 노동자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직능급제의 도입 및 확충이 불가결하게 된다. 연공제 하에서 노동자에 대한 숙련형성제도 및 승진제도는 노동자로 하여금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토대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2) 일본 기업의 훈련·교육

김삼수는 「일본 기업의 숙련형성」(1991.9) 이라는 논문에서 일본에서는 노동자의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형태로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에 관한 자료(<표 1－3>참조)를 제시하면서, 조직적 계획적 교육훈련이 일본 기업내에 제도화되어 있음을 밝혔다. 1967년에 이미 1000인 이상 대기업 중에서는 90%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 1989년에 이르면 100－299인의 중규모기업 이상의 모든 사업체 중에서 90%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8]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의 방법을 살펴보면 신규학졸자의 경우 OJT 46.0%, OFF－JT 25.1%(기업내

8) 일본 어느 대기업 사례조사에 의하면 신규졸업자에 대한 훈련을 기계작동원리, 기계조립, 전기장치조립 등 세과정으로 나뉘어진다. 1년간 970시간 연습, 710시간 이론과정인데 이는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정규직업훈련학교 1년의 정규과정과 동등하다. 현장훈련(OJT)과 현장 이외의 훈련(off－the job training)에 의해 숙련형성이 이루어진다.
Kazuo Koik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Political Economy of Japan」(ed. by Yamamura and Yasuba), Vol, 1,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p.296－298.

18.2%, 기업외 6.9%), 自己啓發 2.5%의 순이다. 그러므로 현장 훈련교육이 약 1/2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적 안목의 훈련기회가 제공되고 특히 이러한 훈련이 승진의 적극적 선별장치로 활용될 때 노동자들의 지식과 숙련은 향상되고 축적될 것이다.

<표 1-3> 교육훈련의 실시상황 (기업비율, %)

규모	1967	1969	1972	1975	1983
계	62.7	73.8	69.9	76.7	82.5
5000인이상	96.0	95.9	99.6	99.6	100.0
1000-4999	90.0	94.9	99.0	99.3	99.8
300-999	80.0	91.8	89.5	97.9	96.4
100-299	71.2	81.6	81.7	88.9	90.7
30-99	43.2	58.3	63.3	70.1	78.4

주: 「교육훈련」이란 노동자의 능력개발향상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함.

자료: 노동성 『고용관리조사』 1969,1972,1976,1984년판.
김삼수 「일본기업의 숙련 형성」 한국노동경제학회 발표문(1991)에서 재인용.

3) 노동자 숙련과 품질관리

전문기술직 엔지니어와 일부 공유되는 생산직 노동자의 숙련은 현장에서 "품질관리분임조활동"(Quality Circles) 또는 "무결점분임조활동"(Zero Defect Activities) 등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작업과 생산의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가능하게 한다. 노동자들이 생산메카니즘 그리고 기계의 작동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작업과 생산에 보다 나은 방법을 고안할 수 있고 이것이 QC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술적 기초이다.

1981년 현재 일본에는 130,000개의 등록된 QC분임조가 있다.

기술숙련만이 QC활동을 촉진하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유의되어야 한다. 두가지의 조건이 더 고려되어야 한다.[9] 하나는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계획을 집행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작업방법을 변경시킬 권한을 가져야 한다. 즉,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합당한 권한 위양이 없이는 QC활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작업방법을 변경시킬 권한을 갖지 않고 매번 상급감독자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 이는 QC활동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노동자가 QC활동에 필요한 숙련 그리고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을 때조차도 회사의 번영이 노동자 자신의 번영과 일치하지 않으면 QC활동을 열심히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2차세계대전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노동자들은 소유주의 이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회사가 번영하면 자신의 승진기회와 장래임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근로의욕 유지와 생산성 증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4) 기업간 계열화에 의한 분업구조

노동자에게 전 근로생애에 걸치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연공형 임금제도의 기업내 경제적 토대는 i)순환보직제에 의한 다능공의 양성 ii)장기적 안목에서의 교육훈련 iii)소유와 경영의 분리, 의사결정의 분권화 및 권한 위양을 바탕으로 한 QC활동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물론 종신고용제와 연공급제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크게 높이게 작용하나 바로 종신고용제와 연공

9) Kazuo Koike 앞의 논문 P306－p308.

급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기술·숙련향상과 축적을 행하게 하고 QC활동을 열심히 하게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하여 후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전자에 의한 노동비용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기업의 생산성은 산업조직 그리고 정부의 정책의 성격에 의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소절에서 일본 기업의 계열화에 의한 분업구조와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겠는데 이는 연공급제의 기업외적 경제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생산방식은 중층적인 하도급구조를 통하여 모기업과 하도급기업간의 신축적 분업관계를 갖고 있다. 신축적 분업관계는 Kanban 또는 JIT (Just-In--Time)제도로 알려져 있다. JIT의 개념은 간단하다. 원자재회사, 부품회사, 半완성품회사, 완성품회사가 있을 때 부품회사는 재고없이 조립부품을 만들고, 半완성품회사는 조립부품의 재고없이 곧바로 반완성품을 생산하며, 생산된 반완성품의 공급을 받은 완성품회사는 재고없이 완성품을 생산하는 것이 JIT의 생산방법이다.

JIT생산방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완벽해야 한다. 제품의 질에 결함이 있으면, 재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10] 둘째는 부품의 공급이 정확하여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품공급이 불확실하고 간혹 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모기업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 새로운 디자인 설계시에는 새로이 요청되는 부품 및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미리 모기업이 제공하고 기술, 자금 및 경영지도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

10) Nick Oliver and Barry Willkinson 「The Japanization of British Industry」, Basil Blackwell Ltd., 1988 1장.

다. 모기업이 완성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신속히 판매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도가 없으면 원활한 생산이 저해된다. 예컨대 일본자동차 모기업은 부품기업을 300개 정도 갖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은 1000－2500개의 부품기업을 갖고 있다. 일본은 모기업과 부품기업간에 계열화되어 있고 부품기업은 전문화되어 있는데 비해 미국과 유럽은 계열화되어 있지 않으며 부품조달시 입찰경쟁식이다.[11] 일본의 경우 제품디자인 변경시 계열기업과 사전에 행하여지는 기술적 조정(technological coordination) 결과 JIT가 가능하며 새로운 승용차 제품은 구상단계에서 소비자 손에 넘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3개월이다. 미국의 경우 제품디자인 변경시 부품기업과 사전적 기술조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1.5배인 62개월이 소요된다. [12]

일본의 대기업과 중규모기업간의 계열화, 중규모기업과 소규모기업간의 계열화는 대기업이 고부가가치의 제품개발, 설계제작, 디자인공정 등의 연구개발에 특화하고 계열기업으로 하여금 전문화된 부품을 생산하게 하는 企業群에 의한 생산성 제고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각 공정에 깊은 이해를 갖고 전체적 입장에서 일을 할 다능공 및 숙련공이 양성되고 중소기업에서는 일부 다능공, 반숙련노동자 및 미숙련공이 고용되는 노동자 숙련별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13] 따라서 일본의 대기업은 공정과 작업과정을 분할하여 중소기업과 계열화에 의한 생산성 제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보다 규

---

11) Masaru Yoshitomi 「A Schumpetarian Perspective on Japan's Economic Adjustment Process」, National Institute for Economic System and Information Working Paper 9104, 1991, p7－p11.

12) Michael L. Dertouzos, Richard K. Lester, Robert M. solow 「Made in America, Regaining the Producative Edge」 p171－p187,

13) Kazuo Koike 앞의 논문 p321－p326.

모가 작다.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은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대기업사업장은 거대하며 모든 종류의 노동자가 집결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1987년 GM의 총매출액은 14.2 trillion 달러로 도요다의 6.0 trillion 달러보다 2.4배 많으나 총고용인원은 도요다보다 12.7배 높다. 따라서 도요다의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GM보다 5배 높은 것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미국의 GE는 히타치보다 연간 매출액은 2배이나 종업원 규모는 4배이다. 히타치 종업원의 1인당 매출액은 GE보다 2배가 높다.[14]

5) 정부의 정책

일본기업의 생산성과 일본기업군에 의한 집단적 생산성의 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된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제품이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불황기에는 기업으로 하여금 공장자동화투자, R & D 집약적 제조업 제품생산에의 투자를 자극하였다. 공장자동화투자, R & D 집약적 제품생산투자는 단기에 있어서는 비교열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에 있어서는 일본제품의 비교우위를 갖게하는 "창출된 생산요소(created factors of production)"를 형성시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창출된 특이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갖게 되었다.[15] 즉, 일본정부는 국제적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에 필요한 특이생산요소 창출의 자극자(prodder), 신호자(signaler), 그리고 촉진자(facilitator)라는 본

---

14) Masaru Yoshitomi, 앞의 논문 p8－p10.

15) 창출된 생산요소와 비교우위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일반적 설명은 Michael 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1990을 참조.

질적 임무를 수행하여, 일본기업 및 기업群이 계속하여 혁신적이며 동학적일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불경기에 Keynes적인 유효수요 확대정책, 즉 재정수요 확대, 저금리정책 등을 시행하여 핵심기업 뿐만 아니라 한계기업의 단기적 회생을 추구하였다. 유효수요 확대정책은 물가상승을 낳고 물가상승에 따라 임금이 상승함에 케인즈적 유효수요 확대정책은 수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기술혁신을 실질 GNP의 지속적 성장의 핵심변수로 간주하여, 불황기에 유효수요 확대정책을 쓰지 않고 자동화투자 및 R & D 투자를 하고록 하는 정책을 일본은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Masaru Yoshitomi는 슘페터적인 거시경제운용정책(Schumpetarian Macroeconomic Policy)이라고 불렀다.[16]

6) 요약

연공급 임금제도의 경제적 토대는 <그림 1－4>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일본의 연공급제가 비록 일본기업의 비용을 상승시킨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이를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하고자 한다. 변화와 변경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작업조직, 공장조직, 산업조직 그리고 장기적 동학적 비교우위를 낳는 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생산요소의 창출에 관심을 가진 정부의 정책 등이 일본기업의 높은 생산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본의 연공급 임금과 종신고용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기술과 숙련의 향상과 축적을 자극하였다는 점 그리하여 <그림 1－1>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順機能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16) Masaru Yoshitomi, 앞의 논문 p3－p7.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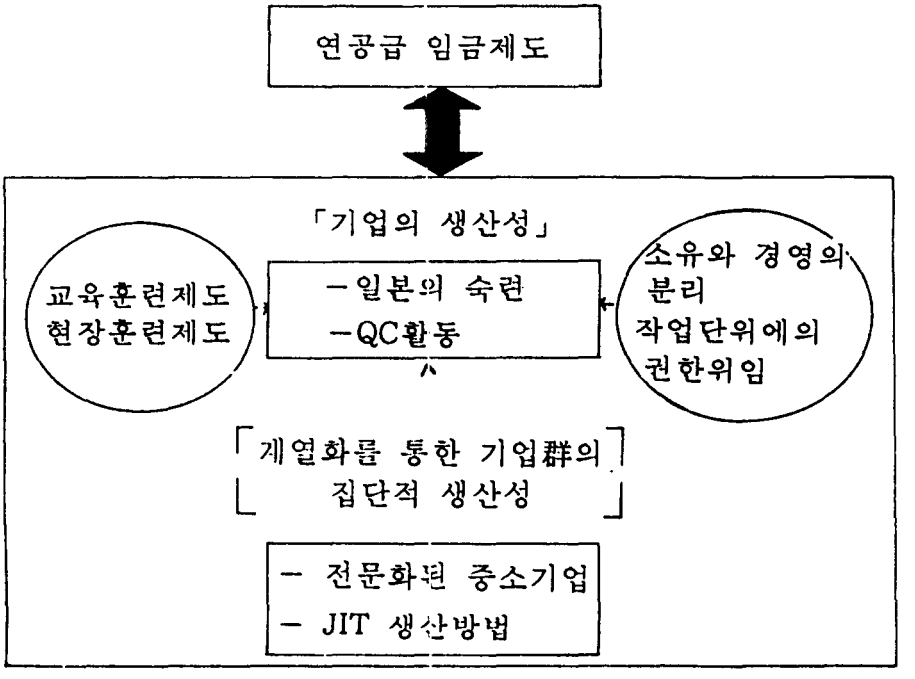

3.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왜곡화

1) 임금체계의 정의

월급여총액은 <그림 1-5>에서와 같이 月定임금과 月外임금으로 1차적으로 분류된다. 월정임금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되는 정액급여와 소정외근로시간과 관련되는 초과급여의 합이다.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되는 정액급여는 기본급 및 제 수당으로 나누어진다. 기본급은 연령과 근속을 주로 고려하는 연공급적인 본봉과 직무·직능급으로 구성된다. 제 수당은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 수당과 기타고정수당으로 나누어지는데 통상적 수당은 직책수당,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 직

무관련수당이며 기타고정수당은 근속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등 생활보조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소정외 근로시간과 관련되는 초과급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일직수당 등을 말한다. 노동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은 바로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으로 이를 월정임금이라고 정의한 것이다.

<그림 1－5 > 임금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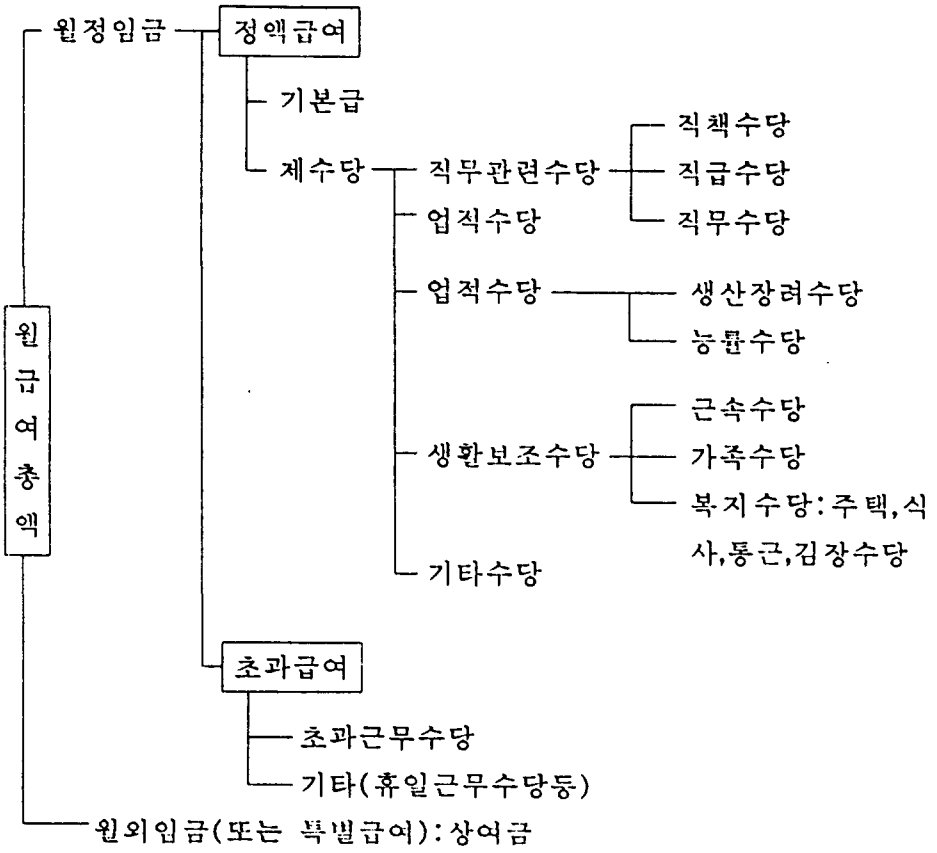

자료:양병무, 박준성「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경총, 1991, p118을 수정한 것임.

2)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의 비중 감소

임금체계를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앞으로 「매통」)의 분류인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나눈다면 우리나라 제조업 임금체계는 1985년 이후 정액급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저하된 특징을 갖는다. 임금총액 중 정액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72.8%, 1985년 72.2%로 거의 유사하였으나 1990년에는 65.8%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임금총액에서 특별급여의 비중이 1980년 10.2%에서 1990년 20.2%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임금체계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료는 1967년 한국은행 『임금기본조사보고』인데 1967년 당시 임금총액에서 정액급여는 82.6%, 초과급여 11.6%, 특별급여 5.8%였다. 약 25년이 지난 1990년 현재 정액급여의 비중이 16.8% 포인트나 하락하였다. (<표 1-4>참조)

<표 1-4> 정액급여, 초과급여 그리고 특별급여의 구성비

(단위: 천원, %)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67	8.6(100.0)	7.1(82.6)	1.0(11.6)	0.5(5.8)
1980	147(100.0)	107(72.8)	25(17.0)	15(10.2)
1985	270(100.0)	195(72.2)	42(15.6)	33(12.2)
1990	591(100.0)	389(65.8)	84(14.2)	118(20.0)

주: ( )안의 수치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구성비임.

자료: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노동부

67년 자료는 『임금기본조사보고』, 한국은행

일본의 임금구조통계조사에서 <표 1－4>와 동일한 임금의 구성비를 찾을 수 있는 해는 1965년이다. 1965년 일본의 경우 월급여총액 중에서 정액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3% 였고 초과급여는 8% 특별급여는 18.7% 였다.(<표 1－5>참조) 1990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월급여총액에서 정액급여의 비중이 65.8%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1967년 이후 계속 왜곡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60년대와 비교하여도 대단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일본의 정액급여, 초과급여 그리고 특별급여의 구성비

(단위: 엔, %)

	월급여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1965	37,300(100.0)	27,300(73.1)	3,000(8.0)	7,000(18.7)
1970	72,658(100.0)	52,100(71.7)	6,300(8.6)	14,258(19.6)
1975	171,150(100.0)	122,800(71.7)	8,200(4.8)	40,150(23.4)
1980	245,258(100.0)	174,200(71.0)	17,500(7.1)	53,558(21.8)
1985	304,075(100.0)	214,900(70.7)	22,500(7.4)	66,675(21.8)

주: 일본의 소정내임금을 정액급여로 표시하였음.

자료: 노동성「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일본장기통계요람』 제4권(일본통계협회)에서 재인용.

3) 제조업에 있어서 기본급 비중의 감소

제조업 월급여총액에서 정액급여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고정적수당의 합으로 계산되는 정액급여 중 기본급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정액급여 중 기본급의 비중에 관한 정부통계로는 노동부의 제조업임금실태조사 보고서(1987)에 나타난 1986년의 자료가

최초의 것이 아닌가 한다. 1986년 11월과 약 5년이 지난 1991년 1월의 자료를 비교한 것이 <표 1-6> 이다. 정액급여 중 기본급의 비중은 1986년 88.5%에서 1991년 80.3%로 크게 감소하였다. 통상적 수당은 정액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6년 6.5%에서 1991년 6.0%로 근소히 하락하였으나 기타수당은 1986년 5.0%에서 1991년 13.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에 정액급여 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4%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현재 80.3%이다.

<표 1-6 > 제조업에 있어서 기본급의 비중 저하

(단위: 천원, %)

	월급여총액 (A+B+C+D+E)	기본급 A	통상적수당 B	기타수당 C	초과급여 D	특별급여 E
1986	296	177	13	10	48	48
1991	570	306	23	52	81	108
월급여총액을 100으로 했을때						
1986		59.8	4.4	3.4	16.2	16.2
1991		53.7	4.0	9.1	14.2	18.9
초과급여 제외 월급여(A+B+C+E)를 100으로 했을때						
1986		71.4	5.2	4.0	—	19.3
1991		62.3	4.7	10.6	—	22.1
정액급여(A+B+C)를 100으로 했을때						
1986		88.5	6.5	5.0	—	—
1991		80.3	6.0	13.7	—	—

자료: 『제조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1987
『임금실태조사결과보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1991

월급여총액에서 정액급여의 비중이, 정액급여 중에서 기본급이 하락한 결과 제조업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

은 1986년 59.8%에서 1991년 53.9%로 감소하였다.[17]

왜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의 비중이 크게 하락했는가? 그 첫째 이유는 1987년 이래의 노사분규과정에서 노동운동이 각종 임시적 수당을 기본급 또는 통상적 수당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합, 즉 통상임금의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기업경영층이 기타수당 및 상여금 인상으로 이에 대응하여 나왔기 때문이다. 각종수당을 기본급화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및 상여금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임금총액 중 기본급의 비중이 낮아진 두번째 이유는 1990년 이래 실시된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인상억제정책 때문이다. 1990년 통상임금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은 9.1%였으나 실제 임금총액기준으로는 18.8% 상승하였다. 정부에는 통상임금기준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보고하고 각종 수당의 증액 또는 신설, 상여금증액 등을 통하여 두자리수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동일한 현상이 1991년에도 지속된 결과 임금체계의 왜곡이 심화되었다. 임금총액 중 기본급의 비중이 낮아진 세번째 이유는 노동운동이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종훈의 「한국의 임금체계: 현황과 정책과제」(국민경제제도연구원, 1991.10)에 의하면 1989년 즉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정책 이전해에 있어서 기본급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노조조직기업에서 오히려 약간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노조는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적으로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7) 1986년 자료는 제조업만 조사되었으나 1991년은 제조업 포함 전산업이 조사되었다. 1991년 현재 전산업에서는 월급여총액에서 기본급의 비중은 54.1%로 제조업과 유사하다. 1991년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기본급의 비중에 관한 경총의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산업의 경우 54.7%로 나와 있다.

4) 연공급 임금체계를 뒷받침하는 숙련형성의 취약성 및 불모성

우리나라에서는 연공급제가 비효율적인 임금체계라고 강조되고 있다. 노동자의 능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게 되지 않아 '보수체계에 개인적 공정성이 크게 결여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18] 그리하여 '기업에 필요한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 기업을 떠나거나 혹은 계속 근무를 한다고 해도 대우를 못받고, 그 반대로 그 기업을 나가주어야 할 사람, 기회와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그 기업에서 큰 소리를 치고 파워를 행사하게 되어 조직은 성취주의적 풍토보다는 적당주의적 풍토에 빠지게 된다'[19] 그 결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소위 「그래샴」 법칙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20] 연공적 요소보다는 직능급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보수체계의 개인적 공정성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 하여금 능력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사무관리직에 적합하나 노동자의 대다수를 이루는 생산직노동자에게는 타당하지 않다. 생산직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조립가공식 대량생산체계에서 대부분 단순가공, 단순조립의 일을 해왔다. 또 일단 한 작업에 배치된 다음, 다른 작업으로 이동되는 배치전환제도는 거의 도입되지 않아, 노동자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단순작업의 동일반복형 작업숙달제도에서는 노동자에게는 정확성과 신속성, 근면성 그리고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복종성만이 노동자에게 강조된다.

필자는 87년 노사분규 직후 87년 11월－ 88년 1월에 걸쳐 기업의 노사관계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다. 이때 조사된 D전자회사의 인사고과 평가표인 <표 1－7>에 의하면 신뢰성, 적극

---

18) 최중태, 「임금체계 및 구성」, 노동연구원〈고위지도자과정－경8〉, 1989/90.
19) 최중태, 앞의 논문 p51.
20) 최중태, 앞의 논문 p15.

성, 협조, 명령, 부정적 생각 등 노동통제기능에 대한 순응정도를 나타내는 항목 그리고 결근, 지각, 판단, 순응, 순서, 정확, 실행성, 속도 등 정확성과 신속성에 관한 항목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전자회사 포장반 생산노동자에 대한 평점을 보면(<표 1－8>참조), 포장반에 속한 15명 전원 결근과 지각이 없었으며, 열심히 근무하는지, 서투르게 하지 않는지, 잘못이 없는지 등을 나타내는 근무, 순서, 판단 등의 점수는 높고, 적극성과 창의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단순작업의 동일반복형 작업숙달제도를 갖는 D전자회사의 경우에서 우리는 노동자에게 거의 완벽한 근면, 성실을 요구할 뿐 회사에의 적극적 기여나 창의성 발휘는 요구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21]

이러한 단순작업의 동일반복형 작업숙달제도에서는 노동자의 능력과 숙련은 나이가 듦에 따라 크게 증진되지 않는다. 일정한 근속년수를 넘어서면 능력, 숙련은 정체되거나 하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군다나 단순작업의 동일반복형 작업숙달체계에서는 노동자의 능력과 숙련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배무기·조우현은 91년 3월 서울지역제조업 남성 701명, 여성 689명에 대한 「고용, 직업훈련, 직장이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ILO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였는데, 숙련향상을 위한 현장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조사대상노동자의 27.3%에 불과하였다.

15년전인 1976년 서울지역 제조업 생산직에 대한 배무기의

---

21) 단순작업의 동일반복형 작업숙달제도와 노사분규와의 관계는 조우현 「87년과 88년의 노사분규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숭실대 『노사관계논총』 창간호, 1990 참조, 기업의 생산성과의 관계는 김태기 「생산성과 기업의 인력관리제도－대기업 생산직사원의 경우」 노동연구원 1991.3. 참조.

조사에서는 사내훈련을 받은 노동자의 비중은 33.1% 였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15년전과 비교하여 기업내의 숙련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사내훈련이 전혀 확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교육훈련의 기간, 실시기관, 자료출처 등을 물어보았는데 교육, 훈련기간은 남성의 65%, 여성의 83.6%가 1주일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훈련의 내용이 대단히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치전환을 통한 노동자능력개발 없이, 교육훈련을 통한 노동자의 능력개발 없이 노동자는 上意下達식의 기업조직에서 노동자에게는 하등의 창의성 발휘가 요구될 수가 없다. 단순작업의 동일반복형 작업숙달체계에서는 노동자는 언제나 공장자동화에 의해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기계부품과 다름없이 취급된다.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급여체계를 기업이 만들어나갈 경제적 유인조차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조직에서 '개인의 능력'과 임금을 연결시키는 직능급체계의 도입은 기업의 노동통제기능에 순응하는 노동자, 자진하여 협조하는 노동자에게 보다 혜택이 갈 뿐이다.

평가되어야 할 능력차이보다 노동통제기능에 순응하고 자진하여 협조하는 노동자를 회사의 인사고과에 의해 높게 평가하여 임금을 차등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직능급제 도입의 계기인 것이다.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근면성만 요구하는 현재의 작업조직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경총의 직능급제는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에 순응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노동자를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여 고임금을 받게 함으로써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노사간의 불신을 높이게 작용할 것이다. 그야말로 직능급제라는 '악화'가 유사한 능력에 유사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양화'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이 노사갈등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표 1-7> D사의 사원평가기준표

평점 / 요소	5점	4점	3점	2점	0점
1 결 근	없다			1일	2일 이상
2 지 각	없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3 직무지식	고도로 보유	필요한 정도 보유	약간 결여	결여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4 숙 련	고도로 보유	필요한 정도 보유	약간 결여	결여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5 판 단	판단이 적절했다.	대체로 적절했다.	잘못이 있었다	잘못이 많았다	근본이 되지않는 사람이다
6 순 응	신속, 용이했다.	대체로 순응한다.	쉽게 순응 못한다	순응 못한다	반발한다
7 창 의	유수했다.	보통으로 생각한다.	소홀하게 생각한다	소홀하다	생각조차 못한다
8 연 구 심	왕성, 항상연구	보통	준보통	거의 없다	없었다
9 순 서	책정이 적절했다.	대체로 양호했다.	준양호	대체로 서툴었다	서툴었다
10 정 확	실수없었다	대체로 정확했다	준정확	비교적 부정확	정확하지 못했다
11 신 뢰 성	안심하고 위임	대체로 위임가능	위임가능했다	위임이 어렵다	위임이 불가능했다
12 실 행 성	우수했다	대체로 양호	준양호	대체로 불량	불량했다.
13 이 해	이해가 좋았다	대체로 양호	준양호	이해가 어렵다	이해를 못한다
14 속 도	빨랐다	대체로 예정완수	보통이다	대체로 느겼다	느꼈다
15 책 임 감	책임감이 풍부하다	대체로 있었다	〃	부족하다	결여
16 근 무	열심히 한다	하는 편이다	〃	숙의부족	열의가 없다
17 적 극 성	적극적이다	얼마간 있었다	〃	거의 없었다	없다
18 협 조	자진 협조했다	협조하는 편이다	〃	대체로 안한다	협력을 안한다
19 명 령	철저히 준수	순종하는 편이다.	〃	비교적 불순종	불순종
20 부정적생각	부정적으로 생각안한다	안하는 편이다	〃	하는 편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표 1-8〉 D사의 포장반 생산사원에 대한 평가표 實例

(포장반) 1987년 10월분 확인자:조 장

성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점수	등급	비고	Ⓑ 계장·대리·과장	Ⓒ 차장·이사	Ⓐ+Ⓑ+Ⓒ 3평균점수
생산사원 1	5	5	4	5	5	3	4	3	5	4	4	3	4	5	4	4	3	3	4	4	81			78	80	
생산사원 2	5	5	5	4	5	4	5	4	5	4	5	4	5	4	5	5	4	4	4	5	91			88	88	
생산사원 3	5	5	5	4	5	4	5	5	5	4	4	4	4	5	5	5	4	5	4	3	90			92	90	
생산사원 4	5	5	4	4	4	3	4	4	4	4	4	3	4	4	4	4	3	3	4	3	77			75	75	
생산사원 5	5	5	4	5	4	5	4	3	4	4	4	4	4	5	5	5	4	3	4	4	84			83	82	
생산사원 6	5	5	4	4	5	4	4	4	4	4	3	5	4	4	4	3	3	3	4	4	80			85	82	
생산사원 7	5	5	4	4	5	5	4	3	4	4	5	5	4	3	4	5	4	5	4	3	85			85	83	
생산사원 8	5	5	4	4	5	5	4	4	5	4	5	4	4	3	4	4	3	5	5	4	86			85	85	
생산사원 9	5	5	4	4	5	5	4	3	5	4	5	5	3	3	4	4	3	4	5	4	84			80	82	
생산사원 10	5	5	4	4	4	4	3	3	4	4	4	4	4	3	4	4	4	3	4	3	77			80	80	
생산사원11	5	5	4	4	4	5	4	3	4	4	5	4	5	4	5	5	3	4	4	4	85			83	83	
생산사원12	5	5	4	4	4	5	3	3	4	4	5	4	5	4	4	5	3	4	4	4	83			80	81	
생산사원13	5	5	3	3	3	5	3	4	3	3	4	4	3	4	4	4	3	4	4	3	76			70	70	
생산사원14	5	5	3	3	4	5	3	3	4	4	5	4	4	3	4	5	3	3	4	3	76			70	75	
생산사원15	5	5	3	3	4	3	3	4	4	4	3	4	3	3	4	5	3	3	4	4	74			72	75	
평 균	5	5	3.9	3.9	4.4	4.3	3.8	3.5	4.5	4	4.1	4.1	4.	3.9	4.3	4.5	3.3	3.9	4.1	3.7	81.9			80.4	80.7	

註:평균값은 필자에 의해 작성된 것임.

5) 직위체계와 임금체계에 있어서 非合理性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는 기능직과 사무·관리·기술직으로 직종별로 나누어 운영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생산직 또는 기능직의 경우 각 기업에서는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적 승진체계가 설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위직에 머무르고 있다. 대부분의 생산직 노동자는 6급 내에서 반장 조장 등으로 승진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직급승진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승진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진다. 직급승진이 있더라도 주임→대리→과장 등 감독·관리기능을 갖는 사무직으로의 승진이 대부분이어서, 기술축적의 결과에 따른 기술직 사원에로의 승진은 거의 없는 특징을 갖는다.

<그림 1－6> 형식적 승진체계와 실질적 승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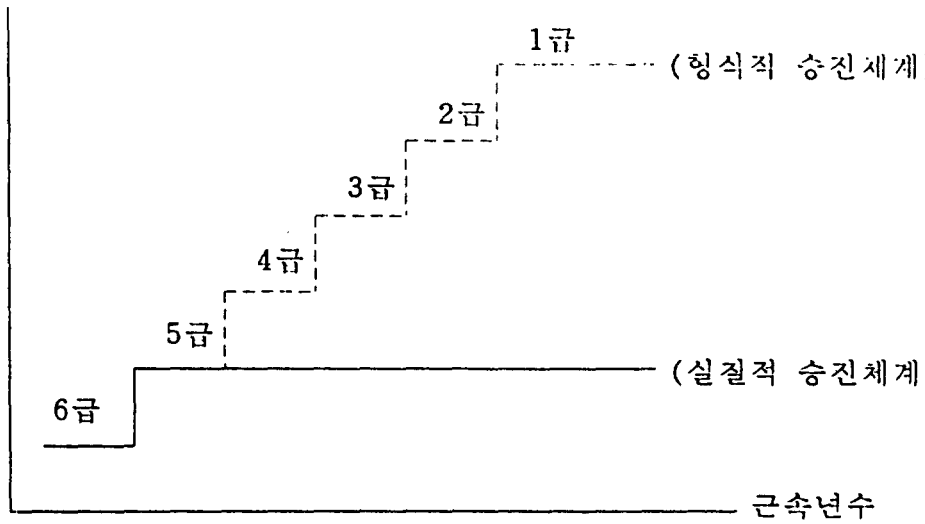

자료: 최종태「임금관리전략의 전개방향과 당면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발표논문, 1991.11., p13.

또한 생산직과 사무관리직간에는 호봉표를 분리운영하여, 관리직에게는 직급별호봉제도가 실시되며, 생산직에게는 87년 노사분규 이후 단일호봉제가 크게 확산되었으나 아직도 과반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생산직에게 호봉승급제 없이 생산직에 대해서는 생산직일당표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생산직에 대해서 호봉승급제가 실시되는 기업에 있어서도 직급상의 승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생산직 노동자는 최저호봉에서 15－20년 경과하면 대체로 최고호봉에 도달하여 임금상승이 중단되는 경향성이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정기승급액은 직종·학력별, 직급별, 직위별 그리고 성별로 크게 차이가 있고 승급액은 고위직급 사무관리노동자일수록 높다.

필자는 이러한 직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임금체계는 한국기업이 선택한 것이며, 미국,일본과 대비되는 노동자 동기부여 정책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高價의 자본설비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연속적인 흐름생산(flow production)체계를 중단시키지 않고, 동시에 노동자의 근무태만과 부주의에 의한 불량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한국의 기업들은 미,일의 경우와 같은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동기부여책을 쓰지 않고 사무직을 통해 위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上記의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이다. 위계적 통제에 대한 보상으로써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가 이러한 기능에 순응하고 직무에 대한 노력을 스스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성, 학력, 나이를 갖고도 사무관리직에게는 생산직과 다른 임금체계를 설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한 것이다.

4. 경총의 임금체계 개선방안

우리나라 노동자의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취약성, 동일

반복형 작업숙달이라는 작업조직의 특성 등 미국의 테일러주의적 경영기법을 그대로 둔 채,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 확산된 직능급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만 하면 기업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동시에 노동자에게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은 상당히 파급되고 있는 것 같다.

경총은 개별기업의 임금체계를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3가지의 기본급의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연공급체계의 수정보완방안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기본급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본급에 통합시켜 기본급기준으로 임금관리를 한다.

이 때 기본급체계를 사무관리직에게는 다단계화하여 직위승진과 직급승진을 분리 운영하며, 직위승진의 기회가 제약되는 생산직의 경우 직급만을 다단계화하고 각 직급에서의 호봉승급을 두어 호봉승급과 직급승격의 보상기회를 제공토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력별 직종별(또는 직계별)로 대졸 일반직, 고졸 사무직, 생산직으로 나누어 채용하는 A회사의 경우 직급은 <그림 1－7>에서와 같이 1급－5급으로 되어 있고 대졸사원은 직급을 4급, 직위는 사원 직급 3급, 직위는 대리 직급은 2급, 직위는 과장 직급은 1급, 직위는 부장의 승진경로를 갖고 있다. 연공급체계 수정보완은 직급은 현재의 5단계에서 7－8단계로 다단계화하고 직급별 호봉체계를 확립하여 직위승진이 되지 않더라도 직급승진을 하게 하자는 것이며, 생산직의 경우 직급만을 다단계화하고 직급별 호봉제를 도입하며 3－5년마다 직급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림 1-7> A회사의 직급체계

직위

대졸일반직	사무직	생산직

직급	직위 대졸일반직	직위 고졸사무직	직위 생산직
1급	부장 차장(5년)	—	—
2급	과장(5년)	참사	기장
3급	대리(4년)	주임(5년)	주임(5년)
4급	사원(4년)	서기(5년)	기사(5년)
5급		사무직(5년)	반장(2년) 조장(2년) 생산직(5년)

자료:박준성, 앞의 책 p35.

② 직능급 도입방안

경총의 직능급 도입방안은 포철의 사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므로 포철의 직능급제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8>은 현재 포항제철이 운영하고 있는 직능자격제도이다. 직급을 1급-5급으로 나누고 5급은 초급 작업직능, 4급 중견 작업직능, 3급 감독직능, 2급 관리직능, 1급 준사업직능으로 하여 각급에 2개의 직능자격등급을 두었다. 담당, 기원, 기사직, 주사직 등은 사원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이해하면, 용어의 생경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직급에 대한 대응직위는 <그림 1-8>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림 1－8 > 포항제철의 직능자격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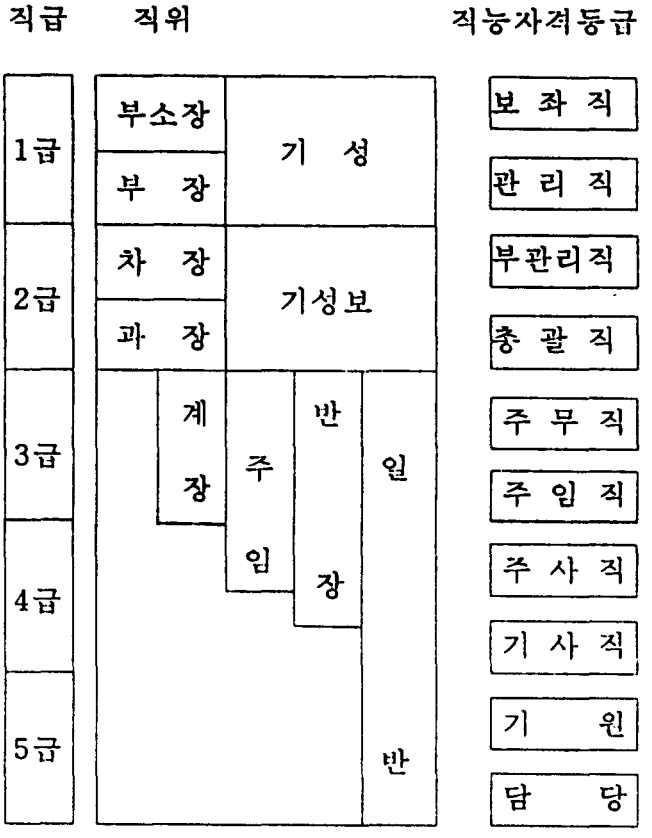

포철의 직능자격제도에 의하면 기존의 직위승진체계와 더불어 직능자격등급에 의한 새로운 승격체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생산직의 노동자들은 직위에 의한 승진이 없더라도 직능등급에 의한 승격이 가능하도록 승진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 1－9>과 <그림 1－10>은 고졸입사자와 대졸입사자의 승격가능 경로와 연령에 관한 예이다. <그림 1－9>와 <그림 1－10>에서 고졸은 5급, 대졸은 4급에 임용됨을 알 수 있고 고졸 5－10년은 대졸 초직급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4급 승급고시제를 도입하여 5급 입사후 만5년 경과자에게 4급으로 승진할 수 있

게 하였는데 이는 <그림 1-9>의 ④의 경우이다.

포철의 사례를 기초로 하여 경총은 연공급 위주의 기본급중 70%를 연령근속중심의 생활급(본봉) 호봉표를 작성하되 본봉은 전사원 단일호봉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기본급의 30%를 직능급으로 하여 직능등급별 호봉표를 만들어, 인사고과에 의해 직능등급 호봉임금표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총은 직능급체계가 어느정도 성숙되면 노사간의 자율적 조정에 의하여 생활급과 직능급의 비율을 일본과 같이 60 : 40으로 직능급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1-9> 고졸입사자의 승진가능경로 및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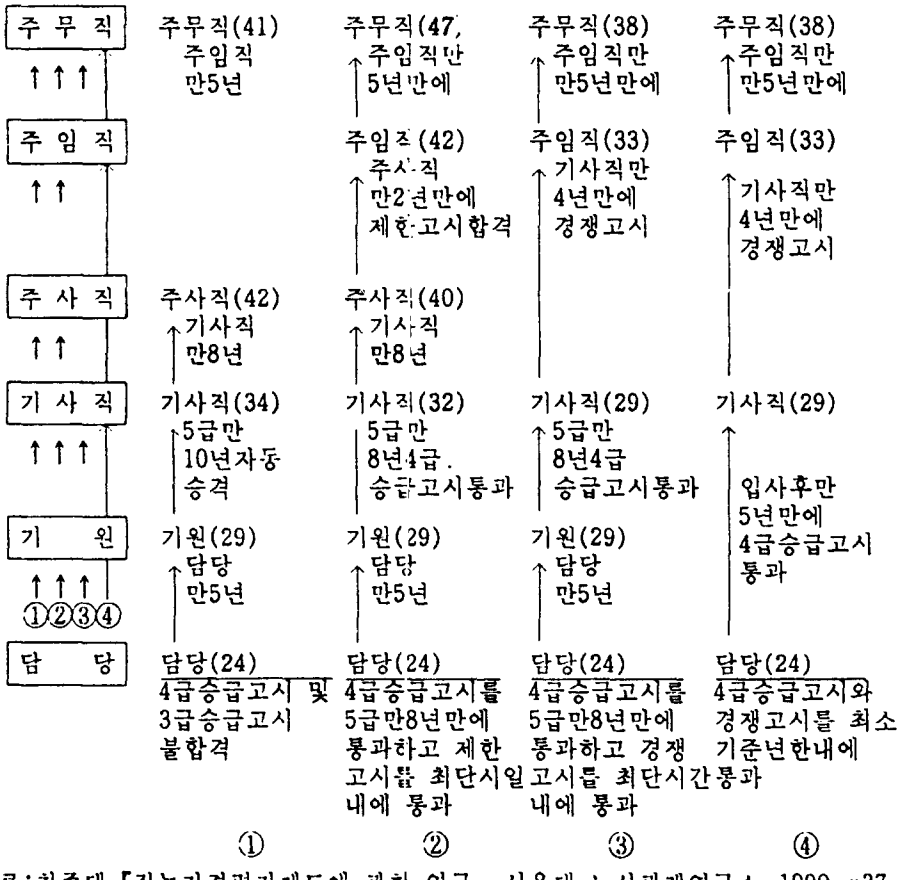

자료:최중태 『직능자격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노사관계연구소, 1990. p37.

<그림 1－10> 대졸입사자의 승격가능경로 및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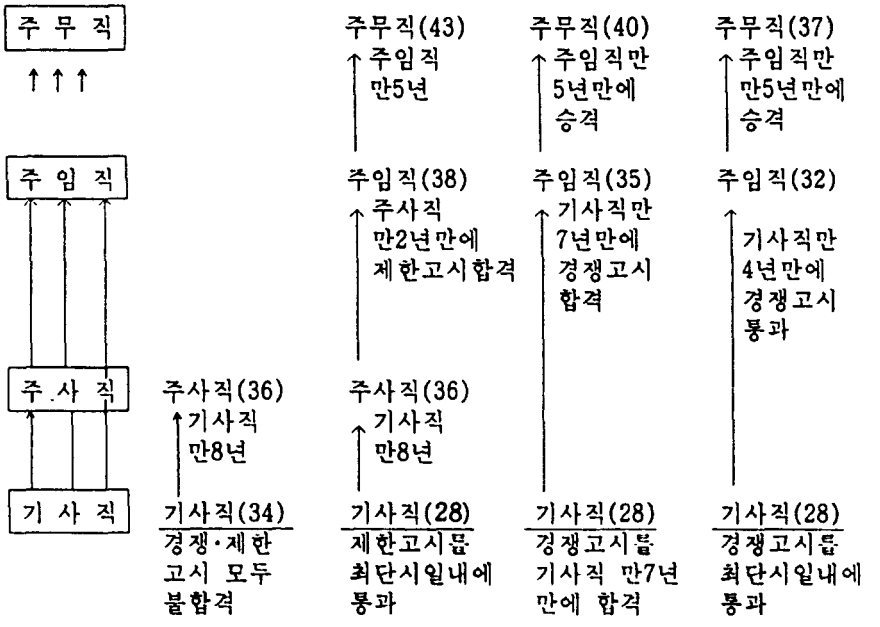

자료: <그림 1－9>와 같음.

③ 직무급 도입방안

직무급은 노동자 담당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직무분석과 직무평가에 따라 일정급여액을 정하고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총의 양병무는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직능급의 경우 직능구분의 명확화와 직무수행능력의 평가가 직무급만큼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평가하고 '직무급은 직무가 표준화된 업종이나 기계화된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업종....에 적합하다'라고 하였다.

<그림 1-11> 경총의 임금체계의 단계적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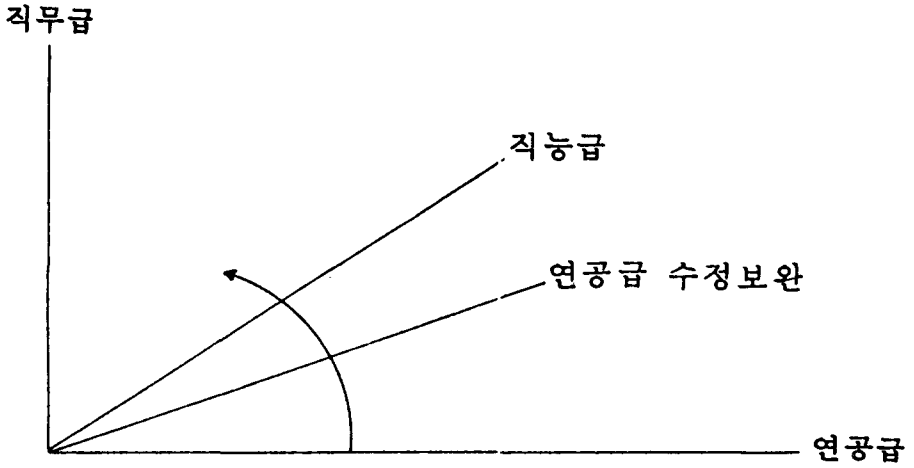

자료 : 양병무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노사관계학회 발표논문, 1991.11., p33.

경총은 <그림 1-11>과 같이 연공급→연공급 수정보완→직능급→직무급에로 임금체계의 개선방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경총의 발상은 임금체계를 능력 직무 중심으로 전환→노동자 작업노력 증가→노동생산성 증대라는 내용을 갖는다.

5.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체계 개선방향의 모색

1) 연공급제의 경제적 토대건설을 위한 경영참가와 공동결정

우리는 일본의 연공급의 경제적 토대분석에서 ① 일본대기업의 노동자들은 기계구조, 기능에 대한 숙련과 지식을 축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② 노동자들은 배치전환을 통하여 작업장의 각 분야에 있어 원칙과 이론 및 실무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과 생산의 보다 나은 방법을 고안할 수 있으며 노동자

들이 작업장에서 그러한 방법을 집행시키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③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높이면 회사가 번영하고 그 결과 빠른 승진과 보다 높은 숙련을 얻을 기회의 획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④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작업과정 및 공정의 분할과 재배치에 의해서 기업群에 의한 생산성을 추구하며 정부는 국제시장에 경쟁력을 갖는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창출에 공헌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노동자의 숙련형성은 현대 사업장에 적용되는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의 대량생산체제에서 기업내의 노사관계제도 및 산업간 분업구조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공급제의 경제적 토대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직능급제의 도입은 노동자의 작업노력 및 노동생산성 증대를 낳기는 커녕 그 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살피보았다.

연공급에서 직능급으로 바꾸는 외양상의 임금체계의 개편논의보다 노동운동은 연공급을 유지하되 연공급의 경제적 토대건설을 주장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연령과 근속년수가 생계비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령과 근속년수를 중요시하는 임금체계 즉 연공급 임금체계의 유지하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통하여 노동자의 전 생애에 걸친 생활의 안정성의 보장을 노동운동이 주장하여야 한다. 이 때 노동운동은 연공형 임금체계 하에서 기업 및 국민경제가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토대 건설 및 이를 위한 경영참가를 주창하여야 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 최고경영기구의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하여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설계, 노동자숙련 증진방안, 그리고 작업장단위에서의 자율적 의사결정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직 노동자가 '숨쉬는 기계'로만 취급되고, 세분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일을 정확하고 만첩하게 일하게 하는 동물로만 취급되는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여야 한다. 경영구조의 민주화, 노동자들의 자주적 참여, 생산현장의 민주화를 통한 노동의 인간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실천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모든 종류의 공정과 작업과정이 거대기업, 독과점기업, 재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에 대하여 노동운동은 강력한 산별노조의 결성을 통하여 공정과 작업과정의 분할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통하여 정부가 주로 독과점기업, 재벌기업의 이해를 주로 대변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정부가 진정한 본래의 역할, 즉 국제적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생산에 필요한 특이생산요소 창출의 자극자, 신호자 그리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로 노동운동은 작업장단위, 산업단위 그리고 전국단위에 있어서 국민경제가 형평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노사관계제도 형성에 있어서 중차대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1차적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작업장단위에서의 경영참가와 공동결정제의 확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선에 앞서 노동운동은 연공급제의 경제적 토대건설을 주창하여야 한다.

2) 임금체계 개선의 단기적 방안

노동운동은 그동안 일관되게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9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제조업)은 53.9%이며 이는 1986년의 59.8%(제조업)에서 무려 6% 포인트 감소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운동은 전혀 실현불

가능한 구호만을 외쳐온 셈이다.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노동자의 현실생활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 그리고 그동안 그 비중이 하락한 것 모두 노동자 생활의 불안정성과 직결된다. 노동운동이 연공급제의 경제적 토대건설이 임금체계 개선 논의에 1차적인 중요성을 둔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노동자생활의 불안정성 증대를 완화시키는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여 나아가야 한다.

① 월급여총액에서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현재 각각 65.8%, 14.2%, 20.0% 인 바, 이러한 임금체계를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의 비중이 각각 70%, 10%, 20% 로 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이는 일본의 60년대의 임금체계의 구성비와 유사하다. 그동안 왜곡화된 임금체계에서 상여금 비중을 월급여총액의 20% 수준으로 묶고, 아직도 지나치게 높은 초과급여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임금교섭시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의 합인 월정임금 기준으로 임금인상을 행하고 동시에 근로시간의 감소를 반드시 연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임금체계 개선은 월정임금의·감소없는 근로시간의 감축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액급여중 기본급의 비중이 1986년 88.5%에서 1991년 현재 80.3%로 크게 감소하였는 바 이를 90%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정액급여중 기본급의 비중이 90% 되는 것은 일본의 47년 이후 임금체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타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생활보조수당 예컨대 근속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월정임금에서 초과급여의 비중을 줄이며 동시에 정액급여

중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높인 후, 기본급에서 연령·근속급을 80%, 능력급을 20%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연공급 임금체계의 전형적인 예인 1947년의 일본전산형 임금체계에서 기본급중 연령·근속급과 능력급의 구성비와 유사하다. 노동운동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과 「전 근로생애에 걸친 생활안정」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데, 노동자간의 일의 강도, 숙련과 경험의 정도에 따른 차이는 능력급 20%, 연공급을 80%로 함으로써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과 「전 근로생애에 걸친 생활안정」을 조화시켜야 한다.

④ 우리나라 연공급의 운영에서 생산직, 고졸사무직, 대졸사무직 등 직위별로 나누어 운영되는 직위별 호봉체계를 단일호봉체계로 전환하여 직종별 학력별 임금차별을 철폐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자 생계비의 척도는 연령과 근속년수이므로 기본급중 연공급에 있어서는 단일호봉제를 확립하여 생산직과 사무관리직, 저학력자와 고학력자간의 차이를 없앰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학력별 직종별 임금격차의 해소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월급여총액에서 초과급여의 비중을 줄이며 동시에 정액급여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임금체계의 단순화, 명료화,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여금지급률의 조정, 초과급여할증률의 조정, 근로소득세제의 개편이 필요로 된다. 임금체계를 단순명료하게 하여,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보장 기능과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댓가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勞使政 모두 이러한 임금체계의 개선에 소극적인 이유는 바로 상여금지급률의 조정, 초과급여할증률의 조정, 근로소득세제의 개편이라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수방관적 자세는 노동자의 생활을 지속적으

로 불안정하게 할 것이므로 노동운동은「임금체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⑥ 노동운동은 연공급의 경제적 토대건설을 위하여 기업별체제에서 산별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업장단위, 산업단위 그리고 전국단위에서 강력한 산별의 역할없이는 연공급의 경제적 토대건설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별노조의 이러한 활동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며, 노동조합이 기업내의 노무관리 하청기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동시에 기업별 노조 하에서 노조의 집단적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노동자들간의 연대와 단결을 가능하게 하여 일본 기업별 노조의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연공급의 경제적 토대건설은 실로 경제민주화의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노동운동이 1차세계대전후 프러시아제국이 붕괴한 뒤 바이마르공화국에서 1919년 전국차원, 지역산업차원, 그리고 작업장차원의 경제민주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나찌즘 패망 이후 1948년의 경제정책원칙'에 의하여 경제민주화 프로그램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노동운동은 경제민주화의 주창자이여야 하며 실천적 프로그램을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Ⅱ장 노총의 임금가이드 라인 설정 방향

1. 문제의 제기

매년 봄 임금교섭과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勞는 勞대로 使는 使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제시한 임금인상률을 적정이라고 하고 상대를 설득시키려 든다. 최근 정부 또한 총액임금제를 도입하여 임금규제를 고임금업체 對 저임금업체 또는 고임금노동자 對 저임금노동자 등의 계층을 설정하여 한자리숫자 임금인상률을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려 하며, 이러한 정부의 한자리숫자 임금인상률 정책이 적정하다고 勞使를 설득시키려 들고 있다. 사용주와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그들의 임금인상률이 적정하다고 하며 勞는 "노동자의 이익실현이 국민의 이익과 조화"되는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가이드라인 설정방법과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경총의 논리의 허구성을 장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이장에서는 정부의 총액임금제를 비판한 후 노총이 민주복지사회건설을 위해 취하여야 할 임금가이드라인 설정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2. 정부의 총액임금제 비판

총액임금제란 노동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의 대가인, 기본급, 각종수당, 고정상여금 등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임금대장에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임금대장에 근로의 대가의 총액을 개재하게 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정부의 1차적 목적은 한자리수 임금억제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데 있다. 1990년에 정부가 개입하여 한자리수내로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시작했으나 정부에 보고된 임금인상률은 9.1%, 그러나 실제는 18.8%로 정부의 임금인상억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하였다. 91년 상반기에는 정부에 보고된 임금인상률은 10.1%였으나 실제 91년 1/4분기에 15.6%가 상승하여 정부는 임금억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의 임금인상억제정책이 실패한 것은 노조와 기업이 담합하여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률은 대외발표용으로 한자리수로 하고 각종수당 신설, 상여금 증액 등을 통하여 총액임금 기준으로 대내용으로 두자리수 임금인상이라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임금인상의 결과 고임금기업와 저임금기업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근로계층의 양극화가 진전되었고, 고임금업체로 분류되는 전자, 자동차 등 수출주력업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각종수당의 신설, 상여금 증액 등으로 임금체계가 크게 왜곡되어 노동자의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경쟁력 기반 확충의 차원에서 그리고 노동자간의 근로소득의 형평성제고 차원에서 그리고 노동자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임금의 총액 기준으로 고임금업체 또는 고임금노동자계층에게는 5% 임금인상 허용, 중임금업체 또는 중임금노동자계층에게는 한자리수 임금인상, 저임금업체 또는 저임금노동자계층에게는 임금 자율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의 정부의 임금인상관리를 차등화하여 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우리는 고임금업체에 속하는 전자—자동차 등의 수출주력업종

의 임금동결 수출가격경쟁력 강화 또는 국제경쟁력 강화→성장의 지속이 정부 총액임금제에 내재하는 기본 발상이며 이는 「저임금→저물가→국제경쟁력 강화→고성장」이라는 지난 30년간의 구태의연한 논리가 총액임금제라는 새로운 외피를 갖고 등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라는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동자간의 심각한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자계층내 「빈익빈 부익부」현상을 강조하며, 임금체계의 왜곡화를 통한 노동자생활의 불안정을 강조하는 선전을 강화하여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 마치 노동자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축소되어 노동자간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총액임금제의 본질과 촛점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총액임금제를 통한 정부의 임금인상규제정책과 노동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모든 종류의 근로의 대가를 임금대장에 기재케 하는 것을 행정지도나 시행령개정을 통하여 의무화하는 총액임금제를 노총은 구분하여야 한다. 노총은 총액임금제를 통한 정부의 임금인상규제정책을 반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금대장의 정확성을 위하여 근로의 대가를 임금대장에 성실히 기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 불성실하고 거짓으로 분장된 임금통계에 기초하여서는 국민경제와 노동자생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총이 총액임금제를 통한 정부의 임금인상규제정책을 반대하여야 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임금은 노사간에 자율교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다.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임금을 직접 확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의 개입과 지도는 오히려 有害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국제경쟁력 약화의 진정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우리는 이미 Ⅲ장에서 국제경쟁력 약화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 이미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반복은 하지 않겠다. 국민경제의 질병적 요인에 관해서 정확한 진단

을 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방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 약화 및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근시안적인 것이다. 정부의 본직적 임무와 역할은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 노사관계정책의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의 추진 등이며 이와 같은 정부의 본질적 임무를 수행할 때 노사간의 자율적 임금교섭은 국민경제의 성장과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총액임금제를 통한 임금규제는 독과점기업, 고부가가치의 대기업, 재벌기업 등 고임금기업 등에 있어서 임금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때 보다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 예컨대 이들 고임금기업에서 노동생산성 증가가 10% 이루어지고 제품가격이 10% 올랐다고 했을 때 생산성임금제에 의해 명목임금은 20%를 상승할 경우 고임금기업의 부가가치에서 노동과 자본의 분배몫이 전년과 동일해진다. 이때 명목임금이 동결되면 고임금기업에서는 막대한 초과이윤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초과이윤을 사내복지기금 출연이나 주식배당 등을 통한 노동자 재산형성을 촉진토록 권장할 것이라고 선언만 하고 있을 뿐, 초과이윤을 생산에 기여한 노동자에게 어떻게 환류시킬 것인지 하등의 구체적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총액임금기준 인상률에 관한 정부안에 임금동결로 인한 초과이윤을 노동자에게 환류시키는 구체적 방안이 없는 한 총액임금제를 통한 임금규제는 기존의 독과점기업, 재벌기업에 또다른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생산에 대한 기여몫을 독과점기업·재벌기업의 경영층에게 정부권력에 의해 강아적으로 재분배하든 것을 그야말로 절시장적 접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동결시 초과이윤의 규모는 회사마다 다를 것인데 임금동결로 인한 초과이윤의 크기, 그 측정방법 등을 둘러싸고 대단한 노사마찰이 예상된다. 즉 임금인상교섭 대신 초과이윤규모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예견

되는 것이다. 기업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 및 회계정보를 노사가 공유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노사간 임금동결로 인한 초과이윤규모의 측정을 둘러싼 불신과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넷째 저임금업체에 있어서는 임금의 자율결정을 유도하겠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으나 저임금업체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하청 등 저부가가치생산성을 갖는 기업들이다. 최저임금이 91년 月 19만3천원에서 92년 月 20만9천원으로 月 약 1만6천원 상승하였을 때, 경총은 「이와 같은 인상률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사실상 도산을 유도하는 수준」이라고 논평하였다. 이와 같은 시각과 인식수준으로 미루어볼 때 노조조직률이 낮은 저임금기업에서 그리고 기업경영성과가 취약한 저임금업체에서는 고임금기업의 임금동결로 인한 파급효과로 인하여 한자리숫자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총액임금제를 통하여 정부는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대중요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리고 구조적인 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총액임금제의 본질인 것이다.

3. 노총의 임금가이드라인 설정방법

1) 기본원칙

필자는 『산업화과정에 나타난 노동수요측 특성과 임금 및 임금구조의 결정』(1991)이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직종별 통계조사 대상 제조업체 2,008개 중 292개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뽑아 산업구조를 살펴본 바가 있음을 이 보고서에서 여러차례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모습을 다시 정리하고 노총의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의 기본원칙을 논의한 후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사업체 전 종업원중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저임금 근로자의비중이 0－24%되는 사업체를 고위임

금업체, 25－49%가 되는 사업체를 중위고임금업체, 50－74%가 되는 사업체를 중위저임금업체, 75－100%가 되는 사업체를 저위저임금업체라고 정의할 때,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중위저임금업체, 저위저임금업체의 구성비가 1989년에 각각 26.0%, 20.2%, 26.0%, 27.7%로 나타나 그야말로 중위층이 취약한 〈그림 2－1〉의 산업구조를 우리나라는 갖고 있다. 그리고 1989년 직종별 임금통계조사대상 제조업사업체 2,008개 전체의 산업구조를 살펴본 결과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중위저임금업체, 저위저임금업체의 비율은 각각 23.7%,20.0%, 28.8%, 27.5%로 나타나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대체로 〈그림 2－1〉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중위고임금업체, 중위저임금업체의 층이 두터운 다이어몬드형 또는 양파형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나라는 중간층이 취약한 호리병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림 2－1> 산업구조: 우리나라와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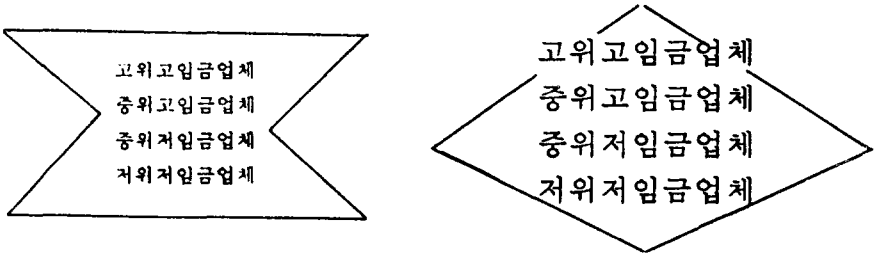

이러한 산업구조에서는 국민경제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은 산업구조가 선진국과 같은 다이어몬드형으로 전환될 때이다.

산업구조고도화 정책과 자립경제의 실현정책에 의해서만 왜곡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될 수 있다.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우리나라가 갖게 될 때 국민경제의 성장은 국내 각 부문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갖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동시에 이때 노동자의 전 생애에 걸친 생활보장도 가능하게 되며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과 사회적 형평이 조화를 이루는 시장경제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산업구조고도화정책과 자립경제의 실현은 정부와 자본가의 역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의 생산과 분배의 양측면에 모두 관심을 갖는 노동운동 노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필자는 노동운동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서 국민대중의 이익과 부합되는 기본 원칙을 설정할 시점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노동운동이 왜곡된 산업구조를 그대로 두고 이를 주어진 조건으로 간주하여 종전과 같이 최저생계비에 기초하여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 독과점, 고부가가치의 대기업, 재벌기업 등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群의 노동자와 저독점, 저부가가치의 중소기업, 비재벌기업 등 지불능력이 약한 기업群의 노동자간에 현격한 임금격차가 지속되거나 현격한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노동자 계급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

제조업의 고위고임금업체의 월급여총액은 1989년 743,207원, 중위고임금업체는 543,046원, 중위저임금업체나 저위저임금업체의 집합인 저임금업체는 400,565원이다. 1990년 제조업평균임금 인상율 20.2%, 1991년 상반기 평균임금 인상율 16.9%를 고위고임금업체, 중위고임금업체, 저임금업체의 1989년 월급여총액 그대로 적용하면 1991년 현재의 임금총액에 대한 추산이 가능하여 진다. 1991년 월급여총액은 고위고임금업체 1,044,308원, 중위고임금업체 7,630,505원, 저임금업체 562,849원이 된다. 즉 독과점, 고부가가치의 대기업, 재벌기업 등의 임금총액 수준은 100만원대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저임금업체는 임금업체의 54%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근로자간 임금의 현격한 격차는 임금의 사회적 공정성 측면에서, 노동자의 대동단결의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 산업의 왜곡된 2중적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고

위고임금기업과 저임금기업간의 임금격차는 지속될 것이다. 호황기 또는 고도성장기에 있어서 단순 미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증대가 이루어져 저임금업체의 임금은 크게 증가할 수가 있고 따라서 호황기 또는 고도성장기에는 고위고임금기업과 저임금기업간에 임금격차는 축소될 수 있겠으나 불경기 또는 저성장기에 있어서 단순미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감소는 저임금업체의 임금을 더 크게 위축시키고 따라서 불경기 또는 저성장기에서는 노동자계급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불황기 또는 저성장기에는 저임금업체 노동자들은 실업의 위협 뿐만 아니라 근로자 계층 내의 '빈익빈 부익부'현상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노동자의 대동단결과 연대 대신 노동자들은 분열되고 상호적대시 하게 될 것이다.

1991년 현재 독과점, 고부가가치의 대기업, 재벌기업의 노동자는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104만원의 임금을 받고 저독점, 저부가가치의 중소기업, 비재벌기업의 근로자는 최저생계비를 하회하는 56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구조에서 노동운동이 고임금업체의 경우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표준생계비의 확보를 목표로 임금인상활동을 조직하고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고임금기업의 노동자는 인간다운 보다 쾌적한 삶을 추구하고, 저임금기업의 노동자는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임금에서 최저생계비의 확보를 추구하는 것은 노동운동이념의 상실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인간다운 보다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노동자와 최저생계비의 확보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사이를 이간시키고 노동자의 단결력을 무력화시키며, 노동자를 분할 지배하여 다수의 노동자를 산업적 노예의 상태로 묶어 놓으려는 일부 자본가들은 고임금업체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보다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생계비를 들고 나오는 것을 환영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분열, 노동운동의 무력화가 그들의 이익의 추구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노동자들 전체의 계급적 연대를 추구하여야 할 국면이다. 성장과 사회적 형평이 조화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상호 연대하고 단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다수의 실질 생활이 악화되고 노동의 소외가 대단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노동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단결하여야할 국면이다.反노동자적인 정부의 주택정책, 교육정책, 의료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反인본주의적인 공장의 작업방식을 변경시키기 위하여 노동운동은 산별조직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건설로 나아가야 할 국면이다. 공업화 이후 지금과 같이 노동자들 전체의 계급적 연대가 절실히 요청된 적은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업별노조의 한계 속에서 독과점, 고부가가치의 대기업, 재벌기업의 노동자는 그들의 교섭력을 배경으로 독점적 이윤의 일부를 배분받게 되어 오히려 현재의 왜곡된 경제구조의 온존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 전체의 계급적 연대를 추구할 역량을 가진 노동조합은 노동운동 이념의 不在 속에서 조합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운동 전체의 진보적 역량을 소실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노동자들 전체의 계급적 연대는 노동자들의 『통찰과 역량』으로 가능하며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 노동운동에 의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역시 노동자들의 『통찰과 역량』에 기초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분단된 2중적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다.

2) 구체적 방안

① 우리나라의 분단된 2중적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구조에서는 임금인상율을 저임금사업체群의 물적노동생산성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합과 일치시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필자는 제안하고자 한다.

물적노동생산성증가율을 실질임금상승률과 같게 하는 생산성임금제는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그동안 노동운동에서는 부인되는 경향성이 있었다. 그러나 부인되고 비판되어야 할 것은 경총이 제시한 근거없는 생산성임금제이며 경총이 제시한 타당하지 않은 자본의 기여분을 감안한 생산성인금제이다. 동시에 비판되어야 할 것은 정부의 反시장적인 임금규제 정책이다. 사실 1980－90년간 전산업 실질임금상승률은 7.2%이며 물적노동생산성증가율은 11.0%였다. 물적노동생산증가율을 실질임금상승률과 연계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면 지난 10년간 실질임금상승률 보다 1.53배의 실질임금 상승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전산업 평균 물적노동생산성증가율을 기초로 한 것인데 필자가 제안하는 바는 이제 저임금업체群의 물적노동생산성증가율을 산정하여, 이를 근로자의 실질임금상승률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저임금업체群 의 물적노동생산성추계를 위하여 저임금업체의 정의, 기준 그리고 대상업체 선정에 관한 작업에 노사가 공동 참여하여야 한다.

생산성임금제를 미국의 노동조합은 1961년, 스웨덴의 노동운동은 1970년, 일본의 노동운동은 1975년에 수용하였다. 독일의 1950년대 이후 산별교섭에서는 산업별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후 각 기업 단위로 경영성과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는데 산업별임금의 최저수준 및 그 인상율은 산업의 다수를 이루는 기업들의 평균생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1950년대에 생산성임금제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자본주의 경제단계에서는 최저생계비 확보가 노동운동에 있어서 임금인상의 기본논리가 되어야 하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단계를 벗어날 전망을 가지며 노동자의 주택, 교육, 의료 문제의 해결 그리고 노동소외 극복을 위한 산업단위, 작업장단위 노사공동결정제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국면에서 노동운동은 생산성임금제를 자본의 논리라 하여 종전과 같이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다.

② 고임금업체의 노동생산성은 저임금업체의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서 제시한 임금인상률을 책정할 때 고임금업체에는 초과이윤이 발생하게 된다. 초과이윤은 고임금업체의 노동자들의 생산에 대한 기여분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노동자의 소유로 되어야 한다. 필자는 노동운동이 『임금균등화기금』제도를 창안하여 이 초과이윤을 적립할 것을 제안한다. 고임금업체에서 물적노동생산성증가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체 단위로 노사가 공동 참여하는 『경제위원회』를 두어 이 기구가 저임금업체 평균 물적노동생산성증가율을 각 사업체에서 어느 정도 상회하는지 측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불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 상속세 적용의 철저화, 국방예산감소 등을 통하여 생기는 재원 일부를 『임금균등화기금』에 정부와 노동운동이 약정한 비율에 따라 상응하는 기금(matching fund)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④ 노동운동은 종전과 같이 최저생계비를 추계하여 저임금기업에 속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생계비를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을 『임금균등화기금』에서 『임금균등화보조금』의 형태로 저임금업체근로자에게 지급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근로자간 임금의 사회적 형평은 제고될 수 있다.

⑤ 이러한 임금조정방식의 발상은 독일과 스웨덴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은 나치 패망으로 천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폭격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대부분을 파괴당하였으며 1950년 경에는 서독으로 이주해온 실향민이 850만명에 이르고 있었다. 전쟁의 결과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사람이나 이주민을 돕는 법안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던 기민당의 아데나워정권에 의해 1952년에 입안되었는데 그 법이 바로 '부담 나눠갖기 법'이다. 그 기본 발상은 간단하다. 전쟁 종료 후에도 재산의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재산의 일부를 거의 모든 것을 잃어 버린 자들에게 양도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기업들은 1948년/49년의 가치로 평가하여 재산가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952년에서 1979년까지 28년에 걸쳐 '균등화기금'으로 내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었다. 이 기금에 정부도 일부 기여를 하였으며 1986년 말까지 이 균등화기금으로 지출된 총액은 1천3백억마르크(약 6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스웨덴에 있어서는 스웨덴노조연맹(Landsorganization, LO)에 의하여 "연대임금정책(Solidarity Wage Policy)"을 1950년대 초 채택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소득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혔다. LO는 연대임금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임금교섭에서 저임금의 정의에 기초하여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예컨대 산업노동자 평균임금의 96%를 저임금으로 정하여 저임금근로자는 LO가 정한 저임금 수준과 노동자 자신의 임금의 격차 만큼을 평등화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받아,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자본주의국가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남으로써 LO의 연대임금정책은 성공을 거두었다.

독일의 『균등화기금』,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은 사회평준화를 추구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운동이 조직을 확대해 나가고 연대와 단결을 통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연대와 단결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인상 정책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①-⑤에서 설명한 임금인상 조정방식은 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높히는 데 기여하지 않는 인플레 中立的인 방식이다. ①-⑤에서 제시된 임금인상 조정방식은 저임금업체에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성장 저부가가치산업에서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 제품개발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자극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왜곡된 이중적 분단된 산업구조를 지양하는 데 노동운동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노동운동이 효과적인 임금균등화정책을 통하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이 노동시장에 확립되어 노동시장의 분단이 극복될 때 우리나라의 산업 신축성과 효율

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분단된 2중적 산업구조에서 정부와 자본가에게 독과점 재벌 위주의 경제의 개혁을 요구하며 동시에 노동운동은 분단된 노동시장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산업구조가 독과점, 고부가가치의 대기업, 재벌기업과 저독점, 저부가가치의 중소기업 및 비재벌기업으로 양분되어 있는 구조가 개혁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2중적구조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도식적이며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 무력화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경제와 노동운동을 동시에 침체시키게 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통찰과 역량 에 의해 『임금균등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늙은 노동자의 노래

1. 나 태어난 이강산에 노동자 되어
꽃피고 눈내리길 어언 삼십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죽어 이 흙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2. 아들아 내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노동자의 아들이다
좋은옷 입고프냐 맛난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노동자아들 너로다
3. 내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손주 손목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피어 만발하고 활짝개인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내청춘 다갔네
(후렴)아 다시 못올 흘러간 내청춘
작업복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청춘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동　　지

1. 휘몰아 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쳐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 보았다
살을 에는 밤 고통받는 밤
차디찬 새벽서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않는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2. 세상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죽는다해도
그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통일되는날 해방되는 날
희망찬 내일을 위해 싸우며우린 맞섰다
투쟁 영원한 투쟁 변치않을 동지여
투쟁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어깨쭉지에 빛나는 상처
지켜낸 파업투쟁
막걸리잔 치켜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가진자들에 더러운 이빨
금빛으로 번쩍이며
온세상을 휘휘감아 피눈물을 달라하네
아동지여 적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억지를 부려
아 동지여 적들은
파업의 나팔소리 멈추라하네
일하지 않는자여 먹지도 말라 !
자본가여 먹지도 말라 !
무노동무임금 노동자탄압
총파업으로 맞서리라 !

진짜노동자

1. 동트는 새벽엔 가열찬 투쟁정신
으스름 칠때엔 반성하는 민주투사
동지여 하루에 무용담을 말하세
동지여 그대는 멋있는 진짜노동자
2. 그누가 우리를 울안에 가둔다면
몸둥이 내던져 쳐부수고 깨리라
선봉에 서리라 노동해방 투사되리라
동지여 우리는 멋있는 진짜노동자

포장마차

닭똥집이 벌벌벌 닭다리 덜덜덜
잔업철아 지친몸 소주로 달래네
세상은 비까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간다네
비지땀이 뻘뻘뻘 열나게 돌아도
요놈의 노동자 살림은
발바닥이 박박박 닳도록 뛰어도
앉으나 서나 제자리
깡소주엔 문어발 생맥주 노가리
오공비리 대머리 속이구 노가리
세상은 비까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 간다네

파 업 가

(후렴)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리 나간다
승리의 그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쪽되도 지킨다
노조깃발아래 뭉친 우리
구사대 폭력 물리친 우리
파업 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깃발아래 나간다

가야하네

가야하네 우리 함께 어깨걸고
억압과 착취 모두 깨부수리
투쟁으로 우리하나 되어
사랑 가득한 평등의 새땅으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없는 노동으로
절망하고 짓밟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손에 손잡고 벅찬 새날위하여
물결이 되고 성난 파도되어
투쟁으로 우리 하나되어
사랑 가득한 평등의 새땅으로

농 민 가

1. 삼천만 잠들었을때 우리는 깨어
배달의 노동형제 을부짖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 있다
2.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역사
삼천리 방방골골 노동자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면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 있다

딸들아 일어나라

1. 어두웠던 밤 지나 새벽이
얼어붙은 땅 녹아 새싹이
쾌쾌묵은 낡은 틀 싹뚝 잘라버리고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이땅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런 딸로 태어나
사랑도 행복도 다 빼앗겨 버리고
2. 우리는 이땅의 노동자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
더 이상은 벼랑 끝에 흔들릴 수는 없다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이땅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런 딸로 태어나
고귀한 모성보호 다 빼앗겨 버리고
후렴 : 참아왔던 그 시절 몇몇해
나가자 깨부수자 성차별 노동착취
뭉치자 투쟁이다 여성해방 노동해방

노 총 가

1. 아침에 솟는 해는 우리의 동맥
여명의 종 울려서 지축을 울린다
쉬지않고 생산하는 영원한 건설자
조국은 부른다 아 우리들은 노동자
노총의 깃발아래 강철같이 뭉쳐서
민족의 사는길로 노총은 간다
2. 재건과 총력으로 서는 새나라
노동은 광명이다 만백성 앞에서
착취를 분쇄하고 가난을 쫓아내어
복지사회 이룬다 아 우리들은 노동자
노총의 깃발아래 강철같이 뭉쳐서
민족의 사는길로 노총은 간다
3. 바다와 하늘까지 우리의 광장
세계의 동지들과 대열을 지어
노동의 투쟁속에 앞서 나가서
민주 통일 외친다 아 우리들은 노동자
노총의 깃발아래 강철같이 뭉쳐서
민족의 사는길로 노총은 간다

금속 노련가

1. 떠오르는 태양의 이상을 안고
선언강령 구현위해 뭉친 우리들
거칠은 가시발길 격어넘히며
나가자 금속깃발 강철의대오
손모은 여섯분과 무궁한길을
정의의 사회펴갈 금속노련
2. 비지땀 기름손의 노동의 보람
하늘과 바다물을 세계로 뻗는
영광의 산업대열 맥박이 뛴다
나가자 금속깃발 강철의 대열
일하며 교류하는 국제유대로
인류의 평화지킬 금속노련
3. 용광로 흐른용액 불꽃튀기듯
우리의 핏줄속은 붉고뜨거워
잘사는 평생터전 우리손으로
나가자 금속깃발 강철의대열
뜻모은 투혼속에 내일은 밝다
복지를 다져가는 금속노련

단결투쟁가

1. 동트는 새벽 밝아오면
붉은 태양 솟아온다
피맺힌 가슴 분노가 되어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구사대 몰아쳐도
꺽어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
2. 수천의 산맥 넘고넘어
망치되어 죽창되어
적들의 총칼 가로막아도
우리는 기필코 가리라
거짓선전 분열의 음모
꺽어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
후렴 : 노동자는 노동자다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 노동자 !
1) 너희는 조금씩 갉아 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2) 마침내 가리라 자유와 평등
해방의 깃발들고 우리는 간다

아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투쟁 뿐이다

철의 노동자

민주노조 깃발아래 와서 모여 뭉치-세
빼앗긴 우리 피땀을 투쟁으로 되찾으세
강철같은 해방의지 와서 모여 지키-세
투쟁속에 살아 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
단결만이 살길이요 노동자가 살길이요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달동네 부푼꿈

바지끈 우지끈 졸라매고 살았네
바가지 바박바박 바박 긁어가며 살았네
주택복권에 꿈을 키우며 희망도 가져봤지
임금 인상에 소원 빌어 봤지
여보야 이번 임투에는 주택수당 따냅시다
영원한 우리집 만들어 봅시다
월세방 전세방 떠다니는 우리신세
노동자 한푼 두푼 모아 저축도 해봤지
임대주택에 꿈을 키우며 희망도 가져봤지
주택정책은 모두 모두 뻥이야

동지여 내가 있다

1. 그날이 올때까지 그날이 올때까지
우리의 깃발은 내릴 수 없다
수없이 쓰러져간 동지들이여
외로워마(하) 서러워마(하)
우리가 있다 (힘내 힘내)
그대남긴 깃발들고 나여기 서있다
2. 새날이 올때까지 새날이 올때까지
투쟁의 깃발은 내릴 수 없다
이름없이 사라져 간 동지들이여
외로워마 (하) 서러워마 (하)
우리가 있다 (힘내 힘내)
찢긴깃발 휘날리며 나여기 서있다

노동악법철폐가

정치활동금지 노동조합법
빨-갱이라 국가보안법
제-3자 개입금지 쟁의조정법
일천만이하나되어 "악법철폐"
민중운동 탄압 집-시법에 있으나마나
근로기준법
위장폐업직장폐쇄 관치는 세상-
온몸으로 거부하리라
참혹한 세월에 노예의 사슬을 끊고
이제 외치나니 노-동해방
피에젖은 깃발높이
우리들의 노동해방 투쟁 악법으로
흔들린다면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불법으로 투쟁하리라.

연대투쟁가

연대의 깃발을 올려라 총진군이다.
머리-띠 묶-어주며 어깨걸고 일어서자
우리는 패배를 모른다. 후회도 모른다.
강철같은 연-대투쟁 전진-뿐이다.
그래 너희에겐 외세와 자본이 있고
폭력집단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에겐 신명과 의리로 뭉친 죽음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너희의 마지막 발악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내사랑 민주노조!

햇빛-아래 달빛-아래 노동자 내청춘아
꿈속-에도 신이-난다 내사랑 민주노조
투쟁이 부른다면 해방이 부른다면
목숨바쳐일어선다. 파업의 선봉
자본가 놈들의 폭력을 깨고
아…… 노동자세상 동트는 통일 조국
꿈-속에도 신이-난다 내사랑 민주노조

모두들 여기 모였구나

불-길도 헤치고 물-속을 헤엄치고 가시밭길
돌무덤 바위산을 뚫고서 모-두들 여기까지
모-두들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온나라에 울려퍼지는 노래크게 외쳐부르며
이제갈 길 알았노라고 아-- 아--
모두들 여기까지 여기모여있구나.

노동조합가

살아 춤추는 조국 노동자 해방위해
가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자
얼마나 긴 세월을 억눌려 살아왔나
짓밟힌 우리 어깨! 걸고! 단결! 투쟁!
전진이다.
피묻은 작업복은 파업의 깃발이다.
죽어간 형제들이 횃불로 살아난다. 노동해방
살아춤추는 조국 노동자 해방위해
가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자
얼마나 긴 세월을 힘차게 휘날리자
얼마나 긴 세월을 목메어 기다렸나
동트는 새벽 가자!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이다.
피묻은 작업복은 파업의 깃발이다.
죽어간 형제들이 횃불로 살아난다 민주주의
살아 춤추는 조국 민중의 해방위해
가자 노동조합의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자.

서울에서 평양까지

1.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요금이만원-
   소련도 가고- 달나라-도가고
   못가는곳 없는--데
   광주보다 더가까운 평-양은 왜 못-가
   우리-민족- 우 리-네땅-평양만 왜 못-가
2. 분단-세력-몰아-내고-통일만된다면-
   돈못받아도-나는--좋아-
   이산가족태우고-갈래
   돌아올때 빈차걸랑 울다죽은 내형제들
   묵은-편지-원혼-이나-거두-어 오-지

〈후 렴〉
경음기를 울리며 서울에서 평양까지
꿈속에서라도- 신명나게-달려- 볼란다.

총액임금 철폐하고　　임금억제 중단하라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통일행동 · 연대투쟁　　임투승리 쟁취하자
물가폭등 · 생계파탄　　임금정책 시정하라
임금인상 규제말고　　물가상승 억제하라
노동탄압 임금억제　　투쟁으로 응징하자
연대강화 공동투쟁　　실질임금 확보하자
경제위기 앞세운　　임금억제 철회하라
노동자를 기만하는　　위기선전 중단하라
경제위기 선동말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총액임금 강요말고　　실질임금 보장하라
허울좋은 총액임금　　총단결로 박살내자
노사자율 보장하고　　총액임금 철회하라
노동운동 말살정책　　정부는 각성하라
임투승리 확실할때　　생존권 보장된다
금속노련 깃발아래　　단결하여 투쟁하자

노사대책 · 법규활동

노사대책 · 법규부

○ 개요

Ⅰ. 질의회시

Ⅱ. 부당노동행위 근절 지도활동

1. 고발장 작성
2. 손해배상대책기구 설립
3. 성명서 발표
4. 탄원서 작성
5. 구속자 명단 파악 및 방문
6. 부당노동행위대책 · 쟁의지도요원

Ⅲ. 기타활동

1. 사업장 방문
2.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방침송부
3. "일하기 운동" 정책건의

Ⅳ. 노동쟁의현황

개 요

'91회계년도 노사관계에 관련을 갖는 주요특징은 첫째 89년이래의 노동탄압은 한치의 후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항구적 탄압을 위한 법제도화를 추구했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정치적으로는 인위적 거여야소를 기반으로 한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정책이 기승을 부렸으나 92년도 초의 총선에서 여대야소의 상황이 다시 형성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92년도말의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상황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로는 제조업에 있어서의 30만명정도의 노동력 부족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네째로는 경제적으로는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100억불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며 다섯째로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UN 및 ILO에 가입케 되어 국제사회의 공식적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여섯째로는 소연방의 해체로 상징되는 공산주의의 퇴조현상과 그 사상적 및 국제적 영향력의 퇴조이다.

정부의 노동탄압은 총액임금제등 임금억제정책, 구속 및 공권력 투입등 물리적 탄압, 노동자에게 물가인상 및 국제경쟁력 약화의 전적인 책임을 전가시킴과 아울러 노동자가 일을 안한다는 등의 이데올로기적 공작, 파트타임제 도입, 외국노동자수등 자본위주의 노동시장 정책, 노동강도 강화를 위한 30분 일더하기 운동, 그리고 탄압장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등 총체적 체계를 갖추면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경영합리화, 하청증대, 외국진출등 노동탄압적 경영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임금제도개편등을 통한 노무비 삭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같은 탄압상황이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잦은 집행부 교체와 경험부재 및 장기적 전망 부재등으로 다양한 전술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경직되고 단조로운 전술구사를 하거나 모험적, 일회적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으며 아예 패배주의에 빠져 투쟁포기주의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정부와 자본측의 총체적 탄압은 논리적으로 볼 때 노동자의 연대강화를 가져와야 할 것임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 오히려 기업별의식의 강화를 초래했다 할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민주정당 또는 민주적 정치조직의 부재와 강력한 전국적 노동조직 지도부의 부재에 의한 것으로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강력한 노동조직 지도부의 형성에는 상하급조직, 조합원, 간부를 가리지 않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며 특히 상급조직이나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노련은 임투체제 강화와 업종별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연맹의 일차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정보교류도모에 있어 회수율 저조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가맹노조와 연맹간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방안강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Ⅰ. 질의회시

1. **긴급동의의 요건** :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법 제19조의 범위내에서 노조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귀문의 경우 새로운 안건의 추가가 규약상 긴급동의에 해당한다면 이에 관한 의족정족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노조 01254-10439 91. 7.20)
2. **단체협약체결권** :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3호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볼때 노조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협약체결권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로부터 나오고 또 총회의결의 범위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봄(금속노련법규 제100호 91.7.1)
3. **비조합원에 대한 파업기간임금 특혜** :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합의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통상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서 이때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교섭의 결과에 따라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조합원보다 우대할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을 와해 또는 이간시켜질 우려도 있으므로 파업기간중에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조합원인 근로자를 비조합원인 근로자보다 불이익하게 대우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임금 32240-9220 89.6.22)
4. **통상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실제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의 기초에 포함된다고 사료됨(감독 01254-1026791.7)
5. **임금인상 소급분의 퇴직금 반영** :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을 시는 관습법에 의한다는 민법 제1조의 취지로 보나 귀노조 단체협약 제1조제3항의 "회사는 본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또는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여하한 명목으로도 가히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임금협약체결일과 소급인상일간의 퇴직자에 대해 인상소급분을 지급하여 왔다면 현재도 계속하여 인상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금속노련법규 제120호 91.8.2)
6. **대기자의 의무와 권리** : 귀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급여지급기준 제4조에 따르면 대기자라도 "근무시간중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행가능한 업무지시를 본인의 직종이 아님을 이유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바 대기자에 대한 교육명령이 강제성이 있을 경우 그에 응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임금, 식사, 숙박문제등 제반 시항에 대해 현장작업에 투입된 경우와 동일한 처우를 하여야 할 것이며 새로 대두되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있다면 사전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금속노련법규 제106호 91.7.9)

7. **성격을 달리하는 결의의 효력** : 귀노조 규약 제12조에 의거 부당해고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대의원대회의 결의로써 지급하여 왔다면 비록 91년도 4월 23일자의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회계규정 제26조 제3항의 내용을 규약부칙 3에 명시하자는 안이 부결되었더라도 그 지급은 정당하다고 사료됩니다(금속노련법규 제128호 91.8.6)

8. **일방중재** : 귀노조 단체협약 제86조(중재신청)엔 중재신청을 "쌍방의 협의하에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보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노사 어느 일방이 중재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단 귀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는 1992.3.31이후 3월이 지나면 즉 1992.7.1부터는 동조항이 채무적 부분으로서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때부터는 일방적 중재신청이 있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임(금속노련법규 제161호 91.9.9)

9. **파견대의원의 임기** :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인 바 가령 귀노조의 경우처럼 지부에서 본조합으로 대의원을 파견하는 경우의 파견대의원의 임기는 해당지부에서 차기 파견대의원을 선출하기 전일까지라 할 수 있음(금속노련법규 제179호 91.10.2)

10. **쟁의기금에 의한 생계비지급의 적법여부** : 노동조합법 제14조에 의거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자체 규약으로 조합비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은 건전한 노동조합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노조 01254-16319 91.11.11)

11. **수습기간의 연월차휴가 산정기간 포함여부** : 종업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도 당연히 연월차휴가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감독 01254-18276 91.12.23)

12.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대의원대회에서** : 노동조합법 제14조에 의거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의 범위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자체 규약에 의거 규약의 제.개정이 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노조 01254-18430 91.12.23)

13. **연차수당** : 연차발생기간이 1.1-12.31까지 1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연차수당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것임. 바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유효하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금속노련법규 제277호 92.1.7)

14. **임원선출** : 귀 노동조합의 위원장선출에 관한 사항은 1차, 2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19조에 준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위원장에 당선되는 것이므로 2차 투표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입후보자를 새롭게 받아 재투표를 실시해야 함(금속노련법규 제336호 92.3.9)

15. **단체협약위반의 책임** : 노사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 작성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하였다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이 가입한 노동조합원에 대하여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노조 01254-124 92.2.14)

16. **병역특례자 취급** : 병역특례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관계법에 의해 정당한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병역특례자라 하더라도 일반사원과 차별되어서는 안됨. 병역특례자가 해고되면 그 해고가 회사의 폐업이나 특례업체 취소에 의한 것이 아닌한 의무종사기간의 일부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현역(또는 방위)기간에 있어 단축의 혜택이 없음(금속노련법규 제306호 92.2.10)

17. **분회의 쟁의 및 쟁의행위 결정권**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의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지부(분회)등의 설립신고가 된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귀문의 지역노동조합 분회는 쟁의 및 쟁의행위 결정권을 갖는다고 할 것임(노사 32281-1992.1.23)

18. **설립신고 안되어 있는 지부의 쟁의 및 쟁의행위권** : 노동쟁의는 단체협약체결권한이 있는 노사 대표간에 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지부가 쟁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지부에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있어야 하는 것임(노사 32281-19호 92.1.23)

19. **쟁의결정 정족수**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에서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잇으므로 이러한 법정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요건(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노조규약에 정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귀문과 같이 노조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경우는 노조규약을 불이행한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음(노사 32281-19호 92.1.23)

20. **사업장내 쟁의행위**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3항은 당해 노동관계 당사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자는데 근본 뜻이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노동조합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분산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등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노사 32281-19호 92.1.23)

21. **채용제한여부** : 쟁의행위기간중 자사의 제품을 타 사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제조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제품 제조에 필요한 근로자를 쟁의와 관계없는 자로 대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5조 위반행위가 된다할 것이나, 하청회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중 원청회사가 그 주문불량을 타 하청회사로 돌리더라도 원청회사는 당해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노사 32281-19호 92.1.23)

22. **직장폐쇄범위**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파업 · 태업등과 같은 실력행사에 대항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 즉 집단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노조의 쟁의행위에

상응하는 행사되어야 하는 바 직장폐쇄의 범위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 또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사실상 직업이 불가능한 범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중 비조합원에 의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이를 금지하는 단체협약 규정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임(노사 32281-19호. 92.1.23)

23. **사고지부개념** : 사고지부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규약상 개념이므로 귀 노조규약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약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규약상의 유권해석기관의 해석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의원대회와 총회는 별도의 의결기관인 바 규약상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대의원대회에 연속하여 속개될 수는 없는 것인 바 새로히 공고하여 개최하여야 할 것임(금속노련 법규 제344호 92.3.19)

24. **20일초과의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상 미사용연차휴가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토록 되어 있다면 20일 초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금속노련법규 제248호 92.3.19)

Ⅱ. 부당노동행위 근절지도활동

1. 고발장 작성

1. 당사자

고발인 : 한국필랩전자노동조합위원장 최현희
경기도 광명시 철산4동 472-141

피고발인 : 한국필랩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규만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82-11

2. 고발사항

1) 피고발인이 고발인등 8명에 대해 91.5.14부로 조치한 징계해고를 취소토록하여 줄 것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법에 의해 피고발인을 처벌하여 줄 것. 피고발인은 고발인등이 91.5.11 노조를 결성하고 91.5.13 광명시청에 신고하자 고발인등 8명(노조임원 전원 및 핵심조합원 4명)을 집단해고조치함. 피고발인측은 해고사유로 인금인상에 따른 작업거부등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해고자중 최석향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집단해고조치함. 또한 피고발인은 91.5.23 고발인등 징계해고문제로 회사를 방문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간부들에게도 징계해고자중 4명만 아니면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음.

〈해고자 인적사항〉

최현희(위원장) 박선숙(부위원장) 최석향(사무국장) 유경하(회계감사)

주지은(조합원) 김영희(조합원) 최선희(조합원) 이유식(조합원)

2) 미지급상여금을 지급할 것(89년 100%미지급, 90년 120% 미지급)

3) 과거 3년분의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

4) 월급직사원의 미부여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것

5) 월급직 여사원에 대한 미부여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것

6) 지각3회시 지각시간뿐만 아니라 1일분 임금까지 공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임금을 환불조치 할 것

7) 취업규칙상 휴일중 미부여 휴일(회사창립기념일,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미부여를 시정할 것

1991. 5. 24

위 고발인 최 현 희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장 귀하

고 발 장

1. 당사자

고발인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인상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570-2

피고발인 : 한국필랩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규만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82-11

2. 고발사항

한국필랩전자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이행 및 사내폭행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함

1) 1991.6.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 불이행

①1991.6.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서를 송달받음.

② 1991.6.14 08 : 30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자들이 회사에 출근하려하자 회사의 김영우대리, 이홍성 차장, 윤석조부장등과 기자들이 "법도 필요없다. 너희들 들어오지말라는 서명받았다"는 등 폭언을 하며 출근을 저지하였음.

③ 1991.6.15-16까지 회사 아유회(노동조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임).

④ 1991.6.17 08 : 30 해고자들이 출근하려 하자 김영우 대리는 "뭐하러 왔으냐. 복직판정 열번 나도 필요없다. 법은 너네들이나 좋아해라"라고 하면서 출근을 막았고 이홍성 차장은 "미친년들 얘기니까 신경쓰지 말라. 맞아죽고 싶은 모양인데 들여보내라"하면서 출근을 막았음.

⑤ 1991.6.18 08 : 30경 해고자들이 출근학려 하자 사원 30~40여명이 동원되어 출근을 저지하였음. 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조합원 탁옥미를 불러내 애워싸고 따귀를 때리고 머리칼을 잡아당기고 끌고 다녀 이마가 붓고 팔이 멍들고 머리가 아픈 증상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함(1991.6.19)통원치료를 위해 회사에 출근했으나 원직에 배치하지 않고 사무실에 잡아두었고 병원에 가려고 나오려 하자 이홍성차장이 부서이동시키겠다고 협박하였음).

⑥ 해고자들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받고 복직문제를 대화로 해결키 위해 1991.6.14 회사에 6.17 13 : 00에 교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문에서부터 차단하였음.

⑦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설정의 정신은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준수토록해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자는데 그 정신이 있다 할 것이나 현재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휴지조각처럼 여기고 기업주가 많아 법조항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바 법정신의 구현을 위해 피고소인을 구속하여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응당하다고 봄.

2) 해고자들(노조임원)이 복직문제등에 대해 교섭하려 회사에 들어가려하자 회사 윤석조부장, 전태영주임, 정낙호대리, 김응표대리등이 차단하는 중에 노조위원장 팔을 비틀고 회사 철문에 밀어붙이는 과정에 위원장이 전치2주의 부상을 입음.

별첨서류 : 진단서

1991. 6. 19

노동부 부천지방사무소 소장 귀하

2. 손해배상 대책기구 설립

1. 제안이유

기업측의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노동탄압에 보편화되고 있어 산업현장에 있어 노동조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조활동을 실질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기업주들은 불법쟁의뿐만 아니라 교섭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고소고발과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노조의 와해 내지 악화를 시도할 뿐만 아니라 교섭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시효를 이용(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미끼로 굴복과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례들은 노조운동을 극히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 조치와 조직적 대응, 그리고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가 노동부의 노동3권탄압지침을 바탕으로 광범히 적용되고 있는 바 노동탄압철폐를 위한 활동이 기본적 전제로 요구된다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노동탄압 대책위원회규칙

제1조(근거) 본 규칙은 본노련 91년도 정기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거 기업측의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노동탄압에 조직된 역량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 제정한다.

제2조(명칭) 대책위원회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손해배상대책위원회(약칭 : 손배대책위)라 한다.

제3조(구성) 대책위원회는 연맹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업)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손해배상청구에 의한 탄압에 대한 대책수립 및 활동
2. 손해배상청구건에 대한 대책활동

제5조(임원) 대책위원회에는 연맹 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준용) 본규칙의 미비사항은 본노련 규약이나 규정,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7조(규칙개폐) 본 규칙은 본노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개폐한다.

제8조(효력) 본 규칙의 효력은 제정일로부터 발생한다.

3. 성 명 서 발 표

동국제강은 쟁의행위투표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40만 맹원의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91임금교섭을 둘러싼 (주)동국제강의 태도를 개탄해마지 않는다. 대표권시비로 교섭을 기피하던 회사는 마지못해 교섭에 응하였으나 총 21차에 걸치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성의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노조측은 사전 경고후 냉각기간 만료 2일후인 1991.7.13일 07 : 00부터 쟁의행위돌입을 위한 조합원투표에 들어가려 했으나 회사측이 07 : 00에 퇴근하는 야간근무자는 05 : 00에 조기퇴근시키고 주간근무자에게는 환경측정이라는 계획에도 없는 이유를 내걸어 임금을 줄테니 출근못하도록 가장에 연락하여 출근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은 투표장으로 가는 조합원들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이 땅에 법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엔 기업주에게만 필요한 법만이 있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법은 없는 것인가? 과연 기업주는 법을 어겨도 되고 노동자는 법을 어기면 죽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주)동국제강의 반노동자적, 반노동조합적 작태를 보아왔지만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끈질기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공분을 금치 못하며 회사는 즉각 쟁의행위찬반투표 방해책동을 중단해줄 것과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마지 않으며 노동부는 노동자의 업무방해의 엄단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당행위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기업주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문책하여줄 것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1991. 7. 13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4. 탄원서 작성

수 신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
참 조 : 판사 신평

사건번호 : 91단 1154
탄원대상인 : 강원산업삼표중공업노동조합 위 원 장 장 경 식
강원산업삼표중공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 시 우

탄원인들은 강원산업 삼표중공업노동조합의 상급노동조합 대표자들로서 현재 귀 지원에 계류중인 상기 장경식, 이시우등 양피고인에 관하여 선처를 요망키 위해 탄원합니다.

탄원인들은 평소 산업사회에 있어 법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산하 노동조합들을 지도해오고 산업사회에 있어 준법질서가 상당정도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사회의 준법질서는 노사관계 모든 당사자의 노력없이는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모든 것이 처리된다면 근본적 치유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금번 사건(임금교섭에 따른 쟁의)에 대한 탄원인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당한 원인제공은 사용측에도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금협약체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교섭을 수회에 걸쳐 거부해왔습니다. 임금협약체결을 하기 전에 조합원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이나 이점에 관하여는 이미 연합철강노동조합이나 쌍용중공업노동조합의 행정소송 고법 판결결과가 말해주듯이 협약체결전 조합원인준투표가 위법이 아닌 것이 판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쟁의에 돌입할 단계에 이르게 되면 노사간의 감정악화가 불가피해지게되며 따라서 대소규모의 분쟁이 불가피해지게 됩니다. 공소사실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쟁의수반행위도 그러한 감정악화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공소사실에 적시되는 바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측도 무수히 행하였을 것입니다.

세째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고 조직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바 지도부의 의지대로 나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단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은 법보다는 자신들의 처지를 우위에 두게되는 것입니다. 조합 지도부는 조합원과 회사 사이에서 양자를 설득해보기도 하는등 여러가지 고민을 갖게되기 마련입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장경식 위원장이 이끄는 지도부는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평화적 ·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고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면 그런 노력을 할 의욕은 감퇴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사는 불가피하게 공동운명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능동적 의지로 충만하고 창조적 결과를 가져오려면 신뢰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가능한한 노사 스스로가 양보와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자주적 신뢰형성에의 첩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뢰의 축적이 아닌 보복감정의 축적은 결국 노사양측의 불행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탄원인들은 이상의 관점에서 양 피고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있기를 간절히 탄원해마지 않으며 그러한 처분이 강원산업삼표중공업노사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력할 것을 아울러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1991. 10

5. 구속자명단 파악 및 방문

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88년 3월-91년 7월) 3년 5개월동안 47개 조합에 184명이 구속된 것으로 파악(별첨참조).

1. **협조요청** : 각 지역본부에 구속자명단을 발송한 후 방문할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여 방문 가능한 구속자만 선별 방문

NO	노동조합명	성 명	직 책	구치소명	수감번호	단위노조협조	비고

2. 지역본부 청취결과

구 분	인원수	석 방	노조해산	방문가능	방문불가	비 고
권리제한	86	0	4	0	85	
참 여	100	6	3	32	59	
계	186	6	7	32	141	

3. 지역본부 청취결과

노동조합명	성 명	직 위	노동조합명	성 명	직 위
경동산업	안중준	조합원	경동산업	박성례	
	최운규	〃	기아기공	김윤구	
	김보경	〃	대우조선	백순환	
코리아타코마	이홍석	전위원장	※ 나머지는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았음		

4. 구속자 명단

지역	성명	노동조합	직 책	구속일자	구 속 사 유
거제	문제영	대 우 조 선	조합원	91.03.27	국가보안법, 업무방해, 폭력
거제	박영철	대 우 조 선	조합원	91.03.27	국가보안법
거제	신유식	대 우 조 선	노민추의장	91.06.18	제3자개입, 국가보안법
거제	백순환	대 우 조 선	위원장	91.03.27	쟁조법, 업무방해, 화염병, 폭력, 특수절도
거제	강용길	대 우 조 선	수석부위원	91.03.27	쟁조법, 업무방해, 화염병, 폭력, 특수절도
경기	장용열	삼 양 금 속	위원장	91.07.1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경기	정장희	삼 양 금 속	대의원	91.07.1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경기	김형기	삼 양 금 속	대의원	91.07.1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경기	이현재	삼 양 금 속	대의원	91.07.1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경기	김성익	삼 양 금 속	홍보부장	91.07.1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경기	김명진	삼 양 금 속	선봉대원	91.07.1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경기	최이헌	삼 양 금 속	대의원	91.07.2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화염병
경기	김정술	삼 양 금 속	선봉대원	91.07.2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화염병
경기	이재호	삼 양 금 속	수석부위원	91.07.2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화염병
경기	박춘호	삼 양 금 속	조직부장	91.07.2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화염병
경기	방봉수	삼 양 금 속	사무장	91.07.2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화염병
경기	김창숙	퍼시픽와꼬전자	사무차장	91.03.12	국가보안법
경기	김태연	퍼시픽닉교정밀	교육부장	91.04.24	국가보안법

지역	성명	노동조합	직 책	구속일자	구 속 사 유
경기	전주화	경 화 전 자	위원장	90.06.24	폭력, 업무방해
경기	임건오	라 도	조합원	91.03.16	집시법(수서비리 규탄)
경기	현미경	퍼시픽콘트롤스	대의원	91.03.12	국가보안법
경기	김회준	만도기계 안양	사무장	91.03.22	업무방해, 쟁조법(단협준법투쟁)
경기	황성근	만 도 기 계	교선국장	91.03.22	업무방해, 쟁조법(단협준법투쟁)
경기		동 영 알 미 늄		91.06.00	쟁조법(26명)
경기	최성로	삼 양 금 속	후생복지부	91.07.1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경기	김인담	삼 양 금 속	쟁의부장	91.07.14	쟁조법(방산), 업무방해
경기	해고자	현 대 전 자	남궁관식	91.06.00	
경기	박승호	삼 목 강 업	해고자	91.05.09	집시법(박창수 위원장)
경기	안상만	동 양 기 공		91.05.09	특수공무집행방해(박창수 위원장)
광주	김성수	대 우 전 자	민노추	91.03.17	업무방해
광주	박미정	대 우 전 자	조합원	91.07.04	업무방해, 집시법, 주거침입
광주	김태근	대 우 전 자	민노추	91.03.17	업무방해
구미	박영아	승 리 전 자	대의원	91.03.00	사문서위조
마창	임수관	통 일	경비대장	91.08.22	업무방해
마창	이호성	통 일	해고자	90.08.22	업무방해
마창	주재석	한 국 중 공 업		90.08.00	국가보안법(일꾼상담소 관련)
마창	손순도	코 렉 스 스 포 츠	쟁의부장	90.08.16	업무방해, 사무서위조
마창	이승필	대 림 자 동 차	위원장	90.03.08	국가보안법
마창	서우근	효 성 중 공 업	총무차장	89.06.30	국가보안법, 폭력
마창	조현준	대 림 자 동 차	조직부장	90.05.21	업무방해
마창	이종엽	한 국 중 천	위원장	90.03.31	업무방해, 쟁의조정법
마창	정기호	기 아 기 공		91.05.17	집시법, 화염병
마창	이홍석	코 리 아 타 코 마	전위원장	91.07.03	업무방해, 선거법
부산	이명옥	한 국 중 천	조직부장	91.03.29	국가보안법(유인물 배포)
부산	이정호	한 진 중 공 업	위원장직무	91.07.24	업무방해
부산	박홍엽	한 진 중 공 업	쟁의차장	91.05.07	업무방해, 폭력(박창수위원장, 안양)
부산	최병호	한 진 중 공 업	조사통계차	91.07.24	업무방해
부산	김재윤	풍산금속 동래	대의원	91.04.12	업무방해, 폭력
부산	박창수	한 진 중 공 업	위원장	91.02.12	제3자개입, 업무조사거부(연대회의)
부산	남연모	풍산금속 동래	지부장	91.04.12	업무방해, 폭력

지역	성명	노동조합	직 책	구속일자	구 속 사 유
부산	강용대	한진중공업	조직차장	91.07.24	업무방해
부천	김미영	보성전자	조합원	90.12.03	업무방해
부천	이상빈	성신	해고자	90.05.09	화염병, 집시법
부천	엄천용	한일초음파	사무장	91.12.00	국가보안법(술자리 발언)
부천	조미숙	보성전자	위원장직대	90.12.03	업무방해
서울	김신호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13	업무방해(파업)
서울	김병수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13	업무방해(파업)
서울	김종식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13	업무방해(파업)
서울	박선형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10	업무방해(파업)
서울	한동훈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10	업무방해(파업)
서울	김봉식	한국마벨	조합원	91.06.20	업무방해, 폭력
서울	고춘미	중원전자	위원장	91.02.18	업무방해, 쟁조법
서울	김복현	한국마벨	조합원	91.06.20	업무방해, 폭력
서울	박종천	한국마벨	조합원	91.06.20	업무방해, 폭력
서울	심석보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08	업무방해(파업)
서울	김기수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10	업무방해(파업)
서울	박한조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08	업무방해(파업)
서울	박홍귀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08	업무방해(파업)
서울	이창호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25	업무방해(파업)
서울	이덕성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25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	임근갑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25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	박춘원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25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	유시현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25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	성덕회	기아자동차	전수석부위	91.07.31	폭력
서울	하재명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31	폭력
서울	정연식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25	업무방해(파업)
서울	진종식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25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	신승철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22	업무방해(파업)
서울	정하백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22	업무방해(파업)
서울	오 수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21	업무방해(파업)
서울	윤형모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21	업무방해(파업)
서울	김주철	기아자동차	대의원	91.07.25	특수공무집행방해

지역	성명	노동조합	직 책	구속일자	구 속 사 유
서울	박종민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25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	김만수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25	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	김재욱	기아자동차	조합원	91.07.25	업무방해(파업)
성남	안종국	아비코		91.05.09	선거법
울산	이정섭	현대자동차	대의원	90.05.18	특수공무집행방해
울산	이갑용	현대중공업	사무국장	90.05.13	업무방해
울산	배만수	현대자동차	대의원	90.06.13	업무방해, 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
울산	최갑용	현대중공업	조합원	90.05.00	특수공무집행방해
울산	권용목	현대중공업	전엔진위원	90.03.02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제3자 개입
울산	조돈희	현대중공업	문화체육부	90.05.13	업무방해
울산	손봉현	현대정공	위원장	91.07.16	폭력, 집시법
울산	이용진	현대정공	조직부장	91.07.16	폭력, 집시법
울산	오종쇄	현대중공업	엔진전교선	91 07.16	제3자 개입
울산	서정택	현대중공업	부위원장	91 06.00	
울산	김태식	현대정공		91 04.22	쟁조법
울산	박준석	현대정공	교육차장	91 06.00	
인천	김일한	대우자동차	보건부장	91.04.15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김남현	대우자동차	대의원	91.04.15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조덕상	대우자동차	소비조합장	91.04.15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최용주	대우자동차	수석부위원	91.04.08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연병철	대우자동차	산업안전부	91.04.08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김경식	대우자동차	조사통계부	91.04.08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안선희	한국메그론	전사부장	91.06.27	폭력, 집시, 무고
인천		한국메그론	부위원장	91.06.27	폭력, 집시, 무고
인천	송봉룡	대우자동차	대의원	91.04.16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김재규	대우자동차	대의원	91.04.15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정태열	대우자동차	조합원	91.04.16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김보경	경동산업	조합원	89.09.14	자살방조, 폭력(부당징계철회요구)
인천	박선태	경동산업	조합원	89.09.14	자살방조, 폭력(부당징계철회요구)
인천	안중준	경동산업	조합원	89.12.00	자살방조, 폭력(부당징계철회요구)
인천	최운규	경동산업	조합원	89.09.14	자살방조, 폭력(부당징계철회요구)
인천	김도환	서울엔지니어링	위원장	91.02.18	쟁조법, 업무방해

지역	성명	노동조합	직 책	구속일자	구 속 사 유
인천	채성춘	경 동 산 업	조합원	89.09.14	자살방조, 폭력(부당징계철회요구)
인천	홍영표	대 우 자 동 차	해고자	91.02.12	제3자 개입(연대회의)
인천	이은구	대 우 자 동 차	위원장	91.02.12	제3자 개입(연대회의)
인천	정재홍	대 우 자 동 차	조직부장	91.04.08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김권양	대 우 자 동 차	판매주택부	91.05.10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서영구	대 우 자 동 차	대의원	91.05.02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유재익	대 우 자 동 차	판매조통부	91.05.10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김용구	대 우 자 동 차	조직실장	91.04.24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김용돈	대 우 자 동 차	총무부장	91.05.01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김조현	대 우 자 동 차	대의원	91.05.10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한규현	대 우 자 동 차	대의원	91.05.16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김태규	대 우 자 동 차	판매마진대	91.05.10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김승현	대 우 자 동 차	트럭상집위	91.05.10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유선희	대 우 자 동 차	조합원	91.05.16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이용규	한 미 금 형	위원장	91.06.03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김수천	한 미 금 형	사무장	91.06. 3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임영국	동 신 공 업	교육부장	91.06.03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장석천	동 신 공 업	조합원	91.06.03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오종렬	대 우 자 동 차	부위원장	91.06.04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정찬식	동 신 공 업	문화부장	91.06.03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노정문	대 우 자 동 차	대의원	91.04.19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허 준	대 우 자 동 차	부위원장	91.05.20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지영호	대 우 자 동 차	체육부장	91.04.19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오홍규	동 신 공 업	위원장	91.06.03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인천	이성재	대 우 자 동 차	해고자	91.06.00	업무방해, 폭력, 집시법
전북	진두환	플 랜 트 건 설	전부선봉대	90.12.23	폭력, 집시
진주	차인호	삼 미 금 속	운영위원	90.12.24	업무방해, 폭력
진주	임종인	삼 미 금 속		90.07.18	업무방해
진주	하계운	삼 미 금 속	운영위원	90.12.24	업무방해, 폭력
포항	이기수	성 림 기 업		91.06.18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포항	정종길	풍 산 금 속 안 강	전지부장	91.05.15	법정소란
포항	이민철	홍 화 공 업	조합원	90.08.00	공사문서위조

지역	성명	노동조합	직 책	구속일자	구 속 사 유
포항	정명수	포 항 제 철		90.12.00	사문서위조
포항	권영국	풍산금속안강	해고자	91 02.08	특수공무집행방해, 병역법
포항	이철규	풍산금속안강	위원장	91 02.12	제3자개입(연대회의)
포항	박용기	풍산금속안강	해고자	91.12.00	사문서위조
포항	서상섭	포 항 제 철	법제안전차	91.01.00	사 기
포항	김태관	풍산금속안강	조직국장	91.03.05	국가보안법
포항	이민철	흥 화 공 업	해고자	90.05.15	공무집행방해
포항	최권창	풍산금속안강	해고자	91.02.23	국가보안법

6. 부당노동행위대책 · 쟁의지도요원

1. 부당노동행위대책 · 쟁의지도요원교육

1) 목적 : ① '92임투 지구별 지도요원 육성
② '92임투 지구별 상황보고요원 육성

2) 일시 : 1992.2.11(화)-2.13(목)

3) 장소 : 한국노총교육원

4) 지역별 배정(총65명)

서울 : 지역본부(1명), 구로공단(2명), 영등포(1명), 성동(1명), 기타(1명)

경기 : 지역본부(1명), 안양(1명), 수원 · 평택(1명), 용인(1명), 안산(2명), 부천(2명), 성남(1명), 경기북부(1명), 기타(1명)

인천 : 지역본부(1명), 5공단(1명), 6공단(1명), 기계공단(1명), 기타(1명)

부산 : 지역본부(1명), 북구(1명), 사하구(1명), 영도구(1명), 금정 · 동래구(2명), 남구 · 해운대구(1명), 기타(1명)

경남 : 지역본부(1명), 마산(1명), 창원(1명), 양산(1명), 진주(2명), 충무 · 김해(1명), 기타(1명)

울산 : 지역본부(1명), 기타(1명)

대구 · 경북 : 지역본부(1명), 북구(1명), 서구(1명), 달서구(1명), 논공(1명), 기타(1명)

구미 : (2명)

포항 : 지역본부(1명), 기타(1명)

충남 : 지역본부(1명), 대전(1명), 천안(1명), 기타(1명)

충북 : 지역본부(1명), 기타(1명)

전남북 : 지역본부(1명), 광주(1명), 광산(1명), 순천(1명), 광양(1명), 전북(1명)

여성국 : 4명

5) 교육일정표 및 강사

1992. 2. 11(화)

시 간	과 목	강 사
13 : 00 - 13 : 30	등록	
13 : 30 - 14 : 00	개회식, 자기소개	집 행 부
14 : 00 - 15 : 00	연맹의 '92임투방침	김장선 수석부위원장
15 : 00 - 15 : 10	휴식	
15 : 10 - 16 : 40	부당노동행위구제활동 실무	김성준 중노위 심사관
16 : 40 - 16 : 50	휴식	
16 : 50 - 18 : 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작성	
18 : 00 - 19 : 00	석식	
19 : 00 - 20 : 30	노동쟁의 사례발표	
20 : 30 - 22 : 00	단결의 밤	최웅길사무처장
22 : 00 - 23 : 00	분임토의1(지역별'91임투평가)	

1992. 2. 12(수)

시 간	과 목	강 사
08 : 00 - 09 : 00	조식	
09 : 00 - 11 : 00	노조의 단체행동과 법적문제	박석운 시민합동법률상담
11 : 00 - 11 : 10	휴식	
11 : 10 - 12 : 30	소송진행법	박구진 이상수 변호사 사무실 상담소 간사
12 : 30 - 13 : 30	중식	
13 : 30 - 15 : 30	노동가, 구호 훈련	문광주여성부장
15 : 30 - 15 : 41	휴식	
15 : 41 - 18 : 00	경영분석(1)	노동조합 기업경영분 연구상담소
18 : 00 - 19 : 00	석식	
19 : 00 - 22 : 00	경영분석(2)	상 동
22 : 00 - 23 : 00	분임토의2(지역별 '92공투계획 수립)	

1992. 2. 13(목)

시 간	과 목	강 사
08 : 00 - 09 : 00	조식	
09 : 00 - 12 : 00	분임발표('91임투평가와 '92금동임투계획)	
12 : 00 - 13 : 00	연맹과의 대화 및 폐회식	

2. 부당노동행위대책, 쟁의지도요원 위촉자명단

지 역	지 구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충남	지역본부	동 방 의 료 양 행	김면회	위원장	
충남	대전공단	한 국 중 기	남상천	위원장	
충남	천안지역	연 합 전 선	유진산	위원장	
충남	기 타	경 신 공 업	한상호	위원장	4명
경남	창원지구	쌍 용 중 공 업	김진환	위원장	
경남	마산지구	대 동 정 밀	김형태	위원장	
경남	양산지구	금 성 알 프 스	김홍균	위원장	
경남	진주지구	두 원 중 공 업	김남수	위원장	
경남	김해지구	금 성 사 (김 해)	백도시	지부장	
경남	기 타	한 국 동 양 유 전	이문효	위원장	6명
인천	지역본부	지 역 본 부	강석록	전문위원	
인천		한 국 샤 프	유성제	위원장	
인천		서 울 엔 지 니 어 링	안경봉	위원장	
인천		희 성 금 속	황경발	위원장	
인천		삼 성 공 업	오인상	위원장	5명
서울	지역본부	지 역 본 부	조갑룡	위원장	
서울	구로공단	경 방 기 계	박상범	위원장	
서울	영등포	한 국 콘 베 어	권홍식	위원장	
서울	성 동	동 부 지 역 금 속	이선우	위원장	
서울	기 타	삼 천 리 기 계	신경선	위원장	5명
충북	지역본부	뉴 맥 스	이형일	위원장	
충북	청 주	맥 슨 전 자	서혜숙	위원장	
충북	기 타	한 라 중 공 업	박철호	지부장	3명
울산	지역본부	지 역 본 부	하영주	조직국장	

지 역	지 구	소 속	성 명	직 위	비 고
울산	울 산	한국프랜지	이동율	부위원장	2명
광주	지역본부	지역본부	신용석	사무국장	
광주	광 주	기광산업	이상수	위원장	
광주	광 산	하남전자	박기출	위원장	
광주	광 산	세방전지	조희권	지부장	
광주	순 천	경안실업	박태기	위원장	
광주	광 양	삼진기업	장문규	위원장	6명
부산	부 산	지역본부	문창수	사무국장	
부산	금정동래	동승기업	배공희	위원장	해운대
부산	사하구	명성	김병규	위원장	
부산	북 구	우성밴드	이원희	위원장	
부산	영도구	대선조선	지광혁	위원장	
부산	남 구	연합철강	구성환	위원장	
부산	기 타	제일기계	오삼석	위원장	7명
경기	지역본부	대우부품	이성구	부의장	
경기	안 양	혜성공업	조중행	위원장	
경기	남 부	장안공업	이용세	위원장	
경기	남 부	동아정기	박정화	위원장	
경기	남 부	대광다이케스	김수룡	위원장	
경기	안 산	대경화성	박순영	위원장	
경기	부 천	도원무역	이봉춘	위원장	
경기	성 남	보원무역	하병기	위원장	
경기	북 부	한국가구	임홍순	위원장	9명
경북	지역본부	지역본부	이길호	사무국장	
경북	성서공단	동해전장부	정한근	지부장	
경북	3공단	평화크랏치	김무호	위원장	
경북	이현공단	동진금속	김춘종	위원장	
경북	논공공단	평화산업	신동락	위원장	
경북	기 타	화신제작소	김명수	위원장	6명
포항	지역본부	삼정강업	신엄현	부의장장	
포항	지역본부	거양개발	이희형	기회국장	2명

위 촉 장

성 명

소 속

직 위

본 노련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에 의거 위의 사람을 1992년 2월 13일부터 1992년 6월 31일까지 본노련 지역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대책위원으로 위촉함.

1992년 2월 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박 인 상

Ⅲ. 기타활동

1. 사업장 방문

- 만도기계 : 단체협약 갱신
- 기아자동차 : ① 임금교섭 끝무렵 비대위와 대화
  ② 신집행부(김관태위원장)대화
- 한국열교환기 :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회사가 폐업처리 조사차
- 신라엔지니어링 : 단체협약 갱신
- 삼미정공 : 임금인상
- 이원산업 : 집행부 폭력사건
- 신아조선 : 대우조선 합병문제 논의
- 신아(주) : 단체교섭 위임건

2. 노동법개악 저지투쟁 방침송부(1차)

- 발송처 : 각 지역본부 및 전체조직
  (전체조직 송부 : "금속노련통신"과 함께 동봉)
- 발송일 : 1991. 10. 8
- 노동법개악 내용
  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관한 단서규정
  ②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③ 총액임금제 도입
  ④ 시간제근로 근거 규정의 병문화
  ⑤ 토요격주제 실시
  ⑥ 단체교섭 대표권의 문제
  ⑦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규정의 정비
  ⑧ 조합비 상한선의 폐지
  ⑨ 사업장 밖 쟁의행위금지 규정 삭제

3. "일하기운동" 정책건의

내용 : 최근 각 지상 및 TV보도에서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살아난다」는 등 취지의 보도를 하면서 노동조합의 권익향상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매일경제 91.10.22일자는 노총이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도부터 「열심히 일하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첫째, 경영자측 전술과 주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둘째, 보도가 여타사업장에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세째, 그러한 보도난 운동이 방치될 경우 우리 노동조합 진영 및 국민들에 있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되는바 노총차원의 적법하고 효과적인 기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저해치 않는 범위내에서 노총의 통일적인 입장을 정립하여 조합원 및 국민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Ⅸ. 노동쟁의현황

행위돌입기간 : 1991.01.01-1991.12.31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1	건화상사 4,318 김동섭 정우경	전국금속 경기 철강산업 195	90.12.28 91.01.09 91.01.10 2 88.07.12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기타	* 상여금일률 50,000원 * 하기휴가 : 3일
2	대우조선 6,948 백순환 김우중	전국금속 경남 운수장비 제조업 11,536	90.12.27 91.01.14 91.02.19 37 88.08.11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기타	* 조합원징계해고에 있어 노조측이 이의제기시 소장과 조합장이 협의 * 상여금은 생산목표 달성시(기본급+10만원)의 600% 지급 *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3	코리아스파이서 3,206 박기린 전영철	전국금속 인천 기계 제조업 1,230	90.12.10 91.01.24 91.01.30 7 72.05.12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기타	* 징계위에서 조합원외 2인의 변론인 부여 * 650% 지급 * 상통상임금 범위내에서 근속수당 포함
4	백산전자 840 김성애 최석영	전국금속 서울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1,580	00.00.00 91.01.31 91.02.08 9 84.10.26	해고·감원·징계 (해고 철회) 작업거부 기타	* 노조전임간부작업반장의 허락을 득하고 작업장에 출입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5	기아기공 6,929 장 초	전국금속 경남 기계 제조업 2,807	00.00.00 91.02.11 91.02.11 1 76.12.20	상여금 (구정특별상여금지급) 농성 기타	* 구정특별상여금 250,000원 지급
6	대우자동차 269 이은구 김성중	전국금속 인천 운수장비 제조업 17,611	00.00.00 91.02.12 91.02.28 17 71.05.18	구속자석방 ( ) 작업거부 기타	* 전조합원 정상조업
7	경원세기 4,322 장진수 원윤희	전국금속 경기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1,142	00.00.00 91.02.25 91.02.27 3 79.04.05	상여금 (성과급120만원 지급) 작업거부 기타	* 성과급 50만원 지급
8	한국선재공업사 2,170 최상용 이명호	전국금속 부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80	91.05.05 91.02.25 91.03.04 8 89.05.07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기타	* 상여금 년570% 지급 * 학자금 1자녀에 한하여 년2회 지급 *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적용
9	대우전자광주지부 7,681 윤양준 배순훈	전국금속 광주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2,963	00.00.00 91.03.08 91.03.20 13 85.12.06	해고.감원.징계 (해고철회) 작업거부 기타	* 선정상조업후 협의로 합의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10	태화기계(주) 7,064 최종율 신남수	전국금속 경남 기계 제조업 354	91.02.19 91.03.08 91.04.18 42 79.07.08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기타	* 징계위원회 구성에 노조측 참여배제 * 하기휴가 4일 실시 * 상여금 50%인상 * 생산장려수당 5,000원 인상
11	범양냉방 4,488 김윤주 손진관	전국금속 경기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562	91.03.05 91.03.16 91.03.27 12 77.08.06	임금인상 (기본급26.1%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기본급 9.5%인상 * 성과급 지급 : 1인당 30만원 지급
12	배명금속(주) 4,485 김태열 최석배	전국금속 경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45	00.00.00 91.03.20 91.03.21 12 88.03.08	해고.감원.징계 (해고철회) 작업거부 기타	* 해고자에 대한 해고조치 유보 * 단체협약상의 인사조항(징계위 노사동수 구성)
13	장원 7,042 최순학 최임종	전국금속 경남 비철금속산업 90	91.01.08 91.03.20 91.04.10 22 88.04.20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기타	* 전임 1명 인정 * 상여금 450%지급 * 비전임노조간부 조합활동시 사전에 회사측과 합의 * 무노동무임금 적용
14	대우정밀 7,689 윤명원 권오준	전국금속 경남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865	00.00.00 91.03.21 91.03.25 5 87.08.13	구속자석방 ( ) 작업거부 기타	* 전조합원 정상조업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15	대우조선 6,948 백순환 김우중	전국금속 경남 운수장비제조업 11,536	91.12.27 91.03.28 91.04.01 5 87.08.11	구속자석방 (　　) 시위 기타	* 노조에서 정상작업하기로 결정
16	(주)아신 2,743 김천수 전상열	전국금속 대구 기계제조업 250	00.00.00 91.04.04 91.04.18 15 85.12.10	해고.감원.징계 (해고및대기발령철회) 작업거부 기타	* 해고자 복직-지노위 판정에 의한다. * 교섭위원 선출은 노사 각 4명으로 한다 고소고발 사건은 쌍방이 취하한다.
17	효성금속 7,119 박용한 하영준	전국금속 경남 기계제조업 1,400	00.00.00 91.04.04 91.04.09 6 79.02.23	기타 (폭행관련자 징계및 회사대표의 사과) 작업거부 기타	* 선정상 조업(회사측 교섭자 피해 최소화에 최선)
18	동신금속(주) 2,092 유성근 최만식	전국금속 부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6	91.03.25 91.04.05 91.04.18 14 88.06.08	임금인상 (기본급 20%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 동결 * 상여금 400%지급
19	대우자동차 269 이은구 김성중	전국금속 인천 운수장비제조업 17,611	00.00.00 91.04.08 91.04.12 5 71.05.18	구속자석방 (　　) 시위 기타	* 선정상 작업후 요구사항 검토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20	성음전자 4,559 이정자 송성장	전국금속 경기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140	00.00.00 91.04.16 91.04.25 10 89.01.09	기타 (합의각서 작성) 작업거부 기타	*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책임은 불문(단, 사규에 의해 처리) * 무노동 무임금 적용
21	아시아벤드 7,691 박영호 민신웅	전국금속 경기 기계제조업 150	91.03.28 91.04.17 91.04.27 11 89.01.07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기타	* 노조규약에 의거 신집행부 구성, 단체 재교섭 * 피고소인 전원에 대해 고소 취하
22	신창튜빙 3,175 한진용 박의용	전국금속 인천 조립금속제품제조업 65	91.04.04 91.04.17 91.04.23 7 89.04.26	임금인상 (임금 일급 2,100원 (21%)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기본급 일급 1,550원 인상 * 근속수당 100원 일률
23	한일전장 4,295 박명섭 이상섭	전국금속 경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450	91.04.13 91.04.22 91.04.27 6 88.03.06	임금인상 (기본급 1,600원 (19%)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임금 1일 750원 인상(8.9%) * 고소고발 취하 * 단체협약 현행유지
24	한미금형 7,692 이용구 권노권	전국금속 인천 기계제조업 238	91.04.15 91.04.29 91.06.10 43 91.03.11	임금인상 (기본급14만원 (39.5%)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임금정액 35,000원+정율(인사고과 차등 적용)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25	대흥기계 279 조영초 이홍옥	전국금속 인천 기계제조업 808	91.04.30 91.05.06 91.05.10 5 87.08.17	임금인상 (일급 3,066원 (25.4%)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 일급 2,800원(23.2%) 인상
26	(주)부산기업 6,976 강성구 송진조	전국금속 경남 기계제조업 68	91.04.24 91.05.07 91.05.12 6 89.05.09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농성 기타	* 상여금 550%지급, 전임자 1명 인정 * 8월1일부터 주 44시가제 실시 * 하기휴가 3일 실시 * 임금 시급 250원 인상
27	(주)한진중공업 2,178 이정호 송영수	전국금속 부산 운수장비 제조업 3,568	91.05.02 91.05.08 91.07.12 66 63.05.25	기타 (조합장사망 및 임금 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기본급 9.5% 인상 * 특별수당 5,000원 인상 * 상여금 50% 인상 * 특별상여금 100% 명문화
28	동신공업 3,116 오홍규 임중순	전국금속 인천 기타제조업 151	91.04.12 91.05.09 91.06.05 28 87.08.22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직장폐쇄	* 임금 일급 2,200원 인상
29	케피코 4,681 장명권 김병관	전국금속 경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00.00.00 91.05.09 91.05.14 6 89.01.18	기타 (사업주사과) 농성 기타	* 대표이사가 조합장과 구타당한 조합원에게 사과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30	홍명공업 331 김길용 최수완	전국금속 경북 운수장비제조업 850	91.04.27 91.05.10 91.05.29 20 86.12.22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단협갱신체결및 임금 정액124,800원 인상) 기타 기타	* 기본시급 201원 인상 * 91.4.1호봉 조정 시행 * 회사운영위원회 구성, 구성시기, 방법, 업무한계는 별도 검토 * 년4회 성과급 지급을 위한 월목표를 2,800대에서 2,700대로 하향조정
31	이원산업(주) 4,649 윤병용 정승인	전국금속 경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50	91.04.27 91.05.10 91.05.14 5 89.07.10	임금인상 (일급 2,078원 (35%)인상) 작업거부 기타	* 기본일급 1,670원(28.1%)인상 * 3년이상 근속자 1호봉씩 특별승급
32	신광기계(주) 2,739 윤정탁 우희조	전국금속 대구 기계제조업 95	91.04.29 91.05.11 91.07.12 63 88.04.15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단협갱신체결 및 임금 통상 58.02%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기존 단체협약 변경 않는다. * 91단체협약 109개항중 잠정합의된 97개항은 쌍방이 준수한다. * 임금 및 단협 미타결 부분은 회사측에 따름
33	동신유압공업 2,093 박재학 김 지	전국금속 부산 기계제조업 290	91.04.26 91.05.11 91.06.12 33 87.09.21	임금인상 (통상임금 113,838원 (20.9%)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임금 기본 9%인상 * 전노협 탈퇴 * 징계위원 노사동수 구성조항 철폐
34	삼양금속 297 장용렬 정완수	전국금속 경기 기계제조업	91.04.27 91.05.13 91.07.29 78 87.08.11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단협갱신체결 및 이금 28%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작업형태 : 2교대제→2교대제 * 선조업 후협상키로 결정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35	대우정밀 7,389 윤명원 권오준	전국금속 경남 조립금속제조업 1,865	00.00.00 91.05.14 91.06.14 32 87.08.13	임금인상 (임금 94,452원 인상 및 구속자 석방 작업거부 기타	* 회사측에서 인사위원회 개최(19명 징계) * 조합원 작업에 복귀
36	서륭기계 6,994 박한복 박응욱	전국금속 경남 기계제조업 63	91.04.27 91.05.16 91.05.16 1 89.03.28	임금인상 (기본급 24.8% 인상) 작업거부 기타	* 기본급 12%(월 39,100원)인상 * 상여금 550%지급(현 520%)
37	진광전자(수) 7,045 김영호 김형수	전국금속 경남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02	91.05.07 91.05.18 91.06.10 24 89.05.06	인금인상 (기본 49,633원 (20.9%)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기본일급 1,400원 인상 *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적용
38	(주)남성조선 2,070 박순열 강동근	전국금속 부산 운수장비제조업 120	91.05.06 91.05.18 91.05.22 5 80.02.05	임금인상 (임금 32% (140,000원 인상) 작업거부 기타	* 기본급 월 63,596원 정액인상 * 식대보조비 월 10,000원 신설
39	동일계전 3,768 윤희중 홍동진	전국금속 대전 기타수선업 106	91.05.01 91.05.20 91.07.22 64 89.09.26	인금인상 (임금 기본급 3,600원 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기본급 정액 2,500원 인상 * 복지수당 월 9,000원 신설 * 1일 1인당 20대 수리달성 *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40	만호제강 290 현재현 김영수	전국금속 부산 기계제조업 858	91.05.06 91.05.22 91.06.05 15 73.11.21	임금인상 (통상임금 99,078원 (21.58%)인상 작업거부 기타	* 통상임금 60,000원 인상 * 통근버스의 정상운행을 회사측에 요구
41	로케트전기 3,484 최영만 김광영	전국금속 광주 기타제조업 1,287	91.04.30 91.05.22 91.06.03 13 76.02.13	임금인상 (기본급 23.9%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 기본급 남 : 12.5%, 여 : 17%인상 * 특별보너스 : 추석, 설날 각 25,000원 지급 * 파업기간(13일간) 중 6일 무급, 7일 유급(5만원) 처리(단, 집단조퇴자는 13일 무급 처리)
42	한국강업 3,214 이재칠 김덕제	전국금속 인천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90	91.05.07 91.05.22 91.08.23 94 88.08.23	인금인상 (임금 기본일급 1,887 원(20%)인상) 작업거부 기타	* 조합원 퇴직, 노조해산
43	세신실업(주) 7,002 김명길 임송택	전국금속 경남 비철금속산업 590	91.05.04 91.05.23 91.06.18 27 88.06.18	임금인상 (기본급 22% (58,205원 인상) 농성 직장폐쇄	* 기본급 16% 인상 * 성과급 도입(방법은 별도 협의) * 근속수당 2,000원 인상 * 상여금 50%인상
44	한국아이지모타 7,697 박미숙 박창권	전국금속 경북 기계제조업 150	91.05.07 91.05.23 91.05.30 8 89.04.06	인금인상 (일급 3,081원 (42.2%) 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임금 일1,300원 인상 * 생산장려금 60,000원 지급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45	신성패카트 7,696 이종재 신명식	전국금속 경기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674	91.04.22 91.05.23 91.06.08 17 89.05.15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단협갱신체결 및 임금 31.6%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 일 1,500원 인상 * 자격수당 월 1,000원 지급 * 생활복지수당 월 10,000원지급 * 야간근무자 야간보건수당 30,000원 지급
46	FKL동화 (일본40%투자업체) 5,721 박준택 히로야쓰	전국금속 충남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80	91.05.09 91.05.24 91.05.24 6 90.02.03	임금인상 일급 2,500원 (34.7%)인상 작업거부 기타	* 일급 1,353원 인상 * 상여금 600%지급(100% 인상) * 생사장려수당 5,000원-15,000원 신설
47	삼경무역 3,134 김연천 김현구	전국금속 인천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95	91.05.01 91.05.25 91.05.30 6 88.04.11	임금인상 (임금 일급 2,100원 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 일 1,800원 인상 * 교통수당 월 5,000원 추가지급
48	동양강철 3,765 정병석 박 번	전국금속 대전 철강산업 1,097	91.05.11 91.05.28 91.05.31 4 67.03.06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기타	* 기본급 65,000원(21.6%) 인상 * 병역특례자 입영기간중 통상익금 100%지급 * 경조휴가비 지급 확대 * 생산장려수당 5,000원 인상
49	싸니전기공업 873 신배정 곽영의	전국금속 서울 조립금속제품제조업 954	91.05.17 91.05.29 91.05.30 2 89.03.15	인금인상 (임금 기본 월4,800원 인상) 작업거부 기타	* 기본급 일 1,500원 인상(정기승급포함) * 교통수당 : 월 5,00원 신설 * 상여금 : 현 500%+성과급 100,000원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50	동영알미늄 7,701 정무성 김종인	전국금속 경기 비철금속산업 220	91.05.15 91.05.30 91.06.29 31 91.04.17	단체협약 (단체협약체결) 작업거부 기타	* 선정상조업 후 협상
51	코람프라스틱 6,446 김명수 최영재	전국금속 경북 조립금속제품제조업 388	91.05.18 91.05.30 91.06.03 5 88.03.05	임금인상 (기본 95,996원 (22.96%)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 월 60,000원 인상(제수당포함 15.8%) * 생산장려금 270,000원 년내 분할지급)
52	코리아스파이서 3,206 박기린 전영철	전국금속 인천 기계제조업 1,230	91.05.18 91.05.30 91.06.05 7 72.05.12	임금인상 (통상 107,180원 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 77,000원 인상(기본급+특별승급분) * 관리직 잔업보조비 인정(평일 19 : 00이후 3,000원 지급, 야시 10,000원 지급)
53	대원강업 274 신덕우 허영준	전국금속 경남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096	91.05.11 91.05.30 91.06.01 3 87.08.16	임금인상 (임금기본 19.8% 일급 2,447원인상) 작업거부 기타	* 기본일급 2,000원(16.2%) 인상 * 복지수당 20,000원 지급 * 가족수당 1인당 5,000원 지급(4인한) * 생산수당 년 100,000원 지급
54	아폴로산업 6,437 박규남 유희준	전국금속 경북 조립금속제품제조업 780	91.05.15 91.05.31 91.06.04 5 87.09.18	임금인상 (시급 325원 26.3% 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시급 남자 260원, 여자 245원 인상 * 생산장려수당 13,000원 지급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55	일진단조(주) 6,540 배기석 이상일	전국금속 경북 조립금속제품제조업 302	91.05.20 91.05.31 91.06.04 5 89.07.09	임금인상 (임금시급 425원 (27.8%)인상) 작업거부 기타	* 시급255원 인상 * 생산장려수당 12,500원 지급 * 근속수당 2,000원 인상 * 가족수당 3,000원 인상 * 조·반장수당 12,000원 인상
56	한국블럭스위치 6,559 정운락 이상일	전국금속 경북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40	91.05.20 91.06.01 91.06.04 4 90.06.07	임금인상 (시급 320원(266%) (22.96%)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 시급 남자 225원, 여자 246원 인상 * 생산장려수당 12,500원 지급 * 근속수당 2,000원 인상 * 가족수당 3,000원 인상 * 조·반장수당 12,000원 인상
57	경신공업(주) 248 최영배 김현숙	전국금속 경북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646	91.05.15 91.06.01 91.06.01 1 87.10.01	임금인상 (시급 325원 (37%)인상) 작업거부 기타	* 시급 : 남자-245원, 여자 230원 인상 * 남자수당 6,000원 지급
58	성남전기 7,704 박태현 강연구	전국금속 경기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91	00.00.00 91.06.03 91.06.07 5 91.05.30	기타 (노조활동보장) 작업거부 기타	* 회사측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
59	동양전자통신 (스웨덴 합작) 4,446 최경진 이영만	전국금속 경기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958	91.05.23 91.06.03 91.07.15 43 87.08.31	임금인상 (기본급 128,728원 인상) 작업거부 기타	* 기본급 59,000원 인상(19.8%) * 특별수당 18,000원 인상 * 교통비 340원 인상 * 상여금 기본ㅂ 기준 40% 인상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60	대한광학(주) 6,950 이태경 나정환	전국금속 경남 기타제조업 240	91.05.24 91.06.07 91.06.22 19 86.03.15	임금인상 (기본급 88,195원 (25.5%)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 : 기본급 25%(75,137원)인상 * 주택수당 22,500원 인상 * 가족수당 : 본인 10,000원, 배우자 5,000원 자녀 5,000원 인상 * 생산장려수당 46,000원 신설 * 특례병 특례만료후 4호봉 인상 조정
61	의성실업 7,705 박동우 정화영	전국금속 경기 철강산업 147	91.05.24 91.06.07 91.06.17 11 91.05.13	임금인상 (임금 월146,367원 인상) 작업거부 기타	* 임금 : 기본급 25%(75,137원)인상 * 제수당 동결
62	유성정밀(주) 4,639 이회술 조원재	전국금속 경기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123	91.05.13 91.06.07 91.06.29 23 88.09.10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기타	* 임금기본급 70,000원 인상 * 상여금 430%지급 * 가족수당(3인한) : 본인 3,000원, 처 8,000원, 자녀(부모) 1명 3,000원 * 장기근속수당 5년 10,000원(격년마다 10,000원 추가 지급)
63	롯데캐논 4,470 이 호 곽후섭	전국금속 경기 기계제조업 231	91.05.22 91.06.07 91.06.13 7 88.05.12	임금인상 (임금기본 90,000원 인상) 작업거부 기타	* 기본급 4,000원 인상 * 상여금 650%지급
64	고려강선 (룩셈부르크50%투자) 6,925 박경철 권재두	전국금속 경남 철강산업 620 620	91.05.20 91.06.08 91.07.31 54 83.04.08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직장폐쇄	* 선정상조업후 단체협약 체결키로 합의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65	아남정공 7,703 유예순 이희철	전국금속 인천 의료,광학,과학,측정 887	91.05.24 91.06.08 91.06.10 3 90.12.28	임금인상 (일반사원 29.1%, 9급사원 33.9% 인상) 농성 기타	* 임금기본 일 1,457원 인상 * 가족수당 신설, 생산장려금 40,000원 지급 * 주택자금 1억원 조성, 운영위원회설치 운영
66	영흥철강(주) 7,024 김정열	전국금속 경남 철강산업 390	91.05.20 91.06.10 91.06.24 15 87.09.17	임금인상 (기본급 759,702원 (23% 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기본급 14.28%(47,170원)인상
67	아남산업 875 박희란 조영시	전국금속 서울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2,500	91.05.18 91.06.10 91.06.13 4 88.06.15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정액 57,970원+정율 13.2%인상및단협체결) 작업거부	* 임금 : 일반사원 9.5%, 9급사원 9.9%인상 * 전월세 대부금 지원 : 5억원
68	동양전장공업(주) 6,961 추금실	전국금속 경남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260	91.05.29 91.06.11 91.09.04 86 88.12.05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단협갱신체결) 작업거부 폐업	* 회사폐업(모기업체인 동양정밀공업(주)가 제일생명에 인수되었고, 파업 및 부도발생)에 따라 노조측에서 보상금(파업기간 통상임금 100%지급, 해고수당 3개월분, 취업준비금 2개월분 통상임금오 지급 등) 요구, 계속 협의
69	기아기공 6,929 장 초	전국금속 경남 기계제조업 2,807	91.05.06 91.06.11 91.06.21 11 76.12.20	인금인상 (임금기본 80,244원) 작업거부 기타	* 기본급 52,900원 인상, 직무수당 9,482원 인상 * 생산장려수당 6,350원 인상 * 본인수당 3,000원 인상 * 가족수당 9,553원 인상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70	한국웨스트전기(주) (일본100%투자) 7,087 김경영	전국금속 경남 의료,광학,과학,측정 296	91.05.16 91.06.11 91.06.17 7 88.03.27	임금인상 (임금기본 2,082원 (24.5%) 작업거부 기타	* 임금기본 14.87%(12,64원)인상
71	동양정밀 4,447 오세현	전국금속 경기 전기및전자기계제조업 1,600	91.05.29 91.06.13 91.07.05 23 76.04.21	임금인상 (통상임금 179,571원 작업거부 기타	* 기본급 60,000원 인상 * 작업수당 3,000원 인상 * 근속수당(4,000원 * 근속년수 신설 * 상여금 50%인상 *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조합원의 불이익이 없는 한 전근배치, 인원정리, 공장이전에 노조측이 최대한 협조한다.
72	(주)진도 312 윤유원	전국금속 인천 운수장비제조업 1,517	91.06.03 91.06.14 91.06.27 14 85.01.30	인금인상 (기본일급 43.7% 4,788원) 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임금 : 기본일급 1,200원 인상(9.5%인상) * 제수당 월 45,000원 인상
73	연합철강공업(주) 2,143 오익환	전국금속 부산 기계제조업 1,862	91.05.28 91.06.17 91.06.24 8 77.02.12	임금인상 (기본급 19.5% 농성 기타	* 기본급 8% (정액50%+정율50%)인상 * 근속수당 5,000-20,000원 지급(통상임금에 포함) * 시급제 조합원 상여금 지급기준 323.58→340 * 생산장려금 91.7.10까지 50%지급(그 기준은 상여금 산정 방법에 따른다)
74	한국씨티즌정밀(주) 7,085 정성숙 히사다시로	전국금속 경남 시계제조업 238	91.05.24 91.06.18 91.07.03 16 89.02.18	인금인상 (기본급 : 남 21.7% 여 22.3% 인상) 작업거부 기타	* 기본급 : 여 1,500원, 남 1,900원 격각 인상 * 생산수당 : 3,00원 인상 * 가족수당 : 처 5,000원, 자 2,000원 인상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75	양우화학 7,707 최근성 한성수	전국금속 경북 기타제조업 105	91.06.07 91.06.18 91.07.24 37 91.05.15	임금인상 (남 2,500원 여 2,000원 작업거부 직장폐쇄	* 임금 : 남 2,000원, 여 1,500원 인상 * 근속수당 5,000원-9,000원 지급 * 가족수당 : 배우자 5,000원, 부양가족1인 3,000원 * 상여금 400%지급 * 구속자 문제는 최대한 선처 노력
76	화인정밀 7,706 권근현 이광용	전국금속 경북 기타제조업 150	91.06.07 91.06.18 91.07.24 37 91.05.15	임금인상 (남 3,500원 여 2,000원 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임금 : 남 2,000원, 여 1,500원 인상 * 근속수당 5,000원-9,000원 지급 * 가족수당 : 배우자 5,000원, 부양가족1인 3,000원 * 상여금 400%지급 * 구속자 문제는 최대한 선처 노력
77	소예산업 3,965 홍순덕 황 현	전국금속 경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360	91.05.25 91.06.18 91.06.29 12 88.10.26	인금인상 (기본일급 1,700원) 농성 직장폐쇄	* 기본일급 1,100원 인상 * 남자 : 기혼자 일급 300원, 미혼자 일급 150원 추가 인상 * 특별상여금 100% 지급
78	한국 AMK 춘전지부 7,718 노영미 한무남	전국금속 강원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430	00.00.00 91.06.19 91.07.23 35 91.05.13	조직관계(분규 · 설립) (노조활동보장) 작업거부	* 기본급 14.15% 인상 * 교통수당 8,000원 * 생산장려수당 3,000원 * 춘천지부 문제는 이후 공동협상키로 함
79	현대정공(주) 7,112 손봉현 유기철	전국금속 경남 기계제조업 4,111	91.05.07 91.06.21 91.07.29 40 88.04.20	인금인상 (임금통상 132,132원 (29.7%) 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임금 44,638원(9.5%) 인상 * 수당 42,783원 인상 * 하기휴가비 200,000원 지급 * 생산장려금 100,000원 신설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80	대동공업(주) 6,480 권영민 김상수	전국금속 경북 기계제조업 1,143	91.06.08 91.06.21 91.06.28 8 84.02.05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단체협약갱신및임금) 10,064원 작업거부 직장폐쇄	* 임금기본급 56,000원 인상 * 가족수당 14,500원 지급
81	효성금속 7,119 박용한 하영준	전국금속 경남 기타제조업 1,400	91.06.14 91.06.25 91.07.09 15 79.02.23	임금인상 (기본급 50.1%인상 (144,760원)인상 작업거부 기타	* 기본급 9.9%인상 * 호봉특별승급(14,400원) * 고정수당 37,000원 * 7월 9-10일 유급휴가 * 하기휴가비 70,000원 지급
82	고려상사(주) 250 최병욱 홍호정	전국금속 경남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60	91.06.14 91.06.28 91.07.15 18 87.05.23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기타	* 임금 월 54,000원 인상 * 가족수당 1,000원 인상(배우자 수당) * 근속수당 5,000원 인상 * 무재해수당 7,000원 신설 * 생산장려수당 5,000원-10,000원 신설
83	기아자동차 263 허관무 이범창	전국금속 경기 운수장비제조업 23,035	91.06.14 91.06.28 91.07.03 6 61.10.24	임금인상 (기본급 93,236원 인상) 농성 휴업	* 통상임금 53,684원(11.49%)인상 * 가족수당 7,595원 인상 * 본인수당 3,000원 * T.Q.C 격려금 150,000원 지급
84	필립스 4,696 이정현 알스레이퍼	전국금속 경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430	91.06.19 91.06.30 91.07.12 13 87.08.27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단체협약갱신체결 및 임금 기본 20%인상) 작업거부	* 기본급 16%인상 * 전직원 일률적으로 1호봉 승급 * 장기근속수당 인상(4년기준 2,000원)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85	한국중공업(주) 321 차경준 안천학	전국금속 경남 기계 제조업 6,145	00.00.00 91.07.01 91.07.03 3 87.07.25	기타 (임금인상합의 반발) 작업거부 기타	* 기본급 9.8% 인상 * 상여금 600%지급 * 하기휴가비 110,000원 * 제수당 22,580원 인상
86	중앙기업 7,722 김정호 성기수	전국금속 경남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 43 80	91.06.21 91.07.02 91.09.04 65 91.05.29	임금인상 (임금기본일급 2,400원 인상) 농성 직장폐쇄	* 선조업후협상
87	강원산업(주)삼표중공업 6,466 장경식	전국금속 경북 기계제조업 2,289	91.06.25 91.07.10 91.07.11 2 87.07.25	임금인상 ( ) 농성	* 7.13부터 정상작업 * 조합장에게 체결권을 부여하고 7.16부터 교섭 하기로 합의
88	동국제강(주) 280 박경석 정상돈	전국금속 부산 철강산업 2,666	91.07.01 91.07.16 91.07.25 102 87.09.01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단협갱신체결및 임금 18.5%(64,500원)인상 작업거부	* 기본급 9.9% (34,500원) 인상 * 제수당 6.56%(22,860원)인상 * 상여금 390시간분 650% * 주택자금 융자 : 구입시 500만원, 임대시 300만원
89	대림자동차(주) 6,941 이승필 이길상	전국금속 경남 운수장비 제조업 992	00.00.00 91.07.23 91.08.22 31 76.04.30	기타 (하기휴가) 작업거부	* 기본급 63,000원(18.8%)인상 * 생산장려수당 5,000원-22,000원 지급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90	(주)현대미포조선소 7,108 심규삼 이정일	전국금속 경남 운수장비 재조업 2,373	91.07.12 91.07.24 91.08.01 9 87.07.18	임금인상 (기본급 123,007원 (22%)인상 작업거부	* 기본급 45,025원, 수당 44,020원 인상 * 휴가비 200,000원 지급(휴가 3일) * 3/4분기 능률급수당 100,000원 지급
91	태양기계공업 7,723 김용화 전승호	전국금속 경남 철강산업 74 117	91.07.12 91.07.27 91.09.05 41 91.06.03	임금인상 (임금기본 134,000원 (18%)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특이동향없이 정상근무
92	대아산업(주) 3,477 박윤구 이기승	전국금속 광주 기타제조업 196	00.00.00 91.08.07 91.08.19 13 87.08.17	해고.감원.징계 (해고철회 및 출근 정지에 대한 반발) 농성 휴업	* 기히 조치한 징계·해고등은 노조측에서 수용한다. * 회사는 노조와 조합원에게 파업에 따른 민·형사 면책 * 회사에서 조치한 휴업기간(8/8-8/19)은 통상임금의 70% 지급한다
93	현대중공업(주) 7,113 이영현 최수일	전국금속 경남 운수장비 제조업 22,814	91.07.30 91.08.28 91.09.02 6 87.07.21	임금인상 (임금 113,624원 (19.2%)인상 및 농성	* 임금 2,000원 추가(93,500원) * 특별유급휴가 2일 추가(3일) * 해고자 14명의 연수기간을 1개월 단축(3개월) 및 연수비로 개인별 통상임금 지급
94	한국열교환기 4,719 정규안 김영열	전국금속 경기 기계제조업 120	91.08.23 91.09.03 91.09.19 17 87.08.31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단체협약갱신체결 및 임금인상) 작업거부 직장폐쇄	* 상여금은 600%로 하되, 기본급 400%, 특별 200%로 하고 3년간 보장한다. * 9.19자로 직장폐쇄 철회 및 쟁의행위 중지 * 추석이 지난 9.24일부터 정상근무

순번	조합명 노조코드 노조대표 회사대표	산별명 지역명 업종명 조합원수 근로자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결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규원인 분규유형 회사대응	타결내용
95	신라엔지니어링(주) 4,578 임갑병 황규호	전국금속 경기 기계제조업 133	91.08.23 91.09.05 91.09.17 13 89.05.17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 (단체갱신체결 및 임금 정액 88,725원 인상) 작업거부	* 기본급 18%인상(월 63,000원) * 93.1.1부터 오픈샵제도 실시(92.12.31까지는 유니온 온샵제) *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은 보장하되 별도 합의
96	이원산업(주) 4,649 윤병용 정승인	전국금속 경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250	91.08.16 91.09.07 91.11.05 60 89.08.10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 징계위 노측 2명, 사측 3명 구성 * 공장이전은 2년 이내에 하지 않으며, 이전시는 노조와 사전합의 * 진단서 발급비(160여만원)회사 부담. * 노조전임자 1.5명 인정 * 파업기간 임금지급치 않으며 생계비 15만원 지급
97	삼미정공 5,951 서경호 이성규	전국금속 전북 비철금속산업 471	91.08.21 91.09.26 91.10.01 6 89.03.20	인금인상 (기본급 11.4%인상) 작업거부	* 선조업후 협상
98	한국디젤공업 4,706 고자천 조관현	전국금속 경기 조립금속제품제조업 320	91.10.19 91.10.30 91.11.07 9 90.12.19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 연장근로시간이 월평균 35시간일 경우는 50시간분을 임금을, 35시간 미만일 경우는 실근로시간분을 상여금으로 지급 * 수당 10,000원 신설 * 근속수당 5,000원 인상
99	동일전자기업 7,731 조원미 박규용	전국금속 경남 조립금속제품제조업 124 158	00.00.00 91.11.29 00.00.00 0 91.08.27	휴폐업 및 직장폐쇄 (폐업) 작업거부	

순번	조 합 명 노 조 코 드 노 조 대 표 회 사 대 표	산 별 명 지 역 명 업 종 명 조 합 원 수 근 로 자 수	발생신고 행위돌입 타 결 일 분규일수 노조설립	분 규 원 인 분 규 유 형 회 사 대 응	타 결 내 용
100	우신흥산 7,029 김인철 양수진	전국금속 경남 비철금속산업 88	91.12.02 91.12.20 00.00.00 0 89.08.15	단체협약 (단체협약갱신체결) 작업거부	

조 사 통 계

조 사 통 계 부

○ 개요

Ⅰ. '91임투활동

1. '91년임투 및 쟁의현황조사

2. 노동쟁의사업장 방문

3. 임투종합평가 작성

Ⅱ.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토론회

Ⅲ. '92임투활동지침

1. '91 정기임금조사

2. '92 임금인상활동지침

3. '92 임투지원계획

4. '92임금인상 요구율결정을 지원키 위한 조사

5. '92임투홍보시리즈 발간

개 요

세계경제는 블럭화 형성을 함과 동시에 자국의 이익증대를 위하여 우르과이라운드라는 무기로 수입개방 압력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경제의 어려움과 EC의 경쟁력 강화 및 동구권의 경제권 회복의 몸부림,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권의 부상 등으로 국가간의 이해 갈등속에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의 모습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기회가 오리라는 기대를 걸어보았지만 총선 전에 선포한 총액임금제로 '92임투를 벽두부터 어렵게하는 등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어 우리 노동자들의 기본 생존권조차 주장하지 못하도록 철권적인 강압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업체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체, 서비스업체는 300인 이상 및 고임금업체 1,434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긴밀한 협조속에 중점관리 하도록 하여 각 지방 순회 홍보로 총액임금제 5%에 대한 설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겼을시는 회사의 여신규제와 각종 제재조치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경제단체에서는 총액임금제에 대한 견해를 약간 다르게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경쟁력 상실분을 적용 '92년 임금가이드라인을 4.7%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나 사용자들은 임금인상 한자리수 촛점을 맞춰 노동자의 기본권한인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7년 이전의 정부와 사용자들의 노동탄압으로 힘을 잃지않고 우리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 새롭게 무장, 보다낳은 인간다운 삶을 목적으로 투쟁하여 왔으나 역부족으로 사상자 및 부상자를 낳고 구속자까지 날로 늘어가기만 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노동탄압에 대하여 본노련에서 산하 단위노조들이 일상활동을 올바로 전개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수집, 조사를 통한 분석 및 지침을 내고 있으며 "금속노련통신"에 일간지 신문의 주요기사들을 실어 일상활동을 돕고 있다.

특히 임금인상을 위하여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와 사용자의 논리에 대응하고 '92임투 승리를 향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각 단위노조전임자 및 교육참석자에 국한되어 전체 조합원들에게까지 홍보가 되지않아 노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여 기본적인 불만사항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노련에서는 한층더 노력하며 노련의 활동사항을 전달함과 동시에 금속산하 조합원 및 간부들과 정부·사용자의 노동탄압에 강력대응 할 수 있는 단결된 모습들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Ⅰ. '91 임투활동

1. '91년 임투 및 쟁의 현황조사 전국순회

1) 현황조사의 목적

성공적인 '91임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상대로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문제가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 및 고충처리를 하고 현황을 유지 홍보하기 위함.

2) 방문일정

일 자	지 역	일 자	지 역
4. 23	전 북	5. 1	포 항
24	전 남	2	경 북
25	진 주	3	구 미
26	경 남	4	충 남
27	부 산	6	충 북
28	양 산		
30	울 산		

*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수시로 방문

3) 순회자 : 노진귀 노사대책국장
이경훈 노사대책부장

4) 순회조사결과요약

①현재 금속노련에서 많은 자료를 내려보내주시는데 계속적인 지원을 요청

②구속자 및 노사분규 사업장의 문제에 대하여 노련에서 즉각적인 대처

③지자제 출마자에 대한 금속노련의 입장정리 지원

④현대자동차의 생산량과 각 공단의 중소기업의 물량이 정비례하고 있으며 분규가 터지면 다른 기업으로 물량을 이간시키는 사례

⑤포철의 생산량은 자동차산업과 대동소이하나 철강업계는 정치성이 강해 노·사가 기를 못피고 있는 실정

⑥1차 산업인 포철과 2차 산업인 자동차, 조선등이 한국산업의 크나큰 영향을 미쳐 잘못되면 한국경제가 흔들릴 정도의 열쇠를 쥐고 있음.

⑦사업장마다 인원 자연감소가 있으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인원은 늘리지 않음

⑧지역본부는 참여하나 노련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과 노련에는 참여하나 지역본부에는

불참하는 현실은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지역적으로 불신이 해소가 되겠다.

2. 노동쟁의 사업장 방문('91년 2차 순방)

- 지역 및 일자

안산 및 평택	6/27	창원	6/27
광주·성남	6/28	양산·부산	7/1
인천	6/25	대구7/2	

- 방문자 : 노진귀국장, 이경훈부장, 최웅길사무처장, 장진수 쟁의부장
- 방문시 지급금액 : 50,000원(IMF지원금)
- 방문사업장 수 : 13개 사업장

3. 임투종합 평가작성 및 발송

- 조사내용 : 년초부터 내보낸 양식에 의해 509개 조사서 접수
- 분석기간 : 4~6月(약 3개월간)
- 제작부수 : 1,150부
- 발송일자 : 8월 16일
- 내 용 :

1) 들어가는 말

'91임투에서 〈한자리수〉 인상선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인상억제선이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다.

년초부터 떠들썩했던 페만사태로 작년말 유가인상을 야기시켰고 페만사태에 대한 여론은 1.2차 석유파동과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시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으며 일면에는 1,2차 석유파동과는 성격이 틀려 물량이 충분하며 그렇게 걱정할 것이 못된다는 양분간의 논란이 되고 사회적 관심은 물론 국민전체의 걱정거리가 대두되고 있을 때 국내경제 단체 및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의 가장 관건인 임투의 열기를 저지시키기 위함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무기들은 상품으로 내놓았다.

그것들은 우리나라 경제위기설과 공공요금 인상, 고임금으로 인한 산업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로 페만사태가 적절한 이유중에 하나로 부각되어 임금인상통제 방법으로 인용한 것이며 또한 선도기업 300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기타결 및 한자리수 임금인상을 하도록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렇듯 해마다 임투때만 되면 경제에 어려움 등과 여러 요인들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수단으로서 임금인상억제정책으로 사용되는 것이 통상관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

다. 특히 정부에서는 예년에 하지 않던 홍보까지 동원한 바 있다.

경제기획원의 〈경제뉴스〉, 노동부의 〈노동뉴스〉, 〈노동 3권의 올바른 이해〉, 그밖에 〈국방뉴스〉등 한자리수를 향해 홍보매체를 이용, 여러가지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비쟁의 8개항에 대한 지침을 이용하여 기존의 법을 초월한 탄압을 가하며 가장 정상적이고도 기본적인 노동자의 기본권리 마저도 빼앗아간 것이다.

한편 이에 맞서는 노동조합은 어떠했는가?

87년이후 집행부가 90년에 들어서 80%이상이 교체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교섭석상에 서야만 했고 여기에 요구방법, 교섭방법등의 기술이 부족하여 준비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되었으며, 어느 집행부에서는 교체되면서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전수시키지 않아 새로운 집행부는 전무한 가운데 '91임투를 맞이하여 된 것도 큰 문제점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사용자는 그간 교섭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하여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조와 사용자와의 상대적인 기술차원 격차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정부나 경제단체의 한자리수 임금인상 노동조합의 노하우의 부족, 반대로 개별사용자들의 실력들이 '91임투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아뭏든 '91임투는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는데 임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서로가 눈치를 보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예외로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면서도 인력을 구하기가 극히 어려워 노동조합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임금을 두자리수 이상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조기타결되는 지역이 다수 있었다. 여기에 힘입어 전조직이 두자리수 인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계속되어지는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상승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말하는 한자리수 임금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이 한자리수 임금논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정부도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줄 뻔히 알면서도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이 무리한 지침때문에 각 사업장의 임금교섭은 계속 지연되었고 겉모양만 한자리수를 지키기 위해 수당신설 등으로 임금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어떻든 '91년 임투는 두자리수로 끝나고 말았는데 사용자측에서 공감을 형성하지 않았다면 진정 두자리수 임금인상으로 끝을 낼 수 있는가를 의심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의 허구성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치유하기 위해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려면 어느정도나마 부정적 시선을 씻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선거 이후 노동쟁의 사업장에 대한 경찰투입과 개입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당국이 물리력을 앞세워 노동쟁의를 강압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경찰이 노사협상에 까지도 난입해 노조교섭 대표를 무더기로 연행, 구속시키는 등 더욱 노동탄압이 노골화되고 있어 6월 이후 "노동탄압"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91년 임투는 노동부, 사용자 및 단체 모두는 제각기 제주장을 펼치면서 달려왔다. 그로인해 다친 사람은 노동자 뿐이었고 한많은 희생양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그 어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 정부와 사용자는 구태의연한 방법을 중단하고 각자의 맡은바 처소에서 마음을 비우고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가지 않는다면 '92년 임투도 역시 '91년 임투와 전혀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2) '91임금교섭 현황

초반에는 교섭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게 진행되다가 6월말을 고비로 7월초까지 쟁의발생 또는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91년 임투를 끝냈으며 예년과 다를바 없이 공권력개입등으로 구속자 해고자가 속출하여 보는 이의 가슴만 아프게 했다.

특히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가거나 쟁의발생신고후 냉각기간에 끝을 내는 조합과 그 지역의 타결수준을 보아 교섭을 미치는 조합등이 다수를 이루었다. 지난 6월 10일을 기준으로 "임투중간평가"를 한 적이 있다. 그 현황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부산·인천 등이 빠른 진전을 보였으며 가장 늦게 진행된 곳은 창원지역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비철금속분과가 빠르고 자동차, 철강분과가 母회사의 영향을 받아 임투가 늦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표 1〉 **지 역 별 임 투 현 황**

기본급 기준

구분 / 지역	보고/타결 조 직 수	요구금액	요 구 율 (%)	타결금액	타결율 (%)
부 산	96	93,390	27.07	66,248	19.20
서 울	28	76,367	24.41	56,448	17.98
울 산	12	99,523	30.02	72,086	21.74
인 천	40	73,981	23.64	55,763	17.82
전 남 · 북	41	93,804	30.78	60,241	19.77
경 남	82	85,595	24.55	48,848	14.01
경 북	71	89,494	27.33	85,267	17.79
경 기	103	83,282	26.16	59,758	18.77
충 남	16	75,883	27.47	58,541	21.19
충 북	8	79,636	27.49	53,500	18.46
구 미	12	76,501	25.46	42,808	14.25
평 균	509	86,097	26.45	59,633	18.32

〈표 2〉 업 종 별 임 투 현 황

기본급 기준

구분 / 지역	보고/타결 조 직 수	요구금액	요 구 율 (%)	타결금액	타결율 (%)
기 계 금 속	179	89,410	26.87	61,478	18.48
전 기 전 자	93	75,718	26.32	49,547	17.22
자 동 차	108	85,795	27.71	60,871	19.66
철 강	62	88,186	24.77	62,465	17.55
비 철	34	80,380	25.18	55,646	17.43
조 선	17	101,397	27.38	80,975	21.19
기 타	16	78,142	27.56	57,665	20.33
평 균	509	86,435	26.62	59,431	18.32

〈표 3〉 규 모 별 임 투 현 황

기본급 기준

구분 / 지역	보고/타결 조 직 수	요구금액	요 구 율 (%)	타결금액	타결율 (%)
1,000명 이상	34	77,589	22.78	45,603	13.38
1,000명 이하 ~500명 이상	40	81,077	24.94	53,054	16.32
500명 이하 ~100명 이상	204	83,694	26.45	56,713	17.92
100명 이하	231	89,696	28.42	63,029	19.97
평 균	509	86,804	26.98	58,550	18.32

3) 임금교섭 타결수준 현황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물가인상과 주거비 상승으로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임금이기 때문에 '91임투의 요구에 있어서도 예년에 비해 그다지 낮은 수준이 아닌 26.45%로 나타났다.

이 요구항은 실제 기본급 인상률 평균 18.32%로 전년도 인금인상률 15.80%보다 2.52% 높은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금액으로는 요구평균 기본급 86,097원에 비해 타결평균 기본급은 59,633원으로 약70% 요구금액에 대한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1〉,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조선업종이 19%~21%의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표2〉, 규모별 현황은 100명 이하 사업장이 19.77%를 쟁취하여 1,000명 이상 13.38%보다 6.39%가 높은 수준으로 쟁취한 것을 보면 〈표3〉, 현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으로 인한 임금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절박함과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생활은 거의 같은 수준이므로 임금을 중소기업처럼 올려놓고 대내외적 임금인상 결과 발표사항을 틀리게 하여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해도 틀린말은 아닐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대기업일수록 주거비 보조 아니면 근로자주택 건설등 다양한 노동복지 증진 방안으로 낮은 인상률을 보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일면에는 파업에 바탕을 둔 교섭력으로 노조의 요구 관철이 용이했으나 최근의 탄압국면과 선도사업장 선전에서 보이듯이 '91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여의치 못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4) '91임투의 이모저모

① 노총 최저생계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1976년 한국노총이 가구별 최저이론 생계비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어 90년까지 사용하여 오다가 91년 생계비 모형이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91년 임투가 늦어진 이유중에 하나라고 지적한다면 노총 최저생계비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요구율을 17.5%를 내므로서 혼란이 야기되는데 우선 전노협 요구%가 노총보다 높다는 이유와 산출근거에서 상여월할금을 인상액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각 단위사업장에서 임투요구 산정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불만요소를 표출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상여금 포함하여 사용하여도 현재받는 급여가 노총의 산출한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문제가 전혀 없는 사업장이 있는가하면 대규모 사업장이나 임금수준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노총 요구제시안을 이용하여 교섭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공동교섭 실시

눈에 보이지않는 공동교섭이 '91임투에 있어서는 그 어느해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년초부터 정부로부터 임투에 대한 회유책이 예상되어 공동교섭 아니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련에서는 공동교섭을 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적절한 수단과 예산이 필요로 하겠지만 예산상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공동대처하여 '91임투를 성공적으로 하자는 지침 하나만 내려보낸 노련도 반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공동교섭안을 만들어 노련으로 보고한 조직이 한군데 있었다. 그외에는 필요성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4-5개 사업장이 시기와 요구금액등을 맞추어 공동교섭에 임하는 곳도 있었다. 서로의 이념과 임금체계 결의기구가 전혀 틀리더라도 어차피 같은수준에 타결될

것이라면 공동으로 임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모르겠다.

사용자들은 업무 및 정보교류를 극히 친밀하게 유지 · 유대하고 있으나 각 노조들은 업무 · 정보교류를 하기는 커녕 폐쇄적이고 또 일방적으로 각개 투쟁을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상도 있고 말로만하는 연대가 되고 만 것이다.

특히 지역적으로 두드러진 현상은 공동교섭 아닌 공동교섭으로 진행되어 버렸다. 예를들면 지역에서 어느 한 사업장이 임금인상을 하면 그외 사업장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두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공단전체 혹은 그 지역적으로 약속이나 한듯 타결되는 것이다.

어차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타결될 사항이라면 처음부터 같은 업종 또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동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③ 노련의 '91 임투활동

노련에서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임투활동에 막을 올렸다. 무엇보다도 '91년 임투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임투로서 정부와 사용자와의 대처를 해야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각지역본부와 "금속노련통신"을 이용하여 "91년공동임투지침"을 시달하고 바로이어 임투교육을 전국규모로 1월하순부터 2월 하순까지 실시하고 순회도중에 임투지침을 배부하였다.

또한 한자리수 임금인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노총 8층강당에서 노조대표자들이 모여 '91임투승리와 노동탄압저지를 위한 집회를 갖고 임투를 위한 포스터를 배부하였다.

'91년 임투가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늦어져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본부(대도시중심)를 대상으로 쟁의사업장을 방문하여 조합원 및 집행부 간부를 만나 격려한바 있으며 이러한 방문을 2차례 이상으로 계속 방문하였다.

이번 임투에 있어서 특기할 사항은 1월부터 지금까지 "금속노련통신"을 발간, 시사성 있는 신문뉴스 및 통계자료 등의 내용을 전조직에 주간으로 발송, 각 단위조합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한 점을 들 수 있겠다.

〈표 4〉 '91 임 투 활 동

일 시	활 동
1. 14-	'91공동임투지침 시달(각 지역본부 및 통신에 게재)
1. 25-2. 22	임투교육(전국규모)
1. 20-2. 25	임투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발간(1,200부)
2. 5-2. 9	임투지침 제작 배부(1,500부)
4. 23-5. 6	임투 및 쟁의사업장 조사, 격려방문(1차-전국규모)
4. 4-4. 11	임투활동을 위한 자료집 제작 배부(1,200부)
5. 15-	노동탄압분쇄 및 '91임투승리 결의대회(노총 8층강당)
5. 15-5. 19	임투 포스타 배부(5,000부)
6. 27-7. 2	쟁의사업장 방문(2차)
수시로.	그밖에 임투를 위한 교육활동
1월부터	금속노련통신 발간

5) 임투의 특징

① 요구의 형태

- 복지측면의 수당의 요구(신설)보다 물가상승을 내세워 기본급의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기타요구는 단협갱신으로 전환하는 경향.
- 공해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자 공해수당 신설을 회사측에 제시하는 경향도 보임.
- 사용자측은 년간 총액개념으로 교섭에 임함.
- 조합원들의 요구충족을 위한 정액,정율 혼합방식을 적용하는 노조가 많음
- 87년 이후 지금까지 시급제 임금제도에서 올바른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요구가 많았으나 91년도 역시 임금체계 개선(단일호봉제)내지는 임금체계 요구.
- 노총 최저생계비와 전노협 최저생계비를 요구에 있어서 동시에 사용하는 경향.

② 사용자들의 의식

- 노동자가 자기가족이라는 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
- 교섭석상에 대표자가 한번도 나타나지 않는 사업장이 대부분 파업.
- 중소기업의 경우 3난(인력난, 자금난, 수출난)에 부딪혀 인원채용에 어려움이 있자 노조에서 요구하기에 앞서 선타결 되는 사례도 있음.
- 물가폭등, 생활물가 상승(주거비)으로 노동자 생계지장이 있음은 정치적 불안에서 초래되었다고 주장하여 노동자의 요구에 공감을 하고 있으나 주위의 여건과 타결되는 상황

주시.

- 6.29선언이후 관리자들의 권위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의식으로 노동자를 주종관계로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다.

③ 타결의 형태

- 노동쟁의가 현저하게 줄어듬
- 각 단위노조의 규약상에 임투결과를 총회 투표로서 끝내는 노조가 많았고 끝마무리를 하지 못해 대표권 시비가 사회적 여론까지 대두됨.
- 이러한 대표권 문제가 대두되자 사용자들은 "대표권 없으면 교섭을 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교섭권을 위임하는 경우도 있음.
-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단기전으로 가는 경향이 많음.〈표 8〉
- 한자리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이 무너짐.

④ 쟁의행위하는 이유

- 교섭석상에 대표이사(책임을 질 수 있는 실권자)가 참석하지 않는 사업장.
- 현저하게 임금이 낮음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 사측과 큰 격차로 인해서 정체된 사업장.
- 다국적기업의 사업장.
- 관리자와 중간관리자들의 회유, 압력등의 문제로 조합원들의 인간적 대우를 요구하는 사업장.
- 87년이후 쟁의행위를 한번도 해보지 못한 사업장

6) 노동쟁의 형태

금속노련 산하 6월30일 현재 조직수가 954개노조(지부제외)로서 노동쟁의 건수가 80건으로 8.39%로서 10%미만으로 나타났다.

쟁의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경남지역과 경기지역이 가장 많았고 충북지역같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명부터 500명 사이의 조합원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이 38.75%로서 중소기업의 저임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표 5〉

한편 원인별 쟁의현황을 보면 〈표 9〉 단체협약 및 임금인상을 위한 쟁의건수가 67건으로 83%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구속자석방, 해고, 징계, 감원사태, 폭행, 합의각서 작성, 노조활동보장 등의 요구가 관건이 되어 쟁의에 임한다는 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노조탄압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기본적로 요구하여야 할 임금이나 단체협약갱신을 위해 투쟁하여야 한는데도 불구하고 16%정도가 그 이외의 건으로 쟁의행위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다.

〈표 5〉 **규 모 별 쟁 의 현 황**

6.30. 현재

구분 \ 조합원수	100명 이하	101~500명	501~1000명	1001명이상	계
건 수	18	31	11	20	80
백 분 율	22.50	38.75	13.75	25.00	100

〈표 6〉 **지 역 별 쟁 의 현 황**

6.30. 현재

구분 \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경남	경북	부산	전남	계
건 수	3	19	11	3	0	23	12	7	2	80
백 분 율	3.75	23.75	13.75	3.75	0	28.75	15.00	8.75	2.50	100

〈표 7〉 **분 과 별 쟁 의 현 황**

6.30. 현재

구분 \ 분과	기계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비철금속	기타	계
건 수	46	12	3	5	4	4	6	80
백 분 율	57.50	15.00	3.75	6.25	5.00	5.00	7.50	100

〈표 8〉 **쟁 의 일 수 현 황**

6.30. 현재

구분 \ 쟁의일수	1~5일	6~10일	11~15일	16~30일	30일이상	계
건 수	25	16	14	10	15	81
백 분 율	31.25	20.00	17.50	12.50	18.75	100

〈표 9〉 **원 인 별 쟁 의 현 황**

6.30. 현재

구분 \ 관련	단체협약	임금임금	구속자석방	해고징계감원	단협+임투	기타	계
건 수	13	46	4	4	8	5	80
백 분 율	16.25	57.50	5.00	5.00	10.00	6.25	100

※ 기타 : 폭행, 합의각서 작성, 위원장 사망, 사업주 사고, 노조활동 보장

〈표 10〉 노조 설립년도별 쟁의현황

6.30. 현재

구분 \ 설립년도	87년 이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계
건 수	26	17	13	16	2	6	80
백 분 율	32.50	21.35	16.15	20.00	2.50	7.50	100

※ 87년도 이전 : 63년부터 시작됨.

7) 결 론

노동자는 노동력의 댓가를 요구할 따름이지 노동의 댓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이 상품의 가치로서 시장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적정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91임투는 우선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무력하게 됨을 보여주는 본보기의 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하겠다. 특히 공익사업과 임금선도기업 지정을 하여 정부 의도대로 이끌어 갈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물가인상, 부동산가격 상승에 힘입어 기업간의 비교임금 또는 상대적 임금이론등으로 임금교섭을 주도하여 정부의 한자리수 임금인상은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권력개입, 노동부의 비쟁의 8개항, 연봉개념, 성과급제도 도입 등 각종 압력수단의 도구자체를 철회해야 할 것이고 사용자들은 그것에 의존해서 임금교섭을 전개할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다.

이번 금속노련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임투지원교육을 했고 임투 및 쟁의사업장 방문을 했지만 인원수에 비례하여 조직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꾸준한 노력으로 전사업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각오가 노련으로서는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

올해는 노총의 최저생계비모형이 개정되어 객관성을 더했으나 이를 근간으로 생계비 확보론의 확립을 위한 요구의 기본원칙에 혼선을 보인 경우도 있었으며 요구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요구가 전체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하겠다.

한편 전국적으로 임투의 현실을 재조명 해보면 임투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부분이 금속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운동의 대중성과 국민전체의 공감대로 형성하여 그 힘을 바탕으로 투쟁의 역량이 한층 더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 행동 및 동종.지역 공동임투등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속노동자 전체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Ⅱ.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토론회

1. 사업목적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자들은 조립업체의 하청단가 삭감압력과 동종업체간 경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및 높은 산업재해의 위험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와같은 불안정 속에서 노동조합운동 또한 항시 위협을 받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의 단결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는 기업간 경쟁이 바로 노조로 옮겨져 단결을 저해하고 있고 막대한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연맹차원에서 단결과 공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동차조립업체 노동자들과의 동지적 관계하에서 자동차조립업체 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운동방향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사업은 다음 3가지 목표로 두고 있다.

①자동차부품업체 노동자의 연대의식 고취(조직기반 조성) ②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의 운동방향 정립 ③'92 임투대책

2. 일　　시 : 1991. 11. 29(13 : 00~18 : 00)
3. 장　　소 : 한국노총 8층강당
4. 참석대상 :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간부(당일참석인원 120명)
5. 책자제작 : 조사된 자료정리와 발제강연 내용(192페이지)
6. 토론회 일정

13 : 00 - 13 : 30	개 회 식
13 : 30 - 14 : 10	발제1-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현황
14 : 10 - 14 : 50	발제2-자동차부품업체현황, 문제점 및 대책
14 : 50 - 15 : 30	발제3-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운동(1)
15 : 30 - 16 : 10	발제4-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운동(2)
16 : 10 - 16 : 40	발제5-주요선진국의 자동차산업노동조합운동
16 : 40 - 18 : 10	토　　론

○ 모기업의 압력 유형별 문제점 (경기 : 동양기공-주영진 위원장)
○ 단결력 저하요인 및 대책 (부산 : 동아금속-최재석 위원장)
○ 부품단가 하락요구에 따른 노조에 미치는 영향 (울산 : 덕양산업-신성건 위원장)
○ 모기업체의 권위의식 (전남 : 금성기계-박정호 위원장)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요구 (인천 : 세일기계-나용길 위원장)

○ 모기업체의 생산중단에 따른 부품업체에 미치는 영향

(경북 : 신아금속-김 활 위원장)

18 : 10 - 18 : 30 결의 및 폐회

7.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토론회 일지

일 시	수 신 처	내 용
91. 8. 23	내부품의	○ 토론회 계획안 작성
9. 3	각지역본부	○ 토론회 관한 사항을 통보후 준비위원 1명 선임 준비위원 : (경기)대경화성-박순영 위원장 (부산)동아금속공업-최재석 위원장 (울산)덕양산업-신성건 위원장 (광주)기광산업-이상수 위원장 (인천)세일기계-나용길 위원장 (경남)기아정기-최상우 위원장 (경북)대철공업-류호식 위원장
9. 9	노동조합	○ 실태조사서 배부(150부) ○ 준비위원 1차 회의 일시 : 1991. 9. 27 15 : 00시 장소 : 본노련 회의실
9. 16	IMF-JC	○ IMF 및 IMF-JC에 자동차부품 토론회에 관한 공문발송
9. 19	노 총	○ 노총 강당사용 신청
9. 27	노동조합	○ 토론회 준비위원 회의개최 * 의결사항 1) 실태조사서 회수문제 : 노련에서 일단 접수하고 접수된 것을 준비위원 통보-독려 2) 지역별 인원 동원 : 노련에서 각 노동조합에 토론회에 관한 공문발송-준비위원에게 보고-노련으로 참석인원수 보고 3) 지역별 토론자 1명 선정 : 경기 · 부산 · 울산 · 전남 · 인천 · 경남 · 경북지역에 토론회 주제를 주고 주제발표자 1명을 준비위원이 선정
91. 9. 30	준비위원	○ 토론회 주제선정 내용 발표 * 경기 : 모기업의 압력 유형별 문제점 * 부산 : 단결력 저하요인 및 대책

일 시	수 신 처	내 용
		* 울산 : 부품단가 하락요구에 따른 노조에 미치는 영향 * 전남 : 모기업체의 권위의식 * 인천 :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요구 * 경남 : 납기독촉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및 사고발생 * 경북 : 모기업체의 생산중단에 따른 부품업체에 미치는 영향
	각노동조합	○ 준비위원 위촉공문 전 조직에 발송
10. 2	〃	○ 실태조사서 보고 독촉
10. 21	자동차협동조합	○ 강사(고문수 이사)파견 협조요청
10. 22	준비위원	○ 각 지역별 토론회 참석자명단 파악 보고 공문발송
	각노동조합	○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발송 일 시 : 1991. 11. 15 13 : 00 장 소 : 노총강당 참석자 : 명단을 준비위원에게 보고
10. 23	부산지역본부	○ 강사파견요청(부산지역본부 오일환 조직국장)
11. 4	각노동조합	○ 토론회 연기
	지역본부	○ 일시 : 1991. 11. 29 13 : 00 장소 : 노총강당 이유 : 노총위원장 단식투쟁
11. 8	준비위원	○ 협조요청 - 실태조사서 수거 독촉 - 주제발표자 선정 보고
11. 11	내부결재	○ 자동차 5사 방문 * 모기업체로서 부품업체의 애로사항 결정후 연대 필요성 고취의 목적
91. 11. 20	준비위원	○ 토론회 준비위원 2차 회의소집 일시 : 1991. 11. 26 17 : 00 장소 : 대전 경하장 안건 : 참석 인원수 재파악 주제발표자 원고 수집 결산보고 결의문 재정비

일 시	수 신 처	내 용
11. 22	내부결재	○ 결의문 작성
11. 26	준비위원	○ 토론회 준비위원 2차회의 개최
11. 29	토 론 회	○ 토론회 개최 일 시 : 1991. 11. 29 (13 : 00-19 : 00) 장 소 : 노총대강당 참석자 : 104명 내 빈 : 쌍용자, 현대자
12. 2	수 신 처 각노동조합	○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자동차 5사 결과통보 ○ 불참노조 및 지역본부에 대한 자료발송

8. 결 의 문

1991. 11. 29 13 : 00-18 : 30까지 한국노총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대표들은 자동차제조업체 노동조합 대표들이 동참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조합의 현황, 자동차부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운동론, 외국의 사례토론과 아울러 자동차부품업체와 중소기업 육성 및 노동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 우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없는 〈국민적 자동차산업〉의 확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동차부품산업의 내실있는 안정적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 우리는 자동차부품산업의 노동조건이 지극히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같은 노동조건은 독점이윤 극대화를 위한 독점 모기업들의 하청단가 삭감과 횡포, 그리고 독점자본주의 정부경제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 우리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임금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초래한다는 정부식의 발상이 독점이윤은폐와 전노동자의 임금억제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임금억제의 신무기로 등장한 총액임금제를 결사반대하며 특히 중소기업노동자와 대기업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책동도 전노동자의 총단결로 완전 분쇄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억제가 아니라 독점이윤 및 횡포와 부패자금의 일소등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 우리는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자와 제조업체 노동자는 상호협력과 책임의 관계에 있음을 천명하며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기업 노동자들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며 모기업 노동자와의 연대 속에서 상호의 이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 동지들과 함께 자동차부품업체노동조합운동 및 자동차산업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논의를 더욱 진전시키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자동차분과 구성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고 타 중소기업노동자 및 반독점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도 모색한다.

- 우리는 30만 자동차부품업 노동조합 노동자와 75만 노동자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93년 자동차시장 개방을 반대하며, 이의 개방을 저지하기 위해 지금부터 적극 노력한다.
- 아울러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인한 낮은 기술개발투자를 반대하며 이윤의 사회환원 · 기술개발투자 확충을 통해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자들의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92년도 임투부터 정보교류와 임투방향 결정과 상호지원체계를 확립키 위한 모임을 조직한다.
- 우리는 독점 모기업의 횡포와 독점위주의 정부 경제정책을 폭로함과 동시에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자의 비인간적 삶을 국민 및 관계기관에 호소하기 위한 공동 홍보수단을 개발한다.
- 우리는 자동차공업협동조합과 원칙선상의 관계를 설정토록 노력하며 우리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정책건의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아울러 노동조합을 인정하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전환이 있을 것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 우리는 이상의 결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1991. 11. 29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대표일동

보 도 자 료

제목 : 자동차부품업체노동조합 토론회 개최건

① 주최기관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② 일 시 : 1991.11.20 13 : 00 18 : 30

③ 장 소 : 노총회관 8층 강당

④ 참 석 자 :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 간부 200여명
현대, 기아, 대우, 아시아, 싸용등 자동차 5개사 노동조합간부

⑤ 개최목적 : 1200개 업체 20만명의 종업원에 이르는 자동차부품산업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모기업의 하청단가 삭감압력 및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

부품업체 노도아들의 문제를 자동차산업 발전이라는 전체 틀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즉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조합이 운동방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결의하여 자동차부품업체 노동자들의 향후의 연대기초를 형성하는데 있음

⑥ 요망사항 : 토론회개최사실의 보도 및 토론회내용 보도

1991. 11. 25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홍보부 및 노사대책부
(전화 : 864-2901, 864-2902)

Ⅲ. '92 임투활동지침

1. '91 정기임금조사

- 표 제 : 1991년 임금, 노동조건 및 주거실태조사
- 조사일정 : 인쇄 : 1991. 9. 30
  발송 : 1991. 10. 5
  접수 : 1991. 10. 15~10. 30
  분석 : 1991. 11. 1~11. 30
- 조사서 접수 : 270부
- 조사서 내용 : ○ 초임
  ○ 임금현황
  ○ 수당 및 상여금(일시금 및 성과금)
  ○ 복지관련사항(주택융자지원제도)
  ○ 파트타임제 실시여부
  ○ 직능, 직무, 성과급 도입현황
  ○ 노동시간
  ○ 의식생활, 레져, 자가용, 교육비 및 기타

2. '92임금인상 활동지침 제작

- 임금지침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 91년 12월 3일~91년 12월 9일
- 임금지침 원고작성 : 91년 12월 10일~91년 12월 27일

- 책자인쇄 : 91년 12월 30일~92년 1월 9일
- 발행부수 : 1,300부
- 임금지침 내용

가. '92년도 임금인상 활동지침 목차

제1장 '92국내외 정세와 동향

1. 국제정세
2. 국내정치와 관련된 경제
3. 경제흐름의 현황
4. 금속산업의 동향

제2장 '92년도 임금인상 요구와 근거

제1절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1. 주 44시간 노동으로 생계비 확보
   1) 임금과 생계비
   2) 생계비 보장의 정당성
      (1)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2) 내수기반을 확대시킨다.
      (3) 국내 저축의 기반을 확대시킨다.
      (4) 교역 조건을 개선시킨다.
   3) '92 노총 최저생계비 내역
   4) 최저생계비 활용상의 주의할 점
2. 임금구조의 개선요구와 타당성
   1) 임금구조의 실태
   2) 현행임금체계의 문제점
   3) 생산직 임금차별 "여전"
   4) 직무급, 직능급제 도입에 따른 우리의 요구
      (1) 직무급이란?
      (2) 직무급의 문제점
      (3) 직능급이란?
      (4) 노동조합의 요구
   5) 성과 배분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의 요구

(1) 성과배분이란?

(2)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실태

(3) 성과배분제도 도입이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6) 단일 호봉제 실시

(1) 단일 호봉제란?

(2) 단일 호봉제의 유형

(3) 단일 호봉제의 실시

7) 총액 임금제 반대

(1) 총액 임금제 도입의 배경

(2) 총액 임금제 반대

(3) 총액 임금제 반대 이유

(4) 노동조합의 요구

8) 임금체계 개편의 속뜻

9) 임금체계의 합리화

3. 주44시간 노동제의 완전확보

1) 노동시간 단축운동의 지속적 전개와 임금보전

(1) 주44시간 노동의 완전관철과 임금보전

(2)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확대와 완전획득

(3) 교대제 노동의 개선

(4)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전방식

2) 변형근무제 도입시 수당미지급 철폐

(1) 변형근무제의 본질

(2) 변형근무제의 반대

(3) 변형근무제에 대한 우리의 방안

4. 고용안정과 고용확대 운동전개

1) 시간제노동 근거규정의 명문화 및 합법적 보장

(1) 시간제노동제의 반대

(2) 시간제노동제의 반대이유

(3) 시간제노동제의 도입에 따르는 대안

2) 해외인력 수입개방 반대운동전개

(1) 해외인력수입의 문제

(2) 해외인력수입 개방에 대한 대응

제2절 복지후생제도의 신설 및 확충

1. 복지후생제도 신설 및 확충
 1) 기업복지제도의 내용
 2)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요구
 3) 경조금 지급 확충
 4) 복리후생비 지급확충
 5) 복지후생제도와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2. 주거생활 안정
 1) 노동자의 주거생활실태
  (1) 28세 봉급자 환갑넘어야 내집마련
  (2) 노련산하 무주택조합원 주거 지원제도 실태
 2)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1) 정책적요구
  (2) 기업에 대한 요구
  〈사례〉 주택구입융자 지원규정(안)
3. 사내복지기금 설치
 1) 사내복지기금법 제정의 배경
 2) 사내복지기금법 외국의 제도
  (1) 대만의 제도
  (2) 프랑스의 제도
 3) 사내복지기금의 설치 효과
4. 우리 사주제도의 실시
 1) 우리사주 제도의 의의
 2) 우리사주 제도의 실태
 3) 우리사주 제도에 대한 우리(노동조합)의 요구
 〈사례〉 사내복지기금운영규정(안)

제3절 '92공동임투로 조직력 강화

1. '92 공동임투 체계
 1) 일반원칙
 2) 공투체의 규정상 근거
 3) 보고사항
2. 업종별 교류 체계
 1) 교류체계
 2) 교류회 조직방식

제3장 임투준비 실제와 마무리

제1절 임투준비의 실제

1. 들어가는 말
2. 임투준비
3. 임투방향의 설정
4. 임투준비의 실제
5. 임투인상 요구율 및 산정방식

제2절 임투의 마무리

1. 임투이후의 사후관리
2. 정액·정률 인상의 적용은 어떻게?

제4장 금속산업의 업종별 동향

1. 철 강
2. 비철금속
3. 기 계
4. 농 기 계
5. 중 전 기
6. 전 선
7. 가 전
8. 컴 퓨 터
9. 반 도 체
10. P C B
11. 브라운관
12. 조 선
13. 자 동 차
14. 자동차부품

제5장 정부·사용자측 주장비판

제1절 노동자 임금때문에 한국경제 위기인가?

제2절 30분 일더하기운동이 제조업 경쟁력을 일으키는가?

제3절 임금억제 시나리오의 허구성

제6장 '91정기임금, 노동조건 및 주거실태 조사서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분석내용

1. 일반현황
2. 임금현황
3. '91년도 임금교섭 결과
4. 노동시간 및 휴일실태
5. 복지 노동자의 생활실태

제7장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1.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산출의 개요
   1) 소비자물가 조사방법
   2) 가구모형별 가족구성
   3) 가구모형별 생계비
   4) 가구모형별 항목별 생계비
2. 최저생계비 산출모형의 설계
   1) 가족구성 모형의 설계
   2) 식품비 모형의 설계
   3) 주거비 모혀의 설계
   4) 광열비 및 수도비
   5) 가구 · 가사용품비
   6) 피복 · 신발비
   7) 보건 · 위생비
   8) 교육비
   9) 교통 · 통신비
   10) 교양 · 오락 · 잡비
   11) 저축
   12) 조세공과금
3. 부표

부록 : 금속노련 임금(초임) 및 수당현황

1. 분과별 임금현황(초임 포함)
2. 분과별 수당 현황

나. '92공동임투지침

1. '92공동임투체계

1) 일반원칙

지역별공투체계를 중심으로 하되 업종별 정보교류체계를 발전시킨다. 단, 양체계가 상호보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우상을 정립한다.

가) 지역별 공투체계 :

① 교섭시기 및 쟁의시기의 통일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상황보고 및 전파를 담당한다.

③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

④ 각 업종에 적합한 요구율을 지역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회의 및 정보제공이 기회를 제공한다.

나) 업종별 교류체계 :

① 임금요구서 준비를 위해 해당노조들이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실태조사의 회합의 기회를 제공

② 임금인상 요구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 노조의 요구율 결정을 지원하고 동질성이 강한 경우는 공동요구안을 만들도록 지원

③교섭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서류

④업종별 사용자단체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며 업종에 대한 정책건의 사항이 있을 시 공동대응

2) 공투체의 규정상 근거

공투체 운영은 연맹의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준하여 하며 공투체의 활동은 동 규정에 의한 활동으로 간주한다.

Ⅰ. 지역별 공투체계

가) 지역공투체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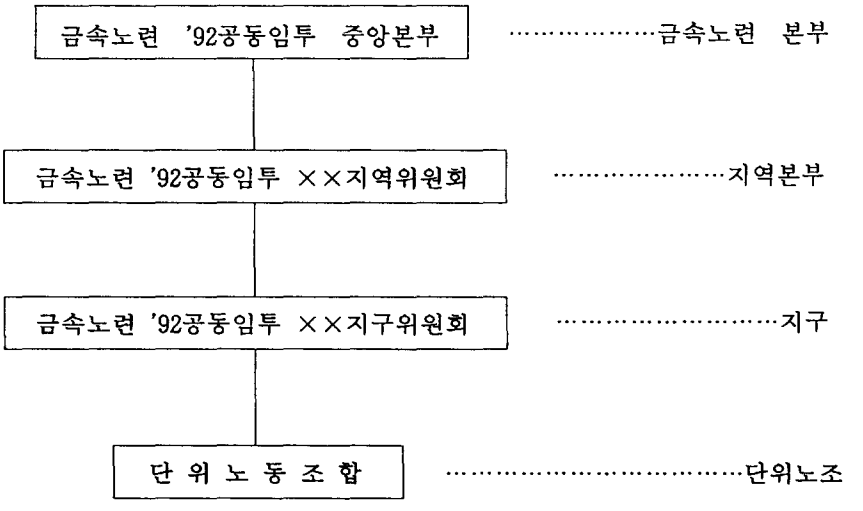

〈지 구 구 분〉

공투체의 기본단위는 공동임투 지구위원회이며 지구위원회는 다음의 지구부분에 따라 금속노련 가맹노조로 조직한더.

서울지역 : 서울지역본부 산하 전노조로 구성

인천지역 : 4공단, 5공단, 6공단, 기계공단등 4개지구

경기지역 : 안양, 수원, 안산, 부천, 성남등 5개지구

충북지역 : 청주를 중심으로 하되 충북지역의 전노조로 구성

충남지역 : 대전를 중심으로 하되 충남지역의 전노조로 구성

경북지역 : 대구, 포항, 구미등 3개지구

울산지역 : 울산지역본부 산하 노조로 구성

부산지역 : 부산지역본부 산하 전노조로 구성

경남지역 : 창원, 마산, 마산수출자유지역, 양산, 진주등 4개지구

전남지역 : 전남지역본부산하 전노조로 구성

전북지역 : 전북지역 노조로 구성

강원지역 : 강원지역 전노조로 구성

나) 지역공투체 구성 및 활동일정

① 공투체 구성지침 발송 : 92년 1일 임금지침확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이후 발송

② 공투지침 설명을 위한 지역본부 실무자회의 : 92년 1월 중순중

③공투에 관한 홍보 : 92년도 1월호 금속노보 및 1월하순의 임투교육을 통해 실시

④지구공투체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위촉 : 92년도 1월 중순

· 각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력 있는 위원장을 지구당 5명이내로 위촉

⑤ 요구율 산정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서 발송 : 1월 중순 연맹에서 발송

⑥ 지구공투체 구성 준비위원회 회의 : 92년도 1월 하순초에 각 지역본부에서 가짐

· 안건 : 연맹 공투지침 설명

⑦ 지구공투체 구성지침 통보 : 전항의 준비위원회 회의 이후 바로 각 지역본부는 산하 노조에 지구별로 준비위원 명단과 지구공동체 추진지침, 실태조사서를 첨부하여 발송

⑧실태조사서 회수 : 각 지구 준비위원들은 92.1.25까지 실태조사서를 연맹에 제출토록 담당노조들을 독려(미 제출노조명은 지역본부를 통해 사전 통보)

⑨부당노동행위 및 쟁의대책요원 교육실시 연맹에서 92년 2월 15일까지 실시. 목적은 지역공투체 확립 및 공투체 기간요원 육성에 있음. 교육대상은 지역본부가 지구별로 선정하되 교육이수시 쟁의대책요원으로 압축되어 공투체요원으로 활동케 됨.

⑩지구별 공투위원회 결성을 위한 준비 : 각 지구의 준비위원들이 공동으로 준비

⑪실태조사서 집계 및 통보 : 92. 2. 10까지 실태조사서 집계하여 지역본부 통하여 발송

⑫지구별 공투위원회 결성 : 각 지구는 92년 2월 하순까지 지구별 공투위원회를 조직

· 결성 및 활동에 관한 지침은 약간 뒷쪽에 나옴

다) 지역공투체 지도부의 구성

① 중앙본부 : 연맹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연맹 위원 및 지역본부 의장으로 구성되는 중앙본부를 구성하고 연맹의 각 실무부서는 이를 보좌한다.

② 지역위원회 : 지역본부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역본부 실무부서가 보좌한다.

③지구위원회 : 의장1명, 부의장 약간명, 간사 1명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홍보위원회 상황실장, 쟁의 및 부당노동행위 대책반, 문선대, 대외협력 담당 등을 두어 활동한다.

라) 지역 공투체의 운영

① 중앙본부 : 공투를 총괄하며 다음의 특별지원활동을 한다.

· 임금지침 심의를 위한 중앙위원회개최(1일 중순)

· 공투지침 설명을 위한 지역본부 실무자회의(1월 중순)

· 요구율 결정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서 발송(1월 중순)

분석및 배부 : 1월하순~2월초순말(2차 자료 첨부)

· 임투지원 교육(1월 하순)

· 노동쟁의에 관한 소책자 제작(2월 중순까지)

· 쟁의지도요원 교육(2월 중순)
· 업종별 교류회 추진(2월 중순~하순)
· 포스터 제작 배부(2월 하순초)
· 대외 홍보
· 임투관계자료지원(전기간, 주로 금속통신이용)
· 상황실운영(전기간)
· 교섭상황 현지파악 및 쟁의사업장 지원(4월중)
· 임투결의대회(노총, 지역과 조정, 필욕시 3월 초순)
· 임투평가(7월중)

② 지역위원회 : 지구위원회를 관장하고 중앙본부와 지구위원회를 연결시킴
· 재구대책위원회 결성준비 및 지원
· 쟁의 및 부당노동행위 공동대책
· 상황실 요원
· 각 지구의 임투결의대회가 불가능할 시는 지역단위 임투결의대회 개최

③지구위원회 : 지역공투체의 핵심적 요소로서 중앙본부 및 지역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활동전개
· 재구대책위원회 결성 : 각 단위노조 대표자로 구성하되 다음 안건을 처리
㉠ 임원 선출
㉡ 활동경비 거출에 관한 사항
㉢ 공동임투 추진을 위한 규칙 제정(별첨)
㉣ 요구율에 관한 결정
㉤ 공동임투 추진일정에 관한 상
㉥ 정당방위대 구성
㉦ 사용자, 관계기관에 대한 메세지 채택
· 사용자 및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공한 발송
· 제1차 전술회의 : 지구대책위 결성과 병행시킬 수 있음. 다음 안건처리
㉠ 임금요구서 제출일 정함
㉡ 교섭최종시한을 정함

마) 임투결의대회 일정을 잡음
① 임투결의대회 개최 : 교섭최종시한 무렵에 개최
② 제2차 전술회의 : 교섭최종시한 직후에 개최하여 쟁의신고계획을 정함.
③ 미타결노조 및 부당노조행위, 쟁의 사업장 지원
④ 교섭과정에 따라 적절한 단체 행동 : 가능한한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

예) 리본착용, 현수막 게양, 관계기관 및 사용자에 대한 방문, 공동대자보 부착, 사용자측 폭력에 대한 공동대책, 성명서 발표 등

* 선거국면과의 결합 필요

⑤ 공동 요구사항 발굴 : 5.1노동절 유급휴일화등을 공동요구로 임투와 결합시킬 수 있음

⑥ 제3차 전술회의 : 미타결 노조 및 문제사업장에 대한 전술 수립

⑦ 홍보활동

· 홍보활동은 지구위원회에 의한 임투주도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지구위원회 결성대회 및 1차전술회의가 끝나면 홍보지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정기적 발간으로 전국 및 지역 · 지구의 임투진행소식 및 타결현황을 알린다.
그리고 긴급상황 발생시 호외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 지구위원회 홍보물은 다음과 같은 제호를 표시한다.

금속 ××지구 공동임투 소식
금속노련 '92공동임투 ××지구위원회

· 임투개시와 함께 다음의 현수막을 게양하고 리본을 착용한다.

공동요구 · 공동투쟁으로 생계비쟁취
금속노련 '92공동임투 ××지구위원회 ××××노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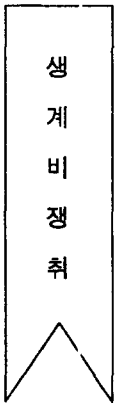

3) 보고사항

① 보고체계

단위노조-지구위원회 상황실-지역위원회 상황실-중앙본부 상황실로 함.

②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나누고 지구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오전중으로 지역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역위원회는 매주금요일 오전중으로 지역본부에 보고한다. 중앙본부는

전국적 보고사항을 집계하여 매주토요일 우편으로 지역위원회 및 지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한다.(단위노조는 교섭요구시, 매교섭시, 준법, 단체행동시마다 지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보고사항은 지구위원회 결성대회 및 각 전술위원회 결의사항과 별첨의 보고양식에 기재된 내용이다.

Ⅱ. 업종별 교류체계

현재 우리 금속노련의 경우 조선, 양식기, 전선업체등 몇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업종별 활동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업종에 관한 92년도 활동방향은 활동이 가능한 업종부터 정보교류회를 조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동차부품 : 자동차부품은 가장 응집력이 강한 부분으로 금속노련 업종활동의 실험적 부분이다. 91.11.29 자동차부품노조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고 1월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인상 요구방향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기업 방문단을 조직(구체적 사항은 1월중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

자동차제조 : 본노련 참여 제조업체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

조　　선 : 조선분과위원회의 협의하여 정보교류회 조직

철　　강 : 포함지역본부등과 상의하여 포항지역에서 교류회 조직

전　　자 : 대기업노조 중심으로 교류회를 조직

전　　선 : 현행 전선업체 협의체에 협의하여 교류회 조직

양 식 기 : 주요 양식기 업체와 협의하여 교류회 조직

교류회 조직 방식

1. 해당 주요노조와 교류회 일정 및 방식 협의
2. 실무위원 선정(인원수는 경우에 따라 조정)
3. 기본사항 실태조사 및 집계(지역체계 조사와 동일)
4. 교류회 개최
   - 자료집계 및 자료제공은 연맹에서 행하되 교류회당일 경비는 참석노조 부담
   - 회의는 의장을 선출하여 진행시키되 연맹의 집계자료 설명, 각노조 계획발표, 92년도 임투방향에 대한 결정 및 상호 협조사항 논의
   - 실태조사는 노총생계비가 발표된 연후에 하고 교류회는 2월중순부터 실시

금속노련 '92공동임투 ××××지구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근거) 본 운영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규약 제47조(쟁의), 제48조(부당노동행위대

책) 및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대책위원회 규정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중앙위원회의 결의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2임금지침에 의거, ××××지구 공동임투를 규정하는 규칙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위원회 명칭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2공동임투××××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라 하며 약칭은 금속 ××××지구공투 위라 한다.

제3조(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지구의 '92공동임투대책에 관한 사항
2. '92공동임투와 관련한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시사항

제4조(구성) 본 위원회는 ××××지구에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가맹노조로 구성한다.

제5조(기관) 본 위원회는 관할 노조 대표자로 구성되는 대표자회의를 두며 대표자회의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결정) 본 위원회는 연맹 및 지역본부의 결정을 준수하며 이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위원회 대표자회의는 모든 결정권을 가지며 필요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본 위원회는 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되는 의장 1명, 부의장 약간명, 간사 1명을 둔다.

제8조(집행부) 본위원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키 위해 조직담당 1명, 홍보담당 1명, 쟁의 및 부당노동행위 담당1명을 둔다.

제9조(정당방위대) 본위원회는 사용자 및 관계기관의 부당행위에 대응키 위해 정당방위대를 설치하며 정당방위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약간명을 두어 운영한다.

제10조(상황실 운영) 본 위원회 각 관할노조는 연대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하며 본위원회의 각종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의무) 본 위원회의 관할노조는 임금교섭진행상황을 매주 목요일 오전까지 위원회 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 본 위원회는 대표자회의로 위원회운영을 위한 경비를 거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존속) 본 위원회는 '92임투 종료후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해산한다.

제14조(규칙의 개폐) 본 규칙은 대표자회의 과반수 참석 3분의 2결의로 개폐할 수 있다.

제15조(통산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연맹 규약 및 규정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보고양식〉

'92임금교섭 진행, 결과보고

1992. . .

수 신 :

발 신 :

(TEL :)

기본사항	인상요구서제출일		임금교섭타결일	
	임금인상적용기일		총교섭일수	
	인상전평균기본급		인상후평균기본급	
	임금배분방식			
	임금인상특별승호		호봉제실시(○표)	한다. 안한다.
임금요구·인상타결	요구기준	기본급의 : 5, 통상미금의 : 5, 기타 :		
	요구수준	원 또는 % 인상		
	타결수준	원 또는 % 인상		
쟁의발행생위	쟁의발생신고		쟁의행해여부	
	쟁의행위기간		단체행동유형	
	쟁의기간임금(○표)	(1) 전액받음	(2) 일부만받은	(3) 전혀받지못함.
쟁의행위사유			지원요구사항	

참고 : 1) 임금합의서 또는 쟁의발생, 행위신고서 첨부

2) 임금배분방식 기재의예(정률 30%, 정액 70%)

3) 단체행동유형 : 준법투쟁, 파업, 태업, 기타를 기록할 것

4) 지원요구사항 : 보고체계에 의해서 보고

5) 기타첨부사항은 첨부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연 맹

( )노동조합위원장 (인)

3. '92임투지원계획

1) 일반원칙

① 지역 공투체계를 중심으로 하되 업종별 정보교류체계를 가미한다.

② 정보교류체계의 복원을위해 노력한다(회수율 증대, 상황보고체계 강화)

2) 지원활동 방향

① '92임투방향 설명(임투지원 교육)

② 단위노조 요구율 결정지원(실태조사, 지역별, 업종별 교류회)

③ 지역공투 및 상황보고체계 확립(지역본부 실무자회의, 쟁의요원 교육)

④ 쟁의지원(쟁의사업장 방문)

⑤ 집회문제는 별도 결정

3) 구체적 추진일정

(1) 임투지침 인쇄, 발송(1월 15일까지 완료)

지역본부를 통해 발송할 것임

(2) 임투지침 심의를 위한 중앙위원회 소집(1월15일경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결정해야 할 사항 : 중앙위원회소집일시

(3) 지역본부실무자회의 소집(1월 17일경)

① 목적 : 연맹 임투지원체계 및 지역공투추진 관계 설명 및 토론

② 타 부서와 함께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

(4) 요구율 결정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① 일정 : 1월 8일경 발송, 1월 25일 마감, 1월하순 분석 및 인쇄, 2월 10일경 발송

② 회수독촉 : 지역본부, 지구담당 통해서

③ 조사내용 : 임금등 기본사항, 희망하는 요구율등 1페이지 이내(별첨)

④ 분석 : 업종별, 지역별임금실태 및 요구계획 실태

⑤ 예산 : 1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

(5) 임투지원 교육

① 일정 : 매일 오후 13 : 00~17 : 50까지 실시

서울 · 인천 : 1.22(노총강당) 경기 : 1.27 충남북 · 전남북 : 1.23

대구 · 경북 : 1.29 부산 : 1.28 경남 : 2.07

② 시간 : 1교시 : 13 : 00-14 : 30(10분 휴식)

2교시 : 14 : 40-16 : 10(10분 휴식)

3교시 : 16 : 20-17 : 50

③ 과목 및 강사

○ '92임금인상 요구방법(이경훈 부장)

○ 임금교섭방법(김홍룡 부장)

○ 쟁의관계법 해설(노진귀 국장)

④ 교안제작 : 1.11까지 원고완료

(6) 쟁의관계 소책자 제작 배부

① 일정 : 1.31까지 원고 작성하여 2월초순 인쇄

② 내용 : 쟁의신고에서 마무리까지의 법적 절차 및 쟁의관계 판례등 수록

③ 예산 : 쟁의지도요원 교재로 분류하여 IMF지원금으로 처리

(7) 쟁의 및 부당노동행위 지도요원 교육

① 일시 : 2.11~2.13

② 인원 : 지여본부 실무자 1명, 각 지구의 상황보고자 등 50명

③ 인원차출방법 : 각 지역본부에 의뢰하여 차출

④ 과목 및 강사

○ 92임투 및 연맹 지원방안(연맹 임원)

○ 부당노동해위구제 실무(중노위 심사관)

○ 쟁의조정법 해설(박석운)

○ 소송진행법(전문 상담요원)

○ 경영분석방법(노기연등에 강사의뢰)

○ 쟁의관계 사례발표(산하 노조 1개소에 의뢰)

○ 단결의 시간(최응길 처장)

○ 노동가, 구호(외부 선동관계 교육가)

○ 분임토의(지역별 '91임투평가 및 '92공투계획)

○ 분임토의 발표

○ 연맹과의 대화

⑤ 예산 : IMF지원비(쟁의 및 희생자구제지원항목중에서 사용할 것임을 IMF에 통보한 바 있음)

⑥ 위촉장 수여 : 별첨 2 양식 참조

(8) 업종별 정보교류회 추진

① 일정 : 2월 중순(자동차부품은 1월 중순에 소위원회 개최)

② 방법 : · 자생적으로 기히 교류회를 갖고 있는 분과는 연맹 틀내에서 하도록 한다.

· 조선분과는 해당분과의 계획을 맡긴다(덴마크 금속노조 지원추진)

· 자동차부품은 자동차공업협회 방문, 해당 모기업방문단등을 조직한다.

· 철강은 포항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 전자는 대규모 사업장의 교류회를 조직한다.

· 자동차 대우자동차의 조직이 정립된 연후에 참여노조를 중심으로 하되 현대자동차도 참관자격으로 참여시킨다.

· 이상의 각 분과의 교류회 추진은 해당분과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진하되 비용은 교류회 참여의 노조가 부담토록하고 연맹은 자료와 인력, 대외홍보를 지원한다. 교류회의 명칭엔 금속연맹이 들어가도록 한다.

· 업종체계는 지역체계를 보완하는 역할만을 하도록 위치지운다.

(9) '92임투 포스타 제작

연맹 홍보부에서 제작하여 2월하순까지 단위노조에 배포한다.

(10) 쟁의사업장 순방

① 4월중순, 하순경에 지역임투실정 파악과 함께 쟁의사업장 방문

② 예산은 IMF지원금중에서 사용

일자순위별 일정표

① 임투요구율 결정지원 실태조사	1월 8일
실태조사 접수마감	1월 25일
실태조사 분석	1월 하순
인 사	2월 10일
② 임투지원교육 원고마감	1월 11일
③ 임투지침 배부	1월 15일
④ 지역본부 실무자회의 소집	1월 17일
⑤ 임투지원 교육실시	1월 20일-1월 27일
⑥ 쟁의 관련책자 원고마감	1월 30일
인 쇄	2월 10일
⑦ 쟁의 및 부당노동행위 지도위원 교육	2월 11일-2월 13일

4. '92년 임금인상 요구율 결정을 지원키 위한 조사 분석

본 실태조사서는 각 단위노조의 92년도 임금인상 요구율 결정을 지원키 위한 것으로서 1992년 1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 조직에 실태조사서를 발송하여 305개가 접수되어 분석하게 되었다.

이 조사분석은 도표로서 작성을 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91년 임투시 배분방식과 '92년 예상 배분방식의 비교, 각 노동조합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급 대비 '92년 요구 %와 관철해야 할 목표 %, 그밖에 물가인상에 대한 생각, 임투와 단투를 병행하는 여부, '92년도 임투일정, 회사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아무쪼록 각

노동조합에서 '92년 임투시 많은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바란다.

1) **조합원 평균 연령**

① 분과별 평균연령

단위 : 연령

분 과	평 균	순 위
기계금속	35.2	5
전기전자	30.1	8
자 동 차	36.8	2
조 선	39.9	1
철 강	36.5	3
비 철	35.7	4
기 타	33.8	6
평 균	35.43세	

② 조합원 평균연령 분포

단위 : 연령(%)

구 분	노 조 수	백분율(%)
20 - 25	13	4.26
26 - 30	67	21.97
31 - 40	199	65.25
41-51이상	0	0
무 응 답	26	8.52
계	305	100

2) **평균 근속년수**

① 전체조합원 평균 근속년수

단위 : 년수

분 과	평 균	순 위
기계금속	4.7	4
전기전자	4.4	5
자 동 차	3.9	7
철 강	5.1	3
조 선	5.9	1
비 철	4.2	6
기 타	5.8	2
평 균	4.86	

② 평균 근속년수 분포도

구 분	노 조 수	백분율(%)
1년 - 2년	42	13.78
3년 - 4년	112	36.72
5년 - 6년	88	28.85
7년 - 8년	59	19.34
무 응 답	4	1.31
계	305	100

3) 부양가족

① 전체조합원 평균부양 가족수

단위 : 명

분 과	부양가족수	순 위
기계금속	2.5	5
전기전자	1.9	6
자 동 차	1.8	7
철 강	2.8	2
조 선	2.9	1
비 철	2.6	4
기 타	2.7	3
평 균	2.46	

* 본인제외

② 조합원 부양가족 분포

구 분	노 조 수	백분율(%)
1인	34	11.15
2인	104	34.10
3인	107	35.08
3인 이상	42	13.77
무 응 답	18	5.90
계	305	100

* 본인제외

4) 임금현황(평균)

① 지역별 평균임금 현황

단위 : 원

지 역	기 본 급	통 상 임 금
경 기	329,125	397,400
경 남	402,627	541,897
경 북	363,065	380,336
구 미	341,486	491,313
부 산	435,975	501,293
서 울	361,133	436,209
울 산	405,118	475,406
인 천	427,279	523,127
전 남 북	448,534	518,727
충 남	328,200	484,650
충 북	322,146	371,438
포 항	339,384	427,775
평 균	377,339	463,809

② 평균 기본급 및 통상임금

단위 : 원

분 과	기 본 급	통상임금
기계금속	453,889	559,479
전기전자	306,947	358,737
자 동 차	414,963	463,339
철 강	389,890	554,036
조 선	378,770	400,097
비 철	348,030	473,486
기 타	349,301	398,185
평 균	377,399	463,908

③ 평균 기본급 및 통상임금 분포

단위 : 원

구 분	기 본 급		통 상 임 금	
	노 조 수	%	노 조 수	%
300,000원 까지	30	9.8	10	3.28
400,000원 까지	173	56.72	75	24.59
500,000원 까지	83	27.21	102	33.44
600,000원 이상	15	4.92	51	16.72
700,000원 이상			49	16.07
무 응 답	4	1.31	18	5.90
계	305	100	305	100

5) 초임현황

① 초임 전체평균

단위 : 원

분 과	초 임	
	남 자	여 자
기계금속	12,425	6,634
전기전자	10,611	8,273
자 동 차	11,065	7,502
철 강	14,654	9,062
조 선	14,540	11,476
비 철	11,917	8,493
기 타	10,278	9,442
평 균	12,213	9,126

* 기준 : 일급

② 초임 남·녀 평균 분포

단위 : 원

구 분	남 자		여 자	
	인 원 수	%	노 조 수	%
8,000이하	7	2.30	55	18.03
8,001- 9,000원	36	11.80	84	27.54
9,001-12,000원	166	54.43	82	26.89
12,001-14,000원	37	12.13	9	2.95
14,001-18,000원	12	3.93	3	0.98
18,001-이 상	12	3.93	3	0.98
무 응 답	35	3.93	69	22.62
계	305	100	305	100

* 기준 : 일급

6) 임금배분방식

'92년도					'92년도 예상				
정 액	정 률	기 타	갯 수	%	정 액	정 률	기 타	갯 수	%
	100		61	20.00		100		64	20.98
		100	6	1.97			100	3	1.31
100			101	33.11		80	20	1	
30	70		5		10	90		1	
40	60		5	3.61	20	80		4	
45	55		1		30	70		5	5.25
50	50		36	11.80	40	60		5	
55	45		1	0.33	40		60	1	
60	40		14	4.59	50	50		48	15.74
65	35		2	1.31	60	40		16	5.25
68	28		2		70	30		25	8.20
70	30		18	5.90	80	20		25	8.20
80	20		12	3.93	85	15		5	2.95
85	15		3	3.61	90	10		4	
90	10		8						
					100	100		88	28.85
무응답	…		30	9.84	무응답	…		10	3.28
			305	100				305	

7) 상여금 지급 분포

지 급 율(%)	기 본		통 상	
	노 조 수	%	노 조 수	%
200%	1	0.33	4	1.31
200-400	32	10.49	17	5.57
401-500	68	22.30	48	15.74
501-600	113	37.05	11	3.60
601 이상	10	3.28		
무 응 답	1	0.33		
계	305		305	

8) 92년도 기본급 기준 요구와 관철율

① 분과별 현황

분 과	요 구 율	관 철 율	관철율/요구율
기 계 금 속	20.73	18.09	87.26
전 기 전 자	20.71	17.28	83.44
자 동 차	21.14	17.97	85.00
철 강	20.16	16.47	81.70
조 선	20.83	16.38	78.64
비 철	23.12	19.93	86.20
기 타	22.42	20.57	91.75
평 균	21.30	18.10	84.98

9) '91년도 물가인상에 대한 생각

물가인상	응 답 수	백 분 율
20% 미만	29	9.50
20-25미만	117	38.36
26-30미만	99	32.46
30-35미만	30	9.84
35-40미만	10	3.28
40%이상	13	4.26
무 응 답	7	2.30
계	305	100

10) 임금인상월 응답수

인 상 월	응 답 수	백 분 율
2월 이전	20	6.56
3월 이전	75	24.59
4월 이전	138	45.25
5월 이전	31	10.16
6월 이전	12	3.93
7월 이후	9	2.95
무 응 답	20	6.56
계	305	100

11) '92년도 임투시 단협과 병행문제

한 다	않 는 다	무 응 답	계
156	147	2	305
51.14%	48.20%	0.66%	100%

12) '92년도 임투시 요구할 사항은?

요구사항	응 답 수	백 분 율
기본급만	78	25.57
기본급+수당	208	68.20
기 타	15	4.92
무 응 답	4	1.31
계	305	100

13) 임투일정은 언제쯤?

월 (구분)	임 투 일 정					
	제 출		쟁 의 신 고		쟁 의 돌 입	
2월 이하			11	3.61		
3월 이하	33	10.82	45	14.75	7	2.30
4월 이하	63	20.66	75	24.59	43	14.10
5월 이하	79	25.90	68	22.30	70	22.95
6월 이하	50	16.39	48	15.74	51	16.72
7월 이후	34	11.15	41	13.44	83	27.21
8월 이후	31	10.16	0		0	
무 응 답	15	4.92	17	5.57	51	16.72
	305	100	305	100	305	100

14) 회사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을 수 있는 문제

한 다	않 는 다	무 응 답	계
247	51	7	305
80.98%	16.72%	2.30%	100%

15) 회사의 지불능력에 대해서

항 목	응 답 자 수	%	비 고
충분하다	89	29.18	
보통이다	157	51.47	
약하다	56	18.36	
매우 약하다	2	0.66	
무응답	1	0.33	

실 태 조 사 서

본 실태조사서는 단위노조의 92년도 임금인상요구율 결정을 지원키 위한 것입니다.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는 조합원 또는 생산직의 경우를 적어주십시요.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오니 성실히 적어주시고 정확한 통계치가 없는 경우는 근사치를 적어주십시요.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 노조명 : (　　)
2. 지 역 : (　　)
3. 제 품 : (　　)
4. 종업원수 : (남　　녀　　계　　)
5. 조합원수 : (남　　녀　　계　　)
6. 평균연령 : (　　)
7. 평균근속년수 : (　　)
8. 평부양가족수(본인제외) : (　　)
9. 월기본급평균 : (　　)
10. 월 통상임금평균 : (　　)
11. 월 초임 : (남　　여　　)
12. 년간 상여금 : (　　금)의 (　　)%
13. 901년도 기본급인상액 및 율(액　　원 율　　%)
14. 91년도 임금인상시 임금배분방식? : 정액(　　)%, 정률(　　)%, 기타____(　　)%
15. 92년도 기본급 인상요구율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율은? : (　　)%
16. 92년도 임금교섭에서 관철하여야 할 최저 기본급 인상율은? : (　　)%
17. 92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임금배분방식은? : 정액(　　)%, 정률(　　)%, 기타____(　　)%

18. 91년도 물가인상에 대한 생각은?

① 20%미만(　　)　② 20%-25%미만(　　)　③25%-30%미만(　　)

④ 30%-35%미만(　　)　⑤ 35%-40%미만(　　)　⑥ 40%이상(　　)

19. 임금인상월 : (　　)월

20. 92년도 임투시 단협병행하는가? : 예(　　), 아니오(　　)

21. 92년도 임투시 요구할 사항은?

① 기본급만(　　)　② 기본급과 수당(　　)　③기타(　　)

22. 92년도 다음 일정을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가?("3월 초순"등과 같이 기재)

① 요구안 제출(　　)　② 쟁의신고(　　)　③쟁의돌입(　　)

23. 귀노조는 회사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을 수 있는가?

① 있다(　　)　② 없다(　　)

24. 회사의 지불능력에 대한 생각은?

① 충분하다(　　)　② 보통이다(　　)

③ 지불능력이 약하다(　　)　④ 지불능력이 매우 약하다(　　)

이 조사서를 꼭 제출하여 주십시요 !

5. '92임투홍보물 발간

1) '92임금인상 활동을 위한 자료집 제작

- 실태조사 : 92. 1.30 ~ 92. 3. 5
- 자료수집 : 92. 2.15 ~ 92. 2.29
- 원고작성 : 92. 3. 2 ~ 92. 3. 5
- 책자인쇄 : 92. 3. 5 ~ 92. 3.10
- 발행부수 : 1,200부
- 책표지 그림

- 자료집내용

1. '92임금정책의 기본방향(각 단체의 주장)

1) 한국노총의 '92임투의 방향

① '92년도 임금교섭을 둘러싼 주 객관적조건

② '92년도 임금교섭의 주요쟁점

③ '92년도 임금교섭의 방향

④ 가구 모형별 항목별 생계비 집계표

2) 경제단체 협으회 '92 임금조정지침

① 최근의 임금동향

② 기업경영 및 가계수지동향

③ '92년 임금조정 방향

④ '92년 적정임금 인상율산정

⑤ 경영계의 임금안정대책 실천방안

3) 경총의 임금가이드라인 비판

① 자본기여도를 감안한 지난해 방식비판(1)

② 자본기여도를 감안한 지난해 방식비판(2)

③ 경쟁력 회복을 위한 1992년도 방식 비판

4) 노동부 '92 임금정책 방침

① 배경 및 기본방침

② 임금체계 합리화 지도

③ '92 임금지도 방향

④ 행정사항

5) 시간제근로에 대한 행정지침 작성의 배경과 내용

6)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지침(안)

7) '92임금정책 관련 문답식 해설자료

2. '92 임금인상 요구율 결정을 지원키 위한 조사분석

1) 조합원 평균연령

2) 평균 근속년수

3) 부양가족

4) 임금현황(평균)

5) 초임현황

6) 배분방식

7) 상여금 지급분포

8) '92년도 기본급기준 요구와 관철율
9) '91년도 물가인상에 대한 생각
10) 임금인상율 응답수
11) '92년도 임투시 단협과 병행문제
12) '92년도 임투시 요구할 사항은?
13) 임투일정은 언제쯤?
14) 회사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을 수 있는 문제
15) 회사의 지불능력에 대한 의견

3. '92 임금교섭을 위한 통계자료

1) 주요경제지표
2) 물가와 생계비
3) 근로조건 관련통계
4) 임 금
5) '91년 임투결산 및 '92예상
6) 92년 정부의 노임단가

2) 임투홍보시리즈(1) 발간

- 제 목 : 총액임금제와 그 대응방향
- 발행일자 : 92. 3. 9
- 발행부수 : 1,000부
- 규 격 : 8절지 전면
- 내용 :

1. 총액임금제란?

총액임금제는 새로운 "총액임금" 개념의 설정과 이개념에 기초한 임금정책의 전환이라는 두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은 기본급, 각종 고정적 및 변동수당 그리고 상여금등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볼때 "총액임금"이란 이중에서 명목을 무엇이든 "지급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모든 임금구성요소의 총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장근로 시간수에 따라 변동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변하는 성과배분적 상여금은 총액임금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총액임금 범위는 〈표 2〉에 나오는 임금교섭 지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결국은 매월 총액임금은 1년동안 근로자가 단체협약, 임금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받기로 확정된 년 총액임금의 1/12를 말한다.〈표 1〉

〈표 1〉 A기업의 임금현황을 놓고 비교했을 경우

기 본 급	369,450	○ 총액개념 월환산금액 : 713,207원 ○ A기업의 상여금지급률은 기본급 600%
근속수당	35,000	
조정수당	15,000	○ 노총 15%를 통상 484,450원을 대비 : 72,668원 ○ 72,668원을 총액 713,207원에 대비 : 10.19% ※ A회사의 통상임금에 15%를 인상했을 경우 총액 10,9%가 인상되는 셈이다.
가족수당	35,000	
교통수당	30,000	
(소 계)	484,450	
년간상여금	2,216,700	
연월차수당	428,379	※. 문제는 총액임금이 아니라 정부의 총액5%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이다.
월 동 비	100,000	
(소 계)	2,745,079	

2. 총액임금제를 왜 실시하는가?

현정권은 91년 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임금체계(임금지불 및 계산방법)의 전환을 통한 임금통제 정책을 임금가이드라인(한자리수 임금억제 정책)에 의한 임금직접통제방식에 결합하여 임금통제의 효율성을 강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 임금직접통제의 강화 임금교섭 타결인상률과 실제지급 인상률을 한자리로 묶어둘 수 있는 장치 ○ 저임금 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하려는 속셈 연공급 중심의 현행임금체계를 직무, 직능에 따른 성과급체계로 개편하여 우리에 대한 개별관리와 능력관리를 통해 노동집약적 경영방식의 연장

3. 총액임금제실시에 대한 문제점

- 정부의 무리한 임금억제정책 및 기업의 저임금전략에 따른 변칙적 임금인상
-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
- 과도기적 현실속에 기존의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과 임금교섭시 교섭기준을 바꾸는 것은 노사간의 교섭탄력성의 구멍이 생김
- 고임금 또는 고부가가치의 업체와 저임금, 저부가가치의 업체의 총액임금 비교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처절함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임
- 그러므로 노동부의 임금지도기준 〈표 2〉의 내용중 총액임금 범위밖에서 임금교섭의 실질적인 타결점을 찾게될 때 이 또한 누적되어 정부에서는 또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목을 조여올 것이 예상된다.
- 결국은 한자리수 임금인상으로 물가고 및 생활고에 시달릴 염려가 예상됨

4. 총액임금제 반대

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의 개입은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노동력의 댓가인 임금을 가지고 경제위기와 맞물려 거론하는 것보다 불로소득계층의 과소비 억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사간의 신뢰확보 및 경영참여 보장차원부터 해결하고 더나아가서 노동자의 희생에 대한 댓가를 정상적으로 지불하는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5. 총액임금제 반대이유

"과도한 임금인상이 경제위기"라는 책임전가로서 정부의 논리적인 개입은 엄격한 노동탄압이다. 정부의 무리한 임금억제 정책은 제2의 임금체계 왜곡현상을 가져올 것이며 지금 현실보다 더욱 복잡한 한국의 임금체계가 될 것이다.

또한 노·사간의 신뢰문제이다. 총액임금제 적용시 교섭탄력성의 변동상여금 즉 성과급에 있어서 경영성과에 대한 이익분배가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인상의 고리가 교섭석상에서 풀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 또한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노·사 모두가 피해를 보는 수 밖에 없다.

6. 총액임금의 대응방향

1) 정책적인 대응(노련)

- 정부가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자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하도록 촉구.
- 임금인상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물가폭등과 주택문제, 각종투기에 의한 불로소득부터 막도록 투쟁

2) 대응방안(각 노동조합)

- 정부의 강력한 저임금 통제정책에 의해 왜곡되어 본래의 의미와 달리 기본급의 일부, 혹은 보조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는 각종의 수당을 통폐합하여 기본급으로 넣을 필요가 있으며, 이 통폐합된 기본급을 인간적인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생활비의 수준에 이르도록 인상하는 것이 필요
- 전근대적이고, 제조업 생산직등 노동자에게만 형평에 맞지않게 적용되는 시급제 및 일급제를 철폐하고, 완전월급제로 바꿀 것
- 기밀비와 접대비, 기부금 등의 낭비적요인을 없애고 사무·관리직 등의 간접소득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포착하기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요구한다.
- 조합원만이 아닌 임원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기준으로 조합원의 임금조정 요구
- 변동적 상여금(성과급)을 요구하되 전년매출액 대비 당해년도 매출액에서 산출하도록 요구

- 총액임금 지도범위 밖의 기준으로 수당신설
- 지역별, 업종별 공동투쟁

〈표 2〉 총액임금의 임금교섭지도의 범위

구분	구 성 항 목	비 고	
근로수당	○ 기본급	예섭년지임도금기교준	지도기준
	○ 통상적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생산장려수당, 기술수당, 벽지수당, 면허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 일률적 · 정기적 또는 관례적 상여금	새로운 임금교섭	
	○ 기타수당 통근수당, 출퇴근 보조비, 사택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		
	○ 지급기준 변경등에 따라 인상효과가 나타나는 임금 (연월차 수당 및 법정수당 지급기준 확대변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성과배분적 변동상여금 ○ 현물급여 : 식사대, 피복제공 등 ○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금품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광고유치, 판매실적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 일, 숙직비, 무상 또는 처리용자에 의한 이익	제외대상	

3) 임투홍보시리즈(2) 발간

- 제 목 : '92년 공무원 임금인상은?
- 발행일자 : 92. 3.23
- 발행부수 : 1,000부
- 규 격 : 8절지 전면
- 내용 :

1. 서론

정부는 경제안정, 임금격차의 축소와 임금구조의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을 비롯하여 월임금 100만원 이상인 1,432개 사업장을 총액임금제 적용대상으로 확정하여 총액 5%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92년 임투에 있어서 전시효과적 차원에서 2-3월 이내에 조기타결을 유도하고 또한 여론화를 시켜서 전체분위기를 경직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실질로 공무원 92년 임금인상은 정부발표 9.8% 내용과는 달리 총액기준 16.2%나 인상되었다.

2. 공무원 임금인상 내용

1) 91년도 공무원 임금, 총액임금적용기준 월평균 100만원이 넘음

공무원의 1991년 월평균 임금은 100만 .4천원임

1991년 일반회계 국가공무원(국방부 및 전경예산 관련 공무원, 교원제외) 20만 3천6백 26명, 임금관련 예산총액 2조 4천 5백 33억원으로 1인당 월평균임금은 100만 4천원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의 1991년 임금은 총액(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현업으로 받은 각종수당 등 제외)으로 8급(13호)공무원이 월평균 955.8천원이며, 6급(15호)공무원 월평균 1200.6천원 4급(19호) 공무원 1683.5천원, 그리고 2급(20호)공무원은 월평균 2101.7천원임. 이에 더하여 사실상 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여비등 각종 실비변상적 부분. 세금혜택. 복리후생 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민간부문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2) 공무원의 92년 실제 임금인상률은 총액기준 16.2%임

92년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 총액 증가율은 19.1%에 달함.

(단위 : 억원)

	1991년(A)	1992년(B)
인건비예산총액(국방비제외)	45,034	53,650

$$\frac{(B)-(A)}{(A)} \times 100 = 19.1\%$$

그러나 인원증가분의 임금액 1,310억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16.2%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짐.

3. '91년, '92년 공무원 임금인상 내용

1) 91년 인상내용

기본급 : 9% 인상

직무수당 : 기본급의 20%에서 30%로 인상(단, 91년 10월부터 시행)

체력단련비 : 기본급의 100%에서 150%로 인상

연가보상비 : 지급대상 확대(5급 이하에서 1급이하로), 보상일수 8일에서 15일로 늘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 확대 :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시행시기는 91년 9월)

가계보조비(단, 91년 8월 시행)

6,7급 4만5천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

8,9급 3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고용직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업무추진 정보비(단, 91년 8월 시행)

장관 7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

차관 7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

1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2,3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4급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4급 8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직책수당 신설(단, 91년 9월 시행)

4급이상 기본급의 9내지 13%

2) 92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공무원보수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559호, 1991.12.31)

- 본봉(기본급) 평균 9%인상. 단, 1급이상 공무원 1991년도 봉급지급(인상분지급 유예)
- 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3,560호, 1991.12.31)
- 직무수당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1992년 11월부터 시행)
- 기말수당을 본봉 400%에서 본봉과 직무수당의 400%로 인상함.
  6조 제3항(기말수당) '봉급의'를 봉급(직무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한다(1992년 12월부터 시행)
- 제17조의 2(관리업무수당)를 신설
  월 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4급이상)
- 주택수당 지급대상확대 및 지급금액 100% 인상
-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확대 및 지급금액인상(월 9천원 내지 월1만 1천원에서 1만 5천원 내지 2만원으로 인상)
- 군인장려수당 지급대상확대 및 지급액 인상(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 주임교사수당신설(월 3만원) 기타 특수근무수당등의 지급기준 또는 지급액 일부 조정

자료 : 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1991.12.31)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1991.12.31), 경제기획원. 1992년도 예산편성기준. 1991.3.

노태우대통령이 87년 대선당시 92년까지 공무원의 처우를 국영기업체의 90%수준으로 올리겠따고 공약함.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년 20%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로 대외 발표할 수 밖에 없었음. 이를 위해서는 온갖 눈가림 편법이 사용되어 옴. 즉, 기본급은 한자리수 이내로 인상하는 대신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연차적으로 신설. 증액해 옴.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총액은 88년부터 1년사이 3년간 5배이상, 정액 수당도 총액으로 4배가 늘어남. 또한 임금을 인상해 놓고도 인상률을 조작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달리거나 동결로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지급을 유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등의 눈속임을

계속해옴.

4. 결론

공무원의 임금이 월평균 100만원을 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정부가 제시한 총액임금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91년 19.2% 인상에 이어 올해 또다시 총액 16.2%이상 인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소위 경제안정을 위해 월 100만원 이상 고임금 기업의 임금을 총액 5%이내 억제해야 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과는 전혀다른 내용이다. 이와같이 공무원의 임금수준과 인상률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총액임금제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성마저도 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정부가 법에의해 보장된 노사간의 자율 섭을 부정하면서까지 총액임금을 강요하는 진정한 이유가 노동자를 저임금 구조하에 두고자하는 노동통제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총액 5%인상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노사간의 임금교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으로 정부가 그간 사용해온 이른바 한자리수 임금지침이 총액 55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임.

따라서 첫째 정부는 노동자의 저임금을 구조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총액 5%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둘째 정부는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보장함녀, 세째 정부는 임금구조개선, 임금격차해서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총액임금제를 철폐하고 상여금을 기본급여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세제개선, 물가안정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산 업 안 전 활 동

산 업 안 전 부

○ 개요

Ⅰ. 산업안전 보건 강조기간 활동

Ⅱ. IMF · SMU산업안전보건 세미나

Ⅲ. 전자산업 산업안전보건책자제작활동

Ⅳ. 교육활동

Ⅴ. 산업안전회보번역제작

개 요

산재 및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당사자인 노동조합측에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 대응책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현저하게 결핍되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저임금의 현실하에서 임금인상에만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수당을 요구하거나 사후 보장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노동환경의 문제를 무시한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결과가 빠른 속도로 우리들 앞에 출연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노동조합측에서는 현장의 동료들과 함께 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활동들을 돕기위해 본노련에서는 IMF에서 지원을 받아 91년 6월과 92년 2월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92년 6월에 또한 자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시행하여 각 단위노조의 조합원들이 산업안전보건 활동의 정상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지도해야 하는데도 예산 및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최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각 단위노조에서는 기업별노조 형태의 개별적으로 집단적 이기주의에서 탈피하여 노련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단체협약 체결시 법조항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실 설치, 지정병원 선정, 작업장환경측정, 건강진단(특수진단), 재해사고 예방과 처우, 생계보조, 위험, 유해부서 관리, 산업안전 교육 등의 사항에 대해 명문화 시키고 가능하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사간의 협의된 사항 불이행시 강제규정이 부족하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노동자가 참여권한이 축소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반면 이에대한 보상 및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100%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병 판정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히 우리 금속노동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들도 개별사업장에서 적극적인 투쟁에 동참하여야 하며 노련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계획 지침송부

1. 목 적

1)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노사·정의 인식제고

2) 유해위험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및 노동조합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의 능동적 활동전개

3) 산업재해 사전예방의 노·사·정·공동대처방안

4)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분위기확산

2. 기본방침

1) 한국노총, 각 회원조합, 시·도 지역본부주관

2) 노동조합의 산재예방 의식고치 및 능력배양

3) 행사의 적극성 및 실효성(실적)함양

4) 사업장내 위험요소 실태파악(유해위험사업장 조사)개선조치

5) 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등의 이행촉구 및 제도개선

3. 실시기간

1991.7.1.-7.21(1개월간)

년중 산재발생율이 가장 높은 7월 한달간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으로 설정실시

4. 포스터 및 표어 포스터 배부

지 역	부 수	지 역	부 수	지 역	부 수
서 울	130	양 산	50	대 구	120
경 기	280	진 주	50	포 항	60
부 천	80	경 남	150	전 남	60
성 남	30	부 산	200	충 북	50
인 천	160	울 산	100		
충 남	50	구 미	50		
				계	1,620부

Ⅱ. IMF-SMU 산업안전 보건 세미나 개최

1. 1차 세미나

1) 일 시 : 1991. 6. 11. -6. 15(4박5일)

2) 장 소 : 올림픽유스호스텔

3) 후 원 : IMF. SMU(국제금속노련, 스웨덴근속노련)

4) IMF. SMU 참석자

① IMF-Adrienne Taylor

② SMU-Sting Crehn

5) 세미나 내용

① 재 해(기계, 공구, 차량, 기중기, 전기, 불)

② 직업병(인체공학, 소음, 가스, 금속, 화학물질)

③ 작업장에 있어서의 위험요소
(용접, 콘베아, 주물, 철판, 전기, 제품조립작업)

④ 작업장내에 있어서 노조의 산업안전 보건활동
(작업장 점검활동, 점검사항은? 환경개선 요구시 사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⑤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교육활동은?

⑥ 금속노련의 향후 계획

6) 참석자 명단

NO	지 역	사 업 장	성 명	직 책
1	서 울	대 우 전 자	김 수 복	안 전 부 장
2		금 성 사	이 호 승	사 무 국 장
3	경 기	쌍 용 자 동 차	이 종 세	안 전 위 원
4		〃	김 문 배	〃
5		기 아 자 동 차	김 윤 호	보 건 안 전 부 장
6		만 도 기 계 안 양	장 석 주	복 지 부 장
7		〃 평 택	이 백 성	〃
8		경 원 세 기	심 재 윤	부 위 원 장
9		금 성 전 선	조 영 철	산 업 안 전 부 장
10	인 천	경 동 산 업	박 명 서	안 전 부 장
11		영 창 악 기	김 영 진	산 업 안 전 부 장
12	경 북	삼 정 강 업	도 경 욱	조 직 부 장
13		승 리 기 계	김 경 호	안 전 부 장
14	부 산	한 보 철 강	변 의 철	위 원 장
15		연 합 철 강	최 인 섭	조 직 차 장
16	울 산	한 국 프 랜 지	이 경 철	산 업 안 전 부 장
17		럭 키 금 속	이 용 중	〃
18	충 북	삼 화 전 기	심 완 용	사 무 국 장

7) 기타 사항 협의

"전자산업의 산업안전" 책자 1,000부정도 인쇄하며 다음 세미나때 사용(92.2.18-20〈2박 3일〉)

8) 수료증 발급 : 사본참조

2. 2차 세미나

1) 세미나 목적

IMF.SMU에서 '91년 2차례 실시한 후 이어서 92년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세미나는 산업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금속노동자들을 위하여 SMU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서 FKMTU(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 산업안전분야에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돕기위함이다. 특히 FKMTU가 교육교재를 발간, 100명의 강사육성 100명의 강사는 년 30명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지도. 소그룹 지도나 적절한 교육방법지도, 의사에 의한 다양한 산업안전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돕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FKMTU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 노동시간 단축

둘째 : 산재와 산업병에 관한 죽음과 사고 숫자 축소

셋째 : 산업안전 분야의 단체협약 규정 소개

다섯째 : 모든기업에서 산업안전문제 전담요원 육성

여섯째 : 모든 기업내 산업안전 위원회 설치

2)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3) 후원 : IMF.SMU(국제금속노련, 스웨덴금속노련)

4) 일시 : 1992.2.18. 09 : 00-2.20. 13 : 00(2박3일)

5) 장소 : 반도유스호스텔(5층 국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3. 전화 567-3111-9, 567-2141-5)

6) IMF.SMU 참석자 : Stig Grehn

7) 세미나 참고사항

(1) 준비사항

①취침도구, 세면도구, 필기도구

②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사례 및 성공사례 준비

(2) 스웨덴금속노조의 예산으로 세미나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2박 3일간 숙박에 인원변동을 허용치 않으므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육에 임하여 국제적 이미지가 손상가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세미나 일정표

1992. 2. 18(화)

09 : 30-10 : 00	등록
10 : 00-10 : 20	개회식
10 : 20-12 : 00	"우리노조의 산업안전활동"(참석자 보고 및 토론)
12 : 00-13 : 00	중식
13 : 00-17 : 00	"우리노조의 산업안전활동"(참석자 보고 및 토론)
17 : 00-18 : 00	석식
18 : 00-20 : 00	금속산업의 산업재해와 대책(대학교수 강연)

1992. 2. 19(수)

08 : 00-09 : 00	조식
09 : 00-12 : 00	"우리노조의 산업안전활동"(참석자보고 및 토론)
12 : 00-13 : 00	중식
13 : 00-15 : 00	산업안전 보호장비 시범 및 실습
15 : 00-17 : 00	철강산업의 산업안전(슬라이드 상영 및 토론)
17 : 00-18 : 00	석식
18 : 00-20 : 00	산재보상(노총 한창석 산업안전국장)

1992. 2. 20(목)

08 : 00-09 : 00	조식
09 : 00-12 : 00	산업안전활동 추진방안(토론) 및 폐회
12 : 00-13 : 00	중식

산업안전세미나 교육생명단 (92. 2. 18~2. 20)

NO	지 역	사 업 장	성 명	직 책
1	서 울	대 우 전 자	도 빈	안 전 부 장
2		기 아 특 수 강	박 경 래	후 생 부 장
3	경 기	일 진 전 기	황 길 주	산 업 안 전 부 장
4		만 도 기 계 (안 양)	여 부 근	〃
5		〃 (평 택)	백 점 현	〃
6		〃 (경 주)	최 창 원	〃
7		금 성 전 선	신 정 호	〃
8	인 천	경 동 산 업	박 명 서	안 전 관 리 부 장
9		영 창 악 기	조 성 희	안 전 부 장
10		진 도	김 점 수	사 무 국 장
11	울 산	한 국 프 렌 지	박 종 서	산 업 안 전 부 장
12	포 항	강 원 산 업	최 성 봉	복 지 부 장
13		부 산 파 이 프	김 영 근	산 업 안 전 부
14		성 림 기 업	손 석 홍	산 업 안 전 부 장
15		거 양 개 발	정 종 균	부 위 원 장
16	경남	금 성 알 프 스	이 재 율	회 계 감 사
17	충북	맥 슨 전 자	홍 현 희	산 업 안 전 부 장

Ⅲ. "전자산업 산업안전보건" 책자 인쇄

1. 인쇄부수 : 1,000부
2. 지원사항 : IMF.SMU 국제및 스웨덴 금속노련
3. 배부계획 : 전자산업과 관련된 사업장에 배부하되 2월에 배부계획을 의논할 것임.
4. 책자내용 : 150페이지

제1부 주요공정과 작업

(세척, 접착, 밀봉과 표식, 식감과 도금, 납땜)

제2부 안전보건 유해요소

(화학물질, 알레르기와 자극, 생식기능장애, 암발생, 눈의장애, 스트레스)

제3부 유해요소 통제의 방법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원칙, 역활과 책임, 보건법 정보와 교류, 작업장의 감시)

- 인쇄일자 : 1991년 12월 15일-1991년 12월 30일

Ⅳ. 산업안전 노총 교육인원 추천

○ 1회

일 시 : 91.7.2-7.5(3박4일)

장 소 : 산업 안전관리공단

배정인원 : 15명

○ 2회

일 시 : 91.11.5-11.8.(3박4일)

장 소 : 상동

배정인원 : 15명

Ⅴ. 산업안전회보 발송(IMF회보 번역)

○ 29호 : 1,000부

○ 30호 : 1,000부 전체조직에 「통신」발송시 우송

* 후원 : IMF(국제금속노련)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Certificate of Merit

"For years workers have lived with the hazards at work. But only recently has the trade union movement started to work out all-embracing programmes to protect the worker in the workplace. Information and health and safety programmes developed by unions which have done most in this field must be shared with workers all over the world. The health of a worker and the protection of the local community from pollution is a common problem in Europe, North and South America, Africa and Asia. With 14 million members organized in 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in the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want to ensure that the highest standards of protection for the worker's health and safety, are also transferred. In 1978 the IMF set up a **HEALTH AND SAFETY DEPARTMENT**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is would be one of the key issues for the rest of the 20th century."*

FRANZ STEINKÜHLER, IMF PRESID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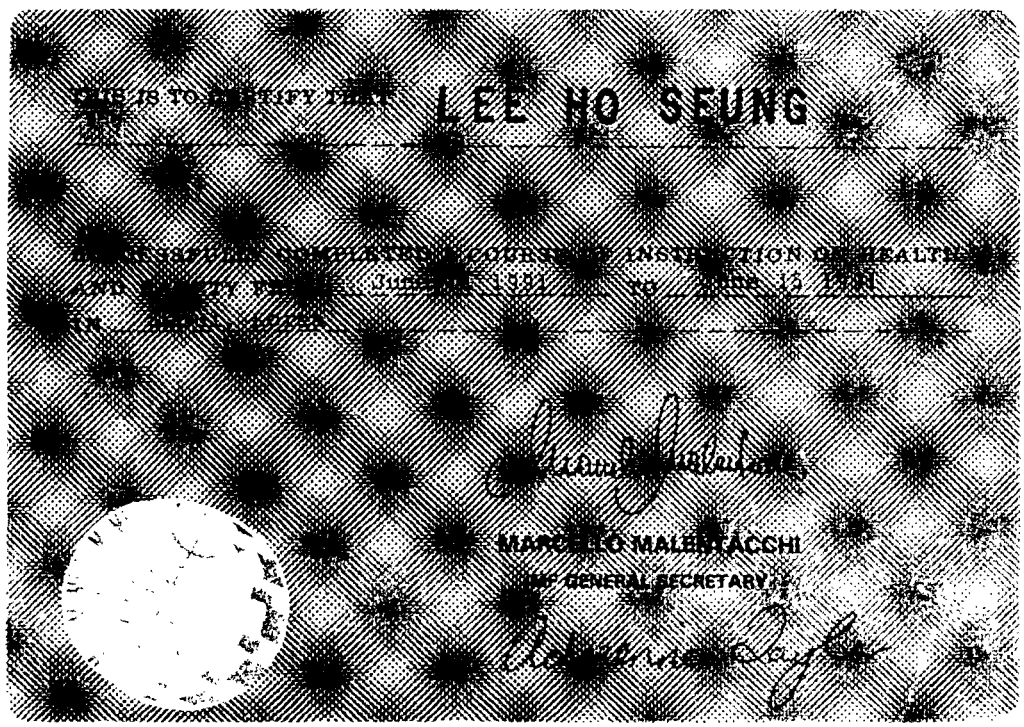

(INSTRUCTOR)

IMF 산업안전회보

IMF BULLETIN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NO. 28

위원장 : 프란츠 슈타인퀼러 타무퀼러 : 마르첼로 말렌타키

한 국 어 판

28 호

발행처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일 : 1991. 4. 3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

한국어판을 내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박 인 상

우리나라는 노동부 통계에 잡힌 것만 보더라도 현재 매일 350-400여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그중 6명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동자 말고는 누구 하나 눈하나 꿈쩍 않는 사회가 우리 사회다. 자신들의 가족이 이런 지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무관심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이윤과 임금이 대립하는 논리는 산재에서도 마찬가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 문제는 노동자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현실인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단결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직장을 만들어야 하고 조국은 망신창이가 돼도 경제성장만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노동자의 몸값으로 챙긴 돈을 공기맑은 곳에 가서 흥청망청 쓰는 풍토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러나 과거를 보면 우리 노동조합은 건강과 목숨보다는 우선 먹고 사는 문제에, 그리고 예방보다는 보상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다. 근래엔 노동조합운동의 활성화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산업안전활동이 눈에 띄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회보가 안전하고 깨끗한 직장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회보를 한국에서 발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국제금속노련에 감사드린다.

IMF (국제금속노련)

사무총장인사

마르첼로 말렌타키

작업장의 산업안전활동은 항시 노동조합의 주요활동이었다. 업무상 재해와 질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 그리고 작업환경에 직결되어 있는 일반환경의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안전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해져 왔다. 보건과 안전활동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는 작업조건이나 공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면 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부주의를 내세움으로써 안전과 보건을 위한 작업환경 제공의무를 회피하려 한다. 본 산업안전회보는 노조간부 및 조합원을 위해 연간 3-5회 발행된다. 우리는 본 회보가 노동자들에게 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그것의 예방 및 통제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국제금속노련은 현재와 같은 업무상 질병 및 재해는 인간이 고통받는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생산손실 및 보상비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 수용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여러분의 유용한 활용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금속 바 우리

크롬중독 노동자 2명 또 발견

대우자동차 인천공장 코물렁뼈 뚫려…완치 불가능

【인천=김영환 기자】 자동차생산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대우자동차 인천공장에서 직업병인 코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 환자 2명이 발생했다.

3일 인천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 만석동 2-1 대우자동차 인천공장 주조생산부 1과 노동자 이동호(31)씨와 함만철(53)씨 등 2명이 지난 2월 인천기독병원과 연세의료원에서 특수검진을 받은 결과 크롬중독에 의한 비중격천공 환자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이씨와 함씨는 지난 86년 6월과 73년 4월에 각각 입사,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주조부에서 근무해왔으며 이들은 올해초 코가 막히고 코피가 나는 등의 증세가 있어 회사쪽에 건강진단을 의뢰했었다.

한편 이씨 등과 함께 근무했던 주조생산부 김아무개(29)씨 등 3명도 건강진단 결과 만성비염 및 알레르기성 증세가 심해, 회사쪽은 이들을 지난달 회사 안 생산관리부 등 다른 부서로 옮기도록 했다.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비중격천공 환자는 지금까지 도금공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교적 작업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신문 '90. 5. 4

전화선로원 35% '납중독 요주의' 판명

경기·인천지역 마스크지급등 예방대책 효과없어

전기통신공사 조사

【수원=배경록 기자】 경기·인천지역의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속 전화선로원 가운데 35%가 납중독 요주의자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한국전기통신공사 경기사업본부에 따르면 사업본부 관할 구역인 경기·인천지역 전화선로원 3백73명 가운데 35%인 1백32명이 노동부 직업병 진단기준상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납중독 요주의자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부터 5월초에 걸친 전화선로원에 대한 건강진단에서 밝혀졌으며, 사업본부는 이들을 포함한 모두 1백35명에 대한 지난 5월26일부터 6월5일까지 소속 전화국 관내 지정병원에서 특수재검을 받게 한 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올해 건강진단에 앞서 지난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했던 납중독 특수건강진단에서도 전국의 전화국 선로원 가운데 35%인 1천5백13명이 납중독 요주의자였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마스크 지급 등 통신공사의 납중독 예방대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중독 요주의자로 진단된 이들 전화선로원들은 혈액 1백㎖당 납농도가 40~60마이크로그램으로, 직업병 인정기준(60마이크로그램)보다는 낮지만 앞으로 납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정상인의 혈중 납농도는 16~18마이크로그램으로 30~40마이크로그램이 몸에 축적될 경우 염색체 변화와 생식기능 장애, 급성복통, 고혈압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전화선로원들이 납중독에 노출돼 있는 것은 밀폐된 맨홀 속에서 납을 사용하는 케이블 용접공사를 하면서 분진용 마스크를 사용치 않는 데다 장기간 납증기를 다량 흡입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한겨레신문 '90. 7. 13

도금업체 노동자 2명 코 뚫림병 판명

【부산=신동명 기자】 부산·경남지방에서 올들어 처음으로 도금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한 남녀노동자 2명이 크롬중독으로 코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 직업병 환자로 밝혀졌다.

9일 부산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부산 북구 학장동 273 칠성공업사 조립부에 근무하는 박순례(44·여)씨가 지난 6월15일 부산 백병원에서 특수검진을 받은 결과 코에 1.5㎜×1.0㎜ 크기의 구멍이 뚫려 코뚫림병 환자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0. 8. 8

수은 중독 4명 요양승인 받아

오리엔트전자 소속 노동부, 신청 두달 뒤 직업병판정

서울 구로구 구로3공단 내 오리엔트전자에서 일하다 수은중독 증세를 보인 노조위원장 안향자(26·여)씨 등 노동자 4명이 노동부 관악지방 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병 판정과 함께 요양승인을 받았다.

안씨 등은 지난 5월17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의원(원장 박계열)에서 수은중독 증세로 검진을 받은 뒤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에 혈액과 소변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별한계'(혈액 10㎖당 수은 7마이크로그램)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7월17일 노동부 관악지방 노동사무소에 요양신청서를 내 지난 11일자로 정식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그간 만성두통 및 불면증과 함께 팔다리가 떨리는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등 전형적인 수은중독 증세를 보여 요양신청을 낸 지 2개월만에 노동부로부터 정식 요양승인을 받은 것이다.

한편 노조쪽은 노사합의 아래 지난 7월21일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에서 특수검진을 받은 노조원 등 24명 가운데 변아무개(21·여)씨 등 4명은 1차검진 당시 소변의 수은함유량이 기준치(1㎖당 3백마이크로그램)를 훨씬 넘는 4백52마이크로그램이 나왔음에도 지난 14일 통보된 3차까지의 검진결과 작업장 전환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처분인 C급판정(주의 한계)을 받은 데 그친 것은 검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리엔트전자는 88·89년에 걸쳐 한 차례도 중금속에 대한 특수검진과 작업환경 측정을 받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한겨레신문 '90. 10. 20

—우리나라는 숨을 잃고

재해로 문제

수은중독으로 밝혀진 사례들

▲협성계공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드는 회사로 서울 영등포에 위치. 15세의 문송면 군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87년 12월 입사해 도장반과 수은주입반에 근무하던 중 88년 1월 28일 불면증, 두통, 식욕감퇴로 병원에 갔으나 감기로 진단을 받았다. 그 후 치료가 안되고 증상이 심해져 2월 8일 휴직계를 제출했다. 구정 때 집에 내려가 있던 중 전신발작을 일으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3월 14일 서울대 병원에서 수은중독으로 진단받았다.

노동부에 산재요양신청서를 냈으나 70여일이 지난 7월에야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며칠 후 온몸에 통증이 오고 물 한 모금까지 토해 내는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

▲유일계량기 춘천 후평공단에 있으며, 체온계, 온도계를 만드는 공장. 6개월간 근무해오던 김옥례 씨가 '숨이 차고 어지러워' 병원에 갔다 '수은으로 인한 폐간질염'으로 진단받음.

▲금호전기 한국 최대의 형광등 제조업체로 1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회사와 노동부가 88년 5월 수은중독에 관한 자체 조사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노동자에게 공개치 않고 숨겨오다 문송면 군의 사망으로 직업병이 여론화되자 뇨 중 수은 농도가 3백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l) 이상에 해당된 노동자 10명 만을 안산근로복지공사에 입원 치료시킴.

여성신문 '90. 5. 25

카드뮴中毒 근로자 勞動部서 은폐의혹

國內 처음 두명발견…두달째 사실 숨겨

중앙일보 '91. 1. 13

조선 맹간中毒 직업병 첫 인정

4.2 언어장애 증세등… 용접봉 근로자 3명

중앙일보 '90

용접봉 피복제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illegible]씨(51·송파구 문정동) 등 3명이 근로자 3명이 맹간중독으로 한만신 마비,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다.

[illegible]씨 등은 언어장애와 정신 무력증 등의 증세와함께 이빨이 썩어 빠지고 한만신이 마비돼 독일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2월 이병원 산업의학센터에서 검사를 받은결과 맹간중독증 환자로 판명돼 국내 최초로 노동부로부터 이번 이의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받고있다.

병원측은 『이들이 지난 85년 12월 부터 근무한 영등포구 [illegible]에서 수년간의 작업기를 거쳐 신경장애, 언어장애 등을 일으키는 맹간에 중독된 것으로 판정한다』는 것이다.

[illegible]씨 등은 같은작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25명중 숨진 문송면 군을 포함, 모두 3명이 사망하는 등 근무자 중 3명이 사망하고나머지사람들도 비슷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최초의 카드뮴중독 유소견자로 판명된 근로자 2명이 2차 정밀역학조사에서도 중독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두달째 발표의 유예조치를 미뤄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중독자로 확인된 2명은 부산의 [illegible]제조업체인 현대정공소속 대표 [illegible]씨(38)·[illegible]씨(39) 등이 이유원의 소개로 미국에 연수 중인 지난해 11월 요양(療養)신청을 한 결과 [illegible]씨가 정상치의 최고 14배를 넘는 카드뮴중독 유소견자로 판명되자 같은 19~23일까지 5일동안 산업의학 전문가들로부터 정밀역학조사를 받았다.

이 정밀조사에서도 尹씨등은 당초의 검사수치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 국내 최초로 카드뮴중독사실이 공식 인정됐다고 관계자들은 이날 전해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두달이 다되도록 이들을 직업병으로 최종 판정하기위한 직업병판정 심의위원회 소집도 미룬채 역시 노동부의 묵살을 비난했다.

[illegible]씨는 88년 4월 입사 1년10개월만 이 회사에 근무하다 원인불명의 [illegible]증·진부변증증 증세로 89년11월 [illegible]대학교 白병원 검진결과 카드뮴의 유증농도는 정상치의 14·47배인 1백44·7마이크로g, 혈중농도가 정상치의 50%를 초과한 15·12마이크로g으로 측정됐다.

88년12월 입사, 1년8개월동안 근무한 [illegible]씨도 지난해 8월 白병원의 진단결과 카드뮴의 요중농도·혈중농도가 정상치의 2·5배, 3·4배인 25·75마이크로g, 34·79마이크로g으로 각각 나타났다.

현재 매일 360여명이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그중 6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 수십년후에야 나타나는 질병도 있다.

안전한 직장은 우리 손으로 !!

금속취급에 따른 건강장해

금속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금속은 결정체 형성이 가능한 고체이고 전도체이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금속성 광택이 있다. 이로 인해 그리고 여타의 특성으로 인해 금속은 공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금속은 배, 비행기, 자동차에서 컴퓨터, 전자부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완성품이 되고 나서도 방사능을 방출하는 방사성 금속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완성품과 접촉하는 편이 완성품을 제조하는 것보다 훨씬 덜 유해하다. 금속분진이나 연기가 발생되는 공정은 어느 경우나 노동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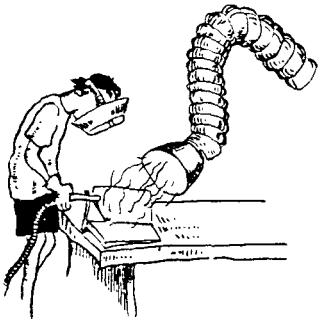

사실 어떤 금속들은 인체에 긴요하다. 미량을 섭취하게 되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통상의 작업장에서 유독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타 생물체와 똑같이 인간은 이들 필수 영양소를 음식물로부터 충분히 섭취하게 된다. 누구라도 그 필수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금속을 호흡해들일 필요는 없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생각이 없는 자들만이 그런 얘기를 떠들어댈 것이다. 실제로 많은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금속에 노출됨으로써 심각한 건강장해가 일어날 수 있다. 금속은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암, 생식상의 문제, 폐질환, 신경계통장해등 여러가지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다.

금속에 대해 누가 관심 가져야 하는가?

금속은 전세계 모든 산업에서 다 사용된다. 특정 직장에서 노동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은 사용되는 물질과 합금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기계가공, 용접, 브레이징은 사실상 어느 금속에나 다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일자리에 따라 소재금속, 도금, 용매제, 필러 금속, 전극등 노동자의 금속노출을 초래하는 사항들이 다르기 마련이다.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금속의 구성비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재료의 비금속성 성분, 가령 용매제에 있어서의 산이나 연마석에 들어 있는 실리카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금속은 왜 그리고 어떻게 유해한가?

금속이 유해한 경우는 그 금속부분 또는 합금이 분진이나 가스상태로 될 때이다. 금속이 가스상태로 되는 것은 금속이 용접 및 브레이징과 같은 작용에 의해 고열로 달구어질 때이다. 공작실의 공기중에 있는 절삭용 액체, 특히 방전수반의 기계가공으로부터 나오는 작은 물방울에는 가공중의 금속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화학, 고무, 도료산업에서 사용되는 안

료는 분말상태로 자루에 넣어져 운반되고 염료 탱크로 옮겨지지만 거기에는 금속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통상 금속을 고체로 생각하지만 이들 금속염은 액체, 그리고 보통은 물속에서 녹는 경우도 있다. 전기용접에 사용되는 크롬산염이 한예이지만 금속염의 작은 물방울에 노출되는 것 또한 위험요소이다. 마지막으로 금속중에는 〈유기금속〉화합물의 형태로 유기화합물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고체, 액체, 기체로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폭제(anti-knock)로 가솔린에 첨가되는 테트라 에틸 연(납)은 납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니켈 카보닐과 유기화합물도 매우 유독한 유기금속이다. 금속하고만 비교하면 유기금속은 더욱 빨리 피부를 통해 흡수되고 신체(가령 신경계통)에 의해 취해진다. 유기금속 화합물이 단순한 금속보다는 더욱 유독한 경우가 종종 있다.

금속은 어떻게 신체로 침투하는가?

금속이 신체로 침투하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호흡, 즉 금속분진과 가스를 숨쉬어들임으로써이다. 일단 호흡되어 들여지기만 하면 폐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금속들이 있다. 호흡되어진 금속은 바로 혈관속으로 들어가 뇌, 뼈, 콩팥등 타신체기관으로 운반되어진다.

금속중에는 피부와 접촉하면 피부염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상처난 피부는 더 많은 금속이 혈관속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피부염이 없다할지라도 대부분의 금속이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흡수될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유기금속화합물의 용액이 손이나 팔과 접촉됨으로써이고 다른 하나는 피부밑으로 뚫고 들어온 금속〈파편〉이 서서히 혈관속으로 들어감으로써이다. 단지 소수의 금속(예로 탈륨과 수은)만이 상처가 없는 피부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흡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속은 음식물 섭취(삼킴)를 통해서도 신체로 침투할 수 있다. 이것은 가령 금속분진이나 가스가 음식물이나 담배에 묻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금속은 어떻게 나의 건강에 해로운가?

금속에의 노출이 가져오는 영향은 (단일 또는 단기적 노출로부터의) 급성과 (장기의 나날의 노출로부터의)만성등 두가지가 있다. 만성의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금속에의 노출에 의한 만성질환의 증세는 다른 질병의 증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만성 호흡기질환의 5%이하가 작업장에의 노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금속에의 노출이 가져오는 만성적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국제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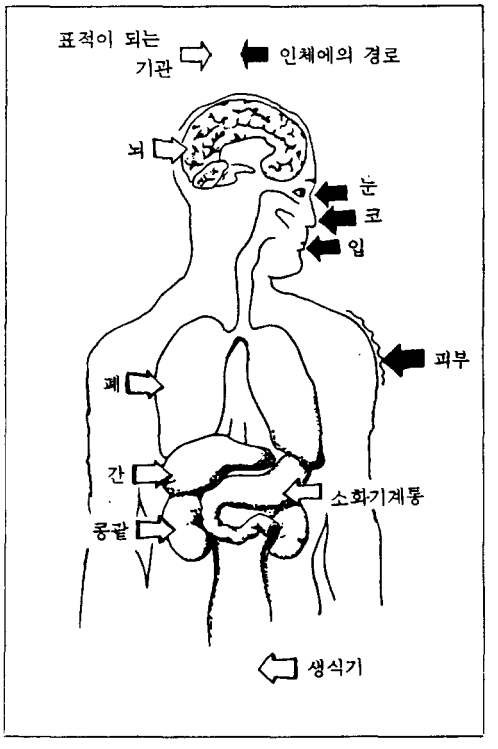

는 WHO(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기준에 의해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크롬, 비소, 니켈등이 그것이다. 여타의 수개의 금속, 가령 베릴륨, 카드뮴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의심시되고 있고 납등은 생식적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금속은 피부에 발진이나 가려움증을 발생시킨다. 많은 금속의 가스나 분진은 눈, 코, 목구멍, 호흡기 상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한번에 대량으로 노출되거나 아니면 장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폐나 그외의 신체기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 손상이 얼마나 극심하느냐는 해당 금속의 독성 정도에 달려 있다. 베릴륨, 카드뮴, 수은, 크롬은 심하게 폐염증을 일으키며 또한 여타의 내장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납, 망간, 수은등과 같은 금속은 신경 및 뇌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금속에의 노출이 미치는 영향의 예

〈급 성〉

* 눈, 코, 목의 염증
* 피부염(피부가려움증, 피부발진)
* 콩팥장해
* 폐손상, 기침, 숨가쁨, 가슴막힘, 씨근거림, 통증
* 기관지염
* 금속가스열(독감과 유사)
* 각혈

〈만 성〉

* 뇌 및 신경계에의 영향 : 가령 수은중독의 영향은 잇몸통증, 전전(몸떨림), 근육운동 공동작용상실, 과민증, 불분명한 발음, 흐린 시력, 청각상실, 손발이 저려 따끔따끔함 등이다. 손상은 항구적일 수 있다.
* 암 : 크롬 및 니켈광산 노동자는 폐 및 다른 유형의 암에 걸릴 율이 높아져 왔다.
* 카드뮴이 일으키는 신장장해
* 수은이 일으키는 선천성 결손증
* 크롬과 니켈이 일으키는 천식
* 입이나 몸에서 나는 마늘같은 악취(셀레늄, 텔루륨).
* 폐손상(카드뮴, 베릴륨, 크롬, 수은, 코발트, 텅스텐)
* 납이 일으키는 남녀 생식장해

두통	메스꺼움
감기 또는 인플루엔자 증상	시력흐림
목구멍 통증	불면증
통증	변비
기침	설사
무력증	생리불순
현기증	피부문제
위장장해	

급성증상은 보다 심각하며 만성적 질환의 경고신호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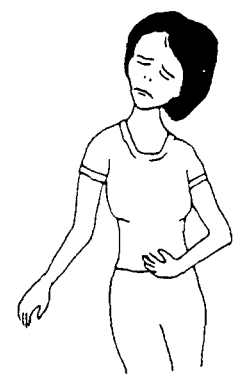

폐기물더미에 숨겨진 위험요소들

작업장의 어떤 금속이나 금속물체중에는 그것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조차도 위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체 불명의 금속이나 폐기된 금속을 처리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져보라!

합금으로서 비소나 안티몬을 함유하는 금속과 강산이 만나게 되면 두개의 매우 유독한 가스중 하나가 생기게 된다. 비소가스와 안티몬 가스는 둘다 모두 무색이고 자극성이 없으며 옅은 마늘같은 냄새를 가지고 있다. 중독증상은 그것에 노출된 후 2-24시간이 지나면 시작된다. 처음의 증상은 두통, 피로, 무력증, 숨가쁨, 메스꺼움, 구토증이고 다음으로는 위통, 피오줌, 황달이며 이들 가스는 혈구를 파괴하여 콩팥장해나 심부전에 의한 죽음을 가져온다.

금속은 평생 신경에 붙어있을 수 있다!

인체의 신경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3가지 금속이 특히 위험하다. 신경상의 손상은 확인해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것은 매우 서서히 다가오고 성격변화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환자보다는 배우자나 친구가 그러한 변화나 징조를 더욱 쉽게 알아차릴 수도 있다.

산업세계에 있어서 신경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가장 광범히 사용되는 것은 납이다. 납중독중 심한 것은 복통, 변비, 피로, 무력증을 발생시킨다. 또한 납은 팔과 다리의 신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납중독이 덜 심한 초기의 증세는 과민증, 피로, 정서불안, 집중력 결여등이다. 납중독은 치료되지 않으면 신경계 장해를 일으키든 아니면 콩팥을 손상시킴으로써 치명적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는 어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서도 납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행동변화, 학습장해, 시각장해등은 유년시대 납중독이 일으키는 영향중 몇가지일 뿐이다.

수은은 통상의 실내온도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소수 금속의 하나이다. 이와같은 특이한 성질때문에 수은은 두가지의 특별한 위험을 초래한다. 첫째로 수은이 상처가 없는 피부로도 침투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실내온도에서도 액체수은이 유독할 정도로 수은증기를 내품기에 충분한 조건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파손된 온도계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은을 씻는데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은중독이 미치는 영향중 중요한 것으로는 3가지가 있다. (1) 잇몸의 통증과 부어오름, (2) 과민성 및 성격변화, (3) 근육떨림. 수은중독은 지속적인 뇌 및 신경손상뿐만 아니라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망간중독중 심한 것은 파킨슨씨병과 매우 흡사하여 걷기가 어렵고 떨리고 정서불안에 빠진다. 망간중독이 약간 된 사람은 잠을 많이 자고 근육공동작용성을 상실하며 언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망간중독의 경우에는 회복불능이 되어 일생동안 불구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금속을 사용하는 공정 및 산업

브레이징 : 필러 금속은 카드뮴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온상태, 특히 토취 브레이징의 경우 위험하다. 필러 금속은 아연이나 은, 동, 니켈, 크롬, 베릴륨, 망간, 리듐 등을 함유할 수도 있다.

도료, 잉크, 안료제조 : 안티몬, 카드뮴, 크롬, 코발트, 납, 몰리브덴, 니켈, 은, 셀레륨, 탈륨, 유기화합물, 텅스텐, 바나듐

전기도금 : 금속염 용액에 전류를 통하면 액체속에 있는 타 금속물질의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한다. 금속염의 증기가 발생하면 크롬, 동, 니켈, 주석이나 아연, 그리고 드물게는 납과 백금에 노출되는 결과가 된다.

전자산업 및 첨단산업 : 베릴륨, 갈륨, 몰리브덴, 백금, 셀레늄, 은, 탄탈, 탈륨

주조 및 철강생산 : 만들어지는 합금에 따라 다름.

놋쇠 : 동, 아연(그외에 알미늄, 납, 망간, 주석)

청동 : 동, 주석(그외에 때때로 납, 알미늄도)

철강 : 철에 망간, 크롬, 동, 몰리브덴, 알미늄, 니켈, 바나듐, 텅스텐, 티타늄등을 각자 양만큼 첨가.

기타비철 : 안티몬, 베릴륨, 카드뮴, 은

유리제조 : 알미늄, 안티몬, 비소, 카드뮴, 크롬, 코발트, 납, 마그네슘, 수은, 몰리브덴, 니켈, 셀레늄, 탈륨, 토륨, 바나듐.

병원 : 수은, 오스뮴

기계가공(연마등 포함) : 공장작업장엔 사실상 어떤 금속이든 다 나타날 수 있다. 절삭공구제조용 철강에는 코발트, 니오븀, 텅스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구식 연마석에는 납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광택작업에 사용되는 〈녹색 철단(green rouge)〉은 산화 크롬이다.

도장작업 : 안티몬, 크롬, 납, 망간, 수은, 셀레늄, 탈륨, 티타늄, 텅스텐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 안티몬, 셀레늄, 텔루륨, 유기화합물, 바나듐

정련 · 제련 : 비소, 비소가스, 셀레늄, 안티몬 가스

납땜 : 청소중의 납분진, 땜납에는 안티몬, 창연(비스무스), 카드뮴, 동, 인듐, 납, 은, 주석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다.

섬유 : 안티몬

용접 : 사실상 어느 금속이든 다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것에 노출된다. 카드듐, 크롬, 동, 철, 납, 망간, 몰리브덴, 니켈, 주석, 바나듐, 아연.

하드메탈질병은 노동자를 어렵게 한다

하드메탈이란?

하드 메탈(hard metal)은 탄화 텅스텐이라고 하는 것이다. 탄화 텅스텐은 절삭공구용으로 사용되고 광산에서 석탄절단, 채석, 암반굴진용 기구에 사용된다. 탄화텅스텐은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으나 그 공구를 가공하거나 사용하는 노동자에게는 위험한 물질이다. 주조, 압연, 단조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금속과는 달리 하드메탈은 미세한 분말, 주로 탄화 텅스텐, 코발트와 여타의 다양한 금속, 즉 니켈, 티타늄, 탄탈륨, 바나듐등의 금속으로 만들어진다. 이들 분말들을 혼합하여 압력을 가하고 고열을 가해 만들게 된다.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으면 분말로부터의 분진이 작업장 공기중으로 방출되어 노동자들의 호흡과 함께 체내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것은 하드 메탈 공구가 갈아질 때도 마찬가지다.

하드메탈질병이란 무엇인가?

탄화 텅스텐 분진에 노출되면 두가지 종류의 폐질환이 생길 수 있다.

천식 : 일정 기간에 걸쳐 탄화 텅스텐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일단 분진에 〈민감〉해지게 되면 노동자들은 비록 조금만 분진에 노출되더라고 거칠게 씨근거리게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하게 되며 숨이 가빠지게 된다. 보통은 이들 문제점이 없어지려면 분진에 더이상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장기적인 건강손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폐의 손상 : 폐의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수년간 노출되어야 나타나겠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1-2년만 노출되어도 폐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호흡을 위해서는 폐가 산소를 취해 확대, 수축작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항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호흡이 더욱더 가빠지고 마른 기침을 하고 몸무게가 빠지는 증상등이 나타난다.

이상의 질병은 탄화 텅스텐 작업을 중단한 후에도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 심한 불구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

하드 메탈 분진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가공중인 하드 메탈로부터 나오는 분진에 대해 노동자를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원료를 입자형태로 만들어야 하고 체로 치고 혼합하고 빻는 등의 공정마다 적절한 국소 배기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드 메탈 공구를 사용하는 중에도 국소 배기장치가 사용되는 것이 좋지만 암반굴진, 선반, 분쇄등의 공정에서는 가능치가 않을 것이다. 이럴 때는 개인적 보호장비의 착용이 필요하다. 마스크 선택은 분진밀도와 그에의 노출시간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얼굴전면을 가릴 수 있는 방진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마지 않는다. 어떤 필터를 사용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필터제품의 명세서를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침투성이 없는 의복과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더럽혀진 옷은 세척될 때까지 밀폐용기 속에 보관해야 한다.

하드 메탈과의 접촉을 줄이려면 장갑을 끼고 눈 보호용구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드 메탈 분진이 있는 곳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담배태우지도 말라.

금속에의 노출 통제

금속에의 노출을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이유는 없다. 위험한 공정이나 원료의 보다 안전한 것으로의 대체나 격리, 배기등 공학적 통제는 공업에 있어서 광범히 활용되고 있다. 이들 공학적 통제가 개인적 보호장비의 사용보다는 훨씬 더 선호되고 있다.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최초로 질문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진실로 이 금속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가? 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가?"이다. 가령,

* 납은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고 도료에 백색 색갈을 주기 때문에 수년간 도장직작업에 사용되어 왔다. 이산화 티타늄에 대신 사용될 수 있다. 이산화 티타늄은 얼마간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나 납처럼 신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카드뮴을 함유하고 있는 브레이징 로드나 땜용 은(銀)은 카드뮴이 함유 안된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카드뮴 대신에 인을 사용하면 덜 유독하다.
* 니켈 아초산염 대신에 포름산염 나트륨 전해질을 사용하면 전자화학적 기계가공이 더욱 안전하게 행해질 수 있다.

작업공정을 바꾸는 것도 예방지향적 방책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 스파크 용접이나 MIG용접 대신에 액체내 아크 용접을 사용하면 전극용 금속이나 유독 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어떻게 격리하는가?

보다 안전한 금속으로 대체할 수 없다면 금속분진은 발생장소를 격리시키거나 밀폐시킴으로써 막아질 수 있는 것인가?

* 금속작업부분이 격리, 밀폐, 자동화되거나 금속과의 접촉이 전혀 없도록 공정이 변경될 수 있다.

어떻게 배기할 것인가?

이상의 해결책이 가능치 않다면 배기장치를 사용하여 방출가스, 증기, 분진을 붙잡아 끌어낼 수 있다.

*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는 오염발생부위 근처에 후드를 설치함으로써 오염된 소량의 공기를 빨아낼 수 있다. 벽에 설치된 환풍기와 같은 전체배기장치는 그것이 공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보다는 옅게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덜 효과적이다. 또 이들 장치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겨울에는 난방열 방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틀지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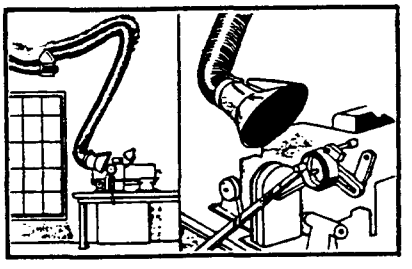

이 그라인더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 탄탈을 함유하는 공구철강팁을 가는데 사용된다. 이 사용자는 이동가능한 국소 배기장치와 특수한 연마석 가리개를 설치하여 공기와 분진이 국소배기 닥트쪽으로 다가가도록하고 있다. 코발트에 노출되는 정도는 0.43㎎/㎥에서 0.001㎎/㎥이하로 줄어들게된다(자료 : OSHA SAFEWORKS 10호)

마스크는 언제 사용하는가?

마스크와 여타 보호장비(장갑, 작업복)은 공학적 통제책은 아니나 용접과 같은 일정 경우에 있어서는 주요 통제장치이며 항구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금속에 노출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방진마스크는 분진을 걸러낼 것이다. 방진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그 마스크가 어떤 것을 걸러낼 수 있는지 사용안내서를 주의깊게 점검하라. 금속에의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스크의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적어져 있다.

* "분진 및 증기" * "분진, 가스, 증기" 또는 * "분진, 가스, 증기, 방사성 핵종"

일회용 분진마스크는 딱 들어맞는 이중 카드리지형 마스크보다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작업장 조건에 따라서는 일회용도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분진마스크는 일회용이고 용접마스크 밑에 낄 수 있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일회용은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오스뮴, 백금, 은, 바나듐등의 금속에 대해서는 절대로 적절한 보호장치가 아니다.

마스크를 환기장치와 같은 공학적 통제장치의 대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금속에의 노출이 법정허용치까지 통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건강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것이다. 마스크는 어디까지나 부차적 수준의 보호장치에 불과하다. 발암물질이나 그럴 염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할 때와 보호조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작업공간이 밀폐될 수도 있는 경우는 주의를 요한다. 탱크 속에서 용접하는 경우와 같은 비상적 상황의 경우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며 밀폐공간의 작업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개인에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잘 선택해야 하며 정기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정기의료검진도 실시해야 하고 마스크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해야 한다.

교육훈련

기업주는 종업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 또한 많은 나라의 경우 기업주들은 작업장의 유해물질에 대해 교육훈련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의 노동조합이나 안전보건위원회는 경영진과 교육훈련 실시 횟수, 강사(노사합의로 직장보건전문가를 택할 수도 있음), 교육훈련 내용등을 교섭할 수 있다. 금속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훈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취급 금속의 화학기호명 및 그 특성
* 금속에의 노출 정도에 따른 증상
* 건강에 대한 장단기 영향
* 금속에의 노출을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
* 응급조치법
* 법과 단체협약상의 권리

의료검진

혈액이나 오줌검사는 금속관련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금속 또한 이러한 의료검진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 피나 오줌 또는 양자를 검사해야 하는가 여부는 어떤 금속화합물에 노출되어 있는가와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검사는 여러분이 환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 몸에 금속이 있는가를 검출키 위해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미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그 때는 어떤 물질이 문제를 야기했는지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된다.

회사에 의료검진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노동자를 어렵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하라.

* 의료검사를 한다해서 작업장의 정기검사나 유해요소 통제활동을 안해서는 안된다.
* 금속에의 노출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의료검진계획을 마련하라. 일반 의료검진만으로는 금속관계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 가능하다면 노동조합은 의사선정, 검진방법, 결과평가방법을 결정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 검진결과는 각 노동자에게 충분히 알려져야 하고 비밀유지가 되어야 한다. 개인별 결과가 아닌 전체적 요약자료가 노동조합에 제공되어야 한다.
* 검진 결과 질병자로 나타나 휴직한 노동자에게 보수와 수당등이 전액 계속 지급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유독물질의 독성순위

모든 금속의 독성이 똑 같은 것은 아니다. 직장에서 취급되고 있는 어느 합금이나 물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만 다음의 금속은 건강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판명된 것들의 예이다. 이들 금속은 전체 합금이나 재료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매우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들은 완전히 사용하지 말든지 아니면 엄격히 통제한 가운데 사용되어야 한다.

베릴륨, 카드뮴, 우라늄, 탈륨, 수은, 라듐, 납, 토륨

이외에 다음 금속은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금속은 중대한 유독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사용되어야 한다.

니켈, 바나듐, 크롬, 텅스텐, 은, 비소*, 코발트 안티몬*, 망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몇몇 금속은 보통 상대적으로 위험정도가 낮다. 다음의 것들이 이에 속하나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 노동자들의 경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물질로 판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동, 철, 알미늄, 주석, 마그네슘**, 아연**, 티타늄**

끝으로 다음의 금속은 그 독성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다.

팔라듐, 탄탈, 몰리브덴, 백금, 니오븀

주) * : 비소와 안티몬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인 반(半)금속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금속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금속과 혼합되어 있어 매우 유해한 작업장 독소가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 : 이들 금속에 용접을 하면 금속가스열(1-2주 지속되며 독감과 같은 증세를 나타냄)에 걸릴 수 있다.

※IMF연락처 : CH-1227 GENEVA (SWITZERLAND) route des acacias 54 bis TEL : 43 6150
※본 회보를 인용할 때는 「IMF 산업안전회보」라고 출처를 밝힐 것

IMF 산업안전회보

IMF BULLETIN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NO. 29

위원장 : 프란츠 슈타인퀼러 사무총장 : 마르첼로 말렌타키

29 호

한 국 어 판

발행처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일 : 1991. 6. 30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

기계작업의 보건안전 문제

기계작업에는 설비나 기계가공, 금속제조, 냉각, 용접, 조선, 주물등 작업에 있어서 유사한 작업공정이나 기술, 전문기능을 요하는 직종이 다수 있고 시계제조나 광학과 같은 특수직종도 있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통상의 작업과정에서 유해분진, 가스,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주조의 경우는 실리카, 일산화탄소, 금속가스 및 입자, 콜탈 피치등이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소다. 많은 경우 작업장의 오염은 용접봉이나 납이 녹혀들어갈 때에 열로 발생하는 기체등(예로 일산화탄소)의 연소나 수지의 사용에 필요한 용제의 경화과정에서 발생한다. 적절한 환기장치가 없거나 정비가 불량할 시는 오염공기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주물공장의 형틀 제조공정에서는 모래를 접착시키기 위해 각종 합성수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들 수지를 경화시키는데는 포름알데히드, 푸르푸랄, 이소시안염, 아민, 페놀등이 사용되는데 이들은 적절한 작업복이나 장비가 없이 취급하면 눈의 염증이나 호흡기질환, 심한 피부염증 및 피부염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용광로 작업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용광로의 광석투입대나 족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일산화탄소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일산화탄소는 색갈과 냄새가 없는 가스로서 이것을 들이마시면 피가 몸전체와 뇌에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장애를 받게 된다. 농도가 500~1000ppm이 되면 두통이 생기고 호흡이 가빠지며 구토, 허약, 현기증 및

죽을뻔 했던 철강노동자

김씨는 용광로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다. 그는 경미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하자 일산화탄소측정 모니터를 보았다. 공기중 탄소농도가 과다했다. 그는 동료에게 구원을 요청키 위해 작업장에서 뛰어나갔다. 그는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다. 동료노동자들이 그에게 산소호흡을 시켜 다행히 그는 의식을 회복했다.

정신착란의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4000ppm이상의 고농도에서 일을 하면 곧바로 혼수상태에 빠져 죽음에 이른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라도 심장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중노동을 하거나 고온, 고도의 곳에서 일할 경우는 일산화탄소의 영향이 더욱 가중되게 된다.

화학물과 가스

매년 수천가지의 화학물들이 공장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역기능하는지 여부를 조사키 위한 적절한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화학적 독성은 폐(호흡), 피부, 삼킴등의 경로를 통해 체내로 흡수된다. 이들 독성은 현기증, 구토, 의식상실과 같은 단기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신경손상, 간장질환, 암과 같은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황산과 같은 산이나 가성소다와 같은 알카리는 화상을 일으키며 중상을 가져올 수 있다. 눈의 화상은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 화학적 자극물과 접촉하면 피부염이나 천식이 생길 수 있고 천식의 경우는 특정 화학물에 대해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폐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 일단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그 특정 화학물질이 소량만 있어도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플라스틱이나 발포스티롤 제조에 사용되는 톨루엔 디이소시안산염(TDI)의 경우 그 증기와 접촉되는 노동자의 5%정도가 업무성 천식을 앓고 있다.

화학물질이 신체에 들어오는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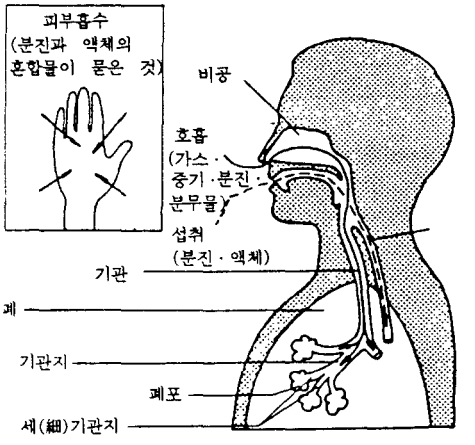

화학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는 방법의 하나는 피부를 통해서이다. 그 결과는 화상, 피부염증(피부염증은 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킴), 피부암이다. 피부를 통해 들어온 화학물질은 혈관 속으로 들어가 다른 기관에 집적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유기용제가 생각이상으로 피부를 통해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실상 가장 주요한 침투경로중의 하나일 수 있다.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입니다. 순간의 실수와 방심으로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화학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전략

노동자들이 자기가 관계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제조업자나 IPCS(국제화학물질안전계획), WHO등과 같은 기구들로부터 생산물의 독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MSDS(원료안전데이타표)를 공급받을 수 있다. 경영자와 노조는 MSDS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불행히도 이들 정보중 일부는 불완전하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낡은 것일 수 있다. 이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정보의 의미나 용도에 대해 안전위원이나 노조간부, 조합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위원회는 화학성분, 독성, 사용방법등을 명시하는 화학물질 일람표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대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지상태의 개인관련의 공기를 채집하는 등의 공기중 유해화학물질 감시제도가 필요하다. 관리대책의 목표는 화학물질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은 보다 안전한 화학물질로 대체할 수 있다. 가령 유기용제 페인트 대신에 수용성 페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유해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고 보다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차선의 해결책은 그 공정을 완전히 밀폐시키는 것이다.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국지배기와 같은 공학적 관리를 검토해야 한다. 국지배기장치는 배기환풍기에 이동가능하고 구부릴 수 있는 닥트를 연결시키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유독분진, 가스는 발생지점 부근에서 잡아 밖으로 빼내야 한다. 빼낸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 일정한 양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기타 관리대책으로는 작업의 교체나 작업공정의 표준화등이 있다. 개인용 보호구는 다른 모든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긴급시만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용 보호구란 불편한 경우가 많고 작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호구는 모든 유해물질, 특히 알레르기성 화학물질이나 발암성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거나 호흡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보호복이나 장비는 개인별 마춤이어야 하고 항시 적절한 정비를 해야 한다. 보호구를 그 일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령 마스크엔 올바른 필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점검계획엔 효율성 보장을 위해 보호복 및 장비의 사용이 수반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나 의사는 작업장 화학물질이 어떤 것이며 그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검진이 필요한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많은 화학물질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동안 초과해서는 안되는 기준치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준치는 보통은 단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장기간 그들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나 과민반응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적합하다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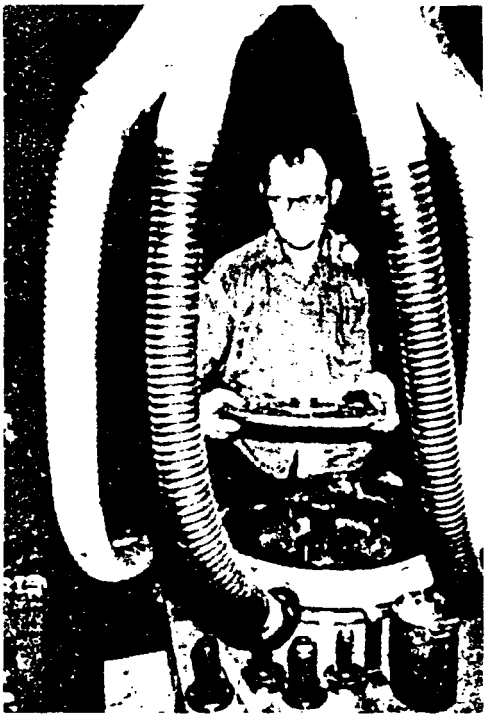

소 음

소음은 가장 보편적인 작업장 유해요인중의 하나이다. 소음이야말로 산업사회에 가장 널리 퍼져있는 오염이다. 지나치게 소음이 심한 것으로 알려진 작업은 주물작업과 프레스, 스탬핑, 리베트, 망치질이다. 소음이 75dB(A)를 초과하는 작업을 오래하면 내이(內耳)의 미세한 모발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판금, 설비, 기계가공 작업장의 소음은 보통 100dB(A)이다. 컴프레셔, 송풍기, 가스 버너, 모터등의 고속기류 또한 연속소음을 발생시킨다. 분쇄나 압착, 드릴링, 연마등의 작업은 다량의 에너지가 좁은 공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주요한 연속소음의 원천이다. 충격소음은 금속이나 돌에 망치질을 가하거나 그것들을 분쇄할 때, 또는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원자재를 처리할 때에 생기며 고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 연속소음과 충격소음을 두가지 다 겪고 있는 노동자중에는 놋쇠주물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가스 버너에 의한 연속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동시에 놋쇠덩어리(인곳)가 컨베어에서 금속용기에 투하될 때 나는 충격소음을 겪게 된다. 소음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기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업무성 난청은 서서히 일어나며 내이가 파괴되고 있더라도 그에 대한 사전 경고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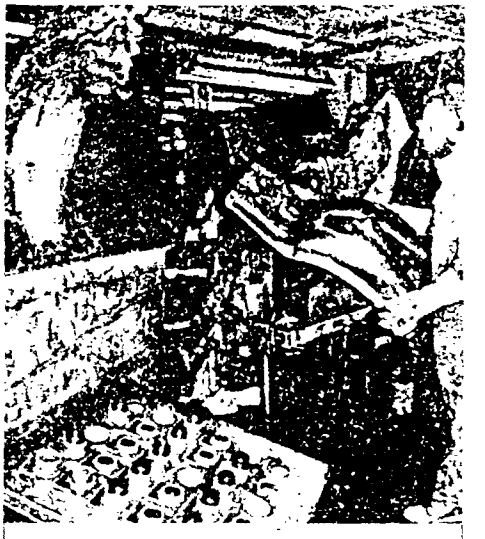

스탬핑의 소음은 소음발생처에서 처리하기 곤란할 수 있다.

소음의 건강장해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업무성 난청으로 난청이 되면 고주파 소리는 듣지못하게 되며 때로는 중주파 소리도 못듣게 된다. 또한 과도한 소음은 다음의 증상을 일으킨다.

* 처음엔 일시적으로 귀가 윙윙거리다가 나중엔 항구적으로 그렇게 되는 티너터스(귀울림, 이명)에 걸리게 된다. 이때는 집중력이 깨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

귀머거리 산업전사 이씨

이씨는 작업을 마치고 나면 통상적으로 골이 아프고 짜증스러우며 귀속이 윙윙거리고 휘파람 소리가 나게 된다. 그는 집에서 가족들과 다툴 때가 종종 있다. 그가 텔레비젼을 너무 크게 틀어놓기 때문이다. 그는 남들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다. 그는 친구들과 만나더라도 대화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친구들과 더이상 외출을 하지 않는다. 그는 나뭇잎 살랑거리는 소리나 빗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들을 듣지 못한다. 그는 외톨이가 되게되고 신경질적으로 되어간다. 그는 업무성 귀머거리이다.

* 현기증 및 균형감각 상실
* 작업교대후의 일시적 청력상실
* 소음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스트레스는 짜증, 피로감, 두통을 가져오고 혈압상승, 심장에의 부담증대, 시력에의 영향등을 가져올 수 있다.
* 과도한 소음은 대화를 방해할 수 있다. 공장에서의 경고신호나 외침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음은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피로를 가져와 결국 재해율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소음관리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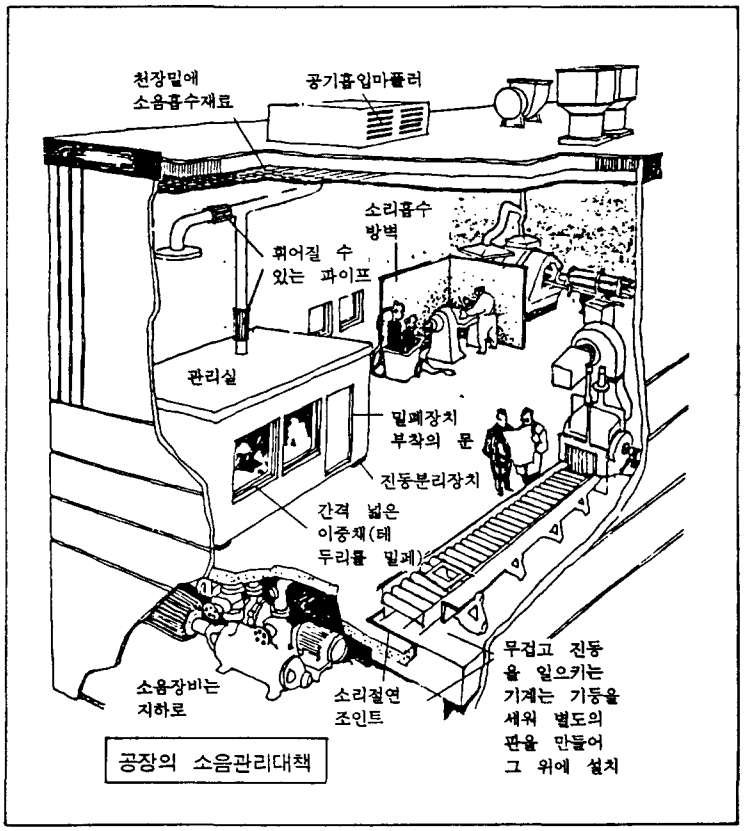

공장의 소음관리대책

소음관리전략은 독극물질관리전략과 유사하다. 첫째는 대용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가령 가스버너의 소음을 없애기 위해서 가스로 가열하는 용해로 대신에 전기로 가열하는 용해로를 사용할 수 있다. 두번째는 소음방출을 줄이거나 방지하는 것이다. 소음원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보통은 진동을 막고 금속간의 기계적 접촉을 최소화하며 동력수준을 적절하고 과도하지 않는 수준으로 줄이는 등 공학적 변경을 통해서이다. 노동자를 소음발생기계나 공정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칸막이를 할 수 있다. 셋째는 노동자가 소음과 과도하게 접촉하는 것을 피하게 해야 한다. 소음과의 접촉을 줄여주기 위해 노동자들을 다른 일자리로 로테이션시키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다. 공학적 관리가 충분치 않거나 실질적이 아닐 경우는 귀마개등 개인적 보호용구가 필요할 수 있다. 소리란 뼈를 통해서도 전달되기 때문에 이들 개인적 보호구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귀마개는 잘 맞아야만 그리고 작업장 소음수준에 적합하도록 제조되고 정비가 잘 이루어져야만 기능할 수 있다. 소음수준이 120dB(A)를 넘으면 귀마개를 가지고는 8시간에 대해 충분히 소음을 관리할 수 없다. 워크맨 라디오의 귀마개의 경우는 청각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것으로는 단지 소음만 막아질 뿐 대화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청각보호대책은 모든 소음작업지역에 대해서 강구되어야 한다. 소음수준을 측정해야 하고 소음을 관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각검

진을 해야하고 지속적으로 보호구를 정비해야 하며 소음수준을 감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85dB(A) 또는 90dB(A)를, 계속적 8시간 작업에 대한 허용할 수 있는 안전한계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경제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 보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가령 정년까지 90dB(A)수준에서 작업하게 되면 20~40%의 노동자들이 상당한 청각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보호기구는 노동자의 청각손실이 없는 안전수준을 75dB(A)로 발표하고 있다. (〈환경보건기준〉 제12호 "소음", 세계보건기구간행, 19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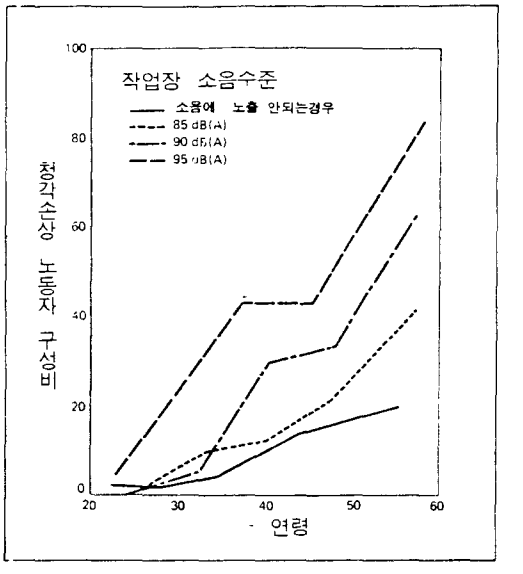

연령별 청각손상→
(WHO「환경보건기준」 12호에서)

작업장배열에 따라 청각이 보호될 수 있다

자동주물에 있어 쉐이크아웃의 소음은 110dB(A)에 이른다. 그런데 쉐이크아웃과 쏘팅작업간에 담을 세우고 양 작업장간에 콘베어를 설치하여 주물을 운반케 한 결과 소음수준이 낮아졌다.

칸막이는 소음을 줄인다

주물을 깎아내는 세척실의 소음수준은 8시간 내내 90dB(A)를 초과하고 있다. 이 소음수준을 줄이기 위해 칸막이를 하고 칸막이 밖에 품질검사요원 의자를 놓아 두었다. 그러자 소음수준이 87dB(A)로 줄어들었다. 말이 3dB(A)지 이것은 원래의 소음강도가 반으로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dB(A)에서 사용하는 수치는 일반적 수치가 아니라 로그상의 수치로 3dB(A)가 줄어들 때마다 소리강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의미있는 소음감소이다). 용광로부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칸막이 속에서 일하자 소음수준이 100dB(A)에서 90dB(A)로 줄어들었다.

일회용 개인보호구. 솜 귀마개는 개인보호구로서 효과적이 아니다. 적절한 마춤의 귀마개만 효과적이다.

고 열

주물공장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용광로는 다량의 열을 발생시켜 충분히 환기가 안되면 열이 지나치게 많아진다. 금속의 용해와 용해된 금속의 주입 또한 많은 열을 낸다. 이 부서 노동자들은 특히 용탕이 튀기는 것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두텁고 무거운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기계산업에서는 많은 경우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들어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는 체내의 열과 체외의 열이 합해져서 열에 의한 스트레스를 극도로 강화시키게 된다. 특히 충분한 휴식이 없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사람에게 가해지는 총 열부하를 구하려면 6가지를 합해야 한다. 기온, 습도, 공기 움직임, 방사열, 복장, 육체활동등에 의한 열들이 합해져야 한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과도한 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적게는 단순한 불쾌감에서 크게는 치명적인 열사병까지 있다. 열에 의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지거나 과도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

- ㅇ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킴
- ㅇ 재해율 증가, 몇몇 연구에 따르면 재해율은 온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ㅇ 기존의 건강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킴, 피부발진이나 심장상태등
- ㅇ 다른 재해를 당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가령 덥기 때문에 불편한 보호복을 벗으려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산화 탄소나 소음과 같은 다른 재해요인과 접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열에 의한 스트레스의 예방과 관리

열에 익숙치 않은 노동자들이나 고열부서에서 잠시 떠나 있던 노동자들은 그 일을 받은지 첫 1-2주 동안은 보다 천천히 일하고 보다 자주 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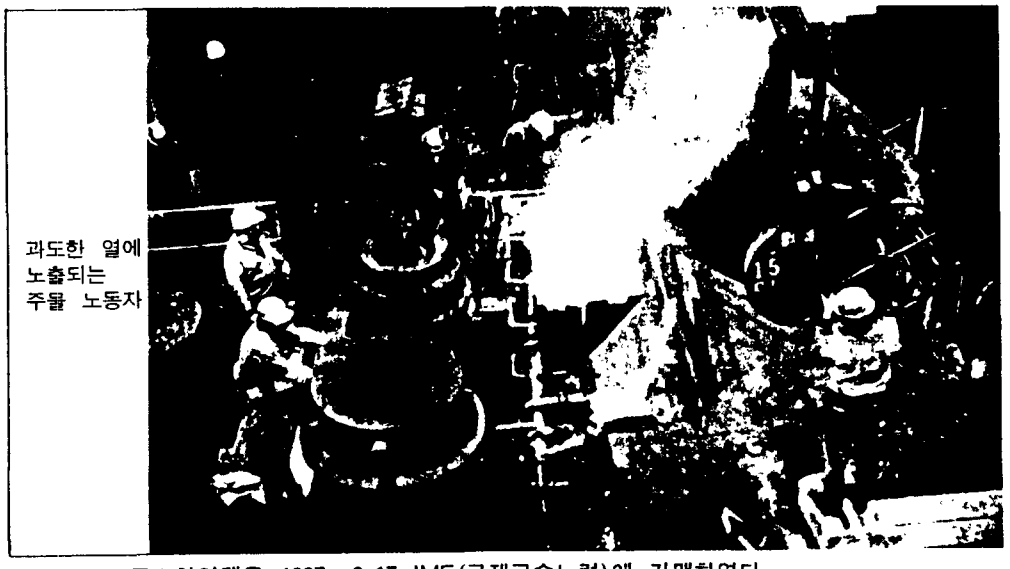

과도한 열에 노출되는 주물 노동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1967. 9. 17 IMF(국제금속노련)에 가맹하였다

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소위 "순응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순응화 기간을 갖지 않으면 열병에 걸릴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고열부서에서 2주일만 떨어져 있어도 열에 대한 순응력이 완전히 없어진다. 열에 대한 반응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비만하거나 허약한 사람, 병이 있는 사람(특히 심장, 순환계, 피부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 구토나 설사, 발한으로 탈수증이 있는 사람등은 열에 의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약을 복용한 경우나 숙취가 있는 사람도 더 가능성이 높다. 선천적으로 열에 약한 사람이 있다. 열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첫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에어컨이나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장에 따라서는 일부분만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열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열관리 스트레스 요인중 몇가지는 다음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소금을 0.1%(물 4리터에 소금을 티스푼으로 한 개정도)정도 탄 물을 수시로 마셔 땀으로 증발된 것을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한다.

*평균적으로 고열작업장에서는 시간당 1리터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맥주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 알콜이 수분상실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방사열은 방벽을 쳐주고 환기 및 에어컨 장치를 해줌으로써 최소화될 수 있다.

*작업복은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헐렁해야 한다. 땀이 피부로부터 바로 증발하려면 쉬원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용해된 금속이나 용광로를 대상으로 작업을 하려면 방사열을 흡수할 수 있는 보안경이 필요하다.

*오랜 휴식을 적게 갖는 것보다 적은 휴식이라도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환기를 늘리고 더욱더 공기의 흐름을 역류시킬 것

*쉬원한 피난처를 제공할 것

열은 심장질환을 일으킨다

호주에서 2년이상 근무의 24-64세 주물 노동자 9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은 쇠를 녹여 형틀에 주입해서 굳어지면 빼내는 등의 전공정을 다 갖추고 있다. 열에 의한 스트레스로 맥박수가 겨울에 비해 여름에 더 늘어났고 보통때보다 여름에 혈압이 더 높아졌다. 열에 의한 스트레스는 심장질환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해당자 50%는 그들의 혈압이 높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진 동

진동에 의한 상해는 대형차량을 운전하거나 기계 근처에서 작업하는 결과로서 발생하며 신체 전체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 휴대용 톱이나 장도리, 압축공기 장비등의 공구를 사용하면 손과 팔이 영향받을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영향

보통 백랍병이라 불리우는 레이노 병(Raynaud's Phenomenon)이 있는데 이 병은 초기에는 손가락이 따끔따끔하거나 마비되는 증상을 보인다. 진동공구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진동부위에 가장 가까운 손가락끝이 흰색으로 변하며 몇시간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다. 진동장비를 사용하는 동안 혈액순환이 단절되기 때문에 작업을 끝내거나 혈액이 다시 돌아올 때나 특히 날씨가 차거울 때 또는 차거운 물체를 취급할 때는 따끔따끔한 느낌이 생긴다. 결국 지속적으로 진동작업을 하게 되면 손 또는 팔 전체가 흰색으로 변하고 항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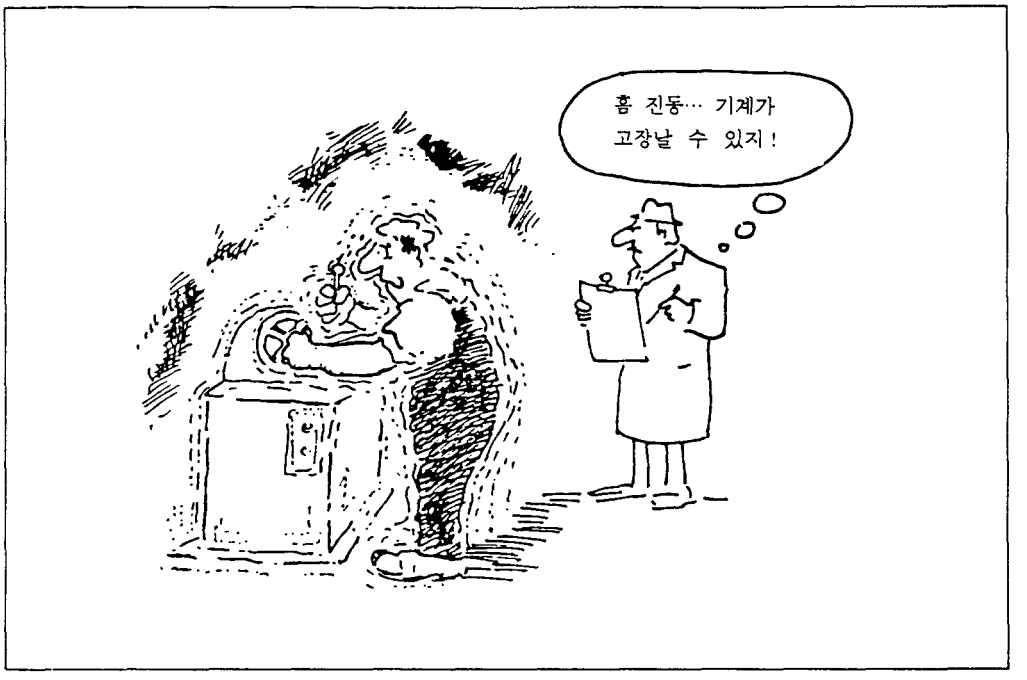

된다. 드물게는 탈저정(몸의 일부의 사멸. 기능 상실에 의한 병)이 발생하여 팔 또는 손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진동공구로 인해 주먹내의 신경이나 골막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백랍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진동 관련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진동작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진동공구 작업을 중단해야 대부분의 증상들이 사라지게 된다.

예방 및 관리

충격을 흡수하고 진동을 완화시키는 장갑을 착용해도 부분적인 예방조치만 될 수 있다. 과도한 진동을 발생시키는 장비에 대해 표시를 부착하면 노동자들이 그것의 잠재적 위험을 알 수 있게 된다. 기타 관리대책으로는 잘못된 장비의 경우는 작업자에게 휴식을 자주 부여해야 하고 손이나 팔을 운동시키고 마사지해주어야 하며, 기계수리를 적절히 해주어야 하며, 과중한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깊게 작업을 계획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보다 더 만족스런 대책은 없다.

섬유 및 분진

공업의 경우 여러 공정이나 또는 광물. 합성소재 사용으로부터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규토를 함유하고 있는 모래는 주물공장에서 형틀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유리섬유중 합성섬유는 조선소에서 사용된다. 석면은 절연재로서 광범히 사용된다. 몇몇 예를 들면 가스켓, 브레이크 라이닝, 시멘트등에서 사용된다. 도기, 화강암, 철강주물의 경우 혼합분진이 사용되는데 그 중 20%이상이 유리규토이다. 내화점토 분진의 경우 규토가 60%이상 포함되어 있다.

건강에 대한 영향

흡입되는 미세분진(호흡할 수 있는 분진)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고 바로 공기중을 돌아다니게 된다. 모래에는 규토가 함유되어 있는데 미세분진을 상당량 들어마시면 규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 석면으로부터 떨어져나온 미세한 섬유는 폐조직 속으로 뚫고 들어와 항구적으로 남아 있게 되며 석면증을 발생시킨다. 석면증과 규폐증은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심장 및 폐의 장애를 초래하여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중질병이다. 폐암 및 중피종(中皮腫)이라 불리우는 암은 석면에 노출됨으로써도 발생될 수 있으며 노출이후 25-30년이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담배를 태우는 경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중피종은 어느 경우든 치명적이다.

예방 및 관리

분진과 섬유를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분쟁발생지점에 적절한 국지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 외의 대책으로는 모래를 적셔서 사용한 달지 낡은 원료의 재사용 대신에 새로운 것을 사용한달지 분진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조직을 변경하는 것등이다.

분진이 발생하는 공정은 완전히 밀폐될 수 있다. 방진마스크가 사용될 수 있으나 분진의 종류에 따라서 특히 금속분진의 경우는 그 분진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효과가 없게 된다. 석면의 경우 노출만 되면 항시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나 ILO가 제시하는 허용한계치란 기업주의 비용부담과 노동자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타협물에 불과하다. 대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석면관계작업은 작업자 전원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된 조건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석면의 제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주의깊게 행해야 하며 석면을 내포할 수 있는 장비나 기계, 즉 보일러나 브레이크 라이닝을 해체할 때는 적절한 방진마스크나 작업복을 착용한 후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정기적 의료검진을 통해 분진 질병의 증상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으며 유해분진에의 더이상의 노출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으며 보상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석면제품	적절한 대용품
파이프라인 외피	광물 펠트, 싸펠트, 듀라 글라스
드럼 브레이크 라이닝	비(非)석면 유기물, 반(半)금속
비터 부착 개스켓	셀루로즈, 아라미드, 섬유유리, 폴리테트라플라우어에틸렌 흑연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	반금속
쉬트 개스켓	파라 아라미드, 섬유유리, 흑연, 셀루로즈 폴리테트라플라우어에틸렌
브레이크 블록	비석면 유기물, 반금속
루핑 펠트	섬유유리 펠트, 수정판 비튜멘, 싱글 플라이 멤브란스
클럿치 페이싱	유러피언 우븐, 유에스 우븐, 주조 아라미드, 주조 섬유유리
석면 시멘트 파이프	폴리염화비닐(PVC), 연철
자동 트랜스미션 부품	셀루로즈
석면 시멘트 평판	칼슘 규산염, 비칼슘 규산염
석면 시멘트 파상판	섬유유리, 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강철, PVC

자료 : 미국 환경보호청

(주의)이들 대용품을 사용할 때도 노동자가 필요이상으로 분진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노동기준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IMF 산업안전회보
IMF BULLETIN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NO. 28
위원장 : 프란츠 슈타인퀼러 타무퀼러 : 마르첼로 말렌타키
30호
한 국 어 판
발행처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발행일 : 1991. 12. 15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0-2. 전화 864-2901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제조업의 산업안전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제조업은 오늘날 가장 규모가 크고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이다. 다국적기업들의 공장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미국, 유럽에 있다. 기술적으로 매우 단계가 높은 그런 생산디자인이나 제조는 선진국에서 기능있는 고기술산업 노동자들이 행하고 있지만 저기능의 노동집약적 작업은 대부분이 신개발국(NICs)의 여성노동자들이 행하고 있다. 동남아는 미국이나 일본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외생산 거점이다. 노동력은 저렴하고 고분고분하며 다국적 기업 본국보다는 노동조합이나 법에 의한 노동자 보호조치가 미약하다. 전자 생산라인의 대부분의 공정이나 작업이, 유해화학물질과 방사선을 이용하고 있다. 전자산업 노동자들은 그들이 작업장에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전자산업의 업무성 장애로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직접적 관련을 입증하거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및 보상을 받는 것은 노동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통,

근육긴장, 피부 알레르기, 시각손상등의 현상이 매우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사소한 불만사항으로 간주되어 무시되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다. 작업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물질 및 시설을 알지 않고는 위험요소나 적절한 처리방법을 끄집어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 회보에서는 몇몇 주요 공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위험 요소 몇가지만을 검토하려 한다.

본 회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산업의 유해공정

반도체 제조	도핑제(금속화합물과 함께 사용되는 맹독 가스, 수산화비소등), 광화학 약품, 산, 용제, 플라스틱, 에폭시 수지, 레이저, 자외선, 가스.
인쇄회로판 제조	에폭시 수지, 플라스틱, 용제, 염료, 석면/유리섬유, 산, 알칼리, 톱, 경화제, 납땜/용제, 자외선, TV모니터
최종제품 조립	용제, 산, 알칼리, 플라스틱, 톱, 드릴, 그라인더, 에폭시수지, 경화제, TV모니터, 도료, 납땜/용제
세척	(탈지, 산세, 주물등 세척, 플라스틱 도포, 에칭, 스트리핑, 연마, 산화, 바프연마포함)산, 알칼리, 용제, 암모니아, 시안화물, 과산화물
접 착	에폭시 수지, 아교, TV모니터, 현미경, 초음파
칩의 씰링, 검사 표 시	현미경, TV모니터, 방사성 가스, 플라스틱, 에폭시 수지, 도료, 세라믹, 금속(알루미늄, 동, 금, 크롬), 용제
에칭, 도금	금속증기, 포토리지스트 현상약, 용제, 산, 가스, 시안화물, 알칼리

산과 알칼리

산과 알칼리는 전자 산업 여러 공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부식성〉 및 〈가성〉물질로 불리우고 그와같은 명확한 표시가 없어서는 안된다. 이들은 보통 물로 희석시켜서 액체형태로 사용된다. 고농도의 산 또는 알칼리 용액이 저농도용액보다 훨씬 위험하다. 다음은 산, 알칼리관련 화학물및 이들 포함의 용액에 대한 공통명칭이다.

- 수용액, 산화제, 가성물질, 세정제, 세제, 에칭용액, 플라스틱, 포토리지스트, 산세제, 도금용액, 광택제, 희석제, 비누, 소다.

건강에 대한 영향

산과 알칼리등 강한 자극성 화학약품에 노출되면 중상, 질병, 급사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식성화학물의 경우는 피부, 눈, 폐의 화상이 보통 일어난다. 증기를 마시게 되면 폐질환, 뼈의 손상, 치아 부식등 장기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불화수소산에 의한 화상은 산이 바로 세척되거나 중화되지 않으면 피부 깊숙이에 있는 조직에까지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불화수소산이 노동자의 손이나 발에 엎질러지거나 튀겨지면 항구적 기능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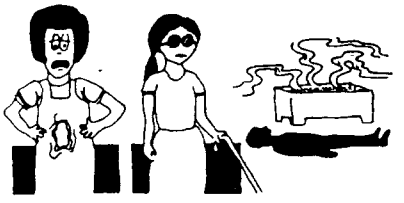

산과 알칼리는 화상, 실명,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용 제

용제는 타물질을 녹일 수 있는 화학물질로 전자산업의 거의 모든 작업이나 공정에서 도료, 수지 등을 세척하고 탈지, 희석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직장(및 가정)에서 사용되는 수천가지 공통물질에는 아세톤, 벤젠, 부틸 글리사이달 에테르, 스티렌, 톨루엔, 크실렌등의 용제가 포함되어 있다.

산업용 용제는 어느 것이든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다.

건강에 대한 영향

용제는 신체에 대해 장단기적 영향을 다 끼치고 있다. 단기적 영향은 보통은 다량의 용제에 1회 노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 용제에 노출되면 졸립거나 현기증이 나게 되며 두통이나 술취한 느낌이 들게 된다. 다량의 용제에 노출되게 되면 의식을 잃거나 죽을 수 있다. 장기적인 영향은 단기적 영향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소량의 용제에 매일 매일 자주 노출됨으로써 일어나게 된다. 용제는 장기적으로는 뇌 및 신경계를 손상시킬 수 있고 피부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간이나 혈액생성체계의 손상과 남녀 및 미출생아의 생식능력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 벤젠등과 같이 발암성 용제가 있는가 하면 트리클로로에틸렌과 같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시되고 있는 용제도 있다. 모든 용제가 이들 모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용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 용제가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조사해낼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혼합된 용제에 노출되게 되면 이들이 결합하여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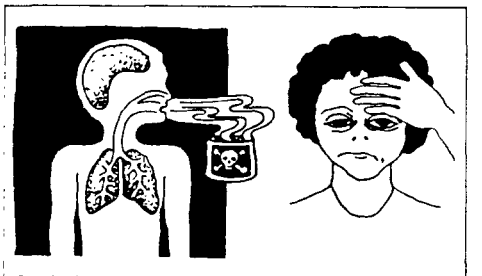

용제의 증기를 흡입하면 두통, 현기증, 졸림증과 같은 마취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약이나 알콜, 소음, 열등 여타 위험요소와 결합될 경우 더욱 그렇다. 간장은 알콜과 용제의 영향이 결합된 경우에 대해 특히 더 취약하다. 홍콩에서는 81년도에 75명의 전자산업 노동자를 임의로 추출하여 그들이 화학물질에 대해 노출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대부분은 용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35%이상이 다음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종종 목이 아프고 콧물이 줄줄 흐른다, 등이 아프고 잠자는데 애로가 있다, 졸리고 현기증이 나며 항시 두통증세가 있고, 팔다리 통증이 있다. 조사대상자중 단지 3명만이 전자산업에 입사할 시나 입사후에 건강검진을 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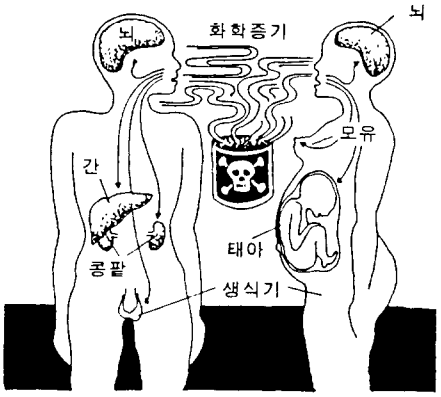

증기를 흡입하거나 피부로 흡수하면 혈액속으로 들어가 몸전체로 돌아다니다가 해를 끼칠 수 있다.

접착용 화학물질

접착용 화학물질로는 에폭시나 여타 수지가 있다. 소수의 경우에는 금속이 사용될 수도 있다. 에폭시 수지는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사용할 때에 섞어 쓴다. 에폭시 수지는 통상 A라 불리우는 경화되지 않은 수지와 B라 불리우는 경화제로 되어 있어 섞으면 에폭시가 굳어지게 된다. A는 먼저 용제를 넣어 묽게 한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에폭시 수지의 성분중에는 건강에 매우 유해한 것이 많으며 유해 증기와 분진을 방출한다. 경화된 수지든 경화되지 않은 수지든 고열로 가열될 때는 지극히 유독한 증기를 내품기 때문에 유해하다.

건강에의 영향

수지는 피부나 눈의 염증, 피부 감작 및 알레르기, 폐 염증과 천식을 일으킬 수 있

쟈넷양은 스코틀랜드 리빙스톤에 있는 한 전자회사에서 웨이퍼 조립공으로 일했었다." 제가 처음에 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깨끗하고 기술이 높다는 인상을 받았지요. 그러나 4-5개월이 지나자 항시 골이 지근지근했어요. 두통은 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피를 흘렸어요.…… 하루는 우연히 용제 제조공장에서 부착한 안전라벨을 보았지요. 거기에는 그 용제의 사용과 관련된 건강장해요소들이 전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이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용제를 사용케 하다니……나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회사에 항의했습니다. 안전라벨에는 증기 제거를 위해 강력한 집긴장치를 부착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제가 작업하는 기계에는 집진장치가 없었습니다."

다. 폴리에스테르와 페놀 수지에 사용되는 스티렌과 포름알데히드는 피부염이나 결막염을 일으키며 또한 포름알데히드를 들이키면 기관지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결막염은 중증일 수 있고 항구적인 시각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있어 암을 유발하지 않나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용제나 수지중에는 그 증기가 매우 유독한 것이 있다. 수지 성분중에는 에피클로로히드린이나 포름알데히드등 다수가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벤젠과 디글리사이들등 몇가지는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임신 노동자의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칠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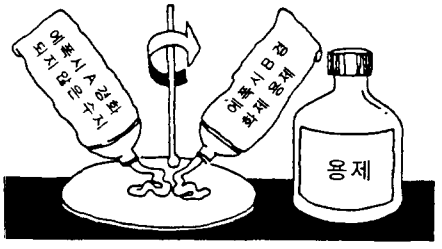

경화되지 않은 에폭시 수지는 경화제와 혼합하여 용제로 희석시키는데 그때 위험한 증기를 방출한다.

쏠 더 링

열은 쏠더링 작업을 유해한 것으로 한다. 다음의 것으로부터 화상 또는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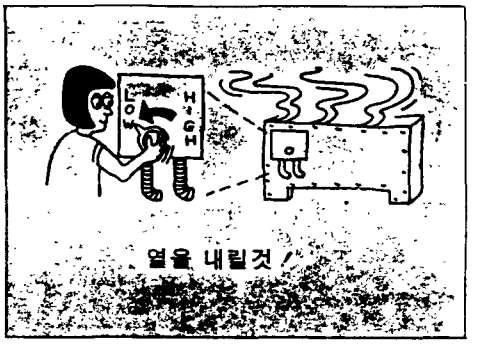

- 용기 또는 납땜인두
- 용해된 납과의 접촉
- 용액중의 수분이 증기를 내기시작할 때 용해된 납이 튀기는 것
- 뜨거운 납, 산, 용제 기타 용액이 튀기거나 엎질러질 때

증기, 가스, 운무가 다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납용액중의 용제나 산의 증발
- 여타 용제나 금속납의 증발
- 충전제나 절연제의 분해
- 플라스틱이나 철사도금의 분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열량만 사용되어야 한다. 쏠더링을 하거나 쏠더링이 행해지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전자산업 노동자는 피부암 발생률이 평균보다는 높을 뿐만 아니라 피부염, 비염, 천식등 작업관련 알레르기 발생률이 매우 높다. 영국의 전자공장에서 1979년도에 작업관련 호흡기 질환을 조사한 바 있는데 납 연기에 노출된 노동자의 22%가 비록 국지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납연기가 허용 한도치보다 낮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천식이 발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비록 납연기가 없는 작업장으로 노동자가 이동해도 천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공기, 땅, 물의 화학적 오염

전자산업이 깨끗한 공기와 순수한 물, 그리고 고도로 정제된 원자재를 사용하는 산업임에도 매우 유독한 화학물질이 누출되고 엎질러지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공기방출이 전자공장 주변의 공기와 땅, 물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모순중의 모순이다. 전자제조가 일으키는 환경오염에 대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통계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와 관계가 있다.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환경과 공장기준이 가장 엄격한 곳이며 유독물 누출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신속하고 강한 곳이다.

* 실리콘밸리에서 1982-1984년간에 70건의 유독물 누출과 방출건이 발생했다. 1984년도 추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전자공장 화학물 저장탱크중 80%가 누출상태에 있었다. 적어도 64개의 공장지역이 토양과 물을 오염시켜 식수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었으며 그 중 몇개는 후에 당국으로부터 폐쇄조치되었다.
*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조와 조립업체등 전자산업이 일으키는 공기오염은 탄화가스나 용제증기를 공기중에 방출함으로써 광화학 스모그 형성에 기여한다. 이들 가스나 증기가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방출의 산화질소와 혼합되게 되면 스모그가 되고 스모그는 타 대기오염물질과 함께 폐암이나 호흡기질환을 증가시킨다.

위험한 작업 보호장치가 된 작업

알레르기

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는 피부, 눈, 코나 목구멍의 점막, 폐, 소화관 내측에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

자극성 물질과 감작 화학물질

- 용제
- 녹은납 용액
- 포름알레히드
- 에폭시 수지
- 경화제
- 금속분진 및 증기
- 유리섬유등 충전제
- 절삭유, 기계유
- 아크릴
- 이소시안염
- 무기산
- 플라스틱 수지 및 첨가제
- 왁스 · 페놀
- 알칼리성 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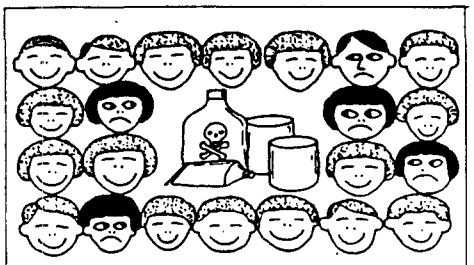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즉각적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조금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 노출된 뒤에라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알레르기 및 염증 예방법〉

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접착이나 여타 조립공정에서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나 경화제등 소수의 경우는 대다수 노동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한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물질이 조금만 함유된 것에 노출되더라도 항시 피부염, 기침, 천식, 눈의 염증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스트레스, 건조한 공기, 지나치게 뜨겁거나 찬 경우등은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

작업장의 스트레스는 물질적 환경, 작업조직,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 물질적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는 소음, 위험스런 기계, 증기 및 분진, 빈약한 환기조치, 열, 부적절한 보호장구에 의해 발생한다. 작업조직이란 작업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빨리 어떻게 행해지며 임금이 얼마냐 하는 것 등이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몇가지 조건을 보기로 하자.

* 조립작업과 같은 반복적이고 싫증나는 작업, 이들 작업은 변화와 책임과 새로 배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저하시키고 좌절시킨다.
* 노동자들로 하여금 안락하고 안전한 수준 이상으로 일을 빨리 하고 오래하게 하는 성과급제도.
* 작업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없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으며 작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지원, 정보를 주지 않을 경우 일에 대한 불만이 발생함.

스트레스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조건으로는 감원에 대한 항상적 불안, 여성에 대한 작업장의 성폭행(일자리가 문제로 될시는 특히 싸우기가 힘들음)등이 있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건강에 대한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 잔업, 주말작업, 야근등은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여성은 장시간 노동을 할 경우는 작업과 가사라는 이중 부담을 안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여성이 출퇴근중에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

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불규칙한 노동시간은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게 만든다.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은 다수가 그들 가족을 방문할 수 없게 된다.

눈의 장해

전자산업에 의한 비극의 하나는 부적절하고 불건강한 노동조건 때문에 수천의 노동자들이 영구적으로 시력을 상실해버린다는 점이다. 일자리 대부분은 두 눈의 시력이 2(완전한 시력)인 응모자들이 채용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몇 개 공장의 노동자 95%가 약 1년 일한 것만으로도 만성결막염, 근시, 난시등 시력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일본, 홍콩, 말레이지아, 필리핀에서 실시한 의학조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은 노동조건하에서 현미경이나 TV모니터를 가지고 지루하며 상세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장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 분진은 결막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문제

육체			
두통	근육긴장	피부습진	눈의긴장
노장정맥	혈압증가	맥박증가	동맥경화
심장병	천식	목과 등의 통증	관절염
위궤양	조산	체중변동	사고, 질병률 증대
약, 담배, 술, 카페인에 의존			

정신			
불안	신경과민	불면	우울증
자신감상실	안달		

염을 일으킬 수 있다. 오염된 손이나 수건으로 눈을 문지르기만 해도 충분히 결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결막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전염성 결막염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에어콘이 되어 있는 작업장의 낮은 습도는 노동자의 눈을 건조하게 하며 화학물질의 증기에 의해 염증을 일으키기 쉽다. 낮은 습도는 특히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 강하게 작용을 한다. 자극성 화학물질이 콘택트 렌즈 뒷쪽으로 묻혀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콘택트 렌즈는 수분함량이 많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 연기를 쉽게 흡수하게 된다. 부식성 산 가까이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욱더 위험하다.

자외선건조램프나 용접아크로부터 나오는 금속연기나 분진, 레이저 및 자외선은 눈을 데거나 그을려 백내장이나 실명을 가져올 수 있다. 화학물질이 눈에 튀겨들어가게 되면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 이상을 씻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레이저는 실명이나 눈의 화상, 백내장을 일으킬 수.있다. 모든 레이저는 고정된 받침대 위에 볼트로 고정시켜야 하며 레이저 광선이 눈보다 충분히 윗쪽 또는 밑쪽에서 비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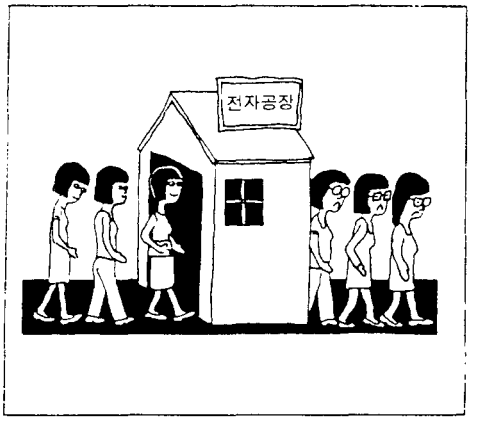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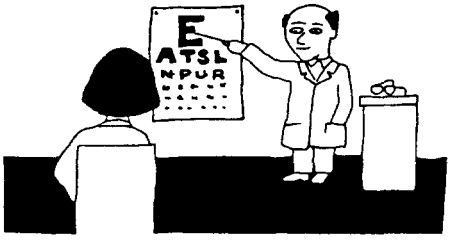

6개월마다 눈검사를 하면 눈이 더 나빠지기 전에 눈의 손상을 발견할 수 있다. 눈 검사는 회사부담으로 실시해야 한다.

작업실 출입은 유자격자에게만 허용되어야 하고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미경 작업이나 TV모니터 작업을 장시간 하게되면 구토, 두통, 현기증등의 증세가 발생하고 눈이 흐릿흐릿해지게 되며 항구적인 눈의 손상에 이르게 된다. 현미경의 촛점이 잘맞추어지지 않거나 조절불능이면 항구적인 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TV모니터를 1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게 되면 1-2년안에 시력이 악화되게 된다. 이 경우 눈의 손상은 작업시간을 4시간이내로 제한시키고 2시간마다 15분의 휴식을 줌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모든 노동자들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시력검진을 받아야 한다. 시력검사는 채용시에 해야 그 뒤 재직기간중에 시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본노련에서는 국제금속노련(IMF)이 발행한 「전자산업의 산업안전보건」을 91년 12월 말까지 번역 발간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국제금속노련(IMF)이란

국제금속노련은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70개국 170개노조로부터 1300만명의 노동자가 결집한 국제노동조직입니다.

국제금속노련은 ITS(국제산업별 서기국)의 한 단체로 철강, 조선, 자동차, 항공, 전기전자등 산업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속노련 제네바 본부에는 이들 산업을 담당하는 전문부서이외에도 화이트 칼라, 여성, 청소년, 직업훈련, 이민노동자, 산업안전보건문제를 담당하는 특별부서가 있습니다.

국제금속노련 경제사회조사부는 국제금속산업의 동향에 대한 광범한 보고서뿐만 아니라 매년〈노동시간의 구매력-국제비교〉라는 단행본을 발간합니다.

국제금속노련은 산업별 회의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단축, 신기술, 산업민주주의,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등의 주제에 대한 국제노조의 정책을 논의키 위해 각국 노조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국제금속노련은 ILO, OECD, 각종 UN기구에 참여하여 금속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국제금속노련은 아프리카, 인도, 일본, 라틴 아메리카, 리베리아 반도에 지역 사무소를 두어 이들 지역의 노조발전을 지원합니다.

국제금속노련 수입의 반은 지원사업에 쓰입니다. 국제금속노련은 투쟁이 발생할 시 국제수준에 있어서의 재정적, 정치적 지원등을 행합니다.

국 제 활 동

국 제 부

Ⅰ. 외국인 방문
Ⅱ. 국제회의 파견 및 연수
Ⅲ. 교육 사업
Ⅳ. 기타 활동 사항
Ⅴ. 영자 신문, 각종대회 축사 및 기타 서류

Ⅰ. 외국인 방문

1) IMF 홍보실장 데니스 막세니, IMF-JC 의장 도꾸모또, IMF-ROCC 대표 장가천외 2인

* 일시 : '91.5.15
* 목적 : FKMTU '91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 참석

2) 핀란드 금속노조 교육국장 아르니 투오미넨

* 일시 : '91.6.22-7.6
* 목적 : (1) '91년도 세미나 진행 상황 논의
  (2) '92년도 사업 계획 논의
  (3) IMF에 요청한 교육 프로그램 논의

3) AAFLI 신임 소장

* 일시 : '91.7.22.

4) 소련 노총 부위원장외 4인

* 일시 : '91.7.29.

5) 일본 자동차총련 사무국장 구사노의 일본 자동차 총련 소속 10명

* 일시 : '91.7.31.-8.4.
* 목적 : 현대 자동차 관련 세미나 참석

6) 나까가야 미끼오, 쓰쓰이 히데오, 미끼 히로유끼, 아끼무라 야수미 : 이상 일본 조선중기노련 소속

* 일시 : '91.8.5-10.
* 목적 : (1) 한국조선공업회 방문
  (2) 대우 조선, 삼성 조선 견학
  (3) 상호 연수 협의

7) 로버트 스타이어르트 : 독일금속노조 소속

* 일시 : '91.9.5.-10.
* 목적 : 노동교육원 세미나 참석

8) 덴마크 금속 노조 간부

* 일시 : '91.10.10

9) 덴마크 국제국장

* 일시 : '91. 10. 17-18.

* 목적 : 한국의 최근 노동상황 논의

10) 핀란드금속노조 국제국장 유카 오아스

* 일시 : '91. 10. 30. -11. 2.

* 목적 : 강사 양성 세미나 사업 종료에 따른 향후 계획 협의

11) 러시아공화국노조 위원장외 6인

* 일시 : '91. 12. 12.

* 목적 : (1) 양국 노동 상황 논의

(2) 현대 전자 견학

12) 스웨덴금속노조 교섭위원 스티그 그리얀

* 일시 : '91. 2. 16. -23.

* 목적 : (1) 산업 안전 세미나 참석

(2) 사업장 견학

13) 스웨덴 고텐부르크 지역 연구 위원회 소속 4인(스웨덴 금속노조 조사관 딕 구스타프슨, 스웨덴 전문직연맹 정책 서기 알비드 렌플로드, 스웨덴 농민연맹 환경국장 아네뜨 헬스뜨룸, 고텐부르크 대학 심리학 교수 지그발트 루베노비쯔)

* 일시 : '92. 4. 2

* 목적 : (1) 대우 중공업사업장 견학

(2) 한국내 노동 현황 연구

14) 기타방문

* 일본 조선중기노련 소속 2인

(1) 목적 : 한국의 조선 분야 상황파악

* 하비 목사(미국)

(1) 목적 : 한국내 노동 현황 파악

(2) 구속자 문제 거론

(3) ILO 가입에 따른 준비 사항 논의

Ⅱ. 국제회의 파견 및 연수

1) IMF 철강 분과 회의

* 일시 : '91. 4. 29. -30.
* 장소 : 벨기에 브뤼셀
* 파견자 : 강원산업삼표중공업 위원장 장경식
  연맹 국제 차장 안봉술

2) IMF 씨멘스 세계 총회

* 일시 : '91. 5. 6. -9.
* 장소 : 독일 뮌헨
* 파견자 : 서울지역본부 의장 김영길
  씨멘스노조 위원장 김준성

3) IMF중앙 위원회

* 일시 : '91. 5. 22. -29.
* 장소 : 포르투갈 리스본
* 목적 : 각국 국가 보고

4) 제20회 IMF 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움

* 일정 : '91. 6. 12. -13.
* 장소 : 홍콩
* 목적 : 청소년 및 여성 노동자의 근로실태 보고 및 한국 노동 상황 보고
* FKMTU 여성 부장 문광주외 1인

5) '91년도 근로자 해외연수

※ 연수지역 : 소련 제3기(91. 6. 8-17)

소 속	직 위	성 명
금속노련	부위원장	김 장 선
금성사노조	위 원 장	유 재 섭
금성전선	위 원 장	하 영 일
동국제강	위 원 장	박 중 석

※ 연수지역 : 일본 제5기(91.6.22-28.)

소 속	직 위	성 명
일진노조	위 원 장	최 진 하
세광알미늄	〃	엄 종 국
부원중공업	〃	김 남 수
우진전기노조	〃	장 화 연
금속연맹	부위원장	정 창 영

※ 연수지역 : 일본 제7기(91.7.6-12.)

소 속	직 위	성 명
동양강철노조	위 원 장	정 병 석

6) ICFTU 제3회 청년제

* 일정 : '91.8.12.-16.
* 장소 : 자마이카 킹스턴 언스트 인디스 대학
* 참석인 : 백진현 동승기업 노조 사무국장
  이대환 대우중공업 노조 부위원장
  권영덕 동희산업노조 조직 부장

7) IMF 국제회의(자질 향상, 직업훈련, 고용 증진에 관한)

* 일시 : '91.9.2.-4.
* 장소 : 핀란드 헬싱키
* 목적 : 노동자의 자질 향상, 직업훈련, 고용 증진에 관한 논의
* 참석인 : FKMTU 기획실장 겸 대우전자 위원장 정찬백
  FKMTU 부위원장 겸 부산 지역본부 의장 박기식

8) 전금 동맹(일본 금속 산업노조) 제40차 창립행사 및 제41차 전국 대의원 대회

* 일시 : '91.9.9.-13.
* 장소 : 일본 동경
* 참석인 : 동아건설노조 위원장 류근식

9) IMF-JC 제30차 전국 대의원 대회

* 일시 : '91.9.9.-13.

* 장소 : 일본 동경
* 참석인 : 박인상 위원장

10) IMF-ROCC 제19차 대의원 대회
* 일시 : '91. 11. 7. -13.
* 장소 : 자유중국
* 참석인 : FKMTU 상임 수석 부위원장 김장선
금성알프스노조 위원장 김홍균
삼아알미늄 노조위원장 이우회

11) 제1회 한일금속 고위 간부 회의 및 IMF-JC 대의원 대회 참석
* 일시 : '91. 12. 1. -6.
* 장소 : 일본 동경
* 목적 : (1) 신임 사무국장 교육 논의
(2) 다국적 기업 관련 논의
(3) 외국인 고용 문제 논의
*참석인 : FKMTU 위원장 박인상
FKMTU 부위원장 김성문
FKMTU 부위원장 정창영
FKMTU 부위원장 유재섭
FKMTU 부위원장 정학균
FKMTU 사무처장 최웅길

12) 핀란드 금속노조 제16차 정기 대회
* 일시 : '92. 1. 26. -29.
* 장소 : 핀란드 탐페어시
* 참석인 : FKMTU 상임 수석 부위원장 김장선

13) 일본 조선중기노련 제20회 창립 기념식
* 일시 : '92. 2. 12. -17.
* 장소 : 일본동경
* 참석인 : FKMTU 위원장 박인상
FKMTU 부위원장 정학균

14) IMF 제21회 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움
* 일시 : '92. 2. 22. -23.
* 장소 : 필리핀 마닐라

* 참석인 : FKMTU 국제부 위원 김관진
맥슨 전자 위원장 서혜숙

15) 기타 파견 및 연수

* JAW 연수

(1) 일시 : '91. 6.

* 독일 금속 노조 100주년 기념식

(1) 장 소 : 독일

(2) 참석인 : FKMTU 부위원장 김성문
FKMTU 노사대책국장 노진귀

* 소련 러시아 공화국 노총 주최 세미나

(1) 장 소 : 러시아

(2) 참석인 : 대우중공업노조 위원장 염성태

Ⅲ. 교육 사업

핀란드 지원 강사 교육이 원만히 이루어 지도록 핀란드금속노조 국제국 및 교육국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했다.

횟수	기 간	대상 인원	교육 장소	비 고
1차	1991. 6. 25-28	29	반도 유스 호스텔	아르니와 FKMTU 교육부장 동시실시
2차	7. 2-5.	18	〃	〃
3차	9. 3-6.	22	대전 경하장	FKMTU 교육부장 단독 실시
4차	9 . 10-13.	21	대구 팔공 호텔	〃
5차	10. 23-26.	32	대전 경하장	〃
6차	11. 26-29.	28	노총중앙교육원	〃
7차	12. 3-6.	26	부산 금강 유스 호스텔	〃

Ⅳ. 기타 활동 사항

1) 영자 신문 발간

* 신문명 : FKMTU NEWS
* 발간일 : '92. 1. 15
* 참 고 : 월간으로 간행

2) 연하장 발송

* 해외 금속 노련 관련 단체 및 관련 이사에게 발송

3) 구속자 명단 통보

* 수신처 : (1) IMF 사무 차장
  (2) IMF-JC 사무 국장 서리

4) 설문 조사서 답신 작성 및 발송

* 대상 : (1) 제너럴 모터스사 국내 관련 업체
  (2) 국내 여성 금속 노동자

5) 세미나 참석

* 노동 연구원 ILO 세미나 : '91. 10. 28.-29.
* 숭실대 노사 관계 심포지움 : '91. 10. 31
* 노총 "국제 활동 담당자 회의(가칭)" : '91. 12. 23.

6) ILO 교육

* 대상 : 서울 지역 본부

7) 노총위원장 단식 사건 IMF에 통보

8) 국가 보고서 작성

* 제출처 : (1) IMF 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움
  (2) IMF 중앙 위원회

9) 각종 대회 기념패 제작

10) 각종 해외 파견 관련연구 보고서 작성

V. 영자신문, 각종대회 축사 및 기타서류

* 영자신문(1호, 2호, 3호)
* 일본금속 산업 노조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제41차 대의원 대회 축사
* IMF-JC 제30차 대의원 대회
* IMF 소식지 "NEWS RELEASE"에 기재된 글
* 워싱턴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송부한 구속 노동자 항의서
* IMF 사무 총장 공한
* IMF 1992년 활동 계획
* 제21회 IMF 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움 한국 국가 보고서
* 보도자료 :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제금속노동자연맹(IMF)의 지지
* 1992. 3. 20. FKMTU 결의 대회에 보내는 IMF 연대메시지

FEDERATION OF KOREAN METALWORKERS' TRADE UNIONS
1570-2, Sinlim-dong Kwanak-ku
Seoul, Korea
TEL. 82-2-864-2901
FAX. 82-2-864-0457

FKMTU NEWS

No. 1 January 15, 1992
〈Monthly Publication〉
President In-Sang Park
General Secretary Woong-kil Choi
Editor JIn-Kwi Noh

EMPLOYERS' 10% MORE MOVEMENT PROTESTED STRONGLY

Korean employers used to create the weapon at the end of every year to block the next spring offensive for fixing the wages. The creation this year is so called 10% more movement whose contents are 10% more savings, 10% more economy, 10% more increase of productivity, 10% more export and voluntary harder work. The employers from 5 employers' organizations which cover all employers in Korea together met Nov. 22 1991 at Korea Chamber of Commerce building and decided to spread this movement to the plant level. This movement is supported by government and New Community Movement Centre which has been sponsored financially by government. Korean government and employers have propagated their arguments that Korean workers don't work industriously and in addition take too many days of holiday and that Korean economy is coming towards crisis. They intend to make Korean people caught by erroneous syllogism that the reason for the crisis of Korean economy is the idleness of Korean workers and therefore if the economy will recover, workers should work hard.

Korean economy reveals its weakness this year. This year will mark 13 billions US dollar deficit in international trade and price hike will be estimated to exceed one digital percent which has been the aim of Korean government's price policy since early eighties. It is estimated that 5,000 enterprises will have gone bankrupt this year. The stock market does not recover yet. It can be told that many Korean people have the sense of crisis and workers, particularly those at the small or medium sized company have the willingness to do something for recovery of their company if possible. One of the

SEASON'S GREETINGS
from
F K M T U

reasons for workers protest against 10% more movement is that it is enforced one-sidely upon workers by employers. Tripartism should be respected also in Korea. Tripartism already appeared as most important issue in Korea. One of the reasons why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stood against the attempt of Korean government to change labor laws October this year is that tripartism was neglected. Other reasons why we Korean workers resist 10% more movement are that (a) although the crisis of Korean economy comes both from wrong economic policies of government and the low investment of the enterpris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such factors are concealed purposely and (b) the movement will result in the higher intensity of work.

FKMTU asked officially FKTU to determine its position about the movement. Accordingly FKTU had the affiliates' representatives meeting and decided that they would consider concretly at FKTU's Policy Seminar to be held on the middle

of January next year. On the other hand, a silent demonstration was staged by union officials from Kuro Industrial Complex in Seoul December 11 1991 to declare their opposition against 10% more movement. It was the first voice and highlighted by mass media. (written at the end of 1991)

Silent demonstration in front of Kuro Industrial Complex Office

AUTO-PARTS WORKERS' SYMPOSIUM Held by FKMTU

FKMTU held Auto Parts Workers' Symposium November 29, 1991 at the conference hall of FKTU building. 120 participants from FKMTU affiliated auto parts' union and car-maker's union including Hyundai Motor Union discussed and adopted declaration after listening to introductory lectures. The declaration argued that the worse working conditions of autoparts workers result from continuous cut-down or freeze of subcontracting unit prices, misdeeds of monopolistic car-makers and government's policies which are always favorable to monopolies and stressed that cooperations with car maker's unions are imperative. The participants determined that they will respond collectively for the this year's wages negotiation. Mr. Lee, Hun Ku, president of Hyundai Motor Union, made promise at his solidarity speech that his union will support auto parts workers' movement strongly.

According to research of FKMTU, 1240 companies make auto parts or components under the order of 5 car-makers. Severe competition make the auto-parts company inevitably subordinated to car-makers and accept the unfair contracts. As a result of it, auto parts workers sometimes should refrain from exercising workers' basic rights. FKMTU research shows that auto-parts workers get 67 percent of the wages of car-maker workers in terms of nominal wages.

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granted the financial assistance for the symposium.

IMF-JC AND FKMTU MEET REGULARLY

IMF-JC and FKMTU agreed that top leaders of both organizations meet once a year to discuss mutual interests and met together December 1 - 6, 1991 in Tokyo. Top leaders presented national report on political, economic and labor situations each other and discussed matters of multinational companies and union-to-union exchanges. Next meeting was scheduled to be held September 1992 in Korea.

COLLEAGUES FROM RUSSIA WELCOMED

7 colleagues from Republic of Russia national centre of labor visited Korea December 8 - 16 1991. FKMTU invited them to its headquarters and several affiliated unions including Hyundai Electronic Union. They visited FKMTU headquarters December 12 and talked with Park, In Sang. FKMTU president. They were most interested in Korean occupational disaster compensation system because the introduction of market economy sure will bring about the increased autonomy of individual enterprise. The visiting group was led by colleague Klochkov Igor, chairman of FITUR, Russian national centre of labor.

President Park expressed his hope for exchange with FITUR-affiliated metalworkers.

'92 WAGES NEGOTIATIONS TO BE HIT BY 'TOTAL AMOUNT OF WAGES' SYSTEM

Korean government created new concept Total Amount of Wages to push down wages increase from next year on. The concept, total amount of wages is that employers should report total amount of wages at their enterprises to Ministry of Labor frankly. The story should start with past wage policy of Korean government for clear understanding of the new concept. Korean government has threatened workers and employers that wages increase should be restrained within one digital percent and has monitored. However, it has been the Korean situation that employers could not help accepting around 20 percent wage increase. Big enterprises have increased allowances and fringe benefits instead of restraining basic wage within one digital percent and reported only the increase of basic wage to the authority. This is the reason for introduction of Total Amount of Wages system. It is commonly understood by workers that the purpose of it is to restrain wages efficiently without exception. FKMTU already made it clear several times for the system to be repelled.

Educations

IMF-FMU Instructor Trainings

FKMTU conducted IMF-FMU Instructor Training twice since the end of November. Theses are 6th and 7th course among 9 courses, scheduled for last year. The remaining 2 courses will be conducted January this year.

Communication Workshop

FKMTU had Communication Workshop Nov. 19-21. 60 participants from FKMTU affiliated unions got informations and skills to make union newspaper and other instruments of communication.

Solidarity Training for Women Workers

FKMTU conducted Soldarity Training on Kwanak Mountain in Seoul Nov. 22. 41 women officials from affiliated unions were divided into 3 groups for team work. Each team was assigned various tasks including making team flag, singing workers' song in chorus on the way to the top of mountain and back to the 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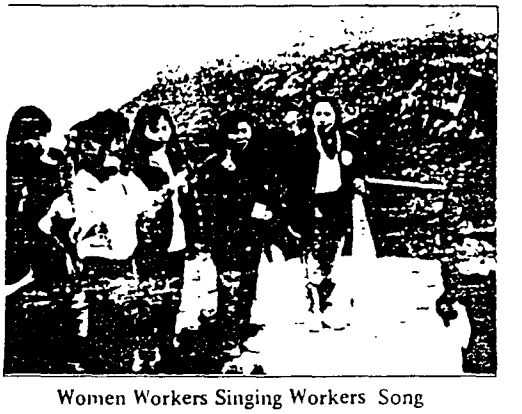

Women Workers Singing Workers Song

Pohang Regional Office Set Up

FKMTU set up its Pohang Regional Office November 23 1991. Pohang is the largest iron & steel industrial city in Korea. FKMTU has 34 affiliated unions including POSCO union and 45,000 potential members. Mr. Baek, Jong Bu, president of Pusan Pipe Union was elected as chairman of the office.

KOREA ENTERED ILO

Korea became a member state of ILO December 9 1991. Of course, the question is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he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t is reported that government will ratify nothing but such conventions that are consistant with domestic laws. FKTU issued the statement soon after the entry of Korea to ILO that government should respect tripartism ,and observe all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92 WAGE NEGOTIATION BEING PREPARED

FKMTU is preparing the guidelines for '92 wage negotiation of affiliated unions. The guidelines will be distributed to affiliated unions at the middle of January this year after consideration of FKMTU Central Committee meeting. The guidelines will be composed of the followings;

- how much should be requested for '92 wages
- how to nogotiate
- how to respond to the arguments of employers
- materials for negotiations
- system of collective struggles and information exchanges
- FKMTU assistances for '92 wage negotiation

FKMTU will conduct educations for explanation of the guidelines after January 20 and educations for strike leaders early February and organize industry-by-industry meetings for information exchanges to help affiliated unions determine their wage requests.

According to FKMTU research, '91 basic wage increase was 18.3 percent. The monthly wages of FKMTU members as of the end of September 1991 is shown by the following table.

	Male	Female
Nominal Wage	439,141 won	323,339 won
Fixed Bonus	188,075 won	137,613 won
TOTAL	627,216 won	460,952 won

DAEWOO SHIPYARD WORKERS SENTENCED TO SEVERER PUNISHMENT

It was very uncommon in Korea that the court of appeal pronounces sentence of severer punishment. However, Daewoo shipyard workers who had been imprisoned March 27 1991 on the charge of illegal strike were punished more severely November 22 1991 than at the original trial. Among them, 8 workers who had been released with the sentence of stay of execution were sentenced to 10 to 12 months imprisonment and were sent again to prison. And Brother Baek Soon Hwan, Daewoo Shipyard Union president and Brother Kang, Yong Kil, chief vice-president of the same union were also punished more severely from 1 year prisonment to 1 and half year. The relevant court made it clear that it aimed at the fundamental change of direction of labor movement through such judgement. Of course, Daewoo shipyard workers were resented by such attitude of the court. 150 workers present at the court protested strongly and among them, 11 unionists were arrested and were sentenced to 15 to 25 days' detention. Back to yard, workers called the rally and refused to work overtime. FKTU issued the statement which expressed its surprise and anger.

FEDERATION OF KOREAN METALWORKERS' TRADE UNIONS

1570-2, Sinlim-dong Kwanak-ku
Seoul, Korea

TEL. 82-2-864-2901
FAX. 82-2-864-0457

FKMTU NEWS

No.2 Feb.29 1992

〈Monthly Publication〉

President In-Sang Park
General Secretary Woong-kil Choi
Editor JIn-Kwi N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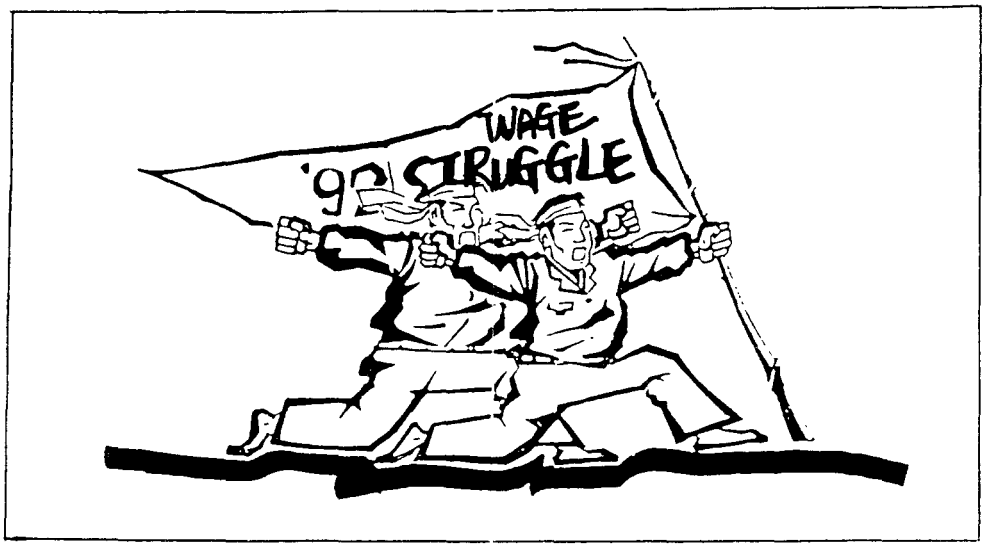

FKTU Requests 15% Wage Increase

FKTU set the guideline for '92 wage request which was asking for 15 percent or 74,000 Won wage increase. This is lower than last year request of 20 percent or 97,000 Won increase. It may b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the inflation rate in 1991 was higher than in 1990.

FKTU listed the economic difficulties as one of major factors in cutting down wage increase request. It is a fact that the future of Korean economy is unclear. In addition, public oppinion contaminated by mass media is pressing for concession of trade union side.

This year, government tries to restrain big companies wages increase below 5 percent while freezing the white collar wage. Government already listed 1,050 companies whose workers' wages increase will be controled by it. On the other hand, Korean Employers' Association set the guideline of 4.7 percent at big companies and 6.7 percent at other companies. It is not surprising a little bit that employers' guideline is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s policy. In addition, the Council of Korean Employers' Organizations, a totally labor-repressing institute which was organized at end of 1990, made the decision to refuse the bill of the company which violates its guideline for '92 wage negotiation. The council is seeking for enforced solidarity of employers for their mutual interests.

Living Costs 28% Up Last Year

FKTU , Korean national centre of labor,

calculated the living costs of workers as of December 1991, based upon its existing theoretical family basket model.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the monthly living costs by family size are shown in the below table. Compared to last year, 5-persons-family living costs hiked 28 percent. In general, local unions take FKTU living costs into consideration to determine their own wage increase request. Of course, both government and employers have refused to accept not only FKTU living costs but also the living cost in itself as basis for determination of wages. Productivity is always their only specialty.

Living Costs by Family Size

As of December 10 1991 (unit : Won)

Items \ Family size	1 male	1 female	2 persns	3 persns	4 persns	5 persns
Foods	118,137	102,328	190,702	281,092	390,222	472,896
Housing	88,889	88,889	177,721	213,028	230,694	301,314
Furnitures	22,124	22,291	40,442	44,142	46,142	48,845
Electricity.water	17,850	17,850	23,425	27,622	33,532	38,620
Clothes.shoe	23,958	22,132	46,090	57,512	72,706	94,709
Education	11,080	11,080	11,080	19,944	72,081	147,833
Transportation	20,697	20,697	30,353	30,353	30,353	45,933
Sanitation	14,919	35,843	40,894	51,480	61,732	75,348
Cultural Activities	43,783	41,183	49,277	54,777	61,110	67,027
Savings	42,592	42,592	38,333	38,333	38,333	38,333
Tax	21,807	21,837	35,497	43,817	76,957	128,247
TOTAL	425,836	426,722	683,814	862,100	1113621	1459105

Source :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Ready for '92 Wage Negotiation

FKMTU began to assist affiliated unions in preparing '92 wage struggles. It already issued the guidelines and materials for '92 wage negotiation of affiliates and organized regional circuit education to explain them about its guideline and materials and train negotiators Around 1,000 local union officials participated in this circuit program.And then FKMTU conducted the training program for 45 regional strike leaders who will assist local unions during '92 wage struggles on behalf of FKMTU. On the other hand, FKMTU is researching working conditions and view-points of affiliated unions about '92 wage negotiations to help them determine their own wage request level. In addition , FKMTU will organize both regional and industrial union-to-union information exchange meetings.

National President Came to FKTU Building First

It has been first time in FKTU history, in other words,Korean trade union history that national president is present at FKTU building.President Roh Tae Woo is really the first visitor to FKTU building. In such respect, February 12

1992 was a historic day to Korean workers. However, his visitation could not make Korean workers feel honored and pleased although he was accompanied by long line of his ministers and TV station televised lively.The purpose of his visitation was to lead tripartite discussion for building up a social consensus. However, the discussion seemed to be run onesidely by government and too short to form a real social consensus. And most of speakers seemed to be chosen by government.It seems that there was a good reason that workers thought the conference aimed at forming a social environment for pushing down wage increase although president Roh made promise again that labor bank shall establsh soon.

Hyundai Motor Union under Severe Repression

Hyundai Motor workers' strike for year-end bonus has been followed by severe repression of employer after strikers withdrew from plant. 82 strikers were accused and 62 workers among them were already arrested while 20 ones wanted by police. Brother Lee,Hun-ku, president of Hyundai Motor Union also was arrested Feb.10 1992.On the other hand, employer has dismissed 48 union members and has taken sanctions against 420 workers with suspension of work, cut-down of wages and warning. Employer is showing his willingness to make use of the strike this time for destruction of independent union.

Court Opened The Way to Easier Dismissal

Korean supreme court ruled December 10 1991 that workers could be dismissed on the ground of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This is very new and strange interpretation. Court has so far ruled that even redundant employees could be dismissed only in such situation as company would be in a danger of going bankrupt without reduction of workforces and after all efforts to avoid dismissal has been taken completely.

New ruling of supreme court certainly made both government and employers very happy. Ministry of Labor which has refused to accept even the rulings of supreme court several times, welcomed this time soon after new ruling was made. Ministry of Labor issued very quickly a guideline which added new interpretation of supreme court. It is the big worry of trade unions that the new ruling sure will be made use of to weaken labor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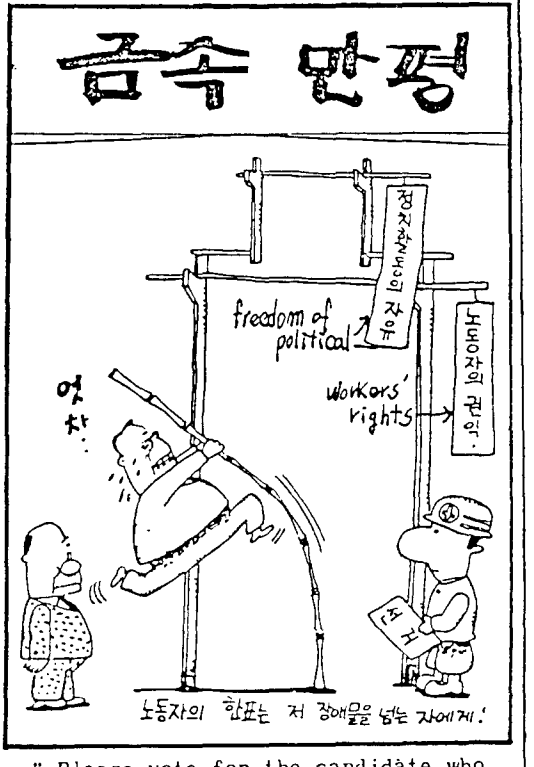

" Please vote for the candidate who jumps over that crossing bar!!"
(from No.97 of FKMTU NEWS)

Increased Immigrant Workers in Korea

Lack of workforces in part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fast wage increase is inducing increased immigrant workers from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Philippine. It is estimated that immigrant workers numbers around 50,000 persons. According to poice office,number of illegal immigrants is 42,000 persons, among whom 19,000 persons come from China and 15,000 persons come from Philippine. Korean Ministry of Labor also has been considering import of foreign workforces and employers are transfering their plants to other Asian countries to escape union and wage increase. Korean Employers' Association pointed out in one of its research that it is required for pushing down effectively wage increase to solve workforce problem.The boom in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government's 2 million houses supplying policy and abnormal growth in service industry due to lucrative investments in real property which subsequently raises the wage in part of service industry and makes younger generation dislike the so-called 3D jobs including manufacturing industry bring forth lack of workforces in part of manufacturing industry.

IMF-SMU Health and Safety Seminar

FKMTU held health and safety seminar Feb.18 - 20 in Seoul. The seminar which is follow-up course of last health and safety seminar,held June last year,put the importance upon discussion of current health and safety activities of affiliated unions and FKMTU's future role.Seventeen participants pointed out the following problems surrounding health and safety activities of their own union: Too quick change of those in charge of health and safety, lower priority given to health and safety in enterprised unions, lack of information exchanges and lack of paid time for health and safety activists. And participants concluded that more understanding of importance of health and safety, protection of health and safety activities and more training and education are necessary. On the other hand,various ear protectors and respirators were shown and slide film from Swedish steelworkers was projected during the seminar. In particular, the slide film which shows the process of health and safety improvements in the steel industry, caught special attention of participants.
The seminar was organized under IMF-SMU assistance project for better health and safety of Korean metalworkers. Brother Stig Grehn from Swedish Metalworkers' Union led the seminar together with FKMTU.

Russian Union Sent Invitation to FKMTU

Viktor Pankin, president of Central Council of Russian Heavy Engineering Workers' Union sent invitation to FKMTU headquarters January 22 1992. He invited 4 - 5 FKMTU officials to visit Russia one week June 1992. According to him, the union covers workers,engineering staffs and officials in heavy engineering, transportation, power, chemical,oil construction and road engineering in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Membership numbers 1,700,000 . The union is the 3rd. biggest union in Independent States and has relationship with 25 overseas trade unions.

FEDERATION OF KOREAN METALWORKERS' TRADE UNIONS

1570-2, Sinlim-dong Kwanak-ku
Seoul, Korea
TEL. 82-2-864-2901
FAX. 82-2-864-0457

FKMTU NEWS

No. 3 March 31 1992

〈Monthly Publication〉
President In-Sang Park
General Secretary Woong-kil Choi
Editor JIn-Kwi Noh

METALWORKERS MEET FOR SUCCESSFUL '92 WAGE STRUGGLE

FKMTU called the rally of affiliated unions' representatives March 20 1992 to express metalworkers' determination for '92 wage struggle and against government's repression.

President Park,In-sang denounced,at his opening remark,the government for its attempts to push down '92 wage increase below 5 percent, introduce part-time employment more unfavorable to workers, import foreign workers and impose 30 more minutes work on workers and condemned employers for their eagerness for lucrative investment. He stressed that regional joint struggle will be very important to breakthrough repression of government and employers. In particular, he appealed that metalworkers should vote for the candidates favorable to workers at the coming general election.

IMF General Secretary Malentacchi told at his solidarity message sent to FKMTU, " The continued pressure by the Korean Government,its security forces,and the employers against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y is becoming a world scandal." He called for the release of all Korean workers imprisoned ' under fake charges'

Around one thousand representatives present at the rally adopted the resolution concerning Successful '92 Wage Struggle and Fighting against 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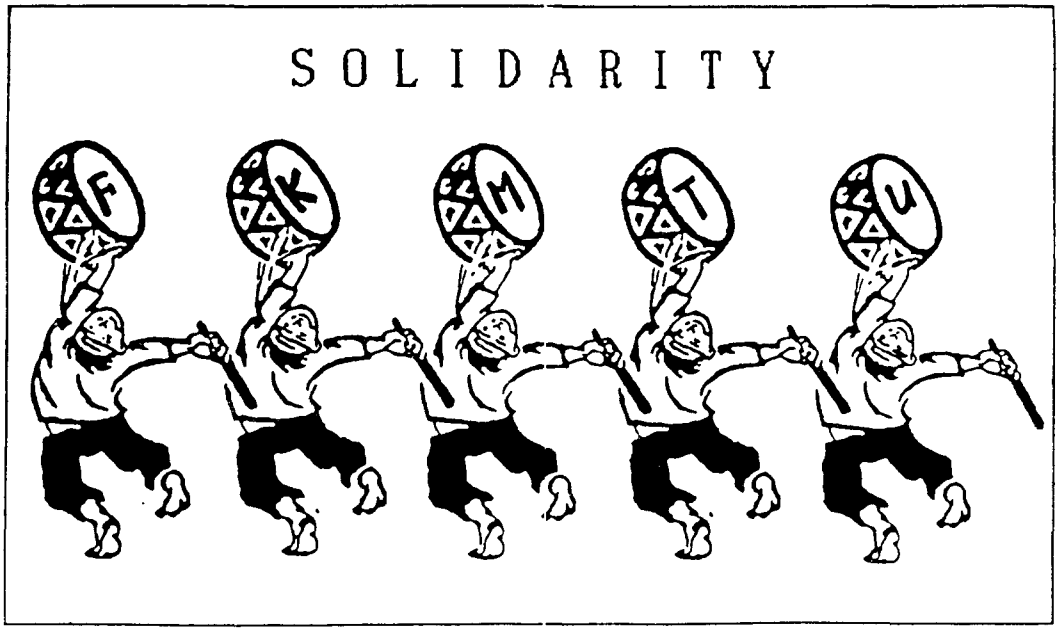

pressions and the message , sent to government and congress. They also adopted the special resolution to call upon the government to repeal the nomination of 1,434 establishments to be the target for below-5-percent wage restraint.
And 55 local strike leaders were nominated to assist affiliated unions in '92 wage struggles in the name of FKMTU.

Leakage of 'Blacklist' for Restraining Wage

Governmental Industrial Peace Committee decided to put 1,434 establishments under the control of government for pushing wage increase down below 5 percent March 16 1992. Those establishments are composed of above-500-employees companies, above-300-employees service-related companies and public establishments among which there are many companies in lower wage group. This selection of the establishments is based upon '92 wage negotiation guidelines of Ministry of Labor which is usually called as wage restrining guideline by workers. As soon as the list of 1,434 establishments was exposed by one commercial newspaper, the workers concerned protested immediately. FKTU issued the protesting statement and FKMTU and 179 representatives of its affiliates concerned also issued the statement jointly which denounced the government and urged the immedediate repeal of the blacklist for restraining wage. It looked like Ministry of Labor was so much surprised at the leakage of the list. It is known that Ministry of Labor is reviewing the list for more complete implement of the guideline. FKTU called the relevant staffs of affiliated industrial federations to draw up counter-measures and also had a hearing from one officer of Ministry of Labor.

Korean People Say 'no' to Ruling Party

The result of general election for congress seats was very surprising not only to ruling party, but also to Korean people. The ruling party failed in getting majority of seats. The 3 opposition parties and non-party group got 150 seats together , compared to 149 ones of the ruling party. The leading opposition Democratic Party retained 97 seats ,less than one third which is required to block down the attempt to revise the Constituent for introduction of parliamentary government . However, the most surprising fact in general election this year is that the one and half month ago founded Unification National Party showed up as the third biggest floor negotiating bloc by getting 31 seats and on the other hand, non-party group got 21 seats. The unstability in congressional decision-making process is expected. Workers are worring much that Unifica-

The wood printing " daugter's letter"

tion National Party and non-party group will form a conservative merge or coalition with the ruling party because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conservative wing. This year, the attempt to change labor laws tremendously will be made by government. If Unification National Party which is led by Chung Ju-yung the founder and former chairman of Hyundai Business Group and is commonly called 'Business Group Party' , ' Gold Party', or ' Money Party' by workers, will join forces with the ruling party in changing labor laws, it will be certainly easier absolutly to worsen them. Nonethless, the ruling party's defeat is a good news to workers at least for the time being. Workers worried that if the ruling party had won overwhelmingly, it would accelerate the repression and jeopardize '92 wage negotiations. Workers experienced few years ago how the attitudes of government had changed after the smaller government party had became the bigger one by the merge of 3 parties in 1990. FKMTU stressed among workers that the result of general election would be too much important for successful '92 wage struggle.

FKTU President Refuses to Be Nominated to Congress

One of workers' hottest issues in general election was whether Colleague Park, president of Korean national centre of workers accepted any political party's proposal for a seat in the national constituency of Korean congress, a total of whose 62 seats are apportioned rough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seats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wins in direct voting. There were several cases which former presidents of FKTU accepted such proposal from government party. Korean workers had found the dependence of FKTU upon government in such attitude of FKTU presidents. This time, it was reported that government party made proposal for national constituency seat. FKTU president Park clarified at '92 FKTU Annual Congress of last February that he would not accept the proposal from government party because working together with the repressive party would be unendurable and to the contrary he could consider if the opposition party would make proposal. It was reported later that he had already been nominated to the opposition party's seat in the national constituency. However, FKTU president Park decided at last not to accept any proposal for national constituency seat. It is evaluated that his decision set the good example for the independence of FKTU from the ruling party which had not been easily imagined before '87 great struggle of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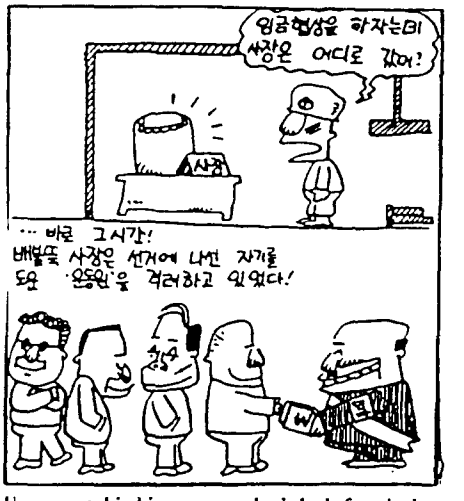

Wage negotiation was scheduled for today
"Where is the boss ?"
"He went out for election campaign."
(from FKMTU NEWS)

Shipbuilding Workers Will Meet Soon

FKMTU and FKMTU Shipbuilding Committee is now organizing the shipbuilding trade unions' meeting. Brother Chung,Hak-kyun, chairman of Shipbuilding Committee and 3 colleagues from shipbuilding trade unions visited trade unions in the ship-

building industry to discuss the measures for consolidation of shipbuilding workers' solidarity. Hyundai Shipbuilding Union, Hyundai Mipo Ship-repairing Union, Hanjin Heavy Engineering Union and Halla Heavy Engineering Union welcomed the proposal of Shipbuilding Committee immediatly. Shipbuilding Committee will visit other unions including Daewoo Shipbuilding Union soon.

Wage Negotiation Starts One Month Later

Most of the FKMTU-affiliated unions will start '92 wage negotiation at the eary April this year, which gets later one month than the previous years due to the general election. The wage negotiation used to start until the middle of March and finish until the end of May while the industrial disputes used to be reported to the authority at the end of Aptil and most of strikes were staged during May. It is expected the wage negotiation this year will also get hottest during May.

FKMTU Regional Rally for Wage Struggle

FKMTU regional offices started holding the regional rally for '92 wage struggle according to the '92 wage struggle guideline of FKMTU. FKMTU Taeku-Kyungbuk office had the rally March 27 1992 with the participation of 2,000 members.They called for the resignation of labor minister. FKMTU Seoul regional office also is organizing the rally, scheduled for April 11 1992 at Kuro Industrial Complex Around 3,000 memebers is expected to participate in this rally. FKMTU Kyungnam office also is organizing the rally. Around 2,000 workers at Puchon most of whom are working in the metal industry also had the rally March 25 1992.

Daewoo Motor Union with New Leadership

After the resignation of Brother Lee Eun-Ku, former president of Daewoo Motor Union who is still in prison, it had the byelection for the election of new president. Brother Kim, Jong-ryul was elected as new president. FKMTU president Park was invited to the regular session of annual convention of Daewoo Motor and told at his encouraging remarks that Korean workers will never forget '85 great struggle of Daewoo Motor workers and expressed his wish Daewoo Motor union could resume such a role in Korean trade union movement with new leadership

Hyundai Union President Expresses Anger over Repression of Employer

Bother Lee Hun-ku, Hyundai Motor president who was sued for violation of Korean laws and has been detained in Ulsan Police Sation expressed his anger over the severe repression of employer after the failure of bonus strike to the visitor from FKMTU. As reported by the previous edition of this FKMTU NEWS, Hyundai Motor sanctioned and sent to jail many trade unionists. And it is known employer has checked the visitors to union office strictly and prohibited them from entering union office long time. Now Hyundai Motor union is led by general secretary Lee Jae-in who has also been wanted by police station.

일본금속산업노조 창립40주년 기념식 및 제41차 대의원 대회

축 사

존경하는 가즈요시 쥬다 위원장, 그리고 역원동지 여러분

저는 한국금속노련을 대표하여 전금동맹(ZENKIN DOMEI-일본금속산업노조)의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제41차 대의원대회가 성황리에 치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중요하고 영광스런 자리에 초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전금동맹은 위원장과 집행부의 뛰어난 영도하에 그 단결력과 조직력은 세계노동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 위상은 날로 커져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동서 냉전의 시대에서 화합과 협력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제는 국가간의 이념적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세계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이바지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해야할 일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그 임무도 막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발전을 위한 힘의 원동력은 바로 노동자에게서 발생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산업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산업이야말로 세계경제발전의 산파역할을 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세계 평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확신하여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그간 각국의 노조간의 연대는 서로가 많은 도움이 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중요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 대표들께서 더욱 더 전 세계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전금동맹의 전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이러한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의 주역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 입니다.

끝으로 귀 노조의 창립 40주년을 한국금속노련의 40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다시금 축하드리며, 제41차 대의원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역원동지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991. 9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박 인 상

대독 동아건설노조 위원장 류근식

축 사

존경하는 테루히또 도쿠모또 의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오늘 일본 금속산업 노조협의회(IMF-JC) 제30차 대의원대회 개최를 한국금속노련(FKMTU)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좋은 성과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도 자연도 역사의 흐름속에서 변화·발전해 간다능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JC가 제30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이 속담이 주는 교훈을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30년 세월이면 인간은 성숙하여 완숙미가 넘칠 때이며 수목은 튼튼한 뿌리를 내려 바람이나 폭풍우에도 쓰러지지 않는 좋은 제목으로 커있을 것입니다. 과거 IMF-JC도 수 많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오늘날 세계 노동사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입장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노·사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기여한 바 크며, 노동자적인 입장에서는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공헌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F-JC와 FKMTU도 우정과 연대를 함께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시간이 감에 따라 그 친분이 깊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듯이 이제 양국 노조는 국경을 초월하여 노동자의 궁극적인 목표인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운명을 같이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는 예측을 불허하리만큼 급속하고도 다각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었고 동구 공산국가들이 개방과 자유의 물결로 술렁이며 미·소는 냉전의 종식을 위해 서로가 동반자임을 확인하기에 이른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공산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이 내분사태이후 74년만에 공산당해체를 선언하고 나선 사실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국제정세변화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처하느냐하는 문제는 노동자의 안위와 평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러한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해가기 위해서는 각국 노조간 협조와 연대가 더욱 등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려해볼 때, IMF-JC와 FKMTU의 그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연대는 국제노동사에 좋은 본보기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날 일본의 경제성장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일본이 세계경제발전의 산파역활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노사협력과 국민적화합으로 공동의 번영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부국, 복지국가인 일본이 있기까지는 IMF-JC의 숨은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30년의 세월동안 역경을 겪으며 국제노동사에 남긴 성과도 많았지만, 앞으로 세계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왕성한 활동을 하게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금 IMF-JC의 제30차 대의원대회를 축하드리며, 동지 여러분의 빛나는 활동과 건투에 찬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IFM-JC가 더욱 성장하기 바라며, 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1991. 9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박 인 상

IMF 소식지 "NEWS RELEASE"에 기재된 글(한국구속노동자)

IMF는 16백만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는 180여 가맹노조에게 노동조합 조직활동 때문에 한국에 구속노동자 276명의 석방을 촉구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IMF는 자동차, 조선 그리고 기계공장의 노조지도자가 포함된 한국구속노동자의 목록을 송부 하였습니다. 일부 노동자는 1년이상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IMF 관점으로는 한국정부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노조원을 탄압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1987년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한국의 독립노도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1987년 이래 많은 독립노조의 탄생을 포함하여 중요한 민주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구속노동자 주는 대한민국이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 가맹노조에 송부한 편지에서 IMF 사무총장 말렌타키씨는 대한민국이 1992년 ILO회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ILO 조항에 역행되는 반 노동자적 행위(탄압)의 종시과 ILO 권고항을 지키도록 노동법 개정을 한다면 ILO 가입은 명백해질 것이다로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 송부한 구속노동자 항의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구속된 한국 구속노동자 276명에 관한 스위스에 위치한 IMF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NEWS RELEASE"를 동봉해 드립니다.

미국 통신노동조합(CWA)-미국와 캐나다의 700,000만 전화와 그 관련분야 조합원과 사무직원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노조권 행사로 구속된 한국 구속노동자에 관하여 저희 노조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귀 정부에 전달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우리는 귀 정부가 구속 노동자와 구속 노조지도자들의 석방을 즉각 단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미국통신노조(CWA)

위원장 : Morton Bahr

IMF 사무총장 공한

친애하는 한센씨에게,

태국와 대한민국

저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지역 회의에 앞서서 귀하께서 두 개의 아시아 국가, 즉 태국와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권의 억압, 노조 활동자의 해고, 그리고 불관용의 증대에 관하여 ILO의 우려를 명백히 표명해야 한다는 저의 바람을 밝히기 위하여 서신을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양국에서 일어난 심각한 전개 사항 때문에 저는 태국와 대한민국을 뽑은 것입니다.

------ 중략 ------

IMF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비밀 경찰과 대한민국노조 운동자와 그들 노조의사용자들에 의해 일어난 잔인합 핍박에 대하여 금년 내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ILO가 인정한 노조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노조 운동자들의 명단을 배포해 왔습니다. 사실, 대한 민국은 현재 세계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구속 노동 대표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대우와 삼성같은 회사에서 자유 노조를 조직하려는 시도는 억압을 당해왔습니다.

저는 대한 민국이 현재 UN 회원국이기 때문에 ILO 회원국이 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ILO가입 승인이전에 귀하의 사무실에 의하여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ILO규약, 그 중에서도 87호와 98호를 확실히 서명할 것이라는 보장이 ILO가입이전에 요구됩니다.

------ 중략 ------

귀하의 동지

사무총장

마르셀로 말렌타키

1991. 10. 29.

*이 글은 IMF 사무총장 마르셀로 말렌타키가 ILO 사무 총장 마이클 한센에게 보낸 공한임.

IMF 1992년 활동 계획

행 사 명	장 소 명	날 짜
비공식 청소년 모임	제네바	1992년초
IMF지중해 회의	로마	1월/2월
서아프리카를 위한 세미나	자이레/세네갈	2월6-7일
제21회 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움	마닐라	2월21-22일
캐터필러 세계회의	벨지움	2월24-25일
시계제조회의	베르네	봄
에이 비이 비이 회의	제네바	3월(2일간)
지엠 세계 자동차 회의		3월
ILO 철강 위원회	제네바	4월
텍사스 기계회의	로마	4월14-15일
리놀트 볼보 회의	스웨덴	4월 20-21일
동아프리카를 위한 세미나	나이로비	4월 23-24일
남아프리카를 위한 세미나	하라레/요하네스버그	4월27-28일
정신 노동자部의 노동 단체 회의	제네바	4월28일
일렉트로럭스	미국	4월28-30일
북아메리카 : 무역, 투자 그리고 고용	미국	5월 4-5일
집행위원회	프라하	5월19일
중앙위원회	프라하	5월20-21일
도요타 세계 자동차 회의	일본	5월27-29일
톰슨(TCE)	파리	6월 4-5일
아시아 전기 전자 토론회	도꾜	6월18일
제5회 라틴 아메카 자동차 회의	사오 베르나도	6월22-23일
동유럽 내의 선구기업 : 자동차의 경우	부다페스트	9월17-18일
제4회 아시아 자동차 회의		10월 5-6일
정신 노동자部의 노동 단체모임	제네바	10월6일
동유럽회의	제네바	10월20-21일
아시아 지역 회의	쿠알라 폼푸르	10월26-27일
가난 및 기아 추방 회의	멕시코/인디아	11월
정신 노동자 세계회의	도꾜	11월3-5일
집행 위원회	제네바/터키	11월19-20일

행 사 명	장 소 명	날 짜
SKF 세계회의	암스텔담	12월8-10일
OECD 철강회의(2개의 정기회의)		
-노동단 회의	파리	2일간
-고문회의	파리	2일간
보인 노동 단체	제네바	2일간
에어버츠 노동단체	제네바	2일간
2개의 세미나	헝가리	
2개의 세미나	체코슬로바키아	
2개의 세미나	불가리아	
1개의 세미나	폴란드	
1개의 세미나	루마니아	

이민 노동자에 관한 노동자 회의

기타 활동 사항

이민 노동자 인종주의에 관한 소책자 준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의 여성상황에관한 연구
청소년에 관한 조회
직업훈련에 관한 조치
동유럽으로 시무원 파견
아프리카 편집부

제21회 IMF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움
1992. 2. 22. -23.
필리핀, 마닐라.

대한민국 보고서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먼저 한국 금속 노동자를 대표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음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여성 노동자.

1991. 9. 현재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취업자) 19,127,000명 중 남성 취업자는 11,281,000명이고 여성 취업자는 7,846,000명입니다. 남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1978년 약 75% 수준에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1989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 속도는 대략 5년마다 2%정도입니다. 1989년 현재 15세 이상의 남자는 4명중 3명이, 그리고 15세 이상의 여자는 대략2명 중 1명이 노동 시장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한국에는 여성 노동 시장 참가 및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한편 여권 신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유교적 사고 방식및 보수적 여성관으로 인해 여권 및 여성의 사회활동이 몹시 억눌려 왔다는 것이며, 현재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금속 여성 노동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의 수

	여 성	남 성	계
1989. 2.	87,809	269,091	356,900
1990. 2.	96,025	293,035	389,060
1991. 9.	70,630	218,706	289,336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87년 이후 노동 운동이 활발해지다가 '91년부터 가중되는 노동 탄압으로 말미암아 노조원수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조원들이 노조 활동상 직면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적 어려움
2) 여성들의 노동운동에 대한 의식 및 경험부족
3) 남성들의 보수적인 여성관 때문에 여성들이 스슬 운동 참여 포기

현재 한국 금속 연맹의 여성 조합원을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간부 교육(년2회)
2) 여성 위원장 회의(매월)
3) 여성 대표자 사업장 친선 체육대회
4) 여성간부 극기훈련
5) 여성 대표자 세미나

2. 청년 노동자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청년 노동자에 대한 연구 및 활동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 금속연맹에서는 청년 노동자 전담 부서가 없고 한국 노동자 총연합에서는 '91.2.21. 청년 노동자 전담 부서인 청년국이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 노총의 청년국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노총에서는 18세에서 35세까지의 젊은이를 청년 노동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총 청년국의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및 세미나 실시-지도력 개발, 심성훈련, 지도자 양성
* 조사 사업-아시아 재단후원
* 체육활동
* 복지후생, 안전

한국 노총 청년국의 활동상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연락망이 원활치 못함-20개 연맹, 7,000개의 단위 노조가 있기 때문

3. 결론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사상 유래없는 노동탄압속에서 노동 조합의 존폐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금속 연맹은 전 세계 금속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역량과 투쟁을 확신하며 노동조합의 정치 세력화와 굳센 단결을 바랍니다. 더 힘찬 전진과 건승을 쟁취하시고 동지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금속 노동조합연맹
국제부 위원 김관진
1992.2.23.

보도자료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992. 1. 22

제목 : 현대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제금속 노동자 연맹(IMF)의 지지

다음 내용은 IMF 사무총장이 전국 금속 노동자 연맹에 보낸 공학 및 IMF 간행물인 NEWS RELEASE의 국문 번역본입니다.

친애하는 박동지 :

IMF를 대신하여 현대 노동자들에게 IMF 연대표시(인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의 1,600만 조합원들과 전 세계의 모든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투 경찰에 의해 가해지고 있는 협박 -노동자를 공격하겠다는-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요청 -정당한 임금과 보너스 제도 뿐만 아니라, 작년에 해고된 노조 지도자들의 복직에 대한-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세계 각국의 신문들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가입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ILO 권리들을 부인하는 독재 국가처럼, 한국에 관한 사진들을 실어야 한다는 것을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귀하의 동지,

마르셀로 알렌타키 사무 총장

1992. 1. 21.

뉴스보도

국제금속노동자연맹

현대 노동자들에 대한 국제 노조의 지지

국제 금속 노동자 연맹(IMF)은 대한민국에서 투쟁중인 현대 노동자들에 대해 지지의 전갈을 보냈다. 1,60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IMF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파업 상태를 깨기 위해 무장 병력을 투입치 말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섯개 현대 사업장을 장악하고 있는 파업 참가자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15,000명의 중무장 전투 경찰들이 현대 자동차 산업의 울산 사업장 바깥 주변에 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현대 경영자측과 대한 민국 정부에 의해 파기된 중무장 전투 경찰간의 공모 작업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고 IMF 사무총장 마르셀로 말렌타키씨는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의 한 회원국이다. 그러나 서울 당국은 많은 ILO협약, 특히 현대 그룹과 현대 노동자간에 대결을 야기시켰던 이슈들 중 하나인 독립 노조 조직 허용안을 위반하고 있는 중이다.

임금 투쟁에 덧붙여서, 노동자들은 회사에 의해 해고된 노조 지도자들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노조 지도자들은 회사 생산 계획을 충족시키고 파업 기간중에 손실된 생산량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 근로를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현대는 노동 행위의

완벽한 철회를 요구하고 정부에게 현대 고용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투입하도록 요청하려 하고 있다. 33,000명의 노동자들은 9 : 1의 비율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현대는 그들의 요구와 협상을 거절하고, 대신에 공수 전투 경찰이 파업 상태를 깨고 회사 내의 노조를 와해시킬 것을 요청해 왔다.

IMF는 현대의 극도로 잔악한 행위에 대항하여 전 세계 활동망을 통해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 현대사업장 내의 노동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중이다.

1992. 1. 21. 제네바

1992. 3. 20. FKMTU 결의 대회에 보내는

IMF 연대메시지

친애하는 박인상 동지, 그리고 금속 노동자 동지들 :

본인은 1,600만 국제금속노련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귀 노련 1992년 임투승리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 대회에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전세계의 1,600만 국제금속노련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귀 노련 1992년 임투승리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 대회에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전세계의 금속 노동조합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경제 및 사회 정의를 위한 귀국 금속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임금을 획득하기 위한 한국금속노동조합 연맹의 쟁의와 노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와 사용자측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정당한 경제적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는 노동자들이 일으켜 세운 것으로, 과소비, 땅투기, 증권 시작 조작이나 정치적 공작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합법적 노조 활동에 대한, 대한민국정부, 공권력, 그리고 사용자측의 계속적인 탄압은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987년에도 대한민국국민들은 중대한 민주적 돌파구를 마련했지만 지금 그 성과물은 붕괴되고, 노동 현장에서 시민의 자유가 조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귀국 노동자들을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민주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주요 ILO협약들을 비준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적 권리와 경제적 정의가 보장되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아시아의 주요 공헌자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노동 조합이 정부 및 기업주측의 탄압없이 그들의 정당한 주장들을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업, 북아메리카, 그밖에 아시아와 세계 모든 곳의 금속 노조들은 한국금속노동조합연맹 및 그 조합원들과 대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 노련의 이번 대회가 성공리에 끝나 92년도 임투에 커다란 활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르셀로 말렌타키 사무 총장

IMF

1992. 3. 10

여 성 활 동

여 성 부

○개 요

1. 기혼여성노동자 탁아실태조사
2. 제26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행사지도
3. 1991년도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4. 1991녀도 청년지도자 지도력 개발교육
5. 경제활동 지도자과정 교육
6. 제20회 I.M.F 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음
7. 여성간부 노동상담 실무교육
8.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위반 취업규칙 시정활동
9. 청년노동자 간부 심성훈련(제1기)
10. 제7회 여성대표자 사업장 친선체육대회
11. 금속노련 여성위원회 설치
12. 제28회 전국여성대회
13. 청년지도자 심성훈련(제2기)
14. 전국단위노동조합 여성간부 극기훈련
15.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
16. 제18회 여성간부 교육
17. 금속연맹 여성대표자 회의
18. 전국여성대표자 사업장 현황
19. 금속노련통신제작

개 요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인구는 1991년 6월말 현재 전체취업자 1,917.2만명중 789.2만명으로 41.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수 면에서나 비율면에서 점점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편견에 입각한 문화적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남녀동등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92년은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으로 여성노동운동에 고비를 맞고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임시직, 시간제 취업등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여성을 중점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여성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년 각계에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차별, 임금의 차별, 모성보호 및 탁아시설 확충등 여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논의는 되고있지만 실질적 대책마련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좀더 현실적인 법개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토론회, 설문조사, 결의대회등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하였던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며 또한 남녀 고용평등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녀의 성차원을 떠나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여성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여성들만의 차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법위반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요구해야 할 것이고,

둘째, 단체협약에 남녀동등조건을 어떻게 명시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셋째, 남녀조합원들의 공동체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남녀조합원 사이의 성차별적인 편견부터 불식시켜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동료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에는 기존의 교육활동들을 계속 전개하면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제조항들을 단체협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각 단위조합을 대상으로 여성조합원 의식 및 생활실태를 파악분석하여 구체적인 여성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좀더 참여의 폭을 넓혀 남녀 동등한 조건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1. 기혼여성노동자 탁아실태조사

1) 조 사 기 간 : 1991. 4. 1~4. 20

2) 조사사업장 : 한국시그네틱스 40명, 세진전자 30명, 로옴코리아 30명, 총 100명

2. 제26회 여성노동의 평등 및 인권보장 강조기간 행사지도

국민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온 여성노동력의 가치를 확고하게 조명하고, 여성노동자의 "평등하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 활동을 법 조직적인 여성노동운동의 역량으로 불합리한 노동조건개선 및 인권보보호운동을 전개하였다.

○ 방 침

1)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불평등한 차별제도를 개선 촉구하다.

2) 노동조합 여성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3)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공동과제로 부각시켜 유관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수립한다.

4) 노동은 산업경제발전의 주체로서 자주의식과 권리의식 함양을 위한 기존의 활동을 구체화하고 연합활동을 강구한다.

○ 행사기간 : 1991. 5. 1~5. 31(1개월간)

3. 1991년 전국여성노동자대회 —노총주관—

1) 일 시 : 1991. 5. 29 14 : 00

2) 장 소 : 한국노총대강당

3) 참 석 자 : 로옴코리아 위원장외 30명

4) 주요내용 : —노총여성위원회 설립 경위 및 총회결과

—여성노동의 고용안정을 위한 탁아제도

○ 기혼여성노동자 탁아실태조사 결과요약

○ 사례발표

5) 표 창 자 : 현대전자 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순애 공로상

금 성 사 노동조합 여성부장 배정기 공로상

4. 91년도 청년지도자 지도력 개발교육 —노총주관—

1) 일 시 : 1991. 5. 23~5. 25(2박3일)

2) 장 소 : 불암산 유스호스텔

3) 참석인원 : 5명

5. 경제활동 지도자과정 교육 —여성개발원 주관—

1) 일 시 : 1991. 5. 29~5. 31(2박3일)

2)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3) 참석인원 : 6명

6. 제20회 I.M.F 아시아 청부인 심포지옴 참석

1) 일　　시 : 1991. 6. 12~6. 13

2) 장　　소 : 홍 콩

3) 참 석 자 : 금속노련 여성부장 문광주

한국시그네틱스노동조합 위원장 박순오

4) 한국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동지여러분 !

본인은 먼저 한국의 금속노동자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로 여성들 중추적 노동운동을 해왔으며 80년말부터 90년도 초반은 청년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이 노동운동에 커다란 활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노동자등 여성의 취업자는 총 8백46만2천명으로(90.2월 기준) 이 가운데 전문직 8.4%(544천명)를 차지하며 전체 취업자 가운데 남성대 여성비율은 64대36으로 여성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채용, 임금, 승진, 정년 등에 있어서 불평등한 관계로 남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여성에 희망을 안겨주는듯 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인 남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빠져있어 종전보다 그리 크게 나아지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한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으로 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투쟁에 동참하여 임금격차를 해소했으나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인식하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대한 욕구가 팽창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지 2년만에 남녀 차별대우의 금지 및 고용상 남녀 차별을 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해고 등으로 분류해서 모집과 채용에서 교모하게 남자만을 채용하는 사례를 발굴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차별 대책이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 법적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계속해서 법개정을 위한 투쟁과 함께, 여성노동자의 적극적인 운동참여와 단위조합의 단체협약에 문서화시키도록 지도와 교육,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한국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라 기초 여성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이 바로 육아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탁아제도가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영·육아 보육법을 새로이 제정. 91년 6월 현재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중인데,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케하는 실효성이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영·육아 보육법 개정을 촉구한바 있으며, 입법 예고중인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와 함께 로비활동을 전개중이다. 육아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이므로 영·육아보육법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이다. 여성노동자들의 자체적인 활동을 보면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간담회, 타사업장 여성노동자들과 교류, 여성부의 모임, 노래반, 풍물반 운영등으로 여성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남녀평등사상이 보편화 되어 있지 못하고 여권에 대한 남성들의 이해부족과 인색함에도 원인이 있지만 여성 스스로 자기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약하고 여성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이 짧아서 권익획득과 자기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부족, 남성의 의존 관행들이 중요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 금속연맹의 여성활동으로는

1. 금속여성노동자의 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및 책자발간
2. 여성위원회 설치 및 활동
3. 여성간부 및 조합원 교육
4. 여성간부 극기훈련
5. 여성대표자 세미나
6. 탁아관련 조사 연구
7. 노동가테이프 제작 및 노동가 모음집 발간
8.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노동문화 교육
9. 여성대표자 사업장 체육대회등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연대활동을 위해 전국 여성대표자 모임을 월 1회씩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계각국에서 오신 동지들께 한가지 덧붙여 밝히고 싶은것은 60년대의 저임금과 외자특례법으로 보호받고 면세받고 하면서 이윤을 취득했던 각국의 외자기업들이 이제 임금이 올랐다고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야밤도주 하듯이 철수하는 것은 우리모든 노동자들로써는 분노와 경약을 금치 못할 일이며, 주로 외자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라는 점은 더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할수만 있다면 여기 모이신 동지들이 각국에 돌아가시면 선두에 서서 외국에 투자하는 기업체들의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공동으로 협력해서 막아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이후에도 한국의 노동운동을 지켜봐 주시고 I.M.F 동지들도 더욱더 깊은 연대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7. 여성간부 노동상담 실무교육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

1) 일 시 : 1991. 6. 17~6. 18(1박2일)

2)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3) 참석인원 : 14명

8.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위반 취업규칙 시정활동

○ 남녀고용평등법이 1988년 제정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동법에 대한 노·사 및 사회일반의 의식부족과 준법정신 결여로 인해 남녀차별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현 노동상황에서 동법정착 및 여성노동의 평등 발전을 위해 심사내용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시정활동을 각 단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여성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지도하고 동결과를 취합하였다.

심 사 내 용

○ 모집과 채용(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및 모집·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개선 지침)

—특정직종에 남성만을 모집하여 여성을 제한하거나

—여성에게 남성과 달리 많은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

○ 임 금(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합리적인 이유없이

• 남·녀 임금체계를 분리하여 임금을 차별 지급하거나

• 호봉 승급액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

• 또는 제수당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

○ 교육·배치 및 승진(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신규지 교육 및 각종 보수 교육(특히 승진·승급대상이 되는 교육), 해외연수의 교육대상 산정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여성근로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거나 여성근로자에게 보다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예 : 남자 근속2년, 여자 근속 3년), 교육기간이나 교육과정의 차이를 두는 것 등

—동일자격으로 채용한 뒤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관리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하고, 여성근로자는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것 여성근로자에게만 혼이을 이유로 하여 통근이 불편한 사업장에 배치, 전환하는 것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긴 근속연수를 승진요건으로 규정하는 것, 승진체계상 여성근로자는 일정한 직위이상으로 승진을 허용하지 않는 것, 기타 승진기회 및 제도의 차별여부

○ 정년·퇴직 및 해고(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정년 차별에 관한 지침)

—동일한 직종에서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차별정년) 또는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된 직종에 결혼, 임신, 출산 등 여성의 모성기능이 최대로 발휘하는 시기인 30세

전후를 정년 규정하는 것(여성조기정년제)

-결혼퇴직제를 정하였거나 여성근로자 채용시 결혼퇴직 및 임신퇴직을 계약조건으로 하는 것.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

-경영상 긴박한 사유등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도 근무성적, 근무기간등의 합리적 기준없이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것

○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여부,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여부

-육아휴직제도의 실시여부,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여부

• 육아휴직 미실시

• 육아휴직으로 인한 호봉, 승급, 승진등의 경력평정에 있어 불리한 처우 등

○ 고충처리기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구성여부

9. 청년노동자 간부 심성훈련(제1기) -노총주관-

1) 일 시 : 1991. 7. 23~7. 24(1박2일)

2) 장 소 : 샤미나드 피정의 집(인천)

3) 참석인원 : 19명

10. 제7회 여성대표자 사업장 친선 체육대회

○ 여성대표자 사업장의 간부, 대의원 및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조직의 연대강화를 위하여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 일 시 : 1991. 9. 1 10 : 00~16 : 00

○ 장 소 : 한국청소년연맹 근로자종합복지관 운동장

○ 참석조합 : 고니정밀, 태림전자, 시그네틱스, 남성전기, 도신정밀, 맥슨전자, 한독(반월지부), 로옴코리아, 로옴코리아 구로지부, 정심전자, 한국음향, 세진전자, 한국롬버스전자 350명 참석.

○ 종 목 : 배구, 피구, 축구, 릴레이, 줄다리기, 장애물경기, 족구, 발야구.

11. 금속노련 여성위원회 설치(위원 위촉장수여)

1) 일 시 : 1991. 9. 1 09 : 00

2) 장 소 : 한국청소년 연맹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동장

여성위원회 위원 명단

노동조합명	성명	직위	비고
금성사	정봉례	여성부장	부의장
대우전자	남인숙	주안지부장	
금성통신	박혜원	부위원장	
현대전자	김순애	부위원장	
영창악기	김영숙	여성부장	
금성알프스	박선녀	부위원장	
한국시티즌	박금숙	여성부장	
남성전기	김경옥	위원장	
로옴코리아	박순자	위원장	부의장
태림전자	김회숙	위원장	
한국시그네틱스	박순오	위원장	
한국음향	변희내	위원장	
한국롬버스전자	김선월	위원장	
고니정밀	김인옥	위원장	
맥슨전자	서혜숙	위원장	
한국중천	최해경	위원장	
한국카시오	설정숙	위원장	
한독반월지부	문미옥	지부장	
정심전자	장우영	위원장	
도신정밀	김행자	위원장	
금속노련	정영숙	여성국장	의장
〃	문광주	여성부장	

금속노련 여성위원회 운영기본방향

1. 설치근거

노총 여성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금속노련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한다.

2. 설치목적

여성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권익활동을 위하여 노총을 중심으로한 전국적인 연대속에서 각급조직의 여성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3. 설치범위

(1) 노총의 회원조합인 산별연맹(조합)에 여성위원회를 설치한다.

(2) 금속노련의 여성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단위조합(지부) 또는 특정지역에 지역

여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구 성

(1) 위원회 위원은 조합원으로서 30명이내로 구성하되 연맹(조합) 여성위원회 의장이 추천하여 금속노련 위원장이 위촉한다.

5. 임 원

산별연맹(조합) 여성위원회의 의장은 연맹(조합) 여성임원 또는 여성국(부)장이 되고 부의장 약간명, 간사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각급조직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6. 사 업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의 노동권확보와 권익신장을 위한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2) 여성노동의 평등, 발전, 개발을 위한 정책활동

(3) 여성과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제도 개선활동

(4) 여성조직확대 강화 및 여성활동 활성화 촉진

(5) 여성의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법 연구활동

(6) 여성노동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7) 소비자운동 및 환경보호 활동

(8) 노총여성위원회 결의사항의 이행

7. 회 의

(1) 정기위원회는 매 노총여성위원회 총회직전에 위원회의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기본운영방침을 심의 결정한다.

(2) 의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8. 자문위원

노총여성위원회 제10조에 의거 5명이내로 추천하되 산별연맹(조합)위원장이 위촉한다.

12. 제28회 전국여성대회 —한국여성단체 협의회 주관—

1) 일 시 : 1991. 9. 12 10 : 00~15 : 30

2) 장 소 : 63빌딩 국제회의장

3) 참석인원 : 18명

4) 주 제 : 우리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여성이 나서자

13. 청년지도자 심성훈련(제2기) —노총주관—

1) 일 시 : 1991. 9. 4~9. 5(1박2일)

2) 장 소 : 샤미나드 피정의 집

3) 참석인원 : 10명

14. 전국단위노동조합 여성간부 극기훈련

1) 일　　시 : 1991. 11. 22 09 : 00~17 : 20

2) 장　　소 : 서울 관악산

3) 참석인원 : 41명

4) 훈련내용

(출발지점)

도착보고 : ○팀 ○명은 출발지점에 무사히 도착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지시사항 : 1) 금속노련가 제창(힘차게) 1절, 2절

2) 깃발제작, 팀구호 만들기

(준비물 : 칼레펜, 끈, 천, 지팡이)

출발보고 : ○팀 ○명은 제1점으로 출발할 것을 보고합니다.

(제1지점)

도착보고 : ○팀 ○명은 제1지점에 무사히 도착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지시사항 : 1) 깃발 확인후 구호 3창(포스터를 흔들며)

2) 딸들아 일어나라 1,2절 제창(힘차게)

3) "여성해방" 붙여서 여성노동운동에 관한 사행시나 풍자시 짓기

출발보고 : ○팀 ○명은 제2점으로 출발할 것을 보고합니다.

(제2지점)

도착보고 : ○팀 ○명은 제2지점에 무사히 도착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지시사항 : 1) 구호제창(깃발 흔들며)

2) 철의 노동자(힘차게)

3) 사행나 풍자시 낭독

4)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큰소리로 1분간)

5) 노동가 짓기(아무곡이나 맞추어서)

출발보고 : ○팀 ○명은 제3점으로 출발할 것을 보고합니다.

(제3지점)

도착보고 : ○팀 ○명은 제3지점에 무사히 도착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지시사항 : 1) 구호제창(깃발 흔들며)

2) 금속노련가 제창(힘차게 3절)

3) 노동가 합창(지어온 노래)

4) 성차별 철폐에 관한 결의문 작성

출발보고 : ○팀 ○명은 도착지점으로 출발할 것을 보고합니다.

(도착지점)

도착보고 : ○팀 ○명은 도착지점에 무사히 도착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지시사항 : 1) 구호제창(깃발 흔들며)

2) 성차별 철폐에 관한 결의문 제출

3) 믿음 쌓기

4)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15.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 —노총주관—

1) 일 시 : 1991. 11. 4 14 : 00~18 : 00

2)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3) 참석인원 : 30명

4) 주제발표 : "남녀평등 노동조건 확보를 위한 전략"

—노동조합운동 역할과 과제—

우재현(대구대 교수, 경제학 박사)

◎사 회 : 김령자(한국노총 여성국장)

◎토론자 : 박숙자(이대강사, 사회학 박사)

김영배(한국경총, 경제학 박사)

김장선(전국금속노련 부위원장)

어수봉(한국노동연구원, 경제학박사)

유근일(조선일보 논설위원)

16. 제18회 여성간부 교육

1) 일 시 : 1991. 11. 27~11. 29

2) 장 소 : 한국노총중앙 교육원

3) 참석인원 : 63명

시 간 표

〈1일〉 11월 27일

시 간	배정	내 용	강 사
10 : 00~10 : 30	30	개 강 식	
10 : 30~12 : 00	90	금속노련운동방침 및 노동운동의 현황과제	김장선연맹 부위원장
12 : 00~13 : 00	60	중 식	
13 : 00~14 : 20	80	참가자 소개	
14 : 20~14 : 40	20	휴 식	
14 : 40~16 : 00	80	노동가 및 율동	문광주연맹 여성부장
16 : 20~18 : 00	100	사례발표	김은임화학연맹 여성부장
18 : 00~19 : 00	60	석 식	
19 : 00~21 : 00	120	슬라이드 상영	

〈2일〉 11월 28일

시 간	배정	내 용	강 사
7 : 30~ 8 : 00	30	아 침 운 동	
8 : 00~ 9 : 00	60	조 식	
9 : 00~11 : 00	120	남녀고용 평등법	윤자야 노무사
11 : 00~11 : 20	30	휴 식	
11 : 20~12 : 00	60	분 임 토 의	
12 : 00~13 : 00	60	중 식	
13 : 00~14 : 30	90	경제활동과 노동조합 참여	김재원 교수
14 : 30~14 : 50	20	휴 식	
14 : 50~16 : 40	110	분 임 토 의	
16 : 40~17 : 00	20	휴 식	
17 : 00~18 : 00	60	분임토의 발표	
18 : 00~19 : 00	60	석 식	
19 : 00~21 : 00	120	단결의 시간	문광주연맹 여성부장

〈3일〉 11월 29일

시 간	배정	내 용	강 사
7 : 30~ 8 : 00	30	아 침 운 동	
8 : 20~ 9 : 00	60	조 식	
9 : 00~10 : 30	90	여성노동자와 노동운동	정영숙연맹 여성국장
10 : 30~10 : 50	20	휴 식	
10 : 50~12 : 20	90	한국 노동운동사	김성문연맹 부위원장
12 : 20~12 : 50	30	종합평가서 작성 및 수료식	
12 : 50~		중 식	

17. 금속연맹 여성대표자 회의

여성대표자 사업장 상호간의 연대활동 및 조직강화와 본노련 여성국 사업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18. 전국 여성대표자 사업장 현황

여성대표자 사업장 상호간의 연대. 여성문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금속노련 여성국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파악한 전국의 여성대표자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금속노련 여성대표자 현황

노동조합명	대표자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남성	이영숙	02-869-4435	152-020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45-30
남성전기	전경임	02-857-7516	152-020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45-30
도신정밀	김행자	02-852-0210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5번지
로옴코리아	박순자	02-854-0639	152-020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71-11
로옴구로지부	문선자	02-864-0554	152-050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22
모토로라코리아	김민배	02-457-0051	133-210	서울 성동구 광장동 445번지
세진전자	문광주	02-854-8302	152-020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60-19
아남산업	박희란	02-463-2266	133-130	서울 성동구 화양동 151-22
태림전자	김희숙	02-867-2000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97-24
한국시그네틱스	서민애	02-651-6619	157-040	서울 강서구 염창동 272번지
한국음향	변희내	02-853-2701	152-020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71-41
금석전파	구본민	0339- 52-0175	445-960	경기 화성군 정남면 신3리 66-1
에이브코리아	유연숙	032-693-5381	421-900	경기 시흥시 신천동 70번지
정심전자	장우영	043- 56-4255	437-010	경기 의왕시 고천동 405번지
한국오오모리	서분정	0348-942-6500	413-830	경기 파주군 교화면 동패리 산202-1
고니정밀	이유정	032- 93-0001	403-040	인천시 북구 효성동 604번지
한독(반월)	문미옥	02-491-0253	425-100	경기 안산시 목내동 475-1
맥슨전자	서혜숙	0431- 63-0111	360-480	충북 청주시 향정동 125번지
A.M.K	이용복	0431- 66-2245	360-290	충북 청주시 송정동 66-26
A.M.K 서울	김형숙	02-855-3341	152-020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569-6
A.M.K 춘천	최은주	0361-241-0970	200-160	강원 춘천시 후평동 198-14
한음파	황미경	0431- 62-8650	360-290	충북 청주시 송정동 70-8
한주전자	김명화	0431- 4-2707	360-290	충북 청주시 송정동 277-1
동광전자	김점순	0553- 2-1812	645-290	경남 진해시 이동 499-1
한국산본	손미자	0551- 96-6042	630-500	경남 마산시 봉암동 654-3
한국중천	최해경	0551- 94-9303	630-490	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974-17
한국아이지모타	박미숙	0546-463-5971	730-030	경북 구미시 공단동 142번지
금평전자	이점례	0651- 22-2601	525-810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1134번지

19. 금속노련 통신제작

○ 91-12호~91-46호 제작 발송

○ 92- 1호~92-13호 제작 발송

(통산59호 제작 발송)

문 화 활 동

문 화 부

1.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2. 근로청소년 산업시찰(1차)
3. KBS 청년지도자 초청간담회
4. 일선장병 위문
5. 근로청소년 산업시찰(2차)

1. 노동문화 지도자 양성교육

1) 일　　시 : 1991. 10. 23~10. 25(2박3일)

2) 장　　소 : 경하장(대전)

3) 참석인원 : 69명

4) 교육내용 :

○제1일

시　　간	배정	내　　용	강　사
10 : 00~10 : 30	30	개 강 식	
10 : 30~12 : 00	90	금속노련운동방침 및 노동운동 현황 과제	김장선 수석부위원장
12 : 00~13 : 00	60	중　　식	
13 : 00~14 : 30	90	참가자 소개 및 노동가 배우기	집 행 부
14 : 30~14 : 50	20	휴　　식	
14 : 50~18 : 00	190	가창 지도법 및 율동	이 기 봉
18 : 00~19 : 00	60	석　　식	
19 : 00~22 : 00	180	공동체놀이 및 자신감 훈련	권 재 형

○제2일

시　　간	배정	내　　용	강　사
7 : 00~ 8 : 00	60	기상, 아침운동	
8 : 00~ 9 : 00	60	조　　식	
9 : 00~10 : 30	90	품 성 놀 이	권 재 형
10 : 30~10 : 50	20	휴　　식	
10 : 50~12 : 30	100	손풍물 및 사회놀이	권 재 형
12 : 30~13 : 30	60	식　　사	
13 : 30~15 : 10	90	간부의 자세와 지도력	정영숙 여성국장
15 : 10~15 : 30	30	휴　　식	
15 : 30~18 : 00	150	팀 웍 훈 련	최웅길 사무처장
18 : 00~19 : 00	60	석　　식	
19 : 00~22 : 00	180	민속무용 및 촛불의식	최웅길 사무처장

○제3일

시　　간	배정	내　　용	강　사
7 : 00~ 8 : 00	60	기상 및 아침운동	
8 : 00~ 9 : 00	60	조　　식	
9 : 00~12 : 10	190	실제훈련 및 종합토의	집 행 부
12 : 10~12 : 30	20	휴　　식	
12 : 30~13 : 00	30	종합평가서 작성 및 수료식	

2. 근로청소년 산업시찰(1차) －노총주관－

1) 일　　시 : 1991. 10. 28～10. 31(3박4일)

2) 참석인원 : 13명

3) 행사내용 : 부여권, 경주지역, 동해안순회 및 산업시찰

3. KBS 청년지도자 초청 간담회

1) 일　　시 : 1991. 12. 3 10 : 00

2) 장　　소 : KBS 방송국

3) 참석인원 : 10명

4. 일선장병 위문

노총과 각 회원조합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제21사단을 위문하였음

1) 일　　시 : 1991. 12. 18

2) 위 문 처 : 강원도 양구 제21사단

3) 위 문 단 : 노총 및 각 회원조합 위원장 및 여성간부

4) 위 문 금 : 금속노련 250,000원

5. 근로청소년 산업시찰(2차) －노총주관－

1) 일　　시 : 1991. 3. 11～3. 14(3박4일)

2) 참석인원 : 15명

3) 행사내용 : 백제문화권 및 경주일원 순회 및 산업시찰

복 지 활 동

복 지 부

1. 노동은행 설립에 관한 노동자의식조사 대상 노동조합 선정
2. 복지활동 세미나
3. 산하 노동조합의 보유자금 현황조사

1. 노동은행 설립에 관한 노동자의식조사 대상 노동조합 선정

로옴코리아 20명, 대우통신 10명, 고려제강 10명, 삼영전자 10명, 동양강철 10명, 삼화전기 10명 한국마그넷 10명, 성림기업 10명, 총8개노조 90명

2. 복지활동 활성화 세미나 －노총주관－

1) 일 시 : 1991. 9. 26~9. 28(2박3일)

2) 장 소 : YMCA 다락원

3) 참석인원 : 9명

3. 산하노동조합의 보유자금 현황조사

노총의 숙원사업인 노동은행설립을 위한 출자 및 예금규모 추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단위노동조합 보유자금 현황을 조사하였다.

총 무 활 동

총 무 부

Ⅰ. 회의활동

1. 1991년도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
2. 중앙위원회 개최
3.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4. 기타 회의

Ⅱ. 기타활동

1. 노총장학금 배정지급
2. 회계처리 실무교육 실시

I. 회 의 활 동

1. 1991년도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

가. 일시 : 1991. 5.15 10시

나. 장소 :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대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다. 참석자 : 재적 566명 재적 445명

라. 결의사항

의 안	결 의 사 항
1. 90년도 사업보고	원 안 통 과
2. 90년도 결산보고	원 안 통 과
3. 임원선출	위원장 박인상 후보 당선 투표자 445표 찬 성 366표 반 대 53표 무 효 8표 기 권 18표
4.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중앙위원 노총파견대의원 선출	부위원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중앙위원 90명 노총파견대의원 64명 선출 투표자 445표 찬 성 300표 반 대 62표 무 효 4표 기 권 79표 상임수석부위원장 김장선(대우전자) 상임부위원장 김성문(대한전선), 정창영(금성전선) 비상근부위원장 박기식(연합철강), 유재섭(금성사) 박병윤(대우통신), 정기춘(화천), 차경준(한국중공업), 정학균(대동조선), 제선수(삼미종합특수강), 박영호(영창악기), 피희중(영남주물), 염성태(대우중공업), 허관무(기아자동차), 양재석(동부제강), 이준섭(금성통신), 강규석(기아특수강), 박영구(럭키금속), 전덕진(현대전자)

의 안	결 의 사 항
	사무처장-최웅길(동양강철) 회계감사-오병호(오리온전기), 허영도(효성중공업), 김홍수(금성계전), 김동교(인천제철), 박순오(한국시그네틱스) 중앙위원(90명) 김수진, 김학성, 정용승, 김종천, 허복일, 가재두, 이정현, 김익년, 신 철, 김윤태, 김광신, 진용기, 여상찬, 엄종국, 신성현, 차재인, 김권태, 정기철, 안희철, 이용세, 김수룡, 민경갑, 신의수, 허옥자, 김용훈, 이형일, 권성하, 김진호, 이문희, 이승필, 장 초, 이경수, 김형도, 권영민, 서석교, 신덕우, 채승구, 진삼문, 전병만, 김종태, 박경철, 김대현, 이해석, 백종부, 김임술, 이장법, 서원식, 정태영, 장지태, 서학열, 서정식, 변상쾌, 신엄현, 구성완, 오봉출, 지광혁, 이재화, 서윤호, 이인철, 연제생, 김창호, 이형영, 박승리, 이근덕, 박청준, 조갑룡, 신성균, 정용호, 김성희, 최영수, 정 철, 배상문, 신성건, 박용환, 방인술, 김성렬, 김성남, 김원태, 서상연, 김경복, 박기린, 이중교, 윤유원, 김동영, 한상완, 김만영, 정병석, 윤영걸, 최광현, 장석웅 노총 파견대의원 선출(164명) 1. 박인상 2. 민경식 3. 김장선 4. 강영섭 5. 박영식 6. 정기춘 7. 박병윤 8. 차경준 9. 하영일 10. 정학균 11. 박영호 12. 피희중 13. 제선수 14. 이연구 15. 김두형 16. 염득종 17. 김영길 18. 김성문 19. 한창석 20. 최웅길 21. 송기선 22. 정창영 23. 정영숙 24. 유재섭 25. 정찬백 26. 염성태 27. 허관무 28. 양재석 29. 나찬경 30. 오병호 31. 강익화 32. 이재술 33. 전덕진 34. 김대현 35. 김명화 36. 김수진 37. 김종식 38. 이해석 39. 정태영 40. 김진호 41. 강규석 42. 박순오 43. 유근식 44. 이준섭 45. 정용승 46. 조상철 47. 장진수 48. 김길동 49. 김윤주 50. 권석정 51. 박경석 52. 허영도 53. 장경식 54. 김두성 55. 현영복 56. 김동교 57. 김덕수 58. 박승리 59. 김홍수 60. 구성완 61. 김홍균 62. 서석교 63. 박강석 64. 서윤호

의 안	결 의 사 항
	65. 김성열 66. 박영구 67. 김순호 68. 김규호 69. 신성현 70. 김학성 71. 이은희 72. 김경조 73. 이문희 74. 차재인 75. 박광백 76. 박기린 77. 신덕우 78. 김성남 79. 장화현 80. 김종천 81. 이인철 82. 이진희 83. 김성도 84. 김종돌 85. 장지태 86. 이준만 87. 이중교 88. 이승필 89. 김해주 90. 문광주 91. 김무호 92. 백종부 93. 채승구 94. 서학열 95. 김임술 96. 박순자 97. 박용한 98. 장석웅 99. 황경발 100. 김만영 101. 이종진 102. 신성균 103. 김용겸 104. 김남수 105. 김원태 106. 하영주 107. 박정화 108. 박만용 109. 신송근 110. 이병욱 111. 이철규 112. 윤유원 113. 서상연 114. 김동영 115. 정병석 116. 서정식 117. 최한승 118. 장 초 119. 박각규 120. 오봉출 121. 신의수 122. 유임종 123. 심인섭 124. 이경수 125. 최쇠묵 126. 지광혁 127. 손봉현 128. 현제생 129. 민경갑 130. 김용훈 131. 방인술 132. 전병만 133. 이성구 134. 가재두 135. 권성하 136. 이형일 137. 최진하 138. 임태진 139. 이근덕 140. 김광신 141. 허복일 142. 오경세 143. 김수룡 144. 한상완 145. 전규선 146. 정용호 147. 이병헌 148. 박광원 149. 전해성 150. 최광현 151. 김형도 152. 조인근 153. 권영민 154. 허옥자 155. 서혜숙 156. 김균태 157. 여상찬 158. 서원식 159. 김종태 160. 김성준 161. 강영일 162. 박시열 163. 최병욱 164. 김준효
5. 91년도 사업계획 수립	원 안 통 과
6. 91년도 예산수립	원 안 통 과
7. 기타토의	불법쟁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인한 노동탄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투쟁하기로 결의하다.
8. 결의문 채택	현시국과 관련한 특별결의문을 원안채택 결의하다.

대 회 선 언 문

오늘 우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대의원들은 인류 최고의 이상인 자유와 행복이 우리노동자의 손으로부터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암울한 현실을 전국의 모든 금속노동자와 함께 기필코 타파해나간다는 의지를 갖고 오늘 금속노련의 91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우리 금속노련의 대의원들은 전국각지의 금속산업현장 노동자들의 대표자들로서 국가존립의 기반인 산업현장, 기간산업부문의 생산주체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우리노동자들의 대사회인식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가다듬어야 할 시기임을 인식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노동자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산업현장에서 그동안 쌓일대로 쌓인 우리사회의 불건전하고 왜곡된 구조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학수고대하는 민주적인 질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우리들의 희생적 노력은 가진자들의 온갖 방해와 질시속에 가두어지고 오히려 과거 우리들의 삶을 황폐화시켰던 통제와 탄압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반역사적이고 시대역행적인 상황이 도래했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주택사정의 악화속에서도 정부와 자본측은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는 현실, 무노동무임금에서 시작하여 인사경영권을 거쳐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인 쟁의권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 현실, 하루에 평균 한명이상의 노동자가 공권력에 의해 잡혀가고 있는 현실, 이러한 비참하고 통탄할 만한 현실의 또다른 한편에서는 판검사가 조직폭력배와 연계되어 폭력을 비호하고 있는 현실, 국회의원이 기업주의 뇌물로 외국여행이나 나다니는 현실, 정부여당 야당할 것 없이 주택사업에 탈법적인 특혜를 베풀고 정치자금이나 챙기는 현실, 재벌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들인 땅을 못팔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현실, 국민들이 마실 수돗물에 독극물을 흘려버리는 현실, 사람이 수십명씩 죽어나가고 불구가 되어도 무재해모범사업장이라고 정부에서 표창을 주는 현실, 집회시위현장에서 공권력이 사람을 때려죽이는 기가막힌 현실이 민주복지사회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경악과 분노를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음을 이자리에서 선언한다.

이제 우리금속노동자들은 자금과 같은 부정부패, 사회적 혼란, 비민주의 심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공안통치로 억누르기만 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함을 선언하며 공안통치가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기본권의 부활을 위한 투쟁과 함께 우리사회의 주요구성원으로서의 사회, 정치, 경제민주화를 위한 통일적 투쟁에도 과감히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리하여 우리금속노동자들은 항상 역사의 진보편에 서온 노동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사회 모든 부문의 민주적 발전에 위대한 공헌의 족적을 남기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며 특히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데 어떠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선진적 금속노동자로서의 위명을 남김없이 발휘할 것이다.

노동자가 이 사회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또한 그 주인된 힘은 오로지 굳센 단결에서만 나온다는 진리를 모든 노동자들과 나누면서 오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대의원들은 정기대의원대회를 기하여 자주 민주 노동조합운동에 매진 또 매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991년 5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1년전국정기대의원회

대 회 사

존경하는 전국의 대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노동운동의 발전을 격려,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선배동지 및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노동자의 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임금인상활동이 전국각지 현장에서 한창 진행중인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금속노련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 대회에 참석하신 대의원동지 여러분과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대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속노동자들의 조직적 결집체인 우리금속노련의 발전을 설계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노동자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즐겁고 희망에 찬 부푼 마음을 갖고 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올해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조롭고 단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에는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처해있는 노동현장, 노동조합운동의 여건이 너무나도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구조적 부패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채 오히려 확대,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연발생적이고 필연적인 국민적 저항과 개혁요구는 힘으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가진자들의 탐욕과 반사회적 이기주의는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으며 없는자들에 대한 분배와 정책적 배려는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외형적 성장에 몰두하고 기업주들에 대한 특혜지원으로 치달은 결과 물가는 4월말 현재 벌써 5.6%나 올랐고 가진자들 위주의 주택정책은 노동자등 서민들의 주거현실을 훨씬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이윤은 보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물가상승의 범인으로 만들어 임금억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업주위주의 정책은 급기야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을 말살하는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극도로 제한시키고 웬만한 단체행동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무차별 투입되고 있으며 노조지도자들은 감옥으로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 자본의 노동탄압에 기초한 기득권유지욕심은 식수원에 독극물을 방류하고 노동자를

독가스가 피어오르는 작업장에 내모는 일과 같은 뿌리를 갖고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대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사회는 정의가 매도되고 불의가 당연시되는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한 저항이 공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생존과 자유에 대한 정당한 요구가 온갖 통치수단의 폭력적 행사로 유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노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집단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활동하는 노동현장에서 실천적 힘을 기르고 그 힘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 우리금속노련의 사업계획에서 우리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 노동자의 주도적 역할을 대비한 조직역량의 축적, 조합원의식의 심화 및 사회구조에 대한 통찰력배양, 그리고 우리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의 확립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노동조합운동이 개별기업단위의 노동조건개선도 우리사회 전체의 구조적 성격상 거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수립했던 것입니다. 이제 1년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작년에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올해 우리 금속노련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을 간단하게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는 역시 노조운동의 생명인 단결, 조직역량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신규조직결성을 축으로 조직의 확대가 중요한 조직사업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조직들을 한데로 묶는 것이 조직역량강화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단위조직들의 연맹참여가 저조하고 조직간 분열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직접 기초하고 이를 충실히 대변하는 운동은 반드시 노동자의 정서를 한데 묶고 조직을 통일시킬 것이라는 진리에 따라 조합원에 입각한 사업을 통한 조직의 통일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둘째 작년 우리금속노련의 교육사업은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작년부터 선진노동운동국가와의 교류와 협력하에 진행된 기획사업들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이미 훌륭한 노조교본을 발행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지체내 노동교육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교육내용의 질적심화, 양적확대와 함께 교육체계의 확립, 단계별 교육과정의 수립을 통해 조합원의 이념무장을 넘어 실무와 적절히 결합되도록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세째는 산업사회의 진전에서 파생하는 부작용 및 폐해를 노동조합에서 주도적으로 방지, 해결하는 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임무로 부과되어 왔던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인간의 생존터전인 자연에 대한 파괴,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단체협약에 공해방지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와 감시활동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노조의 진보적 기능을 살리는 활동에 착수할 시기입니다. 이 부문은 선진노조운동국가의 경험과 사례를 연구하고 필요하다면 협력과 지원을 받을 계획이며 이미 일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째 조사연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제 노동조합들의 역량이 발전한 결과

노조의 산업별 결집체인 전국단위조직의 단위현장에서 구체적인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노조의 과제를 제시하는 일이 중요한 임무가 되고 있으며 가맹노조들로부터도 이러한 요구를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노조운동의 당면과제와 장기목표를 제시할 수 있기 위한 조사, 통계, 연구, 기획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섯째, 정부 및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금속노동자 전국조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노동자의 요구를 정책에 강제하는 대정부활동과 산업단위의 노사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행사하는 대사용자활동을 우리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타부문활동의 추이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식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있도록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여섯째, 불안한 주택사정, 소비자물가, 조합원의 가계를 고려하여 조합원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시할 생각입니다. 현재 단위노조별로 주택조합, 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조직은 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우리노조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정등을 고려하여 연맹차원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종합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 직접 혹은 지역본부를 통해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대의원동지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엄중한 노동탄압정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탄압을 돌파하기 위한 활동에 모든 노동자의 의지가 결집되는 것이 상당기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노조, 모든 조합원, 모든 노동자가 우리 노동자편과 우리를 탄압하는 상대편을 명확히 가려내고 이에 근거하여 대동단결, 연대의 틀을 갖추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을 기울일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대회가 우리 금속노련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탄압의 망령부터 걷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선진적인 우리 금속노동자들이 앞서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모두가 꿈꾸는 자유와 복지, 평등의 세상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여러분!

동지여러분의 오늘 수립하는 금속노련의 정책과 사업은 노조운동의 앞날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동지들이 다지는 노동탄압 분쇄의 결의는 40만조합원들을 민주와 행복의 광장으로 이끄는 전진의 나팔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대회가 진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동지들과 조합원 그리고 우리노동가족의 건강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5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1년전국정기대의원회

현시국과 관련한 특별결의문

전국금속노련 대의원 일동은 한 대학생의 시위중 공권력에 의한 폭행 사망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벌써 6명에 이르는 청년학생, 노동자의 분신 및 의문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시국에 대하여 민주화를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 있는 노조운동의 주도세력으로서 각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87년 국민들의 성난 파도와 같은 반독재항쟁과 민생요구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민주화를 공약함으로써 권력을 위임받은 현정권이 당초의 약속을 배반하고 다시 강압과 착취의 옛날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수많은 우려와 경고를 표명해 왔다. 우리 노동자들은 오로지 가진자들만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과 정권유지를 위한 부정, 비리 그리고 이들 기득권을 옹호하는데 동원된 공권력에 의해 날로 생활이 피폐해지고 자유와 권리가 유린되는 기가 막힌 현실에 이제 완전 87년 이전의 분노의 시절로 되돌아 갔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노동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당한 노동탄압의 무자비함 앞에서 소위 공안통치라는 세간의 표현은 현시국의 혹독함과 암울함을 나타내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사치스러운 용어라고 단정한다. 환경파괴, 살인적 물가상승과 부동산투기등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민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회악은 방치한 채 무노동무임금으로 파업을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모든 쟁의는 불법쟁의로 몰아부쳐 공권력의 사냥감으로 만들고 이른바 인사경영권으로 자본가의 탐욕과 전횡에 쇠울타리를 쳐놓더니 급기야 사소한 노사간 마찰에도 업무방해, 폭력등 혐의를 뒤집어씌워 쇠고랑을 채우고 손해배상청구를 자행하는 등 노동현장은 소위 공안통치의 경연장이 되어 버렸다.

이번 강경대씨의 폭행살인도 결국은 공안통치의 직접적 산물이었으며 그후 잇따른 분신사태와 한진중공업 박창수위원장의 의문의 죽음도 부도덕한 정권에 의한 죽임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이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노동자, 학생의 항의분신을 배후의혹 운운하며 호도하고 박창수위원장의 죽음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회의한 자살 운운하며 모독하는 것을 보고 우리 노동자들은 저들의 야만에 가까운 비도덕성과 비인간성에 대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들은 수많은 인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노동악법 등 반민주악법에 대한 개폐대신 국회에서의 날치기처리로 답하는 저들의 행태와 만행을 보고 더이상의 인내는 굴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비장한 심정으로 확인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련은 민주화의 대도를 힘껏 열어젖히기 우해 우리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결연한 의지로 수행할 것이며 여기에는 노동현장에서의 총파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에앞서 다음의 우리의 제한적 주장을 엄중한 자세로 먼저 제기해 두고자 한다.

1. 정부는 최근 잇딴 죽음을 비열하게 호도하는 인명모독으로 여지없이 재확인된 혐오스러운

공안통치를 더이상의 말장난 대신 당장 종식시키고 노재봉내각을 총사퇴시켜라!

2. 정부와 국회는 박창수위원장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노동악법을 포함한 반민주악법의 근본적 개폐문제가 현시국을 둘러싼 본질적 내용임을 인식하고 악법개폐에 다시 착수하라!
3. 정부는 현시국을 낳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제시됐던 당초의 약속,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등 경제민주화조치를 무조건 실시하라!
4. 정부는 정치, 사회, 경제민주화실현에 기초하여 구속노동자를 전면 석방하고 부당해고, 손해배상청구등 기업주들의 탐욕과 횡포를 철저히 근절하라!
5. 정부는 이미 허구성이 드러난 임금억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물가폭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라!
6. 우리 금속노동자들은 판검사들의 조직폭력배연계사건, 국회의원뇌물외유사건, 청와대에서 보수언론에 이르는 수서특혜비리사건, 독점자본의 폐놀방류사건, 세무공무원의 비리사건, 원진레이온의 독가스 작업장 사건등을 고스란히 기억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위의 우리주장이 최소한의 조건을 이루고 있는 민주화약속의 이행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비장한 결단을 가슴에 품고 예의 주시할 것이다.

1991년 5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91년전국정기대의원회

1991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명단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1	금 성 사	지도위원	민정식	21	금 성 사	운영위원	서동일
2	〃	〃	강영섭	22	〃	〃	윤광석
3	〃	위원장	유재섭	23	〃	〃	동후랑
4	〃	부위원장	성무용	24	〃	〃	정용군
5	〃	〃	박승리	25	〃	〃	이승홍
6	〃	〃	나찬경	26	〃	〃	신동원
7	〃	〃	전웅빈	27	〃	〃	윤장현
8	〃	〃	천광희	28	〃	〃	이종철
9	〃	〃	백도시	29	〃	〃	정부식
10	〃	〃	이문희	30	〃	〃	김상진
11	〃	〃	김이식	31	〃	〃	이치정
12	〃	〃	이세원	32	〃	〃	김연명
13	〃	〃	예종규	33	〃	〃	이기동
14	〃	운영위원	정미아	34	〃	〃	김동수
15	〃	〃	임종명	35	〃	〃	김영덕
16	〃	〃	한통수	36	〃	〃	강순익
17	〃	〃	김성태	37	〃	〃	임재섭
18	〃	〃	조병환	38	〃	〃	이선우
19	〃	〃	최희백	39	동부제강	위원장	양재석
20	〃	〃	이은숙	40	〃	부위원장	최재영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41	동부제강	부위원장	김득수	62	대우전자	부지부장	김정집
42	기아특수강	위원장	강규석	63	〃	지부장	이해석
43	〃	사무국장	임영재	64	〃	〃	김종천
44	시그네틱스			65	〃	부지부장	최길복
45	〃			66	〃	회계감사	강해용
46	풍성전기	위원장	송병조	67	〃	부지부장	선활수
47	한국마벨	위원장	윤두혁	68	〃	기획실장	황철연
48	대한전선	위원장	강익화	69	〃	대의원	김종명
49	〃	고문	김성문	70	〃	〃	박영채
50	〃	부위원장	최쇠묵	71	〃	지부장	남인숙
51	〃	〃	유양근	72	동일제강	위원장	김해주
52	세진전자	위원장	문광주	73	롯데전자	위원장	정용호
53	남성전기	위원장	김경옥	74	삼선공업	위원장	강성운
54	로옴코리아	위원장	박순자	75	오트론	위원장	신성균
55	롯데알미늄	위원장	이근덕	76	동아건설	위원장	류근식
56	대우전자	위원장	정찬백	77	〃	부위원장	민병용
57	〃	부위원장	이용호	78	〃	사무국장	양희성
58	〃	사무국장	이준영	79	동해	위원장	김성준
59	〃	부지부장	이병균	80	한국전자부품	위원장	이병원
60	〃	〃	심문학	81	삼천리기계	위원장	신경선
61	〃	〃	이동식	82	청우공업	위원장	김영길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83	삼성화스나	위원장	조갑룡	104	기아자동차	대의원	윤해두
84	풍우실업	〃	김광헌	105	〃	〃	안병문
85	한국콘베어	〃	권용식	106	〃	〃	김성태
86	한국음향	〃	박청준	107	〃	〃	김태문
87	큐닉스	〃	최영수	108	〃	〃	김명기
88	범한정기	〃	이기학	109	〃	〃	가태희
89	신진밸브	〃	김복만	110	〃	〃	조성수
90	태림전자	〃	김회숙	111	〃	〃	김영기
91	경방기계	〃	박상범	112	〃	〃	현병우
92	현대기계	〃	이윤석	113	〃	〃	김영일
93	기아자동차	부위원장	권오달	114	금성전선	조합원	하영일
94	〃	사무국장	양재웅	115	〃	〃	정창영
95	〃	부지부장	강해석	116	〃	위원장	정용승
96	〃	교육부장	하재복	117	〃	부위원장	유의석
97	〃	체육부장	손종탁	118	〃	〃	강진원
98	〃	대의원	김광수	119	〃	〃	유판식
99	〃	〃	김해덕	120	금성통신	위원장	이준섭
100	〃	〃	임완기	121	〃	지도위원	김길동
101	〃	〃	구병희	122	〃	사무국장	박찬익
102	〃	〃	오기동	123	대우전자부품		
103	〃	〃	전병호	124	서진산업	위원장	최한승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125	범양냉방	위원장	김윤주	146	현대전자	대의원	이병옥
126	국제전선	〃	장명재	147	〃	〃	박경숙
127	한샘	〃	권석정	148	〃	〃	차중설
128	필립스	〃	이정현	149	〃	〃	안승숙
129	만도기계			150	〃	〃	이용주
130	〃			151	〃	〃	권순분
131	〃			152	삼화콘덴서	위원장	김익년
132	삼아알미늄	위원장	이우희	153	현대에레베이터		
133	삼영전자	〃	조상철	154	대광다이케스트	위원장	김수룡
134	〃	부위원장	이산복	155	쌍용자동차	〃	김명화
135	〃	〃	박현종	156	〃	부위원장	박태석
136	금성전기	위원장	이은희	157	〃	지부장	최천희
137	〃	부위원장	황선한	158	〃	〃	민영철
138	신일산업	위원장	신 철	159	〃	〃	배범식
139	기아써비스	〃	김종천	160	〃	대의원	윤재식
140	〃	부위원장	임병산	161	한국브레이크	위원장	이필송
141	두산기계	위원장	허복일	162	에어브코리아	〃	박경숙
142	일진전기	〃	가재두	163	삼화제관	〃	봉인균
143	경원산업	〃	장규오	164	서울차체	〃	최성진
144	현대전자	〃	전덕진	165	서해공업	〃	김광신
145	〃	사무국장	김만재	166	태양금속	〃	이병욱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167	신 창 전 기	위 원 장	여 상 찬	188	경 용 기 계	위 원 장	최 남 환
168	일 진	〃	최 진 하	189	성 진 산 업	〃	임 병 우
169	동 양 기 공	〃	주 영 준	190	대 륙 전 선	〃	김 영 규
170	태 일 정 밀	부위원장	송 기 선	191	삼 목 강 업	〃	양 기 선
171	대 덕 전 자	위 원 장	최 종 호	192	세 우 실 업	〃	박 영 구
172	동 아 정 공			193	대 경 화 성	〃	박 순 영
173	유 성 기 업	위 원 장	최 종 화	194	대 기 산 업	〃	심 종 석
174	신 한 일	〃	차 재 인	195	성 안 기 계	〃	조 용 남
175	신 한 주 철	〃	신 성 현	196	배 명 금 속	〃	김 태 열
176	반 도 스 포 츠	〃	조 인 근	197	기 린 산 업	〃	노 원 숙
177	경원기계세기	〃	장 진 수	198	강 진 공 업	〃	이 명 주
178	〃	부위원장	임 종 상	199	기 경 실 업	〃	김 종 길
179	성 신	위 원 장	이 종 진	200	대 양 물 산	〃	신 동 호
180	반 도 기 계	〃	정 기 철	201	삼 양 중 기	〃	박 시 열
181	삼 협 전 자	〃	김 권 태	202	〃	조 합 원	김 순 호
182	삼 기 기 공	〃	장 인 권	203	동 화 기 업	위 원 장	유 승 규
183	신 아 전 기	〃	신 은 철	204	도 원 무 역	〃	이 봉 춘
184	세 광 알 미 늄	〃	엄 종 국	205	홍 진 기 연	〃	안 희 철
185	성 진 기 공	〃	조 은 형	206	동 양 전 관	〃	오 형 종
186	오 양 공 조 기	〃	조 재 천	207	장 안 공 업	〃	이 용 세
187	삼우특수금속	〃	이 종 출	208	고 신 열 관 리	〃	김 명 수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209	동양특수기공	위원장	김윤태	230	한국컨테이너	위원장	신현도
210	선일기계	〃	김원기	231	두산제관	〃	이재용
211	보원무역	〃	하병기	232	한국듸젤	〃	구자창
212	동양전자통신	〃	최경진	233	삼원기계	〃	백성운
213	상진	〃	한암이	234	삼화왕관	〃	채수명
214	동아정기	〃	박정화	235	국제전기	〃	김형수
215	한국열교환기	〃	정규안	236	이천전기	〃	김성남
216	대원전선	〃	장정환	237	대우중공업	〃	염성태
217	이화다이아몬드	〃	성세현	238	〃	부위원장	임순택
218	수산중공업	〃	김석곤	239	〃	〃	이대환
219	대신기계	〃	박호성	240	〃	〃	노성섭
220	한국가구	〃	임홍순	241	〃	사무국장	차영규
221	연안정밀	〃	조기환	242	〃	지부장	임동국
222	서울주철	〃	설진근	243	〃	〃	조호현
223	대성전선	〃	박광원	244	후지카대원전기	위원장	한광석
224	삼원산업	〃	민경준	245	한국종합기계	〃	김덕수
225	대일	〃	김현길	246	대한제당	〃	김원태
226	화천프레스	〃	김인혁	247	인천제철	〃	김동교
227	정우실업	〃	김영환	248	〃	부위원장	윤길준
228	신일정밀	〃	이상국	249	〃	사무국장	박인근
229	한국에르나	〃	박영기	250	영창악기	위원장	이재술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251	영창악기	부위원장	윤창기	272	금성기전	위원장	이중교
252	〃	〃	변창열	273	〃	지부장	최용호
253	〃	사무국장	김서중	274	서울제강	위원장	신화철
254	〃	대의원	목인석	275	한국샤프	〃	이은봉
255	〃	〃	신만구	276	제일엔지니어링	〃	이성남
256	〃	〃	박형철	277	대림통상	〃	김만영
257	〃	〃	이규승	278	〃	부위원장	류창남
258	한독	위원장	김동영	279	〃	지부장	김호인
259	〃	지부장	문미옥	280	봉신	위원장	최재호
260	〃	조합원	정영숙	281	린나이코리아	〃	김영복
261	코리아스파이서	위원장	박기린	282	한영알미늄	〃	한상환
262	한국강관	〃	서상연	283	한국훼라이트	〃	신용일
263	고니정밀	〃	김인옥	284	로얄동도	〃	오석희
264	대우통신	〃	박병윤	285	서흥	〃	이홍일
265	〃	지부장	김윤제	286	희성금속	〃	황경발
266	경동산업	위원장	김성열	287	동방제강	〃	장영일
267	〃	부위원장	정경환	288	대동케이블	〃	나풍덕
268	〃	지부장	정영욱	289	세일기계	〃	나용길
269	진도	위원장	윤유원	290	한국차량	〃	황종환
270	〃	부위원장	신현국	291	도림주철관	〃	강석호
271	쌍용정공	운영위원	김한국	292	삼송공업	〃	김복석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293	한신보일러	위원장	조병록	314	맥슨전자	대의원	이미숙
294	영풍기계	〃	이준선	315	오리표	위원장	권성하
295	동양철관	〃	정춘희	316	우진전기	〃	장화현
296	동양강철	〃	정병석	317	A·M·K	대의원	신향수
297	한국이연	〃	오경세	318	〃	〃	변미순
298	연합전선	부위원장	황인무	319	〃	〃	오형숙
299	한국특수주강	위원장	남상천	320	뉴맥스	위원장	이형일
300	동방의료양행	〃	김면회	321	〃	부위원장	이기성
301	국제특수금속	〃	이병헌	322	한주전자		
302	제일제침	〃	장원식	323	삼화전기	위원장	신의수
303	한국쌍신전기	〃	윤영걸	324	〃	부위원장	홍종돈
304	아나전자	〃	이철수	325	우진정밀	위원장	박각규
305	진합정공	〃	이남철	326	방원금속	〃	조태균
306	국제종합기계	〃	김용훈	327	한진중공업	직무대행	이정호
307	〃	부위원장	성낙혼	328	〃	대의원	이복연
308	금성계전	위원장	김홍수	329	대선조선	위원장	지광혁
309	〃	사무국장	김용해	330	조기	〃	강영일
310	영태전자	위원장	민경갑	331	대동조선	〃	박강석
311	맥슨전자	〃	서혜숙	332	대창단조	〃	송낙근
312	〃	회계감사	안상님	333	미진금속	〃	최호영
313	〃	후생부장	유제분	334	명성	〃	김병규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335	상 농 기 업	위 원 장	이 진 득	356	태 광 밴 드	위 원 장	김 상 복
336	연 합 철 강	〃	구 성 완	357	동 아 정 기	〃	박 금 영
337	〃	지도위원	박 기 식	358	서 일 PCM	〃	백 주 식
338	〃	부위원장	강 진 호	359	서 일	〃	허 중 구
339	한 국 주 철 관	위 원 장	박 광 백	360	부 국 금 속	〃	류 채 주
340	세 신 정 밀	〃	정 병 철	361	한 진 금 속	〃	강 양 수
341	고 려 제 강	〃	서 윤 호	362	동 영 공 업	〃	김 종 기
342	〃	사무국장	이 재 근	363	대 보 산 업	〃	주 이 철
343	한 보 철 강	위 원 장	연 제 생	364	성 광 밴 드	〃	조 용 석
344	대 일 공 업	〃	이 재 화	365	부 산 정 기	〃	김 규 호
345	동 국 제 강	〃	박 경 석	366	대 덕 금 속	〃	안 수 율
346	〃	지 부 장	배 상 철	367	영 진 금 속	〃	송 성 길
347	〃	〃	이 원 기	368	한 국 아 루 마	〃	김 진 생
348	태 양 사	위 원 장	이 형 연	369	오리엔탈정공	〃	권 동 재
349	조 선 선 재	〃	김 용 호	370	우 성 밴 드	〃	이 원 희
350	한국오르강침	〃	이 종 수	371	부산수리조선	〃	하 봉 남
351	제 일 유 기	〃	이 상 세	372	삼 창 기 계	〃	노 원 식
352	삼 공 사	〃	문 판 술	373	동 승 기 업	〃	배 공 희
353	국 제 밸 브	〃	이 인 철	374	제 일 기 계	〃	여 호 선
354	부 산 링 구	〃	김 병 옥	375	삼 원 포 장 기	〃	성 경 환
355	동 진 전 기	〃	정 남 진	376	범 한 금 속	〃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377	대림자동차			398	한국센트랄	위원장	김무수
378	〃			399	현대정공		
379	효성중공업	위원장	허영도	400	〃		
380	〃	부위원장	장석복	401	〃		
381	〃	〃	이 훈	402	〃		
382	〃	〃	김복상	403	한국중공업		
383	세방전지			404	〃		
384	〃			405	〃		
385	기아정기	위원장	최상우	406	〃		
386	기아기공			407	〃		
387	〃			408	〃		
388	동양물산			409	〃		
389	효성기계			410	〃		
390	풍성정밀			411	대원강업		
391	삼미종합특수강	위원장	김진호	412	〃		
392	〃	부위원장	한성철	413	〃		
393	〃	지부장	박만용	414	풍성전기창원	위원장	이봉언
394	〃	대의원	이기호	415	두원중공업	〃	김남수
395	〃	〃	박관탁	416	한국시티즌		
396	한국철강	부위원장	이국성	417	한국카시오	부위원장	이경희
397	금성산전			418	금성알프스	위원장	김홍균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419	금성알프스	부위원장	박종덕	440	경남금속	위원장	추영만
420	〃	대의원	진명순	441	대명공업	〃	신석기
421	〃	〃	황춘식	442	아주금속	〃	강기수
422	고려강선	위원장	박경철	443	삼송	〃	김호규
423	한일제관	〃	김종태	444	태양코팅	〃	이명국
424	동양기전	〃	장칠용	445	영진기계	〃	윤진혁
425	신동광학	〃	주영기	446	한국증권	〃	최해경
426	창원공업	〃	주일규	447	한국스타	〃	김용환
427	한국지엠비	〃	양유열	448	세일	〃	이제수
428	미원중기	〃	하태정	449	한국동양유전	〃	이문효
429	태광특수기계	〃	조춘실	450	대동기어	〃	김형도
430	한국스핀들	〃	김성천	451	〃	부위원장	안점생
431	삼원금속	〃	박덕춘	452	세일공업	위원장	정진규
432	대동정밀	〃	김형태	453	고려상사	〃	최병욱
433	한덕산업	〃	박해운	454	효성금속	〃	박용한
434	마산함안기계	〃	이정숙	455	〃	조합원	김진수
435	신아조선	〃	정판성	456	럭키금속	위원장	박영구
436	한국마그넷	〃	김장용	457	〃	지부장	김용겸
437	태일전자	〃	박재원	458	동희산업	위원장	배상문
438	대신공업	〃	윤영진	459	풍산금속		
439	태주실업	〃	김명헌	460	〃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461	한일이화	위원장	박상근	482	평화말레오	위원장	서원식
462	한국강관	〃	정 철	483	대동공업		
463	한국프렌지	〃	방인술	484	강원산업 샘표중공업	위원장	장경식
464	〃	대의원	김교학	485	〃	대의원	김영춘
465	현대중전기			486	평화산업	위원장	신동락
466	덕양산업	위원장	신성건	487	부산파이프		
467	현대정공			488	홍화공업	위원장	김준효
468	〃			489	성림기업	〃	강학중
469	정일공업	위원장	김복천	490	〃	사무국장	김태원
470	세운공업	〃	박용도	491	포항종합제철		
471	현대공업	〃	조영대	492	〃		
472	우영산업	〃	이수만	493	〃		
473	현대알루미늄	〃	이용우	494	〃		
474	한진중공업(울산)	〃	정정웅	495	〃		
475	현대철탑산업	〃	서인원	496	〃		
476	삼립산업	〃	이복교	497	〃		
477	승리기계	〃	이장범	498	〃		
478	영남주물			499	〃		
479	평화크랏치			500	〃		
480	경창산업	위원장	장지태	501	〃		
481	화신제작소			502	〃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503	포항종합제철			524	조 광 산 업	위 원 장	서 학 열
504	포 항 로 공 업			525	대 철 공 업	〃	류 호 식
505	〃			526	선 학 알 미 늄	〃	이 영 희
506	동 일 기 업	위 원 장	김 임 술	527	아 진 산 업	〃	김 인 성
507	삼 정 강 업	〃	신 엄 현	528	동 진 금 속	〃	김 춘 종
508	제 철 정 비	〃	정 태 영	529	아 세 아 산 업	〃	박 원 찬
509	〃	부위원장	손 용 익	530	동 양 주 물	〃	이 광 희
510	〃	사무국장	윤 형 목	531	화 신 금 형	〃	최 봉 록
511	금 성 부 품	위 원 장	서 정 석	532	일 지 산 업	〃	나 영 섭
512	오 리 온 전 기	〃	오 병 호	533	협 립 제 작 소	〃	신 기 봉
513	〃	대 의 원	김 웅 호	534	동 서 물 산	〃	이 길 호
514	〃	〃	장 정 식	535	동 남 주 물	〃	김 정 치
515	〃	〃	손 정 옥	536	경 창 참 피 온	〃	박 무 수
516	금성정보통신	위 원 장	박 명 환	537	세 원 산 업	〃	장 현 덕
517	동국종합전자	〃	신 송 근	538	동 협 제 작 소	〃	이 재 길
518	태 평 양 금 속	〃	김 길 득	539	평 화 정 공	〃	손 도 열
519	한 국 전 자	〃	현 영 복	540	신 아 금 속	〃	김 활
520	〃	부위원장	김 정 근	541	코 스 틸	〃	이 만 희
521	〃	〃	김 신 동	542	대 영 베 아 링	〃	진 영 환
522	승 리 전 자			543	대 동 인 터 맷	〃	강 동 근
523	두 고 전 자	〃	변 상 쾌	544	명 신 산 업	〃	김 유 진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일련번호	노동조합명	직 위	성 명
545	평화오일씰	위원장	정광진	556	아시아자동차	위원장	김종식
546	상신브레이크	〃	임순규	557	〃	대의원	송백용
547	남양금속	〃	김동덕	558	〃	〃	전희열
548	동국강재	〃	공석철	559	화천		
549	금성정밀	〃	박병도	560	하남전자	위원장	박기출
550	금성일렉트론	〃	이종균	561	태성기공	〃	박준근
551	금성마이크로닉스	〃	이천석	562	금성기계	〃	박정호
552	한국델코전지	〃	김경구	563	우민주철	사무국장	백병기
553	클레스트라하우저만	〃	한경석	564			
554	삼도기전	〃	정문호	565	한일전기	위원장	장석웅
555	세아특수강	〃	조용원	566	강원속초지역	〃	신종찬

표 창 자 명 단

조합명	직위	성명	비고
금성사	조사통계부장	이호성	
대우전자	주안지부장	남인숙	
기아자동차	조합원	장만용	
금성전선	기획실장	김현구	
현대전자	사무국장	김만재	
쌍용자동차	홍보부장	남종희	
대우중공업	조합원	임기철	
영창악기	〃	이상선	
맥슨전자	부위원장	이정화	
삼미종합특수강	조합원	제해철	
한국중공업	〃	김인택	
포항종합제철			
제철정비	사무국장	윤형목	
태림전자	위원장	김회숙	서울지역본부
기아특수강	부위원장	석광일	〃
성신	위원장	이종진	경기지역본부
혜성공업	〃	조준행	〃
인천제철	부위원장	윤길준	인천지역본부
한국종합기계	사무국장	박광실	〃
한국이연	위원장	오경세	충남지역본부

조합명	직위	성명	비고
오리표	위원장	권성하	충북지역본부
금성사	창원지부장	이문희	경남지역본부
삼천리자전거	위원장	문주빈	〃
평화크랏치	〃	김무호	경북지역본부
동서물산	〃	이길호	〃
국제밸브	〃	이인철	부산지역본부
상농기업	〃	이진득	〃
영풍산업	〃	박성식	울산지역본부
태성기공	〃	박준근	전남지역본부
두고전자	〃	변상쾌	구미지역본부
럭키금속	〃	박영구	
부산파이프	〃	백종부	

2. 중앙위원회

1) 제102차 중앙위원회 및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1. 5. 14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35명 참석

결의사항

① '91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의안은 원안대로 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② '91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참석대의원을 566명으로 확정하며 5월 15일 10시까지 교체할 수 있다.

③ 제규정 개정안 심의-처무규정 제23조 휴일에 노동절(5월1일)을 삽입하고 제51조(연차)를 전근무일수의 만근자는 10일 9할이상 출근자는 8일…로 개정하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피서거권 상실)에 노동조합법 제23조(2)의 1, 2, 3 해당되는 자의 제한을 삭제한다.

④ 일시차입금 29,000,000원에 대하여 추인하다.

⑤ 직무활동비를 예산보다 250,000원 초과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추인하다.

제규정 개정내용

규정별	조 항	현 행	개 정	개정이유
처무규정	제23조 (휴일)	노동절(3월 10일)	노동절(5월 1일)	노총의 노동절 변경에 따라
	제51조 (연차)	전 근무일수의 만근자는 8일, 9할 이상 출근자는 3일…	전 근무일수의 만근자는 10일, 9할이상 출근자는 8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선거관리 규 정	제5조 (피선거 권상실)	노동조합법 제23조 (2)의 1, 2, 3해당 되는 자	(삭 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2) 제103차 중앙위원회 및 제5차 중앙집행우원회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1. 11. 8 14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43명 참석

결의사항

노동부의 노동법개악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노총 박종근 위원장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노총위원장실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11월 16일 14시 장충단 공원에서 노동법 개악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을 확정하고 준비를 진행해 왔으나 노동부에서 91년도 정기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오게 됨에 따라 11월 8일 11시 개최된 노총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① 노동부의 회신내용을 일단 수용하며

② 금일 17시에 그간의 저지투쟁 활동에 대한 보고대회를 개최하며

③ 11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한 궐기대회를 취소하고

④ 보고대회 후 그간의 상황을 일단 종료하기로 결의된 내용을 위원장이 보고하다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해 실시하겠다는 총액임금제와 시간제 근로가 조합원의 임금억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회의 참석자 전원이 17시에 개최되는 보고대회에 참석하기로 결의하고 폐회하다

3) 제104차 중앙위원회 및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2. 1. 21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대강당

다. 참석자 : 재적 128명, 재석 65명

결의사항

① 경과보고-회의자료의 경과보고를 각 부서장이 보고하고 원안통과하다.

② 92년도 임투지침에 관한 사항-사무처에서 작성한 92년도 임투지침을 검토하고 단위조합에서 단체교섭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보완 배부하기로 하며 92년도 임투지침안을 원안 통과하다.

③ 지역본부 운영 규정 개정의 건은 동규정 4조 1항에 울산지역본부, 포항지역본부를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그외 개정사항은 추후 지역본부의장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후 차기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다.

④ 노동금융(주)출자에 대한 추인의건은 차후부터는 중요사안은 의장단과 협의후 집행해 주기바라며 출자금 30,000,000원에 대한 사전 집행의 추인을 결의하다.

⑤ 예산항목 전용의건은 예비비 예산중 3,000,000원을 국제비로 전용승인을 결의하다.

⑥ 91년도 노총대의원 대회에서 노총 중앙위원회 제도를 부활하자는 발의에 따라 대회후 구성된 노총 규약개정 심의 소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청취하고 진행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중앙위원회 결의로 노총중앙위원회 제도부활을 위한 규약개정을 요청하고 92년도 노총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되도록 강력히 노력하기로 결의하다.

⑦ 현재 노동절이 3.10일과 5.1일로 이원화되어 있는 모순에 대하여 5.1일 노동절이 관철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의하다.

3. 중앙집행위원회

1)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가. 일 시 : 1991. 4. 2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재적 43명 재석31명

결의사항

① '91년도 정기대의원 대회를 91.5.15(수) 10시에 한국노총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대의원 파견을 위한 맹비납부마감은 91. 4. 15 17시까지로 한다.

② 소위원회(규약 및 의안심의, 사업계획심의, 예산심의)는 중앙집행위원 전원으로 구성한 사무처의 안대로 확정 결의한다.

③ 표창자 배정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 91.3월말 기준 맹비납부조합원 2,000명 이상 노조에 1명
- ○ 시.도지역본부에 1명, 구미지역 1명
- ○ 2,000명 이상되는 노조 조합원수를 제외하고 10,000명 이상 지역본부에 추가 1명을 배정
- ○ 노련위원장에게 2명의 선정권한을 위임한다.
- ○ 수상자에게는 표창패와 금뺏지 ½ 돈을 시상한다.

④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김장선부위원장 위원-하영일, 박영호, 간사-최응길을 선정하다.

⑤ 출장여비지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결의한다.

원안 : 제9조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 1호에 의하여 교통비(항공비, 철도비, 선박비, 고속버스비, 차마비)실비와 일당,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한다.

〈별표 제1호〉

국 내 출 장 여 비

84. 4. 19 기준

여비 구분	교통비					숙박비	일 당	식 비
	항 공	철 도	선 박	고속버스	차 마			
임 원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12,000	12,000	6,000
직 원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12,000	10,000	6,000

개정내용 : 제9조 ……상 동……

〈별표 제1호〉

국 내 출 장 여 비

91. 4. 2 기준

여비 구분	교통비					숙박비	일 당	식 비
	항 공	철 도	선 박	고속버스	차 마			
임 원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18,000	15,000	12,000
직 원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실 비	18,000	13,000	12,000

6. 91. 4. 1~5. 31까지의 가예산 184,500,000원을 사무처 상정 원안대로 수립을 결의하다.

2)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제102차 중앙위원회와 연석으로 개최-1991. 5. 14)

3)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실국부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1. 6. 26.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재적 81명 재석 51명

결의사항

① 중앙집행위원, 실국부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다.

② 회의자료의 주요업무를 각부에서 보고하고 맹비의 장기체납노동조합에 대하여는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의무와 권리가 병행하여 이행되도록 노력한다.

③ 손해배상 대책기구 설립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토의한 결과, 노련에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노총에 중앙대책기구의 설치를 요청하며 대책위원회 규칙의 제정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의하다.

④ 일부 신문의 노동조합관련기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비판적이며 허위보도가 있음을 중시하고 적절히 공동대처할 것을 건의하다.

⑤ 노조가입문제로 무리를 빚고 있는 한국마벨노동조합 윤두혁위원장의 노련중앙집행위원직의 면직검토를 건의하다.

4)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노련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91.8.24)

4. 기타 회의

1)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1. 9. 6. 11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재적 26명 재석 15명

의결사항

① 주요교육사업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원안대로 집행할 것을 결의하다.

② 사무처에서는 맹비징수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역본부의 재정지원은 맹비의 징수실적과 관련지어 최대한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한다.

2)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1. 12. 23.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재적 31명 재석 19명

의결사항

① 92년도 임금인상 요구지침은 가맹노조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를 중심으로 작성 방향을 정한다.

② 포항지역 본부의 설치에 대하여 보고하고 차기 중앙위원회에 인준을 상정하도록 의결한다.

③ 지역본부에 대한 지원비 영달에 대하여는 지난5년여 동안 맹비를 인상하지 않는데 대한 물가인상분 보진과 노총맹비의 200원인상. 그리고 최근 들어 맹비의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여 사업의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지역본부가 92년 이후의 예성편성시 노련지원비의 영달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결한다.

3) 임원 및 지역본부 의장 연석회의

가. 일 시 : 1992. 3. 5. 14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결의사항

노동탄압 분쇄 및 92 임투승리 결의대회를 3월20일 노총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4) 사업계획 심의 소위원회

가. 일 시 : 1991. 5. 3.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5명

결의사항

사무처에서 상정한 '91년도 사업계획 원안을 정기대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다.

5) 예산심의 소위원회

가. 일 시 : 1991. 5. 3. 15시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10명

결의사항

사무처에서 상정한 '91년도 사업계획 원안을 정기대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한다.

6) 91년도 상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가. 일 시 : 1991. 10. 29.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3명

7) 9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위원회

가. 일 시 : 1992. 4. 29.

나. 장 소 : 본노련 회의실

다. 참석자 :

8) 한국노총 92년도 정기대의원대회 대의원 파견

가. 일 시 : 1992. 2. 27. 10시

나. 장 소 : 한국노총 대강당

다. 파견대의원수 : 75명

Ⅱ. 기 타 활 동

1. 노총장학금 배정지급

한국노총장학회에서 본노련에 배정된 91학년도 장학금 114,770,000원을 배정 송금하였다.

년도별 장학금 수혜내역

년 도 별	중	고	대	계	지 급 금 액
77년	16	12		28	1,520,000
78	91	68		159	9,765,000
79	118	86		204	13,960,000
80	165	120		285	21,525,000
81	130	42		172	30,980,000
82	127	49		176	37,980,000
83	140	37	2	179	41,680,000
84	68	9		77	16,480,000
85	84	8		92	19,000,000
86	76	13		89	19,120,000
87	71	12		83	19,650,000
88	149	64		213	15,390,000(일반) 45,600,000(국고)
89	128	58	1	187	11,820,000(일반) 47,390,000(국고)
90	199	51	1	251	80,900,000
91	261	47	1	309	114,770,000
계	1,823	676	5	2,504	504,950,000

2. 회계처리 실무교육실시

신임 · 신규노동조합의 회계처리 담당자와 회계감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회계처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참석자 현황

지 역	일 자	인 원	지 역	일 자	인 원
서 울	12. 4	40	대구 · 경북	12.13	57
경 기	12. 5	122	경 남	12.18	29
인 천	12. 6	44	전 남 북	12.19	20
부 산	12.11	47	충 남 북	12.20	24
울 산	12.12	33			